# 2024회계연도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 | | | |
|---|---|---|---|
| 기획재정부 | 소 | 관 |
| 국세청 | 소 | 관 |
| 관세청 | 소 | 관 |
| 조달청 | 소 | 관 |
| 통계청 | 소 | 관 |

2025. 8.

기 획 재 정 위 원 회

#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3

Ⅲ. 결산 개요 ····· 4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17

<붙 임> 참조

Ⅴ. 대체토론의 요지 ····· 17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17

Ⅶ. 심사결과 ····· 21

Ⅷ. 부대의견 ····· 24

Ⅸ. 소수의견의 요지 ····· 24

Ⅹ. 찬반토론의 요지 ····· 24

Ⅺ. 기타사항 ····· 24

【별 첨】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총괄표 …… 25

2.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결산) …… 26

<붙 임>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 8.

기획재정위원회

##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기획재정부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라.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마.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 및 지출

바. 복권기금: 수입 및 지출

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 및 지출

아. 외국환평형기금: 수입 및 지출

자. 기후대응기금: 수입 및 지출

## 2. 국세청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3. 관세청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4. 조달청 소관

가. 조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5. 통계청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 30.

2. 회부일자 : 2025. 6. 2.

3. 상정일자 : 2025. 8. 19.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8.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8. 20.)

상정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8. 21.)

상정, 의결(원안의결)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8. 21.)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의결(원안의결)

# Ⅲ. 결산 개요

## 1. 기획재정부 소관

### 가.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

○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453조 8,524억원, 징수결정액은 515조 3,78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40조 6,221억원(85.5%)이 수납되고, 1조 9,169억원은 불납결손처리, 72조 8,395억원은 미수납됨.

○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1조 8,641억원(97.2%), 압류액이 집행비용보다 적어 불납결손 처리한 경우 495억원(2.6%), 채무면제로 인한 경우 등 기타 33억원(0.2%)임.

○ 미수납액은 국세수입이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의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경우 60조 7,676억원(83.4%), 납기미도래인 경우 6조 5,329억원(9.0%), 정리유예인 경우 2조 6,155억원(3.6%), 징수유예인 경우 1조 5,723억원(2.2%), 통관진행중 등 기타의 경우 1조 3,513억원(1.9%)임.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A)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불납 결손액(D) | 미수납액 (E) | 수납률 (C/B) | 미수납률 (E/B) |
|---|---|---|---|---|---|---|---|
| 일반회계 | 440,810,232 | 502,476,132 | 427,719,745 | 1,916,877 | 72,839,510 | 85.1 | 14.5 |
| 특별회계 | 13,042,216 | 12,902,347 | 12,902,347 | - | - | 100.0 | - |
| 계 | 453,852,448 | 515,378,478 | 440,622,091 | 1,916,877 | 72,839,510 | 85.5 | 14.1 |

(2) 세출

○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32조 2,355억원, 예산현액은 31조 2,237억원으로, 예산현액 중 28조 3,544억원(90.8%)이 집행되고, 2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2조 8,672억원은 불용되었음.

○ 이월액은 계약기간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연구용역비 14억원, 운영비 등 7억원임.

○ 불용액은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불용 2조 5,45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등 회계간 및 회계기금간 거래 불용 3,043억원, 자체 집행예산 불용 174억원임.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A) | 예산현액 (B) | 지출액 (C) |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C/B) |
|---|---|---|---|---|---|---|
| 일반회계 | 32,031,687 | 31,019,889 | 28,150,519 | 2,131 | 2,867,240 | 90.7 |
| 특별회계 | 203,857 | 203,857 | 203,857 | - | - | 100.0 |
| 계 | 32,235,544 | 31,223,746 | 28,354,376 | 2,131 | 2,867,240 | 90.8 |

## 나. 기금 결산

○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및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550조 9,548억원으로, 525조 6,936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517조 1,223억원을 수납하고 8조 5,712억원을 미수납하여 수납률은 98.4%임.

○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550조 9,548억원으로, 이 중 517조 1,22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805억원을 이월, 4조 4,147억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3.9%임.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획액 | | 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a) | 수납액 (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322,666,688 | 328,606,839 | 328,606,839 | 334,744,896 | 327,410,977 | 7,333,920 | - | 97.8 |
| 국유재산관리기금 | 3,270,503 | 3,270,503 | 3,428,645 | 4,194,008 | 3,068,404 | 1,125,604 | - | 73.2 |
| 대외경제협력기금 | 2,208,746 | 2,208,746 | 2,223,144 | 2,116,734 | 2,019,275 | 97,459 | - | 95.4 |
| 복권기금 | 8,358,048 | 8,415,550 | 8,415,550 | 8,437,936 | 8,435,406 | 2,530 | - | 99.9 |
| 외국환평형기금 | 205,120,149 | 205,120,149 | 205,120,149 | 173,092,532 | 173,092,532 | - | - | 100.0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813,266 | 813,266 | 813,266 | 789,915 | 789,915 | - | - | 100.0 |
| 기후대응기금 | 2,391,807 | 2,287,277 | 2,347,226 | 2,317,531 | 2,305,830 | 11,700 | - | 99.5 |
| 합계 | 544,829,212 | 550,722,330 | 550,954,819 | 525,693,551 | 517,122,339 | 8,571,213 | - | 98.4 |

## [2024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획액 | | 계획 현액(a) | 지출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322,666,693 | 328,606,839 | 328,606,839 | 327,410,977 | - | 2,670,832 | 99.6 |
| 국유재산관리기금 | 3,270,503 | 3,270,503 | 3,428,645 | 3,068,404 | 160,285 | 42,630 | 89.5 |
| 대외경제협력기금 | 2,208,746 | 2,208,746 | 2,223,144 | 2,019,275 | 11,128 | 204,086 | 90.8 |
| 복권기금 | 8,358,048 | 8,415,550 | 8,415,550 | 8,435,406 | - | 43,354 | 100.2 |
| 외국환평형기금 | 205,120,149 | 205,120,149 | 205,120,149 | 173,092,532 | - | 1,393,298 | 84.4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813,266 | 813,266 | 813,266 | 789,915 | - | 14,019 | 97.1 |
| 기후대응기금 | 2,391,807 | 2,287,277 | 2,347,226 | 2,305,830 | 9,101 | 46,451 | 98.2 |
| 합계 | 544,829,212 | 550,722,330 | 550,954,819 | 517,122,339 | 180,514 | 4,414,671 | 93.9 |

## 2. 국세청 소관

###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은 예산(3,640억 7,400만원) 대비 27억 2,400만원(7.5%) 초과 수납된 3,667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800만원(△5.3%)이 감소하였음.

○ 주요 감소 사유는 국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하는 가산금 수입이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11.8%)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관유물대여료 4,800만원,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804억 3,9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700만원, 가산금 2,414억 1,3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447억 9,600만원, 잡수입 6,100만원, 고정자산매각대 2,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결산(A) | 2024년 | | | 증감 (B-A) | 증감율 (B-A)/A |
|---|---|---|---|---|---|---|
| | | 예산액 | | 결산(B) | | |
| | | 본예산 | 추경 | | | |
| ○ 일반회계 | 3,872 | 3,641 | 3,641 | 3,668 | △204 | △5.3 |
| -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벌금·과태료 등) | 3,868 | 3,639 | 3,639 | 3,667 | △201 | △5.2 |
| - 기타 (재산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등) | 4 | 2 | 2 | 1 | △3 | △75.0 |
| 합 계 | 3,872 | 3,641 | 3,641 | 3,668 | △204 | △5.3 |

## 나. 세출 결산

○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조 9,512억 4,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조 9,512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9,346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의 집행률을 보임.

○ 2024년도 이용액(移用額)은 126억원으로 납세고지서 등 발송에 88억원, 조사활동지원에 15억원, 확정채무 지급에 11억원, 기타 부족분에 12억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액(轉用額)은 38억원으로 지방청·상담센터 기본경비 공공요금에 20억원, 행정지원인력 운영에 5억원, 기타 부족분에 13억원을 전용하였음.

○ 2024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전년 대비 143억원 감소한 165억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28억원, 예산절감 24억원, 집행 잔액 113억원임.

○ 202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프로그램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과세기반 확충 135억 5,500만원, 탈세대응강화 1,324억 3,200만원, 체납·징수관리 744억 7,200만원,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189억 1,600만원, 국세행정지원 1조 6,750억 3,700만원, 책임운영기관운영 202억 6,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결산(A) | 2024년 | | | 증감 (B-A) | 증감율 (B-A)/A |
|---|---|---|---|---|---|---|
| | | 예산액 | | 결산(B) | | |
| | | 본예산 | 추경 | | | |
| ○ 인건비 | 13,098 | 13,613 | 13,613 | 13,477 | 379 | 2.9 |
| ○ 기본경비 | 1,378 | 1,384 | 1,384 | 1,393 | 15 | 1.1 |
| ○ 사업비 | 4,459 | 4,515 | 4,515 | 4,477 | 18 | 0.4 |
| 합 계 | 18,935 | 19,512 | 19,512 | 19,347 | 412 | 2.2 |

자료: 국세청

## 3. 관세청 소관

###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은 예산(1,200억 7,200만원) 대비 827억 2,700만원(△68.9%) 과소수납된 373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6억 7,000만원(△55.1%)이 감소하였음.

○ 주요 감소 사유는 사유는 가산금 수납액이 44억 3,800만원, 면허료및 수수료 수납액이 350억 3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관세청 세입결산 개요]**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결산(A) | 2024년 | | | 증감 (B-A) | 증감율 (B-A)/A |
|---|---|---|---|---|---|---|
| | | 예산액 | | 결산(B) |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 | |
| ○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등) | 3.4 | 4 | 4 | 5 | 1.6 | 47.1 |
| ○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벌금·과태료 등) | 226 | 180 | 180 | 192 | △34 | △15.0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면허료및수수료 등) | 521 | 1,016 | 1,016 | 176 | △345 | △66.2 |
| ○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 0.1 | 0.1 | 0.1 | 0.2 | 0.1 | 100.0 |
| 합 계 | 750 | 1,201 | 1,201 | 373 | △377 | △55.1 |

## 나. 세출 결산

○ 2024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623억 7,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7,600만원이 포함된 6,695억 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92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의 집행률을 보임.

○ 2024년도 이용액은 8억 400만원으로 주된 사유는 전국세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 6억원, 민간인 밀수신고 포상금 부족분 충당 2억 400만원이며, 전용액은 14억 2,900만원으로 주된 전용사유는 전국세관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부족분 충당 7억 7,000만원, 인천공항세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 4억 8,000만원,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충당 4,400만원 등에 기인한 것임.

○ 불용액은 전년도 불용액 147억 5,900만원 대비 △33.2% 감소한 98억 6,1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92억 9,800만원,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5억 6,300백만원에 기인함.

**[2024년도 관세청 세출결산 개요]**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결산(A) | 2024년 | | | 증감 (B-A) | 증감율 (B-A)/A |
|---|---|---|---|---|---|---|
| | | 예산액 | | 결산(B) |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 | |
| ○ 인건비 | 3,331 | 3,462 | 3,462 | 3,437 | 106 | 3.2 |
| ○ 기본경비 | 345 | 345 | 345 | 348 | 3 | 0.9 |
| ○ 사업비 | 2,546 | 2,817 | 2,817 | 2,808 | 262 | 10.3 |
| **합 계** | 6,222 | 6,624 | 6,624 | 6,592 | 370 | 5.9 |

# 4. 조달청 소관

## 가. 세입 결산

○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9,125억 3,100만원으로 예산액 8,026억 8,800만원 대비 13.7%인 1,098억 4,300만원 증가하였음.

○ 손익계정은 내자구매사업수입이 7억 6,400만원, 외자구매사업수입이 3억 7,400만원, 관유물대여료 1억 1,300만원 과소 수납된 반면, 시설공사사업 145억 300만원 및 비축물자 판매차익 증가에 따른 비축물자사업수입이 21억 8,100만원, 잡수익 등이 525억 7,3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 389억 5,7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자본계정은 경상이전수입 1억 5,000만원, 관유물 매각대 4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이 27억 2,6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차 이 (C-A) | 비 율 (C-A)/A | 미수납액 (B-C) |
|---|---|---|---|---|---|---|
| 사업수입 | 288,500 | 366,723 | 304,047 | 15,547 | 5.4 | 62,676 |
| ▪ 내자구매사업 | 232,181 | 285,648 | 231,417 | △764 | △0.3 | 54,231 |
| ▪ 외자구매사업 | 5,782 | 6,011 | 5,408 | △374 | △6.5 | 603 |
| ▪ 시설공사사업 | 40,686 | 61,033 | 55,189 | 14,503 | 35.6 | 5,844 |
| ▪ 비축물자사업 | 9,851 | 14,030 | 12,032 | 2,181 | 22.1 | 1,998 |
| 관유물대여료 | 2,865 | 2,845 | 2,751 | △113 | △4.0 | 93 |
| 잡수입 등 | 62,674 | 118,330 | 115,248 | 52,573 | 83.9 | 3,083 |
| 전년도세계잉여금 | 92,914 | 131,871 | 131,871 | 38,957 | 41.9 | - |
| **손익계정 계** | **446,953** | **619,769** | **553,917** | **106,964** | **23.9** | **65,852** |
| 경상이전수입 | - | 150 | 150 | 150 | - | - |
| 관유물매각대 | - | 4 | 4 | 4 | -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7,918 | 10,644 | 10,644 | 2,726 | 34.4 | - |
| 기금전입금 | 92 | 92 | 92 | - | - | - |
| 계정간전입금 | 260,425 | 260,425 | 260,425 | - | - | - |
| 기타전입금 | 87,300 | 87,300 | 87,300 | - | - | - |
| **자본계정 계** | **355,735** | **358,614** | **358,614** | **2,879** | **0.8** | - |
| **총 계** | **802,688** | **978,384** | **912,531** | **109,843** | **13.7** | **65,852** |
| **순 계** | **542,263** | **717,959** | **652,106** | **109,843** | **20.3** | **65,852** |

주: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타계정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타계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 나. 세출 결산

○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178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 8,026억 8,800만원 대비 1.9%인 15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24년도 지출액은 8,008억 8,500만원으로 예산대비 99.8%, 예산현액대비 97.9%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9,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5억 9,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A) | 예산 현액 (B) | 지출액 (C) | 예산액 대비 (C/A) | 예산현액 대비 (C/B) | 다음연도 이월액 (D) | 불용액 (B-C-D) |
|---|---|---|---|---|---|---|---|
| 인 건 비 | 85,575 | 85,472 | 82,572 | 96.5 | 96.6 | - | 2,900 |
| 기본경비 | 12,688 | 12,700 | 12,492 | 98.5 | 98.4 | - | 208 |
| 주요사업비 | 74,967 | 81,615 | 77,026 | 102.7 | 94.4 | 434 | 4,155 |
| 건강보험부담금 | 3,012 | 3,102 | 3,092 | 102.7 | 99.7 | - | 10 |
| 연금부담금 | 10,286 | 10,286 | 9,927 | 96.5 | 96.5 | - | 359 |
| 타계정전출금 | 260,425 | 260,425 | 260,425 | 100.0 | 100.0 | - | - |
| **손익계정 계** | **446,953** | **453,601** | **445,535** | **99.7** | **98.2** | **434** | **7,632** |
| 자산취득 및 시설비 | 65,254 | 73,788 | 70,560 | 108.0 | 95.7 | 2,956 | 272 |
| 기본경비(자본) | 990 | 990 | 990 | 97.4 | 97.4 | - | - |
| 일반회계전출금 | 219,491 | 219,491 | 213,800 | 97.4 | 98.0 | - | 5,691 |
| 전 출 금 등 | 70,000 | 70,000 | 70,000 | 100.0 | 100.0 | - | - |
| **자본계정 계** | **355,735** | **364,269** | **355,350** | **99.9** | **97.6** | **2,956** | **5,963** |
| **총 계** | **802,688** | **817,870** | **800,885** | **99.8** | **97.9** | **3,390** | **13,595** |
| **순 계** | **542,263** | **557,445** | **540,460** | **99.7** | **97.0** | **3,390** | **13,595** |

주 :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타계정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타계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 한편, 조달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16억 4,600만원이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이입되었음.

# 5. 통계청 소관

## 가.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33억 6,600만원으로 예산액 36억 1,000천만원 대비 6.7%인 2억 4,400만원 감소하였음.

○ 세입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통계자료제공 수수료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감소임.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차 이 (C-A) | 비 율 (C-A)/A | 미수납액 (B-C) |
|---|---|---|---|---|---|---|
| 합 계 | 3,610 | 3,379 | 3,366 | △244 | △6.7 | 13 |
| · 재산수입 | 2 | 3 | 3 | 1 | 37.5 | - |
| · 경상이전수입 | 162 | 74 | 61 | △101 | △62.2 | 13 |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2,104 | 1,884 | 1,884 | △220 | △10.4 | - |
| · 수입대체경비수입 | 1,260 | 1,322 | 1,322 | 62 | 4.9 | - |
| · 관유물매각대 | 82 | 96 | 96 | 14 | 17.1 | - |

자료: 통계청

## 나.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253억 6,700만원으로 예산액 4,252억 6,700만원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4,100억 9,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4%, 예산현액 대비 96.4%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52억 1,1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A) | 예산현액 (B) | 지출액 (C) | 예산액 대비 (C/A) | 예산현액 대비 (C/B) | 불용액 (B-C) |
|---|---|---|---|---|---|---|
| 합 계 | 425,267 | 425,367 | 410,091 | 96.4 | 96.4 | 15,211 |
| 인 건 비 | 154,958 | 154,958 | 148,519 | 95.9 | 95.9 | 6,418 |
| 기본경비 | 17,311 | 17,311 | 16,832 | 97.2 | 97.2 | 500 |
| 사 업 비 | 252,998 | 253,098 | 244,740 | 96.7 | 96.7 | 8,293 |

자료: 통계청

○ 인건비는 예산현액 1,549억 5,800만원 대비 95.9%인 1,485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73억 1,100만원 대비 97.2%인 168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비는 예산현액 2,530억 9,800만원 대비 96.7%인 2,447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붙 임> 참조

## Ⅴ.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일영)

□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5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기획재정부 소관

□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 10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

□ 먼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첫째,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 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고, 금융성 채무에 대한 분류기준 및 구성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둘째,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대응하는 문제 및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하여 향후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예비비를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며, 결산서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구분하여 그 집행 내역을 국가 안전보장 활동에 사용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넷째, 현행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상환 방식은 불공정한 약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금 상환일과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과 공개 등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및 공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타기금 예수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기후대응기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을 확대하고 기

금 수입의 외부재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세수입 전망시점과 세입예산안 의결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였음.

## 2. 국세청 소관

□ 국세청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세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 3. 관세청 소관

□ 관세청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검사의 확대, 통관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 시행, 유관 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위해물품의 반입 증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 4. 조달청 소관

□ 조달청에 대해서는 실물 ETF 운용을 위한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이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 5. 통계청 소관

□ 통계청에 대해서는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조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음.

□ 마지막으로, 정부는 특정업무경비가 비목의 취지에 부합하여 편성 및 집행되고, 현장에서 수사·감사·조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특정업무의 범주 및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업무경비의 지급에 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음.

□ 한편,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실적의 국회 제출 등 예비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음.

# Ⅶ. 심사결과

## 1. 기획재정부 소관

가. 일반회계: 원안의결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원안의결

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안의결

라. 국유재산관리기금: 원안의결

마. 대외경제협력기금: 원안의결

바. 복권기금: 원안의결

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안의결

아. 외국환평형기금: 원안의결

자. 기후대응기금: 원안의결

다만,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03건을 첨부하였음

- 시정 26건
- 주의 12건
- 제도개선 67건

## 2. 국세청 소관

가. 일반회계: 원안의결

다만,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7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2건
- 제도개선 15건

## 3. 관세청 소관

가. 일반회계: 원안의결

다만,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4건을 첨부하였음

- 시정 3건
- 제도개선 11건

## 4. 조달청 소관

가. 조달특별회계: 원안의결

다만,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2건을 첨부하였음

- 시정 3건
- 주의 1건
- 제도개선 8건

## 5. 통계청 소관

가. 일반회계: 원안의결

다만,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2건을 첨부하였음

- 시정 3건
- 주의 1건
- 제도개선 8건

**【별 첨】**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총괄표

2.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결산)

## Ⅷ. 부대의견

### 1. 기획재정부 소관

○ 정부는 특정업무경비가 비목의 취지에 부합하여 편성 및 집행되고, 현장에서 수사·감사·조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특정업무의 범주 및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업무경비의 지급에 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Ⅸ.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 Ⅹ. 찬반토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 Ⅺ.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 【별 첨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총괄표

□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59건(결산 · 예비비 합계)

(단위: 건)

| 부 처 명 | 변 상 | 징 계 | 시 정 | 주 의 | 제도개선 | (중 복) | 합 계 |
|---|---|---|---|---|---|---|---|
| 기획재정부 | - | - | 26 | 12 | 67 | 1 | 104 |
| 국세청 | - | - | - | 2 | 15 | - | 17 |
| 관세청 | - | - | 3 | - | 11 | - | 14 |
| 조달청 | - | - | 3 | 1 | 8 | - | 12 |
| 통계청 | - | - | 3 | 1 | 8 | - | 12 |
| 합계 | - | - | 35 | 16 | 109 | 1 | 159 |

# 【별 첨 2】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결산)

## 가. 기획재정부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1</td><td rowspan="2">금융성 채무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대응자산 현황 및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 제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서 국가채무를 대응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br>
-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table>
<tr><th>국가채무 (A=B+C)</th><th>적자성 채무(B)</th><th>금융성 채무(C)</th><th>외환시장안정용</th><th>서민주거안정용</th><th>기타 금융성</th><th>공자기금조정</th></tr>
<tr><td>1,175.2조원</td><td>815.4조원</td><td>359.8조원</td><td>210.3조원</td><td>79.1조원</td><td>66.4조원</td><td>4.0조원</td></tr>
</table>
○ ① ‘기타 금융성 채무(25개 회계·기금)’ 중 상당 부분은 대응자산이 채무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br>
- ‘기타 금융성 채무’란 공자기금이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탁 잔액<br>
- 최근 3년간 기타 금융성 채무들의 상당 부분은 채무 대비 대응자산이 부족<br>
[최근 3년간 기타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 현황(채무 상위 5개)]
<table>
<tr><th rowspan="2">구분(단위: 조원)</th><th colspan="2">2021년</th><th colspan="2">2022년</th><th colspan="2">2023년</th></tr>
<tr><th>채무</th><th>대응자산</th><th>채무</th><th>대응자산</th><th>채무</th><th>대응자산</th></tr>
<tr><td>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td><td>15.7</td><td>13.0</td><td>19.5</td><td>14.0</td><td>20.6</td><td>14.3</td></tr>
<tr><td>고용보험기금</td><td>9.4</td><td>1.8</td><td>10.3</td><td>1.9</td><td>10.3</td><td>1.9</td></tr>
<tr><td>국민건강증진기금</td><td>3.5</td><td>0.4</td><td>3.9</td><td>0.2</td><td>4.5</td><td>0.0</td></tr>
<tr><td>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td><td>3.4</td><td>0.0</td><td>3.2</td><td>0.0</td><td>2.8</td><td>0.0</td></tr>
<tr><td>관광진흥개발기금</td><td>2.3</td><td>3.2</td><td>2.6</td><td>3.1</td><td>2.5</td><td>3.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 특히 2025년 기금존치평가에 따르면, ‘기타 금융성 채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후대응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중기가용자산 과소 평가를 받아 대응자산이 불충분<br><br>
- 과거 감사원 지적*도 있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대응자산 부족분과 초과분을 공개 중<br>
* 감사원 권고(2021.5.):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대응자산이 채무 대비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적자성 채무로 집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br>
○ ②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의 대응자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도 포함되어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대응자산이 채무에 크게 미달<br><br>
- 동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으로, 정부는 대응자산으로 주택도시기금 금융성 자산 제시<br><br>
- 그러나 이러한 대응자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2023년 기준 95.3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제외 시 대응자산 규모는 채무에 비해 부족<br><br>
<table>
<tr><th>구분(단위: 조원)</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td><td>78.9</td><td>82.2</td><td>82.2</td><td>81.6</td><td>79.1</td></tr>
<tr><td>정부에서 제시한 대응자산 규모(a)</td><td>120.3</td><td>129.8</td><td>141.1</td><td>151.4</td><td>집계 중</td></tr>
<tr><td>청약저축 납입액 잔액(b)</td><td>83.4</td><td>96.3</td><td>95.5</td><td>95.3</td><td>97.5</td></tr>
<tr><td>청약저축 납입액 제외 시 대응자산 (a-b)</td><td>36.9</td><td>33.5</td><td>45.6</td><td>56.1</td><td>집계 중</td></tr>
</table>
<br>
○ ③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대응자산 역시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대응자산에는 외환보유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움<br><br>
- 최근 3년간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에 비해 대응자산이 지속적으로 부족<br><br>
<table>
<tr><th>구분(단위:조원)</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잔액(a)</td><td>263.8</td><td>265.7</td><td>251.0</td><td>210.3</td></tr>
<tr><td>대응자산 규모(b)</td><td>228.5</td><td>185.9</td><td>200.1</td><td>집계 중</td></tr>
<tr><td>대응자산 부족분(a-b)</td><td>35.3</td><td>79.8</td><td>50.9</td><td>-</td></tr>
</table>
<br>
- 특히 해당 대응자산에는 외환보유고 등이 포함되어 실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 실질적 의미의 대응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존재하므로 동 채무를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td><td></td><td></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의 상당 부분이 대응자산이 부족하거나 과다계상, 실제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국가 채무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 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고 금융성 채무에 대한 분류기준, 구성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 | | |
| 2 | **국가 재정상태표의 순자산 과다인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은 **국가 자산에는 포함되나 부채로는 인식되지 않아 불균형**한 문제 발생하며 **순자산이 과다인식**되는 문제 발생<br>-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에는 4대 연금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나 부채에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만 포함<br>○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은 **향후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자산으로 반영되어 순자산 과다인식<br>○ 특히 국민·사학연금은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가와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br>- 국가회계기준은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 및 군인이 연금을 지급받는 것만이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공무원·군인연금기금만을 연금충당부채로 인식<br>○ 2024년 국가 재무제표 순자산 약 633조원에서 국민·사학연금 자산 규모 제외 시 **국가의 순자산은 △473조원으로 음(-)으로 전환**<br>- 국가 재정상태표 상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증가(63조원)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민·사학연금 제외 시 순자산은 전년 대비 감소(△108조원)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단위: 조원)<br><table><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국가 재무제표 순자산</td><td>505</td><td>671</td><td>508</td><td>570</td><td>633</td></tr><tr><td>국민연금·사학연금 제외 후 순자산</td><td>△224</td><td>△304</td><td>△288</td><td>△365</td><td>△473</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의 순자산 과다인식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 자산 규모를 별도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d></td><td></td></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국외출장<br>결과보고서 부실<br>작성 주의</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공무 수행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국외출장 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br>-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출장규정」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는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외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br>- 그러나 공무수행에 대한 증빙 사진이 없거나 시사점이 단 한 줄 또는 한 장에 불과한 등 보고서 작성이 부실하여 출장 계획서에 기재된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 (공공정책국,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인사과 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세수결손 대응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총괄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30.8조원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일방적인 불용 등을 **반복**한 문제 발생<br>- 2023년 결산 심사 당시 추경 없이 정부가 사업별 지출계획을 조정할 경우 국회가 당초 심의·확정한 것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의 시정요구사항 채택<br>○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 **재발**<br>- 2023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등을 감안,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과 지자체 교육·복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할 것(시정)'의 시정요구사항 채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대응하는 문제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기획재정부는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임차료 지급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총괄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0개 실·국은 임차료의 지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외부 회의를 위한 장소 **임차료(210-07)를 지급하면서 업무추진비(240)로 지급되어야 하는 식대 등을 함께 지급**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함(임차료 총 2,555만원)<br>*「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br>*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br>*업무추진비: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및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br>○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 업무추진비 대신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항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료를 통해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면밀한 사업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1-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면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부적절하므로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br>- 2024년 동 사업의 국내여비(7,600만원) 불용률은 88.2%, 국외여비(7,200만원) 불용률은 76.4%이며, 일반연구비(1억 500만원) 불용률은 71.4%<br>- 일반수용비(3억 5,000만원)와 일반용역비(5억 9,100만원)의 경우 각각 4,300만원 및 7,5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700만원, 7,300만원의 불용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에 기반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당초 확정예산 대비 이·전용을 통한 파견인원 증가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7132-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해외기관 파견자에 대하여 임차료나 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br>○ 기획재정부는 **당초 확정예산에 비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파견인원을 증원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문제 발생<br>- 기재부는 2024년 해외기관 파견자에 대한 국외업무여비 및 임차료가 부족하여 세목 조정 및 전용을 통해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br>- 이는 확정예산(6명분)에 비하여 이·전용 등을 통하여 파견자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 것<br>- 기재부는 당초 예산 편성 시 담당자의 착오로 파견인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설명<br>○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파견인원 6명분)과 달리 이·전용 등을 통해 우회하여 파견인원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적절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당초 확정된 예산에 비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파견인원을 증원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 수행 계획 수립에 정확성을 제고하여 사업 수행의 애로 및 예산 편성·집행 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개별 사업으로<br>정책연구용역<br>추진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7135-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2024 예산현액 19억 2,300만원)의 취지는 개별 사업 부서가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용역 주제 중복을 예방하고, 적시에 유연하게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br><br>○ 그러나 정책연구개발 사업과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유사·중복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br><br>- 예시: 2024년도 기획재정부 실시 연구용역 중 중복 의심 연구 사례 내역
<table>
<tr><th>주제</th><th>세부사업명</th><th>연구용역 제목</th></tr>
<tr><td rowspan="3">연구개발<br>효과성</td><td>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td><td>국가 R&D 중장기 효과성 제고방안</td></tr>
<tr><td>경제정책조정활성화</td><td>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방안</td></tr>
<tr><td>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td><td>연구개발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td></tr>
<tr><td rowspan="3">기업 및<br>산업 경쟁력</td><td>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td><td>중장기 기업경쟁력 확보 방안</td></tr>
<tr><td>경제정책조정활성화</td><td>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 지원방안</td></tr>
<tr><td>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td><td>주요 전략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td></tr>
<tr><td rowspan="4">규제 개선</td><td>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td><td>중장기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연구</td></tr>
<tr><td>경제정책조정활성화</td><td>기업규모별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td></tr>
<tr><td>경제정책조정활성화</td><td>국민·기업 체감형 규제 개선 과제 발굴</td></tr>
<tr><td>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td><td>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연구</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제목 구체화·세분화 등을 포함하여 기존 연구와의 유사성·중복성 확인을 강화하는 등 정책연구개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정책연구개발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국회 증액사업의<br>수시배정 과다<br>및 미배정</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수시배정된 사업 중 국회 증액 사업의 수시배정 비중이 과다한 문제 발생<br>- 내역사업 기준으로 2024년 수시배정 사업은 124개이나, 이 중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73개로 그 비율이 58.9%로 과다<br>- 수시배정 대상액 대비 실제 배정률 역시 전체 사업은 95.7%인 반면, 국회 증액 사업은 93.6%로 평균에 비해 저조<br>[2024년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 증액 사업 현황]<br>(단위: 개,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3">수시배정 사업수</th><th colspan="3">수시배정 대상액</th><th colspan="2">배정률</th></tr>
<tr><th>전체(a)</th><th>국회증액(b)</th><th>비율(b/a)</th><th>전체(c)</th><th>국회증액(d)</th><th>비율(d/c)</th><th>전체</th><th>국회증액</th></tr>
<tr><td>124</td><td>73</td><td>58.9</td><td>61,186</td><td>7,215</td><td>11.8</td><td>95.7</td><td>93.6</td></tr>
</table>
주: 내역사업 기준<br>○ 특히 국회 증액 사업 중 예산액이 전액 미배정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 발생<br>-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거제-마산국도건설’ 등 15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대상액이 전액 미배정</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회 증액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과다 문제 및 전액 미배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수시배정 내역 및 사유를 보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피터슨<br>국제경제연구소<br>협력 사업의<br>성과 및 조기<br>종료 사유 등에<br>대한 정보 제출<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 재정협력 강화(244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4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지급하는 국제부담금(3억 9,100만원)을 전액 불용<br>- 기획재정부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2019년 MOU를 체결하면서 매년 30만불의 기금을 지원하고, 피터슨 연구소는 매년 최소 5개의 한국 재정정책 연구보고서(5년간 총 25건)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협약(2020년~2024년)<br>○ 기획재정부는 동 협약의 성과 저조 등을 사유로 협약을 2024년 조기 종료하였고, 국제부담금도 전액 불용함<br>- 기획재정부가 동 협약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억 500만원<br>[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의 국제부담금 지원 현황]
<table>
<tr><th>연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합계</th></tr>
<tr><td>집행액(백만원)</td><td>357</td><td>357</td><td>402</td><td>389</td><td>0</td><td>1,505</td></tr>
</table>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동 협력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및 조기 종료 사유, 신규 협력기관 선정 여부, 부담금 수준의 적절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국제 재정협력기관 선정 사유, 협력 내용 및 부담금 수준의 적절성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자산취득비 연말 집중 시정 필요 및 업무추진비 집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4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예산실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연말에 자산취득비 집행이 집중**하여 **「집행지침」 위반 및 예산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br>-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를 위반<br>- 2024년의 경우 자산취득비 예산의 약 88%를 12월에 집행<br>○ 또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어 재발 방지 필요<br>-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식사비를 일반수용비로 잘못 지출한 사례가 6건(411만원)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취득비를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12 | **최근 재정 운용 성과 부진에 대한 변상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4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재정전문가 및 지자체, 부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 지방재정협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br>- 동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은 28억 2,700만원으로 이 중 22억 1,100만원 집행, 4,500만원 이월, 5억 7,100만원 불용<br>○ 그러나 2차례의 대규모 세수결손, 2024년도 연구개발예산 삭감, 지자체 교부금 재원 부족 등을 야기하였던 바 최근 5년간 연간 20~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소모한 것에 비해 재정운용 성과는 매우 낮아 사실상 예산 낭비에 해당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예산 편성 및<br>집행의 계획성<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예산 불용에 대한 국회 지적 반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률이 낮음<br>- 2024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2%이며, 5억 7,100만원 불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2021</td><td>2,302</td><td>2,045</td><td>88.8</td><td>23</td><td>234</td></tr>
<tr><td>2022</td><td>3,159</td><td>2,383</td><td>75.4</td><td>135</td><td>640</td></tr>
<tr><td>2023</td><td>3,196</td><td>2,746</td><td>85.9</td><td>95</td><td>356</td></tr>
<tr><td>2024</td><td>2,827</td><td>2,211</td><td>78.2</td><td>45</td><td>57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의 관리대상 데이터 중복 예방 및 불용 방지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1133-301) | 주의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은 데이터 발굴, 정제를 통한 유의미한 경기 속보지표 개발과 이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경기진단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br>○ 해당 내역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당초 예산안 9억원에서 3억원이 삭감된 6억원만 승인되었으며, 한국은행, KDI,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동 내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됨<br>- 심의 과정에서 동 내역사업이 정보화전략계획 대상으로 판단되고, 사업 성격 자체가 통계청이 수행함이 타당하며, 경기진단 시 중요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산출·관리하고 있으므로 9억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음<br>○ 그러나 2024년도 동 내역사업 예산 6억원 중 2억 7,300만원만 집행되고 2억 7,300만원이 이월, 5,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부대의견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소통 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관리대상 데이터의 중복을 예방하고, 사업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5 | **반복적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1141-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세부사업은 업무추진비 집행 외에는 집행률이 저조하며, 연례적으로 예산 대비 큰 비중으로 불용이 발생함<br>- 동 세부사업의 집행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6,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나, 운영비 3억 6,000만원 중 3억 1,900만원 집행(집행률 88.4%), 여비 9,700만원 중 6,800만원 집행(집행률 70.5%), 연구용역비 1억원 중 7,800만원 집행(77.8%) 등 집행이 부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은 매년 예산 대비 큰 비중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집행의 계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 | | |
| 16 | **예산 편성 · 집행의 계획성 · 정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1132-4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을 다른 세목으로 세목조정 및 전용하였는데, 증액 변경한 세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함<br>-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 4,400만원을 감액하여 같은 내역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로 1,400만원을 세목조정하고, 기타정책연구개발 내역사업의 정책연구비(260-02)로 3,0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일반용역비는 1,100만원, 정책연구비는 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전용 또는 세목조정하여 증액한 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정확성을 제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7 | **기후대응기금 사업 개편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총괄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기후대응기금 사업만의 차별성이 없이 다른 회계 및 기금 등의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br>- 이는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생태계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기반구축 등 사실상 탄소중립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사업선정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주무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대상사업의 범위를 축소·구체화하여 기금사업의 차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배출권 매각 대금<br>수입 확대 및<br>기금 수입구조<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기후대응기금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br>환경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후대응기금 수입 중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비중은 8.1%에 불과하며, 당초 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음<br>- 이는 낮은 실질 유상할당 비율(4%)과 배출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br><br>[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계획액 및 수납액 현황]<br>(단위: 백만원, %)<br><table><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수납액(C)</th><th colspan="2">수납률</th></tr><tr><th>당초(A)</th><th>수정(B)</th><th>당초대비(C/A)</th><th>수정대비(C/B)</th></tr><tr><td>2022</td><td>730,584</td><td>447,639</td><td>318,826</td><td>43.6</td><td>71.2</td></tr><tr><td>2023</td><td>400,896</td><td>208,660</td><td>85,233</td><td>21.3</td><td>40.9</td></tr><tr><td>2024</td><td>289,694</td><td>202,121</td><td>187,677</td><td>64.8</td><td>92.9</td></tr></table>○ 배출권 매각 대금 수입이 계획 대비 부진함에 따라 2024년에는 24개 기금사업의 지출 1,045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출권 가격 하락 추세는 국내기업의 탄소저감기술 투자축소 유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탄소저감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br>○ 또한, 기후대응기금 자체수입 부족에 따라 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 등 외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임<br>-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는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시 전체 계획기간의 실질 유상할당비율을 상향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자체수입원 발굴 등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기금 수입의 외부재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9 |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기금예수금(94-943),<br>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919)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설립 첫해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차입)하여 매년 적자 운용 중이며, 2025년에도 3,199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누적예수금액은 1조 3,725억원으로 예상됨<br>- 예수금 증가는 이자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예수금 상환이 시작되는 2031년부터는 예수금 상환을 위해 추가로 예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br>-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타 회계에서 이관된 사업이 많은데, 타 회계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받아 예수금으로 적자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적절한 재정운용 방식으로 보기 어려움<br>* '기금예수금'은 자체수입, 타회계·기금 전입금을 제외하고,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차입)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3,199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음<br>○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감소로 인해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차입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br>- 예수이자 상환으로 2022년 51억원, 2023년 171억원, 2024년 28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450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누적상환액이 1천억원에 육박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0 |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6131-6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br>환경부 |
| | | 지적사항 | ○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은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입찰·계약 과정에서 지원업체들의 부적정 집행사례가 적발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br>-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2024년 11월 보조금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의심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음<br>○ 또한,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은 총량적 성과와 비교하여 개별 감축설비의 감축 효율은 미흡함<br>- 2024년 사후관리 추진결과에 따르면 민간·지자체 수행실적은 모두 당초 계획 대비 109%를 달성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10,258톤 감축했음<br>- 그러나 개별 대상업체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면 민간 부문에서는 9개 업체에서 설치한 감축설비에서 당초 계획했던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했고, 7개 지자체의 13개 공공시설에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적법한 집행관리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br>○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총량적 성과 이외에도 감축설비 단위의 성과관리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강화를 위하여 감축효율이 부진한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1 |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 보완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6131-62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br>환경부 |
| | | 지적사항 | ○ 환경부에서 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은 2014년 롯데월드타워 사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롯데월드타워는 초고층 대형 복합건물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구조적 특성 및 에너지 수요 패턴에서 차이가 크고, 2014년 당시의 수열에너지 관련 기술 및 시스템 효율이 현재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있어 건축물 유형·용도별로 대표성 있는 최신 사례나 에너지 절감계수를 활용하여 산정기준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 | |
| 22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6132-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br>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전 정부에서 2025년 예산을 삭감하였음<br>- 공공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중은 전체 대비 약 85% 수준이며, 2024년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 530동의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 평균 측정 결과 39.6%의 에너지가 절감되었고 126,871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등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났음<br>- 2024년 계획액(127,517백만원)→2025년 계획액(114,538백만원)[**12,979백만원 감**]<br>○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4년에는 **도서관, 기타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파출소, 교육원, 기타교육연구시설**에 대해 지원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 내역에는 **보건소, 의료시설,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나리오'에 따라 지원하는 용도 건물의 유형을 확대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3 | **특구 미지정으로 인한 전액 불용 부적절**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6331-410) | 주의 | 기획재정부<br>산업통상자원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법률안 제정 및 특구 지정 관련 고시 마련 등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2024년 예산(24억 2,200만원)이 전액 불용된 문제가 있음<br>- 동 사업은 2023년에 정의로운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4억원(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 2.5억원 + 연구용역비 1.5억원)이 집행되었으나 특구가 지정되지 않아 실질적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br>-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특구가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불용된 문제가 있으며, 2023년 구축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도 운영되지 않아 2023년 기집행된 예산 역시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확인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문제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구 모집을 조속히 추진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4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6332-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br>고용노동부 |
| | | 지적사항 | ○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은 2022년 신설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br>- 2022~2023년 계획액은 52억 6,000만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은 2022년 5,400만원, 2023년 4억 7,800만원에 불과<br>- 이에 2024년 계획액을 37억 4,2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17억 4,2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나, 그럼에도 집행액이 5억 6,000만원(32.1%) 수준에 그침<br>*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기금 사업<br>목적에 부합하지<br>않는 집행 사례<br>발생 주의</td><td>관련사업명</td><td>기후대응기금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6332-4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br>산업통상자원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탄소중립활동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br>○ 동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사업재편 유형이 ‘탄소중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수 발생
<table>
<tr><th>업체</th><th>사업재편 유형</th><th>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th></tr>
<tr><td>A</td><td>과잉공급</td><td>-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 조정으로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유망 분양 진출 촉진 등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br>- (주요내용) 조선 기자재 생산을 축소하고 발전 기자재 신규 생산 및 기술 개발 등 사업 혁신 추진</td></tr>
<tr><td>B</td><td>신산업 진출</td><td>- (필요성) 관세서비스 AI 프로그램 출시에 따라 업무보조 컨설팅에서 유산균 발효 참기름 사업으로 사업재편 추진</td></tr>
<tr><td>C</td><td>신산업 진출</td><td>- (필요성) 자동차회사의 로봇 산업 진출에 따른 사업범위 다각화<br>- (주요내용)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에 적용할 치형 설계 및 가공 기술개발</td></tr>
<tr><td>D</td><td>신산업 진출</td><td>- (필요성)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인공지능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진입<br>- (주요내용)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 개발</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금 및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6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강구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6333-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br>환경부 |
| | | 지적사항 | ○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전국적인 평균참여율이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참여율 편차도 발생하고 있음.<br>- 탄소중립포인트제도란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구입, 지방세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임<br>-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 18,429,743가구 대비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트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총 가구수는 2,336,523가구로 12.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광주광역시(57.9%), 제주특별자치도(39.2%), 전북특별자치도(24.9%)에 비해 경기도(5.7%), 세종특별자치시(5.8%), 부산광역시(7.4%)로 지역간 편차가 최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br>-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23,120,986대 대비 0.29%인 66,010대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참여비율도 0.2%~0.6%로 나타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전국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참여율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병행하여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7 |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 및 감액 필요**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R&D)(6431-400) | 시정 | 기획재정부<br>국토교통부 |
| | | 지적사항 | ○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R&D) 사업은 석유 코크스(20톤/일급)를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고도정제, 수성가스 전환, 고순도 수소생산(3톤/일급)을 위한 실증 플랜트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임<br>○ ① 석탄가스화기술(IGCC*)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유사한 화석연료 기술 R&D라는 점, ② 석유 코크스 100만톤을 투입한 수소 생산량은 15만톤에 불과해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br>*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시켜 가스를 만든 다음, 이 가스를 정제·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는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R&D)사업'을 기후대응기금에서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이관하고, 2026년도 예산을 감액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8 | **녹색기업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및 사업관리 방안 마련** | 관련사업명 | 기후대응기금 -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6433-7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br>환경부 |
| | | 지적사항 | ○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정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정기업도 대기업과 제조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br>- 녹색기업은 2011년 이후 2024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br>※ 지정 현황: 2020년 123개, 2021년 111개, 2022년 103개, 2023년 97개, 2024년 97개<br>- 2024년 기준 전체 녹색기업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99%이고, 전기전자·식료품 등 제조업 분야가 전체의 약 80%임<br>○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녹색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br>- 2020년 20개, 2021년 14개, 2022년 11개, 2023년 6개, 2024년 9개 등 최근 5년간 총 50개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하였고, 해당 사유로 2개 기업이 지정취소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녹색기업지정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br>○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녹색기업지정제도의 공공 신뢰를 확보하고 녹색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9 | **서면회의 중심의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본회의 운영 개편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고업무관리(2233-302)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3년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 대면회의 개최 실적은 전무한 상황<br>-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본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br>- 기획재정부가 분과위원회의 조정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의 형식적인 서면의결 검토수당에 지급한 일반수용비는 1,95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상의 비효율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면회의는 예외·보완 수단으로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
| 30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2233-307)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채관리시스템은 시스템 운용 1년차인데,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편익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ISP에서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검증이 불가능<br>- 국채관리시스템은 2021년에 ISP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 1차 구축(28억 600만원), 2023년에 2차 구축(11억 8,300만원)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시스템을 유지보수 중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편익 평가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1 | **한국은행 일시차입 원금과 이자의 상환 시기 일치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일시차입금이자상환(2272-56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재정증권을 비롯한 일반적 금전차입은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차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에 상환**하여 부적절한 이익을 취함<br>- 기획재정부는 1953년에 한국은행과 체결한 「정부대상금 약정서」에 따라 차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에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나, ① 동 약정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재무부장관이 수행할 때 작성되었고, ② 차입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이자를 원금보다 늦게 상환하여 시간 가치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불공정계약 소지 존재<br>- 실제 2024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2,048억원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최소 약 12.8억원의 부적절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임<br>○ 국고금 운용수익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되며, 그 규모와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br>*「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br>-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를 「일시차입금이자상환」예산 또는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지불<br>*「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br>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현행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상환 방식이 불공정한 약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금 상환일과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2</td><td rowspan="3">세수 추계<br>정확성 제고와<br>적절한 경정<br>절차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일시차입금이자상환(2272-56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세입 추계 오차에 따라 집행액 및 불용액 변동이 크게 발생<br>- (2024년) 본예산은 992억 900만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115억원을 이용 증액 후 전액(2,107억 900만원) 집행<br>- (2023년) 예산 미편성<br>- (2022년) 예산액 250억원 중 59억 1,600만원을 이용 감액하고, 잔액은 전액 불용<br>- (2021년) 예산액 608억원 중 80억 9,600만원만 집행하여 불용률이 86.7%<br>* 일시차입금이자상환사업은 국고금 출납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br>[일시차입금이자상환사업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th><th>이·전용</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br>현액(B)</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집행률<br>(C/A)</th><th rowspan="2">집행률<br>(C/B)</th><th>다음년도</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h>이월액</th><th>등</th><th>이월액</th></tr>
<tr><td>2021</td><td>60,800</td><td>60,800</td><td>-</td><td>-</td><td>-</td><td>60,800</td><td>8,096</td><td>13.3</td><td>13.3</td><td>-</td><td>52,704</td></tr>
<tr><td>2022</td><td>25,000</td><td>25,000</td><td>-</td><td>△5,916</td><td>-</td><td>19,084</td><td>-</td><td>-</td><td>-</td><td>-</td><td>19,084</td></tr>
<tr><td>202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024</td><td>99,209</td><td>99,209</td><td>-</td><td>111,500</td><td>-</td><td>210,709</td><td>210,709</td><td>100.0</td><td>100.0</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세입 추계 오차로 인하여 자금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세입 경정 등에 맞춰 동 사업 예산을 실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3</td><td rowspan="3">공용재산취득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공용재산취득사업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의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됨<br>- 공용재산취득사업의 계획현액은 1조 1,041억 900만원, 지출액은 9,012억 1,800만원, 집행률은 81.6%임<br>[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용재산취득 사업 집행실적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5년 평균</th></tr>
<tr><td colspan="2">계획현액(A)</td><td>1,064,717</td><td>1,065,558</td><td>1,005,402</td><td>1,138,112</td><td>1,104,110</td><td>1,075,580</td></tr>
<tr><td colspan="2">지출액(B)</td><td>946,745</td><td>859,646</td><td>753,785</td><td>906,176</td><td>901,217</td><td>873,514</td></tr>
<tr><td colspan="2">집행률(B/A)</td><td>88.9</td><td>80.7</td><td>75.0</td><td>79.6</td><td>81.6</td><td>81.2</td></tr>
<tr><td colspan="2">위탁개발임차료(C)</td><td>54,362</td><td>26,186</td><td>64,200</td><td>128,343</td><td>79,235</td><td>70,465</td></tr>
<tr><td rowspan="3">위탁개발임차료 제외</td><td>계획현액 (D=A-C)</td><td>1,010,355</td><td>1,039,372</td><td>941,202</td><td>1,009,769</td><td>1,024,875</td><td>1,005,115</td></tr>
<tr><td>지출액 (E=B-C)</td><td>892,383</td><td>833,460</td><td>689,585</td><td>777,833</td><td>821,982</td><td>803,049</td></tr>
<tr><td>집행률(E/D)</td><td>88.3</td><td>80.2</td><td>73.3</td><td>77.0</td><td>80.2</td><td>79.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청·관사 건설 등 공용재산취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 소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공용재산취득 계획액을 편성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이 면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4</td><td rowspan="3">국회 헌정회관<br>신축 사업 불용<br>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국회 헌정회관 신축(1231-4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4,600만원(집행률: 1.9%)에 불과하며, 저조한 집행률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기금 편성 단계가 아닌 사업 추진연도에 착수하여 2024년 8월에 완료한 것에 기인함<br>- 집행 부진 사유: 총사업비 협의가 2024년 8월에 완료됨에 따라 설계기간 순연<br>○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억 5,8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58.7%임<br>[국회 헌정회관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br>(420-01)</td><td>1,362</td><td>1,304</td><td>-</td><td>1,304</td><td>46</td><td>486</td><td>771</td></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1,178</td><td>1,178</td><td>-</td><td>1,178</td><td>-</td><td>492</td><td>686</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56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3,102</td><td>2,482</td><td>-</td><td>2,482</td><td>46</td><td>978</td><td>1,458</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국회사무처)이 총사업비 협의를 기금안 편성 단계에서 착수하도록 하여 불용·이월을 최소화하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5</td><td rowspan="3">대법원 서울법원<br>제2청사 신축<br>사업 불용<br>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1331-618)</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억 5,6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98.3%임<br><br>[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결산]<br><br>(단위: 백만원, %)<br><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tr><th>당초</th><th>수정</th></tr><tr><td>- 기본설계비<br>(420-01)</td><td>-</td><td>-</td><td>471</td><td>471</td><td>-</td><td>-</td><td>471</td></tr><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td><td>-</td><td>385</td><td>385</td><td>-</td><td>-</td><td>385</td></tr><tr><td>- 공사비<br>(420-03)</td><td>6,708</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감리비<br>(420-04)</td><td>252</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15</td><td>15</td><td>-</td><td>15</td><td>-</td><td>15</td><td>-</td></tr><tr><td>합 계</td><td>6,975</td><td>15</td><td>856</td><td>871</td><td>-</td><td>15</td><td>856</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대법원 인천지법<br>북부지원 신축<br>사업 집행 부진<br>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1331-619)</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계획현액의 91%를 이월하여 2024년도 집행이 부진함<br>[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td><td>-</td><td>357</td><td>357</td><td>243</td><td>-</td><td>114</td></tr>
<tr><td>- 공사비<br>(420-03)</td><td>5,167</td><td>5,167</td><td>-</td><td>5,167</td><td>124</td><td>5,043</td><td>-</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273</td><td>273</td><td>-</td><td>273</td><td>-</td><td>273</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td><td>-</td><td>46</td><td>46</td><td>14</td><td>-</td><td>32</td></tr>
<tr><td>합 계</td><td>5,440</td><td>5,440</td><td>403</td><td>5,843</td><td>381</td><td>5,316</td><td>14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대법원)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37</td><td rowspan="2">「국고금<br>관리법」<br>제20조를 위반한<br>비축토지매입<br>계약행위 시정<br>및 해외<br>비축토지매입을<br>위한<br>업무처리기준<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비축토지매입(2035-300)</td><td rowspan="2">시정</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경우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비축부동산 매입 계획액(799억 8,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1,141억 1,500만원)함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준수하지 못함<br>-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비축부동산 매입 계획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4년에 체결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및 '멕시코시티' 비축토지 건은 2024년에 일부만 지불되었고 차액은 2025년 계획액을 통하여 지불<br>*「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br>[2024년도 비축부동산 매입 상세 지출 내역]
<table>
<tr><th>건명</th><th>세목</th><th>지출금액(천원)</th><th>수령인</th></tr>
<tr><td>비축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지급(경기도 광주시 역동)</td><td>건설보상비</td><td>865,823</td><td>경기도시공사</td></tr>
<tr><td>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td><td>건설보상비</td><td>23,243,467</td><td>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td></tr>
<tr><td>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기도 부천시 원종동)</td><td>건설보상비</td><td>19,500,000</td><td>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td></tr>
<tr><td>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td><td>건설보상비</td><td>23,051,960</td><td>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주식회사</td></tr>
<tr><td>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td><td>건설보상비</td><td>9,667,533</td><td>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td></tr>
<tr><td>외교부 멕시코시티 비축부동산 매입</td><td>건설보상비</td><td>3,634,000</td><td>외교부</td></tr>
<tr><td>비축부동산 면적정산에 따른 정산금 납부</td><td>건설보상비</td><td>17,217</td><td>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td></tr>
<tr><td>2024년 비축부동산 매입에 따른 계약수수료 지급</td><td>시설부대비</td><td>15,673</td><td>조달청 징수관</td></tr>
<tr><td colspan="2">계</td><td>79,995,673</td><td></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계약연도와 잔금 지급연도가 상이한 비축토지 구매내역]
<table>
<tr><th>건명</th><th>매입연도</th><th>매입연도 지급액</th><th>차년도 지급액</th><th>총 매입금액</th></tr>
<tr><td>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td><td>2024년</td><td>23,051,960천원</td><td>2,902,540천원</td><td>25,954,500천원</td></tr>
<tr><td>멕시코시티</td><td>2024년</td><td>2,500,000USD</td><td>22,500,000USD</td><td>25,000,000USD</td></tr>
</table>
○ 현행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은 ① 국내·국외 구분 없이 적용되어 해외 비축부동산 후보지를 평가하기 부적절하고, ②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 절차가 불분명하며, ③ 해외 비축부동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미흡<br>
- ①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은 주요 평가요소로 최근 5년간 지역별 사용승인 비율, 지역별 수요·보유 비율, 행정구역 특성, 토지 매도자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외 부동산의 경우 국가 수도 등에 매입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고,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토지 매입 주체를 구분할 실익이 없음<br>
- ② 국내 비축부동산은 ‘조달청장의 매입 대상 부동산 평가 및 추천 목록 제출 → 총괄청의 매입 대상 부동산 우선순위 확정 → 총괄청의 매입’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해외 비축부동산은 조달청장이 매입 대상을 평가하고 추천하기 곤란<br>
- ③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외교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위탁규정만 두고 있음
</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비축토지매입 계약행위를 시정하고 해외 비축토지매입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2231-36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계획현액의 99%를 이월하여 해당 연도에 사업 집행이 부진함<br>[주호놀룰루(총) 청사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td><td>759</td><td>-</td><td>759</td><td>-</td><td>759</td><td>-</td></tr>
<tr><td>- 공사비<br>(420-03)</td><td>8,2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42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80</td><td>80</td><td>-</td><td>80</td><td>8</td><td>72</td><td>-</td></tr>
<tr><td>합 계</td><td>8,620</td><td>839</td><td>-</td><td>839</td><td>8</td><td>831</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외교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9</td><td rowspan="3">주세네갈대사관<br>관저 점유토지<br>취득 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주세네갈대사관 관저 점유토지 취득(2233-3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임에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국회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집행 부진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br>[주세네갈대사관 관저 점유토지 취득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건설보상비<br>(410-00)</td><td>-</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r><td>합 계</td><td>-</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외교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법무부 검찰청<br>기타시설 취득<br>사업 집행 부진<br>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2433-31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대검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 지연<br>[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공사비<br>(420-03)</td><td>1,100</td><td>11</td><td>-</td><td>11</td><td>-</td><td>-</td><td>11</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4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54</td><td>54</td><td>2</td><td>56</td><td>-</td><td>54</td><td>2</td></tr>
<tr><td>합 계</td><td>1,554</td><td>65</td><td>2</td><td>67</td><td>-</td><td>54</td><td>1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법무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1</td><td rowspan="3">법무부<br>화성여자교도소<br>신축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2434-43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동 사업은 주민반대 민원으로 2023년과 2024년 모두 집행되지 못함<br>[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공사비<br>(420-03)</td><td>5,0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26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18</td><td>18</td><td>13</td><td>31</td><td>-</td><td>18</td><td>13</td></tr>
<tr><td>합 계</td><td>5,278</td><td>18</td><td>13</td><td>31</td><td>-</td><td>18</td><td>1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법무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2</td><td rowspan="3">행정안전부<br>부산지방합동청사<br>신축 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2631-40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불용률이 99.9%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감리비 부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협의 기간 소요로 착공 지연<br>-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106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99.9%임<br>[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공사비<br>(420-03)</td><td>23,700</td><td>13,093</td><td>-</td><td>13,093</td><td>-</td><td>-</td><td>13,093</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1,014</td><td>1,014</td><td>-</td><td>1,014</td><td>-</td><td>-</td><td>1,014</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53</td><td>53</td><td>-</td><td>53</td><td>13</td><td>-</td><td>40</td></tr>
<tr><td>합 계</td><td>24,767</td><td>14,160</td><td>-</td><td>14,160</td><td>13</td><td>-</td><td>14,14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행정안전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3</td><td rowspan="3">국토교통부<br>철도특별사법<br>경찰대 청사<br>신축사업 불용<br>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사 신축(3431-30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률이 0.2%에 불과하여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청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낮게 나와 매입금액이 감소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매매계약 지연됨<br>○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억 4,3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45.7%임<br>[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사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건설보상비<br>(410-00)</td><td>4,844</td><td>4,844</td><td>-</td><td>4,844</td><td>10<br>[10]</td><td>2,500</td><td>2,334</td></tr>
<tr><td>- 기본조사설계비<br>(410-01)</td><td>260</td><td>260</td><td>-</td><td>260</td><td>-</td><td>260</td><td>-</td></tr>
<tr><td>- 실시설계비<br>(410-0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5,104</td><td>5,104</td><td>-</td><td>5,104</td><td>10</td><td>2,760</td><td>2,33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국토교통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4</td><td rowspan="3">국세청<br>강동세무서 청사<br>신축 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4531-547)</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예산 현액이 전액 불용되어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공사비<br>(420-03)</td><td>6,679</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45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15</td><td>15</td><td>-</td><td>15</td><td>-</td><td>-</td><td>15</td></tr>
<tr><td>합 계</td><td>7,146</td><td>15</td><td>-</td><td>15</td><td>-</td><td>-</td><td>1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국세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5</td><td rowspan="3">경찰청<br>용산경찰서 신축<br>사업 집행 부진<br>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용산경찰서 신축(5131-17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br>- 경찰청의 관련 성과지표 상으로도 달성도가 55.6%(2023년 기준)에 불과함<br>[경찰청 용산경찰서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10</td><td>10</td><td>-</td><td>10</td><td>-</td><td>-</td><td>10</td></tr>
<tr><td>합 계</td><td>10</td><td>10</td><td>-</td><td>10</td><td>-</td><td>-</td><td>1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6</td><td rowspan="3">경찰청<br>부산해운대<br>경찰서 신축<br>사업 집행 부진<br>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부산해운대 경찰서 신축(5131-418)</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성과지표 달성도는 3.9%에 불과하며, 2023년도의 경우도 24.8%에 불과함<br>- 성과지표 목표 산출 근거: 최근 3년('21～'23) 평균 집행실적(59.6%)<br>[경찰청 부산해운대 경찰서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381</td><td>381</td><td>-</td><td>381</td><td>-</td><td>381</td><td>-</td></tr>
<tr><td>- 공사비<br>(420-03)</td><td>2,0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15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12</td><td>9</td><td>-</td><td>9</td><td>9</td><td>-</td><td>-</td></tr>
<tr><td>합 계</td><td>2,543</td><td>390</td><td>-</td><td>390</td><td>9</td><td>381</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경찰청<br>혜화경찰서 신축<br>사업 집행 부진<br>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혜화경찰서 신축(5131-42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성과지표 달성도는 34.9%에 불과함<br>[경찰청 혜화경찰서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br>(420-01)</td><td>21</td><td>21</td><td>-</td><td>21</td><td>21</td><td>-</td><td>-</td></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563</td><td>563</td><td>2</td><td>565</td><td>481</td><td>84</td><td>-</td></tr>
<tr><td>- 공사비<br>(420-03)</td><td>1,000</td><td>1,000</td><td>-</td><td>1,000</td><td>-</td><td>1,000</td><td>-</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100</td><td>100</td><td>-</td><td>100</td><td>-</td><td>100</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15</td><td>15</td><td>-</td><td>15</td><td>5</td><td>-</td><td>10</td></tr>
<tr><td>합 계</td><td>1,699</td><td>1,699</td><td>2</td><td>1,701</td><td>507</td><td>1,184</td><td>1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8</td><td rowspan="3">경찰청 경기남부<br>수원남부경찰서<br>재건축 사업<br>집행 부진 시정<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5131-436)</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br>[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759</td><td>-</td><td>4</td><td>4</td><td>-</td><td>-</td><td>4</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5</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r><td>합 계</td><td>764</td><td>5</td><td>4</td><td>9</td><td>-</td><td>-</td><td>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9</td><td rowspan="3">경찰청 부산<br>사하경찰서<br>신축 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5131-45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공정 순연<br>[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br>(420-01)</td><td>346</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9</td><td>9</td><td>-</td><td>9</td><td>-</td><td>-</td><td>5</td></tr>
<tr><td>합 계</td><td>355</td><td>9</td><td>-</td><td>9</td><td>-</td><td>-</td><td>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경찰청 서울<br>동작경찰서<br>재건축 사업<br>집행 부진 시정<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5131-452)</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br>[경찰청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건설보상<br>(410-00)</td><td>500</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r><td>- 기본설계비<br>(420-01)</td><td>74</td><td>74</td><td>-</td><td>74</td><td>-</td><td>-</td><td>74</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575</td><td>79</td><td>-</td><td>79</td><td>-</td><td>-</td><td>7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colspan="2">○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경찰청 강원<br>철원경찰서 이전<br>신축 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강원 철원경찰서 이전 신축(5131-45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사업부지 확보 및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체결 기간 소요<br>[경찰청 강원 철원경찰서 이전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br>(420-01)</td><td>143</td><td>143</td><td>-</td><td>143</td><td>-</td><td>143</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1</td><td>1</td><td>-</td><td>1</td><td>-</td><td>1</td><td>-</td></tr>
<tr><td>합 계</td><td>144</td><td>144</td><td>-</td><td>144</td><td>-</td><td>144</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2</td><td rowspan="3">경찰청<br>서울중부경찰서<br>신축 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5131-7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사업부지 확보 및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로 공정 순연<br>[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538</td><td>538</td><td>-</td><td>538</td><td>-</td><td>419</td><td>119</td></tr>
<tr><td>- 공사비<br>(420-03)</td><td>1,0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7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10</td><td>5</td><td>-</td><td>5</td><td>-</td><td>-</td><td>5</td></tr>
<tr><td>합 계</td><td>1,618</td><td>543</td><td>-</td><td>543</td><td>-</td><td>419</td><td>12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경찰청<br>인천영종경찰서<br>신축 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5131-813)</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br>[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156</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3</td><td>3</td><td>-</td><td>5</td><td>-</td><td>-</td><td>3</td></tr>
<tr><td>합 계</td><td>159</td><td>3</td><td>-</td><td>3</td><td>-</td><td>-</td><td>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4</td><td rowspan="3">경찰청 경기<br>평택경찰서 신축<br>사업 집행 부진<br>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경기 평택경찰서 신축(5131-816)</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br>[경찰청 경기 평택경찰서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br>(420-01)</td><td>162</td><td>162</td><td>-</td><td>162</td><td>-</td><td>162</td><td>-</td></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412</td><td>412</td><td>-</td><td>412</td><td>-</td><td>412</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3</td><td>3</td><td>-</td><td>3</td><td>-</td><td>-</td><td>3</td></tr>
<tr><td>합 계</td><td>577</td><td>577</td><td>-</td><td>577</td><td>-</td><td>574</td><td>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5</td><td rowspan="3">경찰청<br>서울서초경찰서<br>신축 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신축(5131-82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br>[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br>(420-01)</td><td>87</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541</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8</td><td>4</td><td>-</td><td>4</td><td>-</td><td>-</td><td>4</td></tr>
<tr><td>합 계</td><td>636</td><td>4</td><td>-</td><td>4</td><td>-</td><td>-</td><td>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6</td><td rowspan="3">경찰청<br>서울양천경찰서<br>신축사업 집행<br>부진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서울양천경찰서 신축(5131-825)</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br>[경찰청 서울양천경찰서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설계비<br>(420-01)</td><td>400</td><td>-</td><td>163</td><td>163</td><td>-</td><td>-</td><td>163</td></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54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8</td><td>8</td><td>-</td><td>8</td><td>-</td><td>-</td><td>8</td></tr>
<tr><td>합 계</td><td>950</td><td>8</td><td>163</td><td>171</td><td>-</td><td>-</td><td>17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7 | **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사업 집행 부진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유재산관리기금 - 경찰청 기타시설 취득(5133-300)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포항북부서 어린이집 신축'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해양경찰청<br>훈련시설 취득<br>사업 집행 부진<br>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6031-33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인 ‘제주해양종합훈련시설 신축’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동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도가 56.6%(2024년 기준)에 불과함<br>- 성과지표 목표 산출 근거: 최근 3년('21～'23) 평균 집행실적(67.1%)<br>[제주해양종합훈련시설 신축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실시설계비<br>(420-0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공사비<br>(420-03)</td><td>-</td><td>-</td><td>209</td><td>209</td><td>-</td><td>-</td><td>209</td></tr>
<tr><td>- 감리비<br>(420-04)</td><td>6,023</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시설부대비<br>(420-05)</td><td>50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6,523</td><td>-</td><td>209</td><td>209</td><td>-</td><td>-</td><td>20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해양경찰청)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9</td><td rowspan="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는 공사계약 체결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6033-30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해양경찰청은 ‘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에서 예산확보를 상정하고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고,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br>- 동 사업의 2차수 계약 체결일(2024.12.20.)은 국회의 2025년도 예산 의결·확정일(2024.12.10.)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양경찰청은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 규모가 18억 9,800만원(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에 불과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규모를 초과한 2차수 계약(66억 4,500만원)을 체결<br>*「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br>*「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br>[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계약 현황]<br>(단위: 백만원)<br>총차계약 (총공사금액: 7,727) → 1차수 계약 (총공사금액: 7,727 / 1차수 계약금액: 1,900) → 1차수 변경계약 (총공사금액: 8,234 / 1차수 계약금액: 1,589) → 2차수 계약 (총공사금액: 8,234 / 2차수 계약금액: 6,645) → 2차수 변경계약 (총공사금액: 8,234 / 2차수 계약금액: 1,540)</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해양경찰청)이 「국가계약법」 및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중랑구 노후<br>공공청사<br>복합개발 사업<br>집행 부진 시정<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6931-36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조사설계비<br>(420-01)</td><td>332</td><td>32</td><td>-</td><td>32</td><td>-</td><td>-</td><td>3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유관 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r><td rowspan="3">61</td><td rowspan="3">동대구지구대<br>복합개발 사업<br>집행 부진 시정<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국유재산관리기금 - 동대구지구대 복합개발(6931-420)</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4년도 집행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됨<br>- 집행 부진 사유: 유관기관 협의 지연<br>[동대구지구대 복합개발 결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br>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다음연<br>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th></tr>
<tr><td>- 기본조사설계비<br>(420-01)</td><td>113</td><td>113</td><td>-</td><td>113</td><td>-</td><td>-</td><td>11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소관 기관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유관 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향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2 | **편성 내역에 부합되지 않은 자산취득 시정 및 위탁기관 자체계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환급 필요** | 관련사업명 | 국유재산관리기금 - 정책연수원 신축(6933-100) | 시정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4억 200만원)는 당초 계획과 무관한 자산취득에 집행<br>-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규정<br>- 당초 취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래방 시설(노래방 테이블1·2·3, 노래방 인포의자, 반주기(TV60'포함)) 및 당구장 시설(당구장 의자, 당구장 테이블, 당구대)에 자산취득비 집행<br>○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계정의 재원을 통해 임시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위반<br>-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4억 200만원)가 당초 계획과 무관한 자산취득에 사용됨에 따라, 예약시스템 구축을 연수원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계정으로 지출한 임시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비용(4,876만원)을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3</td><td rowspan="3">당초 계획액<br>편성시 대규모<br>계획액 누락<br>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9130-9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기타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br><br>○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액 편성시 일부 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총 9,870억원)을 누락한 문제 발생<br><br>- 기획재정부는 방폐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4,2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5,670억원을 누락하고 당초 계획액을 편성<br><br>[2024년도 방폐기금 · 주택도시기금 원금상환액 누락 현황]<br><br>(단위: 백만원)<br><table><tr><th>기금명</th><th>예수일</th><th>상환일</th><th>당초 계획(a)</th><th>실제(b)</th><th>누락분(b-a)</th></tr><tr><td rowspan="2">방폐기금</td><td colspan="2">2023년 원금상환액을<br>2024년 원금상환액으로 혼동</td><td>2,880,000</td><td>3,300,000</td><td>420,000</td></tr><tr><td>2023.12.8</td><td>2024.12.9</td><td>-</td><td>67,000</td><td>67,000</td></tr><tr><td>주택도시기금</td><td>2022.12.28</td><td>2024.1.29</td><td>-</td><td>500,000</td><td>500,000</td></tr><tr><td colspan="3">합계</td><td>2,880,000</td><td>3,867,000</td><td>987,000</td></tr></table><br>○ 공자기금 지출계획은 타 기금의 수입 계획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계획액 편성에서 대규모 누락분이 발생한 것은 국가 기금운용계획 편성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 문제</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내부거래와 관련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편성함으로써 기금 간 내부거래에서의 대규모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br><br>○ 기획재정부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예수원금 상환소요 과소계상 등 예산안 편성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부거래 상세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64</td><td rowspan="2">예수원금상환<br>만기연장으로<br>인한 국회 심의<br>우회 및<br>불필요한<br>이자부담 증가<br>부적절</td><td>관련사업명</td><td>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9130-910)</td><td rowspan="2">주의</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공자기금이 일부 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을 미상환하고 만기연장함<br>- 산재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1조 5,5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1조 1,100억원을 미상환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함<br>○ 이러한 만기연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결손 대응시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였다는 문제가 있음<br>- 산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원금을 미상환하고 만기연장한 것은 해당 금액을 상환 후 재예탁하는 경우 산재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자체변경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임<br>(단위: 억원, %)
<table>
<tr><th>기금명</th><th>프로그램<br>당초 계획액(a)</th><th>자체변경범위<br>(a × 0.2)</th><th>기존<br>자체변경액(b)</th><th>만기연장액<br>(c)</th><th>재예탁시<br>변경범위[(b+c)/a]</th></tr>
<tr><td>산재기금</td><td>33,000</td><td>6,600</td><td>0</td><td>15,501</td><td>47.0</td></tr>
<tr><td>주택도시기금</td><td>103,656</td><td>20,731</td><td>20,700</td><td>11,100</td><td>30.7</td></tr>
</table>
- 2023년도 결산 심사 시 공자기금 미상환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거치지 않은 재정운용이 정부 재량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가 채택되었음에도 또다시 위반</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특히 만기연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이자부담 231억원을 증가한 문제도 발생<br><br>(단위: 백만원)<br><table><tr><th rowspan="2">기금명</th><th rowspan="2">만기연장 금액</th><th colspan="3">이자율(%)</th><th rowspan="2">추가 이자 부담</th></tr><tr><th>만기연장(a)</th><th>재예수시(b)</th><th>차이(a-b)</th></tr><tr><td>산재기금</td><td>1,550,090</td><td>3.86</td><td>2.84</td><td>1.02</td><td>15,811</td></tr><tr><td>주택도시기금</td><td>1,110,000</td><td>3.50</td><td>2.84</td><td>0.66</td><td>7,326</td></tr><tr><td colspan="5">합계</td><td>23,137</td></tr></table>-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기금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br>-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와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공자기금에서 각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이자수입 및 이자 상환 운용 방식과도 부합하지 않음<br>- 특히 공자기금의 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 발생은 국채 발행량 증가로 귀결될 수 있음</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예수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5</td><td rowspan="3">내부거래<br>사업들의 사업<br>구조 개편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9130-9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현행 사업 구조로는 특별회계·기금 간 예수·예탁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 존재<br>- 동 사업의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구조만으로는 특별회계·기금 간 예수·예탁 내역을 파악할 수 없음<br>(단위: 백만원)
<table>
<tr><td>프로그램명</td><td>기금간거래(예탁금)</td><td>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td><td>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td></tr>
<tr><td>단위사업명</td><td>기타기금예탁</td><td>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td><td>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td></tr>
<tr><td>세부사업명</td><td>기타기금예탁</td><td>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td><td>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td></tr>
<tr><td>계획액</td><td>69,445,731</td><td>23,298,237</td><td>964,437</td></tr>
</table>
- 특히 국회에서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부적절<br>○ 내부거래들은 이미 내부거래 대상이 되는 회계·기금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각 특별회계·기금은 각각의 설치 목적이 있어 정책적 독립성이 존재한다는 점, 타 기금의 경우 세부사업에 내부거래 대상 회계나 기금명을 표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부사업 기준을 내부거래 대상이 되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 내부거래 사업들의 계획액을 보다 면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 내부거래 상세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6 |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계획 대비 미발행 부적절 및 과도한 계획액 편성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타경비(총괄계정)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에는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경비가 편성됨<br>- 해당 수수료는 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사무처리 수수료'와 판매대행기관인 증권사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로 구성<br>○ 동 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31억 8,400만원이나 불용액은 12억 5,500만원으로 불용률이 39.4%로 높음<br>- 기획재정부는 주된 불용 사유로 1/4분기 개인투자용국채 미발행을 사유로 밝힘<br>○ 그러나 분기별 발행 계획 대비 미발행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1/4분기 미발행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과도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을 분기별 발행 계획 기준으로 계획액을 편성하였으나 불용률이 과도하므로 향후 사업 집행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계획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7 | **재정정책국 소관 유사 사업의 통폐합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711-300)<br>일반회계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2712-301)<br>일반회계 - 재정건전성 관리강화(2712-302)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및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등 재정정책국 소관 사업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문제가 있음<br>-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함으로써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하고 국가재원을 보다 거시적·전략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임(재정정책총괄과 소관)<br>-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는 국가 재정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재정전략 시책 수립 및 제도 연구 추진,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지출요인 및 재정수요 도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부문 및 분야 도출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재정분석과, 재정제도과, 재정정책협력과 등 소관)<br>- ‘재정건전성 관리강화’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장기재정전망, 재정위험 분석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재정건전성과 소관)<br>○ 같은 부처 내 서로 다른 부서가 개별적으로 재정전략 또는 계획을 입안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통일성 및 일관성 없는 재정전략 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등의 사업을 통폐합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8</td><td rowspan="3">연례적 이월 방지 및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2712-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내역사업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로 구성됨<br>❍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체결하는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운영 관련 일반용역비가 매년 이월되는 문제가 있음<br>- 2022년~2024년 각각 1,500만원 편성, 300만원 이월<br>❍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의 정책연구비에서 연례적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2024년 동 사업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다수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계약건명</th><th>계약<br>금액</th><th>계약기간</th><th>계약상대방</th><th>계약<br>유형</th><th>프리즘<br>공개여부</th></tr>
<tr><td rowspan="3">2022</td><td>사회보험 재정추계 연구</td><td>30</td><td>’22 10.17.~’22.12 17.</td><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td>수의</td><td>공개</td></tr>
<tr><td>사회보장 공론조사</td><td>90</td><td>’22.12.13.~’23.6.30.</td><td>㈜엠브레인퍼블릭</td><td>수의</td><td>비공개</td></tr>
<tr><td>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td><td>90</td><td>’22.12.13.~’23.6.30.</td><td>한국개발연구원</td><td>수의</td><td>비공개</td></tr>
<tr><td rowspan="2">2023</td><td>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연구</td><td>30</td><td>‘23.2.16.~’23.9.30.</td><td>한국개발연구원</td><td>수의</td><td>비공개</td></tr>
<tr><td>주요국 장기재정전망 사례 분석</td><td>40</td><td>’23.12.13.~’24.4.30.</td><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td>수의</td><td>비공개</td></tr>
<tr><td>2024</td><td>주요국의 재정관리지표 연구</td><td>45</td><td>’24.8.13.~’24.12.20.</td><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td>수의</td><td>비공개</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9 | **재정데이터분석 센터의 데이터 분석·가공·활용 실적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2713-5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재정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방문하여 보안체계 속에서 분석·가공·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br>○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재정데이터의 분석·가공을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용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석·가공 실적이 전체 이용 실적의 3% 내외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br>- 2024년 기준 센터 이용실적 2,449건 중 데이터 분석·가공은 65건(2.7%)에 불과하며, 센터 운영이 교육 위주로 편중(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530건,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 1,854건)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재정데이터분석센터가 단순 교육 기능에 치중하지 않고 재정데이터 분석·가공·활용 실적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활용 사례 발굴, 홍보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 |
| 70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업의 적정 연구용역비 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2714-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국제기구 공동연구 용역을 위하여 2024년도에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한 1억 1,100만원을 편성(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억 3,100만원)하였으나, 이 중 7,2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은 불용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업 예산의 과·부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 연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연구용역비를 산정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1</td><td rowspan="3">국가재무제표<br>오류 해소 대책<br>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회계제도운영(26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회계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 155조원 수준임<br>- 반복되는 국가재무제표 오류로 기초 데이터의 신뢰 하락이 우려됨<br>[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연도별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br>(단위: 조원)
<table>
<tr><th>구분</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합계</th></tr>
<tr><td>전기오류<br>수정이익</td><td>5.9</td><td>2.8</td><td>9.0</td><td>7.5</td><td>3.7</td><td>6.4</td><td>5.0</td><td>2.6</td><td>3.3</td><td>2.7</td><td>40.3</td><td>1.0</td><td>1.4</td><td>91.6</td></tr>
<tr><td>전기오류<br>수정손실</td><td>6.7</td><td>1.6</td><td>4.6</td><td>4.4</td><td>3.6</td><td>9.5</td><td>3.8</td><td>4.3</td><td>5.6</td><td>1.9</td><td>13.3</td><td>3.0</td><td>2.0</td><td>64.3</td></tr>
<tr><td>합계</td><td>12.6</td><td>4.4</td><td>13.6</td><td>11.9</td><td>7.3</td><td>15.9</td><td>8.8</td><td>6.9</td><td>9.0</td><td>4.6</td><td>53.6</td><td>4.0</td><td>3.4</td><td>155.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가재무제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2 |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개선 및 공정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집행관리(2643-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재정사업 자율평가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산하기관 사업을 부당하게 '미흡'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br>-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아닌 '기관 소관 불일치' 등 성과 외적 요인을 근거로 저성과 판정을 내리고 있음<br>-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되는 부처별 예산 의무삭감분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됨<br>- 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성과 관리 책임성을 왜곡하는 문제를 초래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평가 관리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산하기관 사업이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3</td><td rowspan="3">재정집행관리<br>사업 수행의<br>효율성 · 효과성<br>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정집행관리(264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에서 유사·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br>- 2024년 주요 불용 사유: ① 예산성과금 사례집 등 인쇄비 절감, ②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 건수 감소, ③ 국외출장 미실시 등<br>[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의 최근 결산내역 및 2025년도 예산]<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br>등</th><th rowspan="2">예산<br>현액<br>(B)</th><th rowspan="2">집행액<br>(C)</th><th rowspan="2">집행률<br>(C/A)</th><th rowspan="2">집행률<br>(C/B)</th><th rowspan="2">다음년도<br>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1</td><td>278</td><td>278</td><td>21</td><td>-</td><td>299</td><td>263</td><td>94.6</td><td>88.0</td><td>-</td><td>36</td></tr>
<tr><td>2022</td><td>278</td><td>278</td><td>-</td><td>△50</td><td>228</td><td>176</td><td>63.4</td><td>77.4</td><td>12</td><td>40</td></tr>
<tr><td>2023</td><td>318</td><td>318</td><td>12</td><td>-</td><td>330</td><td>162</td><td>50.9</td><td>49.1</td><td>-</td><td>168</td></tr>
<tr><td>2024</td><td>278</td><td>278</td><td>-</td><td>-</td><td>278</td><td>200</td><td>71.9</td><td>71.9</td><td>-</td><td>78</td></tr>
<tr><td>2025</td><td>240</td><td>240</td><td>-</td><td>-</td><td>240</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집행관리 사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4 |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재정사업평가(2644-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8.)을 통해 기존에 재정사업 프로그램당 2~3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던 것을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 하에 관리 지표를 대폭 감축하여 전(全) 부처에 적용하였음<br>○ 그러나 2024년도 각 부처의 결산 자료 확인 결과, 무리한 성과지표 감축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단위·세부사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거나, 정량적·구체적 성과지표가 폐지되고 정성적·추상적 성과지표가 존속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br>- 공무원 업무 및 재정사업은 민간 기업과 같은 객관적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가 불명확하면 국민의 혈세 낭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정치·정무적 요소에 근거한 인사 평가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재정성과정보를 추가하는 등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 결과치를 측정하며, 활동 등 행위 실적이 아닌 행위의 결과 중심의 평가체계 마련 등을 검토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5</td><td rowspan="3">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제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2646-4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수행의 수요 예측이 미흡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br><br>[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실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예산액<br>(A)</th><th rowspan="2">이·전용</th><th rowspan="2">예산현액<br>(B)</th><th rowspan="2">집행액<br>(교부액)<br>(C)</th><th colspan="4">출연기관(KISTEP) 실집행내역</th></tr>
<tr><th>실집행액<br>(D)</th><th>불용액<br>(C-D)</th><th>집행률<br>(D/C)</th><th>예산편성 대비 실집행률(D/A)</th></tr>
<tr><td>2022</td><td>296</td><td>-</td><td>296</td><td>296</td><td>55</td><td>241</td><td>18.6</td><td>18.6</td></tr>
<tr><td>2023</td><td>281</td><td>△226</td><td>55</td><td>55</td><td>26</td><td>29</td><td>47.3</td><td>9.3</td></tr>
<tr><td>2024</td><td>274</td><td>-</td><td>274</td><td>121</td><td>118</td><td>3</td><td>97.5</td><td>43.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불용 및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6</td><td rowspan="3">공공기관 분류 기준 재검토 등 지정 제도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기관 유형은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 규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br>○ 현재는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 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부적절한 측면 존재<br>-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 기준이 상향(50명→300명)되면서 총수입액이나 자산 규모가 큼에도 정원 미달로 다수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br>(예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대한석탄공사)
<table>
<tr><th>기관명</th><th>부산항만공사</th><th>인천항만공사</th><th>사학연금공단</th><th>서민금융진흥원</th><th>대한석탄공사</th></tr>
<tr><td>총수입액(억원)</td><td>4,203</td><td>1,720</td><td>62,151</td><td>10,326</td><td>798</td></tr>
<tr><td>자산규모(억원)</td><td>78,489</td><td>36,370</td><td>269,486</td><td>51,984</td><td>8,568</td></tr>
<tr><td>비고</td><td colspan="5">공기업·준정부 기준: ①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②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r>
</table>
- 기타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도 제외되어 국회의 관리·감독도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유형 분류 시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77</td><td rowspan="2">공공기관 지정의<br>투명성 제고<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지정 기관은 총 201개<br>○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비공개하여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br>- 예시: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자회사<br>(단위: 백만원, 명)
<table>
<tr><th>기관명</th><th>모회사명</th><th>총수입액</th><th>자산규모</th><th>직원정원</th><th>지정 여부</th></tr>
<tr><td>산은캐피탈</td><td rowspan="4">한국산업은행</td><td>628,171</td><td>9,537,324</td><td>258</td><td>지정 유보</td></tr>
<tr><td>KDB인프라 자산운용</td><td>39,007</td><td>73,868</td><td>72</td><td>지정 유보</td></tr>
<tr><td>KDB비즈</td><td>26,710</td><td>7,551</td><td>579</td><td>지정 유보</td></tr>
<tr><td>KDB인베스트먼트</td><td>35,036</td><td>131,257</td><td>16</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시스템</td><td rowspan="10">중소기업은행</td><td>208,070</td><td>71,143</td><td>655</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신용정보(주)</td><td>31,799</td><td>40,012</td><td>122</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연금보험(주)</td><td>1,752,799</td><td>11,352,550</td><td>186</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자산운용(주)</td><td>23,485</td><td>86,463</td><td>61</td><td>지정 유보</td></tr>
<tr><td>IBK투자증권(주)</td><td>1,881,781</td><td>7,493,826</td><td>658</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캐피탈</td><td>669,330</td><td>11,036,496</td><td>265</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저축은행</td><td>111,075</td><td>1,737,380</td><td>136</td><td>지정 유보</td></tr>
<tr><td>㈜IBK서비스</td><td>70,366</td><td>20,032</td><td>2,058</td><td>지정 유보</td></tr>
<tr><td>㈜IBK벤처투자</td><td>2,546</td><td>95,678</td><td>13</td><td>지정 유보</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h>기관명</th><th>모회사명</th><th>총수입액</th><th>자산규모</th><th>직원정원</th><th>지정 여부</th></tr>
<tr><td>캠코선박운용(주)</td><td rowspan="3">한국자산관리공사</td><td>3,992</td><td>13,911</td><td>8</td><td>지정 유보</td></tr>
<tr><td>㈜캠코 시설관리</td><td>46,583</td><td>8,833</td><td>831</td><td>지정 유보</td></tr>
<tr><td>㈜캠코씨에스</td><td>6,583</td><td>2,014</td><td>135</td><td>지정 유보</td></tr>
<tr><td>예울FMC(주)</td><td rowspan="2">예금보험공사</td><td>3,406</td><td>920</td><td>74</td><td>지정 유보</td></tr>
<tr><td>서울보증보험</td><td>2,611,579</td><td>9,201,790</td><td>1,510</td><td>지정 유보</td></tr>
<tr><td>신보운영관리(주)</td><td>신용보증기금</td><td>9,175</td><td>2,556</td><td>287</td><td>지정 유보</td></tr>
<tr><td>에이치에프파트너스(주)</td><td>주택금융공사</td><td>12,253</td><td>5,545</td><td>242</td><td>지정 유보</td></tr>
</table>
주: 모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들 현황임<br>
-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의 경우 2010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캐피탈의 경우 2011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유 비공개<br>
- 모회사가 동일함에도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상이한 경우도 있으나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br>
(단위: 백만원, 명)
<table>
<tr><th>기관명</th><th>모회사명</th><th>총수입액</th><th>자산규모</th><th>직원정원</th><th>지정 여부</th></tr>
<tr><td>한국전력기술</td><td rowspan="7">한국전력공사</td><td>534,581</td><td>945,383</td><td>2,228</td><td>지정</td></tr>
<tr><td>한전KPS</td><td>1,634,908</td><td>1,675,775</td><td>6,669</td><td>지정</td></tr>
<tr><td>한전KDN</td><td>753,310</td><td>846,360</td><td>3,021</td><td>지정</td></tr>
<tr><td>한전원자력연료</td><td>328,688</td><td>1,060,367</td><td>1,163</td><td>지정</td></tr>
<tr><td>한전MCS</td><td>161,523</td><td>94,304</td><td>4,360</td><td>지정</td></tr>
<tr><td>한전FMS</td><td>107,078</td><td>16,410</td><td>2,110</td><td>지정 유보</td></tr>
<tr><td>한전CSC</td><td>48,501</td><td>17,430</td><td>994</td><td>지정 유보</td></tr>
<tr><td>한국가스기술공사</td><td>한국가스공사</td><td>412,307</td><td>226,115</td><td>2,358</td><td>지정</td></tr>
</table>
</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h>기관명</th><th>모회사명</th><th>총수입액</th><th>자산규모</th><th>직원정원</th><th>지정 여부</th></tr>
<tr><td>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td><td rowspan="2"></td><td>34,475</td><td>10,166</td><td>871</td><td>지정 유보</td></tr>
<tr><td>코가스보안관리</td><td>16,718</td><td>4,342</td><td>422</td><td>지정 유보</td></tr>
<tr><td>한국벤처투자</td><td rowspan="4">중소벤처기업<br>진흥공단</td><td>56,984</td><td>148,783</td><td>163</td><td>지정</td></tr>
<tr><td>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td><td>570,434</td><td>277,931</td><td>297</td><td>지정</td></tr>
<tr><td>중진공파트너스(주)</td><td>10,368.33</td><td>2,221</td><td>208</td><td>지정 유보</td></tr>
<tr><td>중소벤처기업인증원</td><td>2,975.67</td><td>3,827</td><td>20</td><td>지정 유보</td></tr>
<tr><td>한국도로공사서비스</td><td rowspan="2">한국도로공사</td><td>343,678</td><td>105,576</td><td>5,273</td><td>지정</td></tr>
<tr><td>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td><td>17,881</td><td>3,606</td><td>409</td><td>지정 유보</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과 공개 등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공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d></td><td></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8</td><td rowspan="3">과다한 수의계약<br>비율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에서 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수의계약 비율 과다<br>- 2024년 기준 13건 중 12건이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비율 과다<br><table><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연구용역 총 건수(a, 건)</td><td>10</td><td>12</td><td>15</td><td>14</td><td>13</td></tr><tr><td>수의계약 체결 건수(b, 건)</td><td>10</td><td>12</td><td>15</td><td>14</td><td>12</td></tr><tr><td>수의계약 비율(b/a, %)</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92</td></tr></table>○ 연구용역 중 ‘통합공시 점검용역’ 4건 등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도 부적절<br>- 기획재정부는 동 계약은 공공기관 운영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설명<br>- 그러나 동 계약은 회계법인 및 노무법인이 각각 수행하는 계약으로 해당 법인만이 동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가 부적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위반하는 문제 존재</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연구용역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9 |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 부적절**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을 추진**한 문제<br>- 기재부는 대통령 또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통령·부총리 일정상 추진이 어려워져 미추진<br>- 이에 따라 해당 예산 전액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연말에 신규로 개최<br>○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해당 행사는 연말에 필수로 개최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야기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추진 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신규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80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문료 과다 지급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자문료**가 타 위원회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br>- 기재부는 공운위 회의 개최 시 민간위원에게 참석수당(15만원)에 더하여 본회의 자문료 35만원을 별도로 매번 지급 중(총 50만원 지급)<br>- 그러나 2024년 14차 본회의 동안 **매번 참석 민간위원 전원에게 자문료를 전부 지급**하고 있으며,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만 있는 경우에도 자문료를 지급하여 자문료가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부적절<br>- 특히 이러한 자문료는 기재부 내 **타 위원회 자문료(10만원~15만원)에 비해 과다**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자문료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1 |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개선** | 관련사업명 | 외국환평형기금 - 기타이자상환(3171-797)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외평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기타이자상환」 사업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기금운용임<br>-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도록 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br>-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은 이자상환이라는 「기타이자상환」 사업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br>- 「기타이자상환」 사업은 전액 '차입금 이자(510-03)'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는 해당 비목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향후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위탁 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고 지출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2 | **외평기금 자산운용 위탁 수수료율에 대한 국회 보고** | 관련사업명 | 외국환평형기금 - 기타이자상환(3171-797)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비공개하고 있어,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외평기금 결산에 대한 국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br>- 2024년 말 기준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은 4.58%로, 운용수익 합계는 939억 달러이고 한국투자공사의 누적 수수료 수익 합계는 28.47억 달러(3조 3,704억원)임<br>- 한국투자공사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대부분의 연도에 걸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향후 기관 운영비에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인건비도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수수료 수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br>※ 한국투자공사는 2020년·2021년·2022년·2024년에 당기순이익의 10~30%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총 인건비도 2020년 355.9억원에서 2024년 475.1억원으로 33.5% 증가했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 지급하는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등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수료율을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3</td><td rowspan="3">기타이자상환<br>사업에 대한<br>자료 제공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외국환평형기금 - 기타이자상환(3171-79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근거 및 집행 결과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문제가 있음<br>- 불용률은 2021년 34.6%, 2022년 0.5%, 2023년 40.6%, 2024년 29.4%를 기록함<br>[최근 4년 간 기타이자상환 사업 결산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계획현액 (B)</th><th rowspan="2">집행액 (C)</th><th rowspan="2">집행률 (C/A)</th><th rowspan="2">집행률 (C/B)</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2021</td><td>482,897</td><td>482,897</td><td>-</td><td>482,897</td><td>315,604</td><td>65.4</td><td>65.4</td><td>167,293</td></tr>
<tr><td>2022</td><td>363,944</td><td>372,715</td><td>-</td><td>372,715</td><td>370,691</td><td>99.5</td><td>99.5</td><td>2,024</td></tr>
<tr><td>2023</td><td>373,407</td><td>373,407</td><td>-</td><td>373,407</td><td>221,930</td><td>59.4</td><td>59.4</td><td>151,477</td></tr>
<tr><td>2024</td><td>412,514</td><td>412,514</td><td>-</td><td>412,514</td><td>291,167</td><td>70.6</td><td>70.6</td><td>121,347</td></tr>
</table>
- 그런데 연도별 불용 사유와 불용률 변동 추이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 어려움<br>- 또한, 편성 및 집행 근거로 “파생거래지급이자”와 같은 모호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기타이자상환」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근거 및 집행 결과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4</td><td rowspan="3">한국수출입은행<br>특별계정 출자 시<br>잉여재원 고려</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323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부 출자 등으로 조성된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규모에 비해 특별계정 지원 실적이 저조한데, 신규대출 추진을 위해 출자를 받았음에도 대출실적이 부진하여 과다한 잉여재원이 남아있는 것은 부적절함<br>- 2023년 8월 이후 신규 대출 승인 실적이 전무하며, 특별계정 조성액 1조 3,125억원 중 대출 승인액이 9,022억원(소진률 68.7%)에 불과하여 잉여재원 규모가 4,103억원에 달하는 상황임<br>[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조성 및 지출 승인 현황]<br>(단위: 억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1단계</th><th colspan="3">2단계</th><th rowspan="2">합계</th></tr>
<tr><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rowspan="3">연도별<br>조성액</td><td>정부</td><td>2,300</td><td>1,600</td><td>1,100</td><td>250</td><td>-</td><td>1,000</td><td>6,250</td></tr>
<tr><td>수은</td><td>2,300</td><td>1,600</td><td>1,100</td><td>375</td><td>-</td><td>1,500</td><td>6,875</td></tr>
<tr><td>합계</td><td>4,600</td><td>3,200</td><td>2,200</td><td>625</td><td>-</td><td>2,500</td><td>13,125</td></tr>
<tr><td colspan="2">지출 승인액</td><td>5,131</td><td>-</td><td>-</td><td>3,481</td><td>410</td><td>-</td><td>9,02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향후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출자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할 때, 특별계정 잉여재원을 고려하여 출자액을 산정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5 | **한국수출입은행 계정 간 구분 명확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3236-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여유재원 운용수익이 특별계정에 귀속되지 않고 있어 계정별 운용성과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음<br>-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제2항에 따르면 특별계정은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br>- 그런데 현재 특별계정 이자수익 등이 일반계정으로 귀속되고 있어, 향후 특별계정 사업이 아닌 기관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 등에 활용 가능한 상황임<br>※ 특별계정 누적 이자수익(2025년 6월 기준): 131억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여유재원 운용수익을 특별계정에 귀속시켜 계정 간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 | | |
| 86 | **지식협력 단지운영 사업의 성인지 결산서 상 기재오류 방지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식협력단지운영(3239-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운영 예산은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성평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성인지 결산서의 성평등 효과분석에는 예산현액 2억 9,200만원 전액이 여성 사업대상자 12,568명에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오류가 있음<br>- 담당 부서는 데이터 입력 담당자의 경험 부족으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입장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성인지 결산서 상의 기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체계 상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7</td><td rowspan="3">고용휴직제도<br>운영의 투명성<br>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금융기구 출연(313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기획재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자체 고용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권고하는 바와 달리 휴직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등 고용휴직제도의 운영이 미흡함<br>- 자체 고용휴직의 경우, 고용휴직자는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br>- 또한, 소속 장관은 고용휴직자가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여야 하고,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br>-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공무원이 자체 고용휴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휴직자가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실적과 고용휴직자의 휴직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실적이 전무함<br>※ 2024년 말 기준 자체 고용휴직 인원은 25명, 인사혁신처 통합 고용휴직인원은 19명<br>[기획재정부 2024년 국제금융기구 출연 및 자체 고용휴직 인원 현황]
<table>
<tr><th>국제금융기구</th><th>WB</th><th>IDB</th><th>IMF</th><th>EBRD</th><th>ADB</th><th>CABEI</th><th>AfDB</th></tr>
<tr><td>2024년 출연 실적(십억원)</td><td>144.5</td><td>13.4</td><td>38.5</td><td>70.7</td><td>49.4</td><td>11.9</td><td>15.6</td></tr>
<tr><td>2024년 자체 고용휴직자(명)</td><td>4</td><td>4</td><td>3</td><td>1</td><td>3</td><td>2</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향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휴직 공무원이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실무경험 등과 휴직결과보고서의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8 | **사업 선실시 후 형식적 컨설팅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 사업진행컨설팅(3376-302)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 중 'EDCF 외화금고 운영 및 자금시스템 고도화' 내역사업은 EDCF 계정이 외화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외화금고 신설 및 외화 직매입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을 위해 일반연구비 예산액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음<br>- 기획재정부는 이 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불용액이 1억 9,500만원으로 불용률이 66.3%에 달하여 과다한 문제가 있음<br>- 이는 EDCF 외화금고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에 앞서 외화금고 우선협상자를 먼저 지정하는 등 사업을 컨설팅 이전에 실시하여 컨설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 중 'EDCF 외화금고 운영 및 자금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시 제한적인 내용의 컨설팅을 형식적으로 편성하여 불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9 | **근로자 햇살론의 서민금융지원 기능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복권기금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6346-328)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근로자햇살론)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br>- '근로자 햇살론'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으로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하위 20%인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임<br>- 최근 5년간 신용등급별 지원실적을 보면, 중상위권 이상인 1~5등급*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고, 하위권인 6~10등급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비중은 점점 줄고 있음<br>* 동 신용등급은 일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등급이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체로 설계한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분류임<br>- 동 기간 소득구간별 공급금액 비중 추세도 소득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대출 실적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대상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서민대출상품인 '근로자 햇살론'의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0 | **사업 계획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1331-306)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세부사업은 비목별로 예산 전용 및 조정이 과다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 불용률이 각각 31.8%와 26.1%로 사업 집행의 계획성이 미흡함<br>- 일반수용비 2억 2,500만원 중 6,500만원을 감액 조정 후 8,100만원을 불용하여 일반수용비의 과다 책정 및 집행 부진이 있으며, 정책연구비 예산현액 2,000만원에서 일반수용비로부터 2,000만원,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의 정책연구비로부터 3,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증액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의 예산 전용 및 세목조정이 과다하여 사업 집행의 계획성이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 | | |
| 91 |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1331-305)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사업성과로서 간담회·상담회·설명회 개최 건수, 1:1 수출수주기업 면담건수 등 활동상황만을 제시하고, 수출·수주관련 애로사항 처리·개선 결과, 수출·수주 계약 체결 건수 등 구체적인 업무 성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사업의 성과로서 수출·수주 관련 애로사항 처리·개선 결과 및 조사·연구 결과, 면담기업의 수출·수주 체결건수 등 업무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 |
| 92 | **사업예산 중 홍보성 비용 축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1331-305)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수출·수주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 신설되었으나, 사업 예산 중 지원단 홍보물 제작, 성과공유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홍보성 비용이 2억 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에 달하여 과도한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향후 홍보성 비용을 줄이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3 | **충실한 사무실 조성 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1331-305)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023년 출범 당시 무역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무실 조성 공사비로 3,4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출범 1년만인 2024년에 서울지방조달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추가적으로 사무실 조성 공사비로 5,100만원을 지출하였음<br>- 이는 당초 사무실 조성계획이 충실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중 비용으로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향후 사무실 조성시 이중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할 것 | | |
| 94 |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1431-301)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은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의 계획성이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br>- 운영비(210)는 예산현액 23억 3,500만원 중 4억 2,400만원의 불용(불용률 18.2%)이 발생하였고, 여비(220)는 예산현액 1억 6,200만원 중 9.700만원의 불용(불용률 59.9%)이 발생하였음<br>-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계엄선포 이후 정국을 고려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대규모 불용사유로 설명하나, 1개월의 예산집행 지연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의 계획성이 현저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불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5 | **국세수입 세수오차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국세수입 | 주의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최근 대규모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세수추계 오차 심화<br>-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약 61조원,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약 56조원, 31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발생<br>○ 과도한 세수오차 발생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이 적시에 수행되지 못해 목표한 재정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규모 세수결손 반복시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약화 우려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주의)<br>○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세수입 전망시점과 세입예산안 의결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할 것(제도개선)<br>○ 정부는 특히 수납률이 저조한 소득세-신고분, 관세, 종합부동산세의 수납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6</td><td rowspan="3">국세감면율<br>법정한도 준수<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총괄 - 국세수입</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악화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조세지출이 전망됨.<br>- 2023년과 2024년도의 경우 법정한도를 각각 1.5%p, 1.7%p 초과하였고, 2025년 또한 법정한도를 0.3%p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br>[연도별 국세감면 추이]<br>(단위: 조원, %)
<table>
<tr><th>구분</th><th>2023년 실적</th><th>2024년 잠정</th><th>2025년 전망</th></tr>
<tr><td>○ 국세감면액 (A)</td><td>69.8</td><td>71.4</td><td>78.0</td></tr>
<tr><td>○ 국세수입총액 (B)</td><td>370.4</td><td>364.4</td><td>412.2</td></tr>
<tr><td>○ 국세감면율 [A/(A+B)]</td><td>15.8</td><td>16.3</td><td>15.9</td></tr>
<tr><td>○ 국세감면율 법정한도</td><td>14.3</td><td>14.6</td><td>15.6</td></tr>
<tr><td>○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차이</td><td>△1.5</td><td>△1.7</td><td>△0.3</td></tr>
</table>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반복적 초과는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7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국세수입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연계분석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지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그러나, 현행의 조세지출예산서는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조세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관련 재정지출에 관한 정보는 병기되지 않고 있어 재정지출 사업과 연계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지출의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br>- 가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수혜자는 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로 구분되나, 조세지출예산서상에는 조세지출 실적이 총합계액만 표시되어 각 수혜자에게 얼마만큼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② 관련 재정지출에 관한 정보는 병기되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통합적으로 검토·심의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8 | **조세지출 수혜자 구분 및 귀착정보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국세수입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지급대상자가 명확히 지정되는 보조금과 달리 조세지출은 그 수혜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br>○ 현행의 조세지출 귀착정보는 수혜자 구분을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2개 계층으로만 분류하고 있고, 그 구분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이 아닌 “평균임금의 200%”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br>○ 조세지출의 불평등 개선 효과, 도입취지 부합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이 세부적으로 어느 계층에게 얼마만큼 귀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수혜자 구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귀착정보를 소득분위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9 | **조세지출 관리제도 강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총괄 - 국세수입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국세감면율 한도제, 예비타당성 평가제, 의무심층 평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br>- (국세감면율 한도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이전 국세감면액의 증가에 따라 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br>- (예비타당성 평가제) 연간 감면액 300억 이상 신규 조세특례 도입 시 외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수의 조세특례가 면제되고 있음(2021-2024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비율 75-88%).<br>- (의무심층 평가제) 일몰 도래 조세특례 중 연간 300억 이상 규모의 조세지출은 외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가 세법개정안으로 환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조세지출의 경우 환류 비중이 높지 아니함.<br>○ 또한, 국가 세입·세출결산서에 조세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 조세지출을 통한 정책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 및 의무심층 평가제 등 현행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직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을 최대한 조기에 제출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0</td><td rowspan="3">정책연구용역<br>수의계약 및<br>비공개 관행<br>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제조세협력(2131-301), 국내조세협력(2131-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세제실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현황<br>- 최근 5년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10건이고, 21건은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또는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br>○ 세제실 정책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현황<br>- 최근 5년간 34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2020년에 총 9건 중 5건(55.6%)이 비공개, 2021년에 총 9건 중 7건(77.8%)이 비공개, 2022년에 총 8건 중 7건(87.5%)이 비공개, 2023년에 총 2건 중 2건 모두 비공개, 2024년에는 총 6건 중 6건 모두 비공개<br>[ 최근 5년간 세제실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 사유 ]
<table>
<tr><th>구분</th><th>비공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th><th>건수</th></tr>
<tr><td>제9조제1항<br>제2호</td><td>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td><td>10</td></tr>
<tr><td>제9조제1항<br>제5호</td><td>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td><td>1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1</td><td rowspan="3">조세지출<br>성과관리 및<br>평가 사업의<br>목적에 부합하는<br>적절한 성과지표<br>설정과 평가<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의 성과지표 미설정<br>-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의 목적인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은 재정성과 평가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2023년까지 제시한 성과지표를 2024년부터 제외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측정산식<br>(또는 측정방법)</th></tr>
<tr><td rowspan="3">조세특례 평가<br>결과에 따른<br>제도개선<br>반영률(반영률)</td><td>목표</td><td>신규</td><td>60.0</td><td>78.5</td><td>-</td><td>-</td><td rowspan="3">정부세법개정안 內<br>제도개선사항 반영건수/<br>평가 결과 제도개선<br>권고 건수 * 100</td></tr>
<tr><td>실적</td><td>84.6</td><td>71.4</td><td>100</td><td>-</td><td>-</td></tr>
<tr><td>달성도</td><td>-</td><td>119.0</td><td>127.3</td><td>-</td><td>-</td></tr>
</table>
※ 평가단의 성과지표 제외 권고(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4년부터 제외됨<br>- 조세정책 프로그램(2100) 내 6개 세부사업* 중에서 '국제조세협력' 사업에서 'FTA 협상 등 전문가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전체를 대표할 성과지표로는 부적절<br>* 국제조세협력(2131-301),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2131-303), 관세협력기구 출연(2131-304),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 국내조세협력(2131-308), 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br>❍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방안 마련 필요<br>-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기재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합리적 조세지출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동 사업에 적절한 성과평가 지표 설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102</td><td rowspan="2">조세개혁추진단<br>운영 사업 유지<br>및 존속 타당성<br>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기획재정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예산 과다 불용<br>- 예산현액 7억 3,600만원 중 4억 4,800만원(60.9%)이 불용되었으며, 특히 운영비(210) 불용률은 63.5%, 여비(220)는 73.2%, 정책연구비(260)는 46.7%가 불용<br>- 또한, 일반연구비(260-01)는 1억 5,000만원 중 7,900만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7,100만원으로 불용률이 47.3%에 이르며, 일용임금(110-04)은 전액 미집행<br>[2024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br>(단위: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세사업 명</th><th colspan="9">2024년</th><th>2025년</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전년도<br>이월액</th><th>예산<br>현액</th><th>집행액<br>[실집<br>행액]</th><th>예산<br>현액</th><th>집행액<br>[실집<br>행액]</th><th>다음연도<br>이월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 조세개혁추진단 운영</td><td>736</td><td>736</td><td>50</td><td>786</td><td>259</td><td>736</td><td>209</td><td>79</td><td>448</td><td>273</td></tr>
<tr><td>- 일용임금(110-04)</td><td>34</td><td>34</td><td>-</td><td>34</td><td>-</td><td>34</td><td>-</td><td>-</td><td>34</td><td>-</td></tr>
<tr><td>- 일반수용비(210-01)</td><td>120</td><td>120</td><td>-</td><td>120</td><td>38</td><td>120</td><td>38</td><td>-</td><td>82</td><td>50</td></tr>
<tr><td>- 특근매식비(210-05)</td><td>11</td><td>11</td><td>-</td><td>11</td><td>3</td><td>11</td><td>3</td><td>-</td><td>8</td><td>3</td></tr>
<tr><td>- 임차료 (210-07)</td><td>15</td><td>15</td><td>-</td><td>15</td><td>6</td><td>15</td><td>6</td><td>-</td><td>9</td><td>4</td></tr>
<tr><td>- 일반용역비(210-14)</td><td>185</td><td>185</td><td>-</td><td>185</td><td>70</td><td>185</td><td>70</td><td>-</td><td>115</td><td>109</td></tr>
<tr><td>- 기타운영비(210-16)</td><td>6</td><td>6</td><td>-</td><td>6</td><td>6</td><td>6</td><td>6</td><td>-</td><td>-</td><td>2</td></tr>
<tr><td>- 국내여비(220-01)</td><td>18</td><td>18</td><td>-</td><td>18</td><td>9</td><td>18</td><td>9</td><td>-</td><td>9</td><td>10</td></tr>
<tr><td>- 국외업무여비(220-02)</td><td>53</td><td>53</td><td>-</td><td>53</td><td>10</td><td>53</td><td>10</td><td>-</td><td>43</td><td>-</td></tr>
<tr><td>- 사업추진비(240-01)</td><td>23</td><td>23</td><td>-</td><td>23</td><td>23</td><td>23</td><td>23</td><td>-</td><td>-</td><td>10</td></tr>
<tr><td>- 관서업무추진비(240-02)</td><td>14</td><td>14</td><td>-</td><td>14</td><td>14</td><td>14</td><td>14</td><td>-</td><td>-</td><td>10</td></tr>
<tr><td>- 일반연구비(260-01)</td><td>150</td><td>150</td><td>-</td><td>150</td><td>-</td><td>150</td><td>-</td><td>79</td><td>71</td><td>75</td></tr>
<tr><td>- 정책연구비(240-02)</td><td>100</td><td>100</td><td>50</td><td>150</td><td>80</td><td>100</td><td>30</td><td>-</td><td>70</td><td>-</td></tr>
<tr><td>- 고용부담금(320-09)</td><td>7</td><td>7</td><td>-</td><td>7</td><td>-</td><td>7</td><td>-</td><td>-</td><td>7</td><td>-</td></tr>
<tr><td>합 계</td><td>736</td><td>736</td><td>50</td><td>786</td><td>259</td><td>736</td><td>209</td><td>79</td><td>448</td><td>273</td></tr>
</table>
○ 실질적인 사업집행 부진으로 사업 유지·존속 여부 점검 필요<br>- 조세개혁추진단은 2023년 2월 신설되었고, 인력구성 및 조세개혁 관련 연구용역 추진 지연 등으로 과다한 집행부진 발생</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에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td><td></td><td></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3 | **부적정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7111-208),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7011-258) |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 | | 지적사항 | ○ 일반수용비(210-01목) 집행 시 정부구매카드 사용 원칙과 구체적 사유 기재를 준수하지 않고 경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br>- 업무 수행 및 회의 준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54건, 약 744만원을 집행<br>○ 특근매식비(210-05목)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적정 규모로 감액 필요<br>- 최근 5년간 특근매식비 불용액(집행률)은 2020년 2,900만원(75.8%), 2021년 2,600만원(76.3%), 2022년 4,500만원(60.3%), 2023년 7,300만원(39.7%), 2024년 9,700만원(19.8%)으로 연례적 부진<br>○ 특근매식비(210-05목)를 정규근무시간에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경비 집행 시 지급원칙을 준수하는 등 예산 집행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br>- 세제실 모든 부서에서 정규근무시간(9~18시)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집행시간 기준을 위반한 금액은 총 집행액 3,877만원 중 3,316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 |
| | | 시정요구사항 | ○ 기획재정부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정부구매카드 사용과 구체적 사유 기재 원칙을 준수하고, 매년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 특근매식비 예산을 예산안 편성 시 적정 규모로 감액할 것 | | |

# 나. 국세청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작 예산의 과다 편성 시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1131-300) | 주의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국세청이 발행하는 실물카드<br>-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전용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br>○ 국세청은 2024년 전용카드 10만장을 추가 제작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전용<br>- 이는 2024년 **소요량(28만 1,000장)보다 기보유량(56만 2,000장)이 더 많았기 때문**<br>○ 국세청은 2024년 전용카드 기보유량(56.2만장)이 최근 연간 소요량(20~30만장)에 비해 많음에도 **예산을 과다편성**한 문제가 있음<br>- 특히 2021년 전용카드 소요량은 33.3만장이며, 2022년 27.4만장, 2023년 23.7만장으로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전용카드 제작 예산 편성시 기보유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1131-300)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국세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설정하여 관리 중<br>- 2024년 성과목표치는 166조원이며, 실제 발급규모는 179.7조원으로 목표 초과달성<br>○ 그러나 이러한 성과목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추가 지정에 따른 사업자 증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낮게 설정**된 문제 존재<br>- 국세청은 성과목표치를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연평균을 고려하여 산정<br>- 그러나 2024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가 전년(112개)에 비해 13개 업종 추가 지정되어 125개로, 이는 2021년 77개 업종에 비해 업종 수 기준으로 약 62.3% 증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에 따른 발급액 증감 등을 고려하여 보다 높게 설정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조세범칙처분율<br>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사활동지원(21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세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조세범칙처분율’을 설정하여 관리 중<br>- 조세범칙처분율이란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자 중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의 범칙처분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한 비율을 의미<br>○ 2024년 조세범칙처분율은 85.1%로 성과목표(87.4%) 미달성 및 최근 5년간 가장 저조<br>[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처분율 현황]<br>(단위: 건, %)
<table>
<tr><th>연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범칙조사건수(a)</td><td>217</td><td>152</td><td>128</td><td>126</td><td>174</td></tr>
<tr><td>고발·통고처분 건수(b)</td><td>188</td><td>132</td><td>121</td><td>117</td><td>148</td></tr>
<tr><td>범칙처분율(b/a)</td><td>86.6</td><td>86.8</td><td>94.5</td><td>92.9</td><td>85.1</td></tr>
</table>
- 특히 성과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최근 5년간 2024년도가 유일<br>- 국세청은 모수가 작고 사건별 개별성이 강해 연도별 편차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br>○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자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므로, 처분율의 하락은 사전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br>○ 또한, 국세청이 조세범칙처분율을 유일한 성과지표로 설정한 만큼 처분율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조세범칙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금융거래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세범칙처분율의 연도별 편차를 최소화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체납규모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압류재산공매(2232-301)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체납 발생액과 누계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여 납세 형평성과 조세정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체납액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음<br>- 국세 체납 발생액은 2020년 19조 2,364억원에서 2024년 24조 2,112억원으로 4년 간 4조 9,748억원(증가율 25.9%) 증가하였음<br>- 국세 누계체납액은 2024년 110조 7,31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1년 99조 8,607억원 대비 10조 8,703억원 증가(증가율 10.9%)한 수준임<br>- '2024년 국제 세무행정 설문조사(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에 따른 2023년 기준 주요국의 조세 수입 대비 체납액 비율은 미국 7.75%·영국 5.43%·독일 3.12%·일본 1.26% 등인데, 우리나라는 7.90%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감치제도 적극 운영 등 체납자 제재를 강화하며, AI기술을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세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장비구매 예산 편성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압류재산공매(2232-301)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국세청은 사전에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바디캠의 사양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바디캠 단가가 과다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편성된 수량보다 과다한 수량이 구매된 문제가 있음<br>- 국세청은 예산안에 바디캠 단가를 973,400원으로 산정하고 수량을 115개로 산정하여 1억 1,200만원을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하였음<br>- 그런데 조달청 입찰 결과 구매 단가가 예산에 편성된 단가 대비 38.1% 수준(371,000원)인 제품으로 최종 낙찰되어 총 280개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되었던 수량 115개를 초과하는 물량(당초 계획 대비 243.4%)임<br>- 이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인 2024년 중 국세청이 보호장비 구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구매를 계획했던 제품의 사양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장비 구매 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고 현장 수요와 장비 사양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과다 단가 산정 및 당초 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수량 구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납세자보호<br>위원회 제도<br>개선 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의 내역사업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됨<br>- 본청의 경우 2020년(66건)→2024년(24건)으로 63.6% 감소,<br>지방국세청의 경우 2020년(103건)→2024년(57건)으로 44.7% 감소,<br>세무서의 경우 2020년(24건)→2024년(5건)으로 79.2% 감소<br>[2020~2024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적(세무조사 분야)] (단위: 건, 일)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4">본청</th><th colspan="4">지방국세청</th><th colspan="4">세무서</th></tr>
<tr><th>처리<br>건수</th><th>시정<br>건수</th><th>시정<br>불가<br>건수</th><th>평균<br>소요<br>일수</th><th>처리<br>건수</th><th>시정<br>건수</th><th>시정<br>불가<br>건수</th><th>평균<br>소요<br>일수</th><th>처리<br>건수</th><th>시정<br>건수</th><th>시정<br>불가<br>건수</th><th>평균<br>소요<br>일수</th></tr>
<tr><td>2020</td><td>66</td><td>13</td><td>53</td><td>18.0</td><td>103</td><td>27</td><td>76</td><td>15.4</td><td>24</td><td>6</td><td>18</td><td>18.0</td></tr>
<tr><td>2021</td><td>40</td><td>13</td><td>27</td><td>15.7</td><td>55</td><td>18</td><td>37</td><td>16.2</td><td>16</td><td>5</td><td>11</td><td>15.7</td></tr>
<tr><td>2022</td><td>29</td><td>3</td><td>26</td><td>18.1</td><td>62</td><td>21</td><td>41</td><td>15.1</td><td>7</td><td>2</td><td>5</td><td>14.6</td></tr>
<tr><td>2023</td><td>38</td><td>18</td><td>20</td><td>19.8</td><td>55</td><td>6</td><td>49</td><td>16.0</td><td>5</td><td>1</td><td>4</td><td>15.8</td></tr>
<tr><td>2024</td><td>24</td><td>12</td><td>12</td><td>19.3</td><td>57</td><td>14</td><td>43</td><td>15.9</td><td>5</td><td>-</td><td>5</td><td>17.4</td></tr>
</table>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서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성과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br>-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2014년 「국세기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및 심의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홍보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면밀히 관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적정규모의<br>청원심의회 예산<br>편성 및 사업<br>내실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의 내역사업인 '청원심의회 운영'은 편성 대비 집행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함<br>- 2023년과 2024년 모두 계획 대비 실제 청원심의회 개최가 저조하여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각각 1.8%, 3.6%임<br>○ 청원심의회 개최 실적 부족 및 제도 홍보 미흡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함<br>- 2025년부터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시작<br>[2023년 및 2024년 청원심의회 예산 집행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 편성내역</th><th colspan="2">집행 내역</th><th rowspan="2">집행률<br>(B/A)</th></tr>
<tr><th>계획횟수</th><th>금액<br>(A)</th><th>개최횟수</th><th>금액<br>(B)</th></tr>
<tr><td rowspan="3">2023</td><td>본 청</td><td>12회</td><td rowspan="3">181</td><td>2회</td><td rowspan="3">3.3</td><td rowspan="3">1.8%</td></tr>
<tr><td>지방청</td><td>84회</td><td>1회</td></tr>
<tr><td>세무서</td><td>666회</td><td>6회</td></tr>
<tr><td rowspan="3">2024</td><td>본 청</td><td>6회</td><td rowspan="3">39</td><td>0회</td><td rowspan="3">1.4</td><td rowspan="3">3.6%</td></tr>
<tr><td>지방청</td><td>21회</td><td>1회</td></tr>
<tr><td>세무서</td><td>133회</td><td>4회</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청원심의회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납세자에게 적극적·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비수도권 지역에<br>위탁인력 적극<br>배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3134-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세무서에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담·안내하기 위한 위탁인력을 배치하는 사업<br><br>○ 위탁인력 배치에 있어 수도권에 집중배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br><br>- 2023년도 결산 심사 당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금신고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의 시정요구 채택<br><br>- 2025년 6월 기준 지방청 배치 인력은 24.6%로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 존재<br><br>
<table>
<tr><th>연도</th><th>합계(명)</th><th>사업본부</th><th>서울청</th><th>중부청</th><th>인천청</th><th>대전청</th><th>광주청</th><th>대구청</th><th>부산청</th></tr>
<tr><td>2021</td><td>100</td><td>7</td><td>46</td><td>25</td><td>22</td><td>-</td><td>-</td><td>-</td><td>-</td></tr>
<tr><td>2022</td><td>100</td><td>7</td><td>45</td><td>27</td><td>21</td><td>-</td><td>-</td><td>-</td><td>-</td></tr>
<tr><td>2023</td><td>100</td><td>7</td><td>45</td><td>25</td><td>23</td><td>-</td><td>-</td><td>-</td><td>-</td></tr>
<tr><td>2024</td><td>120</td><td>7</td><td>42</td><td>27</td><td>24</td><td>4</td><td>4</td><td>4</td><td>8</td></tr>
<tr><td>2025.6.</td><td>130</td><td>7</td><td>41</td><td>27</td><td>23</td><td>6</td><td>6</td><td>6</td><td>14</td></tr>
</table>
<br>-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서별 민원량에 따라 위탁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였다고 설명함. 실제 서울청·중부청·인천청의 민원량은 각각 전체의 34.5%, 24.8%, 19.4%로 높은 비중<br><br>○ 그러나 민원량 외에도 납세인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탁인력을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할 필요<br><br>- 2024년 기준 납세인원은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이 각각 전체의 9.8%, 8.1%, 8.1%이나 위탁인력 배치 비중은 세 개청 모두 4.9%에 불과</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에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량이나 납세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에도 위탁인력을 적극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취업 후 학자금<br>의무상환비율<br>제고 및<br>청년층 부담<br>완화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3136-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2020년 이후 미상환 인원과 금액 및 비율, 평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환유예 인원·금액도 증가하고 있음<br>-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2024년 1,752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상환대상자로 분류됨<br>- 2020년 대비 2024년에 미상환인원(36,236명→54,241명), 미상환인원 비율(14.0%→16.5%), 미상환금액 비율(13.8%→17.3%)이 증가하였으며, 상환유예 대상인원(7,802명→14,091명) 및 금액(10,820백만원→23,284백만원)도 증가함<br>-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국가보증채무에 해당하여 보증채무 잔액 증가가 전망되는 여건에서 미상환 및 상환유예 관리 강화가 필요함<br>[ 2020년 이후 연도별 학자금 의무상환대상 상환실적 현황 ]<br>(단위: 명,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상환대상*</th><th colspan="2">상환실적</th><th colspan="3">미상환실적</th><th colspan="2">미상환비율(%)</th></tr>
<tr><th>인원</th><th>금액</th><th>인원</th><th>금액</th><th>인원</th><th>금액</th><th>평균<br>체납액</th><th>인원</th><th>금액</th></tr>
<tr><td>2020</td><td>259,219</td><td>309,492</td><td>222,983</td><td>266,841</td><td>36,236</td><td>42,651</td><td>1.18</td><td>14.0</td><td>13.8</td></tr>
<tr><td>2021</td><td>273,322</td><td>333,696</td><td>233,977</td><td>285,581</td><td>39,345</td><td>48,115</td><td>1.22</td><td>14.4</td><td>14.4</td></tr>
<tr><td>2022</td><td>291,830</td><td>356,886</td><td>247,614</td><td>301,696</td><td>44,216</td><td>55,190</td><td>1.25</td><td>15.2</td><td>15.5</td></tr>
<tr><td>2023</td><td>318,395</td><td>403,693</td><td>267,279</td><td>337,548</td><td>51,116</td><td>66,145</td><td>1.29</td><td>16.1</td><td>16.4</td></tr>
<tr><td>2024</td><td>328,539</td><td>427,469</td><td>274,298</td><td>353,435</td><td>54,241</td><td>74,034</td><td>1.36</td><td>16.5</td><td>17.3</td></tr>
</table>
* 전년도 미상환(체납) 포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자 및 상환유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환유예기간 만료 전 안내를 강화하며 필요시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상환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상환비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br>○ 국세청은 저소득 체납자를 구제하고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상환기준소득 상향 등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전액 불용이 지속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미흡함<br>- 2024년 신고 57건 중 익명신고가 16건(28.1%)으로 지급 불가 사례가 다수임<br>-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금액 기준 완화(2천만원→1천만원) 시행령 개정 미완료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1천만원~2천만원 구간사례도 없었음<br>- 위반대상자의 과태료가 납부·확정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지급요건이 엄격함<br>※「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br>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제보 요건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 건수를 늘리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검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재발 방지</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징세법무국 기본경비(7111-25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세청은 정보서비스(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이용하는 계약을 2024년 12월 10일에 체결하고 12월 20일에 사용료(1,980만원)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사업을 위한 경비를 2024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br>- 국세청이 2022년도 사업을 위한 사용료를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대신 2021년도 잔여 예산으로 집행한 이후, 연례적인 연말 선집행·차년도 사용이 반복되고 있음<br>[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사용료 현황]<br>(단위: 만원)
<table>
<tr><th>계약기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r>
<tr><td>사용료</td><td>1,980<br>(2021년 예산으로 집행)</td><td>990<br>(2022년 예산으로 집행)</td><td>1,980<br>(2023년 예산으로 집행)</td><td>1,980<br>(2024년 예산으로 집행)</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향후 세출 예산 집행 시 해당 연도 사업기간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관서운영경비 등 집행 주의**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자산과세국 기본경비(7111-257)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신고 가이드 영상 제작을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으나, ① '영상 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해야 하며, ② 단일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총 경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없음<br>- 국세청은 2024년 11월~12월 중 3개 영상제작업체에 총 4,533만 9,250원을 지급함<br>※ 관서운영경비 범위: 일반수용비로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등은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가능, 일반용역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불가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세금 신고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 시,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고,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일반적 지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청년인턴제도 운영 개선**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행정지원인력 운영(7138-304) | 제도개선 | 국세청 |
| | | 지적사항 | ○ 국세청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 운영이 미흡함<br>- 2024년 국세청 청년인턴의 중도퇴사 비율은 30.7%로 전년대비 6.0%p 증가했는데, 중도퇴사 사유에 대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아 성과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br>- 국세청이 2024년 7월~8월 사이에 실시한 청년인턴 워크숍에는 취업특강·취업 면접 및 자소서 등에 대한 교육과 퍼스널 컬러 진단·쿠키 베이킹 등 실제 직무경험을 쌓는 것과 무관한 다수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br>- 국세청은 청년인턴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청년인턴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국세청은 청년인턴 중도퇴사 사유를 조사하여 청년인턴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함으로써 중도퇴사 관리를 강화하고, 채용경쟁률·중도퇴사율·수료율·인턴수행 만족도 등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할 것<br>○ 국세청은 청년인턴 교육·워크숍을 직무와 무관한 프로그램이 아닌 문서 작성 및 보고 요령 등 직무 관련 교육과 실무체험(OJT)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견학과 가상 세무서 실습 등을 통해 청년인턴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며, 청년인턴의 본·지방청 정책부서 배치 등을 통해 청년인턴의 업무를 단순 잡무가 아닌 사업 취지에 맞는 업무로 설계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4</td><td rowspan="3">과태료 수납률<br>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태료(56-56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태료의 2024년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1.5%(수납액 330억 3,400만원/징수결정액 1,539억 6,000만원)로 저조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br>[2024회계연도 과태료 결산]<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8">2024</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이체등<br>증감액</th><th>예산<br>현액(B)</th><th>징수<br>결정액(C)</th><th>수납액<br>(D)</th><th>미수납액</th><th>불납<br>결손액</th></tr>
<tr><td>본예산</td><td>추경(A)</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과태료</td><td>34,692</td><td>34,692</td><td>-</td><td>34,692</td><td>153,960</td><td>33,034</td><td>97,071</td><td>23,85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과태료의 저조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징계부가금<br>수납률 제고 및<br>징계 결정<br>대상자에 대한<br>사후관리 철저</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징계부가금(56-56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징계부가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4년 기준 2.2%(수납액 600만원/징수결정액 2억 7,900만원)로 저조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br>- 2023년 징수결정된 1억 6,3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고, 2024년 2억 7,900만원은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국세청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그 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임<br>[2024회계연도 징계부가금 결산]<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8">2024</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이체등<br>증감액</th><th>예산<br>현액(B)</th><th>징수<br>결정액(C)</th><th>수납액<br>(D)</th><th>미수납액</th><th>불납<br>결손액</th></tr>
<tr><td>본예산</td><td>추경(A)</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징계부가금</td><td>20</td><td>20</td><td>-</td><td>20</td><td>279</td><td>6</td><td>273</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징계부가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변상금 수납률 제고 및 변상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변상금(57-57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변상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4년 기준 1.1%(수납액 1,700만원/징수결정액 14억 9,100만원)로 저조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br>- 국세청이 징수결정된 변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성실하게 추징하지 않아 불납결손된 것인데, 이는 국세청이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회계직 공무원의 국고금 횡령과 사후관리에 있어 부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임<br>[2024회계연도 변상금 결산]<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8">2024</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이체등</th><th>예산</th><th>징수</th><th>수납액</th><th rowspan="2">미수납액</th><th>불납</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h>증감액</th><th>현액(B)</th><th>결정액(C)</th><th>(D)</th><th>결손액</th></tr>
<tr><td>변상금</td><td>3</td><td>3</td><td>-</td><td>3</td><td>1,491</td><td>17</td><td>9</td><td>1,465</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변상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변상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가산금 수납률<br>제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가산금(58-58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24년 기준 5.6%(수납액 2,414억 1,300만원/징수결정액 4조 3,236억 8,500만원)로 저조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br>[2024회계연도 가산금 결산]<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8">2024</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이체등<br>증감액</th><th>예산<br>현액(B)</th><th>징수<br>결정액(C)</th><th>수납액<br>(D)</th><th>미수납액</th><th>불납<br>결손액</th></tr>
<tr><th></th><th>본예산</th><th>추경(A)</th><th></th><th></th><th></th><th></th><th></th><th></th></tr>
<tr><td>가산금</td><td>243,567</td><td>243,567</td><td>-</td><td>243,567</td><td>4,323,685</td><td>241,413</td><td>3,871,873</td><td>210,39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세청은 가산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다. 관세청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저조한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과태료 (56-563)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20년 130억 6,400만원에서 2024년 839억 6,200만원으로 5년간 542.7% 증가했으나, 과태료 수납률은 2015년 72.9%에서 2024년 13.9% 수준으로 감소함<br>- 대부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인데, 해당 과태료 징수내역은 2015년 71.3%에서 2024년에는 11.0%로 60.3%p 급감함<br>- 가상자산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위규자가 자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잠적하고 있기 때문<br>○ 과태료 수납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과태료를 성실 납부한 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br>○ 2020, 2021,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TF 구성을 통해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과중한 징수·체납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태료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과징금 수납률<br>개선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징금(56-56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과징금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 등 의무위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위반,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징수하여 수납하는 항목임<br>○ 과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4년도 기준 49.1%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br>- 49.1% 정도의 낮은 수납률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br>[관세청 과징금 결산 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6">2024</th><th>2025</th></tr>
<tr><th>본예산(A)</th><th>징수<br>결정액(B)</th><th>수납액<br>(C)</th><th>미수납액</th><th>불납<br>결손액</th><th>수납률<br>(C/B)</th><th>예산액</th></tr>
<tr><td>과징금</td><td>2,857</td><td>7,233</td><td>3,553</td><td>3,635</td><td>45</td><td>49.1</td><td>7,233</td></tr>
</table>
○ 2020, 2021,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저조한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가산금 수납률<br>개선방안 마련<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가산금(58-58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가산금 항목은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기본가산금과,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0.75%씩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을 각각 징수하여 수납하는 항목임<br>○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4년도 기준 △0.4%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br>- △0.4% 정도의 낮은 수납률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함<br><br>[관세청 가산금 결산 내역]<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목명</th><th colspan="6">2024</th><th>2025</th></tr>
<tr><th>본예산(A)</th><th>징수<br>결정액(B)</th><th>수납액<br>(C)</th><th>미수납액</th><th>불납<br>결손액</th><th>수납률<br>(C/B)</th><th>예산액</th></tr>
<tr><td>가산금</td><td>1,319</td><td>633,708</td><td>△2,763</td><td>631,466</td><td>5,004</td><td>△0.4</td><td>1,042</td></tr>
</table>
○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가산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적정 수준의<br>면허료 및<br>수수료 예산<br>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고, 특히, 2024년에는 큰 폭(844억 8,300만원, 본예산 대비 83.6%)의 오차가 발생하였음.<br><br>[최근 5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현황]<br><br>(단위: 백만원, %)<br><table><tr><th>연도</th><th>본예산<br>(A)</th><th>징수<br>결정액(B)</th><th>수납액<br>(C)</th><th>과다 편성액<br>(A-C)</th><th>수납률<br>(C/A)</th></tr><tr><td>2020</td><td>122,158</td><td>78,428</td><td>78,410</td><td>43,748</td><td>64.2</td></tr><tr><td>2021</td><td>58,595</td><td>24,650</td><td>24,633</td><td>33,962</td><td>42.0</td></tr><tr><td>2022</td><td>25,330</td><td>36,949</td><td>36,926</td><td>-11,596</td><td>145.8</td></tr><tr><td>2023</td><td>74,913</td><td>51,560</td><td>51,539</td><td>23,374</td><td>68.8</td></tr><tr><td>2024</td><td>101,020</td><td>16,584</td><td>16,537</td><td>84,483</td><td>16.4</td></tr></table>○ 이는 면허료·수수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보세판매장 업계의 매출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점, 코로나19에 따른 특허수수료 감면조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기인함.<br><br>○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은 정부의 예산안 추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편성 시 보세판매장 업계의 매출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허수수료 감면조치 등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체화물품의 적극적 공매를 통한 관련 예산 집행 효율화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1131-301)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관세청의 체화물품 처리 과정에서 공매 실적이 저조하고 체화물품의 대부분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관세 및 제세 수입이 감소하고 폐기비용만 증가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br>- 2024년 기준 전체 체화물품의 95% 이상이 폐기 등 기타처리 되었고 실제 공매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br>-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 가능한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공매 사례는 극히 드묾<br>- 공매 관련 홍보 부족으로 공매 참여도 특정 소수에 집중됨 (최근 5년간 세관 공매 전자입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인원은 394명에 불과)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체화물품의 불필요한 폐기를 최소화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해 일실된 관세 및 제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매각·공탁을 추진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11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해외직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발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매년 폭증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위해식품·의약품 등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물품과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br><br>[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주요 적발 현황 ]<br>(단위: 건)<br>
<table>
<tr><th>구분</th><th>세관장1)<br>확인대상</th><th>지재권 침해</th><th>사회안전2)<br>위해물품</th><th>기 타3)</th><th>합 계</th></tr>
<tr><td>2020년</td><td>61,768</td><td>44,742</td><td>3,416</td><td>115,761</td><td>225,687</td></tr>
<tr><td>2021년</td><td>56,408</td><td>34,624</td><td>4,483</td><td>144,658</td><td>240,173</td></tr>
<tr><td>2022년</td><td>80,989</td><td>62,326</td><td>8,011</td><td>142,213</td><td>293,539</td></tr>
<tr><td>2023년</td><td>90,563</td><td>67,749</td><td>7,557</td><td>94,182</td><td>260,051</td></tr>
<tr><td>2024년</td><td>174,659</td><td>84,625</td><td>9,388</td><td>170,878</td><td>439,550</td></tr>
</table>
1) 검역, 위해 식·의약품, 수입요건 미비 등, 2) 모의총포·도검류 등, 3) 품명·수하인 상이, 저가신고 등<br><br>○ 현재 관세청의 해외직구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대응은 인력·예산의 부족으로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검사의 확대, 통관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 시행, 유관 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위해물품의 반입 증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AEO공인업체 위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관세탈루심사 (1231-300)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심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임<br>- AEO 공인업체로 공인되면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수혜를 받음<br>○ AEO 공인업체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한 공인 취소가 이행되지 않음<br>- 2024년의 경우 밀수출입 1건, 부정수출입 2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1건 등 총 6건(192억 원)의 법률 위반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3건은 공인 취소가 이행되지 않음<br>○ AEO 공인심사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위탁기관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제재기준을 구체화하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약 시 활용하여야 하나, 관세청은 이를 미실시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EO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EO 공인업체의 법규 위반에 대해 공인취소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br>○ 관세청은 AEO 공인심사 위탁 업무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위탁계약을 실시하는 등 집행을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제출 지연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관세탈루심사 (1231-300)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탈루심사 활동 지원'은 관세심사 직원의 관세탈루심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br>○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국적기업은 해외 본사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임에 따라 조사기간이 장기화됨<br>- 2023년 기준 국내기업의 평균 조사기간이 72일인데 반해, 다국적기업은 108일임<br>○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제출을 지연하다가 소송 진행 이후에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사례 발생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압수물품의 위탁보관을 위한 반복적 수의계약 체결 지양 및 적극적 환가 처분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밀수단속(1331-300)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관세청은 압수물품을 위탁보관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에만 의존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부 물품은 위탁보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간 위탁보관이 이루어지고 있음<br>- 현행 「관세법」은 압수물품을 세관 자체 창고나 소지자·지자체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하여, 위탁보관자의 관리·책임범위에 대한 법적 예측 가능성이 낮음<br>- 관세청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과 수의계약을 통해 관리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실상 장기간 독점적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큼<br>- 부패·손상·상품가치 하락 등으로 매각이 가능한 압수물품에 대해 현행법상 환가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관련 실적은 전무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압수물품 위탁보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보관을 위한 반복적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며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br>○ 관세청은 매각이 가능한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가처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보관비용을 줄이고 국고 수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1441-5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관세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음<br><br>[2024회계연도 관세행정 정보관리 사업 결산 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7">2024</th><th>2025</th></tr>
<tr><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d>관세행정 정보관리</td><td>79,148</td><td>1,186</td><td>-</td><td>80,334</td><td>77,943</td><td>241</td><td>2,150</td><td>63,638</td></tr>
<tr><td>시스템구축</td><td>5,949</td><td>-</td><td>-</td><td>5,949</td><td>4,881</td><td>241</td><td>827</td><td>9,224</td></tr>
</table>
- 시스템구축 사업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불법마약 밀수단속 포함) 구축 내내역 사업을 위해 1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억 400만원을 불용하고 5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7.3%에 불과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관세청은 향후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업 내용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재무제표상 오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7111-250) | 시정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관세청 재무제표 내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이 누락되어 재무제표상 오류가 발생하였음<br>- 일반회계에서 군산항 해상 통관장 등 3건의 임차개량자산을 취득 시점 이후부터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함<br>- 기타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관리운영비) 3억 3,553만원 등 총액 4억 7,796만원이 과소계상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재무제표상 오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오류 발생 원인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 |
| 12 | **위법적 예산 집행 관행 근절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관세행정활동지원(7131-301), 일반회계-인천본부기본경비(7118-254), 일반회계- 광주기본경비(7118-256) | 시정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관세청은 고위공무원 국외교육을 위해 5,700여 만원의 예산을 국외교육여비(220-03)목이 아닌 국외업무여비(220－02)목으로 집행하였음<br>○ 관세청은 국외출장 시 일부는 주요사업비에서, 일부는 기본경비에서 집행하거나 두 가지 주요사업비를 활용하여 국외출장 비용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br>○ 관세청은 세관 중 인천 및 광주본부세관은 공공요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으로 이용한 금액 중 일부를 연말에 ‘일반수용비 및 시설유지비 집행’ 목적으로 또 다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예산지침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를 시행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3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납세자권익보호(7140-300)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br>○ 관세청은 2020년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함<br>-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는 5년간 총 55건(연평균 11건) 수준이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재심의도 5년간 10건(연평균 2건)에 불과<br>- 2024년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전체 심의건수는 28건으로, 부산세관(17건)을 제외하면 인천 2건, 인천공항 3건, 서울 4건, 대구 2건, 광주 0건으로 운영실적 저조<br>○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해당 공개내용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여부 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br>- 이는 관세청 실무부서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관련 심의실적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실무부서의 이행여부를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4 | **송무수행비용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송무수행비용지원(7150-400) | 제도개선 | 관세청 |
| | | 지적사항 | ○ 내역사업인 '송무수행비용'은 선례가 없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고, '확정채무지급'은 국가패소에 따른 패소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며, '소송역량강화'는 송무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워크숍, 송무대책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임<br>○ 내역사업인 '송무수행비용', '확정채무지급', '소송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가 작성되지 않음<br>○ 패소율을 기반으로 한 성과 측정은 동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br>- 행정소송 패소율은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역량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써, 높은 패소율은 행정기관의 법적 검토 및 소송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 |
| | | 시정요구사항 | ○ 관세청은 송무수행비용지원 사업에 대해 패소율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 | | |

## 라. 조달청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 | **세입예산 정확도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총괄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세계잉여금 관련) 조달특별회계의 예산상 세계잉여금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예산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달특별회계에 남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매년 예산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음<br>- 과소편성된 주요과목은 시설계약사업수입과 기타영업외잡수익으로, 시설계약사업수입의 경우 조달청은 2024년도 공사계약 등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초과수납이 최근 5년간 매년 발생하고 있음<br>- 기타영업외잡수익의 경우 조달청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조달청은 과거 평균예치액을 활용해 추계하는 등 정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함<br>○ (과징금 관련) 조달청은 세입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예산을 과소편성함에 따라 초과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br>- 2023년과 2024년 국가계약법과 과징금 부과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 징수가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br>* 2023년 국가계약법 개정: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br>2024년 과징금 부과 지침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요건 완화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전년도세계잉여금 초과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과징금 초과수납 방지를 위해 과징금 세입 추계방식을 개선하는 등 세입예산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2 | **조달청 사업의 성과관리 부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총괄 | 시정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2024년도 감사원 결산 감사에서 조달청 성과관리 부진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성과지표 달성률이 33.3%로 전 중앙부처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음. 이는 국가조달행정의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및 공공조달 생태계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성과관리 부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조달청 자체 계획을 마련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시설계약수입 미수납 및 예산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시설계약사업수입(45-454)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의 시설계약사업수입은 수요기관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 상승 등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장기 미납 사례가 늘어나 세입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br>- 시설계약사업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 2021년 4.9% → 2024년 9.6%<br>- 전체 미수납액 중 수요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 비율: 2021년 18.2% → 2024년 48.9%<br>○ 조달청은 시설계약사업수입 예산을 과소계상하여 2024년 기준 수납률이 135.6%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회계 전출금이 축소되는 왜곡이 반복되고 있음<br>- 세입예산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계상되는 경우 자본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도 실제 전출 여력에 비해 과소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시설계약수입의 미수납 방지를 위해 수요기관의 예산 편성·집행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반복적인 장기 미납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며, 시설계약수입의 실제 수납 규모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과소계상 문제를 개선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4 |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원칙 준수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토지대여료(51-511), 건물대여료(51-512), | 시정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 선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조달청이 수납한 토지대여료 총 22건 중 10건과 건물대여료 총 20건 중 6건이 사용·수익일 이후 수납되어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음<br>-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민간기관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필요가 있음<br>※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에 부합하도록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를 적기에 부과·고지하고 납부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5 | **집행 지연, 예산 조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1131-505) | 주의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 대비 개통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차세대 나라장터 관리용역비 등이 불용되고, 舊나라장터 운영 유지를 위한 세목조정 및 내역조정이 발생하였으며, 계획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편성에 기반한 집행 평가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산 비효율과 절차 위반 논란을 초래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관리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음<br>-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관련 예산 178억 6,700만원 중 26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고,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관리용역비 46억 2,000만원을 조달정보화 관리용역비로 내역변경하였으며,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및 용역직원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4억 800만원을 자체 세목조정을 하는 등 예산을 조정하였음.<br>- 舊나라장터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2024년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개통 지연으로 6월 28일 기존 계약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 조정은 8월 2일에서야 이루어져, 계약 당시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예산 집행 절차 위반에 해당함<br>○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시스템 오류·장애 등이 발생하여 입찰이 연기되는 등 다수의 이용자 불편이 있음<br>- 서비스 개통 후 3개월간 주요 서비스 오류·장애는 4건으로, 이로 인해 4,554건의 입찰 연기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 지연과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스템 유지·보수·관리상 애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준수하고,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6 |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내역사업은 개별 지원사업의 제공서비스가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타 부처 및 유관 공공기관의 유사사업과도 큰 차별점이 없는 문제가 있음<br>○ 또한, 동 사업의 성과를 해외 조달시장 진출실적이 아닌 기업 전체 수출실적으로 관리하여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성과평가와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곤란한 실정임<br>- 조달청은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실적을 통해 수출성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는 현지 조달기업을 통한 간접 진출 실적도 포함하고 있어 최종납품처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의 지원기업으로부터 해외조달시장 수출 실적을 제출받아 정확성을 검증하여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개별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 |
| 7 | **공무직 운영 관련 예산 불용액 개선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동 사업에 편성된 다수공급자 계약 구매 지원 및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공무직 운영 관련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br>- 2024년 예산액 33억 6,100만원 중 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공무직 운영 관련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8 | **배상금·기타직보수 예산 편성의 현실화 및 실무수습 인력 운영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기관운영 인건비(7101-101)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매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소요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기관운영 인건비'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의 반복적인 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사업의 보수 항목 불용 예상액이 다른 세목(배상금, 기타직보수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br>- 조달청은 2020~2024년 배상금 예산을 4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소요액은 최대 3억 5,300만원에 달해 매년 전용이 발생했고, 2024년에도 1,300만원을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충당<br>- 또한, 보수 항목이 반복적으로 세목조정되어 기타직보수·건강보험료 부족분을 충당하고, 실무수습 인력 증원에 따라 1억 3,000만원이 기타직보수로 이동하는 등 국회 심의와 다른 집행이 이루어짐<br>○ 이로 인해 배상금·기타직보수 예산 편성이 부실해지고 반복적 전용과 불용이 구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배상금과 기타직보수의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항목을 정밀하게 산정·관리하며, 실무수습 인력 운영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심의 내용과 다른 세목조정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국고금 관리법<br>위반에 대한<br>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조달특별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조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조달청은 「국고금 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br><br>「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br>「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br>「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br>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br>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br>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br>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br>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br><br>[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br>(단위: 원)
<table>
<tr><th>비목명</th><th>집행일</th><th>지급업체</th><th>지급액</th><th>지급용도</th></tr>
<tr><td>일반수용비<br>(210-01)</td><td>7.23</td><td>청△△△</td><td>5,300,000</td><td>물품관리 결산교육 교재 인쇄비</td></tr>
</table>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조달청은 국회, 감사원, 기재부, 조달청 자체감사 등 최근 5년간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여 지적받은 현황, 사례, 대응조치 등의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고금 관리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0 | **회전자금 운영현황 공개 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회전자금전출금(9701-971)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라 최근 5개년 중 2023년에는 500억원을, 2024년에는 700억원을 조달특별회계에서 회전자금으로 전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세부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br>○ 특히 회전자금전출금 유동자산 중 기타미수금 자산에는 조달청이 조달사업법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이 포함되는바, 이는 공정조달을 실현해야 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결산을 포함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검토할 방안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회전자금 운영현황의 공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공급망 위기<br>대응을 위한<br>비철금속별 비축<br>목표 달성률<br>제고 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조달특별회계 - 회전자금전출금(9701-97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조달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철금속의 평균 비축일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니켈은 목표량 대비 82%, 주석은 79%에 머무르는 등 개별 품목별로는 목표 달성률이 미흡하여 실제 위기 대응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비축물자 구매계약 방식 중 프리미엄계약이 전체 도입 물량의 약 85%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 급등이나 공급 차질 시 안정적 수급 확보에 한계가 있음.<br><br>[비축물자 구매계약 방식]<br><table><tr><th>종류</th><th>구매 방법</th></tr><tr><td>프리미엄계약</td><td>운송비, 수수료 등 부대비용(프리미엄)만을 입찰에 의하여 결정하고, 물품가격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통상 2~3개월) 안에 조달청이 시세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td></tr><tr><td>장기공급계약</td><td>입찰에 의해 장기공급을 위한 프리미엄을 결정. 통상 6개월~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매월 평균 국제가격에 따라 일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음</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조달청은 비철금속별 비축 목표량을 면밀히 관리하여 품목별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고, 프리미엄계약 일변도에서 벗어나 장기공급계약을 확대하는 등 계약 방식을 다변화하여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2 |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 관련사업명 | 조달특별회계 - 회전자금전출금(9701-971) | 제도개선 | 조달청 |
| | | 지적사항 | ○ 민관 공동비축제도를 활용하여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리는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으로 실질 소유권이 ETF 투자자들에게 있어 비상시 대비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축물자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br>○ 민간사업자인 자산운용사는 구리 보관에 따른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 조달청에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비용이 민간 창고 대비 7.6%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ETF 투자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음<br>- 자산운용사가 조달청에 지급하는 비용은 톤당 약 53원으로 국내 LME 보관창고 사용비인 톤당 1일 상한 약 696원 대비 7.6% 수준<br>○ 민관 공동비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축물자 이용업체 및 조합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조달청은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인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이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특정 자산운용사와 ETF 투자자들에 대한 금전적 특혜 제공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활용을 통해 비축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 |

# 마. 통계청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상품권 구매<br>체계적 관리<br>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통계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통계조사용 상품권 198억 2,500만원, 기타 상품권 4억 1,000만원 등 총 202억 3,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산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였고, 일정 규모의 연례적인 상품권 재고 발생<br>- 2024년 7개 세부사업에서 각종 통계조사 답례품 명목으로 총 198억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며, 이 중 8억 9,9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재고 발생<br>- 2024년 총 41회에 걸쳐 상품권을 구매하였고, 문화상품권 구매 1건만을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농촌사랑상품권 등 대부분의 상품권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최근 3년간 8~9억원 정도의 상품권 재고가 매년 발생<br>[최근 5년간 통계조사용 상품권 재고 현황]<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구매액(A)</td><td>18,745</td><td>17,444</td><td>16,930</td><td>18,188</td><td>19,825</td></tr>
<tr><td>재고액(B)</td><td>298</td><td>483</td><td>862</td><td>948</td><td>899</td></tr>
<tr><td>재고율(B/A)</td><td>1.5</td><td>2.7</td><td>5.1</td><td>5.2</td><td>4.5</td></tr>
</table>
○ 통계청은 상품권 관련 별도 지침 없이 내부결재 문서만을 근거로 상품권 구매<br>-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계청은 상품권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상품권 구매와 배분 및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자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문책 등 향후 조치 내용을 보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2">2</td><td rowspan="2">품질관리 사업의<br>운영 개선을<br>통한 국가통계<br>품질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가통계정책추진(1031-301)</td><td rowspan="2">제도개선</td><td rowspan="2">통계청</td></tr>
<tr><td>지적사항</td><td>
○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의 이행률이 낮고, 언론 지적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시통계품질진단과 컨설팅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br><br>
- 2020~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1,334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으나 상당수가 미이행 상태이며, 2024년에는 진단대상 60건 중 57건(95%)이 개선되지 않아 통계 신뢰성 저하 우려가 큼<br><br>
-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도출 후 이행기간이 2년 이상 경고하였는데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통계가 2022년 32건, 2021년 6건, 2020년 4건에 달하고 있음<br><br>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통계 중 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통계 현황]<br><br>
(단위: 개, %)<br>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 colspan="2">정기품질진단 대상 통계(A)</td><td>73</td><td>68</td><td>70</td><td>67</td><td>60</td></tr>
<tr><td rowspan="2"></td><td>도출된 개선과제 수</td><td>343</td><td>281</td><td>275</td><td>240</td><td>195</td></tr>
<tr><td>미이행 개선과제 수</td><td>5</td><td>11</td><td>56</td><td>96</td><td>170</td></tr>
<tr><td colspan="2">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통계(B)*</td><td>4</td><td>6</td><td>32</td><td>49</td><td>57</td></tr>
<tr><td rowspan="2"></td><td>중앙행정기관 작성 통계</td><td>3</td><td>5</td><td>26</td><td>31</td><td>41</td></tr>
<tr><td>기타 기관 작성 통계</td><td>1</td><td>1</td><td>6</td><td>18</td><td>16</td></tr>
<tr><td colspan="2">(B/A)</td><td>5.5</td><td>8.8</td><td>45.7</td><td>73.1</td><td>95.0</td></tr>
</table>
* 각 통계별 다수의 개선과제가 도출되며, 미이행 개선과제가 남아있는 통계 종수<br>
자료 : 통계청<br><br>
- 최근 5년간 수시진단은 연평균 1건, 컨설팅 지원은 연 3~4종에 그쳐 기관 수요(연
</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td><td></td><td></td><td>10종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품질개선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고 국가통계 품질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br><br>[최근 5년간 수시통계품질진단 후보대상 및 선정사업 현황]<br><br>(단위: 개, %)<br><table><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tr><td>후보 통계(A)</td><td>37</td><td>24</td><td>17</td><td>15</td><td>7</td></tr><tr><td>선정 통계(B)</td><td>2</td><td>2</td><td>1</td><td>1</td><td>1</td></tr><tr><td>선정률(B/A)</td><td>5.4</td><td>8.3</td><td>5.9</td><td>6.7</td><td>14.3</td></tr></table>자료 : 통계청<br><br>[최근 5년간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수요 및 실적]<br><br>(단위: 개, %)<br><table><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tr><td>컨설팅 희망 통계(A)</td><td>8</td><td>11</td><td>22</td><td>13</td><td>12</td></tr><tr><td>컨설팅 선정 통계(B)</td><td>3</td><td>3</td><td>4</td><td>4</td><td>4</td></tr><tr><td>선정률(B/A)</td><td>37.5</td><td>27.3</td><td>18.2</td><td>30.8</td><td>33.3</td></tr></table>자료 : 통계청</td><td></td><td></td></tr>
<tr><td></td><td></td><td>시정요구사항</td><td>○ 통계청은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가 적시에 이행되도록 후속 점검과 성과평가 연계를 강화하고, 수시진단 건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통계품질 저하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취약 기관의 개선 역량을 높임으로써 국가통계 품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td><td></td><td></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3 |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지역통계인프라강화(1031-302)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통계청은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개최 관련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지 않고 매년 타 사업의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는 등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여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br>- 2023년·2024년에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세목조정 및 지역사회조사 토론회 진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협의회 행사 개최를 위해 사용하였고, 2025년·2026년에도 동일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지역통계협의회 행사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명확히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세목조정을 통한 편법적 전용 관행을 중단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초거대 AI<br>통계챗봇 서비스<br>구축 사업<br>추진 근거 미흡</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20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계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구축 예산을 자체 전용하여 사업 집행<br>-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된 예산을 자체 전용하여 공공요금(210-02목)으로 집행<br>※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구축·소유’에서 ‘서비스 이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민간의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br>[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비 전용 내역]<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에서</th><th>금액</th><th colspan="2">~으로</th></tr>
<tr><td rowspan="2">통계DB통합 및<br>포털서비스<br>(2031-306)</td><td>210-02</td><td>104</td><td rowspan="2">통계DB통합 및<br>포털서비스<br>(2031-306)</td><td>210-02</td></tr>
<tr><td><u>260-01</u></td><td><u>525</u></td><td><u>210-02</u></td></tr>
</table>
○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예산 전용 근거 미흡<br>- 해당 사업을 일반연구비에서 감액 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증액하여 집행하였으나, 집행근거, 예산·과부족 사유, 집행결과에 등 사업 추진 근거 미흡
<table>
<tr><td>[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626백만원, 2024.4.~11.)]<br>통계를 학습한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계정보를 보다 쉽게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계청은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집행근거, 예산·과부족 사유, 집행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업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 예산의 전용 이유·근거·경과에 대하여 소명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2032-308)</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계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투입예산 대비 통계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이용실적 부진<br>- 2024년 기준 통계데이터센터 1개소당 평균 이용 건수는 294건, 평균 이용자 수는 512명에 그쳤으며,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센터 1개소당 24.5건, 일평균 이용자 수는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활용 수준은 저조<br>- 2024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37억 5,000만원으로, 같은 해 기준 이용 건수 4,033건, 이용자 수 7,080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용 1건당 약 93만원, 이용자 1인당 약 53만원의 예산이 소요<br>[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br>정보보호가 확보된 보안 환경에서 일반 이용자가 통계청이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데이터와 본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자료 연계·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센터<br>※ 2025년 6월 현재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전북·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총 13개소가 운영 중<br>○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자 편의와 수요 맞춤형 지원 부족<br>-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제공 측면에서는 자료 반출 기준 완화 및 반출 소요 시간 단축, 자료 간 연계성 확대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와의 연계 강화, 민간자료 등 제공 데이터 종류의 확대 등 개선 요구</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의 복잡한 자료 반출 절차와 제한된 데이터 범위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자료 반출기준을 합리화하고 민간자료 제공을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며,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예산 대비 효율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통계조사 응답률<br>제고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경제구조통계작성(3031-301), 경제동향작성(3031-302),<br>사회통계작성(3032-304), 통계조사지원(3037-3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계청</td></tr>
<tr><td>지적사항</td><td>○ 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조사 불응률이 상승함<br>- 통계청은 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 답례품 등 인센티브 부여, 응답 편의성 강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정보노출 기피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br>[주요통계 불응률 추이]<br>(단위: %)
<table>
<tr><th>통계명</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사회조사</td><td>12.8</td><td>14.1</td><td>13.4</td><td>16.1</td><td>14.5</td><td>16.8</td></tr>
<tr><td>가계금융복지조사</td><td>7.8</td><td>7.8</td><td>8.5</td><td>10.1</td><td>9.8</td><td>9.5</td></tr>
<tr><td>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td><td>1.8</td><td>2.9</td><td>2.7</td><td>3.7</td><td>3.8</td><td>3.6</td></tr>
<tr><td>가계동향조사(통합)</td><td>36.2</td><td>32.2</td><td>30.6</td><td>34.8</td><td>42.1</td><td>44.4</td></tr>
<tr><td>경제활동인구조사</td><td>10.1</td><td>10.8</td><td>10.9</td><td>12.1</td><td>12.7</td><td>13.4</td></tr>
</table>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 재구성</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계청은 정보 보호 강화,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등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응답률이 낮은 경우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것</td></tr>
</table>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7 | **외국인 사망자 통계 마련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통계작성(3032-304)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직접 관련된 통계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br>- 외국인 사망자 관련 통계는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산업재해현황이 유일한데, 내·외국인이 따로 구분되어 공표되지 않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외국인 사망자 원인 등 외국인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 8 |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통계 작성 · 공표 업무 부당 관여 및 부적정 처리 문제 재발 방지**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사회통계작성(3032-304) | 시정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감사원은 통계청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 대한 특정사안감사 결과 “가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 작성 및 공표 업무에 대한 부당 관여·처리”, “통계서술정도 임의 수정 등 통계 작성 및 공표 업무 부적정” 등을 지적함<br>- 감사원은 감사 결과 통계청장에게 향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하였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감사원 특정사안감사 결과 지적된 통계 작성·공표 업무 부당 관여 및 부적정 처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9 |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지양 및 국외출장경비 집행기준 명확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경제총조사(3033-306) | 제도개선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통계청은 경제총조사 해외자료 목적으로 편성한 일반수용비를 북미학술통계대회 등록비로 집행하여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음<br>- 2024년 해외자료 번역 예산 일부를 학술대회 등록비로 사용하였으나 해당 대회 발표 주제는 경제총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국외여비를 일괄 집행하고 부대비용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관행으로 인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을 지양하고 국외출장 경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 | | |
| 10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위한 태블릿PC 취득 시 비용절감 방안 강구 및 사후 활용방안 사전 수립**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인구주택총조사(3034-307) | 시정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태블릿PC 취득 시 렌탈, 리스 등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전량을 구매하였고, 구매 전에 미리 사후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올해 5월* 중앙부처 대상 태블릿PC 이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예산 낭비를 반복함<br>*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하여 2024년 4월 8,000대 계약, 2024년 11월 21,613대 계약<br>-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통계청이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하여 구매한 태블릿PC의 대부분을 조사 종료 이후 타 부처로 이전한 것은 타 부처의 업무를 통계청 예산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다음 총조사 때는 렌탈·순차구매 등 예산 절감 방안 및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태블릿PC 취득 시 렌탈·리스 등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태블릿PC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통계청 예산으로 타 부처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 |

| 연번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 유 형 | 조치대상 기 관 |
|---|---|---|---|---|---|
| 11 | **통계조사 답례품 선호도 조사 실효성 제고 등**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통계조사지원(3037-309) | 주의 | 통계청 |
| | | 지적사항 | ○ 통계조사 불응률을 낮추기 위한 통계조사 답례품 선호도 조사의 실효성이 낮음<br>- 통계조사 답례품에 대한 주된 불만족 사유로 '답례품 금액이 낮음'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은 불응률을 보인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지난 5년간 답례품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조사의 경우 최근 불응률이 높았지만 지난 5년간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음<br>○ 또한, 본 사업 집행액의 74%가 통계조사 답례품에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사업실적은 답례품과 무관한 '사업체 경상조사 5종 전자조사율'을 활용하고 있음 | | |
| | | 시정요구사항 | ○ 통계청은 통계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하여 답례품 선호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도별 사업실적을 답례품 관련 지표로 변경할 것 | | |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br>유 형</th><th>조치대상<br>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국회 확정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절차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7031-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통계청</td></tr>
<tr><td>지적사항</td><td>○ 통계청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른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 사업의 국외여비 부족분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집행하였으며, 파라과이 출장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콜롬비아 현지점검을 미실시하는 등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과 달리 자의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 통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킨 문제가 있음<br>(※「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사업 국외여비(220-02) 집행현황]<br>(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예산</th><th colspan="4">집행</th></tr>
<tr><th rowspan="2">사업명</th><th rowspan="2">금액</th><th colspan="2">결산 사업설명자료</th><th colspan="2">실집행</th></tr>
<tr><th>사업명</th><th>집행</th><th>사업명</th><th>집행</th></tr>
<tr><td>몽골</td><td>7</td><td>몽골</td><td>7</td><td>몽골</td><td>7<br>(기관운영 기본경비)</td></tr>
<tr><td>파라과이</td><td>11</td><td>파라과이</td><td>11</td><td>파라과이</td><td>28</td></tr>
<tr><td>콜롬비아</td><td>10</td><td>콜롬비아</td><td>10</td><td>콜롬비아</td><td>미실시</td></tr>
<tr><td>계</td><td>28</td><td>계</td><td>28</td><td>계</td><td>35</td></tr>
</table>
자료: 통계청</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계청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른 전용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자의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td></tr>
</table>

【붙 임】

#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 기획재정부 소관 ····· 1

1. 결산 개요 ····· 3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 8

3.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34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236

1) 공공자금관리기금 ····· 236

2) 국유재산관리기금 ····· 249

3) 대외경제협력기금 ····· 269

4) 복권기금 ····· 289

5) 외국환평형기금 ····· 299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313

7) 기후대응기금 ····· 315

○ 국세청 소관 ····· 367

○ 관세청 소관 ····· 441

○ 조달청 소관 ····· 509

○ 통계청 소관 ····· 565


2025. 8.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 문 위 원 정지은

# 목 차

## 기획재정부 소관


1. 결산 개요 ····· 3
가.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 3
(1) 세입 ····· 3
(2) 세출 ····· 4
나. 기금 결산 ····· 5
다. 예비비 ····· 7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 8
가. 개요 ····· 8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 8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 9
(3)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10
나. 세입 결산 검토의견 ····· 22
(1) 국세 세입결산 총괄(국세수입, 세제실) ····· 22
(2) 지속적인 세수오차의 개선 위해 최신시점의 세수 관련 정보를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제도개선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29
(3) 할당관세 등 탄력세율 적용 세목에 대해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34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42
(5) 조세지출의 개념적 특성을 반영한 법령 정비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49
다. 세출 결산 검토의견 ····· 53
(1) 금융성 채무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대응자산 현황 및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의 제도 개선 필요(총괄) ····· 53
(2) 국가 재정상태표의 순자산 과다인식 문제 개선 필요(총괄) ····· 65

(3) 공공기관 분류 기준 재검토 및 지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등 공공기관 지정 제도 개선사항(총괄) ····· 70
(4)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범위의 상한 설정 등 제도 개선 필요(총괄) ····· 78
(5) 국회 증액사업의 수시배정 과다 및 미배정 부적절 등(총괄, 예산실) ····· 81
(6)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임차료 지급 부적절(총괄) ····· 91
(7)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작성 및 증빙 불가능한 부실 보고서 작성 등 국외 출장 관련 개선사항(총괄) ····· 97
(8) 보조금법상 국고보조금 감사인 검증의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총괄) ···· 104
(9) 수출전략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과다 편성에 대한 주의 필요 등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정책조정국) ····· 110
(10)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예산 전용 과다 및 비공개 관행 개선 필요 (국제조세협력·국내조세협력, 세제실) ····· 116
(11) 세부사업 구분 없는 지출 부적절(국고업무관리,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국고국) ····· 124
(12) 서면회의 중심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 운영 개편 필요(국고 업무관리, 국고국) ····· 130
(13) 한국은행 일시차입 원금과 이자의 상환 시기 일치 필요(일시차입금이자상환, 국고국) ····· 134
(1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의 협력사업 성과 저조(국제 재정협력 강화, 예산실) ····· 139
(15) 자산취득비의 연도말 집중 집행 및 부적절한 일반수용비 시정 필요(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 예산실) ····· 143
(16) 수의계약 체결 부적절 및 자문료 과다 지급 시정 필요 등(공공기관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146
(17) 하반기 경영평가편람 수정 최소화 필요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근거 신설 필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153
(18)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실시 필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재정관리국) ····· 158
(19)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사업 내실화 필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타당성조사(R&D), 재정관리국) ····· 163
(20) 재정데이터분석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재정정책국) ····· 167
(21)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예산의 연례적 이월 시정 필요 등(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재정정책국) ····· 171

(22) 예비비의 법적 근거 없는 기금 전출 부적절 및 전용 등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등(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실) ····· 177
(23) 미흡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주의 필요 등(역내 금융 협력사업, 국제금융국) ····· 184
(24) 고용휴직자 휴직결과보고서 등 게시 필요(국제금융기구 출연, 개발금융국) ····· 189
(2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위배한 자율기구 운영 및 예비비 과다불용 등 주의 필요(국제투자협력단 운영, 국제금융국) ····· 194
(26)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 추진 및 저조한 실집행 주의 필요 (통상연계형경협사업, 대외경제국) ····· 200
(27) 특별계정 출자 시 잉여재원 고려 및 계정 간 구분 명확화 필요 (한국수출입 은행 출자(특별계정), 대외경제국) ····· 205
(28) 부적정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기본경비·국제조세협력, 세제실) ····· 210
(29) 세수추계위원회 법령·예산상 근거마련 및 기본경비의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세제실), 세제실) ····· 216
(30) 업무관련성 없는 '원데이 행사' 부적절 등(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인사과) ····· 222
(31) 당초 확정 예산 대비 이·전용을 통한 파견인원 증가 부적절 (기획재정 해외 네트워크 구축, 인사과) ····· 228
(32)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기획재정정보화 (정보화), 기획조정실) ····· 231

**3.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34**
**가. 개요 ····· 234**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236**
**1) 공공자금관리기금 ····· 236**
**가. 개요 ····· 236**
**나. 검토의견 ····· 238**
(1)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성과 미흡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 부적절 (기타경비, 국고국) ····· 238
(2) 계획액 편성 누락 및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부적절 (기타 기금 예수원금상환, 국고국) ····· 243
**2) 국유재산관리기금 ····· 249**

가. 개요 ····· 249
나. 검토의견 ····· 25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는 공사계약 체결 필요(총괄, 국고국) ····· 251
(2)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비축토지매입 계약행위 시정 필요(비축토지매입, 국고국) ····· 255
(3) 해외 비축토지매입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마련 필요 (비축토지매입, 국고국) ···· 259
(4) 편성 내역에 부합되지 않은 자산취득 시정 및 위탁기관 자체계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환급 필요(정책연수원 신축, 국고국) ····· 264
3) 대외경제협력기금 ····· 269
가. 개요 ····· 269
나. 검토의견 ····· 271
(1) 대개도국 차관 세부사업간 연례적 자체변경 문제 개선 필요(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 개발금융국) ····· 271
(2) 지역별 차관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 개발금융국) ····· 276
(3) 청년지역전문가 육성 사업 성과 제고 필요(개발협력증진, 개발금융국) ····· 280
(4) 민간단체 학술행사 경비 지원 등 일반수용비 부적정 집행 개선 필요(개발협력증진, 개발금융국) ····· 283
4) 복권기금 ····· 287
가. 개요 ····· 287
나. 검토의견 ····· 289
(1) 합리적 예측을 통한 자체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 (복권사업비, 복권위원회) ····· 289
(2) 근로자햇살론의 도입 목적을 감안하여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중 확대 검토 필요(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복권위원회) ····· 293
5) 외국환평형기금 ····· 299
가. 개요 ····· 299
나. 검토의견 ····· 301
(1)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개선 필요 등(기타이자상환, 국제금융국) ····· 301
(2) 지출계획액을 초과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상환 이후의 사후적인 계획액 자체 변경 주의 필요 등(국공채상환, 국제금융국) ····· 307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313
가. 개요 ····· 313
7) 기후대응기금 ····· 315

가. 개요 ····· 315
나. 검토의견 ····· 317
(1) 배출권 수입 추계 정확도 제고 및 기금 수입 구조 개선 필요(기금수입 총괄, 미래전략국) ····· 317
(2) 사업비 정산 기간의 지연 부적절(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산업통상자원부) ··· 325
(3) 협약 미체결 사업을 근거로 한 대규모 전담기관 이월 개선 필요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 329
(4) 도입 시설·설비의 미가동 문제 개선 필요(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환경부) ····· 333
(5)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환경부) ····· 336
(6)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검토 강화 필요(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환경부) ····· 340
(7) 저조한 실집행률 개선 및 면밀한 사후관리 필요(도시생태축복원사업, 환경부) ·· 348
(8)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및 면밀한 수요조사 부족으로 인한 예산액 전액 불용 부적절(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산업통상자원부) ····· 354
(9)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개선 필요(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지원, 환경부) ····· 358
(10)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한 사업비 지급 비목 변경 필요(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364

## 국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369**

(1) 세입 결산 ····· 369

(2) 세출 결산 ····· 370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371

**나. 검토의견 ····· 381**

(1)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작 시 보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과다 편성 시정 필요 등(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지원, 개인납세국) ····· 381

(2) 예산 과다편성 시정 필요 및 조세범칙처분율 관리 필요 등(조사활동지원, 조사국) ····· 385

(3) 체납규모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압류재산공매, 징세법무국) ····· 391

(4) 보호장비 단가 과다 산정 주의 필요(압류재산공매, 징세법무국) ····· 399

(5) 청원심의회 적정 예산 편성 및 사업 내실화 필요(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402

(6)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인력의 수도권 편중 배치 부적절(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개인납세국) ····· 406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의무상환비율 제고 필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복지세정관리단실) ····· 411

(8)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국제조세관리실) ····· 416

(9)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계약 주의 필요(징세법무국 기본경비, 징세법무국) ····· 420

(10)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영상 제작 관련 예산 집행 필요(자산과세국 기본경비, 자산과세국) ····· 423

(11) 예산 배정 지연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 부적절(부과·징수 지원, 지방청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각 지방청) ····· 427

(12) 관서운영경비 집행 주의 필요(서울청 기본경비·중부청 기본경비·인천청 기본경비, 각 지방청) ····· 432

(13)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행정지원인력 운영, 인사기획과) ··· 435

## 관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443**

(1) 세입 결산 ····· 443

(2) 세출 결산 ····· 444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445

**나. 검토의견 ····· 450**

(1)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의 근본적 개선 위해 유관 부처와 인적·물적 제도개선 필요(과태료, 심사국) ····· 450

(2)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연례적 과다 추계 문제(면허료 및 수수료, 관세청 심사국, 기획재정부 세제실) ····· 457

(3) 체화물품의 적극적 공매를 통한 관련 예산 집행 효율화 필요(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통관국) ····· 465

(4)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특송화물 통관지원, 통관국) ····· 471

(5) AEO공인업체 위규에 대한 제재 강화·집행지침에 따른 수탁기관 실적평가 실시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자료제출 의무 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세탈루심사, 심사국) ····· 477

(6) 압수물품 위탁보관 관련 법률상의 근거 마련 필요(밀수단속, 조사국) ····· 486

(7)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파견지원사업의 적시 예산 미편성 재발 방지 필요 (밀수단속, 조사국) ····· 493

(8)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 제고 필요 (본부기본경비, 운영지원과) ····· 497

(9) 공공요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이용했음에도 목적 외 집행 부적절 (인천본부 기본경비·광주본부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 500

(10) 국외교육여비(220-03) 미편성에도 국외업무여비(220-02)로 국외교육여비 집행 부적절 등 (관세행정활동지원, 기획조정관) ····· 504

## 조달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511**

(1) 세입 결산 ····· 511

(2) 세출 결산 ····· 512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513

**나. 검토의견 ····· 519**

(1)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등(시설계약사업수입, 시설계약사업국) ····· 519

(2)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 준수 필요(토지대여료 · 건물대여료, 기획조정관) ····· 524

(3) 집행 지연, 예산 조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 ····· 527

(4)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개선 필요(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기획조정관) ····· 536

(5) 인건비의 연례적인 전용 및 불용 최소화 필요(기관운영 인건비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운영지원과) ····· 541

(6)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주의(기관운영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 544

(7) 비축물자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546

(8) 마스크 비축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554

(9)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559

## 통계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567**

(1) 세입 결산 ····· 567

(2) 세출 결산 ····· 568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569

**나. 검토의견 ····· 575**

(1) 상품권 구매방법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총괄) ····· 575

(2) 계약 및 예산 집행 관련 제도적 개선 필요(총괄) ····· 582

(3) 품질관리 사업의 운영 개선을 통한 통계품질 제고 필요(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정책국) ····· 589

(4)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필요(지역통계인프라강화, 조사관리국) ····· 594

(5)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통계데이터허브국) ····· 599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경제총조사, 경제통계국) ····· 605

(7) 최신 농업경영체 자료를 활용하여 농림어업총조사 확인용 명부를 보완할 필요(농림어업총조사, 사회통계국) ····· 609

(8)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국외여비 집행 및 전용절차를 미준수한 집행 개선 필요(개도국 다자 통계지원·기관운영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 ····· 615

(9) 전용절차를 준수하여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청사시설관리, 운영지원과) ····· 618

# 기획재정부 소관

# 1. 결산 개요

## 가.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 (1) 세입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453조 8,524억원, 징수결정액은  515조 3,78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40조 6,221억원(85.5%)이 수납되고, 1조 9,169억원은 불납결손처리, 72조 8,395억원은 미수납됨.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1조 8,641억원(97.2%), 압류액이 집행비용보다 적어 불납결손 처리한 경우 495억원(2.6%), 채무면제로 인한 경우 등 기타 33억원(0.2%)임.

미수납액은 국세수입이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의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경우 60조 7,676억원(83.4%), 납기미도래인 경우 6조 5,329억원(9.0%), 정리유예인 경우 2조 6,155억원(3.6%), 징수유예인 경우 1조 5,723억원(2.2%),  통관진행중 등 기타의 경우 1조 3,513억원(1.9%)임.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A)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불납 결손액(D) | 미수납액 (E) | 수납률 (C/B) | 미수납률 (E/B) |
|---|---|---|---|---|---|---|---|
| 일반회계 | 440,810,232 | 502,476,132 | 427,719,745 | 1,916,877 | 72,839,510 | 85.1 | 14.5 |
| 특별회계 | 13,042,216 | 12,902,347 | 12,902,347 | - | - | 100.0 | - |
| 계 | 453,852,448 | 515,378,478 | 440,622,091 | 1,916,877 | 72,839,510 | 85.5 | 14.1 |

## (2) 세출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32조 2,355억원, 예산현액은 31조 2,237억원으로, 예산현액 중 28조 3,544억원(90.8%)이 집행되고, 2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2조 8,672억원은 불용되었음.

이월액은 계약기간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연구용역비 14억원, 운영비 등 7억원임.

불용액은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불용 2조 5,45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등 회계간 및 회계기금간 거래 불용 3,043억원, 자체 집행예산 불용 174억원임.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A) | 예산현액 (B) | 지출액 (C) |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C/B) |
|---|---|---|---|---|---|---|
| 일반회계 | 32,031,687 | 31,019,889 | 28,150,519 | 2,131 | 2,867,240 | 90.7 |
| 특별회계 | 203,857 | 203,857 | 203,857 | - | - | 100.0 |
| 계 | 32,235,544 | 31,223,746 | 28,354,376 | 2,131 | 2,867,240 | 90.8 |

## 나. 기금 결산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및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550조 9,548억원으로, 525조 6,936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517조 1,223억원을 수납하고 8조 5,712억원을 미수납하여 수납률은 98.4%임.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획액 | | 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a) | 수납액 (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수납 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322,666,693 | 328,606,839 | 328,606,839 | 334,744,896 | 327,410,977 | 7,333,920 | - | 97.8 |
| 국유재산관리기금 | 3,270,503 | 3,270,503 | 3,428,645 | 4,194,008 | 3,068,404 | 1,125,604 | - | 73.2 |
| 대외경제협력기금 | 2,208,746 | 2,208,746 | 2,223,144 | 2,116,734 | 2,019,275 | 97,459 | - | 95.4 |
| 복권기금 | 8,358,048 | 8,415,550 | 8,415,550 | 8,437,936 | 8,435,406 | 2,530 | - | 99.9 |
| 외국환평형기금 | 205,120,149 | 205,120,149 | 205,120,149 | 173,092,532 | 173,092,532 | - | - | 100.0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813,266 | 813,266 | 813,266 | 789,915 | 789,915 | - | - | 100.0 |
| 기후대응기금 | 2,391,807 | 2,287,277 | 2,347,226 | 2,317,531 | 2,305,830 | 11,700 | - | 99.5 |
| 합계 | 544,829,212 | 550,722,330 | 550,954,819 | 525,668,551 | 517,122,339 | 8,571,213 | - | 98.4 |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550조 9,548억원으로, 이 중 517조 1,22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805억원을 이월, 4조 4,147억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3.9%임.

[2024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획액 | | 계획 현액(a) | 지출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322,666,693 | 328,606,839 | 328,606,839 | 327,410,977 | - | 2,670,832 | 99.6 |
| 국유재산관리기금 | 3,270,503 | 3,270,503 | 3,428,645 | 3,068,404 | 160,285 | 42,630 | 89.5 |

| 구 분 | 계획액 | | 계획 현액(a) | 지출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대외경제협력기금 | 2,208,746 | 2,208,746 | 2,223,144 | 2,019,275 | 11,128 | 204,086 | 90.8 |
| 복권기금 | 8,358,048 | 8,415,550 | 8,415,550 | 8,435,406 | - | 43,354 | 100.2 |
| 외국환평형기금 | 205,120,149 | 205,120,149 | 205,120,149 | 173,092,532 | - | 1,393,298 | 84.4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813,266 | 813,266 | 813,266 | 789,915 | - | 14,019 | 97.1 |
| 기후대응기금 | 2,391,807 | 2,287,277 | 2,347,226 | 2,305,830 | 9,101 | 46,451 | 98.2 |
| 합계 | 544,829,212 | 550,722,330 | 550,954,819 | 517,122,339 | 180,514 | 4,414,671 | 93.9 |

## 다. 예비비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는 4조 2,00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지출 소요가 있는 관련 부처에 예비비를 배정하였고, 기획재정부는 6,386억원(15.2%)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 | 집행률(B/A) |
|---|---|---|---|
| | 본예산(A) [배정액] | 결산(B) | |
| ○ 예비비 | 4,200,000 | 638,563 | 15.2 |
| -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 355,000 | 355,000 | 100.0 |
| -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 | 142,000 | 142,000 | 100.0 |
| - 글로벌 원자재 긴급 확보 | 106,500 | 106,500 | 100.0 |
| - 사이버 안보 대응 경비 | 106,500 | 34,800 | 32.7 |
|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 511 | 263 | 51.6 |

#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 가. 개요

###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2024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0조 8,102억원이며, 502조 4,761억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427조 7,197억원으로 예산 대비 97.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85.1% 수준임. 징수결정액 중 1조 9,169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고, 72조 8,395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 | 수납률(B/A) |
|---|---|---|---|
| | 본예산(A) | 결산(B) | |
| ○ 국세수입 | 356,118,200 | 326,179,303 | 91.6 |
| - 내국세계 | 321,613,600 | 298,259,369 | 92.7 |
| · 소 득 세 | 125,760,500 | 117,417,964 | 93.4 |
| · 법 인 세 | 77,664,900 | 62,511,273 | 80.5 |
| · 상속증여세 | 14,656,600 | 15,298,137 | 104.4 |
| · 부가가치세 | 81,406,800 | 82,235,811 | 101.0 |
| · 개별소비세 | 10,194,500 | 8,656,553 | 84.9 |
| · 증권거래세 | 5,382,900 | 4,760,168 | 88.4 |
| · 인 지 세 | 850,500 | 846,020 | 99.5 |
| · 기타내국세 | 5,696,900 | 6,533,443 | 114.7 |
| - 관세 | 8,906,500 | 6,972,267 | 78.3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325,800 | 11,389,082 | 74.3 |
| - 방위세 | - | 80 | 순증 |
| - 교육세 | 6,162,500 | 5,373,797 | 87.2 |
| -종합부동산세 | 4,109,800 | 4,184,709 | 101.8 |
| ○ 세외수입 | 84,692,032 | 101,540,442 | 119.9 |
| - 재산수입 | 2,614,595 | 2,535,636 | 97.0 |
| ·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 982,344 | 1,603,347 | 163.2 |
| · 기타 재산수입* | 1,632,251 | 932,288 | 57.1 |
| - 경상이전수입 | 12,699 | 15,851 | 124.8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2 | 12 | 606.3 |
| - 관유물매각대** | 53,354 | 53,539 | 100.3 |
| - 전년도이월금 | - | 2,005,589 | 순증 |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82,011,382 | 96,929,816 | 118.2 |
| 총 계 | 440,810,232 | 427,719,745 | 97.0 |

* 국고금 관리 이자수입, 국세물납주식 매각 이자수입,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

** 국세물납주식매각대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집행액은 28조 1,5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9%(14조 4,143억원) 증가하였음.

자체 지출예산 집행액은 전년 대비 100.9% 증가한 1조 956억원이며, 예비비는 6,383억원이 집행됨. 회계기금간 거래액 20조 4,696억원과 회계간거래액 5조 9,470억원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26조 4,166억원으로 전년보다 109.9%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 | 집행률(B/A) |
|---|---|---|---|
| | 본예산(A) | 결산(B) | |
| ○ 자체 지출예산 | 999,290 | 1,095,629 | 109.6 |
| ○ 예비비 | 4,200,000 | 638,300 | 15.2 |
| ○ 회계기금간 거래 | 20,635,385 | 20,469,578 | 99.2 |
| ○ 회계간 거래 | 6,197,012 | 5,947,012 | 96.0 |
| 총 계 | 32,031,687 | 28,150,519 | 87.9 |

## (3)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표

○ 국세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수납률 (B/A) | |
| 총 계 | 385,159,576 | 333,939,610 | 356,118,200 | 326,179,303 | 91.6 | 371,805,000 |
| 11 소득세 | 128,748,596 | 115,833,024 | 125,760,500 | 117,417,964 | 93.4 | 126,819,207 |
| 신고분(11-111) | 58,244,910 | 41,295,946 | 45,471,700 | 38,800,022 | 85.3 | 41,469,831 |
| 원천분(11-112) | 70,503,686 | 74,537,078 | 80,288,800 | 78,617,942 | 97.9 | 85,349,376 |
| 12 법인세 | 103,570,360 | 80,419,515 | 77,664,900 | 62,511,273 | 80.5 | 88,254,358 |
| 법인세(12-121) | 103,570,360 | 80,419,515 | 77,664,900 | 62,511,273 | 80.5 | 88,254,358 |
| 15 상속세 | 14,594,019 | 14,634,054 | 14,656,600 | 15,298,137 | 104.4 | 14,505,872 |
| 상속세(15-151) | 7,611,302 | 8,544,422 | 8,594,700 | 9,643,987 | 112.2 | 8,463,696 |
| 증여세(15-152) | 6,982,717 | 6,089,632 | 6,061,900 | 5,654,150 | 93.3 | 6,042,176 |
| 21 부가가치세 | 81,626,608 | 73,774,862 | 81,406,800 | 82,235,811 | 101.0 | 87,638,775 |
| 부가가치세(21-211) | 81,626,608 | 73,774,862 | 81,406,800 | 82,235,811 | 101.0 | 87,638,775 |
| 22 개별소비세 | 9,318,244 | 8,820,924 | 10,194,500 | 8,656,553 | 84.9 | 9,666,300 |
| 개별소비세(22-221~222) | 9,318,244 | 8,820,924 | 10,194,500 | 8,656,553 | 84.9 | 9,666,300 |
| 23 주세 | - | - | - | - | - | - |
| 주세(23-231) | - | - | - | - | - | - |
| 25 증권거래세 | 6,302,867 | 6,080,262 | 5,382,900 | 4,760,168 | 88.4 | 3,845,400 |
| 증권거래세(25-251) | 6,302,867 | 6,080,262 | 5,382,900 | 4,760,168 | 88.4 | 3,845,400 |
| 26 인지세 | 798,775 | 796,932 | 850,500 | 846,020 | 99.5 | 883,646 |
| 인지세(26-261) | 798,775 | 796,932 | 850,500 | 846,020 | 99.5 | 883,646 |
| 27 기타내국세 | 7,315,527 | 5,699,899 | 5,696,900 | 6,533,443 | 114.7 | 6,515,642 |
| 과년도수입(27-271) | 7,315,527 | 5,699,899 | 5,696,900 | 6,533,443 | 114.7 | 6,515,642 |
| 31 관세 | 10,324,118 | 7,288,282 | 8,906,500 | 6,972,267 | 78.3 | 8,409,300 |
| 관세(31-311~312) | 10,324,118 | 7,288,282 | 8,906,500 | 6,972,267 | 78.3 | 8,409,300 |
| 32 방위세 | 898 | 137 | - | 80 | 순증 | - |
| 방위세(32-321~322) | 898 | 137 | - | 80 | 순증 | - |
| 33 교통에너지환경세 | 11,116,375 | 10,843,590 | 15,325,800 | 11,389,082 | 74.3 | 15,104,800 |
| 교통에너지환경세 (33-331~333) | 11,116,375 | 10,843,590 | 15,325,800 | 11,389,082 | 74.3 | 15,104,800 |
| 34 교육세 | 4,644,380 | 5,151,619 | 6,162,500 | 5,373,797 | 87.2 | 6,040,200 |
| 교육세(34-341,345) | 4,644,380 | 5,151,619 | 6,162,500 | 5,373,797 | 87.2 | 6,040,200 |
| 37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37-371~372) | - | - | - | - | - | - |
| 39 종합부동산세 | 6,798,810 | 4,596,509 | 4,109,800 | 4,184,709 | 101.8 | 4,121,500 |
| 종합부동산세(39-391~392) | 6,798,810 | 4,596,509 | 4,109,800 | 4,184,709 | 101.8 | 4,121,500 |

○ 세외수입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수납률 (B/A) | |
| 총 계 | 99,507,620 | 64,012,643 | 84,692,032 | 101,540,442 | 119.9 | 92,009,777 |
| 52 정부출자수입 | 1,682,597 | 941,196 | 982,344 | 1,603,347 | 163.2 | 1,045,447 |
| 정부출자수입 (52-521) | 1,682,597 | 941,196 | 982,344 | 1,603,347 | 163.2 | 1,045,447 |
| 54 기타이자재산수입 | 5,480,737 | 1,759,535 | 1,632,251 | 932,288 | 57.1 | 4,201,896 |
| 기타재산수입 (54-545) | - | - | - | - |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2,660 | 4,910 | 2,251 | 10,226 | 454.3 | 1,893 |
| 한국은행잉여금 (54-548) | 5,478,077 | 1,754,625 | 1,630,000 | 922,062 | 56.6 | 4,200,003 |
|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 149 | 119 | 171 | 93 | 54.1 | 171 |
| 벌금및과료(56-561) | - | - | 1 | - | - | 1 |
| 과태료(56-563) | 149 | 119 | 170 | 92 | 54.4 | 170 |
| 징계부과금(56-564) | - | - | - | 0 | 순증 | - |
| 57 변상금및위약금 | - | 2 | 2 | - | - | 3 |
| 위약금(57-572) | - | 2 | 2 | - | - | 3 |
| 58 가산금 | - | - | 1 | - | - | 1 |
| 가산금(58-581) | - | - | 1 | - | - | 1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9,442 | 33,302 | 12,525 | 15,758 | 125.8 | 12,525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9,442 | 33,302 | 12,525 | 15,758 | 125.8 | 12,525 |
| 69 기타잡수입 | 3 | 8 | 2 | 12 | 606.3 | 2 |
| 기타잡수입(69-691) | 3 | 8 | 2 | 12 | 606.3 | 2 |
|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 57,635 | 104,940 | 53,354 | 53,539 | 100.3 | 3,744,140 |
| 국세물납주식매각대 (73-733) | 57,635 | 104,940 | 53,354 | 53,539 | 100.3 | 3,744,140 |
| 88 전년도이월금 | 2,647,663 | 2,793,277 | - | 2,005,589 | 순증 | - |
| 전년도이월금 (88-881) | 2,647,663 | 2,793,277 | - | 2,005,589 | 순증 | - |
|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 3,261,812 | 2,751,088 | - | - | -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89-893) | 3,261,812 | 2,751,088 | - | - | - | - |
| 91 전입금 | 167,582 | 187,853 | 334,865 | 291,466 | 87.0 | 240,295 |
| 특별회계전입금 (91-912) | 167,582 | 187,853 | 334,865 | 291,466 | 87.0 | 240,295 |
| 94 예수금 | 86,200,000 | 55,441,323 | 81,676,517 | 96,638,350 | 118.3 | 82,765,297 |
| 기금예수금(94-943) | 86,200,000 | 55,441,323 | 81,676,517 | 96,638,350 | 118.3 | 82,765,297 |

## 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총 계 | 19,518,422 | 13,736,197 | 32,031,687 | 28,150,519 | 87.9 | 40,931,020 |
| 1100 경제정책 | 103,426 | 2,851 | 3,284 | 2,795 | 85.1 | 2,959 |
| 1131 소비자물가관리 | 764 | 971 | 812 | 759 | 93.5 | 812 |
| 소비자물가관리(302) | 764 | 971 | 812 | 759 | 93.5 | 812 |
| 1132 중장기경제전략기획사업 | 822 | 1,032 | 920 | 869 | 94.4 | 920 |
| 중장기 경제전략기획사업(401) | 822 | 1,032 | 920 | 869 | 94.4 | 920 |
| 1133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 82 | 269 | 925 | 633 | 68.4 | 625 |
|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301) | 82 | 269 | 925 | 633 | 68.4 | 625 |
| 1136 내수활력제고 | 101,360 | - | - | - | - | - |
| 상생소비지원금(301) | 101,360 | - | - | - | - | - |
| 1141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 398 | 578 | 627 | 534 | 85.2 | 602 |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301) | 398 | 578 | 627 | 534 | 85.2 | 602 |
| 1200 정부위원회 | 704 | - | - | - | - | - |
| 1235 북방경제협력위원회운영 | 704 | - | - | - | - | - |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운영(351) | 704 | - | - | - | - | - |
| 1300 정책조정 | 8,574 | 9,513 | 4,561 | 4,184 | 91.7 | 4,136 |
| 1331 경제정책조정지원 | 8,574 | 9,513 | 4,561 | 4,184 | 91.7 | 4,136 |
| 경제정책조정지원활성화사업(301) | 614 | 1,340 | 1,319 | 1,220 | 92.5 | 1,322 |
| 협동조합활성화사업(302) | 7,208 | 7,202 | 1,580 | 1,585 | 100.3 | 1,580 |
| 혁신성장활성화사업(303) | 358 | - | - | - | - | - |
|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운영(304) | 394 | - | - | - | - | - |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305) | - | 715 | 1,110 | 950 | 85.6 | 733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306) | - | 257 | 552 | 430 | 77.9 | 501 |
| **1400 자문회의 지원** | **2,433** | **3,159** | **3,304** | **2,856** | **86.5** | **4,115** |
| 1431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운영 | 2,433 | 3,159 | 3,304 | 2,856 | 86.5 | 4,115 |
|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운영(301) | 2,433 | 3,159 | 3,304 | 2,856 | 86.5 | 4,115 |
| **2100 조세정책** | **4,663** | **4,747** | **6,235** | **5,361** | **86.0** | **6,143** |
| 2131 조세정책지원 | 4,663 | 4,747 | 6,235 | 5,361 | 86.0 | 6,143 |
| 국제조세협력(301) | 944 | 1,120 | 1,493 | 1,181 | 79.1 | 1,610 |
|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303) | 509 | 554 | 585 | 601 | 102.8 | 604 |
| 관세협력기구 출연(304) | 967 | 995 | 996 | 1,082 | 108.7 | 1,023 |
| 조세지출성과관리및평가(306) | 1,551 | 1,473 | 1,498 | 1,422 | 94.9 | 1,698 |
| 국내조세협력(308) | 571 | 487 | 927 | 815 | 87.9 | 935 |
|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309) | 121 | - | - | - | - | - |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310) | - | 119 | 736 | 259 | 35.2 | 273 |
| **2200 국고관리** | **3,747** | **2,916** | **103,934** | **215,010** | **206.9** | **101,683** |
| 2233 국고업무관리지원 | 3,256 | 2,534 | 4,024 | 4,128 | 102.6 | 1,853 |
| 국고업무관리(302) | 406 | 418 | 365 | 396 | 108.5 | 297 |
|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304) | 423 | 480 | 530 | 508 | 95.9 | 480 |
| 혁신조달지원(305) | 323 | 292 | 352 | 267 | 76.0 | 371 |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307) | 2,104 | 1,344 | 403 | 673 | 167.1 | 390 |
| 공공기관 결산 시스템 고도화(정보화)(308) | - | - | 2,374 | 2,283 | 96.2 | 315 |
| 2234 국유재산관리 | 492 | 382 | 701 | 173 | 24.7 | 621 |
| 국유재산관리(302) | 492 | 382 | 701 | 173 | 24.7 | 621 |
| 227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 - | - | 99,209 | 210,709 | 212.4 | 99,209 |
| 일시차입금이자상환(561) | - | - | 99,209 | 210,709 | 212.4 | 99,209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2400 재정운용** | **4,540** | **4,904** | **5,005** | **4,014** | **80.2** | **5,738** |
| 2441 국고보조금관리및제도개선 | 69 | 60 | 72 | 60 | 83.8 | 6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300) | 69 | 60 | 72 | 60 | 83.8 | 64 |
| 2444 국제재정협력강화 | 650 | 668 | 720 | 262 | 36.3 | 329 |
| 국제 재정협력 강화(301) | 650 | 668 | 720 | 262 | 36.3 | 329 |
| 2445 재정운용협의기반구축·운영 | 2,383 | 2,746 | 2,732 | 2,211 | 80.9 | 3,732 |
| 재정운용협의기반구축·운영(401) | 2,383 | 2,746 | 2,732 | 2,211 | 80.9 | 3,732 |
| 2446 연구개발예산편성전략성 강화 | 650 | 618 | 618 | 618 | 100.0 | 750 |
|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401) | 650 | 618 | 618 | 618 | 100.0 | 750 |
| 2447 정보화투자관리효율화 | 788 | 813 | 863 | 863 | 100.0 | 863 |
| 정보화투자관리효율화(241) | 788 | 813 | 863 | 863 | 100.0 | 863 |
| **2500 공공정책** | **5,873** | **6,633** | **7,304** | **6,661** | **91.2** | **7,187** |
| 2531 공공기관평가및관리 | 5,873 | 6,633 | 7,304 | 6,661 | 91.2 | 7,187 |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300) | 5,873 | 6,633 | 7,304 | 6,661 | 91.2 | 7,187 |
| **2600 재정관리** | **11,385** | **12,229** | **13,878** | **13,148** | **94.7** | **18,200** |
| 2631 국가회계운영 | 1,170 | 1,122 | 1,162 | 1,107 | 95.3 | 1,162 |
| 국가회계제도운영(301) | 1,170 | 1,122 | 1,162 | 1,107 | 95.3 | 1,162 |
| 2643 재정집행관리 | 176 | 162 | 278 | 200 | 71.9 | 240 |
| 재정집행관리(300) | 176 | 162 | 278 | 200 | 71.9 | 240 |
| 2644 재정사업평가 | 2,000 | 2,368 | 3,257 | 2,943 | 90.3 | 3,311 |
| 재정사업평가(300) | 2,000 | 2,368 | 3,257 | 2,943 | 90.3 | 3,311 |
| 2645 민간투자사업활성화지원 | 199 | 174 | 336 | 333 | 99.2 | 330 |
| 민간투자사업활성화지원(300) | 199 | 174 | 336 | 333 | 99.2 | 330 |
| 2646 재정사업타당성조사 | 7,718 | 8,309 | 8,845 | 8,565 | 96.8 | 13,157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재정사업타당성조사(301) | 7,422 | 8,254 | 8,571 | 8,444 | 98.5 | 12,937 |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402) | 296 | 55 | 274 | 121 | 44.2 | 220 |
| **2700 재정기획** | **88,910** | **79,815** | **84,630** | **83,666** | **98.9** | **81,016** |
| 271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1,040 | 1,038 | 932 | 930 | 99.8 | 997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300) | 1,040 | 1,038 | 932 | 930 | 99.8 | 997 |
| 2712 중장기재정전략수립 | 4,237 | 3,743 | 2,441 | 2,085 | 85.4 | 2,331 |
| 재정전략기획및협력강화(301) | 1,260 | 1,202 | 969 | 734 | 75.8 | 856 |
| 재정건전성관리강화(302) | 108 | 162 | 161 | 110 | 68.4 | 153 |
| 재정교육(303) | 713 | 724 | 695 | 676 | 97.3 | 655 |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304) | 1,949 | 1,538 | 516 | 490 | 95.1 | 592 |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305) | 207 | 116 | 100 | 73 | 73.3 | 75 |
| 27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 83,632 | 75,034 | 81,125 | 80,560 | 99.3 | 77,688 |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500) | 15,641 | 17,136 | 22,240 | 21,762 | 97.9 | 20,770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운영(501) | 18,259 | 20,739 | 17,964 | 17,877 | 99.5 | 19,303 |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정보화)(502) | 14,768 | - | - | - | - | - |
| 한국재정정보원 운영(504) | 34,399 | 36,593 | 40,356 | 40,356 | 100.0 | 37,050 |
| 재정정보분석(506) | 565 | 565 | 565 | 565 | 100.0 | 565 |
| 2714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 121 | 92 | 132 | 91 | 68.8 | 121 |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300) | 121 | 92 | 132 | 91 | 68.8 | 121 |
| **3000 예비비** | **576,000** | **607,200** | **4,200,000** | **638,300** | **15.2** | **2,400,000** |
| 3069 예비비 | 576,000 | 607,200 | 4,200,000 | 638,300 | 15.2 | 2,400,000 |
| 예비비(300) | 576,000 | 607,200 | 4,200,000 | 638,300 | 15.2 | 2,400,000 |
| **3100 국제금융** | **214,647** | **218,972** | **458,849** | **457,941** | **99.8** | **24,229** |
| 3131 국제금융강화지원 | 6,527 | 14,828 | 9,161 | 8,977 | 98.0 | 8,193 |
| 국제금융협력강화(301) | 855 | 1,000 | 1,100 | 1,096 | 99.6 | 1,093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역내 금융협력사업(304) | 3,659 | 4,859 | 6,010 | 5,970 | 99.3 | 5,891 |
| ADB 연차총회 준비 및 개최사업(307) | 662 | 7,449 | - | - | - | - |
|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311) | 1,350 | 1,519 | 2,051 | 1,912 | 93.2 | 2,302 |
| 3132 국제금융센터보조 | 2,100 | 2,000 | 2,000 | 2,000 | 100.0 | 2,150 |
| 국제금융센터보조(301) | 2,100 | 2,000 | 2,000 | 2,000 | 100.0 | 2,150 |
| 3133 녹색기후협력지원 | 50,861 | 51,844 | 89,634 | 89,592 | 100.0 | 95,563 |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330) | 10,160 | - | 35,293 | 35,293 | 100.0 | 35,293 |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331) | 33,069 | 42,846 | 45,500 | 45,496 | 100.0 | 48,300 |
| 기후행동강화 지원(ODA)(332) | 7,000 | 8,200 | 8,200 | 8,200 | 100.0 | 11,340 |
| 녹색기후기획사업(333) | 632 | 799 | 641 | 603 | 94.0 | 630 |
| 3134 국제금융기구출연 | 155,160 | 150,300 | 358,054 | 357,109 | 99.7 | 275,256 |
| 국제금융기구 출연(301) | 155,160 | 137,400 | 345,054 | 344,109 | 99.7 | 261,456 |
| 팬데믹 대응 기금 지원(302) | - | 12,900 | 13,000 | 13,000 | 100.0 | 13,800 |
| 3135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 - | - | 511 (예비비) | 263 | 51.6 | 86 |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309) | - | - | 511 (예비비) | 263 | 51.6 | 86 |
| **3200 경제협력** | **65,613** | **39,963** | **148,789** | **147,285** | **99.0** | **149,754** |
| 3231 경제협력강화지원 | 5,113 | 5,269 | 5,037 | 4,997 | 99.2 | 8,900 |
| 대외경제협력강화(301) | 492 | 690 | 1,080 | 963 | 89.1 | 5,040 |
| 경제협력기구활동(303) | 229 | 264 | 409 | 400 | 97.8 | 379 |
| 통일기반조성사업(304) | 653 | 852 | 727 | 789 | 108.6 | 727 |
|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306) | 679 | 889 | 781 | 780 | 99.9 | 808 |
| 통상연계형경협사업(308) | 538 | 446 | 499 | 578 | 115.8 | 699 |
| 금융투자지원단 운영(309) | - | 440 | 120 | 66 | 54.9 | -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대외경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500) | 2,522 | 1,687 | 1,421 | 1,421 | 100.0 | 1,247 |
| 323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26,411 | 25,879 | 33,636 | 32,720 | 97.3 | 31,271 |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301) | 18,890 | 17,018 | 23,683 | 23,501 | 99.2 | 21,318 |
| 경제혁신파트너십구축 (ODA)(303) | 7,522 | 8,862 | 9,953 | 9,220 | 92.6 | 9,953 |
| 3236 한국수출입은행출자 | 25,000 | - | 100,000 | 100,000 | 100.0 | 100,000 |
| 한국수출입은행출자 (특별계정)(301) | 25,000 | - | 100,000 | 100,000 | 100.0 | - |
| 한국수출입은행출자 (금융시장안정화)(302) | - | - | - | - | - | 100,000 |
| 3239 지식협력단지 운영 | 8,584 | 8,472 | 9,583 | 9,078 | 94.7 | 9,583 |
| 지식협력단지운영(301) | 8,584 | 8,472 | 9,583 | 9,078 | 94.7 | 9,583 |
| 3240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 505 | 343 | 533 | 490 | 92.0 | - |
|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301) | 505 | 343 | 533 | 490 | 92.0 | - |
| **4100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15,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 | **10,000** |
| 411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출연 | 15,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 | 10,000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출연(880) | 15,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 | 10,000 |
| **7100 기획재정 행정지원** | **129,668** | **149,758** | **149,517** | **142,708** | **95.4** | **160,627** |
| 7101 본부인건비 | 94,968 | 95,373 | 104,175 | 101,296 | 97.2 | 107,790 |
| 인건비(101) | 94,968 | 95,373 | 104,175 | 101,296 | 97.2 | 107,790 |
| 7111 본부기본경비 | 20,725 | 37,590 | 25,493 | 22,302 | 87.5 | 26,153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기관운영)(201) | 6,106 | 10,595 | 6,846 | 6,721 | 98.2 | 7,112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기획조정실)(202) | 371 | 394 | 499 | 422 | 84.6 | 492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대변인)(205) | 27 | 26 | 39 | 25 | 64.1 | 38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세제실)(208) | 533 | 512 | 670 | 556 | 83.0 | 657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경제정책국)(209) | 110 | 113 | 133 | 115 | 86.5 | 131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국고국)(210) | 80 | 65 | 105 | 45 | 43.3 | 85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국제금융국)(212) | 55 | 43 | 54 | 38 | 69.5 | 45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대외경제국)(213) | 98 | 110 | 144 | 125 | 86.5 | 149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정책조정국)(214) | 45 | 42 | 63 | 36 | 56.9 | 55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예산실)(216) | 1,069 | 919 | 1,185 | 916 | 77.3 | 1,085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공공정책국)(218) | 68 | 55 | 136 | 87 | 64.1 | 116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재정관리국)(219) | 81 | 98 | 95 | 69 | 72.9 | 102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미래전략국)(220) | 30 | 29 | 86 | 78 | 90.5 | 89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개발금융국)(221) | 56 | 72 | 101 | 73 | 72.2 | 97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재정정책국)(222) | 142 | 134 | 161 | 128 | 79.4 | 156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보조망구축추진단)(223) | 28 | - | - | - | - | - |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경제구조개혁국)(224) | 29 | 31 | 57 | 35 | 60.7 | 52 |
|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227) | - | - | 58 | 37 | 63.5 | 47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기관운영)(251) | 2,534 | 14,140 | 2,996 | 2,525 | 84.3 | 2,903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기획조정실)(252) | 1,669 | 1,857 | 2,301 | 1,804 | 78.4 | 2,259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대변인)(255) | 633 | 701 | 805 | 747 | 92.8 | 885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세제실)(258) | 911 | 983 | 1,330 | 958 | 72.0 | 1,380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경제정책국)(259) | 839 | 890 | 934 | 1,001 | 107.2 | 1,019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국고국)(260) | 206 | 274 | 385 | 338 | 87.8 | 385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국제금융국)(262) | 299 | 362 | 393 | 386 | 98.3 | 411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대외경제국)(263) | 692 | 795 | 768 | 740 | 96.3 | 785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정책조정국)(264) | 322 | 392 | 448 | 363 | 81.0 | 466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예산실)(266) | 1,855 | 2,300 | 2,515 | 2,152 | 85.6 | 2,530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공공정책국)(268) | 357 | 375 | 522 | 428 | 82.0 | 555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재정관리국)(269) | 504 | 584 | 603 | 494 | 82.0 | 596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미래전략국)(270) | 213 | 197 | 300 | 222 | 73.9 | 307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개발금융국)(271) | 106 | 117 | 159 | 149 | 93.5 | 169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재정정책국)(272) | 262 | 251 | 317 | 292 | 92.1 | 318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보조망구축추진단)(273) | 298 | - | - | - | - | -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경제구조개혁국)(274) | 98 | 134 | 183 | 142 | 77.7 | 184 |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277) | - | - | 102 | 56 | 54.6 | 97 |
| 7131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767 | 898 | 2,523 | 1,873 | 74.2 | 2,723 |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301) | 767 | 898 | 2,523 | 1,873 | 74.2 | 2,723 |
| 7132 기획재정해외네트워크구축 | 577 | 657 | 745 | 773 | 103.8 | 874 |
| 기획재정해외네트워크구축(301) | 577 | 657 | 745 | 773 | 103.8 | 874 |
| 7134 기획재정정보화 | 5,141 | 5,689 | 5,740 | 5,927 | 103.3 | 8,500 |
| 기획재정정보화(500) | 2,651 | 2,771 | 2,823 | 3,010 | 106.6 | 5,589 |
|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501) | 2,490 | 2,918 | 2,917 | 2,917 | 100.0 | 2,911 |
| 7135 기획재정정책지원 | 7,490 | 9,551 | 10,841 | 10,536 | 97.2 | 14,587 |
| 정책품질관리(301) | 194 | 191 | 253 | 231 | 91.5 | 256 |
| 정책연구개발(302) | 1,204 | 1,434 | 1,525 | 1,370 | 89.8 | 1,525 |
| 경제교육지원(304) | 3,632 | 5,546 | 6,368 | 6,504 | 102.1 | 8,240 |
| 정책홍보사업(306) | 2,460 | 2,380 | 2,695 | 2,431 | 90.2 | 2,638 |
| **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 **4,193,902** | **4,649,119** | **6,197,012** | **5,947,012** | **96.0** | **5,953,324** |
| 8010 회계간거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193,902 | 4,649,119 | 6,197,012 | 5,947,012 | 96.0 | 5,953,32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전출(802) | 307,610 | 185,786 | 306,516 | 306,516 | 100.0 | 634,19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전출(803) | 3,561,183 | 4,177,247 | 5,590,044 | 5,340,044 | 95.5 | 4,986,707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전출(804) | 253,525 | 233,754 | 255,596 | 255,596 | 100.0 | 282,902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전출(805) | 71,584 | 52,332 | 44,856 | 44,856 | 100.0 | 49,521 |
|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1,453,826** | **2,028,799** | **2,373,379** | **2,320,967** | **97.8** | **2,648,566** |
| 8411 회계기금간전출(일반회계) | 1,453,826 | 2,028,799 | 2,373,379 | 2,320,967 | 97.8 | 2,648,566 |
|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총괄계정)으로 전출금(대러차관보증채무이행)(881) | 16,292 | 9,985 | - | - | - | - |
| 일반회계에서 대외기금으로 전출금(883) | 662,268 | 787,299 | 1,218,749 | 1,218,749 | 100.0 | 1,317,379 |
|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융자계정)으로전출금(이자보전)(884) | 12,112 | 9,260 | 5,217 | 5,217 | 100.0 | - |
| 기후대응기금 전출(889) | 763,154 | 1,222,255 | 1,149,413 | 1,097,001 | 95.4 | 1,331,187 |
|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 **2,179,751** | **-** | **-** | **-** | **-** | **-** |
| 8601 일반회계 예수원금상환 | 2,179,751 | - | - |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원금상환(864) | 2,179,751 | - | - | - | - | - |
|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 **10,455,761** | **5,905,619** | **18,262,006** | **18,148,611** | **99.4** | **28,992,437** |
| 8711 회계기금간예수이자상환 (일반회계) | 10,455,761 | 5,905,619 | 18,262,006 | 18,148,611 | 99.4 | 28,992,437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871) | 10,455,761 | 5,905,619 | 18,262,006 | 18,148,611 | 99.4 | 28,992,437 |

# 나. 세입 결산 검토의견

## (1) 국세 세입결산 총괄(국세수입, 세제실)

**2024년도 국세수입 실적은 336조 5,324억원으로서 전년도 실적 344조 711억원 대비 △2.2%인 7조 5,387억원이 감소하였고, 2024년도 예산 367조 3,140억원 대비 △8.4%인 30조 7,816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수납액은 326조 1,793억원으로서 본예산 356조 1,182억원 대비 △8.4%인 29조 9,389억원이 과소수납되었고, 특별회계 2개 세목의 수납액은 10조 3,531억원으로서 본예산 11조 1,958억원 대비 △7.5%인 8,427억원이 과소수납되었음[1].

**[2024년도 결산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단위: 억원, %)

| 세 목 | 23년 실적 | 24년 예산 | 24년 실적 | 23년 실적대비 | | 24년예산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국세수입** | **3,440,711** | **3,673,140** | **3,365,324** | **△75,387** | **△2.2** | **△307,816** | **△8.4** |
| **일반회계** | **3,339,396** | **3,561,182** | **3,261,793** | **△77,603** | **△2.3** | **△299,389** | **△8.4** |
| 소득세 | 1,158,330 | 1,257,605 | 1,174,180 | 15,850 | 1.4 | △83,425 | △6.6 |
| 법인세 | 804,195 | 776,649 | 625,113 | △179,082 | △22.3 | △151,536 | △19.5 |
| 상증세 | 146,341 | 146,566 | 152,981 | 6,640 | 4.5 | 6,415 | 4.4 |
| 부가가치세 | 737,749 | 814,068 | 822,358 | 84,609 | 11.5 | 8,290 | 1.0 |
| 개별소비세 | 88,209 | 101,945 | 86,566 | △1,643 | △1.9 | △15,379 | △15.1 |
| 증권거래세 | 60,803 | 53,829 | 47,602 | △13,201 | △21.7 | △6,227 | △11.6 |
| 인지세 | 7,969 | 8,505 | 8,460 | 491 | 6.2 | △45 | △0.5 |
| 과년도수입 | 56,999 | 56,969 | 65,334 | 8,335 | 14.6 | 8,365 | 14.7 |
| 교통세 | 108,436 | 153,258 | 113,891 | 5,455 | 5.0 | △39,367 | △25.7 |
| 관세 | 72,883 | 89,065 | 69,723 | △3,160 | △4.3 | △19,342 | △21.7 |
| 교육세 | 51,516 | 61,625 | 53,738 | 2,222 | 4.3 | △7,887 | △12.8 |
| 종합부동산세 | 45,965 | 41,098 | 41,847 | △4,118 | △9.0 | 749 | 1.8 |
| **특별회계** | **101,314** | **111,958** | **103,531** | **2,217** | **2.2** | **△8,427** | **△7.5** |
| 주세 | 35,686 | 35,759 | 33,282 | △2,404 | △6.7 | △2,477 | △6.9 |
| 농어촌특별세 | 65,628 | 76,199 | 70,249 | 4,621 | 7.0 | △5,950 | △7.8 |

자료: 기획재정부

1) 2024년도 국세수입 실적 336조 5,324억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326조 1,793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주세) 3조 3,282억원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농어촌특별세) 7조 249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4년도 국세 세입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포함한 전체 국세 세입결산 규모를 기재하였음.

2024년도 본예산 기준 세수결손은 30.8조원으로서 ① '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실적 부진[2] 등으로 법인세 결손(△15.2조원), ②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시장 위축[3] 등에 기인한 소득세 결손(△8.3조원), ③ 유류세율 인하[4]와 긴급할당관세 실시 및 통관수입액 감소[5] 등에 따른 교통세(△3.9조원) 및 관세(△1.9조원) 결손이 주요 원인임.

**[ 2024년 세수 결손 주요 세목 현황 ]**

(단위: 억원, %)

| 세 목 | 23년 실적 | 24년 예산 | 24년 실적 | 23년 실적대비 | | 24년예산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법인세 | 804,195 | 776,649 | 625,113 | △179,082 | △22.3 | △151,536 | △19.5 |
| 소득세 | 1,158,330 | 1,257,605 | 1,174,180 | 15,850 | 1.4 | △83,425 | △6.6 |
| 교통세 | 108,436 | 153,258 | 113,891 | 5,455 | 5.0 | △39,367 | △25.7 |
| 관세 | 72,883 | 89,065 | 69,723 | △3,160 | △4.3 | △19,342 | △21.7 |

세목별 초과세수·세수결손 현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상증세, 과년도 수입 등 4개 세목에서 본예산 대비 초과수납된 반면, 그 밖에 10개 세목에서는 본예산 대비 과소수납되었음.

**[본예산 기준 2024년도 세목별 초과세수·세수결손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 2024년 본예산 | 2024년 실 적 |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 | 구 분 | | 2024년 본예산 | 2024년 실 적 |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 | |
|---|---|---|---|---|---|---|---|---|---|---|---|
| 1 | 상증세 | 146,566 | 152,981 | 6,415 | 4.4 | 1 | 소득세 | 1,257,605 | 1,174,180 | △83,425 | △6.6 |
| 2 | 부가가치세 | 814,068 | 822,358 | 8,290 | 1.0 | 2 | 법인세 | 776,649 | 625,113 | △151,536 | △19.5 |
| 3 | 과년도수입 | 56,969 | 65,334 | 8,365 | 14.7 | 3 | 개별소비세 | 101,945 | 86,566 | △15,379 | △15.1 |
| 4 | 종합부동산세 | 41,098 | 41,847 | 749 | 1.8 | 4 | 증권거래세 | 53,829 | 47,602 | △6,227 | △11.6 |
| | | | | | | 5 | 인지세 | 8,505 | 8,460 | △45 | △0.5 |
| | | | | | | 6 | 교통세 | 153,258 | 113,891 | △39,367 | △25.7 |
| | | | | | | 7 | 관세 | 89,065 | 69,723 | △19,342 | △21.7 |
| | | | | | | 8 | 교육세 | 61,625 | 53,738 | △7,887 | △12.8 |
| | | | | | | 9 | 주세 | 35,759 | 33,282 | △2,477 | △6.9 |
| | | | | | | 10 | 농어촌특별세 | 76,199 | 70,249 | △5,950 | △7.8 |

2)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 84.0 → ('23) 46.6 <△44.2%>
3) 순수토지매매량(만필지) : ('22.11~'23.10월) 48.9 → ('23.11~'24.10월) 45.3 <△7.3%>
4) ('23.1~'24.6) 휘발유△25%, 경유△37% → ('24.7~10) △20%, △30% → ('24.11~12) △15%, △23%
5) 수입액: ('23) 6,426억불 → ('24) 6,318억불

최근 10년간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수납액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3.4%에서 법인세 수납액이 대폭 감소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을 기준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2024년에는 77.9%를 기록하였음.

① 소득세의 수납액 비중은 2015년 27.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34.9%로, 최근 10년 중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3대 세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② 법인세의 수납액 비중은 2015년 20.7%에서 2019년 24.6%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 19.4%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18.6%를 기록하며 감소하였음.

③ 2015년 2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는 최근 10년간 그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202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24.4%를 기록하여 소득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중 3대 세목 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소득세 수납액 비중 | 27.9 | 28.2 | 28.3 | 28.8 | 28.5 | 32.6 | 33.2 | 32.5 | 33.7 | 34.9 |
| 법인세 수납액 비중 | 20.7 | 21.5 | 22.3 | 24.2 | 24.6 | 19.4 | 20.5 | 26.2 | 23.4 | 18.6 |
|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 | 24.9 | 25.5 | 25.3 | 23.8 | 24.1 | 22.7 | 20.7 | 20.6 | 21.4 | 24.4 |
| 3대 세목 수납액 비중 | 73.4 | 75.2 | 75.9 | 76.8 | 77.2 | 74.8 | 74.3 | 79.3 | 78.5 | 77.9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국세수입 실적의 예산 대비 및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소득세** 징수액은 2024년 본예산(125조 7,605억원) 대비 △6.6% 감소한 117조 4,180억원임. 이 중 종합소득세는 본예산(23조 552억원) 대비 △15.3% 감소한 19조 5,265억원이 징수되었고, 양도소득세는 본예산(22조 4,165억원) 대비 △25.6% 감소한 16조 6,852억원이 징수되었으며, 근로소득세는 본예산(62조 327억원) 대비 △1.6% 감소한 61조 491억원이 징수되었음.

또한, 전년 대비로는 1조 5,850억원이 증가하여 1.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① 종합소득세는 내수경기 둔화 영향[6] 등에 따라 1조 9,103억원이 감소(△8.9%)하였고, ② 양도소득세는 토지 거래 및 주식거래대금 감소[7] 등에 따라 8,708억원이 감소(△5.0%)하였으며, ③ 이자소득세는 고금리 지속[8] 영향 등으로 1조 9,890억원이 증가(38.2%)하였고, ④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상승[9]으로 2023년 실적 대비 1조 9,049억원이 증가(3.2%)하였음.

**[2024년 소득세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 세 목 | 23년 실적 | 24년 예산 | 24년 실적 | 23년 실적대비 | | 24년예산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소 득 세 | 1,158,330 | 1,257,605 | 1,174,180 | 15,850 | 1.4 | △83,425 | △6.6 |
| 신 고 분 | 389,928 | 454,717 | 362,116 | △27,812 | △7.1 | △92,601 | △20.4 |
| 종합소득 | 214,368 | 230,552 | 195,265 | △19,103 | △8.9 | △35,287 | △15.3 |
| 양도소득 | 175,560 | 224,165 | 166,852 | △8,708 | △5.0 | △57,313 | △25.6 |
| 원 천 분 | 768,402 | 802,888 | 812,063 | 43,661 | 5.7 | 9,175 | 1.1 |
| 이자소득 | 52,068 | 49,128 | 71,958 | 19,890 | 38.2 | 22,830 | 46.5 |
| 배당소득 | 40,623 | 39,038 | 42,680 | 2,057 | 5.1 | 3,642 | 9.3 |
| 사업소득 | 43,665 | 47,478 | 46,828 | 3,163 | 7.2 | △650 | △1.4 |
| 근로소득 | 591,442 | 620,327 | 610,491 | 19,049 | 3.2 | △9,836 | △1.6 |
| 연금소득 | 4,562 | 6,004 | 5,591 | 1,029 | 22.6 | △413 | △6.9 |
| 기타소득 | 24,028 | 27,064 | 23,533 | △495 | △2.1 | △3,531 | △13.0 |
| 퇴직소득 | 12,014 | 13,849 | 10,982 | △1,032 | △8.6 | △2,867 | △20.7 |

6) 경제성장률(%) : ('22) 2.7 → ('23) 1.4 <△48.1%>
7) 순수토지매매량(만필지) : ('22.11~'23.10월) 48.9 → ('23.11~'24.10월) 45.3 <△7.3%>
주식거래대금(조원): ('23) 4,809 → ('24) 4,669 <△2.9%>
8) 한국은행 기준금리: ('23.1) 3.5% → ('24.1) 3.5%
9) 상용근로자임금 : ('22.12~'23.11) 421.1 → (23.12~'24.11)432.1 <+2.6%>
상용근로자수(만명): ('23) 1,617 → ('24) 1,635 <+1.1%>

**법인세** 징수액은 2024년 본예산(77조 6,649억원) 대비 △19.5% 감소한 62조 5,113억원으로서 이 중 법인세 신고분은 본예산(56조 8,333억원) 대비 △30.6% 감소한 39조 4,161억원이 징수되었고, 법인세 원천분은 본예산(20조 8,316억원) 대비 10.9% 증가한 23조 951억원이 징수되었음.

또한, 전년 대비로는 17조 9,082억원이 감소하여 △22.3%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① 법인세 신고분은 2023년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장사 법인영업이익이 감소[10]한 것에 기인하여 세수가 20조 9,607억원(△34.7%) 감소한 반면, ② 법인세 원천분은 법인 이자소득[11] 증가 등의 영향으로 3조 524억원(15.2%) 증가하였음.

**[2024년 법인세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 세 목 | 23년 실적 | 24년 예산 | 24년 실적 | 23년 실적대비 | | 24년예산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법 인 세** | 804,195 | 776,649 | 625,113 | △179,082 | △22.3 | △151,536 | △19.5 |
| 신 고 분 | 603,768 | 568,333 | 394,161 | △209,607 | △34.7 | △174,172 | △30.6 |
| 원 천 분 | 200,427 | 208,316 | 230,951 | 30,524 | 15.2 | 22,635 | 10.9 |

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24년 본예산(81조 4,068억원) 대비 1.0% 증가한 82조 2,358억원으로서 이 중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본예산(27조 4,464억원) 대비 9.7% 증가한 30조 1,017억원이 징수되었고,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본예산(53조 9,604억원) 대비 △3.4% 감소한 52조 1,341억원이 징수되었음.

또한, 전년 대비로는 8조 4,609억원이 증가하여 11.5%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소비자물가 상승 및 수출 증가[12] 등에 따라 8조 9,052억원(42.0%) 증가하였으나, 통관수입액의 감소[13] 등으로 수입분이 4,442억원(△0.8%) 감소하였음.

**[2024년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 세 목 | 23년 실적 | 24년 예산 | 24년 실적 | 23년 실적대비 | | 24년예산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부가가치세** | 737,749 | 814,068 | 822,358 | 84,609 | 11.5 | 8,290 | 1.0 |
| 국 내 분 | 211,965 | 274,464 | 301,017 | 89,052 | 42.0 | 26,553 | 9.7 |
| 수 입 분 | 525,783 | 539,604 | 521,341 | △4,442 | △0.8 | △18,263 | △3.4 |

자료: 기획재정부

10)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 84.0 → ('23) 46.6 <△44.2%>
11) 법인금융자산(채권, 조원): ('23) 2,622 ('24.1Q) 2,658 ('24.2Q) 2,707 ('24.3Q) 2,734 ('24.4Q) 2,766
12) 수출액(억불) : ('23) 6,322 → ('24) 6,836
13) 수입액(억불) : ('23) 6,426 → ('24) 6,318

다음으로 이들 3대 세목 외에 자산 관련 주요 세목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4년 본예산(14조 6,566억원) 대비 4.4% 증가한 15조 2,981억원으로서 이 중 상속세는 9조 6,440억원이 징수되었고, 증여세는 5조 6,542억원이 징수되었음. 2023년 실적(14조 6,341억원) 대비로는 4.5% 증가하였음.

**증권거래세**는 2024년 본예산(5조 3,829억원) 대비 11.6% 감소한 4조 7,602억원이 징수되었음. 증권거래대금의 증가[14]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 인하[15] 효과의 영향으로 2023년 실적(6조 803억원) 대비로는 △21.7% 감소하였음.

**종합부동산세**는 2024년 본예산(4조 1,098억원) 대비 1.8% 증가한 4조 1,847억원이 징수되었음. 2023년 실적(4조 5,965억원) 대비로는 △9.0%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낮은 상승률[16] 등에 기인함.

**농어촌특별세**는 2024년 본예산(7조 6,199억원) 대비 △7.8% 감소한 7조 249억원이 징수되었음. 2023년 실적(6조 5,628억원) 대비로는 7.0% 증가하였는데, 이는 증권거래세 부과분(증권거래세의 15%)과 지방세 부가분(지방세의 10%) 등의 증가에 기인함.

**[2024년 자산 관련 세목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 세 목 | 23년 실적 | 24년 예산 | 24년 실적 | 23년 실적대비 | | 24년예산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상속세 및 증여세 | 146,341 | 146,566 | 152,981 | 6,640 | 4.5 | 6,415 | 4.4 |
| 증권거래세 | 60,803 | 53,829 | 47,602 | △13,201 | △21.7 | △6,227 | △11.6 |
| 종합부동산세 | 45,965 | 41,098 | 41,847 | △4,118 | △9.0 | 749 | 1.8 |
| 농어촌특별세 | 65,628 | 76,199 | 70,249 | 4,621 | 7.0 | △5,950 | △7.8 |

자료: 기획재정부

14) 상장주식 거래대금(조원): ('22.12~'23.11) 4,698 → ('23.12~'24.11) 4,722 <+0.5%>
15) 코스피(0.05% → 0.03%), 코스닥(0.20% → 0.18%)
16) 공시가격증가율(%) : 공동주택 1.52, 표준지 1.10, 표준주택 0.57

다음으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주세 및 교육세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개별소비세**는 2024년 본예산(10조 1,945억원) 대비 △15.1% 감소한 8조 6,566억원이 징수되었음. 2023년 실적(8조 8,209억원) 대비로는 △1.9% 감소하였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4년 본예산(15조 3,258억원) 대비 △25.7% 감소한 11조 3,891억원이 징수되었음. 2023년 실적(10조 8,436억원) 대비로는 5.0%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17]의 탄력세율이 2024년에 일부 환원 된점 등에 기인함.

**관세**는 2024년 본예산(8조 9,065억원) 대비 △21.7% 감소한 6조 9,723억원이 징수되었음. 2023년 실적(7조 2,883억원) 대비로는 △4.3%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4년 통관기준 수입액 감소[18] 등에 기인함.

**주세**는 2024년 본예산(3조 5,759억원) 대비 △6.9% 감소한 3조 3,282억원이 징수되었고, 2023년 실적(3조 5,686억원) 대비로는 △6.7% 감소하였음.

**교육세**는 2024년 본예산(6조 1,625억원) 대비 △12.8% 감소한 5조 3,738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대비로는 교육세 세원 중 주세 부가분 실적이 감소[19]하였으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20] 등이 증가하여 2023년 실적(5조 1,516억원) 대비 4.3% 증가하였음.

**[2024년 간접세 관련 세목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 세 목 | 23년 실적 | 24년 예산 | 24년 실적 | 23년 실적대비 | | 24년예산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개별소비세 | 88,209 | 101,945 | 86,566 | △1,643 | △1.9 | △15,379 | △15.1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08,436 | 153,258 | 113,891 | 5,455 | 5.0 | △39,367 | △25.7 |
| 관 세 | 72,883 | 89,065 | 69,723 | △3,160 | △4.3 | △19,342 | △21.7 |
| 주 세 | 35,686 | 35,759 | 33,282 | △2,404 | △6.7 | △2,477 | △6.9 |
| 교 육 세 | 51,516 | 61,625 | 53,738 | 2,222 | 4.3 | △7,887 | △12.8 |

17) ('23.1~'24.6) 휘발유△25%, 경유△37% → ('24.7~10) △20%, △30% → ('24.11~12) △15%, △23%
18) 수입액: ('23) 6,426억불 → ('24) 6,318억불
19) 주세 부가분(억원): ('23) 8,218 → ('24) 7,519
20) 개별소비세 부가분(억원): ('23) 4,501 → ('24) 4,622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분(억원): ('23) 16,272 → ('24) 16,557

### (2) 지속적인 세수오차의 개선 위해 최신시점의 세수 관련 정보를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제도개선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구조적으로 경기후행적인 국세수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세입 전망시점(6~7월)과 세입예산안 국회 의결 시점(12월) 사이의 경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안 규모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수오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대규모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이 발생함.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약 61조원,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기록했고,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약 56조원, 31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10.3조원 규모의 감액경정을 실시함.

[ 최근 10년간 세수오차 현황 ]

(단위: 조원, %)

| 연도 | 세입예산(A) | 세입실적 | 세수오차(B) | 오차율(B/A) |
|---|---|---|---|---|
| 2014 | 216.5 | 205.5 | △10.9 | △5.1 |
| 2015 | 221.1 | 217.9 | △3.3 | △1.5 |
| 2016 | 222.9 | 242.6 | 19.6 | 8.8 |
| 2017 | 242.3 | 265.4 | 23.1 | 9.5 |
| 2018 | 268.1 | 293.6 | 25.4 | 9.5 |
| 2019 | 294.8 | 293.5 | △1.3 | △0.5 |
| 2020 | 292.0 | 285.5 | △6.5 | △2.2 |
| 2021 | 282.7 | 344.1 | 61.3 | 21.7 |
| 2022 | 343.4 | 395.9 | 52.6 | 15.3 |
| 2023 | 400.5 | 344.1 | △56.4 | △14.1 |
| 2024 | 367.3 | 336.5 | △30.8 | △8.4 |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 2023년과 2024년의 사례와 같이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경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출감액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재정적자의 확대 없이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수행되지 못하여 예산 편성 시 의도하였던 재정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적자국채 외의 대체재원을 마련할 경우에도 자산의 매각 및 기금 등의 용도외 활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도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의 활용,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감액조정·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이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징세행정이 과도할 경우, 그 이후 연도의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여 환급금 및 가산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즉, 재정정책이 경기상황에 역행적으로 운용되거나 최소한 경기중립적이어야 경기 진폭을 완화하여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오히려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경우 재정정책이 경기상황에 순행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경기진폭이 확대되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함.

대규모 세수오차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22년도 이후 세수오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매년 발표하였고, 국회도 2020년 이후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함. 여러 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①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② 세수추계모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음.

**[정부의 세수오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2022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요약**

| | |
|---|---|
| ❶ 추계모형의 한계 | ⇨ 경제지표 및 모형 대폭 개편 |
| ❷ 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제 | ⇨ 절차적 투명성·합의성 제고 |
| ❸ 이상징후 대응체계 미흡 | ⇨ 조기경보 등 중간점검 강화 |
| ❹ 사후평가·피드백 부족 | ⇨ 원인분석·제도개선 등 환류 내실화 |

**2023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요약**

○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

○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 강구

○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 협의

**2024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요약**

○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연, KDI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

○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

○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여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 관련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 구 분 | 회계연도 | 세목 | 시정요구사항 |
|---|---|---|---|
| 기재위 | 2020 | 소득세<br>상속세<br>증여세 | 자산시장 관련 세목의 세수추계는 변수 추가 등의 추계모형 개선 필요 |
| 기재위 | 2020 | 전세목 | 세입전망 및 세입경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추산 필요 |
| 기재위 | 2021 | 전세목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낙관적 경제지표를 토대로 세입예산안 추계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 기재위 | 2022 | 전세목 | 추계모형을 개선하였음에도 재추계 오차가 더 커진 세목의 경우 그 이유를 점검하여 보완할 것 |
| 기재위<br>예결위 | 2023 | 전세목 | ①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추계모형 고도화 및 국내외 주요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br>②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한 세수재추계 실시 및 국회 보고 필요 |
| 예결위 | 2023 | 법인세 | 법인세수 예측 및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료: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수오차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세입 전망시점(6~7월)과 세입예산안 국회 의결시점(12월)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은 경기후행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경기변동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음 연도의 조세수입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올라감을 의미함. 그러나 현행 세입예산안 편성과정을 보면, 다음연도 세입 전망(6~7월) 시점과 예산안 국회 의결(12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세입예산안 편성 구조는 세수오차를 내재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소득·수익의 분배구조 악화와 세율구간의 누진도 확대로 대기업·소득 상위구간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바[21], 최신 시점의 세수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세수 규모 예측의 설명력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함.

이러한 국세수입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해, 정부가 세수추계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거시경제변수를 정확하게 전망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협업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시점(통상 전년도 11월)의 최신 정보(영업실적[22] 등 미시데이터 및 주요 거시경제지표 등)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세입전망 시점과 예산안 의결 시점의 간극으로 인한 내재적인 세수오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35조[23]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실제 정부가 200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인 2008년 11월 7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입예산안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해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24]

**[2009년도 수정예산안 의안원문 중 국세수입 주요내용]**

(단위 : 조원)

| 세 목 | '08년예산 | 2008년 전망 | | | 2009년 예산안 | | |
|---|---|---|---|---|---|---|---|
| | | 당 초 | 수 정 | 증 감 | 당 초 | 수 정 | 증 감 |
| ◇ 총 국 세 | 165.6 | 166.9 | 167.2 | 0.3 | 179.6 | 177.7 | △1.9 |
| ○ 소 득 세 | 38.0 | 36.9 | 36.2 | △0.8 | 42.9 | 41.3 | △1.6 |
| ○ 법 인 세 | 36.3 | 38.7 | 38.3 | △0.4 | 39.3 | 37.9 | △1.4 |
| ○ 부가가치세 | 43.9 | 44.3 | 45.3 | 1.0 | 48.5 | 48.6 | 0.1 |
| ○ 개별소비세 | 4.6 | 4.8 | 4.8 | △0.0 | 4.6 | 4.5 | △0.1 |
| ○ 관 세 | 7.2 | 86 | 8.8 | 0.3 | 9.1 | 10.0 | 0.9 |

자료: 2009년도 수정예산안 의안원문

다만 수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중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의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예산안 심의절차와 동

21)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2023. 8.

22) 경기후행적인 성격이 특히 강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많은 세목의 경우 다음연도 세입전망 시점(6~7월)에서의 데이터에 비해 11월 기준 데이터의 설명력이 높아짐.

23)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4) 정부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세입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힘.

일한 절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제한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동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재차 심의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25]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심의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입예산안 제출 당시 반영하지 못한 최신 정보(수정 경제전망, 정기회 기간 중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동 효과 등)를 반영한 국세수입 수정전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26], 이를 논의한 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서 수정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시점과 세입예산안의 국회 의결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27]

25) 기획재정부도 수정예산안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상임위·예결위 등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도 있는 예산안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임.

26) 현재는 정부가 세수 관련 최신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국회에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특정 세목의 과소·과다 추계를 지적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세입예산안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음.

**[세입예산안 조정사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백만원)

| 소 관 | 회계 | 항목 | 정부안 | 증 감 | 수정안 |
|---|---|---|---|---|---|
| 기획재정부 | 일반 | 소득세 | 50,595,000 | △103,400 | 50,491,600 |
| | 일반 | 부가가치세 | 58,989,300 | △112,500 | 58,876,800 |
| | 일반 | 증권거래세 | 4,543,800 | △5,000 | 4,538,800 |
| | 일반 | 인지세 | 658,400 | △4,500 | 653,900 |
| | 일반 | 관세 | 11,001,000 | △12,200 | 10,988,800 |
| | 일반 | 법인세 | 47,997,800 | 90,800 | 48,088,600 |
| | 일반 | 개별소비세 | 5,751,300 | 121,500 | 5,872,800 |
| | 일반 | 교육세 | 4,740,900 | 36,300 | 4,777,200 |

27)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중 정부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음(2025.8.1. 기준)

| 의안번호 | 법안명 | 대표발의자 | 제안일 | 세입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내용 |
|---|---|---|---|---|
| 220322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걸 | 2024. 8. 27.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11월 15일까지 재추계하여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 221073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 | 2025. 6. 11.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 (3) 할당관세 등 탄력세율 적용 세목에 대해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현 황 >

관세의 2024년 예산액은 8조 9,065억원으로, 이 중 8조 5,555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조 9,722억 6,700만원을 수납(예산액 대비 78.3%, 징수결정액 대비 81.5%)하였으며, 1조 5,780억 7,4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52억 3,4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개별소비세의 2024년 예산액은 10조 1,945억원으로, 이 중 9조 1,076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8조 6,565억 5,300만원을 수납(예산액 대비 84.9%, 징수결정액 대비 95.0%)하였으며, 4,510억 8,7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1,3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024년 예산액은 15조 3,258억원으로, 이 중 11조 4,086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1조 3,890억 8,200만원을 수납(예산액 대비 74.3%, 징수결정액 대비 99.8%)하였으며, 138억 4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57억 8,4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2024회계연도 탄력세율 적용 세목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목명 | 2024 | | | | | | | 2025 |
|---|---|---|---|---|---|---|---|---|
| | 본예산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관세 | 8,906,500 | - | 8,906,500 | 8,555,575 | 6,972,267 | 1,578,074 | 5,234 | 8,409,300 |
| 개별 소비세 | 10,194,500 | - | 10,194,500 | 9,107,653 | 8,656,553 | 451,087 | 13 | 9,666,300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325,800 | - | 15,325,800 | 11,408,670 | 11,389,082 | 13,804 | 5,784 | 15,104,800 |

## < 검토의견 >

**할당관세 등 탄력세율 적용 세목에 대해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할당관세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국회보고사항을 내실화하고, 기타 탄력세율 적용 세목의 경우 기간별 세수감소 효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시행령을 근거로 할당관세 및 탄력세율을 변경하여 대규모 감세효과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 다만 현행법은 국내외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별 세법 시행령을 통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할당관세 등 탄력세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2조는 정부가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도래 시에는 외부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된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8].

---

28)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와 달리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의 인하 및 유류세 등 기타 탄력세율의 적용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법」[29] 및 「국가재정법」[30]에 따라 추계서(추계자료)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개별 세법상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수감소 효과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음.

문제는 할당관세 등 탄력세율을 통한 세수감소 규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전·사후관리 기준인 300억원을 웃돈다는 점임.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별표]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2024년 기준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 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한 1조 4,301억원으로 나타남[31].

특히 2024회계연도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지원액 1조 4,301억원은 2024년도 관세 수입액(6조 9,723억원)의 20.5%에 달하며, 관세 미수납액 1조 5,780억 7,400만원과 비슷한 규모임. 또한, 할당관세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실효관세율(=관세 징수액/수입금액)이 2020년 1.3%에서 2023년 0.9%, 2024년에는 0.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29)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30) **「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31) 기획재정부,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 2025. 5.

[2020년~2024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세수지원(추정)액]

(단위: 억원, %)

| 구 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관세 수입액(결산, A) | | 70,585억원 | 82,270억원 | 103,241억원 | 72,882억원 | 69,723억원 |
| 할당관세 | 품목 수 | 79개 | 92개 | 119개 | 117개 | 125개 |
| | 세수지원액(B) | 3,742억원 | 6,758억원 | 19,694억원 | 10,753억원 | 14,301억원 |
| | 전년대비 증가율 | (△20.5%) | (80.6%) | (191.4%) | (△45.4%) | (33.0%) |
|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 비중(B/A) | | (5.3%) | (8.2%) | (19.1%) | (14.7%) | (20.5%)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연도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에서 발췌

한편, 할당관세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일부 항목에 대해 대략적인 세수감소 규모만 추정되고 있을 뿐[32], 구체적인 세수지원액이 사후적으로도 산출되지도 않고 있음. 기획재정부 역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수현황만 통계치로 산출하고 있을 뿐,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지원액은 관련 통계 미비 등으로 산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2020년~2024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품목 및 세수현황(신고기준)]

(단위: 억원,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개별소비세 | 92,286 | 95,853 | 95,222 | 90,258 | 88,872 |
| - 유연탄 | 33,759 | 34,112 | 33,187 | 27,870 | 25,695 |
| - LNG | 10,176 | 11,420 | 11,683 | 10,254 | 10,066 |
| - LPG부탄 | 8,132 | 7,779 | 5,516 | 4,803 | 4,971 |
| - 등유 | 1,642 | 1,699 | 1,566 | 1,457 | 1,343 |
| - LPG프로판 | 526 | 512 | 666 | 625 | 521 |
| - 부생연료유 | 81 | 79 | 89 | 85 | 58 |
| - 자동차 | 11,487 | 14,188 | 14,144 | 16,541 | 16,982 |
| 품목 수 | 7개 | 7개 | 7개 | 7개 | 6개[1」] |

자료: 기획재정부

주 1」: 2024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미적용

32)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7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 인하조치(5%→3.5%)를 6개월 연장할 경우 발생할 세수감소 효과가 3,0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힘(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브리핑」, 2025. 1. 15.).

[2020년～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품목 및 세수현황(신고기준)]

(단위: 억원,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6,179 | 155,309 | 112,564 | 111,217 | 118,318 |
| - 휘발유 | 66,815 | 67,636 | 50,948 | 56,102 | 61,304 |
| - 경유 | 89,364 | 87,673 | 61,616 | 55,115 | 57,014 |
| 품목 수 | 2개 | 2개 | 2개 | 2개 | 2개 |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사전·사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는 '관세의 전년도 부과실적 및 그 결과'를 보다 내실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제71조[33]는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음.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40%p 범위에서 낮거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조절하거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임. 같은 법 제71조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항의 규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내용인데, 신설 당시에는 "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표현이 없었음. 그러나 동 규정에 따른

33)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의 결과보고가 할당관세 부과내역에 대한 형식적인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34]됨에 따라 2014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 문구를 법률에 명시함.

**[「관세법」 제71조제4항 개정 연혁]**

| 2011년 개정(신설) | 2014년 개정 |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살펴보면, 2014년 법 개정 이전의 보고서보다 오히려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바, 아래의 문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법 개정 이전인 2013년 제출된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에서는 각 품목별로 '기본세율, 할당세율, 적용시작일, 적용 종료일, 수입물량, 수입액, 세수지원추정액'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반해, 2025년 제출된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서는 각 품목별로 '적용시기, 할당세율, 지원추정액'만 표기되어 있는바, 2014년 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음.

3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5479호)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일부)]

| 품 명 | 기본 세율 | 할당 세율 | 적용 시작 일 | 적용 종료 일 | 수입물량[1] (메트릭톤) | 수입액 (백만불) | 세수지원 추정액[2](억원) |
|---|---|---|---|---|---|---|---|
| LNG | 3 | 2 | 1.1. | 12.31. | 25,198,241 | 20340.4 | 1,861.4 |

주1」 수입물량 :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만을 의미
주2」 세수지원 추정액 : 한국조세연구원 「201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분석」 연구용역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일부)]

| 품 명 | 적용시기 | 할당세율 | 지원 추정액(억원) |
|---|---|---|---|
| LNG | 20240101~20241231 | 0 | 5,249 |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 2014년 법 개정 이전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할당관세 부과 효과'가 이후 보고서에 포함되고는 있으나,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보고서에서는 할당관세 지원 추정규모가 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할당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정책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효과가 제한적인 사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충실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35].

다음, 동 보고서는 할당관세 품목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이 정기할당관세[36] 품목인지 긴급할당관세[37] 품목인지를 알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할당관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국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셋째, 할당관세를 제외한 탄력세율 적용 세목의 경우는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세수감소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민주주의 제고 측면에서 국회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35) 기획재정부가 2023.5.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재 1% 인하 시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수입소고기 0.12%, 닭고기 0.29%가 최대치였으며, 파급 시차도 5개월 이후(수입소고기)에서 7개월 이후(닭고기)까지 소요되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분석 결과는 제출되지 않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서 '당근'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함.
36) 매년 사전에 물가 안정 또는 산업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
37) 연도 중에 발생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또는 가격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경우와 달리 전년도 탄력세율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 그런데 정부가 탄력세율 적용 및 환원과정에서 사전적으로는 산출근거와 예상효과를, 사후적으로는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발생한 세수감소 효과 및 이를 통한 정책목적 달성여부 등에 대한 분석자료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대규모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38].

정부가 탄력세율 환원조치를 연장하거나 탄력세율을 확대 적용할 경우 이는 곧바로 세수감소로 이어져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옴. 따라서 탄력세율을 통한 세수감소 효과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고, 탄력세율 적용 또는 환원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환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탄력세율이 국내외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것이라는 입장이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필요성과 대규모 세수 변동효과가 발생하는 정부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은 구분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대하여 개별 세법에 '기간별 세수감소 효과를 포함한 탄력세율 운용 실적 및 효과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38) 기획재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마다 보도자료 배포·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통해 기간별 탄력세율 적용과 단계별 환원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 등은 탄력세율 자체에 대해서만 공지하고 있을 뿐 산출근거, 예상효과 및 사후적 효과 분석자료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통합적으로 검토·심의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함께 경제성장,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대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재정지출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가 수혜대상을 선정하고 직접적인 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조세지출은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법상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때 세금감면을 통해 수혜대상을 지원하는 방식임.

최근 10년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조세지출 증가폭(연 7.9%)이 재정지출 증가폭(연 6.2%)보다 크고, 이에 따라 조세지출이 총 재정지출(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2023년, 2024년도 조세지출은 총 재정지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규모 비교]**

(단위: 조원, %)

| 구분 | 조세지출(A) | 재정지출(B) | 총 재정지출 (C=A+B) | 조세지출 비중 (A/C) |
|---|---|---|---|---|
| 2015 | 35.9 | 372.0 | 407.9 | 8.8 |
| 2016 | 37.4 | 384.9 | 422.3 | 8.9 |
| 2017 | 39.7 | 406.6 | 446.3 | 8.9 |
| 2018 | 44.0 | 434.1 | 478.1 | 9.2 |
| 2019 | 49.6 | 485.1 | 534.7 | 9.3 |
| 2020 | 52.9 | 549.9 | 602.8 | 8.8 |
| 2021 | 57.0 | 601.0 | 658 | 8.7 |
| 2022 | 63.5 | 682.4 | 745.9 | 8.5 |
| 2023 | 69.8 | 610.7 | 680.5 | **10.3** |
| 2024(잠정) | 71.4 | 638.0 | 709.4 | **10.1** |
| 연평균 증감률 (2015~2024) | 7.9 | 6.2 | 6.3 | - |

주: 1. 조세지출은 2023년까지 실적기준, 2024년은 잠정치 기준
2. 재정지출은 결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조세지출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수입 여건과 무관하게 국세감면을 유발하고, 기득권을 형성함에 따라 항구화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체계가 작동하는 재정지출에 비하여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조세지출의 목적과 그 기능, 수혜자 등을 해당 조세지출 항목과 유사한 재정지출과 함께 비교·검토함으로써 그 효과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 중복되는 지출은 삭제하거나,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효과 비교[39]]**

| 구분 | 조세지출 | 재정지출 |
|---|---|---|
| 시차 | 상대적으로 많음 | 상대적으로 적음 |
| 확실성 | 소비 투자 증대 불확실 | 상대적으로 확실 |
| 가역성 | 비가역적 | 복지지출은 비가역적 |
| 분배 | 악화 가능성 | 대상에 따라 차이 |
| 효율성 | 효율적 |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
| 지속성 | 지속 | 일시 |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 분류에서 재정지출의 분류 체계와 같도록 일원화하여 아래표와 같이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하였고,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합한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도입할 예정[40]이라고 밝혔음[41].

39) 박기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재인용
40) 현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심층평가를 각각 운영 중
41)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2024. 8.21.

## [ 조세지출 재분류('24년 전망치 기준)[42] ]

(단위: 억원)

| 16대 분야 분류 | | 실적 | | 12대 분야 분류 | | 실적 |
|---|---|---|---|---|---|---|
| 1 | 일반·지방행정 | 93,533 | → | 1 | 일반·지방행정 | 93,533 |
| 2 | 공공질서 및 안전 | 0 | → | 2 | 공공질서·안전 | 0 |
| 3 | 통일·외교 | 7 | → | 3 | 외교·통일 | 7 |
| 4 | 국방 | 346 | → | 4 | 국방 | 346 |
| 5 | 교육 | 10,460 | → | 5 | 교육 | 10,460 |
| 6 | 문화 및 관광 | 2,887 | → | 6 | 문화·체육·관광 | 2,887 |
| 7 | 환경 | 21,824 | → | 7 | 환경 | 21,824 |
| 8 | 사회복지 | 252,584 | ↘ | 8 | 보건·복지·고용 | 371,146 |
| 9 | 보건 | 118,562 | ↗ | | | |
| 10 | 농림수산 | 60,989 | → | 9 | 농림·수산·식품 | 60,989 |
| 11 | 교통 및 물류 | 8,208 | ↘ | 10 | SOC | 11,203 |
| 12 | 국토 및 지역개발 | 2,995 | ↗ | | | |
| 13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41,834 | ↝ | 11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41,834 |
| 14 | 과학기술 | 75 | → | 12 | R&D* | 29,839 |
| 15 | 통신 | 0 | | | | |
| 16 | 예비비 | 0 | | | | |
| 합 계 | | 714,305 | | | | |

## [ 통합심층평가(안)[43] ]

| 구분 | 재정사업 심층평가 | 조세특례 심층평가 | 통합심층평가(안) |
|---|---|---|---|
| 목 적 | 주요 재정사업(군)의 추진 과정·성과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 도출 등 재정운용 성과제고 | 조세특례 운용성과를 점검하여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 | 조세특례·재정사업의 효과성 비교평가, 유사·중복 지출 정비 |
| 대 상 | 부처간 유사·중복 등 예산낭비 소지 사업,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등 | (의무)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br><br>(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조세특례 |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br><br>*관계부서 협의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 선정 |

42)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 9.
43)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2024. 8.21.

이와 같은 분류체계 정보의 일원화는 분야별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합계 지출 규모는 파악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지출 항목별 비교·분석에는 한계가 있고, 통합심층평가는 일정 요건[44]을 충족한 일부 조세·재정지출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대다수 조세지출은 통합심층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 제공하고 있는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또한 포괄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① 조세지출의 수혜자가 여러 집단인 경우 혹은 다수의 조세지원 사항이 하나의 조세지출 항목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세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없고, ② 관련 재정지출에 관한 정보는 병기되지 않고 있어 지원목적 등이 유사한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 사업 간 통합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가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정보를 살펴보면, 해당 조세지출의 수혜자는 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②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로 구분되고, 각 수혜자별로 매입세액 공제율도 차등하고 있으나, 조세지출 실적은 총합계액만 표시되고 있어 각 수혜자에게 얼마만큼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음.

| | 예산분류 | 조세지출 내역 | 23실적 | 24전망 | 25전망 |
|---|---|---|---|---|---|
| 28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070-078)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br>·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br>· 도입목적: 세부담을 경감하여 폐자원 등의 수집활동 지원<br>· 수 혜 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br>· 수혜내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br>①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3/103<br>②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의 10/110<br>· 적용기한: '25. 12. 31.<br>【잠재적 관리대상】 | 계<br>13,853<br>부가가치세<br>(13,853) | 계<br>15,306<br>부가가치세<br>(15,306) | 계<br>16,110<br>부가가치세<br>(16,110) |

44)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관계부서 협의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45]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도 그 수혜집단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데, 해당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에는 수혜자 정보가 "노인, 장애인 등"으로 일부만 적시되고, 조세지출 실적은 총합계액만 표시되고 있어 각 집단 별로 얼마만큼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음.

| | 예산분류 | 조세지출 내역 | 23실적 | 24전망 | 25전망 |
|---|---|---|---|---|---|
| 6 | 사회복지 일반 (080-089)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br>▪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br>▪ 도입목적: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br>▪ 수 혜 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노인, 장애인 등<br>*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br>▪ 수혜내용: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br>▪ 적용기한: '25. 12. 31.<br>【적극적 관리대상】 | 계<br>5,461<br>소득세<br>(5,461) | 계<br>10,914<br>소득세<br>(10,914) | 계<br>11,929<br>소득세<br>(11,929) |

4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및 제59조의4제1항[46]에 따른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경우는 공제방식이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가지 항목으로만 명시하고 있고 각 보험별 지출내역을 구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등)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험료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조세지원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음.

| | | | | | |
|---|---|---|---|---|---|
| 36 | 보건의료<br>(090-091)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br>▪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9조의4 제1항<br>▪ 도입목적: 비용성격 지출에 대한 소득 보전<br>▪ 수 혜 자: 근로자<br>▪ 수혜내용<br>-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br>- 보장성보험으로 생명 · 상해 · 손해보험, 군인 · 교원 · 경찰 · 수협 등 공제회의 공제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세액공제)<br>▪ 적용기한: 없음<br>▪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br>【구조적 지출】 | 계<br>63,083<br>소득세<br>(63,083) | 계<br>69,673<br>소득세<br>(69,673) | 계<br>75,095<br>소득세<br>(75,095) |

46)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요약하면,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지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2024년 8월 추진한 연계강화 방안으로는 구체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고, 현행의 조세지출예산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작성·제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통합적으로 검토·심의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47]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7) 다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세금 신고서식 상 개별 구체적 조세지출 항목이 구분·관리 되고 있지 않아 현행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보다 더 구체적인 조세지출 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그 지원방식, 수혜대상 등이 달라 조세지출 항목별로 특정 재정지출을 병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임.

## (5) 조세지출의 개념적 특성을 반영한 법령 정비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조세지출예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개념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租稅支出, tax expenditure)이란 경제·사회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우대 또는 조세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함[48].

현행법상 조세지출에 대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49]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조세특례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로" 정의하고, 그 중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50]에서는 "조세지출에는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무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될 조세지출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 항목들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별세법상의 조세감면 항목들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음. 실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총 조세지출 항목 수는 280개로,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

48)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572p. 2025. 4.

4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수는 46개에 불과함[51].

그간 국회[52], 감사원[53]과 국회예산정책처[54], 국회입법조사처[55] 등으로부터 개별법상 조세감면의 조세지출예산서 포함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이 떨어지고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에서 벗어난 조세감면으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 조세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 조세규약 등을 포함하는 조세체계상의 일반 표준(norm)을 의미함.

**[ 조세지출의 특성 ]**

| 구 분 | 내 용 |
|---|---|
| 특정성 |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
| 대체가능성 | 조세지출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입증 가능하여야 함 |
| 폐지가능성 |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여야 함 |
| 기타 | 기준조세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세목 내에서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로서 규모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조세지출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항목이 동일 조세제도 내에 없어야 함 |

그러나,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조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56].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 항목 중 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②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③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51) 나머지 41개 항목은 폐지 이후 경과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임.
52) 2020년도 결산, 2024년도 국정감사
53)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2020. 4.
54)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4. 10.
55)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 3. 등
56)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24. 10.

공제,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⑤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등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추었음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라는 것임.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 항목 중 조세지출예산서 미기재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 2025년 세수효과 | 적용기한 | 근거규정 |
|---|---|---|---|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329 | 없음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추정곤란 | 2029.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추정곤란 | 2027.12.31. | 소득세법 제56조의3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42 | 2027.12.31.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63조제3항 |
|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18 | 없음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

가령,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기업의 출산장려라는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특정성)이 존재하며, 출산장려라는 정책목표를 위한 다른 정책수단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동 항목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는 것임. 다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과세단위의 차이(출산가구의 경우 기본생활비가 더 소요)를 시정하는 항목이므로 기준조세체계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특례에 대하여 행정 효율을 위한 규정으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57]의 경우 현재 조세지출로 관리되고 있으며,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의 경우도 생필품 소비에 대한 역진성 완화 장치라는 이유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58]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유사 감면제도는 조세지출로 관리되고 있음.

이와 같이 조세지출의 해당 여부에 관한 이견(異見)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감면 등 항목이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는지 혹은 조세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매우 어려운 작업[59]임에도 현행 법령에서는 기준조세체계나 조세지출의 개념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조세지출로 규정[60]하여 모든 조세감면 사항이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61]에서는 “조세지출에는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하여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법령상 근거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62]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법령상 근거와 실제 운용의 불일치는 조세지출 항목 선정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작성되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개념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5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별세법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판단기준 등 검토」 124p., 2020. 11.

60)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6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별세법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판단기준 등 검토」, 2020. 11.

# 다. 세출 결산 검토의견

## (1) 금융성 채무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대응자산 현황 및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의 제도 개선 필요(총괄)

< 현 황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63]'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64]'에서 국가채무를 상환재원(대응자산)의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고 있음. 정부는 '금융성 채무'를 외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여 추가적인 상환재원의 조성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정의하고, '적자성 채무'는 이와 달리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 참고 >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

- ㅇ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대표적
- ㅇ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 강화

□ **(금융성 채무)**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ㅇ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해당
- ㅇ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며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 강화

자료 :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p.176

2024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총 1,175.2조원으로 예산 대비 20.6조원 감소하였음.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2024년 결산 기준 815.4조원으로 예산 대비 23.1조원 증가한

6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64)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반면, 금융성 채무는 2024년 결산 기준 359.8조원으로 예산 대비 43.7조원 감소하였음.

정부는 금융성 채무를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와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 기타 금융성 채무 및 공자기금 여유재원 조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210.3조원이고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는 79.1조원, 기타 금융성 채무는 66.4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2024회계연도 성질별 국가채무 구성별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 구분 | 국가채무 (GDP 대비) (A=B+C) | 적자성 채무(B) | 금융성 채무(C) | 외환시장 안정용 | 서민주거 안정용 | 기타 금융성 | 공자기금 여유재원 조정 |
|---|---|---|---|---|---|---|---|
| 2023 결산 | 1,126.7 (46.9) | 726.4 | 400.3 | 251.0 | 81.6 | 60.1 | 7.7 |
| 2024 예산(a) | 1,195.8 (47.4) | 792.3 | 403.5 | 253.4 | 83.7 | 68.6 | △2.2 |
| 2024 결산(b) | 1,175.2 (46.1) | 815.4 | 359.8 | 210.3 | 79.1 | 66.4 | 4.0 |
| b-a | △20.6 | 23.1 | △43.7 | △43.1 | △4.6 | △2.2 | 6.0 |

주: 적자성채무에는 지방정부순채무 포함(2024년 결산 기준 34.1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검토의견 >

**정부는 금융성 채무를 대응자산이 있어 추가적인 재원 조성 없이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정의·분류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성 채무의 상당 부분이 ① 채무에 비해 대응자산이 부족하거나 ② 대응자산에 청약저축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2023년 기준 95.3조원)을 포함시켜 대응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③ 대응자산에 외환보유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실제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국가채무 상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크므로,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 구성을 달리 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 체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금융성 채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 구분의 핵심 기준인 충분한 대응자산의 보유 여부 판단에 있어서 대응자산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인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각 채무의 대응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국가회계법」 제15조의2[65]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는 국가채무 현황, 증감분석 및 명세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채무의 성질별 규모를 분석함에 있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역시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였고, 금융성 채무를 자체 상환재원(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로 정의하면서 2024년 결산 기준 금융성 채무 규모를 359.8조원으로 집계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대응자산 규모를 적시하지 않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 규모에 대하여 2025년 7월말 기준 집계가 되지 않았으며, 2025년 9월 말에나 산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65)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있음.

그러나 각 채무가 충분한 대응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금융성 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각 채무에 대한 대응자산 규모의 정확한 산출 없이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제출한 문제가 있음. 특히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임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법정 서류인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각 대응자산의 규모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성 채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응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응자산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IMF의 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현금·예금, 융자금 등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나, 대응자산의 유무는 적자성/금융성 채무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법정 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이나 지침으로 대응자산의 구성 및 분류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타 금융성 채무' 중 상당 부분은 대응자산이 채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분류를 통해 금융성 채무의 과다계상 및 적자성 채무의 과소계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기타 금융성 채무는 공자기금이 일반회계 및 외평기금을 제외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탁 잔액의 채무들을 의미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소상공인진흥기금 채무는 20.9조원, 고용보험기금 채무 9.1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채무 5.2조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채무 2.9조원 등으로 구성됨.

이러한 기타 금융성 채무들은 적자성 채무가 아닌 금융성 채무에 분류되므로 그 정의를 고려할 때 그 채무에 비하여 대응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기타 금융성 채무별로 대응자산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타금융성 채무의 2024년 대응자산의 정확한 수준은 2025년 9월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기타 금융성 채무들의 대

응자산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우 2023년 기타 금융성 채무에 해당하는 채무는 20.6조원이나 대응자산은 14.3조원으로 채무에 비해 대응자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또한, 고용보험기금 역시 2023년 채무는 10.3조원인 반면 대응자산은 1.9조원에 불과한 상황임. 특히 2023년을 기준으로 기타 금융성 채무를 구성하고 있는 25개 채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 11개 기금·특별회계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간 지속적으로 채무에 비해 대응자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성 채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최근 3년간 기타 금융성채무의 대응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채무 | 대응자산 | 채무 | 대응자산 | 채무 | 대응자산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15.7 | 13.0 | 19.5 | 14.0 | 20.6 | 14.3 |
| 고용보험기금 | 9.4 | 1.8 | 10.3 | 1.9 | 10.3 | 1.9 |
| 국민건강증진기금 | 3.5 | 0.4 | 3.9 | 0.2 | 4.5 | 0.0 |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3.4 | 0.0 | 3.2 | 0.0 | 2.8 | 0.0 |
| 관광진흥개발기금 | 2.3 | 3.2 | 2.6 | 3.1 | 2.5 | 3.0 |
| 남북협력기금 | 2.3 | 2.8 | 2.3 | 2.9 | 2.3 | 2.9 |
| 정보통신진흥기금 | 1.0 | 0.3 | 1.9 | 0.3 | 2.2 | 0.2 |
| 대외경제협력기금 | 0.9 | 7.6 | 1.3 | 8.2 | 1.6 | 9.0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0.4 | 2.7 | 1.6 | 2.5 |
| 방송통신발전기금 | 0.5 | 0.2 | 1.0 | 0.2 | 1.3 | 0.0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0.9 | 0.0 | 0.9 | 0.0 | 0.9 | 0.0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1.8 | 20.9 | 1.8 | 22.8 | 0.8 | 22.6 |
| 축산발전기금 | 0.3 | 1.1 | 0.6 | 1.1 | 0.8 | 1.1 |
| 기후대응기금 | - | - | 0.5 | 0.1 | 0.7 | 0.3 |
| 응급의료기금 | 1.0 | 1.0 | 0.9 | 0.8 | 0.6 | 0.6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0.2 | 3.0 | 0.6 | 3.3 | 0.6 | 3.1 |
| 사학진흥기금 | 0.6 | 1.6 | 0.5 | 1.6 | 0.4 | 1.6 |
| 대러보증차관 | 0.2 | 0.0 | 0.2 | 0.0 | 0.2 | 0.0 |
| 군인복지기금 | - | - | 0.0 | 0.2 | 0.1 | 0.2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0.1 | 0.0 | 0.1 | 0.1 | 0.1 | 0.1 |
| 국가유산보호기금 | 0.1 | 0.0 | 0.1 | 0.0 | 0.1 | 0.0 |
|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 0.0 | 0.0 | 0.1 | 0.0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0.0 | 0.0 | 0.0 | 0.0 | 0.0 | 0.1 |

| 구분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채무 | 대응자산 | 채무 | 대응자산 | 채무 | 대응자산 |
| 영화발전기금 | - | - | 0.1 | 0.0 | 0.0 | 0.0 |
| 청소년육성기금 | - | - | 0.0 | 0.0 | 0.0 | 0.0 |

주: 음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응자산이 부족한 채무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각 채무별 대응자산이 9월에나 집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각 채무별 대응자산을 비교하는 대신, 각 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을 검토하였음.

그 결과 기타 금융성 채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24년 순자산은 △6.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순자산은 △21.6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순자산은 △3.4조원으로 모두 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타 금융성 채무를 채무 규모 순으로 나열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상위 6위에 해당하는 채무들의 기금·특별회계는 모두 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대응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채무들을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4년 기타 금융성 채무별 순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 채무 | 순자산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0.9 | △6.4 |
| 고용보험기금 | 9.1 | △21.6 |
| 국민건강증진기금 | 5.2 | △3.4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3 | △0.5 |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2.9 | △0.03 |
| 정보통신진흥기금 | 2.6 | △2.7 |
| 관광진흥개발기금 | 2.4 | 1.2 |
| 남북협력기금 | 2.3 | 1.1 |
| 대외경제협력기금 | 2.1 | 8.2 |
| 방송통신발전기금 | 1.7 | △1.4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 | 354 |
| 축산발전기금 | 1.1 | 0.6 |
| 기후대응기금 | 1.1 | 0.1 |

| 구분 | 채무 | 순자산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0.6 | 3.1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0.5 | △0.4 |
| 사학진흥기금 | 0.3 | 0.5 |
| 응급의료기금 | 0.3 | △0.02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0.2 | △0.03 |
| 대러보증차관 | 0.2 | |
| 국가유산보호기금 | 0.1 | 0.1 |
| 국제질병퇴치기금 | 0.1 | △0.1 |
| 군인복지기금 | 0.1 | 1.2 |
| 영화발전기금 | 0.0 | 0.3 |
| 청소년육성기금 | 0.0 | 0.01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0.0 | 0.1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0.0 | 4.6 |

주: 음영은 2024년 순자산이 음(-)인 채무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각 기금·회계별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금존치평가에 따르면 기타 금융성 채무에 해당하는 기금 중 기후대응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의 경우 재원조성방법이 부적정하거나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특히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경우 2024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서 기금의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폐지가 결정된 상황이므로 기금을 폐지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사학진흥기금 역시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기적 사업내용 조정 및 부채상환을 통한 차입의존도 축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존치 판정을 받은 바 있음.

[2023~2025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현황]

| 구분 | 재원조성방법 부적정 | 중기가용자산 과소 |
|---|---|---|
| 2023 | 문화예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 2024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사학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축산발전기금** |
| 2025 | **기후대응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기후대응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주: 굵은 글씨의 경우 해당 기금에의 공자기금 예탁 잔액이 기타금융성채무에 분류되는 기금
자료 : 각 연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재원조성방법이 부적정하거나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한 기금의 경우 해당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대응자산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채무들을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실제 감사원도 2019회계연도 기타 금융성 채무에 대한 감사에서 기타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이 채무에 비해 부족하여 해당 채무 모두를 금융성 채무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대응자산이 채무 대비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적자성 채무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 부족분과 초과 보유분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부족분은 83.2조원, 초과 보유분은 105.0조원으로, 부족분에 비해 초과 보유분의 규모가 크므로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초과 보유분 중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응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2023년 기준 95.3조원)을 제외할 경우 금융성 채무의 대응자산은 상당 부분 부족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금융성 채무는 채무에 비해 대응자산의 규모가 같거나 큰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채무별로 대응자산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채무의 총계 개념으로 대응

자산의 부족분과 초과 보유분을 상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기타 금융성 채무 중 채무 대비 대응자산이 충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도 대응자산이 실질적으로 그 채무 상환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각 특별회계 및 기금별 대응자산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대응자산이 상환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성 채무 규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국가채무관리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한 등 상환재원이 불충분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므로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재정운용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보다 정확하게 집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분류한 기타 금융성 채무 중 일부 채무의 경우 대응자산이 불충분하여 적자성 채무의 규모가 과소계상되는 문제가 있고, 대응자산이 충분한 회계·기금의 경우에도 대응자산이 추후 상환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채무들을 적자성 채무로 전환하여 적자성 채무 규모가 보다 정확히 집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고 있는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는 그 재원이 이차보전 등 대응자산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청약저축 납입액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제외할 경우 대응자산이 채무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문제가 있음.**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란 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첨가소화채권임.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충분하게 존재하는 채무로,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가 금융성 채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이 융자나 출자 등 대응자산이 형성되는 분야에 사용되어야 하며, 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보다 같거나 큰 규모의 대응자산이 존재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을 이차보전, 보조금 등 대응자

산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도 사용하고 있음. 실제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응자산이 형성되는 융·출자 비중은 84.5%인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3년간 총지출에서 융·출자 비중은 85% 전후로, 매년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응자산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및 이차보전, 보조금 현황]**

(단위: 조원, %)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총지출(a) | 31.8 | 30.5 | 32.8 |
| 융자금(b) | 23.4 | 22.2 | 23.7 |
| 출자금(c) | 3.9 | 3.5 | 4.0 |
| 융·출자 비중[(b+c)/a] | 85.8 | 84.3 | 84.5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의 대응자산으로 주택도시기금의 현금, 예금, 융자금 등 금융성 자산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 81.6조원에 해당하는 대응자산은 151.4조원이며, 2024년 기준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 79.1조원에 해당하는 대응자산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25년 9월에나 산출이 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성 자산은 국민주택채권 발행만을 통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며, 청약저축 납입액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금융성 자산 전체를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의 대응자산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문제가 있음.

실제 2024년 기준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은 97.5조원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인 79.1조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보다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이 더 큰 규모였음.

특히, 2023년 기준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은 95.3조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23년도 국민주택채권의 대응자산은 151.4조원으로 대응자산의 약 63%가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은 청약저축자가 납입하고 납입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임을 고려할 때 이 잔액을 국민주택채권의 대응자산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음. 참고로 정부가 제시한 대응자산 규모 151.4조원 중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 95.3조원을 제외할 경우 대응자산 규모는 56.1조원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에 대응

하는 충분한 상환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발행 및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국민주택채권 발행 잔액 | 78.9 | 82.2 | 82.2 | 81.6 | 79.1 |
| 정부에서 제시한 대응자산 규모(a) | 120.3 | 129.8 | 141.1 | 151.4 | 집계 중 |
|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b) | 83.4 | 96.3 | 95.5 | 95.3 | 97.5 |
| 대응자산 중 청약저축 납입액 제외 시 대응자산 규모(a-b) | 36.9 | 33.5 | 45.6 | 56.1 | 집계 중 |

자료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는 그 확보 재원을 대응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이차보전이나 보조금 등의 분야에도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성 자산 중에는 채무의 대응자산으로 볼 수 없는 청약저축 납입액 등도 포함되어 대응자산이 과다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금융성 채무로 분류되고 있는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역시 채권 발행 잔액에 비해 대응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며, 채무의 대응자산으로 제시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금융성자산 등에는 외환보유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채무를 상환하는데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체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를 금융성 채무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외환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구분하고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규모는 210.3조원으로, 금융성 채무(359.8조원)의 58.4%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및 대응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잔액(a) | 263.8 | 265.7 | 251.0 | 210.3 |
| 대응자산 규모(b) | 228.5 | 185.9 | 200.1 | 집계 중 |
| 대응자산 부족분(a-b) | 35.3 | 79.8 | 50.9 | -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우선 이러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최근 3년간 그 채무 규모에 비해 대응자산 규모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2023년 결산 기준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251.0조원인 반면, 정부가 집계한 대응자산의 규모는 200.1조원으로 채무에 비해 대응자산이 약 50.9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대응자산 부족은 최근 3년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2021년에는 그 부족분이 35.3조원, 2022년에는 그 부족분이 79.8조원이었음.

특히, 이러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대응자산은 실제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실질적인 의미의 대응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가 제시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대응자산은 외국환평형기금의 금융성 자산으로 외환 등 현금이나 예금 등이 포함됨. 그러나 이처럼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등은 외환보유고로 집계되어 실질적으로는 환율 변동성 완화 등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해당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용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채무가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정부는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66]로 분류하고 있으며, ①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②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 ③ 기타 금융성 채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①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최근 3년간 대응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며, 대응자산을 실질적인 상환 가능 재원으로 보기 어렵고, ② 서민주거 안정용 채무의 대응자산에 있어 청약저축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청약저축 납입액(2023년 기준 95.3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대응자산이 채무에 크게 미달한다는 점, ③ 기타 금융성 채무의 상당 부분은 대응자산이 부족해 자체 상환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이 현재 금융성 채무로 분류된 채무는 상당 부분 자체 상환이 어려운 채무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채무 및 국가재정 상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므로 기획재정부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만을 다시 분류하여 금융성 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는 체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66)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p.176

## (2) 국가 재정상태표의 순자산 과다인식 문제 개선 필요(총괄)

< 현 황 >

2024회계연도에 대한 국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가 재정상태표 상 자산은 3,218.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9조원(6.9%) 증가하였고, 부채는 2,585.7조원으로 전년 대비 146.2조원(6.0%)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632.7조원으로 전년 대비 62.8조원(11.0%)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자산·부채·순자산 현황]

(단위: 조원, %)

| 구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C=B-A) | 증감율(C/A) |
|---|---|---|---|---|
| **자산 합계(a)** | **3,009.4** | **3,218.4** | **209.0** | **6.9** |
| Ⅰ. 유동자산 | 551.3 | 576.3 | 25.0 | 4.5 |
| Ⅱ. 투자자산 | 1,276.3 | 1,448.1 | 171.8 | 13.5 |
| Ⅲ. 일반유형자산 | 720.9 | 732.2 | 11.3 | 1.6 |
| Ⅳ. 사회기반시설 | 422.4 | 424.0 | 1.6 | 0.4 |
| Ⅴ. 무형자산 | 2.8 | 2.8 | 0.0 | 0.9 |
| Ⅵ. 기타비유동자산 | 35.7 | 35.1 | △0.6 | △1.6 |
| **부채 합계(b)** | **2,439.5** | **2,585.7** | **146.2** | **6.0** |
| Ⅰ. 유동부채 | 219.9 | 234.7 | 14.8 | 6.7 |
| Ⅱ. 장기차입부채 | 874.3 | 913.8 | 39.6 | 4.5 |
| Ⅲ. 장기충당부채 | 1,293.4 | 1,383.5 | 90.1 | 7.0 |
| - 연금충당부채 | 1,230.2 | 1,312.9 | 82.7 | 6.7 |
| - 퇴직수당충당부채 | 53.3 | 58.9 | 5.6 | 10.6 |
| - 기타 | 9.9 | 11.6 | 1.8 | 18.0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51.9 | 53.7 | 1.8 | 3.4 |
| **순자산(a-b)** | **569.9** | **632.7** | **62.8** | **11.0** |

자료 : 국가 결산보고서

< 검토의견 >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은 국가 자산에는 포함되나 연금충당부채로는 인식되지 않아 불균형한 문제가 있으며, 해당 기금들의 자산은 향후 연금지급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해당 연금기금의 자산은 일반 국민들의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자산이 국가자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순자산이 과다하게 인식된 문제가 있음. 따라서 해당 자산 규모를 국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기하거나 해당 자산을 제외한 순자산 규모도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국가 재무제표의 순자산이 과다인식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 재정상태표 상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국가 재정상태표 상 자산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의 4대 연금기금의 자산 1,129조원이 포함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4대 연금기금 재정상태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4대 연금기금 합계 | 내부거래 제거 후 합계 |
|---|---|---|---|---|---|---|
| 자산(a) | 1,214 | 29 | 22 | 1 | 1,266 | 1,129 |
| 부채(b) | 2 | 1 | 1,111 | 267 | 1,380 | 1,378 |
| 순자산(a-b) | 1,213 | 28 | △1,089 | △266 | △114 | △250 |

자료 : 기금별 재무제표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국가 재정상태표 상 부채는 4대 연금기금 중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1,052조원 및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261조원만을 인식하고 있음. 이는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교환거래' 해당 여부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연금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예규)[67]은 국가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되는 연금

67) 「연금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예규)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4.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 (1)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하여 인식**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급여와 「군인연금법」 제7조의 급여 중 아래의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의 급여 중 상이연금을 추가로 포함한다.

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한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향후에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교환거래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재화 및 용역의 수취 대가로 미래 금전·기타자원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가 있을 경우 관련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에 국가와의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2024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에 포함된 4대 연금의 연금충당부채]**

(단위: 조원)

| 구분 |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
| 연금충당부채 | 0 | 0 | 1,052 | 261 |

자료 : 국가 결산보고서

이처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부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이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자산은 향후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상태표에는 전액 차입부채 등의 상환에 사용가능한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어 순자산이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달리 일반 국민들의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와의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국가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 2024년 국가 재정상태표 상의 순자산 633조원에서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순자산 중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합계 약 1,105조원을 제외할 경우, 국가의 순자산은 △473조원으로 음(-)의 순자산으로 전환됨.

[2024년 국가 순자산 및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 제외 순자산]

(단위: 조원)

| 구분 | 국가 재정상태표 (A)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 | | | 차감 (A-D) |
|---|---|---|---|---|---|---|
| | | 국민연금 (B) | 사학연금 (C) | 합계 (B+C) | 내부거래 제거 후 합계 (D) | |
| 순자산 | 633 | 1,213 | 28 | 1,241 | 1,105 | △473 |

자료 : 기금별 재무제표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가재무제표 상으로는 국가 순자산은 2020년 505조원 대비 2024년 633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년 570조원에 비해 약 6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순자산(내부거래 제거 후) 합계를 국가 전체 순자산에서 차감할 경우 그 실질적인 순자산 규모는 △473조원으로 2020년 △224조원 및 2023년 △365조원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국가재무제표 상 순자산 및 국민연금·사학연금 제외 후 순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국가재무제표상 순자산 | 505 | 671 | 508 | 570 | 633 |
| 국민연금·사학연금 제외 후 순자산(내부거래 제거) | △224 | △304 | △288 | △365 | △473 |

자료 : 기금별 재무제표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현재 국가재무제표상 순자산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자산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만 부채는 반영되지 않아 불균형한 문제가 있고,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사용이 제한되는 자산들이 국가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재무제표상 순자산이 과다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에 있어서 자산 중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 자산 규모는 별도로 표기하거나 국가 재무제표상 순자산 중 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 자산을 제외한 순자산 규모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순자산이 과다인식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해외 사례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

표상 부채로 인식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나,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을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등 국가별로 처리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3) 공공기관 분류 기준 재검토 및 지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등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사항

### (총괄)

< 현 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및 시행령은 공공기관을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공공기관 유형 분류기준]**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 colspan="3">분류기준</th></tr>
<tr><td rowspan="2">공기업</td><td>시장형</td><td rowspan="4">직원 정원 300명 이상,<br>총수입액 200억원 이상,<br>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이<br>총수입의<br>50% 이상</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br>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td></tr>
<tr><td>준시장형</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r>
<tr><td rowspan="2">준정부<br>기관</td><td>기금관리형</td><td rowspan="2">자체수입이<br>총수입의<br>50% 미만</td><td>기금 관리 또는 위탁 관리</td></tr>
<tr><td>위탁집행형</td><td>정부 업무 위탁집행</td></tr>
<tr><td colspan="2">기타공공기관</td><td colspan="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td></tr>
</table>

2025년 기준 공기업은 31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7개), 준정부기관은 57개(기금관리형 12개, 위탁집행형 45개)이며, 기타공공기관은 243개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정원 변동을 사유로 대한석탄공사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및 한국재정정보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변경하였음.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 구분 | 주무부처 | 기관명 | 지정 결과 |
|---|---|---|---|
| 신규 (+4) | 문체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 기타공공기관 |
| | 문체부 | 스포츠윤리센터 | 기타공공기관 |
| | 국토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 | 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기타공공기관 |
| 유형변경(3) | 산업부 | 대한석탄공사 | 공기업→기타공공기관 |
| | 산림청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기타공공기관→준정부기관 |
| | 기재부 | 한국재정정보원 | 기타공공기관→준정부기관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검토의견 >

공공기관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운법」[68] 및 시행령은 직원 정원과 총수입액, 자산규모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주체, 임원의 임명 절차 적용 여부나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음.

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차이점]

| 구분 |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
| 평가 |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 실시 | 주무부처가 경영평가 실시 |
| 임원 | 「공운법」상 임명 절차 적용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
| 재무 | 예비타당성조사,<br>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 | 예비타당성조사 제외,<br>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 제외 |

2023년 「공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이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원 기준에 미달하는 것만으로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2023년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정원 기준 300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개 기관 역시 정원 기준 미달을 사유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음. 2025년에는 대한석탄공사가 정원 기준 미달을 사유로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변경되었음.

그러나 기관의 총수입액이나 자산규모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회함에도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들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례로 2023년에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정원은 300명 미만이나 총수입액은 각각 4,203억원, 1,720억원으로 총수입액 기준(200억원 이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자산규모 역시 각각 7조 8,489억원, 3조 6,370억원으로 자산규모 기준(30억원 이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상황임.

또한,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총수입액은 6조 2,151억원, 자산규모는 26조 9,486억원에 육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총수입액 1조 326억원, 자산규모 5조 1,984억원 등 그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조 단위로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문제가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역시 총수입액이 798억원, 자산규모가 8,568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임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정원 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변경된 주요 기관 현황]

| 기관명 | 총수입액(억원) | 자산규모(억원) | 비고 |
|---|---|---|---|
| 부산항만공사 | 4,203 | 78,489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br>①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br>②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
| 인천항만공사 | 1,720 | 36,370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62,151 | 269,486 | |
| 서민금융진흥원 | 10,326 | 51,984 | |
| 대한석탄공사 | 798 | 8,568 | |

주: 총수입액은 2021~2023년 평균, 자산규모는 2023년 말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69]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 대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 차원[70]의 관리·감독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42년에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71]으로 그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8년 29%에서 2023년 614.2%로 급증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정부의 손실보전가능 조항이 존재하는 기관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단순히 정원 미달을 사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무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행과 같은 공공기관 유형 분류 체계는 정원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여 기관의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정원과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 유형을 분류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70)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71)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둘째,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재량이 많아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운법」[72]은 공공기관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73]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총 201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4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5개, 금융위원회 소관 23개, 국토교통부 소관 21개 순인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나 기관별 미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일례로,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회사들은 모회사인 공공기관이 지분율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공운법」제4조제1항제5호[74]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자회사들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73)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국회예산정책처

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기관명 | 모회사명 | 총수입액 | 자산규모 | 직원정원 | 공공기관 지정 여부 |
|---|---|---|---|---|---|
| 산은캐피탈 | 한국산업은행 | 628,171 | 9,537,324 | 258 | 지정 유보 |
| KDB인프라 자산운용 | | 39,007 | 73,868 | 72 | 지정 유보 |
| KDB비즈 | | 26,710 | 7,551 | 579 | 지정 유보 |
| KDB인베스트먼트 | | 35,036 | 131,257 | 16 | 지정 유보 |
| ㈜IBK시스템 | 중소기업은행 | 208,070 | 71,143 | 655 | 지정 유보 |
| IBK신용정보(주) | | 31,799 | 40,012 | 122 | 지정 유보 |
| IBK연금보험(주) | | 1,752,799 | 11,352,550 | 186 | 지정 유보 |
| IBK자산운용(주) | | 23,485 | 86,463 | 61 | 지정 유보 |
| IBK투자증권(주) | | 1,881,781 | 7,493,826 | 658 | 지정 유보 |
| ㈜IBK캐피탈 | | 669,330 | 11,036,496 | 265 | 지정 유보 |
| ㈜IBK저축은행 | | 111,075 | 1,737,380 | 136 | 지정 유보 |
| ㈜IBK서비스 | | 70,366 | 20,032 | 2,058 | 지정 유보 |
| ㈜IBK벤처투자 | | 2,546 | 95,678 | 13 | 지정 유보 |
| 캠코선박운용(주) | 한국자산관리공사 | 3,992 | 13,911 | 8 | 지정 유보 |
| ㈜캠코 시설관리 | | 46,583 | 8,833 | 831 | 지정 유보 |
| ㈜캠코씨에스 | | 6,583 | 2,014 | 135 | 지정 유보 |
| 예울FMC(주) | 예금보험공사 | 3,406 | 920 | 74 | 지정 유보 |
| 서울보증보험 | | 2,611,579 | 9,201,790 | 1,510 | 지정 유보 |
| 신보운영관리(주) | 신용보증기금 | 9,175 | 2,556 | 287 | 지정 유보 |
| 에이치에프파트너스(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 12,253 | 5,545 | 242 | 지정 유보 |

주: 모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들 현황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의 경우 본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고,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캐피탈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에 지정 해제된 바 있음. 기획재정부는 당시 이러한 지정 해제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지정의 실익이 적은 것인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모회사가 동일함에도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다른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역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일례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중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등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한전FMS, 한전CSC 등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음.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 중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반면,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나 보안관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음.[75)]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분이 50% 이상인 자회사 4곳 중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중진공파트너스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이 유보되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모회사가 동일함에도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모회사가 동일함에도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상이한 자회사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기관명 | 모회사명 | 총수입액 | 자산규모 | 직원정원 | 공공기관 지정 여부 |
|---|---|---|---|---|---|
| 한국전력기술 | 한국전력공사 | 534,581 | 945,383 | 2,228 | 지정 |
| 한전KPS | | 1,634,908 | 1,675,775 | 6,669 | 지정 |
| 한전KDN | | 753,310 | 846,360 | 3,021 | 지정 |
| 한전원자력연료 | | 328,688 | 1,060,367 | 1,163 | 지정 |
| 한전MCS | | 161,523 | 94,304 | 4,360 | 지정 |
| 한전FMS | | 107,078 | 16,410 | 2,110 | 지정 유보 |
| 한전CSC | | 48,501 | 17,430 | 994 | 지정 유보 |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가스공사 | 412,307 | 226,115 | 2,358 | 지정 |
|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 | 34,475 | 10,166 | 871 | 지정 유보 |
| 코가스보안관리 | | 16,718 | 4,342 | 422 | 지정 유보 |
| 한국벤처투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56,984 | 148,783 | 163 | 지정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570,434 | 277,931 | 297 | 지정 |

75)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나 보안관리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가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 기관명 | 모회사명 | 총수입액 | 자산규모 | 직원정원 | 공공기관 지정 여부 |
|---|---|---|---|---|---|
| 중진공파트너스(주) | | 10,368.33 | 2,221 | 208 | 지정 유보 |
| 중소벤처기업인증원 | | 2,975.67 | 3,827 | 20 | 지정 유보 |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한국도로공사 | 343,678 | 105,576 | 5,273 | 지정 |
|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 | 17,881 | 3,606 | 409 | 지정 유보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들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기준 및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지정 결과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해당 근거를 구체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범위의 상한 설정 등 제도 개선 필요 (총괄)

< 현 황 >

「국가재정법」 제21조 및 제67조[76]는 회계의 세출예산과 기금의 지출계획을 기능별·성질별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출예산 및 지출계획은 통상 '분야(장) - 부문(관) - 프로그램(항) - 단위사업(세항) - 세부사업(세세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결산 기준 총 1,274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 총 507개, 특별회계에 총 316개, 기금에 총 451개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음.

< 검토의견 >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범위는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기금의 경우 프로그램별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가 있어 자체변경 범위 역시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현행 프로그램 규모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범위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기금 지출의 경우 「국가재정법」[77]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범위를 주요항목의 20%(금융성 기금의 경우 30%)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주요항목을 프로그램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범위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짐.

---

76)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77)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그러나 일부 기금의 경우 프로그램별 규모가 과도하게 커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변경할 수 있는 범위 또한 과도하게 큰 문제가 있음. 2024년을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이나 내부거래를 제외한 기금별 프로그램 규모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프로그램의 규모는 43조 3,729억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 규모는 28조 2,699억원 등으로 프로그램 규모가 커 자체변경 범위도 각각 8조 6,746억원, 5조 6,540억원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금급여지급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지원(융자)' 프로그램의 규모도 약 13조원에 달해 자체변경 범위가 2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실제 2024년에 동 프로그램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1조 5,346억원을 증액한 바 있음.

**[2024년 기금별 프로그램 규모 상위 10개(내부거래 제외)]**

(단위: 백만원)

| 기금명 | 분야명 | 부문명 | 프로그램명 | 당초 계획액 | 수정 계획액 |
|---|---|---|---|---|---|
| 국민연금기금 | 사회복지 | 공적연금 |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 43,372,936 | 43,833,885 |
| 공공자금관리기금 | 일반·지방행정 | 재정·금융 | 공공자금관리 | 28,269,942 | 27,779,942 |
| 공무원연금기금 | 사회복지 |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급여지급 | 24,887,778 | 24,887,778 |
| 주택도시기금 |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지원(융자) | 12,917,096 | 14,451,696 |
| 주택도시기금 | 사회복지 | 주택 | 구입·전세자금 | 12,364,500 | 10,671,445 |
| 고용보험기금 | 사회복지 | 고용 | 고용안전망확충 | 11,429,432 | 12,400,364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사회복지 | 노동 | 산재보험 | 8,099,762 | 8,100,653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사회복지 | 공적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 5,336,873 | 5,701,691 |
| 주택도시기금 |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지원(출자) | 5,037,200 | 5,037,200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 4,918,197 | 4,918,197 |

주: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상위 10개 규모임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기금 프로그램의 규모가 과다하게 큰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범위 또한 과다하게 커져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또한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등원금상환’ 프로그램의 경우 그 계획액이 약 109조원 수준으로, 이에 따르면 자체변경 규모가 약 22조원에 달하는 상황임.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금간거래 프로그램들의 규모도 5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등 과도한 수준으로, 실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프로그램의 경우 2024년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약 15조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기금별 내부거래 프로그램 규모 상위 5개]**

(단위: 백만원)

| 기금명 | 분야명 | 부문명 | 프로그램명 | 당초 계획액 | 수정 계획액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일반·지방행정 | 재정·금융 | 차입금등원금상환 | 108,546,032 | 108,546,032 |
| 외국환평형기금 | 일반·지방행정 | 재정·금융 |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 94,647,550 | 94,647,550 |
| 공공자금관리기금 | 일반·지방행정 | 재정·금융 |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86,100,175 | 101,062,008 |
| 공공자금관리기금 | 일반·지방행정 | 재정·금융 | 기금간거래(예탁금) | 69,445,731 | 63,161,134 |
| 주택도시기금 | 사회복지 | 주택 | 차입금등원금상환 | 29,030,300 | 30,337,269 |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이러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내부거래 프로그램의 규모가 과다하게 큰 것을 활용하여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공자기금에 예탁금을 추가로 예탁하거나 미상환하는 등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대응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거치지 않은 재정운용이 정부 재량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를 채택한 바 있음.

이처럼 기금 프로그램의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 자체 변경 범위 또한 과다하게 커짐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기금이 운용되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2023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도 이로 인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 범위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등 명확한 금액 기준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운용함으로써 자체변경 규모가 과다하게 확대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5) 국회 증액사업의 수시배정 과다 및 미배정 부적절 등 (총괄, 예산실)

### < 현 황 >

수시배정 제도란 「국가재정법」 제43조[78]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2024년도에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사업 수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총 108개이며, 내역사업 기준으로는 124개임. 이 중 예산의 수시배정 사업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113개, 기금의 지출전 협의 사업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11개인 것으로 나타남. 수시배정 대상액은 총 6조 1,186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7,817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년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총 10조 9,702억원이 법률 개정 지연을 사유로 수시배정됨에 따라 2023년의 수시배정 대상액이 이례적으로 컸기 때문이며, 2022년과 비교해서는 수시배정 대상액이 1조 5,204억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수시배정 결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 세부사업 수 | | | | 대상액 | | | |
|---|---|---|---|---|---|---|---|---|
| | 2022 | 2023(a) | 2024(b) | 증감(b-a) | 2022 | 2023(c) | 2024(d) | 증감(d-c) |
| 수시배정 | 81 | 69 | 108 | 39 | 45,982 | 159,003 | 61,186 | △97,817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으로,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거나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사업, 당초 사업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78)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
□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 사업 근거 법령의 제·개정, 권리 의무 관계·외국과의 계약체결·공모절차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
□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 사업여건 변화로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정소요사업
○ 수행주체, 지원조건, 추진방식 및 계약내용 변경 등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자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 검토의견 >

수시배정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시배정 사업 중 국회 증액 사업의 수시배정 비중이 과다하고, 예산액이 전액 미배정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형해화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수시배정 내역 및 사유를 주기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준 수시배정된 사업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124개인데, 이 중 국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총 73개로 약 58.9%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과다한 문제가 있음. 또한, 수시배정이 된 대상액 대비 실제 배정률을 살펴보면, 수시배정된 전체 사업의 배정률은 95.7%인 반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의 배정률은 93.6%로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수시배정 사업 중 국회 증액 사업의 비중이 과다한 것은 국회 증액 시 정부의 동의를 거쳤음에도 수시배정을 통하여 그 집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회의 예산확정권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2024년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 증액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 수시배정 사업수 | | | 수시배정 대상액 | | | 배정률 | |
|---|---|---|---|---|---|---|---|
| 전체(a) | 국회증액(b) | 비율(b/a) | 전체(c) | 국회증액(d) | 비율(d/c) | 전체 | 국회증액 |
| 124 | 73 | 58.9 | 61,186 | 7,215 | 11.8 | 95.7 | 93.6 |

주: 내역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거제-마산국도건설' 등 15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대상액이 전액 미배정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도 수시배정된 국회 증액 사업 중 전액 미배정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 회계기금명 | 세부사업명<br>(내역사업명) | 수시배정<br>대상액 | 배정액 | 집행액 | 국회증액<br>규모 |
|---|---|---|---|---|---|---|
| 산업통상<br>자원부 | 일반회계 |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br>특화단지 지원 | 20,000 | 0 | 0 | 20,000 |
| 국토교통부 | 교특회계 | 거제-마산국도건설 | 5,000 | 0 | 0 | 5,000 |
| | |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 건설 | 3,000 | 0 | 0 | 3,000 |
| 문화체육<br>관광부 | 일반회계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br>(더아트강원콤플렉스 건립) | 3,000 | 0 | 0 | 3,000 |
| | | 종교문화시설건립<br>(광주 원효사 명상치유센터) | 1,000 | 0 | 0 | 1,000 |
| | 국민체육<br>진흥기금 | 대한체육회 운영지원<br>(기관운영비) | 1,000 | 0 | 0 | 1,000 |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 | 소부장<br>특별회계 | 한국재료연구원연구운영비<br>지원(R&D)<br>(차세대 첨단 복합빔<br>조사시설 구축) | 3,000 | 0 | 0 | 3,000 |
| 농식품부 | 고등평생교육<br>지원특별회계 | 영농아카데미<br>(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br>스마트팜 조성(나주)) | 2,520 | 0 | 0 | 2,520 |
| 행정안전부 | 일반회계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 200 | 0 | 0 | 200 |
| | 지특회계 | 접경권발전지원<br>(소양8교건설사업) | 1,000 | 0 | 0 | 1,000 |
| | | 접경권발전지원<br>(회암IC 지하차도 건설) | 1,000 | 0 | 0 | 1,000 |
| 여성가족부 |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br>(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 1,000 | 0 | 0 | 1,000 |
| 방위사업청 | 일반회계 | 부품국산화개발지원(R&D) | 400 | 0 | 0 | 400 |
| 국가보훈부 | 일반회계 | 지방보훈회관건립 | 250 | 0 | 0 | 250 |
| 환경부 | 일반회계 |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 150 | 0 | 0 | 150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미배정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였음에도 사실상 그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회 증액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과다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증액 사업 예산을 전액 미배정하여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재발하여 국회의 예산 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외적으로 수시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주기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수시배정 제도와 관련하여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수시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79]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시배정 대상액이 배정되었음에도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하거나, 수시배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수시배정사업 배정액 대비 집행률이 40% 이하인 사업은 15개이며, 이 중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8개임. 이러한 집행부진 사업을 그 사유에 따라 살펴보면,

① 우선 연말에 예산액이 배정됨에 따라 사실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국회 소관 '입법정보화' 사업이나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사업 등 3개 사업의 경우 수시배정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질병관리청 소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나 해양수산부 소관 '새만금신항(진입도로 등 개설)' 및 '일반항(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사업, 환경부 소관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진양호 특별보호구역 수달 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은 예산이 연말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말 또는 12월 말에 배정되어 사실상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이처럼 연말에 예산액이 배정되어 사실상 집행가능한 시기가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라는 수시배정제도가 오히려 예산의 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② 수시배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액을 배정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79)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00호

행복청 소관의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2024년 6월에 수시배정대상액이 전액 배정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됨에 따라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수시배정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전액 불용된 것으로 배정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북측 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시배정이 된 후 1분기인 2024년 2월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사업진행방식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률이 0.1%에 불과한 바 동 사업 역시도 수시배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2024년도 수시배정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 부처명 | 세부사업명<br>(내역사업명) | 배정액<br>(a) | 집행액<br>(b) | 집행률<br>(b/a) | 배정<br>분기 | 집행부진<br>사유 |
|---|---|---|---|---|---|---|
| 국토교통부 | 새만금신공항건설 | 32,651 | 1,351 | 4.1 | 2분기 | 사업적정성 검토(23.11~24.6)에 따라 턴키입찰 절차 변경으로 실시설계 착수 연기 |
| 국회 | 입법정보화<br>(국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8,600 | 0 | 0 | 3분기 | 수시배정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 |
| |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br>(도서관 빅데이터 연계) | 3,500 | 0 | 0 | | |
| | 국회청사유지및 관리<br>(고성연수원 증축) | 350 | 0 | 0 | | |
| 기획재정부 | 국회 헌정회관 신축사업 | 1,155 | 46 | 4.0 | 3분기 | 총사업비 협의 시기에 따라 설계 지연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향유지원<br>(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 17,000 | 4,240 | 24.9 | 1분기 | 패스 발급이 3월 말부터 시작되어 이용기간 부족 |
|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br>(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 필요성 연구) | 500 | 182 | 36.4 | 2분기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 | 노인건강관리<br>(요실금 치료 지원) | 2,000 | 257 | 12.9 | 2분기 | 예산 협의(24.7) 및 사업수행기관 공모(24.9)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 |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 11,600 | 1,107 | 9.5 | 2분기 | 계약방식 변경 |
| 질병관리청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330 | 0 | 0 | 4분기<br>(11.26) | 설계용역 계약이 12월부터 진행 |
| 해양수산부 | 새만금신항 | 10,424 | 11 | 0.1 | 1분기 | 합선형식 변경 |

| 부처명 | 세부사업명<br>(내역사업명) | 배정액<br>(a) | 집행액<br>(b) | 집행률<br>(b/a) | 배정<br>분기 | 집행부진<br>사유 |
|---|---|---|---|---|---|---|
| |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 | | | | 및 재제작 |
| | 새만금신항<br>(진입도로 등 개설) | 23,698 | 0 | 0 | 4분기<br>(12.24) | 계약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
| | 일반항<br>(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 300 | 0 | 0 | | 발주, 계약기간 소요로 미착수 |
| 행복청 | 대평동종합체육시설건립 | 100 | 0 | 0 | 2분기 | 사업 무산 |
| 환경부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br>(진양호 특별보호구역<br>수달 생태관찰원 조성) | 300 | 0 | 0 | 4분기<br>(11.22) | 용역 공고 진행 중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수시배정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 사업 중 예산 배정 대비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이 부진하거나 수시배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와 같은 법정지출에 대한 수시배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시배정의 기준이 모호한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에 수시배정된 사업 중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중 일부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중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사업의 수시배정 대상액, 비율, 배정액 및 최종 집행액은 다음과 같음.

**[2024년도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 수시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예산액(a) | 수시배정 | | | 집행액 |
|---|---|---|---|---|---|
| | | 대상액(b) | 비율(b/a) | 배정액 |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200,142 | 100,071 | 50.0 | 89,106 | 189,177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1,200,852 | 1,200,852 | 100 | 1,135,058 | 1,135,058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 925,421 | 462,711 | 50.0 | 462,711 | 893,699 |
|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 740,337 | 200,000 | 27.0 | 200,000 | 715,000 |
|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 185,084 | 185,084 | 100 | 185,084 | 178,800 |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 수시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및 지정 기준이 모호한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① 우선,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의 3가지 특별교부금 중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2개의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만 수시배정 지정을 하고 있으나, 그 명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함에도 교육부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수시배정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수시배정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② 또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법정지출로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여야 하는 등 그 지출금액이 정해져 있어 수시배정을 할 실익이 없음에도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들을 수시배정한 문제가 있음.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배분 비율[80]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 재원이므로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하여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시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그 집행을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예산액 중 수시배정 대상액의 비율이나 배정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전액 수시배정 지정을 하였으며, 일부는 예산액의 50%, 일부는 예산액의 27%를 수시배정 대상액으로 지정하는 등 사업별로 예산액 중 수시배정 지정의 비율이 상이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역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그 배정 비율 등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넷째, 기획재정부는 기금 사업에 대하여 사실상 수시배정제도와 동일한 '지출전 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이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기금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게 '지출 전 사전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을 기준으로 기금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80) 특별교부금 - 국가시책특별교부금 60%, 지역현안특별교부금 3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0%
특별교부세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0%, 지역현안특별교부세 4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0%

‘지출 전 협의’ 지정을 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11개로 전년(7개) 대비 증가하였음. 2024년의 지출 전 협의 대상액은 1,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2023년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의 수시배정 대상액이 컸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전년(211억원) 대비 지출 전 협의 대상액이 약 6.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지출 전 협의’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세부사업수 | 13 | 10 | 12 | 7 | 11 |
| 대상액 | 158 | 1,923 | 316 | 18,419<br>(건강보험 제외시 211) | 1,430 |

주: 2023년 수시배정대상액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의 수시배정 대상액이 1조 8,208억원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술한 바와 같이 예산의 수시배정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국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므로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예산의 수시배정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 사업에 대한 ‘지출 전 협의’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기금의 지출 전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법적 근거가 없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가재정법」 제85조[81]는 필요한 경우 기금에 대하여 예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준용 규정에 수시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금 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배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80조[82]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지출 전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81) **「국가재정법」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2)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 사업에 대한 ‘지출 전 협의’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운용의 예외적인 제도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수시배정에 대한 규정을 기금의 경우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준용하지 않는 사항까지 지침에서 이를 허용하고 규정하는 것은 지침이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사업에 대한 ‘지출 전 협의’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6)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임차료 지급 부적절 (총괄)

< 현 황 >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차료(210-07)은 ①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②장소·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③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④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⑤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⑥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에 따른 임차료 등의 집행을 위한 경비를 말함.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실·국별 임차료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실·국명 (임차료)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기획조정실 | 49 | - | 45 | - | 94 | 92 | - | 2 | 49 |
| 대변인실 | 4 | - | - | - | 4 | 4 | - | - | 4 |
| 인사과 | 750 | - | 130 | - | 880 | 777 | - | 103 | 367 |
| 운영지원과 | 550 | - | △153 | - | 397 | 376 | - | 21 | 500 |
| 예산실 | 766 | - | - | - | 766 | 710 | - | 56 | 766 |
| 세제실 | 95 | - | - | - | 95 | 60 | - | 35 | 89 |
| 경제정책국 | 12 | - | 2 | - | 14 | 13 | - | 1 | 12 |
| 정책조정국 | 40 | - | - | - | 40 | 19 | - | 21 | 38 |
| 미래전략국 | 40 | - | - | - | 40 | 10 | - | 30 | 40 |
| 경제구조개혁국 | 27 | - | - | - | 27 | 9 | - | 18 | 26 |
| 공공정책국 | 41 | - | - | - | 41 | 17 | - | 24 | 55 |

| 실·국명<br>(임차료)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고국 | 16 | - | - | - | 16 | 8 | - | 8 | 16 |
| 재정관리국 | 45 | - | - | - | 45 | 36 | - | 9 | 40 |
| 재정정책국 | 2,477 | - | - | - | 2,477 | 2,334 | - | 143 | 2,876 |
| 국제금융국 | 236 | - | △2 | 77 | 311 | 175 | - | 136 | 236 |
| 개발금융국 | 76 | - | △25 | - | 51 | 43 | - | 8 | 40 |
| 대외경제국 | 147 | - | △47 | - | 100 | 86 | - | 14 | 290 |
| 경제공급망기획관 | 12 | - | 2 | - | 14 | 13 | - | 1 | - |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 46 | - | - | - | 46 | 19 | - | 27 | 19 |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432 | - | △141 | - | 291 | 257 | - | 34 | 102 |
| 국고보조금<br>부정수급관리단 | 3 | - | - | - | 3 | 2 | - | 1 | 3 |
| 국민경제자문회의<br>지원단 | 759 | - | - | - | 759 | 755 | - | 4 | 759 |

< 검토의견 >

**외부 회의를 위한 장소 임차료(210-07)를 지급하면서 업무추진비(240)로 지급되어야 하는 식대 등을 함께 지급한 것은 임차료의 지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 예산에서는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세부사업에서는 세목별 한도 내에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임차료(210-07) 집행 과정에서 임차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진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A업체의 경우 회의장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어 임차료 집행과 업무추진비 집행이 모두 가능하며 회의장 임차비용은 종류에 따라 상이함.

**[룸 타입별 시간당 대관료]**

| 룸 타입 | 수용 인원(명) | 시간당 대관료(원) |
|---|---|---|
| A' | 2~4 | 33,000 |
| B' | 4~10 | 55,000 |
| C' | 12~20 | 110,000 |
| D' | 20~40 | 165,000 |
| E' | 40~60 | 220,000 |

외부 회의를 위한 장소 임차를 목적으로 A업체에 임차료를 지급한 바 있는 기획재정부 실·국은 기획조정실, 예산실을 비롯한 10개 실·국이며 총 지급된 금액은 2,500만원에 이르고 있음.

**[A업체에 대한 임차료 지출 내역]**

| 실·국명 | 지급 일자 | 건명 | 지출금액(원) |
|---|---|---|---|
| 기획조정실 | 2024-01-25 | 군장병 경제교육 간담회 회의실 임차료 지급 | 157,000 |
| | 2024-07-04 | 정책성과평가위원회 회의실 대관료 지급 | 1,296,500 |
| | 2024-07-09 | 24년 2차 갈등관리위원회 관련 회의장 임차료 지급 | 709,000 |
| 예산실 | 2024-03-25 | 국가보훈부 중기재정계획 관련 업무 협의 회의실 대관 | 109,000 |
| 세제실 | 2024-09-19 | 임차료 지급(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 회의) | 517,500 |
| | 2024-10-25 | 임차료 지급(제9차 한-베 FTA 관세위원회 회의실 임차료) | 4,902,000 |
| | 2024-12-04 | 임차료 지급(관세심의위원회 회의) | 1,280,000 |
| 국고국 | 2024-05-03 | 임차료 지급 (조달정책 민간전문가 간담회 4.30) | 270,000 |
| | 2024-05-22 | 5월 회의실 대관료 (국채과) | 211,500 |
| | 2024-06-24 | 6월 회의실 대관료 (국채과-WGBI 편입 관련 일본계 외신기자 간담회) | 405,000 |
| | 2024-07-29 | 7월 회의실 대관료 (국채과) | 300,000 |
| | 2024-08-19 | 8월 회의실 대관료 (국채과) | 202,000 |
| | 2024-08-19 | 8월 회의실 대관료 (국채과) | 237,000 |
| | 2024-08-30 | 회의실 임차료 지급 (KTB 클럽 회의) | 259,000 |
| | 2024-10-22 | 임차료 지급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명회 10.17) | 369,000 |

| | | | |
|---|---|---|---|
| | 2024-10-24 | 회의실 임차료 지급 (KTB 클럽 회의 10.22 ) | 292,000 |
| | 2024-12-11 | 회의실 대관료 지급(조달정책심의위 사전 간담회) | 600,000 |
| 미래전략국 | 2024-07-18 | 배출권 거래 시장 전문가 간담회 회의장 임차료 | 220,000 |
| | 2024-07-18 | 중장기위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회의 임차료 | 657,000 |
| | 2024-07-18 | 중장기위 노동·교육·복지 분과회의 임차료 | 546,000 |
| | 2024-09-23 | 중장기전략위원회 경제·산업·기후 분과회의 임차료 | 461,400 |
| | 2024-10-25 | 탄소가격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임차료 | 164,000 |
| | 2024-10-25 | 국제기후규범 대응방안 관련 간담회 임차료 | 400,000 |
| | 2024-11-26 | 기후금융 전문가 간담회 회의장 임차료 지급 | 110,000 |
| | 2024-11-26 | 기후금융 전문가 간담회 회의장 임차료 | 127,500 |
| | 2024-12-31 |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판로 확대방안 (제3차 전문가 간담회) 회의장 대관료 지급 | 546,000 |
| 개발금융국 | 2024-03-25 | MDB 신탁기금 관련 컨퍼런스하우스 임차 | 187,000 |
| | 2024-04-25 | 아프리카.중남미 관심기업 간담회 관련 컨퍼런스하우스 임차 | 220,000 |
| | 2024-06-10 | 케냐 공공서비스부 차관 면담 관련 컨퍼런스하우스 임차 | 88,000 |
| | 2024-06-26 | 빌게이츠 재단회의 관련 컨퍼런스하우스 임차료 | 33,000 |
| | 2024-09-10 | ODA 전문가 간담회 관련 임차료 | 341,500 |
| | 2024-11-10 | 유상 ODA 전문인력 양성 간담회 임차 | 183,000 |
| 재정관리국 | 2024-01-30 | 회의실 임차료 지급_부담금 혁신 민간TF 회의(1.23) | 490,000 |
| | 2024-02-16 | 부담금 혁신 민간TF 회의(2.7) 회의실 대관료 지급 | 376,000 |
| | 2024-02-28 | 회의실 대관료 지급_제2차 자산운용소위원회(2.22) | 506,000 |
| | 2024-02-28 | 회의실 대관료 지급_제1차 자산운용소위원회(2.21) | 516,000 |
| | 2024-03-11 | 회의실 대관료 지급_제4차 자산운용소위원회(3.5) | 580,000 |
| | 2024-03-11 | 회의실 대관료 지급_제3차 자산운용소위원회(3.4) | 550,500 |
| | 2024-03-26 | 회의실 대관료 지급_재정현안 관계 차관 간담회(3.14) | 890,000 |
| | 2024-03-28 | 회의실 대관료 지급_부담금 정비방안 관련 민간위원 간담회(3.20) | 425,000 |
| | 2024-07-09 | 회의실 대관료 지급_연기금투자풀 제도개편 민간전문가 간담회(7.5) | 364,000 |
| | 2024-07-11 | 회의실 대관료 지급_연기금투자풀 주간사 운용현황 점검 회의(7.10) | 405,000 |
| | 2024-07-15 | 회의실 대관료 지급_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간담회(7.12) | 125,000 |
| | 2024-07-22 | 회의실 대관료 지급_부담금관리기본법 간담회(7.19) | 153,000 |
| | 2024-07-29 | 회의실 대관료 지급_연기금투자풀 민간전문가 간담회(7.26) | 337,000 |

| | | | |
|---|---|---|---|
| | 2024-09-26 | 회의실 대관료 지급_대체투자자문단 회의(9.25) | 350,000 |
| | 2024-10-25 | 회의실 대관료 지급_대체투자자문단 회의(10.24) | 396,000 |
| | 2024-11-05 | 회의실 대관료 지급_제2차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 소위원회 개최(11.4) | 645,000 |
| 재정정책국 | 2024-07-12 | 재정전문가 간담회 대관료 지급요청 | 521,400 |
| | 2024-11-21 | 재정교육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대관료 지급요청 | 360,200 |
| | 2024-12-19 | 회의실 사용대금 지급요청 | 495,000 |
| 정책조정국 | 2024-02-26 | 중소기업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회의실 임차료 지급 | 260,000 |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2024-09-13 | 회의실 대여 임차료 정산 의뢰(서비스 수출 실무협의체 회의) | 407,000 |
| 계 | | | 25,553,000 |

원칙적으로 임차료는 장소 대여를 위한 비용만이 지출되어야 하나, 기획재정부의 일부 실국에서는 임차료를 통해 회의 대상자를 위한 식대까지 함께 지출한 것으로 보임. 회의 대상자를 위한 식사 비용은 사업추진비(240-01)나 관서업무추진비(240-02)를 통해 지출되어야 하며 공식 회의 경비, 기관 내·외 간담회를 위한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가 각 실·국마다 배정되어 있음.

일례로, 세제실은 2024년 11월 29일 13명이 참석한 관세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A업체의 공간을 2시간 동안 임차하였으며 「국제조세협력」 내 임차료를 통해 1,280,000원을 A업체에 지급하였음. 이는 시간당 임차료가 64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A업체의 가장 큰 회의장의 시간당 임차 금액을 2.9배 초과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볼 때, 지급된 임차료에는 공간 임차 외에 식대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국제조세협력」은 사업추진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분을 임차료로 지급한 부적절한 집행에 해당함.

이처럼, 임차료를 통해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임차료의 당초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83]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아울러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임차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지출할 경우,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절차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8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어야 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업무추진비의 자율적인 증액을 금지하고 있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원칙을 우회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임차료와 업무추진비를 구분 없이 집행할 경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세목을 구분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문제를 임차료 부분과 식사비용을 별도로 지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겠음[84].

84) 정책조정국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회의실 임차 비용(260,000원)과 기타 제반 비용(480,000)을 구분하여 각각 임차료와 사업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하였음

### (7)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작성 및 증빙 불가능한 부실 보고서 작성 등 국외출장 관련 개선사항(총괄)

< 현 황 >

국외업무여비(220-02목)란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해외출장을 수행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를 의미함.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중 국외업무여비(220-02)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포함하여 60억 4,800만원으로 이 중 5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중 국외업무여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목명 (세목코드)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외업무여비 (220-02) | 5,856 | - | 192 | - | 6,048 | 5,071 | - | 977 | 6,337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 국외업무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공무 수행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국외출장 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출장규정」[85]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85)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출장규정」**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 출장 결과나 활동 내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국외출장 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외출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공무 수행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결과보고서가 지나치게 간략하여 국외출장의 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기획조정실에서 2024년 실시한 6건의 국외출장 중에서도 'CEE 컨퍼런스 참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논의'의 2건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는 공무 수행에 대한 단 한 장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출장기간동안 출장 계획서에 기재된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증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공공정책국의 경우 2024년 9건의 국외출장 중 'OECD 국제정책포럼'의 경우 출장 일정 중 국제정책포럼 참가 사진을 제외한 OECD 대표부 면담이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현지 간담회에 대해서는 단 한 장의 사진도 없어 일정 수행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시사점은 단 한 줄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OECD 작업반회의' 결과보고서 역시 4박 6일 간의 출장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은 단 한 장에 불과하며, 결과보고서 역시 총 두 장 분량으로 상세한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OECD 국제정책포럼’, ‘OECD 작업반회의’ 출장 결과보고서]



국외출장보고서

1. 출장 개요

○ 목적 :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 기간 : '24. 10. 30(수) ~ '24. 11. 2(토)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프랑스, OECD 본부

○ 출장자 인적사항 : 기획재정부 박준호 공공정책국장,
공공정책국 양재영 경영관리과장,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박주현 사무관
평가분석과 김재현 사무관
경영관리과 신동호 사무관

2. 출장 내용

□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참석

* 2nd OECD-Korea Seminar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논의, 한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논의 소개

* '05년 제정 후 '15년 1차 개정, '24년 2차 개정
**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7장 '공기업과 지속가능성' 챕터를 신설
→ 지속가능한 경영목표 설정, 투명한 정보공개, 정기적 성과평가 등을 강조

○ 한국의 알리오(ALIO) 통합공시 소개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 증진 방안 논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경영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 모색

< 회의 사진 >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업국 부국장 면담

○ 12월 필리핀에서 개최예정(24.12.12~13.)인 17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 개최 준비 논의

* 공식명칭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작업반 아시아 지역회의
** 아시아 국가 및 OECD, WB, ADB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본부대 등 공기업 정책사례 공유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쟁점 및 향후 공기업작업반 추진과제 논의

○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아시아 네트워크, 공기업 작업반 등을 통하여 한-OECD간 정책협력 지속

□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현지 간담회

○ 파리 소재 현지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업무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한-OECD 공공기관 정책 협력 강화 및 고위급 협력 채널 확대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4.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 보도자료('24.11.1.)

■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출장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1. 출장 개요
○ 목적: 제42차 OECD 공기업 및 민영화 작업반 회의 참석 등
○ 기간: ' 24.3.10(일) - ' 24.3.15(금) (4박 6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프랑스(파리), OECD 본부
○ 출장자 인적사항: 이하준 사무관

2. 출장 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3.12.) 제42차 OECD 공기업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회의 참가국 대표들과 논의하였음. 이미 수차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 막바지 단계였으므로, 표현 또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종국을 비롯해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이 observer 자격으로 참관하였음. 종국 대표는 특히 정부의 자국 공기업에 대한 보조 등과 관련해 level playing field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대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회의 막바지에 OECD의 'Draft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2025-2026' 발표가 있었음. 해당 발표 이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이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며, OECD의 공기업 작업반이 향후 본 개정안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 (3.13.) 3.12.회의에 이어 제42차 OECD 공기업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또한 아제르바이잔 대표가 자국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해나가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음.
회의가 끝날 무렵 올 가을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개최할 'OECD-Korea Forum on SOE Governance' 의 개최를 알리고, 회의장에 있는 각 국 대표분들을 다시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회의 종료 후, 미국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미국 대표는 기회가 된다면 'OECD-Korea Forum on SOE Governance' 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싶다는 취지로 화답하며 일정을 마무리 함.
* 계획에 따라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3. 정책 시사점
○ 시사점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2005년에 최초 제정된 이후, 그 내용과 표현 및 용어 등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정되는 중임. 과거에는 'fully or majority-owned'라는 표현이 쓰였다면 현재는 'control'이라는 표현도 쓰는 등, 가이드라인이 보다 더 정교화되고 구체화되는 중. 따라서, 우리도 변화하는 OECD 가이드라인의 개정 방향 등을 검토하여, 향후 공기업 관련 정책에서 OECD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정책 기능과 공기업 경영 간 분리 등의 이슈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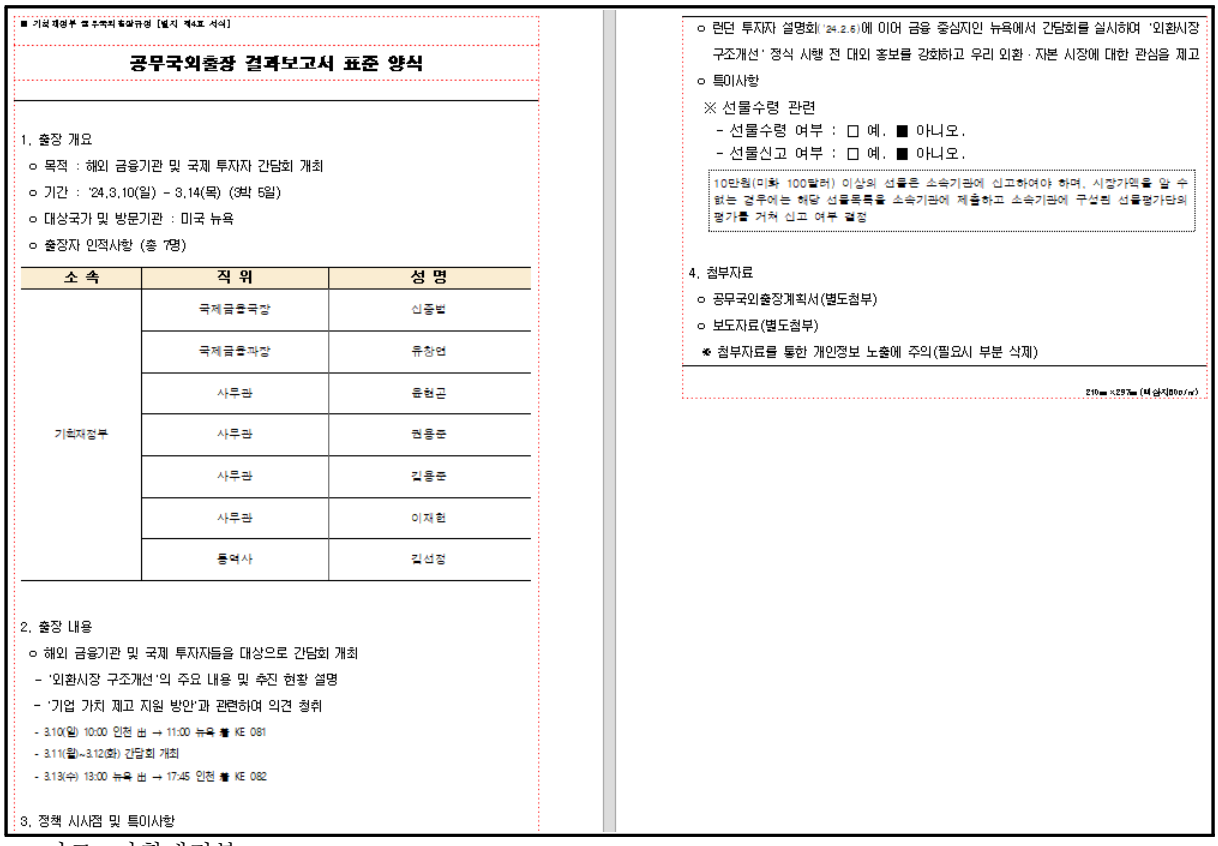
○ 특이사항: 없음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4.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지출증빙자료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역시 2024년 총 7건의 국외출장 중 ‘예술형 주화 관련 출장’, ‘뉴욕 IR 출장’ 등 총 5건의 출장 결과보고서에 공무 수행을 증빙할 만한 사진 자료가 단 한 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금융국과 함께 국외출장을 수행한 ‘뉴욕 IR 출장’의 경우 경제정책국 및 국제금융국에서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가 반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에 불과한 등 역시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이러한 출장 내역들은 구체적인 방문대상이나 면담자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출장에 대한 증빙도 어려운 상황임.

[‘뉴욕 IR’ 출장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부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1. 출장 개요
 ○ 목적 : 해외 금융기관 및 국제 투자자 간담회 개최
 ○ 기간 : '24.3.10(일) - 3.14(목) (3박 5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미국 뉴욕
 ○ 출장자 인적사항 (총 7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장 | 신종빈 |
| | 국제금융과장 | 유창엽 |
| | 사무관 | 윤현근 |
| | 사무관 | 권용준 |
| | 사무관 | 김용준 |
| | 사무관 | 이재현 |
| | 통역사 | 김선정 |

2. 출장 내용
 ○ 해외 금융기관 및 국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설명
 - '기업 가치 제고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 청취
 - 3.10(일) 10:00 인천 出 → 11:00 뉴욕 着 KE 081
 - 3.11(월)~3.12(화) 간담회 개최
 - 3.13(수) 13:00 뉴욕 出 → 17:45 인천 着 KE 082

3. 정책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런던 투자자 설명회('24.2.6)에 이어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 전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외환·자본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4.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도첨부)
 ○ 보도자료(별도첨부)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210mm×297mm (백상지80g/㎡)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인사과의 경우 2024년에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한 점검’을 이유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출장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용휴직자를 6번에 걸쳐 면담한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진으로 증빙할 수 있는 건은 2번에 불과하여 출장 목적 및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 중 상당수는 공무 수행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이 저하되고 국외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결과보고서의 부실한 작성은 내실 있는 국외출장의 수행을 어렵게 하며, 국외출장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성과로 환류시키기 위한 국외출장 본연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건의 경우 출장 사진 등을 추후 보완하였거나 보완 예정이라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국외출장 건에 대하여 공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문목적, 방문기관, 면담자, 면담내용, 면담 증빙자료 등을 구

비하도록 사후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증빙 자료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감사담당관실은 보안 등을 이유로 2024년 실시한 국외출장 3건 전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미등록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민감정보 등을 제외하고 결과보고서를 등록할 필요가 있음.**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로 2024년 파리, 홍콩, 싱가폴에 총 3건의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은 동 3건의 국외출장 전체에 대해서 보안 상의 사유로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해외사무소 복무점검에 대한 사항으로서 향후 한국수출입은행 기관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공개될 경우 기관감사 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감사담당관실 2024년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실국명 | 세부사업명 | 출장지 | 인원 | 기간 | 출장비 | 출장목적 |
|---|---|---|---|---|---|---|
| 감사 담당관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기획조정실) | 파리 | 2 | 24.1.29 ~ 24.2.3 | 7.2 | 청렴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등 산하기관 해외사무소 점검 |
| | | 홍콩 | 3 | 24.1.29 ~ 24.2.3 | 8.3 | 선진국 공기업의 감사제도 연구 등 산하기관 해외사무소 점검 |
| | | 싱가폴 | 3 | 24.1.21 ~24.1.26 | 9.4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86]은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로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산하기관 해외사무소의 복무 점검을 위한 국외출장이 이처럼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밀성이 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2024년에 인사과에서 실시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점검'을 위한 국외출장 역시 해외 근무자들에 대한 복무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국외출장과 유사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인사과에서 실시한 국외출장

8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경우 동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게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하기관 해외사무소 복무 점검 역시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특별한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감사담당관실은 이에 대하여 해당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현지 고용 외국인 등과의 면담도 포함되어 있어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보안이 필요하므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출장 결과보고서는 국외출장이 내실있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 개개인의 신상정보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등록·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3건의 국외출장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조속히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기밀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과보고서 등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하나의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본경비와 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가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의결하는 취지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며,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대변인실은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및 외신인터뷰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대변인실 기본경비에서 1,500만원, 정책홍보사업에서 270만원으로 각각 나누어 집행하였음.

**[동일 국외출장에 대하여 2개 세부사업으로 집행한 2024년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실국명 | 세부사업명 | 출장지 | 인원 | 기간 | 출장비 | 출장목적 |
|---|---|---|---|---|---|---|
| 대변인실 | 정책홍보사업 | 미국 (뉴욕, 워싱턴) | 1 | 24.10.21. ~ 24.10.28. | 2.7 |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및 외신인터뷰 수행 |
|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대변인) | | 2 | | 15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1건의 국외출장에 대한 경비를 일반적인 사업비와 기본경비의 2개의 세부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은 일반 사업에서 집행하여야 할 국외여비가 부족하자 그 부족액을 기본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비와 기본경비는 편성 목적에서 엄격히 구분되며, 정부의 예산안 제출 및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이는 별도의 프로그램(항)으로 명확히 구분됨. 특히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기본경비로 집행할 경우,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 이상의 과도한 기본경비가 편성될 우려가 있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본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또한, 기본경비는 조직의 특성 차이로 인해 적정한 필수비용의 수준을 알기 어려워 점증주의적인 예산 편성·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바, 심사 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본경비는 사업비와 엄격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1건의 국외출장에 대하여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혼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8) 보조금법상 국고보조금 감사인 검증의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총괄)

### < 현 황 >

2024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총액은 109조 1,000억원으로, 예산 총액 656조 6,000억원 중 16.6% 규모임. 국고보조금 중 자치단체 이전은 89조 2,667억원이고, 민간이전은 19조 8,153억원이며, 보조사업 수는 23만 563개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등”이라 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원)[87] 이상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함)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88]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하고 있고[89],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하고 있음[90].

---

8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8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또한, 현행 보조금법은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91]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라 감사인은 보조사업등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동 사업 집행 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도 기준 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규모가 1억원 이상으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되는 민간보조사업은 20,238개이고,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2,230개임.

---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 [2024년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 개)

| 금액 기준 | 전체 | 민간보조사업 | 지자체 보조사업 |
|---|---|---|---|
| 전체 보조사업 | 225,172 | 92,298 | 132,874 |
| (전체대비 비중, %) | (100.0) | (100) | (100) |
| 1억 미만 | 191,281 | 72,060 | 119,221 |
| (전체대비 비중, %) | (84.9) | (78.1) | (89.7) |
| 1억 이상 ~ 3억 미만 | 15,706 | 10,442 | 5,264 |
| (전체대비 비중, %) | (7.0) | (11.3) | (4.0) |
| 3억 이상 ~10억 미만 | 10,578 | 6,694 | 3,884 |
| (전체대비 비중, %) | (4.7) | (7.2) | (2.9) |
| 10억 이상 | 7,707 | 3,102 | 4,605 |
| (전체대비 비중, %) | (3.4) | (3.4) | (3.4) |

자료: 기획재정부

## [2024년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 현황]

(단위 : 개)

| 금액 기준 | 민간보조사업자 | 비고 |
|---|---|---|
| 전체 | 45,437 | |
| (전체대비 비중, %) | (100) | |
| 3억 이상 ~ 10억 미만 | 3,312 | |
| (전체대비 비중, %) | (7.3) | |
| 10억 이상 | 2,230 | |
| (전체대비 비중, %) | (4.9)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자등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검증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제도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은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일정 규모의 보조사업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또한, 2023년에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92]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징후 사업 수 및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억원, %)

| 구 분 | 부정징후 사업 수 | | 부정수급 적발 건수 | | |
|---|---|---|---|---|---|
| | 건수(A) | 금액 | 건수(B) | 금액 | 징후대비 적발률(B/A) |
| 2020년 | 3,853 | 2,662 | 132 | 31.5 | 3.4 |
| 2021년 | 4,243 | 1,757 | 231 | 34.8 | 5.4 |
| 2022년 | 4,603 | 2,379 | 260 | 98.1 | 5.6 |
| 2023년 | 7,521 | 5,340 | 493 | 699.8[93] | 6.6 |
| 2024년 | 8,079 | 4,522 | 630 | 493.0 | 7.8 |
| 합계 | 28,299 | 16,660 | 1,746 | 1,357.2 | 6.2 |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감사원·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 주관 감사에서 민간 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부적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 따라 1억원 이상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검증기관”이라 함)의 검증

92) 대통령령 제33546호(2023. 6. 20. 시행)
93) 699.8억원 중 318.9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기관의 검증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검증의 고의·과실에 따른 오류·누락 발생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9조에 따라 검증기관 선정이 제한되고, 보조금법에 따라 벌칙을 부과[94]할 수 있는데, 보조금법상 벌칙 규정은 거짓 보고한 보조사업자와 공모한 검증기관(형법상 공범)까지 처벌이 가능[95]하며, 「공인회계사법」(이하 "공인회계사법"이라 함)에 따라 감사·증빙의 중대한 착오·누락 시 검사인을 징계할 수 있고, 고의로 허위 보고 시 벌칙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및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정산 검증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보조금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 중 보조금법에 따른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대상 건수는 2024년 기준 336건으로, 2020년 32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검증기관의 검증 절차 및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보조사업자 중 정산 검증대상 현황]**

(단위: 건)

| 구 분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대상 |
|---|---|---|
| 2020년 | 132 | 32 |
| 2021년 | 231 | 81 |
| 2022년 | 260 | 94 |
| 2023년 | 493 | 200[96] |
| 2024년 | 630 | 336 |
| 합계 | 1,746 | 743 |

자료: 기획재정부

9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95) (법무법인 태평양, 2023. 11.) 보조사업자와 검증기관이 공모하여 고의로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형법상 공범규정을 근거 모두 처벌이 가능

한편, 제22대국회에서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정산 검증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적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검증기관의 검증의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개정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증 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자등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검증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제도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6)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대상 사업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

## (9) 수출전략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과다 편성에 대한 주의 필요 등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정책조정국)

< 현 황 >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은 주요 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은 13억 5,900만원으로 이 중 1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1331-301) | 1,319 | 1,319 | 70 | △30 | - | 1,359 | 1,220 | 32 | 107 | 1,322 |
| - 경제정책조정 | 559 | 559 | - | - | - | 559 | 466 | - | 93 | 561 |
| -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180 | 180 | - | - | - | 180 | 168 | - | 12 | 180 |
| - 글로벌포럼개최 | 210 | 210 | - | - | - | 210 | 210 | - | - | 260 |
| - 경제정책개발 | 370 | 370 | 70 | △30 | - | 410 | 376 | 32 | 2 | 320 |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2024년 수출전략회의를 6차례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동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바,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와 같이 예측 수요가 부진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의 내역사업인 「경제정책조정」 사업에 2024년 수출전략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음.

수출전략회의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23일 처음 개최[97]되었는데, 동 회의는 업종·지역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신성장 수출 도력 확보 및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2025년 6월 현재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음. 참고로,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였고, 제6차 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였음.

97) 출처: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11.23)

**[수출전략회의 개최현황]**

(단위: 천원)

| 차수 | 날짜 | 총비용<br>(기재부 분담비용) | 부처별 분담비율 | 참고사항 |
|---|---|---|---|---|
| 1차 | 2022.11.23. | 43,858<br>(14,912) | 3개 부처 안분<br>(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br>세목조정 |
| 2차 | 2022.11.24. | - | 확인불가 | 방산수출 전략회의 개최,<br>기재부 미참석<br>(담당: 산자부, 국방부) |
| 3차 | 2023. 1.31. | 83,700<br>(9,300) | 9개 부처 안분<br>(기재부, 과기부, 국방부,<br>농림부, 산업부, 환경부,<br>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br>세목조정 |
| 4차 | 2023. 2.23. | - | 확인불가 | 기재부 참석,<br>별도의 비용부담 없었음<br>(담당: 산자부) |
| 5차 | 2023. 6. 1. | 59,714<br>(19,905) | 3개 부처 안분<br>(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br>세목조정 |
| 6차 | 2025. 2.18. | - | - |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수출전략회의는 2022년 2차례, 2023년 3차례 개최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중 제1차(2022.11.23.), 제3차(2023. 1.31.) 및 제5차(2023. 6. 1.) 회의의 개최비용을 부담하였음. 각각의 비용은 회의 참석부처가 안분하는 방식으로 부담하여 기획재정부는 1차 14,912천원, 3차 9,300천원, 5차 19,905천원을 부담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해당 비용을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6차례의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여 회당 1,500만원씩 총 7,500만원의 일반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수출전략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2025년 2월 1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수출전략회의는 별도의 예산집행이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수출전략회의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수출전략회의는 2022년 및 2023년 사이에 5차례 개최되었고 개최 비용도 관계 부처

가 안분하여 부담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부담한 회의는 5차례 중 3차례에 불과하므로 1,500만원이 소요되는 회의를 1년간 6차례 개최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실제 수요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수출전략회의는 과거에도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정례화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동 회의를 위해 일반용역비를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와 같이 예측 수요가 부진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제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의 내역사업인 「경제정책개발」 사업은 경제정책과 관련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비를 편성·집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음.

동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 2건, 2023년 11건, 2024년 10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실시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3년간 실시한 23건의 정책연구용역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수행된 정책연구용역이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98]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학술연구 용역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에 대한 전문성 및 연구경험, 관련분야 전문가·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임.

---

9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최근 3년간 경제정책개발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약상대방 | 계약유형 |
|---|---|---|---|---|---|
| 2022 |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 제고방안 | 20 | 22.10.24~22.12.16 | 한국개발연구원 | 수의 |
| |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 연구 | 20 | 22.11. 1~23. 1.31 | 한국법제연구원 | 수의 |
| 2023 | 경제형벌 체계화를 위한 법률단위 개선방안 연구 | 10 | 23. 5.23~23. 8.22 | 한국법제연구원 | 수의 |
| |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법률단위 개선방안 연구 | 10 | 23. 5.23~23. 8.22 | 한국형사·법무정책연수원 | 수의 |
| | 국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연구 | 30 | 23. 4.26.~23. 7.25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수의 |
| | 규제혁신 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 50 | 23. 4.20~23. 5.19 | 한국개발연구원 | 수의 |
|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추진방향 연구 | 50 | 23.12.15~24. 6.21 | 산업연구원 | 수의 |
| |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40 | 23. 4.26~23. 9.2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수의 |
|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 50 | 23. 5.23~23.11.22 | 국토연구원 | 수의 |
| |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50 | 23.11.13~24. 3.12 | 육아정책연구소 | 수의 |
| | 상조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50 | 23.11.13~24. 3.12 | 고려대 산학협력단 | 수의 |
| |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30 | 23. 5.22~23. 8.21 | 한국규제학회 | 수의 |
| | 중소기업 정부지원 개선방향 | 50 | 23. 9.21~24. 1.31 | 한국개발연구원 | 수의 |
| | 플랫폼 자율규제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 50 | 23.12.15~24. 5.14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의 |
| 2024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연구 | 30 | 24. 2.29~24. 6.2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수의 |
| | 부처별 운영중인 특구제도 합리화 방향 | 50 | 24. 3.25~24. 9.24 | 한국지역학회 | 수의 |
|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방안 | 40 | 24. 4. 1~24. 6.30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수의 |
|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 연구 | 20 | 24. 4. 1~24. 6.30 | 한국법제연구원 | 수의 |
| |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 40 | 24. 4. 1~24. 8.30 | 계명대 산학협력단 | 수의 |
|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형벌 정비 방안 연구 | 15 | 24. 4.30~24. 6.30 | 한국법제연구원 | 수의 |
| | 결혼서비스산업 지원법 제정 연구 | 30 | 24. 5. 1~24. 8.15 | 충북대 산학협력단 | 수의 |

| 구분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약상대방 | 계약유형 |
|---|---|---|---|---|---|
| |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 45 | 24. 9.27~24.12.27 | 한국규제학회 | 수의 |
| | 기업규모별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 40 | 24.10.14~25. 7.13 | 한국개발연구원 | 수의 |
|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투자 지원방안 | 30 | 24.12.19~25. 6.18 | 산업연구원 | 수의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러나 동일주제 또는 유사 주제에 대한 용역을 다양한 기관이 수행하였다는 점, 제도개선 및 개선방안 연구 등과 같은 일반적인 연구가 가능한 용역은 수의계약의 필요성 크지 않다는 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일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채택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0)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예산 전용 과다 및 비공개 관행 개선 필요 (국제조세협력·국내조세협력, 세제실)

< 현 황 >

「국제조세협력」은 WTO·DDO 협상, APTA 상임위원회, FTA 협상 등의 국제협상, OECD·UN 등 조세 관련 국제회의 및 조세조약 협상 등을 지원함으로써 증가하는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4억 9,300만원으로, 7,500만원을 전용(감)하고 이 중 1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내조세협력」은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9억 2,700만원으로, 3,300만원을 전용(감)하고 이 중 8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0만원을 이월하고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국제조세협력·국내조세협력 사업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국제조세협력 (2131-301) | 1,493 | - | - | △75 | - | 1,418 | 1,181 | - | 237 | 1,610 |
| - 정책연구비(260-02) | 185 | - | - | △50 | - | 135 | 135 | - | - | 185 |
| 국내조세협력 (2131-308) | 927 | - | - | △33 | - | 894 | 815 | 40 | 39 | 935 |
| - 정책연구비(260-02) | 70 | - | - | - | - | 70 | 20 | 40 | 10 | 70 |

한편, 정책연구비 예산(260-02목)은 정책개발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다양한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집행되는 예산임.

2024년도 세제실 소관 정책연구비 예산은 국제조세협력 세부사업(2131-301) 1억 8,500만원, 국내조세협력 세부사업(2131-308) 7,000만원으로 총 2억 5,500만원임.

이 예산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여 조세제도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3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3건만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경쟁입찰원칙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2020년에 총 9건 중 8건(88.9%)이 수의계약, 2021년에 총 9건 중 9건 모두 수의계약, 2022년에 총 8건 중 6건(75.0%)이 수의계약, 2023년에 총 2건 중 2건 모두 수의계약, 2024년에는 총 6건 중 6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전체 3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이 31건(91.2%), 경쟁입찰이 3건(8.8%)에 불과할 정도로 수의계약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최근 5년간 국제조세협력 사업 정책연구용역 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과제명(집행내역) | 집행액 | 계약방법 | 공개여부 | 수행기관 |
|---|---|---|---|---|---|
| 2020 | 면세점 산업의 경쟁도 평가 | 30 | 수의 | 비공개 | 산업연구원 |
| | ITA 양허세율표 개선방안 연구 | 20 | 수의 | 비공개 | 국제원산지정보원 |
| | FTA 원산지 통관분야 개선방안 연구 | 43 | 경쟁 | 비공개 | 중소기업정책개발원 |
| | FTA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율표 점검 | 20 | 수의 | 공개 | 국제원산지정보원 |
| | WTO 양허세율표 개정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 20 | 수의 | 비공개 | 비티소프트 |
| | 한이스라엘 및 한인니 FTA 협정관세율표 작성 및 검증 | 10 | 수의 | 비공개 | 국제원산지정보원 |
| 2021 | HSK 2022에 따른 FTA 협정관세율표 개정방안 연구 | 100 | 수의 | 비공개 | 국제원산지정보원 |
| | FTA 등 협정 양허계획 이행 방법 검토 | 28 | 수의 | 비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22년 HSK 개정에 따른 양허관세율표 개편안 연구 | 30 | 수의 | 공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 RCEP 협정의 국내법 수용방안 연구 | 20 | 수의 | 비공개 | 중소기업정책개발원 |
| | 관세법령의 정합성 제고 연구 | 20 | 수의 | 공개 | 한국재정학회 |
| | RCEP 협정관세율표 작성 및 검증 | 20 | 수의 | 비공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구분 | 과제명(집행내역) | 집행액 | 계약방법 | 공개여부 | 수행기관 |
|---|---|---|---|---|---|
| 2022 |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46 | 경쟁 | 비공개 | 법무법인광장, 삼일회계법인 |
| | 한-캄보디아 FTA협정관세율표 작성 및 검증 | 8 | 수의 | 비공개 | 국제원산지정보원 |
| |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연구: 관세협력 및 관세제도 개선 방향 | 50 | 수의 | 비공개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 | HS2022에 따른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정방안 연구 | 40 | 수의 | 비공개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 조세조약 제·개정을 위한 양자간 국제조세협의체 운영 | 30 | 수의 | 부분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한-필리핀 FTA협정관세율표 작성 및 검증 | 8 | 수의 | 비공개 | 국제원산지정보원 |
| |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표 개정 | 10 | 수의 | 비공개 | 국제원산지정보원 |
| 2023 |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개선방안 연구 | 42 | 수의 | 비공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 조세조약 제·개정을 위한 양자간 국제조세협의체 운영 | 30 | 수의 | 비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2024 |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연구 | 47 | 수의 | 비공개 | 산업연구원 |
| |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법제화 연구 | 50 | 수의 | 비공개 | 김.장법률사무소 |
| |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연장 방안 연구 | 29 | 수의 | 비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한-GCC FTA 협정관세율표 작성 및 검증 | 8 | 수의 | 비공개 | 한국원산지정보원 |

## [ 최근 5년간 국내조세협력 사업 정책연구용역 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과제명(집행내역) | 집행액 | 계약방법 | 공개여부 | 수행기관 |
|---|---|---|---|---|---|
| 2020 |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편 | 40 | 수의 | 공개 | 재정정책연구원 |
| | 관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30 | 수의 | 공개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 | 조세조약상 중재의 절차상 준비사항에 대한 연구 | 40 | 수의 | 공개 | 법무법인 세종 |
| 2021 |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개선방안 | 30 | 수의 | 비공개 | 안진회계법인 |
|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의무보고제도 도입방안 | 30 | 수의 | 비공개 | 한국국제조세협회 |
| | 디지털세 필라1-Amount B 연구 | 30 | 수의 | 비공개 | 안진회계법인 |
| 2022 | 디지털세 필라2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77 | 경쟁 | 비공개 | 김.장법률사무소 |
| 2023 | 미실시 | | | | |
| 2024 | 적격소재국 추가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조법 개정안 마련 | 40 | 수의 | 비공개 | 법무법인(유)율촌, 삼정회계법인 |
| |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및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 개정안 이행체계 국문화 | 20 | 수의 | 비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9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동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가 10건이었으며, 나머지 21건은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또는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사유 현황 ]**

(단위: 건)

| 구분 | 수의계약 사유 | 건수 |
|---|---|---|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0 |
| 제26조제1항제2호차목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 21 |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수의계약 사유로 분류된 '특정인 또는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일부 연구용역 과제를 살펴보면, '관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관세협력 및 관세제도 개선 방향',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연구' 등은 해당 분야의 연구성과를 보유한 불특정 다수의 연구기관도 참여 가능한 과제로 보여 수의계약 적용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100]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원

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1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불특정 다수의 경쟁을 통해 계약이행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정부와 특정 업체 또는 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정책연구용역 역시 여러 연구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특정 연구기관에 편중되는 현상을 예방하려는 것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3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3건만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고 그 사유의 타당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명시된 일반경쟁입찰 원칙에 따라 불특정 다수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을 높이고 특정 기관에의 편중 및 유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3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7건만 공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공개 원칙, 국회의 정책연구용역 예·결산 심의기능 제고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101]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 있다.

10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현황을 보면, 2020년에 총 9건 중 5건(55.6%)이 비공개, 2021년에 총 9건 중 7건(77.8%)이 비공개, 2022년에 총 8건 중 7건(87.5%)이 비공개, 2023년에 총 2건 중 2건 모두 비공개, 2024년에는 총 6건 중 6건 모두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책연구용역의 비공개 사유를 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10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16건 등 총 26건임.

**[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 사유 ]**

(단위: 건)

| 구분 | 비공개 사유 | 건수 |
|---|---|---|
|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0 |
| 제9조제1항제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6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연구 시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정책연구용역 예·결산 심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국회는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필요성 및 성과, 부처별 정책연구용역 사업 및 과제의 중복가능성,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사회현안과 조세·재정제도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러 분야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정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 원칙과 국회의 정책연구용역 예·결산 심의기능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이·전용, 불용 및 이월이 반복되어 연구용역과제의 주제 및 과제수, 예산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기획재정부는 체계적인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책연구용역 예산 운용을 살펴보면, 예산이 다른 비목의 부족액을 보전하는데 전용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정책연구용역 예산 관리에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세부사업별 정책연구비 이전용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연도 | 예산액 | 이전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이월액 |
|---|---|---|---|---|---|---|---|
| 국제 조세협력 | 2020 | 245 | - | 245 | 93 | 152 | - |
| | 2021 | 265 | - | 265 | 218 | 47 | - |
| | 2022 | 195 | - | 195 | 141 | 54 | - |
| | 2023 | 190 | △66 | 124 | 72 | 52 | - |
| | 2024 | 185 | △50 | 135 | 134 | 1 | - |
| 국내 조세협력 | 2020 | 180 | - | 180 | 110 | 70 | - |
| | 2021 | 90 | - | 90 | 60 | - | 30 |
| | 2022 | 90 | △11 | 79 | 77 | 2 | - |
| | 2023 | 90 | △75 | 15 | - | 15 | - |
| | 2024 | 70 | - | 70 | 20 | 10 | 40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상용임금 부족분, 국제회의비 부족분,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제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정책연구비 예산이 반복적으로 전용되면서, 정책연구용역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해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러한 예산 전용으로 인해 정책연구용역에 배정된 예산 현액이 해마다 크게 변동함에 따라 과제 선정과 연구 주제의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연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해되어 궁극적으로 조세 정책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전용 사유]

(단위: 백만원)

| 연도 | 세부사업 | 전용액 | 이전비목 | 전용사유 |
|---|---|---|---|---|
| 2022 | 국내조세협력 | 11 | 상용임금 (110-03)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 |
| 2023 | 국제조세협력 | 66 | 국외업무여비 (220-02) | 코로나19 방역 상황 해제에 따른 대면 국제회의 증가 |
| | 국내조세협력 | 41 | 국제부담금 (340-02) | 국제분담금 부족분 충당 |
| | 국내조세협력 | 34 | 국제부담금 (340-02) | 국제분담금 부족분 충당 |
| 2024 | 국제조세협력 | 50 | 국제부담금 (340-02) | 국제분담금 부족분 충당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먼저, 국제조세협력 세부사업은 2020년 이후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연구비 예산이 다른 비목의 부족분 보전에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다음, 국내조세협력 세부사업의 경우 2023년에는 정책연구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구용역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고, 2024년에는 연내 집행을 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등 예산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나타남.

특히, 2022년에 수행한 '디지털세 필라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Ⅰ·Ⅱ)'의 경우,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부사업(국제조세협력·국내조세협력)에서 별도로 집행되어 세부사업별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이 수행된 사례도 확인되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102]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비 예산이 타 비목으로 전용되어 연례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용역과제의 주제 및 과제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등 충실한 정책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2)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16.

## (11) 세부사업 구분 없는 지출 부적절 (국고업무관리,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국고국)

< 현 황 >

「국고업무관리」는 공공기관 결산 지원, 출자기관 관리 및 배당정책 지원, 담배관련 정책 지원, 국고운용 선진화 및 국가채권 관리 등을 지원하며, 수입인지 발행 및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 3억 6,50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을 이·전용을 통해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4억 1,000만원임. 이 중 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고업무관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고업무관리 (2233-302) | 365 | - | 45 | - | 410 | 397 | 10 | 4 | 297 |
| **- 일반수용비 (210-01)** | **135** | **-** | **-** | **-** | **135** | **135** | **-** | **-** | **145** |
| - 특근매식비 (210-05) | 4 | - | - | - | 4 | 4 | - | - | 4 |
| - 관리용역비 (210-15) | 78 | - | - | - | 78 | 78 | - | - | 78 |
| - 국내여비 (220-01) | 17 | - | 4 | - | 21 | 21 | - | - | 17 |
| **- 국외업무여비 (220-02)** | **27** | **-** | **△12** | **-** | **16** | **14** | **-** | **2** | **27** |
| - 사업추진비 (240-01) | 14 | - | - | - | 14 | 14 | - | - | 14 |
| - 일반연구비 (260-01) | 20 | - | - | - | 20 | 20 | - | - | 20 |
| - 정책연구비 (260-02) | 70 | - | 52 | - | 122 | 111 | 10 | 2 | 70 |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는 원활한 국채발행을 통해 안정적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국채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채발행 증가에 대응한 전략적 국채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5억 3,000만원이며 700만원을 내역변경을 통해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5억 3,700만원임. 이 중 5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2233-304) | 530 | - | 7 | - | 537 | 509 | - | 28 | 480 |
| - 일반수용비 (210-01) | 150 | - | - | - | 150 | 150 | - | - | 100 |
| - 임차료(210-07) | 4 | - | - | - | 4 | 4 | - | - | 4 |
| - 국내여비 (220-01) | 7 | - | - | - | 7 | 7 | - | - | 7 |
| **- 국외업무여비 (220-02)** | **35** | **-** | **7** | **-** | **41** | **41** | **-** | - | **35** |
| - 사업추진비 (240-01) | 13 | - | - | - | 13 | 13 | - | - | 13 |
| - 일반연구비 (260-01) | 281 | - | - | - | 281 | 253 | - | 28 | 281 |
| - 정책연구비 (260-02) | 40 | - | - | - | 40 | 40 | - | - | 40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은 국고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3억 8,500만원이며 이 중 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7111-260) | 385 | - | - | - | 385 | 338 | - | 47 | 385 |
| **- 일반수용비 (210-01)** | **222** | **-** | **△3** | **-** | **219** | **180** | **-** | 39 | **187** |
|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3 | - | - | - | 3 | 3 | - | - | 3 |
| - 임차료(210-07) | 5 | - | - | - | 5 | 3 | - | 2 | 5 |
| - 국내여비 (220-01) | 50 | - | 4 | - | 54 | 54 | - | - | 55 |
| - 국외업무여비 (220-02) | 20 | - | △1 | - | 19 | 19 | - | - | 25 |
|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 64 | - | - | - | 64 | 64 | - | - | 74 |
| - 자산취득비 (430-01) | 20 | - | - | - | 20 | 14 | - | 6 | 35 |

< 검토의견 >

**국고국의 국외업무여비와 일반수용비 집행 과정에서 세부사업 간 구분 없는 지출이 발생하였는 바, 세부사업 구분 없는 지출은 사업별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세부사업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예산 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고업무관리」 사업은 국고 관리, 국가계약제도 운영 및 수입인지제도 운영 및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국채시장 관리와 시장 동향 파악은 국고국 내 「국채시장 관리 및 국제화」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사업은 국고국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경비 집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한편, 세부사업 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현행 예산 체계는 사업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세부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또한 불가피하게 세부사업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국가재정법」은 이·전용 제도를 규정[103]하고 있으며 이외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내역변경 및 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한국 국채시장의 WGBI 편입 결정 이후 현지 시장동향 점검'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793,710원을 「국고업무관리」 사업을 통해 집행하였는데 이는 세부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사업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는 국외출장으로 보임.

**[국고업무관리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 일자 | 목적 | 인원(명) | 국가 | 국외여비 지출액(원) |
|---|---|---|---|---|
| 24.10.30.~24.11.01 | 물납주식 매각을 위한 업무협의 | 2 | 일본 | 3,433,897 |
| 24.11.18.~24.11.23. | 2024 XBRL 국제 컨퍼런스 참석 | 1 | 스페인 | 5,532,959 |
| 24.12.10.~24.12.13 | 한국의 WGBI 편입 이후 현지 분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시찰 | 3 | 싱가포르 | 6,793,710 |

자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또한, 「국고업무관리」 사업에서 국가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가 및 검토수당 지급은 「국고업무관리」 사업 내 일반수용비

---

10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통해 집행되어야 함. 하지만 연말 「국고업무관리」 사업의 일반수용비가 부족하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사업을 통해 민간위원들의 참가 및 검토수당을 지급하여 세부사업 구분 없는 일반수용비 지출이 발생하였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검토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 지급 현황]**

| 세부사업 | 일반수용비 지출액(원) |
|---|---|
| 국고업무관리 | 32,650,000 |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 2,850,000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이처럼 세부사업 구분 없는 국외업무여비와 일반수용비의 집행은 세부사업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자 하는 현행 예산 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불가피하게 세부사업의 추가적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도입한 예산의 이·전용 및 내역 변경 규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됨.

실제로 「국고업무관리」와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사업은 같은 단위사업 내에 속해 있는 바,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내역변경을 통해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증액이 가능하였음.

또한, 「국고업무관리」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사업은 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예산총칙」 제10조제1항 각 호[104]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이 가능하나, 「국고업무관리」와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 있는 「국유재산관리」, 「혁신조달지원」 사업 등에서 일반수용비 불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사업 간 일반수용비 내역변경을 통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104) **「2025년도 예산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세부사업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국외업무여비와 일반수용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타 세부사업의 예산 부족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세부사업 간 이·전용을 활용하거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내역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유사한 세부사업 간 구분 없는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부사업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예산체계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 (12) 서면회의 중심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 운영 개편 필요 (국고업무관리, 국고국)

< 현 황 >

「국고업무관리」는 공공기관 결산, 출자기관 관리 및 배당정책, 담배관련 정책, 국고운용 선진화 및 국가채권 관리 등을 지원하고, 수입인지 발행 및 제도 운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 3억 6,50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을 이·전용을 통해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4억 1,000만원임. 이 중 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고업무관리」의 내역사업인 「국가계약제도 운영」은 예산액 5,2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을 이·전용하였고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고업무관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고업무관리 (2233-302) | 365 | - | 45 | - | 410 | 397 | 10 | 4 | 297 |
| - 국고업무관리 | 310 | - | 56 | - | 367 | 355 | 10 | 2 | 120 |
| - 수입인지제도 운영 및 개선 | 3 | - | - | - | 3 | 3 | - | - | 3 |
| **- 국가계약제도 운영** | **52** | **-** | **△12** | **-** | **40** | **38** | **-** | **2** | **52** |

## < 검토의견 >

**최근 3년 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의 대면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은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회의를 규정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대면회의 없는 본회의는 형식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회의가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본회의를 대면회의 중심으로 운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105]를 두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 국방·방산분야소위원회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두고 있으며, 조정이 완료된 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 해당함.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106]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

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107]은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 | |
|---|---|---|
| 위 원<br>(총15명) | 위원장<br>(임명권자)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여부(√) |
| | 당연직<br>(총 7명)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위원장)<br>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조달청·방위사업청 각 1명 |
| | 위촉직<br>(총 8명) | **(직 종)** 교육·연구인 4명, 변호사 4명 |
| | | **(구 성)** 여성 4명(50%), 비수도권 2명(25%), 청년 0명(0%) |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br>**(해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br>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의4 |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3년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면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모두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회의의 서면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최근 3년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단위: 회)

| 구 분 | 총계 | 본회의 | | | 분과위원회 | | |
|---|---|---|---|---|---|---|---|
|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22년 | 36 | 26 | - | 26 | 10 | 10 | - |
| 2023년 | 28 | 20 | - | 20 | 8 | 8 | - |
| 2024년 | 42 | 30 | - | 30 | 12 | 12 | - |
| 총계 | 106 | 76 | 0 | 76 | 30 | 30 | 0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발생한다는 점에

107)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 자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서 각하 결정, 계약금액 관련 조정청구안 결정 등 본회의의 결정을 모두 경미한 안건으로 보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 30회에 이르는 모든 본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를 규정한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가 분과위원회의 조정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의 형식적인 서면의결 검토수당에 지급한 일반수용비는 1,95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상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측면도 존재함[108].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서면의결 검토수당 지급 현황]**

| 서면회의 개최횟수(회) | 수당 지급 건수(건) | 1회 수당 지급액(원) | 지급 총액(원) |
|---|---|---|---|
| 30 | 195 | 100,000 | 19,500,000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가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본회의를 대면회의 중심으로 운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8) 기획재정부는 본회의 서면회의에 100,000원, 분과위원회 출석회의에 2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13) 한국은행 일시차입 원금과 이자의 상환 시기 일치 필요 (일시차입금이자상환, 국고국)

< 현 황 >

「일시차입금이자상환」은 국고금 출납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992억 900만원이며 1,115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으로부터 자체 이용하여 2024년 예산현액은 2,107억 900만원임. 동 사업은 예산현액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272-561) | 99,209 | - | 111,500 | - | 210,709 | 210,709 | - | - | 99,209 |
| - 차입금이자 (510-03) | 99,209 | - | 111,500 | - | 210,709 | 210,709 | - | - | 99,209 |

< 검토의견 >

**재정증권과 달리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원금을 상환한 이후 그 다음 분기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함에 따라 일시차입의 용이성이 커질 수 있고, 현재의 상환 방식은 기획재정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차입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한 약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원금 상환일과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세입세출예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국고금 운용수익을 통하여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를 일부 상환하고 있는 바 향후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자금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하는 자금으로서 일(日) 단위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며 한국은행 일시차입의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고 있음[109].

「일시차입금이자상환」은 국고금 출납시 발생하는 일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고금 관리법」 제32조[110]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예산은 2024년 당초 992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가재정법」 제47조[111]와 2024년 예산 총칙에 근거[112]한 자체 이용을 통해 1,115억원을 증액하였고 전액 집행되었음. 당초 예상보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30.8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113]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 부족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109) **「한국은행법」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110)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111)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2) **「예산 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113) 2024년 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367.3조원이었으나 실제 국세 수입은 336.5조원으로 집계됨.

[2024년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단위 : 조원)

| | 재정증권 | | | 한국은행 일시차입 | | |
|---|---|---|---|---|---|---|
| | 발행규모 | 상환규모 | 기말잔액 | 차입규모 | 상환규모 | 기말잔액 |
| 1월 | - | - | - | - | - | - |
| 2월 | 7.5 | - | 7.5 | 9.9 | - | 9.9 |
| 3월 | 8.0 | - | 15.5 | 27.2 | 12.6 | 24.5 |
| 4월 | 8.0 | 6.0 | 17.5 | 14.9 | 34.2 | 5.2 |
| 5월 | 10.0 | 9.5 | 18.0 | 10.7 | 9.1 | 6.8 |
| 6월 | 7.28 | 8.0 | 17.28 | 20.9 | 7.8 | 19.9 |
| 7월 | 4.0 | 8.0 | 13.28 | 13.5 | 33.4 | - |
| 8월 | 5.0 | 10.28 | 8.0 | 22.8 | 6.6 | 16.2 |
| 9월 | - | 4.0 | 4.0 | 24.7 | 26.4 | 14.5 |
| 10월 | - | 4.0 | - | 15.4 | 29.9 | - |
| 11월 | - | | - | - | - | - |
| 12월 | - | - | - | 5.0 | - | 5.0* |
| 계 | 49.78 | 49.78 | - | 165.0 | 160.0 | 5.0 |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1월2일~3일 5조원 상환

한편, 한국은행은 일시차입금 일별 잔액에 대한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산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차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에 산출된 이자를 상환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이자 지급 방식은 1953년에 한국은행과 체결한 「정부대상금 약정서」 제6조[114]에 근거한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2024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현황]

| 상환일자 | 상환규모(원) | 내역 |
|---|---|---|
| 2024.6.28. | 60,052,258,180 | 2024년 1분기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
| 2024.9.30. | 64,638,790,470 | 2024년 2분기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
| 2024.12.31. | 64,451,313,620 | 2024년 3분기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
| 2025.3.31. | 15,659,606,920 | 2024년 4분기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

자료: 기획재정부

114) **「정부대상금 약정서」 제6조** 한국은행은 정부대상금의 이자를 각 4반기마다 계산하여 정부에 청구하고 정부는 익 4반기내에 지불한다.

그러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간 3~5개월의 괴리를 야기하는 이자 상환 방식은 일반적인 금전차입 상환 방식과 달리 정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달방식이라는 점, 매 회계연도 4분기에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115]은 당해연도의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일시차입금 이자의 경우 원금 상환일에 비해 3~5개월 가량 지급이 늦춰짐에 따라 이자 보유에 따른 시간 가치의 이익을 보게 됨. 반면 재정증권의 경우 증권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면서 정부는 시간 가치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바, 정부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일시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재정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2024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2,048억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최소 약 12.8억원[116]의 불공정 약정에 따른 부적절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임. 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고 배분 계획 수립 및 운용의 유인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일시차입의 빈도와 일시차입금 누계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국회 부대의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가 1953년 한국은행과 체결한 「정부대상금 약정서」는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담당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재무부장관이 수행할 때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적 대출과 달리 차입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시간가치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계약의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관한 약정이 공정하게 체결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운용수익 또는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예산을 활용하여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를 지불하고 있음. 다만, 국고금 운용수익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지급에 사용[117]할 수 있는 바,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국가재정법」 제17조[118]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국고금 운용수익의 경우 그 규모와

115) 2024년 4분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156억 5,900만원은 2025년 3월 31일에 지급됨.

116) 개별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2,048억이 발생하였고 개별적 이자 지급이 원금 상환에 비하여 최소 3개월 늦어짐. 이에 대하여 이자율 2.5%를 적용할 경우 최소 12.8억원의 시간 가치의 이익이 발생함

117)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118)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119]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시차입금 상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는 등 상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향후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①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 (1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의 협력사업 성과 저조 (국제 재정협력 강화, 예산실)

< 현 황 >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은 재정이슈의 국제화에 따른 주변국·선진국의 재정관련 대응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해외 재정당국간 신속·긴밀한 협력체제 구축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7억 2,000만원으로 이 중 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의 국제부담금 예산현액은 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제 재정협력 강화 (2444-301) | 720 | - | - | - | 720 | 262 | - | 458 | 329 |
| - 국제부담금(340-02) | 391 | - | - | - | 391 | - | - | 391 |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의 협약에서 당초 MOU 체결 내용과 달리 최소한의 과제조차 이행되지 않았으며 보고서 활용 결과가 미흡한 등 성과가 저조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마지막 해인 2024년을 제외하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억 5,000만원의 국제부담금을 집행하여 동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 내 국제부담금은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재정 정책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재정정책이나 국제경제·무역, 국가부채 및 경제성장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비영리 사립연구재단으로, 1981년에 워싱턴DC에서 설립된 연구소임.

기획재정부가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체결한 MOU에 따르면, 피터슨 연구소는 매년 최소 5개의 한국 재정정책 관련 연구보고서(5년간 25건)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국제재정포럼 등에 참여를 지원하고, 기획재정부는 연 30만불의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음.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의 MOU 주요 내용]**

○ **(MOU 주요 내용)**
- 피터슨 연구소는 매년 최소 5개의 한국 재정정책 관련 연구보고서(5년간 25건)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국제재정포럼 등에 참여를 지원한다.
- 기획재정부가 매년 30만불의 기금을 지원한다.
- 피터슨 연구소는 매년 연구 계획을 제공하고, 피터슨 연구소는 기금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에 제공한다.
- 이 동의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피터슨 연구소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 **(체결일)** 2019년 11월 28일

○ **(체결기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5년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획재정부는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두차례에 걸쳐 예산실 소속 직원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파견 현황]**

| 파견자명 | 직급 | 기존 소속 | 파견기간 | 파견형태 |
|---|---|---|---|---|
| OOO | 5급 | 예산실 행정예산과 | 2020.8~2021.7 | 6호 파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OOO | 5급 | 예산실 예산관리과 | 2022.12~2023.11 |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기획재정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MOU 체결 첫 해인 2020년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단 한 건의 연구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약정금액 30만불을 집행하였음.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매년 최소 기준인 5건의 한국 재정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치는 등 협력사업의 성과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5년간 20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쳐 MOU 내용을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한국 재정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 현황]

| 게시일 | 주제 |
|---|---|
| 2021 |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전략 비교 |
|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
| | ▸포스트 코로나19: 경제적 환경 변화와 한국의 재정정책 전략 |
| | ▸한국의 아시아 유럽, 북미 국가화의 무역투자 통합 추진 방향 |
| |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
| 2022 |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에 대한 이해 |
| | ▸온라인 플랫폼 경제 측정과 규제의 어려움 |
| | ▸미국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 | ▸중국의 CPTPP가입 시대가 한국에 가지는 함의 |
|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 2023 | ▸미국이 IRA 시행에 따른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한 방법 |
| |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의 한국 재정수지에 대하여 |
| |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
| | ▸한국의 IPEF 참여에 따르는 기회 및 리스크 |
| | ▸한국의 EMDE 국가 대상 대출 규모가 커졌으나 국내 부채 문제 해결 시급 |
| 2024 | ▸장기간에 걸친 한국의 환율 변동 추이 분석 |
| | ▸미국 및 타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이민 정책 선택지 |
| | ▸미국·한국의 반도체법 비교 및 각 법이 반도체 분야에 미칠 영향 |
| | ▸한국 경제의 탈탄소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 |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다음 단계와 한국의 역할 강화 |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MOU 체결 내용에 따르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매년 1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여야 하나 피터슨 연구소는 MOU 체결 기간 첫 해인 2020년에는 단 한 건의 세미나도 개최하지 않아 당초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음.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1회씩 총 3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약 내용을 최소한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세미나 개최 실적 역시 당초 협약 내용에 비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세미나 개최 현황]

| 일시 | 논의 내용 | 형식 | 참석자 |
|---|---|---|---|
| 2021.7.1 |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포스트 코로나 이후 재정전략 등 | 온라인 | 예산관리과장, 예산관리과 사무관 등 |
| 2022.6.22 | ▸성별격차 해소, 출산율 증가, 고령화 대비 등을 위한 정책 방향 등 | 온라인 | 예산관리과장 예산관리과 사무관 등 |
| 2023.6.24 |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타 국가들이 부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 정책적 노력 등 | 온라인 | 예산관리과장 예산관리과 사무관 등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실적이 MOU 체결의 최소 요건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0만불의 국제부담금을 지원하였음. 그 결과 4년간 총 15억 500만원에 해당하는 국제부담금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집행하였으며, MOU 체결 마지막 해인 2024년에만 국제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그쳐 MOU 체결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노력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의 국제부담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계 |
|---|---|---|---|---|---|---|
| 집행액 | 357 | 357 | 402 | 389 | 0 | 1,505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한국 재정정책 관련 연구보고서의 주제나 세미나 주제들은 예산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실에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로의 파견이 종료된 시점(2023년 11월) 이후인 2024년분에 대해서 국제부담금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부담금이 실질적으로는 국제기구로의 파견을 위한 부담금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이처럼 동 사업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MOU 체결 내용과 달리 MOU 체결기간 첫 해인 2020년부터 성과가 미흡하였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도 최소한의 협약 수행에만 그치는 등 협력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도 202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국제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총 15억 500만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협력사업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예산실과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미흡 등의 문제도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국제연구소 등과의 협력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5) 자산취득비의 연도말 집중 집행 및 부적절한 일반수용비 시정 필요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 예산실)

< 현 황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은 각 분야 재정전문가 및 지자체,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점검하며, 예산 홍보 등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운용 협의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28억 2,700만원으로 이 중 2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00만원을 이월, 5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예산홍보 등'은 예산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광고송출비 등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억 2,200만원으로 이 중 4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445-401) | 2,732 | 95 | - | - | 2,827 | 2,211 | 45 | 571 | 3,732 |
| - 예산홍보 등 | 607 | 15 | - | - | 622 | 401 | - | 221 | - |

자료: 기획재정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는 예산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25억 1,500만원으로 이 중 2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 (7111-266) | 2,515 | - | - | - | 2,515 | 2,152 | - | 363 | 2,530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 및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산실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연말에 자산취득비 집행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취득비 집행에 있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실은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편성되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문제가 있음.

또한, 예산실은 2024년에 기본경비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원 중 약 88%에 해당하는 1억 6,700만원을 12월에 집중하여 집행하였으며, 4분기 자산취득비 집행 비중이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등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어 이 역시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 예산실 자산취득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연말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및 12월에 혁신제품 의자, PC,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냉장고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연말에 집중하여 구매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이러한 문제는 2023년에도 반복되는 등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2023

년에도 예산실 기본경비 중 4분기 집행 내역이 전체의 89%로 연말에 집중하여 자산취득비가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의 자산취득비 월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10월 | 11월 | 12월 | 전체 | 12월 비중 | 4분기 비중 |
|---|---|---|---|---|---|---|---|---|---|
| 2023 | - | - | 22 | 36 | 47 | 89 | 194 | 46 | 89 |
| 2024 | - | 5 | 7 | - | 11 | 167 | 190 | 88 | 94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자산취득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연초에 작성하도록 하고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 것은 연말에 불필요하게 자산취득비를 집행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예산실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연례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예산실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산실은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에서 식사, 다과비 등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지출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지출한 사례가 총 6건(약 411만원) 발생하였음. 이는 식사, 다과비 등은 수용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한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수용비로 식사나 다과비를 지출한 내역]**

(단위: 원)

| 지출일자 | 사용가맹점 | 건명 | 지급액 |
|---|---|---|---|
| 24.5.30 | 다수제과 | 24년 지방재정협의회 준비 | 1,000,000 |
| 24.5.30 | 하얀과자점 | 24년 지방재정협의회 준비 | 990,000 |
| 24.8.26 | 동원홈푸드 | 회의 준비 음료 | 165,000 |
| 24.8.26 | 풀무원푸드앤컬처 | 회의 준비 음료 | 74,000 |
| 24.9.5 | 워커스버거 | 25년 예산안 백브리핑 준비 | 1,090,000 |
| 24.9.5 | 언니네밀박스 | 25년 예산안 백브리핑 준비 | 800,000 |

자료: 기획재정부

## (16) 수의계약 체결 부적절 및 자문료 과다 지급 시정 필요 등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 현 황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200만원을 포함한 76억 1,600만원으로 이 중 66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6,400만원을 이월, 6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2531-300) | 7,304 | 312 | - | - | 7,616 | 6,661 | 264 | 692 | 7,187 |

자료: 기획재정부

### < 검토의견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하며 수의계약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20]은 중앙관서의 장이 체결하는 국가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 계약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은 2024년 체결한 총 13건의 연구용역 중 1건을 제외한 12건의 계약이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되어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한 문제가 있음. 특히 이러한 수의계약 비율 과다 문제는 연례적으로 지속되는 문제로, 최근 5년간

1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동 사업에서 체결한 연구용역 중 2024년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비율]**

(단위: 건,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연구용역 총 건수(a) | 10 | 12 | 15 | 14 | 13 |
| 수의계약 체결 건수(b) | 10 | 12 | 15 | 14 | 12 |
| 수의계약 비율(b/a) | 100 | 100 | 100 | 100 | 92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4년 수의계약 체결 내역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용역'과 '중소기업 기술마켓 활성화 방향 모색 연구' 등 일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024년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용역 중 사유가 부적절한 계약]**

(단위: 백만원)

| 계약명 | 계약상대방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수의계약 사유 |
|---|---|---|---|---|
| 2023년도 제3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용역 | ○○회계법인 | 24.2 ~24.4 | 25 | 공공기관 운영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수행 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 2024년도 제1차~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 ○○회계법인 | 24.5 ~24.12 | 50 | |
| 2023년도 제3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용역 | 노무법인□□ | 24.2 ~24.4 | 30 | |
| 2024년도 제1차~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 노무법인□□ | 24.5 ~24.12 | 60 | |
| 중소기업 기술마켓 활성화 방향 모색 연구 | 한국조달 연구원 | 24.7 ~24.12 | 3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직무수행 매뉴얼 개편 | 한국법제 연구원 | 24.1 ~24.7 | 5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선, 2건의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대한 재무항목 점검용역'과 2건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121]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설명함.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나 동 계약은 회계법인 및 노무법인이 각각 수행하는 계약으로 해당 법인만이 동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음. 실제 2021년과 2022년에는 동 용역에 대하여 각각 다른 회계법인과 노무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용역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약명 | 계약상대방 | 계약기간 | 금액 |
|---|---|---|---|---|
| 2021 | 2020년도 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 △△회계법인 | 21.3<br>~21.5 | 23 |
| | 2020년도 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 ▲▲노무법인 | 21.3<br>~21.5 | 34 |
| | 2021년도 1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 △△회계법인 | 21.5<br>~21.8 | 25 |
| | 2021년도 1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 ▲▲노무법인 | 21.5<br>~21.8 | 30 |
| | 2021년도 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 △△회계법인 | 21.10<br>~21.12 | 16 |
| | 2021년도 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 ▲▲노무법인 | 21.10<br>~21.12 | 17 |
| 2022 |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 △△회계법인 | 22.2<br>~22.12 | 58 |
| |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 ▲▲노무법인 | 22.2<br>~22.12 | 72 |
| 2023 |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3차 점검 | ○○회계법인 | 23.2<br>~24.4 | 25 |
| | 2023년도 제1차 및 제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 ○○회계법인 | 23.6<br>~23.12 | 35 |
| |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제3차 점검 | ▲▲노무법인 | 23.2<br>~23.4 | 22 |
| | 2023년도 제1차·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 노무법인□□ | 23.6<br>~23.12 | 48 |
| 2024 | 2023년도 제3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 ○○회계법인 | 24.2<br>~24.4 | 25 |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연도 | 계약명 | 계약상대방 | 계약기간 | 금액 |
|---|---|---|---|---|
| | 2024년도 제1차·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재무항목 점검 | ○○회계법인 | 24.5<br>~24.12 | 50 |
| | 2023년도 제3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 노무법인□□ | 24.2<br>~24.4 | 30 |
| | 2024년도 제1차·2차 공공기관 통합공시 노무항목 점검 | 노무법인□□ | 24.5<br>~24.12 | 60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통합공시에 대한 점검 용역을 기획재정부가 특정 회계법인 및 노무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해당 점검이 업체를 수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어 점검 용역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재무항목 점검용역'의 경우 2022년까지는 다른 회계법인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2023년부터 2년간 ○○회계법인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해당 용역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어 수의계약 체결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 기술마켓 활성화방향 모색 연구'와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직무수행 매뉴얼 개편' 역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당 용역들 역시 중소기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존재하고, 이사 및 감사 직무에 관한 사항이 한국법제연구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계약 역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타당한 사유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처럼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은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하고, 특히 업체 간 경쟁이 활발한 회계법인 및 노무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가 부적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배 및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할 여지가 큼. 특히, 국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 취지는 계약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계약상대방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은 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구결과나 다양한 시각에 의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연구용역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

약 비율이 과다한 문제를 시정하고, 일반경쟁으로 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되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의 내역사업인 「공운위 운영 및 워크숍 추진」의 2024년 예산액은 5억 5,400만원으로, 이 중 3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비 2억 7,400만원 및 공공기관장 워크숍 1억 4,500만원, 안전등급 심사단 운영 1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br>(-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 7,304 | 312 | - | - | 7,616 | 6,661 | 264 | 692 | 7,187 |
| - 공운위 운영 및 워크숍 추진 | 554 | - | - | - | 554 | 348 | - | 206 | 489 |

자료: 기획재정부

이 중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대통령 또는 부총리 주재로 전체 327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여하는 기관장 워크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2024년 예산안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서 확정되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이나 부총리의 일정 관계상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어려워져 해당 예산 전액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제2차관 주재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연말인 11월 22일에 개최하였음.

그러나 이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한 것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동 행사가 불용액을 활용하여 연말에 필수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야기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 및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자문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경영공시, 임원 임명 및 경영실적 평가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참석수당이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1일당 15만원(서면심사의 경우 10만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운위 및 소위 등에 참석하는 경우 1인당 1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본회의 자문료 35만원 및 소위 자문료 1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참석수당 외에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이러한 35만원의 추가 자문료를 매번 지급하고 있으며, 소위가 개최되는 경우에도 참석수당에 더하여 15만원의 자문료가 추가로 지급되는 등 자문료가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실제 2024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본회의 참석수당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4차 본회의동안 매번 참석한 민간위원 전원에게 참석수당 15만원과 자문료 35만원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자문료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 참석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한 것임.

특히 9차 본회의의 경우 의결 안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고 안건만 2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민간위원 전원에게 자문료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자문료가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2024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본회의 안건 및 자문료 지급 여부]

(단위: 백만원)

| 차수 | 의결 안건 | 참석수당 |
|---|---|---|
| 1차 |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 참석수당: 15만원<br>자문료: 35만원<br>(참석 민간위원 전원 지급) |
| 2차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임원인사 안건 | |
| 3차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인사 안건 | |
| 4차 |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안),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임원인사 안건 | |
| 5차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인사 안건 | |
| 6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임원인사 안건 | |
| 7차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 |
| 8차 |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신설타당성 심사(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안), 임원인사 안건 | |
| 9차 | -<br>(보고 안건 2건만 있음) | |
| 10차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임원인사 안건 | |
| 11차 |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2020·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임원인사 안건 | |
| 12차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인사 안건 | |
| 13차 |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안), 2022·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 등 4건 | |
| 14차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이러한 추가 자문료 35만원은 기획재정부 내 다른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그 단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문제도 있음. 일례로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에 대하여 참석수당 15만원 및 자문료 10~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처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료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타 위원회 사례를 감안하여 자문료 단가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회의 참석 및 안건 검토 외에 추가적인 자문이 행해진 경우에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에 더하여 지급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17) 하반기 경영평가편람 수정 최소화 필요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근거 신설 필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 현 황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그 유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기타공공기관은 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2531-300) | 7,304 | 312 | - | - | 7,616 | 6,661 | 264 | 692 | 7,187 |

자료: 기획재정부

### < 검토의견 >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경영평가 평가지표가 하반기에 수정되어 당해연도 평가에 적용되는 것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다음연도 평가부터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는 '경영평가편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22]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

1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 전까지 작성되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확정됨. 이처럼 경영평가편람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 및 목표 등을 미리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최근 경영평가편람을 하반기에 수정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경영실적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표 수정은 산식 명확화나 단순 오타, 문구 수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의 경우 2024년 9월 30일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과 배점을 별도로 분리하기 위하여 경영평가편람이 수정된 바 있으며, 성과지표에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여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활용실적에 대한 점수가 새롭게 추가되었음.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에도 매년 10월에 정부정책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지표 배점 등이 수정된 바 있음.

**[2021~2024년 경영평가편람 평가지표 수정 현황]**

| 평가대상연도 | 수정시기 | 주요수정사유 | 주요수정내역 |
|---|---|---|---|
| 2021년도 | 2021.10.1. | 평가제도 개편방안('21.8) 반영 | ○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 등 |
| 2022년도 | 2022.10.6. |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 반영 | ○ 재무성과관리 지표 배점 확대 등 |
| 2023년도 | 2023.10.5. | 정부정책 변경 등 반영 | ○ 코로나19 결측·보정제도 폐지 등 |
| 2024년도 | 2024.9.30. | 정부정책 변경 등 반영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과 배점 분리 등<br>-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여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활용실적에 대한 점수 신설 |

자료: 기획재정부

물론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 이처럼 매년 경영평가편람의 지표 수정이 반복되고, 특히 4분기 전후로 경영평가 지표 배점이 수정되는 것은 경영평가편람 지표에 따라 평가대상연도의 경영 목표 및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경영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편람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미 기존의 1분기~3분기동안 경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지표 수정 방향에 따라 기존의 경영에 대한 평가 점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음. 일례로 2024년에는 4분기 직전인 9월 30일에 경영평가 지표 배점이

수정되었는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의 지표가 기존에는 2.5점의 배점 중 하나의 평가요소였던 반면 수정 이후 별도로 0.5점의 배점이 부여되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였음.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었는데, 이 경우 기존부터 직장어린이집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특별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었던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의 경영평가 배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024년 경영평가편람 평가지표 수정 내역]**

| 기존 편람 | 수정 편람 |
|---|---|
|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비계량 2.5점<br>① ~ ③ · ⑤ 생략 |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비계량 2점<br>① ~ ④ (기존 ① ~ ③ · ⑤와 같음) |
| ④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br>- 가족친화인증 여부,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실적, 헌혈공가 도입 여부 등 |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비계량 0.5점**<br>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br>-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여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등**<br>- 가족친화인증 여부,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실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활용실적,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평가지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하반기에 실질적인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지표의 수정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지표의 수정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각 주무부처가 실시하고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는 규정[123]만 마련하고 있을 뿐,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1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에도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적합한 평가를 시행하되, 인사·재무 등 경영관련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124]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제공하고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125], 그 근거를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126]에 마련하였음.

그러나 2018년 3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기존 「기타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근거 조항이 사라진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의 주무부처들은 기존 체계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일부 기관의 경우 훈령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127]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이를 마련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의 법적 근거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제3항[128]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129]는 해당 법률의 '공공기관'의 정의를 '공기업

---

124)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013.12.11.

12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2013.12.31.

126) **「기타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계획서 및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12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경영실적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운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에 통보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2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2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및 준정부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30]에서는 이를 '기타공공기관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경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만이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해당 법률이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분류 체계상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주무부처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취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평가 주체인 주무부처의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평가의 정당성과 권위가 확보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131]. 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규율을 받는 기관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삭제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13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31) 박한준·허경선·하세정·오영민,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8)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실시 필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재정관리국)

< 현 황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② 해외 민간투자시장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③ 민간투자제도 환경에 대응을 위한 민간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은 3억 7,200만원으로, 이 중 3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00만원을 이월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의 2024년 예산현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이 중 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2645-300) | 336 | 30 | 6 | - | 372 | 333 | 36 | 3 | 330 |
| -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 80 | - | - | - | 80 | 80 | - | - | 90 |
| **-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 **106** | - | **6** | - | **112** | **109** | - | **3** | **90** |
| - 민자활성화 연구용역 | 150 | 30 | - | - | 180 | 144 | 36 | - | 150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편성한 대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행사 개최 시 초청경비는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지급단가 범위 내에서 국외업무여비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개발도상국 등에 전수하고 해외 민간투자시장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규편성 되었으며, 사업비 대부분이 해외 공동세미나 및 국제행사 개최용역 경비 등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되어 있음.

**[2020~2024년도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A)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B) | 집행액 (C)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D) | 집행률 (C/B) |
|---|---|---|---|---|---|---|---|
| 2020 | 115 | - | 115 | 13 | - | 102 | 11.3 |
| 2021 | 149 | - | 149 | - | - | 149 | - |
| 2022 | 143 | △136 | 7 | 3 | - | 3 | 42.9 |
| 2023 | 143 | △136 | 7 | - | - | 7 | - |
| 2024 | 106 | 6 | 112 | 109 | - | 3 | 97.3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동 내역사업의 실시현황을 보면 우선 2020년 신규편성된 이후 2023년까지 4년간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제대로 실시된 바가 없음. 2020년도의 경우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2021년도의 경우에도 편성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132] 2022년도의 경우 국외업무여비 300만원만 집행하고 일반용역비 1억 3,600만원을 전액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미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일반용역비 1억 3,600만원을 전액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미실시하고 남은 예산은 전액 불용하였음.

132) 2020~2021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이 있지만, 대면행사 개최가 불가했다면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 등 대면행사를 대체하는 방식의 사업수행을 검토할 수도 있었을 것임.

2024년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였음.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요]**

□ 행사명: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 주제: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일자 및 장소: 2024년 11월 12일(화)~13일(수) /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 추진배경: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사업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
□ 구성: 우수기관 표창, 세션별 주제 발표·토론, 우수 사례 발표 등
□ 주최: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참석자: 기재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국제기구 총재(영상), 민자 관련 민간·정부·학계 담당자 및 전문가, 각국 대사관 고위급 등
- 내국인 540명, 외국인 42명(27개국)

* 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러나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로 예산을 요구·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년과 동일하게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사업 예산 중 일반용역비(210-14) 산출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산출내역 | 집행내역 |
|---|---|---|
| 2021 | - 일반용역비: 142<br>▪ 국제행사 개최 수행사 용역 142: 71 * 2회(베트남, 카자흐스탄) | - 일반용역비: 0<br>▪ 전액 미집행 |
| 2022 | - 일반용역비: 136<br>▪ 국제행사 개최 수행사 용역 136: 68 * 2회(베트남, 카자흐스탄) | - 일반용역비: 0<br>▪ 전액 타 세부사업 전용 |
| 2023 | - 일반용역비: 136<br>▪ 국제행사 개최 수행사 용역 136: 68 * 2회(베트남, 캄보디아) | - 일반용역비: 0<br>▪ 전액 타 세부사업 전용 |
| 2024 | - 일반용역비: 99<br>▪ 국제행사 개최 수행사 용역 99: 49.5 * 2회(베트남, 캄보디아) | - 일반용역비: 98<br>▪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수행사 용역(국내, 1회)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즉,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는 예산편성 시 심사·반영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이며,

2024년이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이었으므로 동 행사는 사전에 예상하거나 계획할 수 없었던 행사로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심사를 받아 진행했었어야 함.

국회 심의·확정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임의로 집행된다면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운영을 대행시키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발주하여 일반용역비(210-14)를 집행하였음.[133]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에 따르면 숙식비 및 항공료 등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는 '국외업무여비(220-02)'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행사 예산 집행 시 항공료 2,520만원, 숙박비 660만원 등 국외업무여비로 집행하여야 할 외빈초청경비를 행사비용에 포함하여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였음. 특히, 동 내역사업에는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였음.[134]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관련 일반용역비(210-14) 상세집행내역]**

(단위: 천원)

| 항목 | 집행금액 |
|---|---|
| 1. 직접경비 | 221,059 |
| 가. 행사장 임대료 및 식음 | 89,596 |
| **나. 초청비** | **40,789** |
| **- 항공료(5인)** | **25,210** |
| **- 숙박비(7인*3박)** | **6,630** |
| **- 연사비(10인)** | **5,950** |

133) 총 집행액 3억 4,500만원 중 기획재정부는 9,800만원 집행

134)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는 글로벌 인프라 금융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기획재정부 직원 출장으로 집행하였음.(2024.12.15.(일)~12.21(토) / 기획재정부 직원 3인)

| | |
|---|---|
| - 수송(7인*2회) | 3,000 |
| 다. 행사장 조성 | 46,995 |
| 라. 홍보/인쇄제작물 | 32,345 |
| 마. 진행비 | 11,333 |
| 2. 인건비 | 43,060 |
| 가. 대행사 인건비 | 26,875 |
| 나. 전문인력 및 임시고용 인력 인건비 | 16,185 |
| **소계** | **264,119** |
| 3. 일반관리비 | 21,130 |
| 4. 기업이윤 | 28,525 |
| 5. 부가가치세 | 31,377 |
| **합계** | **345,151**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또한, 「집행지침」상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항목에서 숙박비의 경우 주빈(主賓)의 경우에도 1인당 1박에 2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35]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집행내역을 보면 7인의 3박 숙박비에 663만원을 집행하여 1인당 1박에 31만원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집행지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으로 발주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초청비가 포함되었으며, 행사 장소가 서울 시내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숙박비가 단가를 초과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작성지침」 및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며, 국외업무여비와 달리 일반용역비의 경우 지급단가와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까지 일반용역비에 포함시켜 집행하는 것은 비목을 구분하고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구조체계와도 맞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제행사 개최 시 초청경비 등은 예산 작성지침·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국외업무여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고, 예산집행 시에도 「집행지침」상 단가기준을 위배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135) 수행원의 경우 1인당 1박에 7만 5천원 한도

## (19)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사업 내실화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재정관리국)

< 현 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은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R&D)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2억 7,400만원으로, 이 중 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사업(2646-402) | 274 | - | - | - | 274 | 121 | - | 153 | 220 |

<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은 재정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는 사업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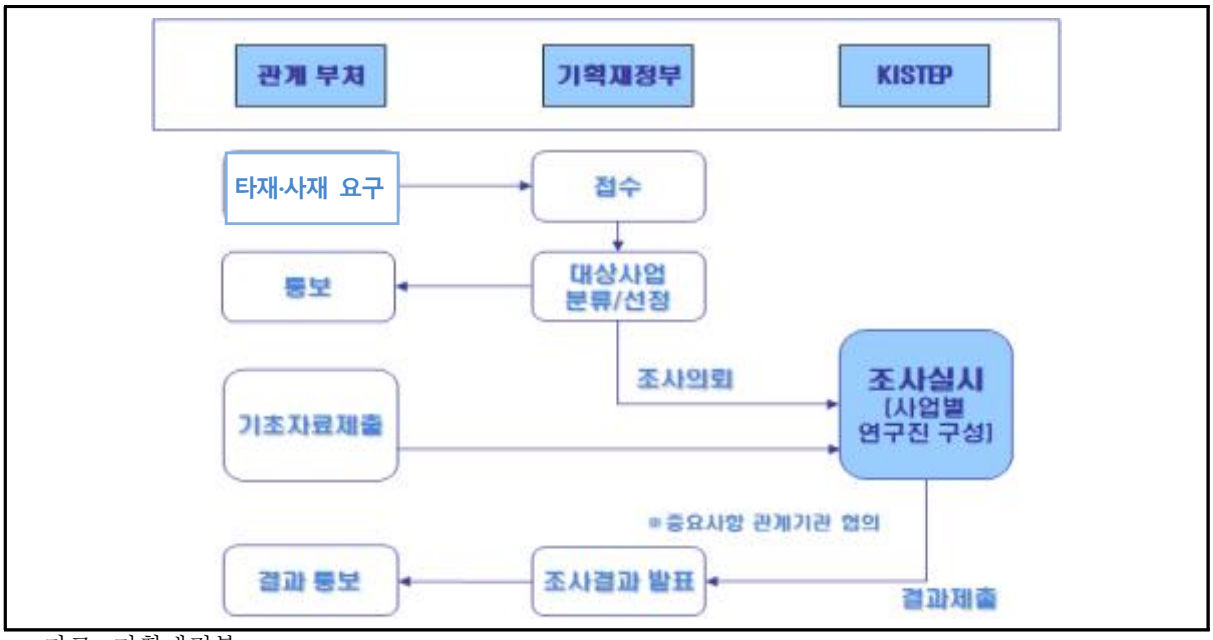
|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재조사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 「국가재정법」 제50조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br>「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 |
|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국고 300억원 이상 건설·정보화·R&D·기타재정 신규사업* | ·총사업비 대상 중 추진과정에서 예타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br>·예타 대상사업이나 예타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 등 | ·타당성재조사 실익이 없어 미실시한 사업<br>·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

*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의3[136]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이하 'KISTEP'이라 함)과 협약을 체결하여 KISTEP이 수행하고 기획재정부는 KISTEP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36) **「국가재정법」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44.2% 수준인 1억 2,100만원만을 KISTEP에 교부하였고, 그 중 1억 1,8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최초 예산편성 대비 실집행률이 43.1%에 불과하였음.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A) | 이·전용 | 예산현액 (B) | 집행액 (교부액) (C) | 출연기관(KISTEP) 실집행내역 | | | |
|---|---|---|---|---|---|---|---|---|
| | | | | | 실집행액 (D) | 불용액 (C-D) | 집행률 (D/C) | 예산편성 대비 실집행률(D/A) |
| 2022 | 296 | - | 296 | 296 | 55 | 241 | 18.6 | 18.6 |
| 2023 | 281 | △226 | 55 | 55 | 26 | 29 | 47.3 | 9.3 |
| 2024 | 274 | - | 274 | 121 | 118 | 3 | 97.5 | 43.1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러한 실집행 저조 문제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2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위하여 KISTEP 출연금으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KISTEP의 실집행액은 5,500만원으로 최초

예산편성 대비 실집행률이 18.6% 수준이었으며, 2023년의 경우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 세부사업 예산부족을 사유로 2억 2,600만원을 전용하고 남은 5,500만원만을 교부하여 그 중 2,600만원을 집행하여 최초 예산편성 대비 실집행률이 9.3%에 불과하였음.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타당성재조사는 1건도 수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만 일부 수행하는 등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수요 대비 실제 사업 수행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임.

**[최근 3년간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
| | 집행액 | 과제명 | 집행액 | 과제명 | 조사기간 |
| 2022 | - | - | 55 | 바이오 연구 소재 활용기반 조성 사업 | 22.01.~22.08 |
| 2023 | - | - | 26 | -[1)] | - |
| 2024 | - | - | 118 |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 24.02.~24.11. |
| | | | | 한미혁신성과창출 R&D | 24.06.~25.07. |
| | | |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 24.10.~25.06. |
| | | | |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 24.10.~25.06. |

※ 조사기간이 착수년도의 다음년도로 넘어갈 경우, 사업당 단가를 월별로 계상하여 배부 및 집행
1) 2023년도의 경우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조사가 2023년 말부터 실시 예정이라 일부 비용이 집행되었으나, 2024년 초로 일정이 지연되었음.(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사전에 의뢰 건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편성과 집행 간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연례적으로 예산 과다 편성 및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행실적을 감안하여 향후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20) 재정데이터분석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재정정책국)

< 현 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은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의 통합적 수행을 지원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222억 4,000만원으로, 이 중 21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그 중 재정데이터분석센터 운영을 위한 2024년 예산액은 6억 1,900만원으로, 5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정보화) (2713-500) | 22,240 | 22,240 | - | - | - | 22,240 | 21,763 | 160 | 317 | 20,770 |
| - 재정데이터분석 센터 운영 | 619 | 619 | - | - | - | 619 | 579 | - | 40 | - |

## < 검토의견 >

**재정데이터 분석·가공·활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데이터분석센터는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재정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방문하여 보안체계 속에서 분석·가공·반출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구축되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데이터, 사회·경제 데이터, 행정데이터 및 민간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융·결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 플랫폼(KODAS, Korea Data Analysis Service)을 통해 분석데이터 총 1,701종(재정데이터 96종, 사회계정지표 1,595종, 민간 16종)과 데이터 분석도구 4가지(R, Python, SAS, Brightics AI)를 제공하고 있음.

재정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2024년 기준 센터의 이용실적 2,449건 중 데이터분석·가공은 65건(2.7%)에 불과하고, 나머지 97.3%는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530건)과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1,854건)에 집중되어 있어, 재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립목적인 데이터분석·가공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음.

**[재정데이터분석센터 개소 이후 이용실적]**

(단위: 명)

| 연도 | 월 | 계 | 데이터분석·가공 |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 | 비고 |
|---|---|---|---|---|---|---|
| 2022 | 6월 | 73 | 30 | 24 | 19 | 시범운영 |
| | 7월 | 12 | 8 | 4 | - | |
| | 8월 | 14 | 1 | 2 | 11 | |
| | 9월 | 41 | - | 14 | 27 | 정식운영 |
| | 10월 | 34 | 1 | 16 | 17 | |
| | 11월 | 60 | 1 | 47 | 12 | |
| | 12월 | 504 | 2 | 4 | 498 | |
| 소계 | | 738 | 43 | 111 | 584 | |
| 2023 | 1월 | 1 | 1 | - | - | |
| | 2월 | 20 | 4 | 16 | - | |
| | 3월 | 9 | 4 | 5 | - | |
| | 4월 | 22 | 5 | 17 | - | |
| | 5월 | 9 | 2 | 7 | - | |

| 연도 | 월 | 계 | 데이터분석·가공 |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 재정데이터분석 사용자교육 | 비고 |
|---|---|---|---|---|---|---|
| | 6월 | 234 | 2 | 21 | 211 | |
| | 7월 | 242 | 6 | 51 | 185 | |
| | 8월 | 127 | 3 | 11 | 113 | |
| | 9월 | 206 | 3 | 10 | 193 | |
| | 10월 | 226 | 6 | 20 | 200 | |
| | 11월 | 264 | 3 | 68 | 193 | |
| | 12월 | 112 | 1 | 30 | 81 | |
| 소계 | | 1,472 | 40 | 256 | 1,176 | |
| 2024 | 1월 | 14 | 2 | 12 | - | |
| | 2월 | 46 | - | 30 | 16 | |
| | 3월 | 37 | 4 | 14 | 19 | |
| | 4월 | 151 | - | 129 | 22 | |
| | 5월 | 180 | - | 125 | 55 | |
| | 6월 | 150 | - | 10 | 140 | |
| | 7월 | 178 | 13 | 35 | 130 | |
| | 8월 | 187 | 25 | 4 | 158 | |
| | 9월 | 188 | 8 | 47 | 133 | |
| | 10월 | 540 | 7 | - | 533 | |
| | 11월 | 522 | 6 | 120 | 396 | |
| | 12월 | 256 | - | 4 | 252 | |
| 소계 | | 2,449 | 65 | 530 | 1,854 | |
| 2025 | 1월 | 195 | 1 | 3 | 191 | |
| | 2월 | 322 | 13 | 51 | 258 | |
| | 3월 | 432 | 12 | 36 | 384 | |
| | 4월 | 431 | 13 | 85 | 333 | |
| 소계 | | 1,380 | 39 | 175 | 1,166 | |
| 총계 | | 6,039 | 187 | 1,072 | 4,780 | |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데이터분석·가공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재정데이터의 분석·가공이 필요한 수요가 공무원, 민간연구자 등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재정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분석 사례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재정데이터의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평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5월부터 'FIS재정분석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석사례 중심의 교육, 실제 분석환경(KODAS)에 접속하여 진행하는 실습교육, 국민의 재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형 분석사례 개발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연도별 센터 이용실적 대비 데이터분석·가공 실적을 보면 2023년 2.7%(1,472건 중 40건), 2024년 2.7%(2,449건 중 65건), 2025년 4월 기준 2.8%(1,380건 중 39건)으로, 연도별로 센터의 이용자 수가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데이터 분석·가공 활용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센터 이용실적의 양적 확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재정데이터 분석 사용자교육 및 재정데이터 분석·가공·활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정보 활용 범위 및 사례에 대한 홍보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1)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예산의 연례적 이월 시정 필요 등(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재정정책국)

### < 현 황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사업은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 등을 위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억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1,100만원 중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의 내역사업은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 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2,1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 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800만원 중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2712-305) | 100 | 100 | 11 | - | - | 111 | 73 | 3 | 35 | 75 |
| -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 | 21 | 21 | 3 | - | - | 24 | 20 | 3 | 1 | 21 |
|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 | 80 | 80 | 8 | - | - | 88 | 54 | - | 34 | 55 |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을 대행시키기 위한 일반용역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의 내역사업인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및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운영」은 8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민간·유관기관·관계부처위원 등이 참석하는 통합재정추계위원회[137]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목)와 통합재정추계위원회 간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계약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일반용역비의 연례적인 이월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매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2020년은 약 6개월간('20.12.9～'21.9.30)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지급하고 이 중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1년은 약 9개월간('21.11.24～'22.8.31)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1,250만원을 편성·지급하고 이 중 2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각각의 계약기간이 약 11개월('22.10.19.～'23.9.30.), 7개월('23.12.1～'24. 6.30.), 5개월('24.10.10.～'25. 2.28.)간 1,500만원을 편성·지급하고 매년 300만원이 이월되었음.

**[최근 5년간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용역기간 | 위원회 운영 | | 예산 현액 | 이월액 |
|---|---|---|---|---|---|
| | | 개최 | 주제 | | |
| 2020 | '20.12.9～'21.9.30 | '21.5.29. | ○ 사회보험 재정추계 현황 및 결과점검 등 | 20 | 4 |
| | | '21.8.26. | ○ 사회보험별 재정위험요인 파악 및 재정건전화 추진과제 발굴<br>○ 향후 통추위 운영방안 논의 | | |

137) 기획재정부는 동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 제7조로 들고 있으나, 통합재정추계위원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상 근거는 없음.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용역기간 | 위원회 운영 | | 예산 현액 | 이월액 |
|---|---|---|---|---|---|
| | | 개최 | 주제 | | |
| 2021 | ’21.11.24～’22.8.31 | ’21.12.8. | ○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 12.5 | 2.5 |
| | | ’21.12.10. | ○ 3개 분야(노후소득보장, 직역연금, 공공보건) | | |
| 2022 | ’22.10.19.～’23.9.30. | ’22.12.28. | ○ 8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 추진계획(안) 논의<br>○ 연금별 장기재정추계 방법 및 쟁점 | 15 | 3 |
| | | ’23.1.12. | ○ 8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 추진계획 확정<br>○ 8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 공통지침 확정 | | |
| 2023 | ’23.12.1 ～’24.6.30. | ’24.12.18 ~ 12.29. (서면) | ○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사전준비<br>○ 실무자 대상 서면논의 | 15 | 3 |
| | | ’24.6.26. | ○ 사회보험 재정추계 방법 개선방안 모색 | | |
| 2024 | ’24.10.10.～’25.2.28. | ’24.11.15. | ○ 2025 전망 인구 거시전제 설명 | 15 | 3 |
| | | ’24.11.29. | ○ 2025 전망 시나리오·민감도 분석<br>○ 8대 사회보험별 추계 방법 개선방안<br>○ 8대 사회보험 전망보고서 작성내용 | | |
| | | ’24.12.12. | ○ 2025 전망 공통지침(안) 논의 |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연례적인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38]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장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연도 연초부터 계약을 하거나, 부득이 2개년도에 걸쳐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연도별 연부액을 구분하여 연도별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가위원회 운영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지시서 내용]

| 구분 |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내용 |
|---|---|
| 2022 | □ 통합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건전화 계획 등을 논의<br>○ 사회보험 각 분야별 관계부처, 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운영 |
| 2023 | □ 통합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건전화 계획 등을 논의<br>○ 사회보험 각 분야별 관계부처, 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운영 |
| 2024 | □ 2025년 장기재정전망 관련 통합재정추계 실시 전 과정 중 전반기('24.10월 ~ '25.2월) 위탁 용역 수행(후반기는 '25.3~'25.9월)<br>□ 통합 재정추계를 위한 공통전제 및 공통지침 마련 등 주요 분야별 추계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작업 완료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둘째,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의 내역사업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 사업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해외사례연구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정책연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정책연구비(260-02목) 예산에서 연례적인 이월 또는 불용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9,000만원의 정책연구비 중 1,100만원(12.2%)이 불용되었고, 2021년 7,300만원 중 1,600만원(21.9%)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 7,500만원 중 3,600만원(48.0%)이 이월되었고, 2023년 7,500만원 중 800만원(10.7%)이 이월되었으며, 2024년 7,500만원 중 3,200만원(42.7%)이 불용되는 등 연례적으로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의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2020 | 90 | 90 | 35 | - | - | 125 | 115 | - | 11 |
| 2021 | 73 | 73 | - | 8 | - | 80 | 64 | 16 | - |
| 2022 | 75 | 75 | 16 | 135 | - | 226 | 187 | 36 | 3 |
| 2023 | 75 | 75 | 36 | - | - | 111 | 96 | 8 | 7 |
| 2024 | 75 | 75 | 8 | - | - | 83 | 51 | - | 32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한편, 「기획재정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용역 사업의 결과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규정[139]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 사업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대다수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고 있음.

[최근 3년간 경제정책개발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약상대방 | 계약유형 | 프리즘 공개여부 |
|---|---|---|---|---|---|---|
| 2022 | 사회보험 재정추계 연구 | 30 | '22 10.17.~'22.12 1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수의 | 공개 |
| | 사회보장 공론조사 | 90 | '22.12.13.~'23.6.30. | ㈜엠브레인퍼블릭 | 수의 | 비공개 |
| |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 | 90 | '22.12.13.~'23.6.30. | 한국개발연구원 | 수의 | 비공개 |
| 2023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 30 | '23.2.16.~'23.9.30. | 한국개발연구원 | 수의 | 비공개 |
| | 주요국 장기재정전망 사례 분석 | 40 | '23.12.13.~'24.4.3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수의 | 비공개 |
| 2024 | 주요국의 재정관리지표 연구 | 45 | '24.8.13.~'24.12.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수의 | 비공개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39) **「기획재정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2조(정책연구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 활용결과보고서(별지6호 서식)에 작성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25년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해당 정책연구용역들이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140]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위의 비공개 대상 연구용역 대부분이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가 장기재정전망 수립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구용역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사업은 8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국민적 관심과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연례적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1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2) 예비비의 법적 근거 없는 기금 전출 부적절 및 전용 등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등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실)

### < 현 황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따로 항목을 두어 마련된 경비를 말함.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141]에 따라 예산의 편성 · 확정시점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

2024년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4조 2,000억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는 2조원이고, 목적예비비는 2조 2,000억원임. 2024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4조 2,000억원 중 1조 7,262억원이 지출결정되었고 1조 6,38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5억원이 이월되었고 2조 5,595억원이 불용되었음. 예비비 지출액 중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1조 796억원이며, 목적예비비 지출액은 5,584억원임.

[2024회계연도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2025 |
|---|---|---|---|---|---|---|
| | 예산액 |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일반회계 예비비 (3069-300) | 42,000 | 17,262 | 16,380 | 25 | 25,595 | 24,000 |

자료: 기획재정부

14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검토의견 >

「일반회계 예비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일반회계 예비비를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기금으로 예비비를 전출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115억원 전출하여 집행하였음. 그러나 일반회계 예비비를 다음과 같이 기금으로 전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기금으로 전출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문제가 있음.

① 우선, 「국가재정법」 제51조제4항[142]은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특별회계 중에서도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받는 특별회계만 예비비 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해석됨.

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특별회계보다 그 자율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비비 전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기금으로의 전출은 더욱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실제 기획재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기금의 경우 별도로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②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3조[143]에서는 예비비 승인 후에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지출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는 기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③ 뿐만 아니라, 예비비 편성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142)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14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충성이란 이·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금은 사업자금 외에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및 기금운용계획은 주요항목의 일정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승인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여 신축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열거한 예비비 편성의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출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2024년 기준 여유자금 규모는 327억 4,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여유자금 운용 평잔 역시 510억 6,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2024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여유자금 규모 | 여유자금 운용 현황(평잔) | | |
|---|---|---|---|---|
| | | 소계<br>(수익률) | 직접운용<br>(수익률) | 위탁운용<br>(수익률) |
| 2022 | 41,204 | 104,444<br>(2.34%) | - | 104,444<br>(2.34%) |
| 2023 | 32,285 | 88,946<br>(3.91%) | - | 88,946<br>(3.91%) |
| 2024 | 32,749 | 51,061<br>(3.72%) | - | 51,061<br>(3.7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일반회계 예비비를 기금으로 전입하여 사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전출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예비비 전용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각 부처에 배정된 예비비의 전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타 사업이나 타 비목으로 이·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예비비 배정 후 전용내역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경우 예비비 배정

후 총 11건의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6건의 경우 전용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 특히 6건 중 5건의 경우 자체전용이 7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는 11월 1일에나 이루어졌으며, 총 11건의 우주항공청 예비비 전용 중 9건의 협의가 2024년 11월 1일에 이루어져 사실상 그 협의가 사후적으로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는 등 집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전용 현황 중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명 | 세부사업명 | 전용내역 | 금액 | 전용사유 (전용일) | 기재부장관 협의일 |
|---|---|---|---|---|---|
| 우주항공청 | 국가위성 운영센터 운영 | 업무추진비, 위성센터 → 환경센터 | △2 | 센터간 업무추진비 조정 (2024.7.8.) | 2024.11.1 |
| | 우주환경센터 운영 | | 2 | | |
| | 사무환경 조성 | 공사비, 사무환경 조성 → 정보화 | △400 | 우주청 개청준비 사무 환경조성 (2024.7.12.) | 2024.11.1 |
| | 우주항공 정보화 | | 400 | | |
| | 총액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기본경비 → 환경센터 | △35 | 전산장비 전기요금 부족 (2024.9.23.) | 2024.11.1 |
| | 우주환경센터 운영 | | 35 | | |
| | 사무환경 조성 | 공사비, 사무환경 조성 → 환경센터 | △20 | 청사 출입문 및 소방셔터 보수공사 (2024.9.23.) | 2024.11.1 |
| | 우주환경센터 운영 | | 20 | | |
| |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 임차료, 기본경비 → 전략기획실 | △11 | 전략기획실 임차료 예상 필요액 조정 (2024.10.10.) | 2024.11.1 |
| | 전략기획실 운영 | | 11 | | |
| | 사무환경 조성 | 공사비 → 자산취득비 | △223 | 임시청사 2차 공사로 인한 자산취득비 추가 소요 발생(2024.12.16.) | 2024.12.16 |
| | | | 223 |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우주항공청 전용 내역 11건 중 2건의 경우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일반용역비를 정책연구비로 전용하였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주제는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 방안 연구용역'이며, 우주항공산업국 기본경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주제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자산 및 서비스 구매 방식 도입 방향 연구용역'임.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의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효율적인 재해복구 지원, 국제관계 등 대외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연구비 수행 필요성이 예비비

조정이 필요한 만큼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2024회계연도 예비비 전용 현황 중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명 | 세부사업명 | 전용내역 | 금액 | 전용사유<br>(전용일) | 기재부장관<br>협의일 |
|---|---|---|---|---|---|
| 우주항공청 | 총액비대상<br>기획조정관 기본경비 | 기획조정관<br>일반용역비 →<br>정책연구비) | △90<br>90 | 정책연구용역 추진<br>(2024.12.4.) | 2024.11.1 |
| | 총액비대상<br>우주항공산업국<br>기본경비 | 산업국<br>일반용역비 →<br>정책연구비) | △90<br>90 | 정책연구용역 추진<br>(2024.12.9.) | 2024.11.1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2024년도 예비비 집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은 예비비 전용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불필요한 전용을 실시한 문제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처이며, 사전 협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예비비 전용에 있어 사전 협의를 누락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가 있으며, 재해 발생이나 국제관계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예비비 전용을 협의하는 등 예비비 전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비비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전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예비비 요구 및 배정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예비비 배정액에 비해 불용이나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비비 배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으므로 배정 및 집행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및 집행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그러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예비비 배정액에 비해 불용액이 크거나 예비비 배정액에 비해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가 과다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전출'이나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우

주환경센터 운영'은 예비비 배정액에 비해 최종 불용액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비비가 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2024회계연도 예비비 배정액에 비해 불용액이 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예비비 | 이체·이·전용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 | 불용 |
|---|---|---|---|---|---|---|---|
|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전출 | 819,223 | 27,600 | 0 | 846,823 | 689,569 | 0 | 157,254 |
|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 38,169 | 1,279 | △170 | 39,270 | 37,049 | 0 | 2,221 |
| 우주환경센터 운영 | 0 | 130 | 388 | 518 | 380 | 0 | 138 |

자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홍보 사업'은 2024년 배정받은 예비비에 비해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안전부의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기획재정부의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등 총 6개의 사업에서 예비비 배정규모에 비해 이월액 및 불용액의 합이 30% 이상이 되는 등 그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예비비가 시급성이 떨어지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구·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2024회계연도 예비비에 비해 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가 30% 이상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부처명) | 예산액 | 예비비(a) | 이·전용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b) | 불용(c) | 비율 [(b+c)/a] |
|---|---|---|---|---|---|---|---|---|
| 미디어홍보 (문화체육관광부) | 13,604 | 1,940 | 700 | 16,244 | 14,205 | 125 | 1,914 | 105.1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행정안전부) | 94 | 147 | 0 | 241 | 159 | 0 | 82 | 55.8 |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기획재정부) | 0 | 511 | 0 | 511 | 263 | 0 | 247 | 48.3 |
| 전략기획실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 0 | 164 | 0 | 164 | 94 | 0 | 70 | 42.7 |
| 국가위성 운영센터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 0 | 1,163 | 0 | 1,229 | 774 | 0 | 456 | 39.2 |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보건복지부) | 0 | 1,632 | 0 | 1,632 | 1,135 | 101 | 396 | 30.5 |

자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비비가 실제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보다 과다하게 배정되어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 경우가 나타나므로 정부는 예비비 요구 시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배정 총괄 부서로서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는 등 배정 및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넷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실적 등의 국회 보고, 예비비 규모 결정의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예비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당시 예비비 증액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실적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예비비의 적정 규모에 대하여 매년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일정 비율로 결정할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음.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심의를 위해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실적, 적정 규모에 대한 산출 기준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하는 방안 및 다른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선방안을 아직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나, 차년도 예산안에도 예비비가 편성될 것이므로 차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는 조속히 예비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23) 미흡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주의 필요 등 (역내 금융협력사업, 국제금융국)

< 현 황 >

「역내 금융협력사업」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144] 다자화(CMIM) 및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145] 등 ASEAN+3 역내금융협력을 강화하고, ASEAN+3 및 한일중 금융협력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 61억 7,800만원 중 59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 중 2024년 일반용역비 예산현액 11억 7,900만원 중 1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역내 금융협력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역내 금융협력사업 (3131-304) | 6,010 | 6,010 | 190 | △22 | - | 6,178 | 5,970 | 89 | 119 | 5,891 |
| - 일반용역비 | 1,209 | 1,209 | - | △30 | - | 1,179 | 1,054 | 59 | 66 | 548 |

일반용역비는 아시아 공무원 금융연수 4억 2,800만원, 한·일 양자회의 개최 4,000만원, 아시아적격담보포럼 준비 사무국 운영 5,000만원, 양자회의 등 개최 4,000만원, 역내 금융협력 강화 국제세미나 개최 4,000만원, ASEAN+3 의장국 수임 6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144)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교환협정

145)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산하 아시아채권시장의 육성을 위해 2003년에 설립된 회의체

[역내 금융협력사업 일반용역비 2024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 2024년 예산 | | |
|---|---|---|
| 내역 | 산출근거 | 원화(천원) |
| [210-14]일반용역비 | | 1,209,000 |
| 1. 아시아 공무원 금융연수 | | 428,000 |
| 가.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연수 | 214,000,000원*1회 = | 214,000 |
| 나.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연수 | 214,000,000원*1회 = | 214,000 |
| 2. 한·일 양자회의 개최 | | 40,000 |
| 가. 한일 재무당국자 교류행사 개최 | 40,000,000원*1회= | 40,000 |
| **3. 아시아 적격담보포럼 준비 사무국 운영** | **50,000,000원 =** | **50,000** |
| 4. 양자회의 등 개최 | 20,000,000원*2회= | 40,000 |
| 5. 역내 금융협력 강화 국제세미나 개최 | | 40,000 |
| 가.역내금융협력강화국제세미나 | 40,000,000원 = | 40,000 |
| 6. ASEAN+3 의장국 수임 | 611,000,000원 = | 611,000 |

자료: 기획재정부

이 중 아시아 적격담보포럼(APCF, Asian Prime Collateral Forum)은 역내 금융안정 및 자금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ASEAN+3 우량채권의 글로벌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포럼임. 우리나라가 2016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역내 채권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안하여 금융협력 과제로 채택하면서 2017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음.

##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아시아 적격담보포럼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을 다른 사업인 디지털채권시장포럼 개최에 활용하였는데, 향후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아시아 적격담보포럼을 개최하지 않고, '아

시아적격담보포럼 준비 사무국 운영’ 예산(5,000만원)과 ‘역내 금융협력 강화 국제세미나 개최’ 예산(4,000만원)을 활용하여 ‘디지털채권시장포럼 행사 운영 지원’ 계약(발주금액 6,000만원, 계약금액 5,900만원)을 체결하여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였음. 이를 통해 2025년 2월 10일 서울에서 ‘제1차 디지털채권시장포럼(Digital Bond Market Forum, DBMF)’을 개최하였음.

즉, 기획재정부는 ‘역내 금융협력 강화 국제세미나 개최’ 예산(4,000만원)만으로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하기 어려워 ‘아시아적격담보포럼 준비 사무국 운영’ 예산(5,000만원)을 활용한 것임.

**[디지털채권시장포럼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년 일반용역비 예산 | 일반용역비 계약 내역 | | | | | |
|---|---|---|---|---|---|---|---|---|
| | | | 계약명 | 발주금액 | 계약금액 | 수탁기관 | 계약기간 | 계약유형 |
| 역내 금융협력 사업 (3131-304) | 역내 금융협력 강화 국제세미나 개최 | 40 | 디지털채권시장포럼 행사 운영 지원 | 60 | 59 | 컨베닉스 | ’24.12.27 ~ ’25.2.28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 | 아시아 적격담보포럼 준비 사무국 운영 | 50 |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당시 아시아 적격담보포럼 개편논의가 진행중이었으나, 개편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개최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어 ‘아시아적격담보포럼 준비 사무국 운영’ 사업을 편성했고 부득이하게 디지털채권시장포럼 개최에 ‘아시아적격담보포럼 준비 사무국 운영’ 사업 예산 일부를 사용했다는 입장임.[146]

그러나 아시아 적격담보포럼은 2017년과 2018년 대면 개최되고, 2022년 1월에 비대면 개최된 이후 개최된 바 없어 사실상 2024년에 다시 개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개최 가능성이 낮은 행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사업에 일부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므로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6) ASEAN+3 회원국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2024년 9월 아시아 적격담보포럼이 시장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채권시장포럼으로 전환 결정

**둘째,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2025년 2월에 개최하면서 2024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계약금 5,900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2024년 9월에 ASEAN+3 실무회의시 발표하여 확정지었음. 당초 2024년에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인 ADB 및 역내 회원국간 협의결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5년 2월 ABMF(ASEAN+3 Bond Market Forum, 역내 채권시장 전문가 포럼) 등과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2024년 10월에 결정하였음.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4일에 입찰공고를 하고, 2024년 12월 27일에 컨베닉스와 행사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음.[147] 이와 같이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5,9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 2025년에 집행하였는데, 2024년 예산을 활용하여 2025년 사업인 디지털 채권시장 포럼을 위해 집행한 것이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됨.[148]

이러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디지털채권시장포럼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해당 사업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고, 2024년 중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임.

이에 따라 디지털 채권시장 포럼을 2025년 2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2024년 중 확정한 후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 행사 개최비용을 편성하지 않고 2024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고,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서 2024년 내 계약이 필요하였고 2024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행사의 계획을 2024년 중 구체화하면서, 행사 개최시기가 2025년으로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2024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채권시장 포럼처럼 연초인 2024년 2월 28일에

147) 계약 방식은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임
14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ASEAN+3 실무회의’를 개최했는데, 2024년 1월 17일에 입찰 공고를 하고 2월에 계약하여 전년도 예산이 아닌 2024년도 예산으로 계약금액을 집행하고 정상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음.[149] 이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지털 채권시장 포럼을 2025년 초에 개최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계약절차를 진행함으로써 2025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9) 계약명은 ‘ASEAN+3 역내 금융협력 의장국 수임 지원’이며, 계약금액은 5억 9,8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2024년 2월~12월임

## (24) 고용휴직자 휴직결과보고서 등 게시 필요 (국제금융기구 출연, 개발금융국)

### < 현 황 >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은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국제부담금을 출연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 3,450억 5,400만원 중 3,44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제금융기구 출연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국제금융기구 출연 (3134-301) | 345,054 | 345,054 | - | - | - | 345,054 | 344,109 | - | 945 | 261,456 |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란 공무원이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임. 고용휴직은 ①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 제7장제3절(국제기구 고용휴직 및 고용휴직위원회)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150]과 ② 동 규칙 제7장제5절(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의 규정에 따라 부처별로 자체 국제부담금 예산 등을 통해 운용하는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151]으로 구분됨.

---

150) 인사혁신처가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고용휴직의 경우,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인건비·부대경비는 인사혁신처 소관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 사업에 국제부담금 비목으로 편성됨.

**「공무원 임용규칙」 제3절 국제기구 고용휴직 및 고용휴직위원회**

**제60조(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① 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하며, 고용휴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제4절에도 적용한다.

151) **「공무원 임용규칙」 제5절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제81조(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① 제5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고용휴직(이하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이라 한다) 및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4년 기획재정부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 고용휴직 인원은 19명이며, 자체 고용휴직 인원은 25명임.

**[기획재정부 공무원 중 국제기구 고용휴직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① 인사혁신처 통합 고용휴직 | 16 | 11 | 16 | 17 | 17 | 19 |
| ② 기획재정부 자체 고용휴직 | 26 | 25 | 26 | 27 | 24 | 25 |
| 합계 | 42 | 36 | 42 | 44 | 41 | 44 |

주) 휴직 인원은 연말 기준으로 휴직 중인 인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기획재정부는「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을 하고 있으며, 출연을 받은 국제금융기구에는 다수의 기획재정부 자체 고용휴직자가 근무하고 있음.

2024년에는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에서 ①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의 한-IMF 기술협력기금 등 385억원, ② WB(World Bank, 세계은행)[152]의 녹색성장기금, 한-WB협력기금 등 1,445억원, ③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의 e-아시아협력기금 등 494억원, ④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기금 156억원, ⑤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 지속가능인프라기금 등 707억원, ⑥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 134억원, ⑦ CABEI(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협력기금 119억원 등이 출연되었음.

그리고 2024년에 출연을 받은 국제금융기구 중 AfDB를 제외한 모든 국제기구 및 산하기관에 기획재정부 자체 고용휴직자 총 17명이 근무 중임.[153]

152) 세계은행(WB)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를 통칭함.

153) 국제금융기구 외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인 자체고용휴직자 8명은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 3명,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개발계획) 사무국 2명,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1명,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1명,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1명임

##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의 2024년 출연 실적 및 자체 고용휴직 인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국제금융기구 (소재지) | | 2024년 | |
|---|---|---|---|
| | | 출연 실적 | 기재부 자체 고용휴직 인원 |
| WB (미국) | 금융혁신기금 | 11,700 | 4명 (IBRD 고용휴직자) |
| | 녹색성장기금 | 15,600 | |
| | 초급전문가JPO 파견 | 2,821 | |
| | 한·WB협력기금 | 110,500 | |
| | IFC 녹색회복혁신기금 | 3,900 | |
| | 소 계 | **144,521** | |
| ADB (필리핀) | e-Asia지식협력기금 | 28,182 | 3명 |
| | ADF 13차 재원보충 | 21,251 | |
| | 소 계 | **49,433** | |
| AfDB (코트디부아르)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 **15,600** | - |
| EBRD (영국) | 기술자문협력기금 | 1,872 | 1명 |
| | 초급전문가 JPO 및 인턴파견 | 1,101 | |
| | 기후행동특별기금 | 2,771 | |
| | 재난대응특별기금 | 65,000 | |
| | 소 계 | **70,744** | |
| IDB (미국) | 빈곤감축기금 | 7,800 | 4명 (소속기관인 IDB Invest 고용휴직자 포함) |
| | 지식협력기금 | 390 | |
| | 재정혁신협력기금 | 5,200 | |
| | 소 계 | **13,390** | |
| IMF (미국) | 한·IMF 기술협력기금 | 7,649 | 3명 |
| | 저소득국빈곤감축기금 | 30,872 | |
| | 소 계 | **38,521** | |
| CABEI (온두라스) | 한-CABEI 협력기금 | **11,900** | 2명 |
| **합 계** | | **344,109** | 17명 |

주) 자체 고용휴직 인원은 연말 기준으로 휴직 중인 인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자체 고용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권고하는 바와 달리 휴직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등 고용휴직제도의 운영이 미흡하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휴직자의 휴직결과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체 고용휴직의 경우, 고용휴직자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87조제9항에 따라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또한, 동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여야 하고,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154][155] 그리고 동조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휴직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야 하는데, 보고서가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지 여부는 기본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임.[156]

이와 같이 휴직결과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결과보고서 공개를 통해 절차와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기구 근무 경험을 통해 얻은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타 공무원 및 대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그 성과가 조직 전체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154) **「공무원 임용규칙」**
**제87조(성과평가 및 복무관리 등)** ⑨ 휴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연 1회 이상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복직결과통보 및 활용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 복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5) 국제기구 고용휴직 결과보고서는 근무성과, 파견기관 및 국제기구의 최신 행정정보 등 주요추진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향후 근무할 자를 위한 조언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함.(「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56)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따라서, 휴직결과보고서 등의 홈페이지 게시는 의무가 아니라 휴직공무원과 소속장관이 노력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고용휴직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공무원이 자체 고용휴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공무원이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실적이 전무함. 또한, 고용휴직자의 휴직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실적도 전무하여 고용휴직제도의 운영이 미흡한 실정임.

**[기획재정부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 관리 이행현황]**

| 사후관리 항목 | 근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건수(누적) |
|---|---|---|
| 휴직공무원이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 「공무원 임용규칙」 제87조제3항 | 0건 |
| 휴직결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 | 「공무원 임용규칙」 제88조제3항 | 0건 |

주) 2025년 5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향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공무원이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과 휴직결과보고서를 소속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체 고용휴직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위배한 자율기구 운영 및 예비비 과다불용 등 주의 필요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국제금융국)

< 현 황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은 정부, 국부펀드, 연기금 등 타국 투자 관련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내 국제투자협력단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4년 예비비 5억 1,100만원으로 구성된 예산현액 5억 1,100만원 중 2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3135-309) | - | - | - | - | 511 | 511 | 263 | - | 247 | 86 |

기획재정부는 한-UAE 정상회담(2023년 1월) 계기 약정한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의 300억불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157]에 따라 임시정원을 활용해 운영되는 자율기구인 금융투자지원단을 신설하여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운영하였음.

그리고 다시 임시정원으로 운영되는 자율기구인 국제투자협력단을 2024년 2월에 신설하여 2025년 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국제투자협력단 운영을 위해 예비비 5억 1,100만

15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4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원을 배정받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을 신설하였음.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예산 세부내역]**

□ 예비비 총 511백만원

① 일반수용비 내역: ('24예비비) 23백만원
- (산출) 한-UAE 협력채널 구성 및 운영경비 등 = 23백만원

② 특근매식비 내역: ('24예비비) 1백만원
- (산출) 직원 특근매식비 = 1백만원

③ 임차료 내역: ('24예비비) 77백만원
- (산출) 차량, 국내·외 회의장 및 사무기기 = 77백만원

④ 일반용역비 내역: ('24예비비) 90백만원
- (산출) UAE 국부펀드 등 대표단 방한행사 및 투자협력 IR 비용 = 90백만원

⑤ 기타운영비 내역: ('24예비비) 4백만원
- (산출) 단 운영비 및 단장실 운영비 = 4백만원

⑥ 여비 및 업추비 내역: ('24예비비) 317백만원
- (산출) 국내여비(8백만원), 국외여비(256백만원), 업추비(54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임시정원 자율기구인 금융투자지원단을 2023년 2월부터 1년간 운영한 후,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을 신설하여 2024년 2월부터 1년간 운영하였는데, 이는 임시정원 자율기구를 최대 1년 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제2항에 따르면 임시정원 조직(자율기구)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운영할 수 있음.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158]

158) 행정안전부 「202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운영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6개월 범위내)에 한해 추가 연장 가능함.

기획재정부는 UAE 국부펀드의 투자유치를 위해 자율기구인 금융투자지원단을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간 운영(1회 연장)하였음. 즉, 금융투자지원단은 최대 운영기간인 1년간 운영되고 종료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해당 자율기구의 운영기간을 재연장할 수 없음. 또한, 금융투자지원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기구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제2항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지원단 운영이 종료된 2024년 2월에 새로운 자율기구인 국제투자협력단을 창설하였는데, 국제투자협력단은 UAE 등 외국 정부 및 기관과의 투자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서 금융투자지원단과 사실상 동일한 자율기구임.

**[금융투자지원단과 국제투자협력단 간 비교]**

| 구분 | 금융투자지원단 | 국제투자협력단 |
|---|---|---|
| 운영기간 | '23.2.22 ~ '24.2.21<br>(1회 연장, 1년간 운영) | '24.2.22 ~ '25.2.21<br>(1회 연장, 1년간 운영) |
| 설치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 | |
| 정원 | 3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 |
| 수행업무 |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br>1.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정책수립 및 제도 등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br>2.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관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br>3. 외국의 국부펀드 운용 현황 파악 및 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br>4. 국내외 홍보 및 애로사항 해소 등 금융투자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br>5. UAE 투자협력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br>6.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7. 韓-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 등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br>8. 그 밖에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br>1.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br>2.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br>3. 투자제안의 발굴 및 전달 관련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4.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br>5. 투자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6. 투자협력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7. 그 밖에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 예산 편성 | 2023년 예비비 7억 3,800만원<br>2024년 본예산 1억 2,000만원 | 2024년 예비비 5억 1,100만원<br>2025년 본예산 8,600만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는 다른 이름의 자율기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지원단을 법령상 최대운영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사실상 2년간 운영한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위배하여 조직을 운영한 것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지원단은 UAE 국부펀드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이고, 국제투자협력단은 이를 승계하여 UAE뿐 아니라 중동, 캐나다, 싱가포르 등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연기금 등과의 투자 협력으로 확장을 추진하였으므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재정부 훈령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59]에 따르면 금융투자지원단의 업무범위는 UAE 국부펀드의 투자유치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 촉진도 포함되며, 금융투자지원단은 카타르 국부펀드 QIA(Qatar Investment Authority),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등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한 실적이 있음.[160] 따라서, 금융투자지원단과 국제투자협력단은 기능상 명백한 차이를 갖고 있는 별개의 자율기구라고 보기 어려움.

기획재정부는 향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위배하여 자율기구를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은 예비비 배정액 5억 1,100만원 중 48.4%에 해당하는 2억 4,7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규모가 과다하므로, 추후 신규 사업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은 전액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현액 5억 1,100만원 중 2억 6,3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51.6%로 저조함. 불용액은 2억 4,700만원이며, 불용률은 48.4%로 높은 수준임.

---

159)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금융투자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정책수립 및 제도 등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관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국부펀드 운용 현황 파악 및 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홍보 및 애로사항 해소 등 금융투자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UAE 투자협력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韓-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 등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0) 예를 들어 금융투자지원단은 2024년 1월 30일에 '싱가포르 및 카타르 국부펀드 협력'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고, '중동 국부펀드 협력'을 위해 2024년 2월 4일에 카타르 및 UAE를 방문하였음.

당초 기획재정부는 카타르 국부펀드 관계자 등 방한 행사를 위해 국외업무여비 및 일반용역비 등을 집행하려고 했음. 그러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관련 행사 및 출장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일반용역비는 9,000만원 중 5,000만원(불용률 55.6%)이 불용되고, 국외업무여비는 2억 5,600만원 중 1억 3,700만원(불용률 53.5%)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 비 목 | 2024년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일반수용비 (210-01) | - | - | 23 | 23 | 23 | - | - | 3 |
| - 특근매식비 (210-05) | - | - | 1 | 1 | 1 | - | - | - |
| - 임차료 (210-07) | - | - | 77 | 77 | 21 | - | 56 | 16 |
| - 일반용역비 (210-14) | - | - | 90 | 90 | 40 | - | 50 | 15 |
| - 기타운영비 (210-16) | - | - | 4 | 4 | 2 | - | 2 | 1 |
| - 국내여비 (220-01) | - | - | 8 | 8 | 5 | - | 3 | 2 |
| -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256 | 256 | 119 | - | 137 | 37 |
| - 사업추진비 (240-01) | - | - | 30 | 30 | 30 | - | - | 4 |
|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 - | - | 23 | 23 | 23 | - | - | 8 |
| 합 계 | - | - | 511 | 511 | 263 | - | 247 | 86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2024년 중 기획재정부 훈령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제투자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예비비 배정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2023년 10월부터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4월에 예비비를 배정받은 시점에도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어 중동 관계자 방한 등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과다한 예비비를 배정받고 상당액을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제투자협력단은 외국 국부펀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율기구로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UAE 등 외국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실적을 파악하지 못하여 성과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는 300억 달러 규모로 국내에 투자하기로 약정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이후 금융투자지원단과 국제투자협력단을 자율기구로 운영하였음.

그러나 UAE 국부펀드는 투자내역을 기밀사항으로 관리하여 기획재정부 등 국내 기관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UAE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기타 국부펀드의 국내투자 세부내역 및 투자 총액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161] 이에 따라 자율기구 운영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임시정원 조직 폐지 시 종료 2주 전까지 운영성과보고서 공시를 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202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 운영현황 및 성과'라는 문서를 2025년 2월에 공시하였음. 그리고 운영성과에는 'UAE 국부펀드의 실제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는 가운데 검토 중인 투자기회 규모도 지속 확대 중'이라는 점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투자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지 확인이 불가능함.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국제투자협력단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내 팀이 투자 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UAE, 카타르 등 국부펀드의 구체적인 투자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객관적인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실적을 공유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61) 기획재정부는 양측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UAE 국부펀드 측이 공개한 개별 실적만 파악하고 있음
* ('24.5.29) 무바달라 등 UAE 기관 60억불 이상 국내 투자기회 검토
(25.3.25.) Arcera(UAE 국부펀드인 ADQ의 자회사)와 AriBIO간 MOU 체결

## (26)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 추진 및 저조한 실집행 주의 필요 (통상연계형경협사업, 대외경제국)

< 현 황 >

「통상연계형경협사업」은 신흥국 내 비관세장벽 등 FTA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통상현안을 해소하고자 신흥국과 공동 R&D·산업연수·기술교육 등 상생형 경제협력을 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4억 9,900만원으로, 이월된 7,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7,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통상연계형경협사업」의 내역사업인 「베트남 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실무 인력 양성」은 베트남에 한국식 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시스템 제도를 전수하고 관련 실무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 2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통상연계형경협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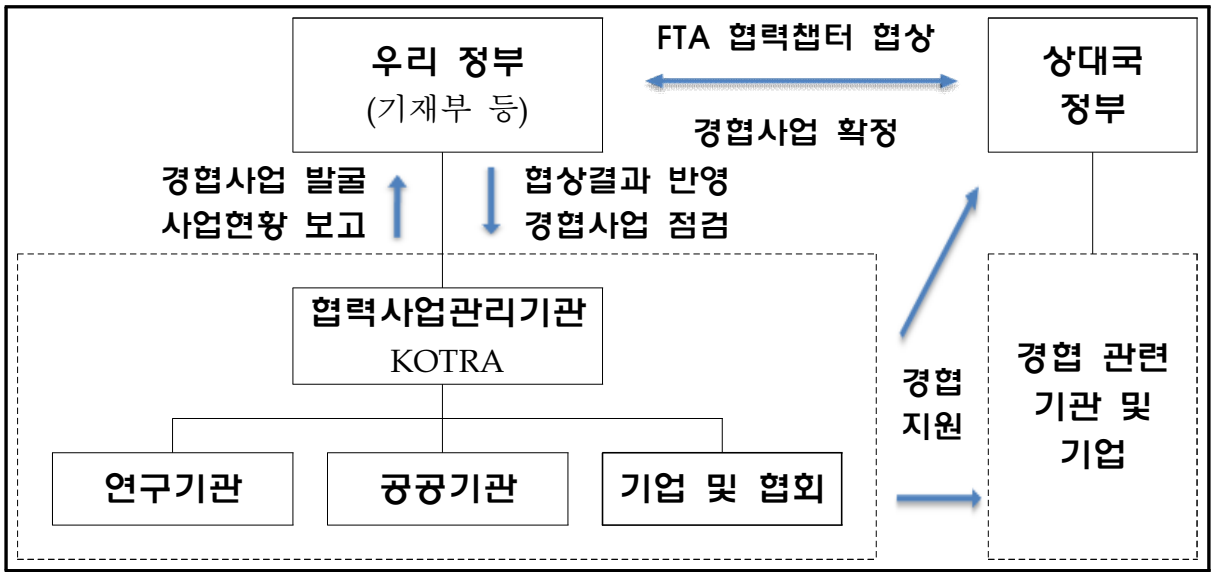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통상연계형경협사업 (3231-308) | 499 | 499 | 79 | - | - | 578 | 578 | - | - | 699 |
| **- 베트남 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실무 인력 양성** | **250** | **250** | **-** | **-** | **-** | **250** | **250** | **-** | **-** | |
| - 인도네시아 무역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 | 249 | 249 | - | - | - | 249 | 249 | - | - | |
| - 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CEPA 활용방안 수립 | - | - | 79 | - | - | 79 | 79 | - | - | |

주)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내역사업 단위로 편성하지 않았음

동 세부사업은 2017년부터 개시되었는데, 대상국은 FTA 체결 시 우리 측에서 경제협력을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협정문 내 경제협력위 설치·운영이 명시된 국가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FTA 협상 신흥국 중 가장 먼저 FTA가 타결·발효된 베트남을 시범

국가로 총 16개 사업이 수행되었음. 그리고 2023년부터는 FTA 발효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사업이 개시되었음. KOTRA가 경협사업 관리기관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함.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사업 집행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에 내역사업인 「베트남 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실무 인력 양성」 사업(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는데,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인 「인도네시아 건설분야 역량 강화」 사업에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음.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제출하는 연도 1~2월에 사업제안을 발굴하고 3월에 사업제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4월에 사업을 선정한 후 예산요구서를 제출함. 그리고 5월부터~11월까지 사업제안 기관·기업 등과 추진계획을 협의한 후, 12월에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다음연도부터 사업을 개시함.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베트남 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실무 인력 양성」 사업(2억 5,000만원)과 「인도네시아 무역역량강화로드맵 수립」 사업(2억 4,900만원) 등 2개 내역사업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실무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신규 내역사업인 「인도네시아 건설분야 역량 강화」 사업[162]에 2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이는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약화시키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실무 인력 양성」 사업은 사업비용 공동 부담에 대한 베트남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무산되어 통상연계형 경협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163]에 해당되므로, 향후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상연계형경협사업」은 기획재정부가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인 「인도네시아 건설분야 역량 강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실집행이 저조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교부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세부사업의 2024년도 실집행률은 63.1%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2024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건설분야 역량 강화」 사업은 교부된 보조금 2억 5,000만원 중 1억 6,2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4.8%에 그쳤고, 「인도네시아 무역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 사업은 교부된 보조금 2억 4,900만원 중 1억 5,3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1.4%에 그쳤음.

---

162)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하여 지속가능한 건설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건설 법규 현황 분석, 지속가능한 건설기술 및 인프라개발 정보 공유, 유관부처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16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024회계연도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
| 인도네시아 건설분야 역량 강화 | 250 | 250 | 250 | 250 | - | 250 | 162 | 88 | - | 64.8 |
| 인도네시아 무역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 | 249 | 249 | 249 | 249 | - | 249 | 153 | 96 | - | 61.4 |
| 합계 | 499 | 499 | 499 | 499 | - | 499 | 315 | 184 | - | 63.1 |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실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기획재정부와 KOTRA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계획에 없던 「인도네시아 건설분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마련이 늦어졌기 때문임. 2024년 4월에서야 사업계획인 '2024년 한-인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추진(안)'[164]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5월에 보조금 1차 교부가 이루어지는 등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음.[165]

참고로,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는 동 세부사업에 대해 보조금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2021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76.0%를 달성하였고, 2019년에 96.3%, 2020년 88.5% 실집행률을 보인바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없음'이라고 평가하며 '추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 2023년에는 실집행률이 13.5%(실집행액 7,100만원/예산액 5억 2,500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실집행률이 64.8%(실집행액 3억 7,800만원/예산액 5억 8,300만원)으로 저조했음.

164) 동 계획은 「인도네시아 건설분야 역량 강화」 사업과 「인도네시아 무역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임.

165)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시 제출한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운영절차' 에 따르면 1차 교부금 신청 및 교부는 해당 연도 2월에 이루어짐.

[2023회계연도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
| 인도네시아 무역역량강화 마스터 플랜 수립 | 263 | 263 | 263 | 263 | - | 263 | 71 | 192 | - | 27.0 |
| 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 CEPA 활용방안 수립 | 263 | 263 | 183 | 183 | - | 183 | - | 183 | - | - |
| 합계 | 526 | 526 | 446 | 446 | - | 446 | 71 | 375 | - | 13.5 |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통상연계형경협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본예산 | 추경 (A) | | | | | | | | |
|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 433 | 433 | 433 | 433 | - | 433 | 378 | - | - | 87.3 |
| 한-캄보디아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로드맵 수립 | 150 | 150 | 105 | 105 | - | 105 | - | - | 105 | - |
| 합계 | 583 | 583 | 538 | 538 | - | 538 | 378 | - | 105 | 64.8 |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산 편성·교부 시 실집행률 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7) 특별계정 출자 시 잉여재원 고려 및 계정 간 구분 명확화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대외경제국)

<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일반계정으로 금융제공이 곤란한 국가 소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설치한 한국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 1,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3236-301) | 100,000 | 100,000 | - | - | - | 100,000 | 100,000 | - | - | -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수출입은행에 초고위험국의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을 「한국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라 설치하였음.[166] 이는 해외수주의 기존 주력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라크 전후 재건과 같은 신시장

166)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진출 및 선점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특별계정 1단계의 규모는 1조원으로 하되 정부와 수은이 각각 50%씩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음.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특별계정 조성을 시작하였고, 2021년도 출자를 끝으로 1단계 특별계정 조성을 위한 출자를 완료하였음.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추가로 1조원을 조성하는 특별계정 2단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단계와 달리 2단계 재원조성은 정부가 40%, 수은이 60%를 부담하였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1조 3,125억원(1단계 1조원, 2단계 3,125억원)이 조성되었음.

## < 검토의견 >

**첫째, 정부 출자 등으로 조성된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규모에 비해 특별계정 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출자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할 때 특별계정 잉여재원을 고려하여 출자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는 총 6,250억원을 출자하고 수출입은행은 총 6,875억원을 출자하여 특별계정에 총 1조 3,125억원을 출자하였음. 그런데 대출 승인금액은 2019년 5,131억원, 2022년 3,481억원, 2023년 410억원 등 총 9,022억원(소진률 68.7%)에 불과하여 가용재원 4,103억원이 특별계정에 남아있는 상황임.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조성 및 지출 승인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1단계 | | | 2단계 | | | 합계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연도별 조성액 | 정부 | 2,300 | 1,600 | 1,100 | 250 | - | 1,000 | 6,250 |
| | 수은 | 2,300 | 1,600 | 1,100 | 375 | - | 1,500 | 6,875 |
| | 합계 | 4,600 | 3,200 | 2,200 | 625 | - | 2,500 | 13,125 |
| 지출 승인액 | | 5,131 | - | - | 3,481 | 410 | - | 9,022 |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2023년까지 나이지리아 액화플랜트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대출을 승인한 상황에서 정부는 후보사업 지속 협상 및 신규사업 추가발굴을 위해 2024년에 1,000억원을 출자했으나, 2023년 8월 이후 신규 대출 승인 실적이 전무함.[167]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지원실적]**

| 승인 시기 | 사업명 | 대출 기간 | 승인금액 | 실제 누적 대출액 | 사업 경과 |
|---|---|---|---|---|---|
| 19.12월 | 나이지리아 액화플랜트 건설사업 | ~29년 | USD3.75억 | USD3.75억 | 대우건설이 우리기업 최초로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건설공사 원청사로 참여한 사업으로, 현재 원리금 정상 상환중 |
| 22.3월 | 탄자니아 철도차량 공급사업 | ~39년 | USD1.51억 | USD1.42억 (대출 집행 중) | 현대로템이 탄자니아 정부가 건설중인 표준궤 철도에 투입될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출계약에 따라 대출금 정상 집행중 |
| 22.12월 | 앙골라 원유운반선 수출사업 | ~33년 | USD1.10억 | USD1.10억 | 현대삼호중공업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앞 원유운반선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리금 정상 상환중 |
| 23.8월 | 나이지리아 비료플랜트 건설사업 | ~34년 | USD0.3억 | USD0.17억 (대출 집행 중) |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비료플랜트 증설 및 수출용 부두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출금 정상 집행중 |

주 1) 2025년 5월 말 기준
2) 세네갈 경공격기 수출사업('22.10월 승인, 약 EUR 70백만)은 세네갈-KAI 수출계약 취소로 특별계정 승인 취소('24.10월)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규 대출 승인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 특별계정이 지원하는 고위험·개도국 특성상 발주국 재정상태 및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사업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2025년 5월 현재 신규 후보사업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면밀히 진행 중이라는 입장임.[168]

그러나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긴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신규대출 추진을 위해 출자를 받았음에도 신

167) 2025년 5월 말 기준
168) 2024년 특별계정 사업 미승인 사유에 대해 ①탄자니아 철도차량 공급 사업(기존 승인사업 후속 연계)은 2024년 7월 수출입은행이 탄자니아 재무기획부 앞 본건 금융지원조건을 전달하였으나, 탄자니아 재무기획부의 차입 의사결정이 지연중이며, ②이라크 Al-Faw 항만 건설사업은 본건 협의중 이라크측의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 의사에 따라 특별계정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규 대출 실적이 없는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출자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할 때 특별계정 잉여재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정부 출자금을 활용해 조성된 자펀드에서 모펀드로 회수되는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모펀드 회수재원을 국고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고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 출자사업의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재정모펀드 운영 지침」, 한국산업은행)을 2023년 12월에 마련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침을 참고하여 특별계정 잉여재원을 고려하여 특별계정 출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특별계정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여유재원 운용수익은 특별계정에 귀속되지 않아 특별계정 사업이 아닌 기관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계정별 운용성과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특별계정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여유재원 운용수익은 특별계정에 귀속시켜 계정 간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제2항에 따르면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169]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계정간 운용성과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기획재정부에서 특별계정에 출자한 자금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유재원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대출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은 특별계정으로 귀속되어 특별계정 사업에 집행해야 함.

그런데 현재 특별계정 여유재원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대출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은 특별계정으로 귀속되지 않고, 일반계정으로 귀속되어 향후 특별계정 사업이 아닌 기관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임. 특별계정 이자수익

169)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 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은 2025년 6월 기준 누적 131억원이었음. 특별계정 여유재원은 일반계정 여유재원과 별도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계정 여유재원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역시 특별계정에 귀속되지 않으며, 2024년 말 수출입은행 원화여유자금 MMF 연평잔은 1조 4,990억원임.

**[연도별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이자수익]**

(단위: 억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6 | 합계 |
|---|---|---|---|---|---|---|---|
| 이자수익 | - | - | 33 | 23 | 36 | 39 | 131 |

주) 당해연도 평균 환율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수출입은행 원화여유자금 운용현황(MMF)]**

(단위: 억원)

| 구 분 | 2020년말 | 2021년말 | 2022년말 | 2023년말 | 2024년말 |
|---|---|---|---|---|---|
| MMF 연평잔<br>(수익률) | 4,891<br>(0.93%) | 10,749<br>(0.86%) | 17,405<br>(2.35%) | 17,140<br>(3.94%) | 14,990<br>(3.73%) |

자료: 기획재정부

이는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금 관리이며, 계정별 운용성과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계정 간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별계정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여유재원 운용수익이 특별계정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8) 부적정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기본경비·국제조세협력, 세제실)

### < 현 황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기본경비 사업은 세제실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7111-208)과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7111-258)으로 구분됨.

2024년 기준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액은 6억 7,000만원으로, 이 중 5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

또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액은 13억 3,000만원으로, 이 중 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기본경비(세제실)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년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세제실) (7111-208)** | 670 | - | - | - | 670 | 556 | - | 114 | 657 |
| - 특근매식비(210-05) | 121 | | | | 121 | 24 | | 94 | 105 |
| - 기타운영비(210-16) | 68 | | | | 68 | 52 | | 15 | 67 |
| - 특정업무경비(250-03) | 484 | | | | 484 | 480 | | 4 | 484 |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세제실) (7111-258)** | 1,330 | - | - | - | 1,340 | 958 | - | 382 | 1,380 |
| - 일반수용비(210-01) | 789 | - | - | - | 789 | 524 | - | 266 | 832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 | - | - | - | 8 | 2 | - | 6 | 8 |
| - 임차료(210-07) | 45 | - | - | - | 45 | 22 | - | 23 | 45 |
| - 국내여비(220-01) | 146 | - | - | - | 146 | 115 | - | 31 | 146 |
| - 국외업무여비(220-02) | 124 | - | - | - | 124 | 83 | - | 40 | 138 |
| - 사업추진비(240-01) | 46 | - | - | - | 46 | 46 | - | - | 46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02 | - | 10 | - | 112 | 111 | - | 1 | 102 |
| - 자산취득비(430-01) | 70 | - | - | - | 70 | 54 | - | 16 | 54 |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경비 집행 시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구매카드 사용 시에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시 반드시 사용자 본인이 실명으로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17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실은 2024년도 관서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 및 회의 준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54건, 약 744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세제실 일반수용비 계좌이체 지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업무수행비 | 물품구입비 | 도서구입비 |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합계 |
|---|---|---|---|---|---|
| 건수 | 14 | 31 | 7 | 2 | 54 |
| 금액 | 832 | 1,609 | 972 | 4,029 | 7,442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171]에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

17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26.

17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외딴곳·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업무수행비, 회의준비용 물품구입비, 일반 도서구입비 및 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예산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특히,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와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이를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번역사이트(TNI) 온라인 사용료 352만원(3.8.), OECDPILLARS.COM 연간 사용료 51만원(4.23.)을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집행한 문제도 있음.[172)]

이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정부구매카드 사용 원칙과 예산 편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자금 지출, 출납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등 경비집행시 '적요'란에 구체적인 집행사유(일자·사유·금액 등 세부 사용내역)를 명확히 기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73)]

**[세제실 일반수용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국회후생복지위원회 | 편의점 | 풀무원푸드앤컬쳐(서울청사) | 합계 |
|---|---|---|---|---|
| 건수 | 3 | 13 | 11 | 27 |
| 금액 | 103 | 338 | 211 | 652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2. 삭제 <2007. 11. 6.>
3. 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6. 삭제 <2007. 11. 6.>
7.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8. 위문금·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9. 특수활동비중 수사·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0.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1.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72)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 p.226.
17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16.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집행 건에서 ‘업무수행’, ‘회의준비’ 등 모호한 표현만 간략히 적혀 있어 구체적인 용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구매카드 사용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한편, 경비 집행 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집행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행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 세제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특근매식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로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특근매식비 집행 시 지급원칙을 준수하는 등 예산 집행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세제실 특근매식비(210-05목)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7111-208) 사업과 국제조세협력(2031-301) 사업에 각각 1억 2,100만원, 1,700만원으로 총 1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4년 특근매식비 집행 내역을 보면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에서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9,7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국제조세협력 사업에서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세제실 특근매식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br>(- 세목명) | 2024년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7111-208)** | 670 | - | - | - | 670 | 556 | - | 114 | 657 |
| - 특근매식비(210-05) | 121 | - | - | - | 121 | 24 | - | 97 | 105 |
| **국제조세협력(2131-301)** | 1,493 | - | △75 | - | 1,418 | 1,181 | - | 237 | 1,610 |
| - 특근매식비(210-05) | 17 | - | - | - | 17 | 15 | - | 2 | 15 |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특정업무경비(250-03목), 특근매식

비(210-05목), 기타운영비(210-16목)로 구성되며, 2024년 특근매식비 예산은 1억 2,100만원으로 이 중 2,4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은 19.8%에 불과함.

특히, 최근 5년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 75.8%, 2021년 76.3%, 2022년 60.3%, 2023년 39.7%, 2024년 19.8%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급감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A) | 이·전용등 | 예산현액(B) | 집행액(C) | 불용액 | 집행률(A/C) |
|---|---|---|---|---|---|---|
| 2020년 | 120 | | 120 | 91 | 29 | 75.8 |
| 2021년 | 121 | △7 | 114 | 87 | 26 | 76.3 |
| 2022년 | 121 | | 121 | 73 | 45 | 60.3 |
| 2023년 | 121 | | 121 | 48 | 73 | 39.7 |
| 2024년 | 121 | | 121 | 24 | 97 | 19.8 |

자료 : 기획재정부

이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각 중앙관서별 기본경비를 조직·인력 등의 변동요인 및 예산절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조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본경비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174]

아울러, 동 지침에서는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을 고려해 공무원과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 등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및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특근매식비 예산은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특근매식비의 지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74)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 p.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특근매식비를 정규근무시간에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세제실 특근매식비 집행시간 위반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집행건수 (A) | 시간위반 건수(B) | 비율 (B/A, %) | 집행액 |
|---|---|---|---|---|---|
| 조세총괄 정책관 | 조세정책과 | 59 | 43 | 72.9 | 3,551 |
| | 조세분석과 | 40 | 39 | 97.5 | 2,721 |
| | 조세특례제도과 | 43 | 38 | 88.4 | 2,497 |
| 소득법인세 정책관 | 소득세제과 | 64 | 46 | 71.9 | 3,209 |
| | 금융세제과 | 7 | 5 | 71.4 | 336 |
| | 법인세제과 | 24 | 18 | 75.0 | 1,475 |
| 재산소비세 정책관 | 재산세제과 | 31 | 31 | 100.0 | 3,712 |
| | 환경에너지세제과 | 32 | 23 | 71.9 | 1,626 |
| | 부가가치세과 | 6 | 2 | 33.3 | 116 |
| 국제조세 정책관 | 국제조세제도과 | 85 | 44 | 51.8 | 3,342 |
| | 신국제조세규범과 | 34 | 27 | 79.4 | 2,055 |
| 관세정책관 | 관세제도과 | 16 | 16 | 100.0 | 2,037 |
| | 산업관세과 | 27 | 23 | 85.2 | 1,509 |
| | 관세협력과 | 43 | 37 | 86.0 | 2,474 |
|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19 | 19 | 100.0 | 2,502 |
| 합계 | | 530 | 411 | 77.5 | 33,162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제실 모든 부서에서 정규근무시간(9~18시)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와 같이 집행시간 기준을 위반한 금액은 총 집행액 3,877만원 중 3,316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특근매식비 집행 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지급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예산 집행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9) 세수추계위원회 법령·예산상 근거마련 및 기본경비의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세제실), 세제실)

< 현 황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세제실)」은 세제실의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경비를 편성·집행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은 13억 4,000만원으로, 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세제실)」의 2024년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은 7억 8,900만원으로, 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억 200만원으로, 이 중 부족한 관서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로부터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현액 1억 1,2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외업무여비 예산현액은 1억 2,400만원으로,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세제실)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세제실) (7111-258) | 1,330 | 1,330 | - | - | - | 1,340 | 958 | - | - | 1,380 |
| - 일반수용비 | 789 | 789 | - | - | - | 789 | 524 | - | 266 | 832 |
| - 관서업무추진비 | 102 | 102 | - | 10 | - | 112 | 111 | - | 1 | 102 |
| - 국외업무여비 | 124 | 124 | - | - | - | 124 | 83 | - | 40 | 138 |

< 검토의견 >

**세수추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법령상·예산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목적 외의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 국세수입의 세수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약 61조원, 52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기록했고,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약 56조원,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역시 약 1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3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실시함.

연례적인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시정요구를 실시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세입전망 및 세입경정 적정규모를 면밀히 추산해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추계모형을 개선하였음에도 재추계 오차가 더 커진 세목의 경우 그 이유를 점검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함.

그럼에도 2023년 역시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추계모형 고도화 및 국내외 주요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세수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것을 요구함.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 관련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 구 분 | 회계연도 | 세목 | 시정요구사항 | 개선조치사항 |
|---|---|---|---|---|
| 기재위 | 2020 | 소득세<br>상속세<br>증여세 | 자산시장 관련 세목의 세수추계는 변수 추가 등의 추계모형 개선 필요 | (개선조치)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자산시장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여 '22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 시 활용<br>국토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산시장 관련 전망치를 활용 |
| 기재위 | 2020 | 전세목 | 세입전망 및 세입경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추산 필요 | (변경사항)2022년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추계 모형 재설계 및 전문가 자문을 강화 |
| 기재위 | 2021 | 전세목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낙관적 경제지표를 토대로 세입예산안 추계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변경사항)'22.2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앞으로도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등 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 |
| 기재위 | 2022 | 전세목 | 추계모형을 개선하였음에도 재추계 오차가 더 커진 세목의 경우 그 이유를 점검하여 보완할 것 | (변경사항) '24.9월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발표<br>- 외부전문기관을 세수추계 모든 단계부터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AI, 빅데이터 기반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 세입예산 편성시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모형의 객관성·최적화 제고 |
| 기재위<br>예결위 | 2023 | 전세목 | ①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추계모형 고도화 및 국내외 주요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br>②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한 세수재추계 실시 및 국회 보고 필요 | (변경사항) 지적내용 상당부분을 2025년 세입예산안 편성시 旣 반영<br>①시장전문가 의견수렴, 세수추계위원회 개최 확대 등 외부 협업 절차를 확대하고, IMF와의 협업 및 미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세수추계 모형 정확성 제고<br>②향후 세입예산안 제출 이후 당초 전망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산되는 경우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 예정 |
| 예결위 | 2023 | 법인세 | 법인세수 예측 및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개선조치) 2025년 법인세 세입예산안 편성시 IMF 자문 등을 거쳐 상장사·비상장사를 구분, 최신 기업실적 정보(중간예납 실적) 활용 확대 등 추계모형을 개선하여 세수추계 실시 |

자료: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이후 세수오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매년

발표함[175]. 특히, 2022년 기획재정부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176](이하 '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발표했고, 2023년에는 위원회의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2025년 7월 현재 위원회 위원은 총 12명이며, 위원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음.

**[세수추계위원회 위원 명단]**

| 구 분 | 주관기관 | 명 단 | | |
|---|---|---|---|---|
| | | 위원명 | 소속 및 직급 | 비고 |
| 세수추계위원회 | 기획재정부 | 박○○ | 기재부 세제실장 | 당연직 |
| | | 조○○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 당연직 |
| | | 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당연직 |
| | | 손○○ | 관세청 심사국장 | 당연직 |
| | | 성○○ | H대 경제학부 교수 | 위촉직 |
| | | 박○○ | H대 경제학부 교수 | 위촉직 |
| | | 송○○ | E대 경제학부 교수 | 위촉직 |
| | | 한○○ | A대 경제학부 교수 | 위촉직 |
| | | 권○○ | 조세연 세수추계팀장 | 위촉직 |
| | | 정○○ | KDI 경제전망실장 | 위촉직 |
| | | 박○○ | 국토연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 위촉직 |
| | | 장○○ | 자본연 거시금융실장 | 위촉직 |
| | | 권○○ | 한국은행 조사국 팀장 | 위촉직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세수오차를 민·관 합동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법령상·예산상 근거 마련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임.

먼저, 위원회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세수추계는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어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함에도, 위원회의 기능·권한 및 책임의 범위가 명시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서 담당하던 세수추계 업무를 분리·확대 개편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 재

175)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2022. 2.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2023. 9. 1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 9. 26.
176) 세제실장 및 국장 4인 +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 5~6인

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추계에 활용될 경제지표 전망치까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인 점, 한국은행·KDI·국토연구원·자본연구원의 책임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가 세입예산안 편성을 위한 실질적인 심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한 정책자문의 범위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나아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시의성·책임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범위를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다음으로, 위원회의 예산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예산의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세제발전심의위원회·관세심의위원회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운영하는 타 위원회들과 달리 세수추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중 위원회가 명시된 내역]**

(단위: 천원)

| 내역 | 편성액 |
|---|---|
| **[210-01] 일반수용비** | **790,088** |
| 5. 관세의 탄력적 운영<br>- 관세심의위원회 안건 | 7,006 |
| 11.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회의 | 44,800 |
| 12.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 12,000 |
| 13. 관세심의위원회 운영 | 4,800 |
| 14. 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및 회의 | 33,600 |
| 19. 각종 위원회 자료 인쇄비<br>-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예규심사위원회, 세무사징계위원회, 관세심의위원회등 | 29,400 |
| **[210-07] 임차료** | **45,000** |
| 1. 세발심 등 행사 회의 장소 임차료 | 20,000 |

자료: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확대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에 상응하여 위원회의 운영 또한 국회의 재정적 통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위원회가 2022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에 대한 예산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한 것이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심의위원회, 예규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및 회의 제반 비용은 각목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수추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177].

그럼에도 기획재정부[178]는 동 사업예산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업무협의를 위한 관서업무추진비, 국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 기타 회의 준비 관련 부대경비 등 총 5,241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세수추계위원회 관련 경비 현황]**

(단위: 천원)

| 세목 | 집행내역 | 집행액 |
|---|---|---|
| 일반수용비 (210-01) | 세수추계위원회 참석수당 등 | 7,266 |
| 업무추진비 (240-02) | 세수추계 관련 업무협의 등 | 3,724 |
| 국외여비 (220-02) | IMF 세수추계 협업 실무회의 | 40,307 |
| 기 타 | 회의 준비 관련 부대 경비 등 | 1,113 |
| **합 계** | | **52,410** |

자료: 기획재정부

177) 다만,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회의' 목적으로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178)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 명목으로 편성된 별도 사업은 없다는 입장임.

## (30) 업무관련성 없는 ‘원데이 행사’ 부적절 등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인사과)

### < 현 황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청년인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이전용으로 감액된 1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500만원으로 이 중 18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131-301) | 2,523 | - | △118 | - | 2,405 | 1,873 | - | 532 | 2,723 |
| - 일반수용비 | 350 | - | △43 | - | 307 | 301 | - | 7 | 539 |
| - 일반용역비 | 591 | - | △75 | - | 516 | 443 | - | 73 | 613 |

자료: 기획재정부

### < 검토의견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예산으로 원데이 행사를 주최하며, 발마사지샵이나 에버랜드·놀이공원·전망대·동물원·베이킹하우스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4년 동 사업의 예산으로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원데이 행사를 주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약 6,742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원데이 행사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업무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다는 동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있음.

우선 기획재정부는 원데이 행사를 집행하면서 에버랜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및 전망대, 놀이공원 오월드 등에 총 8건을 지출하였으며 그 집행 금액이 총 2,244만원에 달하는 상황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발마사지샵에서 3회에 걸쳐 총 8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베이킹클래스나 공방체험, 퍼스널컬러 진단, 아이들 직업체험활동, 동물원 등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곳에 지출한 내역이 다수 발생하였음.

**[2024년도 원데이 행사 주요 집행 내역]**

(단위: 건, 원)

| 지출일자 | 지출처 | 지출내용 | 건수 | 총 집행액 |
|---|---|---|---|---|
| 6.3, 9.4 | 삼성에버랜드(주) | 에버랜드 | 4 | 11,760,000 |
| 4.18, 6.19, 11.8 | 더풋샵 세종도담점 | 발마사지 | 3 | 8,100,000 |
| 9.4 | ㈜롯데월드 | 아쿠아리움,<br>서울스카이전망대 | 2 | 5,520,000 |
| 6.19 | ㈜엘에스컴퍼니 | 오월드(놀이공원) | 2 | 5,160,000 |
| 8.9, 9.13, 9.30, 11.11 | 달달한 베이킹하우스 | 베이킹 클래스 | 5 | 4,650,000 |
| 8.9, 9.30, 11.11 | 클레이아트교습소 | 클레이아트 | 4 | 4,650,000 |
| 5.13, 6.19, 7.3, 8.9, 9.13 | 윤실 | 공방 체험 | 6 | 4,368,000 |
| 8.9, 9.13, 10.11 | 이미지라이징 연구소 | 퍼스널컬러 진단 | 3 | 3,267,000 |
| 4.18 | 율컴퍼니 | 공연 | 1 | 3,200,000 |
| 5.13, 6.19, 7.3, 12.9, 12.26 | ㈜엠비씨플레이비 | 키자니아(키즈직업체험) | 5 | 2,920,000 |
| 11.12, 12.26 | 리브위드 | 플라워 클래스 | 2 | 2,416,000 |
| 5.13, 6.19, 7.3 | 두드림아트스튜디오 | 원어민미술클래스 | 3 | 2,356,000 |
| 6.19 | 무르실마을영농조합 | 공주치즈스쿨 | 1 | 2,343,000 |
| 9.30, 11.8, 12.9 | 티놀자애니멀파크,<br>신라애니멀그룹, 쥬니멀 | 동물원 | 3 | 1,764,000 |
| 10.11 | 그로우업 | 클라이밍 클래스 | 1 | 1,584,000 |
| 11.11, 12.9 | 향나공방 | 공방 체험 | 2 | 1,188,000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직원 사기 진작을 명목으로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직원의 전문성 강화라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상 예산

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예산의 집행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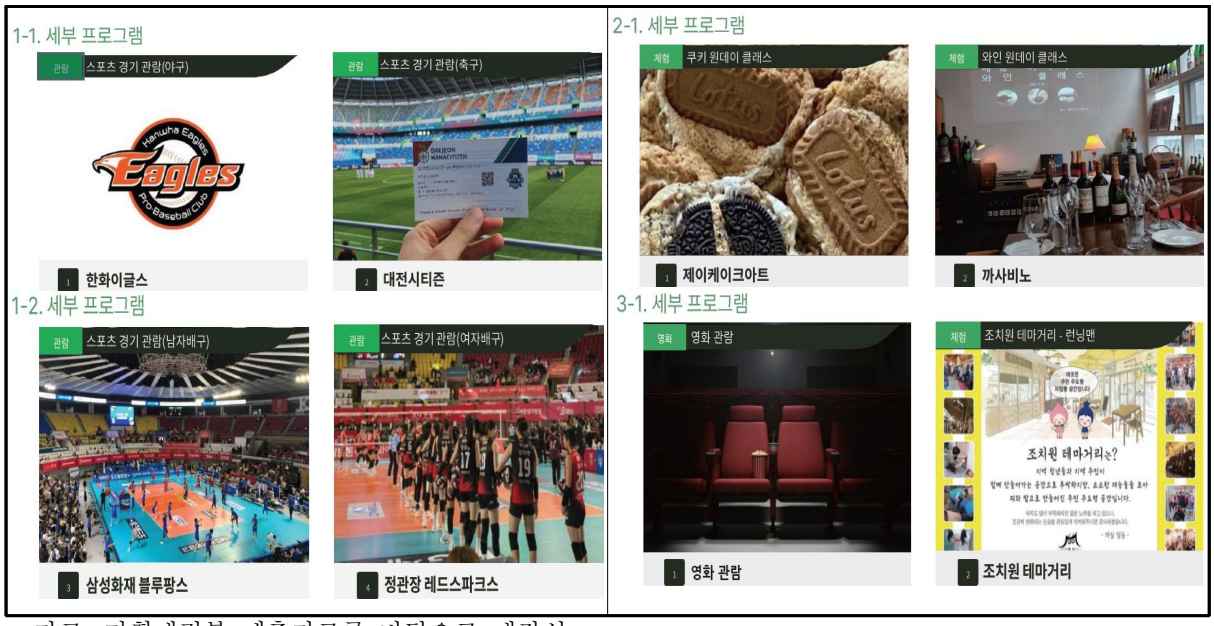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행해지는 원데이 행사 개최를 중단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업무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가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조하데이' 역시 그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이 떨어져 국가 예산으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한 문제가 있으며, 수의계약 사유로도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에서 매년 '조하데이(Jo-ha day)'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해당 행사 개최를 위하여 4,551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행사에 대하여 조직 내 소통과 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내 부서간 소통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행사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활동 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부서간의 공감대 형성 및 스킨십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또한, 동 계약의 사업계획서 역시 야구·축구경기 등 스포츠경기 관람, 쿠킹·와인·도자기 원데이클래스, 영화관람, 캠핑체험, 템플스테이 등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며, 단순 유희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조하데이 사업계획서(예시)]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조하데이'의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들은 기획재정부 본연의 업무와 어떠한 접점도 없어 업무관련성이 떨어지고 국가 예산으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부서간 직원들의 소통·협력 증진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이지도 않아 동 행사 개최의 목적과도 동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설명한 '부서간 소통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단순 유희성 프로그램의 추진보다는 해당 부서들의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상호 실습 등을 통하여 각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업무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동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그 사유로 계약상대방인 '위드스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79]의 여성기업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1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동 용역은 일반적인 연찬회적 성격을 가진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이라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실제 기획재정부는 매년 ‘Jo-ha day’를 주최하고 있으나,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다른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2024년 계약업체인 ‘위드스타’만이 해당 계약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최근 3년간 Jo-ha DAY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만원)

| 연도 | 업체명 | 계약금액 | 수의 여부(사유) |
|---|---|---|---|
| 2022 | 이아이디컨설팅(EID)컨설팅 | 4,300 | 수의(여성기업) |
| 2023 | 이아이디컨설팅(EID)컨설팅 | 4,170 | 수의(여성기업) |
| 2024 | 위드스타 | 4,551 | 수의(여성기업)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조하데이(Jo-ha day)’ 행사의 경우 그 행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부서간 소통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또한, 동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체결한 수의계약 역시 그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조하데이(Jo-ha day)’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관서운영경비 대상 범위가 아닌 계약을 분할하여 계약한 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서운영경비로 동일 날짜에 동일 업체에 대한 계약을 분할하여 집행한 건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삼성에버랜드에 원데이행사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각 588만원에 해당하는 계약 2건을 4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엘에스컴퍼니(6.19), 롯데월드(9.4), 맥킨지(12.2),

영진닷컴(12.26)에도 동일한 날짜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를 2건으로 나누어 집행하였음.

**[2024년도 관서운영경비 중 분할계약 현황]**

(단위: 건, 원)

| 지급일자 | 수령인 | 건명 | 건수 | 총 집행액 |
|---|---|---|---|---|
| 6.3 | 삼성에버랜드(주) | 원데이행사 운영(에버랜드) | 2 | 5,880,000 |
| 6.19 | ㈜엘에스컴퍼니 | 원데이행사 운영비 | 2 | 5,160,000 |
| 9.4 | 삼성에버랜드(주) | 원데이행사 운영 | 2 | 5,880,000 |
| 9.4 | ㈜롯데월드 | 원데이행사 운영 | 2 | 5,520,000 |
| 12.2 | 맥킨지인코포레이티드한국지점 | 문제해결 역량교육대금 지급 | 2 | 6,684,000 |
| 12.26 | ㈜영진닷컴 | 역량강화 교육대금 지급 | 2 | 9,956,000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해당 계약들을 일반적인 계약 지출 절차가 아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1항[180]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해당 건들은 모두 총 집행액이 500만원 이상의 운영비이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관서운영경비의 집행 범위가 아님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관서운영경비의 분할 계약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180)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31) 당초 확정 예산 대비 이·전용을 통한 파견인원 증가 부적절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인사과)

### < 현 황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대외경제분야 전문가 육성 및 국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외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 유학훈련을 시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이전용으로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7,500만원으로 이 중 7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임차료와 국외업무여비에서 각각 1,200만원 및 1억 1,800만원 이전용(증)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7132-301) | 745 | - | 130 | - | 875 | 773 | - | 102 | 874 |
| - 임차료(210-07) | 278 | - | 12 | - | 290 | 287 | - | 2 | 367 |
| - 국외업무여비(220-02) | 62 | - | 118 | - | 180 | 162 | - | 18 | 102 |

자료: 기획재정부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당초 확정된 예산에 비하여 이·전용 등을 통하여 과다한 파견인원을 운용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해외기관에 직무파견자 및 해외 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그 임차료나 보험료, 국외업무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해외기관 직무파견자는 6명, 해외교육훈련 파견자는 3명으로 파견기관 등은 다음과 같음.

[2024년도 직무파견 및 교육훈련 파견 현황]

| 파견인원 | 파견직급 | 파견기관 |
|---|---|---|
| 1명 | 서기관 | UN ESCAP |
| 1명 | 서기관 | EBRD |
| 1명 | 서기관 | UNCTAD |
| 1명 | 사무관 | 인니, 경제사회연구소 |
| 1명 | 사무관 | 헝가리, 경제개발부 |
| 1명 | 사무관 |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
| 3명 | 사무관 | Oxford 대학, York 대학, 런던정치경제대학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해외기관 파견자에 대한 국외업무여비 및 임차료가 부족함에 따라 세목조정 및 타 사업에서의 전용을 통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동 사업으로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일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사유 |
|---|---|---|---|---|---|---|
| | 세부사업명 | 목-세목 | | 세부사업명 | 목-세목 | |
| 세목조정 (2024.3.13.)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구축 | 220-03 | 35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구축 | 220-02 | 해외기관 파견자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
| 세목조정 (2024.5.22.)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구축 | 220-03 | 20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구축 | 220-02 | |
| 세목조정 (2024.7.31.)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구축 | 220-03 | 20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구축 | 220-02 | |
| 전용 (2024.8.21.)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210-01 | 43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구축 | 220-02 | 국제기구 파견자 필요경비 부족분 충당 |
| 전용 (2024.8.21.)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210-14 | 75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구축 | 220-03 | 교육훈련 파견자 필요경비 부족분 충당 |
| 전용 (2024.11.28.)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기관운영) | 210-07 | 12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구축 | 210-07 | 해외기관 파견자 임차료 부족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국제기구 직무파견자 인원이 6명으로 과소계상됨에 따라 세목조정 및 이·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 직무파견 6명을 전제로 동 사업의 예산을 심의·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목조정 및 이·전용을 통하여 직무파견자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의 규모를 우회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과다한 파견을 시행한 문제가 있으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당초 확정된 예산에 비해 이·전용 등을 통하여 과다한 파견 인원을 운용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32)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기획조정실)

### < 현 황 >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은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용 정보시스템의 기획, 개발,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운영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이·전용으로 증액된 4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9,200만원으로 이 중 30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스템구축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이·전용으로 증액된 4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4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7134-500) | 2,823 | - | 469 | - | 3,292 | 3,010 | - | 282 | 5,589 |
| - 시스템구축 | 1,150 | - | 469 | - | 1,619 | 1,469 | - | 150 | 3,944 |

자료: 기획재정부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온북(업무용 노트북) 추가 도입 사업을 이·전용 등을 통하여 신규로 추진한 문제가 있음.**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온북'이란 국정원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도 사무실 및 원격지에서 동일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의미함. 기획재정부는 온북 도입을 위하여 2023년에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북 100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온북 도입 시범사업의 만족도 결과가 만족 이상이 68%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2024년에는 온북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예산으로 온북 210대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온북의 추가 도입은 2024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노후 PC 교체 예산 5억 700만원과 이·전용을 통하여 4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온북 210대를 신규로 도입한 문제가 있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일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사유 |
|---|---|---|---|---|---|---|
| | 세부사업명 | 목-세목 | | 세부사업명 | 목-세목 | |
| 전용 (2024. 3.6.) | 비대상 기본경비 (기획조정실) | 210-01 | 83 | 기획재정 정보화 (정보화) | 260-01 |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 데스크톱 PC를 노트북(온북)으로 도입·확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전용 |
| 전용 (2024. 3.12.) | 비대상 기본경비 (기획조정실) | 210-01 | 256 | 기획재정 정보화 (정보화) | 430-01 |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 데스크톱 PC를 노트북(온북)으로 도입·확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전용 |
| | 비대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 210-02 | 30 | | | |
| | | 210-07 | 100 | | | |

자료: 기획재정부

이는 당초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내용과 달리 기존 예산 및 이·전용을 통하여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181]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2023년 하반기에 온북 구축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2024년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할 수가 없었으나, 시범사업의 결과가 양호하게 도출됨에 따라 추가적인 도입을 신규로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온북 구축 시범사업은 온북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23년에

18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추진했던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2024년에 본격적으로 온북을 도입할 계획이었다면 해당 시범사업을 보다 빠르게 실시하여 2024년 예산안 편성 전에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2024년 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할 것임.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인 7월에야 비로소 온북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2024년 당초 예산에 이를 반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온북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적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기획재정부가 온북의 본격적인 도입사업을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예산의 내역변경 및 이·전용을 통하여 실시함에 따라 동 시범사업의 결과 및 온북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실제 기획재정부는 온북 구축 시범사업의 결과로 사용자 만족도 조사(만족 이상 68%)만을 제시할 뿐 업무효율성이 얼마나 증진되었고, 정보 보안에 취약성은 없었는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임.

이처럼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온북 추가 도입 사업을 기존 예산 및 이·전용을 통하여 신규로 추진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위반 및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이·전용 등을 통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온북 도입 확대와 관련하여는 사용자 만족도 뿐만 아니라 온북 도입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증진 효과, 정보 보안 취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3.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가. 개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동 법 제75조에 근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182].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당초 세입예산 13조 8,689억원의 101.1%인 14조 189억원으로,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주세 3조 3,283억원, 각 계정별 일반회계 전입금 5조 6,699억원과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2조 5,181억원, 계정간 전입금 2,039억원, 전년도이월금 등 9,052억원을 수납하였음.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집행액은 2,039억원으로,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계정간 전출하는 내용으로 집행되었음.

182)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세입 | | | | 세출 | | |
|---|---|---|---|---|---|---|---|
| | | 항목 | 예산 | 결산 | 소관 | 예산 | 결산 |
| 총 계 | | | 138,689 | 140,189 | 총 계 | 138,689 | 135,533 |
| 지역자율계정 | 소 계 | | 32,886 | 34,211 | 소 계 | 32,885 | 31,795 |
| | 자체수입 | 주세수입(40%) | 14,304 | 13,313 | 부처사업비 | 30,846 | 29,756 |
| | | 법정부담금 | 2,778 | 3,446 | | | |
| | | 기타수입 | 571 | 1,250 | | | |
| | 내부지출 | 일반회계 전입 | 3,065 | 3,065 | 지원계정전출 | 2,039 | 2,039 |
| | | 전년도이월금 등 | 78 | 5,047 | | | |
| | | 농특회계(구조) 전입 | 7,000 | 3,300 | | | |
| | | 농특회계(임업) 전입 | 1,035 | 984 | | | |
| | | 환특회계 전입 | 4,055 | 3,805 | | | |
| 지역지원계정 | 소 계 | | 102,319 | 102,270 | 소 계 | 102,320 | 100,284 |
| | 자체수입 | 주세수입(60%) | 21,455 | 19,970 | 부처사업비 | 102,320 | 100,284 |
| | | 법정부담금 | 2,254 | 2,492 | | | |
| | | 기타수입 | 2,642 | 3,828 | | | |
| | 내부지출 | 일반회계 전입 | 55,900 | 53,400 | | | |
| | | 전년도이월금 등 | - | 3,771 | | | |
| | | 계정간전입금 | 2,039 | 2,039 | | | |
| | | 농특회계(구조) 전입 | 19 | 19 | | | |
| | | 농특회계(임업) 전입 | 1,828 | 1,678 | | | |
| | | 교특회계 전입 | 3,366 | 3,366 | | | |
| | | 환특회계 전입 | 12,816 | 11,708 | | | |
| 제주계정 | 소 계 | | 2,943 | 3,087 | 소 계 | 2,943 | 2,928 |
| | 자체수입 | 기타수입 | 15 | 12 | 부처사업비 | 2,943 | 2,928 |
| | 내부지출 | 일반회계 전입 | 2,556 | 2,556 | | | |
| | | 전년도이월금 등 | 60 | 104 | | | |
| | | 환특회계 전입 | 312 | 312 | | | |
| 세종계정 | 소 계 | | 541 | 621 | 소 계 | 541 | 525 |
| | 자체수입 | 기타수입 | 6 | 34 | 부처사업비 | 541 | 525 |
| | 내부지출 | 일반회계 전입 | 449 | 449 | | | |
| | | 전년도이월금 등 | 77 | 130 | | | |
| | | 농특회계(구조) 전입 | 9 | 9 | | | |

#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1) 공공자금관리기금

### 가. 개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통합발행으로 회계·기금의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국채관리기금과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각각 흡수·통합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채관리기금 통합), 융자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흡수), 차관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의 흡수)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규모는 전년(285조 4,129억원) 대비 41조 9,981억원(+14.7%) 증가한 327조 4,110억원임.

2024년도 총괄계정의 조달 및 운용실적은 수정 계획액 328조 4,122억원 대비 99.6%인 327조 2,506억원을 집행하였음.

국고채수입 161조 2,340억원, 기금예탁원금회수 110조 3,505억원, 기금예수금 23조 4,134억원 등으로 총 327조 2,506억원을 조달하였으며,

국고채원금상환 108조 4,070억원, 일반회계예탁금 96조 6,384억원, 기타기금으로의 예탁금 61조 2,984억원 등으로 총 284조 2,837억원을 운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억원, %)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계획(A) | 실적(B) | B/A | 구 분 | 계획(C) | 실적(D) | D/C |
| 국공채수입 | 1,584,221 | 1,612,340 | 101.8 | 일반회계예탁금 | 966,384 | 966,384 | 100.0 |
| 예수금 | 276,886 | 260,754 | 94.2 | 기타회계기금예탁금 | 675,848 | 651,719 | 96.4 |
| 예탁원리금회수 | 1,386,512 | 1,362,524 | 98.3 | 예수원리금상환 | 252,598 | 251,967 | 99.8 |
| 국공채원리금회수 | 688 | 939 | 136.5 | 국고채원리금상환 | 1,363,160 | 1,361,317 | 99.9 |
| 기타이자수입 등 | 35,816 | 35,949 | 100.4 | 국공채인수 등 | 26,133 | 41,120 | 157.3 |
| 합 계 | 3,284,122 | 3,272,506 | 99.6 | 합 계 | 3,284,122 | 3,272,506 | 99.6 |

2024년도 융자계정의 조달 및 운용실적은 수정 계획액 1,946억원 대비 82.4%인 1,603억원 규모임. 융자계정은 융자금·예탁금 등의 원리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 공공목적의 국책사업에 대한 재정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억원, %)

| 조 달 | | | | 운 용 | | | |
|---|---|---|---|---|---|---|---|
| 구 분 | 계획(A) | 실적(B) | B/A | 구 분 | 계획(C) | 실적(D) | D/C |
| 융자원리금회수 | 991 | 689 | 69.5 | 융자금 | 11 | 11 | 100.0 |
| 예탁원리금회수 | 51 | 26 | 51.0 | 예수원리금상환 | 70 | 70 | 100.0 |
| 일반회계전입금 | 52 | 52 | 100.0 | 여유자금운용 | 1,865 | 1,522 | 81.6 |
| 기타이자수입 등 | 852 | 836 | 98.1 | | | | |
| 합 계 | 1,946 | 1,603 | 82.4 | 합 계 | 1,946 | 1,603 | 82.4 |

차관계정은 공공차관 협약에 의해 도입한 재정차관 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3년 잔여재원을 총괄계정으로 전출함에 따라 2024년 조달 및 운용실적이 없음.

## 나. 검토의견

### (1)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성과 미흡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 부적절
### (기타경비, 국고국)

< 현 황 >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활한 자금관리·집행, 국·공채 인수, 기금 예탁 및 재예탁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임. 동 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32억 500만원으로 이 중 19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12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목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기타경비(총괄계정) (3576-201) | 3,205 | 3,205 | - | 3,205 | 1,944 | - | 1,261 | 3,205 |
| -일반수용비 | 3,184 | 3,184 | - | 3,184 | 1,929 | - | 1,255 | 3,184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개인투자용국채의 수요 저조로 발행실적이 부진하여 동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가 있으며, 수요 저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5년물 역시 수요 증진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요 부진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와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구성되어 있음. 개인투자용국채란 2023년에 「국채법」[183]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국채의 유형으로, 매입자격을 개

183)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를 의미함.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4년 기준 10년물과 20년물로 구분되며, 표면 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결정[184]됨.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을 위해서는 ①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사무처리 수수료와 ② 판매대행기관인 증권사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① 사무처리 수수료의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185]은 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사무처리 수수료를 분기별로 2.5억원과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의 0.01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② 판매대행 수수료는 증권사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는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수수료는 20bp 이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입찰가격을 통해 제시한 보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 1조원 발행과 14bp 보수율을 적용하여 판매대행기관인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지급 수수료는 실제 발행물량에 따라 조정됨.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당초 계획액 편성 당시 개인투자용국채를 총 1조원 발행할 것으로 계획하여 31.6억원의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수수료를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음.

**[2024년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수수료 계획액 산출 근거]**

| 구분 | 산출근거 | 금액 |
|---|---|---|
| 전자등록기관 수수료 | 2.5억원 × 4분기 + 1조원 × 0.015% | 11.6억원 |
| 판매대행기관 수수료 | 1조원 × 0.2% | 20.0억원 |
| | | 31.6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수수료 계획액 31.6억원 중 2024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18억 9,300만원에 불과하며, 불용액이 12억 6,651만원으로 불용률은 40.1%에 달하는 상황임. 이처럼 동 수수료의 불용률이 높은 것은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여 발행실적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184)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금리)**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한다.

185)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사무처리 수수료)** ① 전자등록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분기별 2.5억 원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의 0.015%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24회계연도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수수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a)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b) | 불용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 |
|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수수료 | 3,160 | 3,160 | - | 3,160 | 1,893 | - | 1,267 | 40.1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수요가 당초 예상과 달리 저조함에 따라 그 발행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2024년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실적에 따르면, 개인투자용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한 6월을 제외하고는 청약경쟁률이 2: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8월부터는 청약액이 발행계획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9월부터는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수요가 극히 부진하여 발행계획의 약 30% 정도만이 청약되어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에 개인투자용국채 잔여물량 3,123억원을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통합발행 국고채로 전환하여 발행하였음.

[2024년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발행계획 | 발행액 | 청약액 | 청약경쟁률 |
|---|---|---|---|---|
| **합계** | **10,500** | **7,377** | **10,846** | **1.03:1** |
| 6월 | 2,000 | 2,000 | 4,262 | 2.13:1 |
| 7월 | 2,000 | 2,000 | 3,207 | 1.60:1 |
| 8월 | 2,000 | 1,897 | 1,897 | 0.95:1 |
| 9월 | 1,500 | 455 | 455 | 0.30:1 |
| 10월 | 1,500 | 539 | 539 | 0.36:1 |
| 11월 | 1,500 | 486 | 486 | 0.32:1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개인투자용국채의 수요 부진에 대하여 국고채 금리 인하 추세 및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2024년 발행계획 대비 청약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물론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의 평균유통금리를 살펴보면, 2024년 5월에 비해 2024년 연말에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국고채 금리 인하 추세가 개인투자용국채 수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전월에 비해 10년물의 금리가 소폭

상승하였던 9월이나 10월의 경우에도 개인투자용국채의 수요는 8월에 비해 오히려 약 24% 수준에 불과하는 바 이는 국고채 금리 인하 추세의 영향보다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수요 자체가 부진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임. 특히 국고채 금리 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응찰률의 경우 7월까지 하락하였다가 11월까지 응찰률이 상승한 점 역시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률 부진은 개인투자용국채 자체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24년 5월~12월 국고채 10년물·20년물 유통금리 및 국고채 응찰률 추이]**

(단위: %)

| 구분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평균 유통 금리 | 10년물 | 3.527 | 3.337 | 3.171 | 2.999 | 3.011 | 3.070 | 3.006 | 2.771 |
| | 20년물 | 3.462 | 3.294 | 3.138 | 2.997 | 2.963 | 2.962 | 2.939 | 2.708 |
| 국고채 응찰률 | | 323.5 | 310.1 | 299.6 | 312.0 | 317.9 | 337.4 | 332.4 | 287.5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10년물이나 20년물이 만기가 긴 물량이기 때문에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 3월부터 5년물도 신규로 도입하여 운용 중이라는 입장임. 실제 기획재정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의 경우 5년물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액은 1,151억원으로 계획액인 600억원 대비 1.92배에 해당하여 당초 부진했던 수요에 비하여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5년물 역시 신규로 도입된 3월 이후로는 계획액 대비 청약경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24년 당시 신규발행되었던 10년물 및 20년물 개인투자용국채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으로, 5년물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경쟁률(계획액 대비 청약액)은 2025년 3월 1.92:1이었으나 2025년 4월은 1.64:1, 5월 1.58:1, 6월은 1.2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5년물의 경우 계획액 대비 청약액이 많아 발행액이 당초 계획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6월의 발행액 기준 청약경쟁률은 1:1로 청약액 전부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5년물이 신규도입되었음에도 개인투자용국채 전체의 청약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 개인투자용국채 자체에 대한 수요 저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개인투자용국채 총 합계를 기준으로 계획액 대비 청약경쟁률은 1.04:1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6월 기준 계획액 1,400억원에 비해 청약액 및 발행액은 1,377억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문제가 있음.

[2025년 월별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5년물 | | | | 총 합계(5년물·10년물·20년물) | | | |
|---|---|---|---|---|---|---|---|---|
| | 계획 | 발행 | 청약 | 경쟁률 | 계획 | 발행 | 청약 | 경쟁률 |
| 25.1 | - | - | - | - | 1,000 | 869 | 869 | 0.87:1 |
| 25.2 | - | - | - | - | 1,000 | 505 | 505 | 0.51:1 |
| 25.3 | 600 | 790 | 1,151 | 1.92:1 | 1,200 | 1,200 | 1,561 | 1.30:1 |
| 25.4 | 700 | 912 | 1,149 | 1.64:1 | 1,200 | 1,200 | 1,437 | 1.20:1 |
| 25.5 | 800 | 933 | 1,266 | 1.58:1 | 1,300 | 1,299 | 1,632 | 1.26:1 |
| 25.6 | 900 | 1,095 | 1,095 | 1.22:1 | 1,400 | 1,377 | 1,377 | 0.98:1 |
| **합계** | **3,000** | **3,730** | **4,661** | **1.55:1** | **7,100** | **6,450** | **7,381** | **1.04:1**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2024년부터 신규도입된 개인투자용국채는 수요 저조로 인하여 관련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2025년에 신규로 도입한 5년물 국채 역시 유의미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동 발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 계획액 편성 누락 및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부적절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국고국)

### < 현 황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기타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액 23조 2,982억 3,700만원 대비 2조 1,070억 9,000만원 감액된 21조 1,911억 4,7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9130-910) | 23,298,237 | 21,191,147 | - | 21,191,147 | 21,191,147 | - | - | 24,266,958 |

자료: 기획재정부

### < 검토의견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액 편성 시 일부 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을 누락한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게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4년 당초 계획액 편성 당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방폐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을 2조 8,8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이는 2022년 예탁액(2조 8,800억원)과 2023년 예탁액(3조 3,000억원)을 혼동하여 계획액을 편성함에 따라 2024년에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3조 3,000억원) 중 4,200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계획액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이를 수정하였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연말에 방폐기금이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추가로 예탁한 670억원의 상환도 누락한 문제가 있으며, 2024년 당초 계획액 편성 당시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5,000억원도 누락하여 당초 계획액 편성시

총 9,870억원을 누락한 문제가 있음.

**[2024년도 방폐기금 · 주택도시기금 원금상환액 누락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금명 | 예수일 | 상환일 | 당초 상환계획(a) | 실제 상환액(b) | 누락분 (b-a) |
|---|---|---|---|---|---|
| 방폐기금 | 2022년 예탁액을 2023년 예탁액으로 혼동 | | 2,880,000 | 3,300,000 | 420,000 |
| | 2023.12.8 | 2024.12.9 | - | 67,000 | 67,000 |
| 주택도시기금 | 2022.12.28 | 2024.1.29 | - | 500,000 | 500,000 |
| 합계 | | | 2,880,000 | 3,867,000 | 987,000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탁·예수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당초 타 기금에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을 누락하는 등 지출계획액 편성에 오류가 있는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반적인 지출 계획 및 타 기금의 수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타 기금의 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직접 소관하는 국고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을 담당하는 예산실도 계획 편성에 대하여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액 편성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국가 기금운용계획 편성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 내부거래와 관련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편성함으로써 기금 내부거래에서의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결손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을 만기연장(미상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24년에도 세수대응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는 문제가 있으며, 불필요한 이자부담이 증가한 문제가 있음.**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30.8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전액과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중 일부를 미상환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하였

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공자기금이 산재지금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 1조 5,500억원(만기일 2024.11.28.)을 상환하지 않은 채 그 만기를 25년 11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으며, 2024년에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 1조 1,100억원(만기일 2024.12.11.) 역시 미상환한 채 그 만기를 2025년 12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만기연장(미상환)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또다시 우회한 문제가 있음. 공자기금에서 산재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원금을 상환을 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한 것은 해당 금액들을 상환한 후 재예탁하는 경우 산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모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산재기금의 경우 '기금간거래(예탁금)' 프로그램의 2024년 당초 계획안 규모는 3.3조원으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범위는 6,600억원이므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하여 1조 5,500억원을 공자기금에 재예탁하는 것은 당초 프로그램 규모의 약 47%를 변경하는 것으로 자체변경 범위를 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주택도시기금 역시 '기금간거래(예탁금)' 프로그램의 2024년 당초 계획안 규모는 10조 3,656억원으로, 자체변경 가능 범위는 2조 731억원이나 이미 세수결손 대응을 위하여 공자기금에 추가 예탁한 금액이 2조 700억원으로, 추가로 만기가 도래한 1조 1,100억원을 재예탁하는 것은 당초 프로그램 규모의 약 30.7%를 변경하는 것으로 자체변경 범위를 넘게 됨.

**[2024년도 산재기금 · 주택도시기금 자체변경 범위 현황]**

(단위: 억원, %)

| 기금명 | 프로그램 당초 계획액(a) | 자체변경범위 (a × 0.2) | 기존 자체변경액(b) | 만기연장액 (c) | 재예탁시 변경범위 [(b+c)/a] |
|---|---|---|---|---|---|
| 산재기금 | 33,000 | 6,600 | 0 | 15,501 | 47.0 |
| 주택도시기금 | 103,656 | 20,731 | 20,700 | 11,100 | 30.7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산재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만기가 도래한 원금을 재예탁하는 대신 미상환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을 취한 바, 이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통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만기연장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한 것으로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세수결손에 공자기금에의 추가예탁이나 미상

환 등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거치지 않은 재정운용이 정부 재량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가 채택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를 또다시 위반한 문제가 있음.

또한, 이처럼 상환하여야 할 원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종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산재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은 재예수할 경우 적용되는 2024년도 4분기 금리인 2.8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인 3.86%, 3.50%를 각각 적용받게 되었음. 이는 같은 금액을 재예수하는 것에 비해 불필요한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1년 만기 연장에 따라 산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각각 158억 1,100만원, 73억 2,600만원의 총 231억 3,7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024년도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

| 기금명 | 만기연장 금액 | 이자율 | | | 추가 이자 부담 |
|---|---|---|---|---|---|
| | | 만기연장(a) | 재예수시(b) | 차이(a-b) | |
| 산재기금 | 1,550,090<br>(24.11.28 → 25.11.28) | 3.86 | 2.84 | 1.02 | 15,811 |
| 주택도시기금 | 1,110,000<br>(24.12.11 → 25.12.11) | 3.50 | 2.84 | 0.66 | 7,326 |
| 합계 | | | | | 23,137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기금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와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각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수입받는 것이나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운용 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 발생은 결국 국채 발행량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설명 및 운용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처럼 2024년도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이 산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을 미상환하고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국회의 심의

를 또다시 우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부담 약 231억원을 추가로 발생시킨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202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 증가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 공자기금의 사업 구조로는 특별회계·기금 간 예수·예탁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구조를 세분화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자기금에 편성된 내부거래 사업들의 프로그램 구조를 살펴보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명이 대부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특별회계 예탁 사업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자기금(총괄계정) 내부거래 사업들의 프로그램 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8500) | |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8600) |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8700) |
|---|---|---|---|---|
| 단위사업명 | 일반회계 예탁 (8520) | 기타회계 예탁 (8540) | 기타회계 예수원금상환(8601) | 기타회계 예수이자상환(8712) |
| 세부사업명 | 일반회계 예탁 (8520-851) | 특별회계 예탁 (8540-853) | 특별회계 예수원금상환 (8601-900) |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8712-900) |
| 프로그램 규모 | 86,100,175 | | 3,008,739 | 235,466 |

| 프로그램명 | 기금간거래(예탁금) (9000) |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9100) |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9200) |
|---|---|---|---|
| 단위사업명 | 기타기금예탁 (9020)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9130) |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9220) |
| 세부사업명 | 기타기금예탁 (9020-900) |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9130-910) |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9220-920) |
| 프로그램 규모 | 69,445,731 | 23,298,237 | 964,437 |

주: 프로그램 규모는 2024회계연도 당초 계획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처럼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을 세분화하도록 한 현행 세출예산 분류에 부합하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부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일례로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9130-910)'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자료에는 '기타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원금상환'으로만 설명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금에 예수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또한, 이러한 내부거래들은 이미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금이 나누어져 있어 구분이 용이하다는 점, 각 특별회계나 기금들은 각자의 설치 목적이 있어 정책적 독립성이 존재한다는 점, 타 기금의 경우 세부사업에 내부거래 대상 회계나 기금을 표기한 사례가 있다[186]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자기금 내부거래 사업들의 세부사업 기준을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186) 일례로 기획재정부 소관인 복권기금의 경우 '기금간거래(전출금)(8900)'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8910-890)',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8911-891)', '주택도시기금 전출(8913-893)' 등 기금별로 내부거래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 2) 국유재산관리기금

## 가. 개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존의 단순한 유지·보존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187]

2024년도 수입은 3조 684억원으로 수입계획 대비 93.8%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유의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대금 1조 9,491억원, 국유재산 대여료 등 재산수입 1,951억원,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421억원, 여유자금회수 3,231억원,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5,590억원으로 구성됨.

2024년도 지출은 3조 68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5%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용재산취득 9,012억원, 비축토지 매입비 800억원 등의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28억원, 공자기금예탁 15,000억원, 여유자금운용 5,844억원 등에 활용함.

지출내역 중 사업비의 집행실적은 현액 1조 1,841억원 대비 9,812억원(82.9%)이며, 국유 청·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 집행실적이 현액 1조 1,041억원 대비 9,012억원으로 81.6%임.

여유자금은 현액 7,417억원 대비 실적 5,844억원으로 78.8% 수준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사유는 공자기금 예탁금이 당초 계획 대비 증액됨에 따라 여유자금의 운용액이 감소하였음

187)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2024회계연도 국유재산기금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억원, %)

| 수 입 | | | | 지 출 | | | |
|---|---|---|---|---|---|---|---|
| 구 분 | 계획(A) | 실적(B) | B/A | 구 분 | 현액(C) | 실적(D) | D/C |
| ○ 자체수입 | 20,572 | 21,863 | 106.3 | ○ 사업비 | 11,841 | 9,812 | 82.9 |
| - 국유재산 매각대 | 17,739 | 19,491 | 109.9 | - 공용재산 취득사업 | 11,041 | 9,012 | 81.6 |
| - 국유재산 대여료 등 재산수입 | 2,163 | 1,951 | 90.2 | - 비축토지 매입 | 800 | 800 | 100.0 |
| -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 670 | 421 | 62.8 | ○ 기금운영비 | 28 | 28 | 99.4 |
| ○ 정부내부수입 | 5,588 | 5,590 | 100.0 | ○ 정부내부지출 | 15,000 | 15,000 | 100.0 |
| ○ 여유자금회수 | 6,545 | 3,231 | 49.4 | ○ 여유자금운용 | 7,417 | 5,844 | 78.8 |
| 합 계 | 32,705 | 30,684 | 93.8 | 합 계 | 34,286 | 30,684 | 89.5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는 공사계약 체결 필요 (총괄, 국고국)

< 현 황 >

공용재산취득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임.

2024년 결산 내역에 따르면 공용재산취득사업에 9,459억 6,900만원이 계획되었으며 9,012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4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24년 | | | 2025년 계획(B) | 증감 (B-A) |
|---|---|---|---|---|---|---|
| | | 당초(A) | 수정 | 결산 | | |
| 지출 | ○사 업 비 | 1,025,969 | 1,025,969 | 981,213 | 1,082,624 | 56,655 |
| | ▪ 공용재산취득 | 945,969 | 945,969 | 901,217 | 982,624 | 36,655 |
| | ▪ 비축토지매입 | 80,000 | 80,000 | 79,996 | 100,000 | 20,000 |
| | ○기금운영비 | 2,795 | 2,795 | 2,778 | 2,686 | △109 |
| | ▪ 인건비 | 1,814 | 1,814 | 1,814 | 2,053 | 239 |
| | ▪ 경상운영비 | 981 | 981 | 964 | 633 | △348 |
| | ○정부내부지출 | 1,250,000 | 1,500,000 | 1,500,000 | 1,350,000 | 100,000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1,250,000 | 1,500,000 | 1,500,000 | 1,350,000 | 100,000 |
| | ○여유자금운용 | 991,739 | 741,739 | 584,413 | 1,046,685 | 54,946 |
| | ▪ 통화금융기관예치 | 5,500 | 5,500 | 172,155 | 5,500 | 0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986,239 | 736,239 | 412,258 | 1,041,185 | 54,946 |
| 합계 | | 3,270,503 | 3,270,503 | 3,068,404 | 3,481,995 | 211,492 |

< 검토의견 >

일부 공용재산취득사업의 건축공사 계약과정에서 「국고금 관리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각 사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국가계약법」 및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계약법」 제21조[188]에서는 용역이나 공사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189]에서는 배정된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일부 공용재산취득사업에서 「국가계약법」 제21조와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계약 체결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는 준공까지 570일이 걸리는 사업으로서 장기계속계약 체결 대상 사업에 해당함. 동 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190]에 따라 2024년 6월 3일 총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 77억 2,700만원을 부기하였으며 1차수 계약금액으로 19억원을 약정하였음. 이후 2024년 12월 9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 부기금액을 77억 2,700만원에서 5억 700만원 증가시키고 1차수 계약금액을 당초 19억원에서 3억 1,100만원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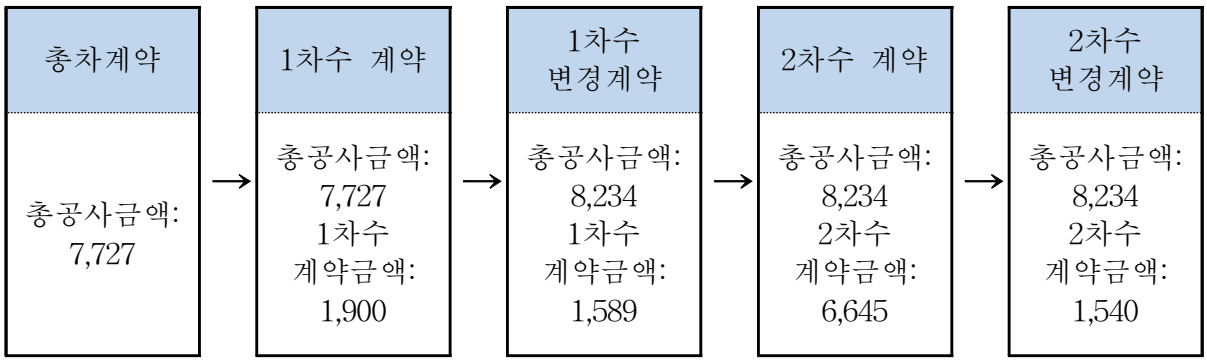
1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89)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해양경찰청은 2차수 계약을 2024년 12월 20일에 체결하면서 총 부기금액에서 1차수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66억 4,500만원을 계약금액으로 약정하였으나, 2025년 확보한 예산은 18억 9,8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해 2025년 1월 20일 2차수 계약금액을 15억 4,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함.

해양경찰청의 2차수 계약 체결일(2024.12.20.)은 국회의 2025년도 예산 의결·확정일(2024.12.10.)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양경찰청은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 규모가 18억 9,8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규모를 초과한 2차수 계약을 체결한 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계약행위에 해당함.

**[2024년 동해서 울릉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동해서 울릉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 2,025 | 5,514 | 29 | 5,543 | 3,837 | 1,706 | - | 1,898 |

‘울릉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과 같이 예산확보를 상정하고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 예산 및 기금 집행의 기초적인 원칙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고, 예산확보의 불확실

성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향후 기획재정부는 각 사업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국가계약법」 및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비축토지매입 계약행위 시정 필요

## (비축토지매입, 국고국)

< 현 황 >

「비축토지매입」은 국유재산기금을 활용하여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전에 매입·비축함으로써 장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액은 800억원이며 이 중 799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비축토지매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비축토지매입(2035-300) | 80,000 | 80,000 | - | 80,000 | 79,996 | - | 4 | 100,000 |
| - 건설보상비(410-00) | 79,980 | 79,980 | - | 79,980 | 79,980 | - | - | 99,975 |
| - 시설부대비(420-05) | 20 | 20 | - | 20 | 16 | - | 4 | 25 |

< 검토의견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191]는 배정된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비축토지매입 계획액을 초과한 비축토지매입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비축토지매입」은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전에 매입·비축하는 사업으로써

191)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계획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 대상 부동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하고 있음.

2024년에는 총 5건의 신규 비축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에 2023년 비축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비축부동산 면적정산에 따른 정산금 납부 등에 계획액이 지출되었음.

**[2024년도 비축부동산 매입 상세 지출 내역]**

| 건명 | 세목 | 지출금액(천원) | 수령인 |
|---|---|---|---|
| 비축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지급(경기도 광주시 역동) | 건설보상비 | 865,823 | 경기도시공사 |
| 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 건설보상비 | 23,243,467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 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 건설보상비 | 19,500,0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 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 건설보상비 | 23,051,960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주식회사 |
| 2024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매계약(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건설보상비 | 9,667,533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 외교부 멕시코시티 비축부동산 매입 | 건설보상비 | 3,634,000 | 외교부 |
| 비축부동산 면적정산에 따른 정산금 납부 | 건설보상비 | 17,217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
| 2024년 비축부동산 매입에 따른 계약수수료 지급 | 시설부대비 | 15,673 | 조달청 징수관 |
| 계 | | 79,995,673 | |

자료: 기획재정부

지출 내역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 역동 비축부동산 매매계약은 2023년에 체결되었으며 총 매입금액은 103억 7,600만원이나, 95억 1,100만원만이 당해연도에 지급되었으며 잔금 8억 6,500만원은 2024년 계획액을 통해 지불되었음.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비축부동산 매매계약은 2024년에 체결되었으며 총 매입금액은 259억 5,400만원이나, 230억 5,200만원만이 2024년에 지불되었으며 나머지 차액 29억 200만원은 2025년 계획액을 통해 지불되었음.

마찬가지로 멕시코시티 비축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이 2024년 체결되었으며 총 매입금액 25,000,000$ 중 2,500,000$이 2024년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잔액은 2025년에 지불되었음.

[계약연도와 잔금 지급연도가 상이한 비축토지 구매내역]

| 건명 | 매입연도 | 매입연도 지급액 | 차년도 지급액 | 총 매입금액 |
|---|---|---|---|---|
| 경기도 광주시 역동 | 2023년 | 9,510,941천원 | 865,823천원 | 10,376,764천원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 2024년 | 23,051,960천원 | 2,902,540천원 | 25,954,500천원 |
| 멕시코시티 | 2024년 | 2,500,000USD | 22,500,000USD | 25,000,000USD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재구성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은 당해연도의 계획액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으로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비축부동산 매입 계획액을 초과[192]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준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 제9조[193](매입 순서)에서 전년도에 지분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잔여 지분을 우선 순위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년도 예산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임. 하지만 동 규정은 당해연도의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잔여 지분을 우선 순위로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그 나머지 지분을 당해연도의 예산을 통해 우선 순위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년도에 체결된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는 계약의 잔금을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비축부동산 매입 계획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통상 계약금·중

192) 2024년 비축토지매입을 위한 건설보상비 계획액은 총 799억 8,000만원이나, 2024년 체결한 계약금액 기준 비축토지매입액은 총 1,141억 1,500만원으로 계획액을 초과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짐

193)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 제9조(매입 순서)**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비축부동산 매입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다.
1. 전년도에 지분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잔여 지분
2. 해당 연도 예산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우선순위에 따른 일단의 부동산
3. 제2호에 따른 매입이 끝난 후에 남은 예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

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계속비계약[194][195]과 같이 비축부동산 매매 잔금을 다음 회계연도 계획액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194) **「국가재정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해외 비축토지매입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마련 필요 (비축토지매입, 국고국)

< 현 황 >

「비축토지매입」은 국유재산기금을 활용하여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전에 매입·비축함으로써 장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액은 800억원이며 이 중 799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비축토지매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비축토지매입(2035-300) | 80,000 | 80,000 | - | 80,000 | 79,996 | - | 4 | 100,000 |
| - 건설보상비(410-00) | 79,980 | 79,980 | - | 79,980 | 79,980 | - | - | 99,975 |
| - 시설부대비(420-05) | 20 | 20 | - | 20 | 16 | - | 4 | 25 |

< 검토의견 >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이 국내·국외 구분 없이 존재하여 비축토지 매입 평가 기준이 해외 비축부동산 후보지를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은 국외 비축부동산을 우선순위 결정의 예외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평가점수를 책정함이 없이 멕시코시티 비축부동산을 구매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외 비축부동산 업무처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은 재외공관 청사·관저 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재외공관 통합청사 복합건설을 위해 2024년 멕시코시티 부동산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음.

[2024년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 현황]

| 매입대상지 | 매입금액 | 매입면적 |
|---|---|---|
|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157 6 | 25,000,000USD | 1,536$m^2$ |
|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157 | | 659$m^2$ |

자료: 기획재정부

해외 비축부동산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2024년 10월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여 매입 대상에 국외 부동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기획재정부가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의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 개정 전 | 개정 이후 |
|---|---|---|
| 매입대상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 부동산** |
| 외교부 의무 | **<신 설>** | **외교부장관은 총괄청이 요청할 경우 해외 비축 부동산 매입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해외 비축부동산 업무처리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첫째, 국내 비축부동산과 국외 비축부동산 간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은 주요 평가요소로 최근 5년간 지역별 사용승인 비율, 지역별 수요·보유 비율, 행정구역 특성, 토지 매도자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있음. 하지만, 해외 부동산의 경우 국내와 달리 주요 해외공관이나 중앙관청이 밀집하여 있는 국가 수도 등에 매입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기 어려움. 또한 국내 비축부동산의 경우 공공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도 주체가 중앙관서나 공공기관일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토지의 매입주체를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음.

## [비축토지 매입대상 자료심사 평가기준]

| 평가항목 | | | 평 가 기 준 | | |
|---|---|---|---|---|---|
| | | | 만점 | 가중치 | 배 점 |
| 수요계획성 | ① | 최근 5년간 지역별 사용승인 (사용예약) 비율 | 5 | 1 | · 평균 대비 +10% 이상인 경우 : 5점<br>· 평균 대비 +10% 미만이면서 평균 이상인 경우 : 4점<br>· 평균 미만이면서 평균 대비 -10% 이상인 경우 : 3점<br>· 평균 대비 -10% 미만인 경우 : 2점 |
| | ② | 최근 5년간 지역(광역)별 수요 비율 | 5 | 1 | · 평균 이상 : 5점<br>· 평균 미만 : 3점 |
| | ③ | 지역(광역)별 수요 대비 보유 정도 | 5 | 1 | · 25% 미만 : 5점<br>· 25% 이상~50% 미만 : 4점<br>· 50% 이상~75% 미만 : 3점<br>· 75% 이상 : 2점<br>* 지역별 매입 형평성 감안 |
| | ④ | 규모(㎡) | 5 | 1 | · 3천 이상~6천 미만 : 5점<br>· 6천 이상 : 4점<br>· 1천 이상~2천 미만 : 3점<br>· 2천 이상~3천 미만 : 2점 |
| | ⑤ | 중기재정 운영계획 반영 | 10 | 1 | · 기획재정부 중기계획 반영 : 5점<br>· 중앙관서 중기계획 반영 : 3점 |
| | | 설계비 등 사업예산 반영 | | 1 | · 정부안(국회 제출) 반영 : 5점<br>· 부처요구안(예산실 제출) 반영 : 3점 |
| | ⑥ | 복합청사 추진계획 반영 | 10 | 1 | · 3개 기관 이상 : 10점<br>· 2개 기관 또는 3개 이상 하부조직 : 5점<br>· 2개 이상 하부조직 : 2점 |
| | 소계 | | 40 | | |
| 공급지특성 | ⑦ | 토지매도자 | 5 | 1 | · 중앙관서(특별회계·기금) : 5점<br>·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4점<br>· 기타 : 1점 |
| | ⑧ | 토지가격 (만원/㎡) | 5 | 1 | · 최근 유사 토지 실거래가 대비 -5% 미만 : 5점<br>· 최근 유사 토지 실거래가 대비 ±5% 이내 : 3점<br>· 최근 유사 토지 실거래가 대비 +5% 초과 : 2점 |
| | ⑨ | 행정구역 | 5 | 1 | · 특별·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혁신도시) : 5점<br>· 시 및 군 : 3점 |
| | ⑩ | 택지개발지 여부 | 5 | 1 | · 택지개발지(100만㎡ 이상) : 5점<br>· 기타 : 3점 |
| | 소계 | | 20 | | |
| 합 계 | | | 60 | | |

자료: 기획재정부

더욱이, 2024년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을 위한 평가는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정성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 바, 평가기준의 부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국외 비축부동산 매입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196].

둘째,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 절차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국내 비축부동산의 경우 ①조달청장의 매입 대상 부동산 평가 및 추천 목록 제출, ②총괄청의 매입 대상 부동산 우선순위 확정, ③총괄청의 매입으로 이루어짐. 하지만 해외 비축부동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달청장이 매입 대상을 평가하고 추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멕시코시티 비축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조달청장의 별도 평가와 추천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을 위한 절차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셋째, 해외 비축부동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일반재산인 비축부동산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 비축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정 취소 필요 비축부동산을 조사하여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있음[197].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5년 비축부동산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해외 비축부동산에 대한 조사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더욱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외교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에는 총괄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규정만 두고 있을 뿐, 외교부 장관의 해외 비축부동산 관리 위탁이나 방식에 대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 해외 비축부동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임.

---

196) 국토연구원 또한 해외 재외공관 통합청사 구축을 위해 매입 기준을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2024.5.).

197)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 제16조(비축부동산 관리)** ① 비축부동산은 총괄청이 관리하되, 총괄청은 그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9조(실태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은 총괄청이 위탁한 비축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0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한다.

**제20조(비축부동산의 지정 및 취소)** ① 총괄청은 장래의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일반재산의 일부를 비축부동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매입 후 5년 이상 지나거나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비축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은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비축부동산을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해외 비축부동산 매입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행, 해외 비축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외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을 국내 비축부동산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4) 편성 내역에 부합되지 않은 자산취득 시정 및 위탁기관 자체계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환급 필요 (정책연수원 신축, 국고국)

< 현 황 >

「정책연수원 신축」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교육연수시설 통합개발로 중복투자 방지, 재정운용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액은 당초 73억 4,700만원에서 93억 7,400만원 자체 증액한 167억 2,100만원이며 35억 800만원이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어 2024년 계획현액은 202억 2,900만원임. 이 중 199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정책연수원 신축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정책연수원 신축(6033-100) | 7,347 | 16,721 | 3,508 | 20,229 | 19,985 | - | 244 | 2,000 |
| - 일반수용비(210-01) | 295 | 40 | - | 40 | 27 | - | 13 | - |
| - 공사비(420-03) | 5,031 | 14,169 | 3,463 | 17,632 | 17,406 | - | 227 | - |
| - 감리비(420-04) | 323 | 559 | 45 | 604 | 601 | - | 3 | - |
| - 시설부대비(420-05) | 31 | 31 | - | 31 | 30 | - | 1 | - |
| **- 자산취득비(430-01)** | **1,667** | **1,922** | **-** | **1,922** | **1,921** | **-** | **-** | **2,000** |

< 검토의견 >

**정책연수원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다른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과 상이한 집행이 이루어졌고, 자산취득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계정으로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바, 기획재정부는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당초 계획과 무관한 자산 취득에 사용된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계정으로 지출한 임시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수원 신축」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기금개발 사업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2022년까지는 기금에서 물품 구입이나 소모품 취득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 활용이 불가하였으나, 2022년 12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산을 지원하여 물품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음[198].

「정책연수원 신축」 사업의 2024년 자산취득비 계획현액은 19억 2,2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 16억 6,700만원에서 2억 5,500만원이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다만, 당초 자산취득계획과 상이한 집행이 이루어진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2024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취득계획안에 따르면 자산취득비 16억 6,700만원 가운데 4억 200만원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계정의 재원 4,876만원을 활용하여 임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음.

198)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0조(기금개발사업의 대상)** 기금개발사업은 국유 일반재산의 활용도 증대 및 효율성 제고, 공익기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설용도 : 다수의 중앙관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시설, 청・관사 및 부대시설 등 복합시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2. 취득방법 : 신・증축, 리모델링, 법 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 혼합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3. 비용내역 :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개발 수탁에 따른 수수료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 통합관사, 연수원 등은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2024년 취득계획안 총사업비 구성 및 산출 내역]

| 예산 비목 | 물품명 | 요구액(백만원) | 비 고 |
|---|---|---|---|
| 자산취득비 (물품대장 관리) | 교육동 가구·가전 | 931 | 책상, 의자, 수납장, PC 등 |
| | 차량 및 장비 | 139 | 미니청소차, 포터, 세탁기 |
| | 객실 전자제품 | 154 | 전화기, 밥솥, 전자레인지 등 |
| | 관리사무소 가구·가전 | 41 | 책상, 의자, 옷장, 냉장고 등 |
| | 예약시스템 구축 | 402 | 홈페이지 및 온라인 예약 |
| | 소 계 | 1,667 | |
| 일반수용비 (소모성 물품) | 객실 침구류 | 174 | 이불, 베개, 커버, 수건 등 |
| | 기타 객실 비품 | 81 | 식기, 냄비, 주방용품, 샤워용품 등 |
| | 청소용품 및 공구류 | 40 | 청소용품 및 시설관리 공구류 |
| | 소 계 | 295 | |
| 합 계 | | 1,962 | |

자료: 기획재정부

[임시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내역]

| 용역명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 | 용역기간 |
|---|---|---|---|
| 태안정책연수원 임시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 리노인포텍 | 48,760,000 | 2024.7.~2024.11. |

자료: 기획재정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된 예약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이 불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계정의 재원을 활용한 경우 동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되었음이 타당함. 하지만 4억 2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은 당초 계획과 무관한 자산취득을 위해 집행되었음. 일례로, 물품구매 세부내역에 따르면 당초 취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래방 시설, 당구장 시설 등 편의시설을 위한 가구 및 전자제품에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일부가 사용됨. 정책연수원은 본래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교육연수시설로서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당구장 등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정책연수원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노래방·당구장 시설 관련 물품구매 내역]

| 품목 | 수량 | 금액(원) |
|---|---|---|
| 노래방 테이블 1 | 1 | 484,000 |
| 노래방 테이블 2 | 1 | 240,000 |
| 노래방 테이블 3 | 1 | 616,000 |
| 노래방 인포 의자 | 1 | 197,000 |
| 당구장 의자 | 8 | 1,936,000 |
| 당구장 테이블 | 2 | 922,000 |
| 당구대 | 1 | 9,000,000 |
| 노래방반주기(TV60′포함)-매립형 | 3 | 10,685,000 |
| 계 | | 24,080,000 |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당초 기금운용계획 편성 내역과 상이하게 자산취득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초 계획과 상이한 자산취득비를 집행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소모가 우려됨.

한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199]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을 구분함으로써 각 사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동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200]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

199)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20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2016. 5. 10.>

약관리시스템 구축 또한 위탁사업의 일부로서 위탁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당초 사업에 계상된 예약시스템 구축 비용을 노래방 시설 등 편의시설 구축에 활용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계정 재원을 활용하여 예약시스템을 구축한 바,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4억 2백만원)가 당초 계획과 무관한 자산 취득에 소진됨에 따라 예약시스템 구축 비용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계정[201]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관련 규칙을 위반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추후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상이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계정으로 지출한 임시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201)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

## 3) 대외경제협력기금

### 가. 개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을 통해 설치되었음.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음.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5,041억 6,100만원 증가한 2조 192억 7500만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91.4%임.

먼저, 2024회계연도 수입 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1조 2,187억 4,900만원을 전입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562억 4,900만원을 예수하였음. 그 밖에 차관 만기에 따른 융자 원금 회수 2,433억 7,300만원, 융자 이자 수입 등 509억 2,300만원, 여유자금 회수 407억 9,100만원 및 여유자금 운용 수입 91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4회계연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결산 | 2024년 계획 | | 2024년 결산(B) | | 2025년 계획 |
|---|---|---|---|---|---|---|
| | | 당초 | 수정(A) | | B/A | |
| 합 계 | 1,515,114 | 2,208,746 | 2,208,746 | 2,019,275 | 91.4 | 2,352,735 |
| 일반회계 전입금 | 787,299 | 1,218,749 | 1,218,749 | 1,218,749 | 100.0 | 1,317,379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360,000 | 656,249 | 656,249 | 456,249 | 69.5 | 633,951 |
| 융자금 원금 회수 | 258,905 | 245,891 | 245,891 | 243,373 | 99.0 | 277,615 |
| 융자금 이자 수입 등 | 61,201 | 54,034 | 54,034 | 50,923 | 94.2 | 62,699 |
| 여유자금 회수 | 36,501 | 30,081 | 30,081 | 40,791 | 135.6 | 47,343 |
| 여유자금 운용 수입 | 11,208 | 3,742 | 3,472 | 9,190 | 264.7 | 13,748 |

주: 2025년 계획액은 추가경정예산 반영 전 금액임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지출 결산에 따르면 대개도국 차관에 1조 8,485억 4,400만원을 지출하여 91.0%의 집행률을 보였고, 대개도국 차관 지원 사업에 365억 900만원, 경협증진자금(EDPF) 지원 사업에 14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음. 그 밖에 공자기금예수 원리금 상환에 394억 500만원, 기금 운영에 229억 2,900만원, 여유자금운용에 704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결산 | 2024년 계획 | | 2024년 결산(B) | B/A | 2025년 계획 |
|---|---|---|---|---|---|---|
| | | 당초 | 수정(A) | | | |
| **합 계** | **1,515,114** | **2,208,746** | **2,208,746** | **2,019,275** | **91.4** | **2,352,735** |
| 대개도국 차관 | 1,396,071 | 2,031,979 | 2,031,979 | 1,848,544 | 91.0 | 2,149,950 |
| 대개도국 차관 지원 | 30,557 | 36,715 | 36,715 | 36,509 | 99.4 | 55,952 |
| 경협증진자금 지원 | 1,226 | 1,470 | 1,470 | 1,431 | 97.3 | 3,853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 상환 | 24,412 | 56,541 | 56,541 | 39,405 | 69.7 | 87,074 |
| 기금 운영비 | 22,057 | 22,929 | 22,929 | 22,929 | 100.0 | 26,806 |
| 여유자금 운용 | 40,791 | 59,112 | 59,112 | 70,457 | 119.2 | 29,100 |

주: 2025년 계획액은 추가경정예산 반영 전 금액임

## 나. 검토의견

### (1) 대개도국 차관 세부사업간 연례적 자체변경 문제 개선 필요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 개발금융국)

< 현 황 >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개별 국가에 직접 차관을 제공하는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4개 지역별 차관사업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대개도국차관」의 세부사업인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6,088억 6,100만원이나, 1,195억 7,600만원을 자체 증액변경하여 계획현액 7,284억 3,700만원 중 6,806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77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대개도국 차관 | 2,031,979 | 2,031,979 | - | 2,031,979 | 1,848,544 | - | 183,435 | 2,149,950 |
| - 아시아차관 | 849,890 | 717,780 | - | 717,780 | 631,608 | - | 86,172 | 870,189 |
| - 아프리카차관 | 416,981 | 416,981 | - | 416,981 | 405,278 | - | 11,703 | 380,458 |
| - 중동-CIS차관 | 112,383 | 133,575 | - | 133,575 | 107,143 | - | 26,432 | 85,999 |
| - 중남미차관 | 43,864 | 35,206 | - | 35,206 | 23,849 | - | 11,357 | 38,089 |
| **-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 **608,861** | **728,437** | **-** | **728,437** | **680,666** | **-** | **47,771** | **775,215**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자체변경을 통해 연례적으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을 증액변경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체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내 아시아차관 등 지역별 차관 세부사업을 감액변경하여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을 당초 계획액 대비 19.6% 증액변경하였음.

**[2024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계획액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계획액 | | 증감액 | 증감율 | 비고 |
|---|---|---|---|---|---|
| | 당초 | 수정 | | | |
| - 아시아차관 | 849,890 | 717,780 | △132,110 | △15.5% | |
| - 아프리카차관 | 416,981 | 416,981 | - | - | |
| - 중동-CIS차관 | 112,383 | 133,575 | 21,192 | 18.9% | |
| - 중남미차관 | 43,864 | 35,206 | △8,658 | △19.7% | |
|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 608,861 | 728,437 | 119,576 | 19.6%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런데, 동 단위사업의 이전 3회계연도(2021 ~ 2023)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별 차관사업에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으로의 계획액 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계획액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 | | | 2022 | | | 2023 | | |
|---|---|---|---|---|---|---|---|---|---|
| | 계획액 | | 증감액 (증감율) | 계획액 | | 증감액 (증감율) | 계획액 | | 증감액 (증감율) |
| | 당초 | 수정 | | 당초* | 수정 | | 당초 | 수정 | |
| 아시아 | 438,680 | 230,070 | △208,610 (△47.6) | 604,699 | 464,159 | △140,540 (△23.2) | 705,400 | 500,307 | △205,093 (△29.1) |
| 아프리카 | 301,583 | 283,767 | △17,816 (△5.9) | 277,621 | 308,175 | 30,554 (11.0) | 304,852 | 234,680 | △70,172 (△23.0) |
| 중동-CIS | 77,884 | 18,154 | △59,730 (△76.7) | 56,219 | 21,348 | △34,871 (△62.0) | 131,972 | 10,946 | △21,026 (△91.7) |
| 중남미 | 47,042 | 18,067 | △28,975 (△61.6) | 44,655 | 37,006 | △7,649 (△17.1) | 36,396 | 13,918 | △22,478 (△61.8) |
| 태평양 | 149,271 | 176,656 | 27,385 (18.4) | - | - | - | - | - | - |
| 민간·국제기구 | 243,736 | 531,482 | 287,746 (118.1) | 247,362 | 399,868 | 152,506 (61.6) | 324,356 | 743,125 | 418,769 (129.1) |

* 2022년 당초 계획액은 2022년 제2회 추경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일반적으로 ①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및 정부 간 협의를 거쳐 후보사업을 확정한 후, ②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③ 수원국의 차관신청 이후 사업심사를 하며, ④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승인하고, ⑤ 정부간 시행약정 등의 협정을 체결하고 차관계약을 체결한 뒤, ⑥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와 본구매 업체를 선정하고, ⑦ 사업실시 및 자금을 집행하는 체계로 진행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진행절차]

| 단 계 | 진 행 절 차 |
|---|---|
| 사업 발굴 | ○정상회담, 고위급회의 또는 EDCF 사무소 등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br>○정부 간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Rolling Plan) 등 확정 |
| 타당성조사(F/S) | ○수원국 자체적 타당성조사 또는 수원국 요청시 수은 발주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조사 |
| 사업 심사 (현지심사 포함) | ○수원국의 차관신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 요청<br>○수은은 사업범위, 사업비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
| 사업승인 | ○기재부장관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 지원방침을 결정 |

| 단 계 | 진 행 절 차 |
|---|---|
| 정부간협정 체결 | ○정부간 시행약정(Arrangement; A/R) 체결<br>단,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F/A) 체결시, AR 생략 |
| L/A 교섭 및 체결 | ○정부간 협정(기본약정 포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해 교섭하고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 체결 |
| 컨설턴트 고용 | ○수원국의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 체결 |
| 본구매 | ○사업실시기관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시공사 선정 후 구매계약 체결 |
| 사업실시 및 자금지출 | ○공정진행 단계에 따라 컨설턴트 및 본구매 계약자 앞으로 대금 지급 |
| 사후관리 | ○완공점검(사업완공보고서 접수시점)시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br>○사후평가(완공점검 후 2년) 시에는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 |

특히,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등 지역별 차관의 경우 ①부터 ⑦까지의 업무 전부를 우리나라와 수원국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추진 결정 이후에도 실제 자금 집행규모가 수원국의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측면이 있음.

그러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 중 국제금융기구(다자개발은행)를 통해 수원국 사업에 자금을 집행하는 협조융자 방식의 프로그램 차관사업은 사업절차 중 대부분을 다자개발은행에서 수행하고, 우리나라는 ⑦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지역별 차관의 불용예상액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으로 자체변경하여 ODA 사업의 집행률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202]

특히,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자체변경을 통해 3개의 신규 프로그램 차관사업에 총 3,44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 '미정'으로 편성된 40억원 대비 3,406억 6,000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임.

202)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차관은 MDB가 수원국과 협의하여 총규모를 먼저 산출하고 공여국들에게 협조융자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타 공여국과의 경쟁 뿐만 아니라 우리와 수원국간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한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또한, 협조융자 사업은 국제기구의 지역적·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EDCF 단독진출이 어려운 국가·분야에 진출기반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으며, 수원국의 법·제도 변경 및 정책형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자체변경을 통한 계획 편성 당시 '미정' 사업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획액 | | 집행액 | 불용액 | 사업명 |
|---|---|---|---|---|---|
| | 당초 | 수정 | | | |
| 프로그램 차관(미정) | 4,000 | 138,645 | 138,645 | 0 | (ADB) 방글라데시 사회적 회복력 강화 2차 프로그램 |
| | | 77,234 | 72,540 | 4,694 | (ADB) 캄보디아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 | | 133,475 | 133,475 | 0 | (IDB) 에콰도르 에너지전환·투자촉진 지원 프로그램 Ⅱ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프로그램 차관은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집행률 및 ODA 공여액 증가라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재원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개발사업차관과 비교하여 수원국이 우리나라의 기여도를 인지하기 어렵고 구속성 원조[203] 비율이 낮아 우리 기업의 ODA 사업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향후 기획재정부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시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규모의 신규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최소화하고,[204] 단순히 집행률과 ODA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닌 수원국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의미있는 방향으로 재원이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3) 수원국 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입찰자격을 공여국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는 유상원조를 말하며, 2024년말 기준 구속성 원조 비율은 아시아차관은 97.9%, 아프리카·중동-CIS·중남미 차관은 100%,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20%임.

204)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세부사업 계획의 20% 초과변경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체 통제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사업수요의 정확성 제고와 사업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계획과 집행 간 차이 최소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2) 지역별 차관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 개발금융국)

< 현 황 >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아시아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대개도국차관」의 세부사업인 「아시아차관」사업의 계획액은 8,498억 9,000만원이나, 1,321억 1,000만원을 자체 감액변경하여 계획현액 7,177억 8,000만원 중 6,31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861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중동-CIS차관」사업의 계획액은 1,123억 8,300만원이나, 211억 9,200만원을 자체 증액변경하여 계획현액 1,335억 7,500만원 중 1,07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4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중남미차관」사업의 계획액은 438억 6,400만원이나, 86억 5,800만원을 자체 감액변경하여 계획현액 352억 600만원 중 238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3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대개도국 차관 | 2,031,979 | 2,031,979 | - | 2,031,979 | 1,848,544 | - | 183,435 | 2,149,950 |
| **- 아시아차관** | **849,890** | **717,780** | **-** | **717,780** | **631,608** | **-** | **86,172** | **870,189** |
| - 아프리카차관 | 416,981 | 416,981 | - | 416,981 | 405,278 | - | 11,703 | 380,458 |
| **- 중동-CIS차관** | **112,383** | **133,575** | **-** | **133,575** | **107,143** | **-** | **26,432** | **85,999** |
| **- 중남미차관** | **43,864** | **35,206** | **-** | **35,206** | **23,849** | **-** | **11,357** | **38,089** |
| -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 608,861 | 728,437 | - | 728,437 | 680,666 | - | 47,771 | 775,215 |

< 검토의견 >

**지역별 차관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불필요한 계획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관사업의 계획액을 적정규모로 편성하고 확정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대개도국차관사업의 약 60%를 아시아 국가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시아차관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은 60~70%대로 저조하여 계획액 편성과 집행과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개도국차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긴 하나, 중남미 차관사업 역시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50%대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

**[연도별 지역별차관 집행률 현황]**

(단위: %)

| 연도 | 아시아 | | 아프리카 | | 중동-CIS | | 중남미 | |
|---|---|---|---|---|---|---|---|---|
| | 당초대비 | 수정대비 | 당초대비 | 수정대비 | 당초대비 | 수정대비 | 당초대비 | 수정대비 |
| 2020 | 89.5 | 97.3 | 32.4 | 74.7 | 66.6 | 90.7 | 48.9 | 91.1 |
| 2021 | 66.5 | 96.2 | 91.4 | 97.1 | 20.7 | 88.7 | 32.2 | 83.9 |
| 2022 | 72.6 | 100.0 | 95.3 | 99.0 | 26.7 | 99.6 | 62.0 | 79.0 |
| 2023 | 64.8 | 91.3 | 61.9 | 80.4 | 7.3 | 88.0 | 36.4 | 95.3 |
| 2024 | 74.3 | 88.0 | 97.2 | 97.2 | 95.3 | 80.2 | 54.4 | 67.7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기획재정부는 지역별 차관은 입찰·설계·시공 등 차관사업 전과정이 수원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차관집행액이 전액 대외채무로 계상되는 유상차관 특성상, 수원국 내부 법령 미비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개별사업 수준에서 예상치 못한 집행계획의 변경 및 집행 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수원국의 정치변동 및 대외채무위기, 입찰공기 지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 저조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지역별 차관의 집행부진은 계획액 편성시 각 사업의 현황분석 및 집행가

능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지역별 차관사업 중 2024년 계획안 편성 당시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계획에 반영된 차관사업은 총 37개인데, 이 중 35개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임.

차관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이전에도 타당성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승인 이후에도 자금이 집행되기까지 정부간 약정 및 차관계약 체결, 컨설턴트 고용 및 본구매(시공사) 계약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이 다수 반영된 것이 집행률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보임.

**[계획안 편성 당시 미승인사업 중 계획액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승인사업 반영내역 | 전액 미집행 사업 | 당초 계획액 |
|---|---|---|---|
| - 아시아 | 방글라데시 등 6개국 17개 사업 | 17개 사업 | 137,130 |
| - 아프리카 | 가나 등 6개국 13개 사업 | 13개 사업 | 3,197 |
| - 중동-CIS | 우즈베키스탄 등 2개국 5개 사업 | 4개 사업 | 868 |
| - 중남미 | 엘살바도르 등 2개국 2개 사업 | 1개 사업 | 3,010 |
| 계 | 37개 | 35개 | 144,205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또한, 기획재정부는 「중동-CIS차관」 세부사업의 집행 전망액이 당초 계획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획액을 증액 변경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당초 계획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205]

**[2024회계연도 「중동-CIS차관」 세부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액 | | | 집행액 | 불용액 | 비고 |
|---|---|---|---|---|---|
| 당초 | 수정 | 증감액 | | | |
| 112,383 | 133,575 | 21,192 | 107,143 | 26,432 | 기금운용계획 변경일 (2024. 11. 21.) |

205) 기획재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차관신청서가 연내 미접수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회계연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11월 21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집행액은 당초 계획액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별 실집행 예상액 전망의 단기적 예측도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지역별 차관의 집행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기획재정부는 미승인 사업의 대부분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안 편성시 미승인 사업의 계상을 최대한 지양하는 한편, 수원국의 상황 및 각 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안을 편성하고, 확정된 계획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별 차관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청년지역전문가 육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개발협력증진, 개발금융국)

< 현 황 >

「개발협력증진」 사업은 대개도국차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홍보 활동 및 현지 ODA전문인력 고용, 개도국 ODA 관계자 대상 EDCF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 3,400만원으로, 이 중 1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원을 이월하여 6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개발협력증진」의 내역사업인 「청년 인식증진」은 청년 지역전문가 육성 및 EDCF 서포터즈 운영 사업으로, 계획현액은 12억 2,500만원 중 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개발협력증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개발협력증진 (3376-633) | 2,506 | 2,506 | 28 | 2,534 | 1,852 | 27 | 655 | 4,928 |
| **- 청년 인식증진** | **1,240** | **1,225** | **-** | **1,225** | **821** | **-** | **404** | **1,276** |
| - 통합홍보활동 | 377 | 342 | 28 | 370 | 266 | 27 | 77 | 1,022 |
| - 현지인력 인건비 | 716 | 716 | - | 716 | 582 | - | 134 | 1,252 |
| - 현지인력 채용 및 교육 | 11 | 11 | - | 11 | 2 | - | 9 | - |
| - 개도국 ODA연수 | 129 | 134 | - | 134 | 109 | - | 25 | - |
| - 현지 개발협력 워크숍 | 33 | 78 | - | 78 | 72 | - | 6 | 154 |
| - EDCF아카데미 | - | - | - | - | - | - | - | 1,224 |

< 검토의견 >

**청년지역전문가 파견 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 채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청년지역전문가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현장업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청년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목적임.

청년지역전문가로 선발된 사람은 수출입은행 본부와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발굴·관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대외경제협력기금 홍보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보조하며 ODA 현장업무에 참여하고 있음.

**[2024년 청년지역전문가 육성사업 급여 및 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일용임금 | 고용부담금 | 국외업무여비 | 계 |
|---|---|---|---|---|
| 예산액* | 581 | 57 | 280 | 918 |
| 집행액 | 416 | 30 | 292 | 738 |

* 예산액은 각목명세서상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런데, 동 사업에 선발된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 후속채용 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확대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년지역전문가 선발인원 및 후속채용 현황]**

(단위: 명)

| 사업명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지원인원 | | 875 | - | 159 | 106 | 198 |
| 선발인원 | | 45 | - | 34 | 34 | 34 |
| 후속 채용인원 | 수출입은행 | 10 | - | 1 | 1 | 1 |
| | 기타 | 1 | - | - | - | - |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지역전문가 채용이 없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청년지역전문가 육성사업은 공정한 취업 경쟁을 위해 취업형 인턴이 아닌 체험형 인턴 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국내 ODA 기관의 한정된 채용인원과 높은 경쟁률 등으로 해당 인턴십 경험을 통해 타 분야로 취업하거나 추가 역량 개발을 위해 취업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사업의 목적이 청년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확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년들에게 ODA 현장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을 통해 ODA 실무경험을 쌓은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취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향후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선발 절차[206]를 거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양질의 현장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동 사업으로 육성한 청년지역전문가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후속 교육훈련 기회 제공[207], 관련 분야 국내외 취업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무능력이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 분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거나 개발금융 관련 국제기구에 추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6) 기획재정부는 청년지역전문가를 ① 서류전형, ② 필기전형, ③면접전형을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경쟁력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는 입장임.

| 구 분 | 세부내용 | 선발예정인원 |
|---|---|---|
| 서류전형 | ○ 자기소개서 및 정량지표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
| 필기전형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br>- 직업성격검사(적부검사)<br>- 직업능력검사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 면접전형 | ○ 조직가치적합도 및 PT면접 | 채용예정인원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공공기관, 정부 채용 시 직무관련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별·나이·학력 등 다른 외적 요소의 영향을 줄여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식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207) 기획재정부는 외부전문가, EDCF 사업참여자(컨설턴트, 시공사), 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맞춤형 연수 제공을 통해 EDCF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EDCF 아카데미」를 202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4) 민간단체 학술행사 경비 지원 등 일반수용비 부적정 집행 개선 필요

## (개발협력증진, 개발금융국)

< 현 황 >

「개발협력증진」 사업은 대개도국차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홍보 활동 및 현지 ODA전문인력 고용, 개도국 ODA 관계자 대상 EDCF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 3,400만원으로, 이 중 1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원을 이월하여 6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개발협력증진」의 내역사업인 「통합홍보활동」은 언론 홍보활동 등을 통해 원조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현액 3억 7,000만원 중 2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원을 이월하여 7,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개발협력증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개발협력증진 (3376-633) | 2,506 | 2,506 | 28 | 2,534 | 1,852 | 27 | 655 | 4,928 |
| - 청년 인식증진 | 1,240 | 1,225 | - | 1,225 | 821 | - | 404 | 1,276 |
| **- 통합홍보활동** | **377** | **342** | **28** | **370** | **266** | **27** | **77** | **1,022** |
| - 현지인력 인건비 | 716 | 716 | - | 716 | 582 | - | 134 | 1,252 |
| - 현지인력 채용 및 교육 | 11 | 11 | - | 11 | 2 | - | 9 | - |
| - 개도국 ODA연수 | 129 | 134 | - | 134 | 109 | - | 25 | - |
| - 현지 개발협력 워크숍 | 33 | 78 | - | 78 | 72 | - | 6 | 154 |
| - EDCF아카데미 | - | - | - | - | - | - | - | 1,224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지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 주최 학술행사의 행사경비를 지원하고, 임차료 비목으로 집행하여야 할 장소 대관료를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는 민간단체 주관의 학술행사에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행사경비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지원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정책학회의 정기학술행사에 인쇄비, 기념품 구입비, 사례금 등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개발정책학회 학술행사 경비 지원 내역]**

(단위: 천원)

| 연도 | 행사명 | 집행액 | 집행내역 |
|---|---|---|---|
| 2022 | 2022 추계학술포럼 | 9,700 | 행사진행비, 사례금, 대관료 |
| | 2022 동계정책포럼 | 9,079 | |
| 2023 | 2023 추계학술포럼 | 15,673 | 행사진행비, 사례금 |
| 2024 | 2024 동계학술행사 | 19,923 | 행사진행비, 사례금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발협력 커뮤니티의 발전을 지원하여 유상원조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중 학술행사는 전문성을 가진 학회조직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개발정책학회 학술행사에 경비를 지원하였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비목별 지침에 따라 이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현수막, 자료인쇄비, 사례금 등 행사 진행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이는 정부가 직접 개최하는 세미나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급 기준임.

그러나 한국개발정책학회의 학술행사는 기획재정부가 공동주관[208]한 행사가 아니며, 기획재정부가 개최하여야 할 행사를 해당 학회에 위탁[209]한 것도 아닌 한국개발정책학회 주관의 자체행사이므로 기획재정부가 민간단체의 학술행사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음.[210]

또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학술적 기반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예산을 민간경상보조(320-01) 비목으로 편성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모 절차를 거쳐[211] 공정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정책학회 학술행사 경비를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지원한 것은 충분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이 특정 단체에 예산지원을 한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향후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세미나 등 개최경비 중 임차료(210-07) 비목으로 집행하여야 할 장소 대관료를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세미나 등 개최경비 중 현수막, 참석자 사례금, 기념품 등의 경비는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장소·장비·차량 등 대여료는 임차료 비목으로 집행되어야 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EDCF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장소 대관료를 임차료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208)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정책학회의 2020년과 2021년 학술행사에도 행사경비를 집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기금운용위탁기관인 수출입은행과 한국개발정책학회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음.

209) 이 경우에도 일반수용비 비목이 아닌 정부 업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비용인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적절한 계약 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하는 것임.

210) 해당 학술행사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을 후원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행사 후원시 「기획재정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외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

2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료를 일반수용비로 부적정 집행한 사례]

(단위: 백만원)

| 행사명 | 집행액 | 집행대상 | 비고 |
|---|---|---|---|
| EDCF 필리핀 성과공유 세미나 | 7.2 | Grand Hyatt Manila | |
| 아프리카 EDCF 심포지엄 | 23.1 | 플라자호텔 등 | |
| 제28차 개도국 협력 워크숍 | 3.1 | 플라자호텔 | |
| 제29차 개도국 협력 워크숍 | 8.6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
| 캄보디아 EDCF 실무워크숍 | 6.5 | Hayatt Regency Phnom Penh | |
| 계 | 48.5 |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당초 편성된 비목과 다른 임의적인 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비목별 용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수용비를 활용하여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이를 위반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산 집행이 적정한 비목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4) 복권기금

## 가. 개요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설치됨(2004. 4. 시행).

2024년 결산기준 기금운용규모는 수정계획 대비 0.2% 증가한 8조 4,354억원으로, 주요수입은 복권판매수입 7조 2,799억원,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 2,436억원,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회수 5,489억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당첨금, 수수료 등 복권판매사업비 4조 3,241억원, 복권기금지원 사업비 3조 1,203억원, 여유자금 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 2,774억원,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6,377억원 등임.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중 약 34%는 법정배분사업으로서 문화재보호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금·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복권법령에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하였으며,

그밖에 약 64%는 공익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지원 1조 3,522억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4,500억원, 문화예술 진흥지원 2,488억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221억원 등에 사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복권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항 목 | '24계획 | | '24결산 (B) | 증 감 | |
|---|---|---|---|---|---|
| | 당초 | 수정(A) | | (B-A) | % |
| ○ 복권판매수입 | 72,930 | 73,505 | 72,799 | △706 | △1.0 |
| ○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 534 | 534 | 525 | △9 | △1.6 |
| ○ 기타 이자, 불용액 등 | 1,321 | 1,321 | 1,608 | 288 | 21.8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 740 | 740 | 740 | - | - |
| ○ 여유자금 회수 | 1,097 | 1,097 | 1,696 | 598 | 54.5 |
|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예수 | 1,348 | 1,348 | 1,497 | 149 | 11.1 |
|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회수 | 5,610 | 5,610 | 5,489 | △122 | △2.2 |
| 합 계 | 83,580 | 84,156 | 84,354 | 199 | 0.2 |

## [2024회계연도 복권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 항 목 | '24계획 | | '24결산 (B) | 증 감 | |
|---|---|---|---|---|---|
| | 당초 | 수정(A) | | (B-A) | % |
| ○ 복권판매 사업비 | 43,234 | 43,613 | 43,241 | △372 | △0.9 |
| ○ 부담금 등 | 121 | 121 | 101 | △20 | △16.5 |
| ○ 복권기금지원 사업비 | 30,941 | 31,241 | 31,203 | △38 | △0.1 |
| - 법정배분사업 | 10,402 | 10,402 | 10,402 | - | - |
| - 공익사업 | 20,539 | 20,839 | 20,801 | △38 | △0.2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700 | 700 | 700 | - | - |
| ○ 여유자금 운용 | 1,603 | 1,499 | 2,074 | 574 | 38.3 |
|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 6,320 | 6,320 | 6,377 | 58 | 0.9 |
|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 663 | 663 | 659 | △4 | △0.6 |
| 합 계 | 83,580 | 84,156 | 84,354 | 199 | 0.2 |

## 나. 검토의견

### (1) 합리적 예측을 통한 자체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 (복권사업비, 복권위원회)

< 현 황 >

「복권사업비」는 당첨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 발행경비 등 복권판매에 연동되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집행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현액은 4조 3,612억 6,500만원으로, 이 중 4조 3,240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1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복권사업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복권사업비(5243-301) | 4,323,397 | 4,361,265 | - | 4,361,265 | 4,324,099 | - | 37,166 | 4,555,768 |
| - 일반수용비(210-01) | 30 | 30 | - | 30 | 21 | - | 9 | 27 |
| - 임차료(210-07) | - | - | - | - | - | - | - | 1 |
| - 일반용역비(210-14) | 770 | 770 | - | 770 | 688 | - | 82 | 1,666 |
|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 - | 3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4,322,597 | 4,360,465 | - | 4,360,465 | 4,323,390 | - | 37,075 | 4,554,071 |

< 검토의견 >

**자체변경을 통해 복권 발행을 위한 당첨금 및 수수료 등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자체변경 금액보다 크거나 비슷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체변경의 필요성이 없었던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자체변경 시 복권 판매량 및 예상 불용액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212]에 따른 수탁사업자(동행복권) 등에게 복권판매에 따른 사업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 발행경비 등)를 교부하여 복권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복권사업비 사업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용 | 당초 계획액 |
|---|---|---|
| ○ 복권사업비 | | 4,323,397 |
| - 당첨금 | · 복권 예상 판매금액에 각 복권상품별 당첨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 | 3,784,577 |
| - 판매수수료 | · 판매금액의 5.4~10.0% 복권판매점에 지급 | 423,623 |
| - 위탁수수료 | ·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약정수수료율 적용하여 산출 | 81,381 |
| - 기타 발생경비 | · 추첨방송비(온라인복권 및 결합복권 공개추첨 방송)<br>· 인쇄·결합복권의 인쇄비용<br>· 복권감사시스템 운영 등 | 33,816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기획재정부는 일부 복권상품의 발행액을 조정[213]하는 과정에서 2024년 11월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민간위탁사업비(320-02) 378억 6,800만원을 자체변경을 통해 증액하였음.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를 1개월 정도 앞둔 2024년도 말에 자체변경을 통하여 증액을

2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13) 인쇄복권 중 스피또1000(△500억원), 스피또500(△100억원) 발행규모를 줄이고, 스피또2000(+600억원) 발행규모를 늘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온라인복권(로또) 등 판매실적 미달로 2024년 민간위탁사업비는 371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최근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자체변경을 통해 복권 발행을 위한 당첨금 및 수수료 등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자체변경 금액보다 크거나 비슷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복권사업비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 당초 계획액(A) | 자체변경 (B) | 계획현액 (A+B) | 집행액 | 불용액 | 자체변경 일자 (배정일) |
|---|---|---|---|---|---|---|---|
| 2022년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3,788,501 | 71,277 | 3,859,778 | 3,765,371 | 94,407 | '22.9.5. |
| | 합 계 | 3,788,501 | 71,277 | 3,859,778 | 3,765,371 | 94,407 | |
| 2023년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4,003,172 | 40,183 | 4,043,355 | 3,971,718 | 71,636 | '23.12.27. |
| | 합 계 | 4,003,172 | 40,183 | 4,043,355 | 3,971,718 | 71,636 | |
| 2024년 | - 일반수용비(210-01) | 30 | - | 30 | 21 | 9 | '24.11.29. |
| | - 일반용역비(210-14) | 770 | - | 770 | 688 | 82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4,322,597 | 37,868 | 4,360,465 | 4,323,390 | 37,075 | |
| | 합 계 | 4,323,397 | 37,868 | 4,361,265 | 4,324,099 | 37,166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즉, 기획재정부가 잔여기간 복권판매량을 면밀하게 예측하였다면 자체변경을 실시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액하였어도 동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특히,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 자체변경이 연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히 복권판매량을 예측하였다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연말 복권판매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1항[214] 각 호는 기금운용계획액 자체변경 요

21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

건으로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 발생, ② 긴급한 소요 발생, ③ 기존 사업 보완 필요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계획액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자체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215]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복권 판매를 위한 제반 비용에서의 불필요한 불용액을 줄이고 이러한 공익사업에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소외계층 등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복권기금의 목적에 더 부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기금자체변경을 통해 증액하려는 경우, 동 사업 예산의 잔여 집행소요 및 예상 불용액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과거 복권판매 추이를 고려하여 잔여기간 복권판매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2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근로자햇살론의 도입 목적을 감안하여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중 확대 검토 필요(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복권위원회)

< 현 황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근로자햇살론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함.

동 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1,669억 6,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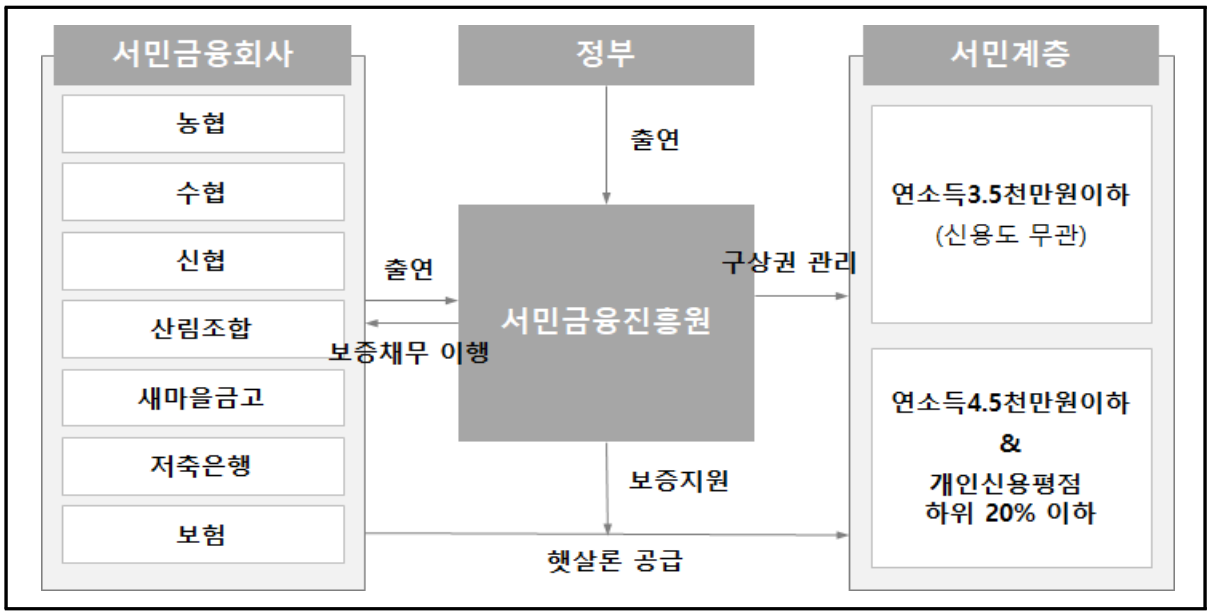
| 세부사업명<br>(-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6346-328) | 166,969 | 166,969 | - | 166,969 | 166,969 | - | - | 165,738 |
| -사업출연금(350-02) | 166,969 | 166,969 | - | 166,969 | 166,969 | - | - | 165,738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근로자햇살론)의 도입 목적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용·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공급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216]에 따라 실시하는 공익사업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자햇살론' 대출상품을 제공하되,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지원(보증비율 90%)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해당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함.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으로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하위 20%인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2024년의 경우 총 2조 8,087억원이 공급되었음.

2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근로자햇살론 개요]

| 구분 | 내용 |
|---|---|
| 개요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자활 도모 |
| 지원대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근로소득자 |
| 지원금액<br>(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br>＊'25년말까지 최대한도 500만원 상향(1,500만원→2,000만원) |
| 대출금리 | 연 11.5% 이내 |
| 취급은행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삼성화재) |
| 상환방식 |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자햇살론 공급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근로자햇살론 | 316,810 | 33,170 | 337,797 | 34,597 | 313,044 | 38,285 | 346,038 | 34,342 | 340,660 | 28,087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최근 5년간 근로자햇살론의 신용등급별 공급금액 비중 추이를 보면, 전체 공급금액 중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신용등급 기준 1~5등급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등급이 낮은 6~10등급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소득구간별 공급금액 비중 추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전체 공급금액 중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 신용등급별 공급금액 현황 ]

(단위 : 억원, %, %p)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차이 (B-A) |
|---|---|---|---|---|---|---|---|---|---|---|---|
| | 금액 | 비중 (A)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B) | |
| 1등급 | 591 | 1.8 | 606 | 1.8 | 1,002 | 2.6 | 1,182 | 3.4 | 1,580 | 5.6 | 3.8 |
| 2등급 | 1,059 | 3.2 | 1,299 | 3.8 | 1,691 | 4.4 | 2,165 | 6.3 | 3,121 | 11.1 | 7.9 |
| 3등급 | 1,217 | 3.7 | 1,385 | 4.0 | 1,718 | 4.5 | 2,192 | 6.4 | 3,794 | 13.5 | 9.8 |
| 4등급 | 1,697 | 5.1 | 2,056 | 5.9 | 2,560 | 6.7 | 3,210 | 9.3 | 4,830 | 17.2 | 12.1 |
| 5등급 | 2,803 | 8.5 | 3,035 | 8.8 | 3,706 | 9.7 | 3,816 | 11.1 | 5,101 | 18.2 | 9.7 |
| **6등급** | **17,185** | **51.8** | **17,075** | **49.4** | **18,168** | **47.5** | **15,881** | **46.2** | **6,905** | **24.6** | **△27.2** |
| **7등급** | **8,047** | **24.3** | **8,286** | **24.0** | **8,680** | **22.7** | **5,580** | **16.2** | **2,721** | **9.7** | **△14.6** |
| **8등급** | **532** | **1.6** | **807** | **2.3** | **725** | **1.9** | **298** | **0.9** | **31** | **0.1** | **△1.5** |
| **9등급** | **35** | **0.1** | **44** | **0.1** | **30** | **0.1** | **17** | **0.0** | **3** | **0.0** | **△0.1** |
| 10등급 | 3 | 0.0 | 3 | 0.0 | 3 | 0.0 | 1 | 0.0 | 0 | 0.0 | - |
| 합계 | 33,170 | 100.0 | 34,597 | 100.0 | 38,285 | 100.0 | 34,342 | 100.0 | 28,087 | 100.0 | - |

※ 해당 신용등급은 일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등급이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체로 설계한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분류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 [ 소득구간별 공급금액 현황 ]

(단위 : 억원, %, %p)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차이 (B-A) |
|---|---|---|---|---|---|---|---|---|---|---|---|
| | 금액 | 비중 (A)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B) | |
| **1천만원 이하** | **677** | **2.0** | **547** | **1.6** | **454** | **1.2** | **463** | **1.3** | **497** | **1.8** | **△0.2** |
| **1~2 천만원** | **5,411** | **16.3** | **4,065** | **11.7** | **3,456** | **9.0** | **3,059** | **8.9** | **2,588** | **9.2** | **△7.1** |
| 2~3 천만원 | 16,236 | 48.9 | 18,227 | 52.7 | 19,853 | 51.9 | 17,719 | 51.6 | 14,181 | 50.5 | 1.6 |
| 3~4 천만원 | 8,583 | 25.9 | 9,076 | 26.2 | 11,424 | 29.8 | 10,491 | 30.5 | 8,733 | 31.1 | 5.2 |
| 4천만원 초과 | 2,264 | 6.8 | 2,683 | 7.8 | 3,099 | 8.1 | 2,610 | 7.6 | 2,088 | 7.4 | 0.6 |
| 합계 | 33,170 | 100.0 | 34,597 | 100.0 | 38,285 | 100.0 | 34,342 | 100.0 | 28,087 | 100.0 |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근로자햇살론의 대출대상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신용·소득의 근로자에게 대출을 확대할 경우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소득 하위 10% 이하 최저신용자 등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신용·소득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대출 상품(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임.

근로자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를 해야하며 햇살론 대출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사고금액의 10%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우량하고 안전한 고·중신용자 위주로 근로자햇살론을 공급할 유인은 있을 것이나,

근로자햇살론의 도입 목적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대출대상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용·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공급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햇살론의 도입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여신공급을 주로 담당하는 대부업권의 전체적인 신용대출 규모가 2020년 7.37조원에서 2024년 4.91조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최근 저성장 기조 및 고물가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되어 1인당 대출잔액이 감소[217]하는 등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정부도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2025.2.28.)」을 발표하여 저신용자 등 취약층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강조한 바도 있는 등 서민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대부업권 대출공급(잔액) 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대출잔액 | 14.53 | 14.64 | 15.87 | 12.51 | 12.33 |
| 신용대출 | 7.37 | 7.03 | 6.96 | 4.70 | 4.91 |
| 담보대출 | 7.17 | 7.61 | 8.90 | 7.82 | 7.42 |

* 각 연도별 연말 기준 금액임.
자료: 금융위원회

217) ○ 신용 하위 20% 신용대출 잔액(조원) : ('22) 85.9, ('23) 84.3, ('24.9월) 78.3
○ '21년말→'24.9월 기간 중 저신용 차주 대출잔액 변동: 1인당 대출잔액 감소율(△4.3%) > 대출잔액 총량 감소율(△3.7%)
(※ 출처: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2025.2.28.)」)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별도의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대출금리 등 조건이 근로자햇살론과 차이가 있으며 공급규모도 근로자햇살론 사업에 비하여 작으므로, 저신용·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타 정책금융상품 운용과 별개로 근로자햇살론 사업의 서민금융지원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금융지원이 절박한 저신용 근로자가 서민정책금융의 지원조차도 받지 못할 경우 결국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기금관리주체로서 복권기금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관리의무가 있는 만큼, 근로자햇살론 사업이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복권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출대상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용·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공급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상품 비교 ]**

| 구분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
| 목적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지원 | 대부업·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 |
| 지원 대상 | 신용점수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신용점수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인 자 | 신용점수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자 중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 대출 한도 | 최대 1,500만원 | 최대 1,400만원 | 최대 1,000만원 (최초 500만원,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가능) |
| 대출 금리 | 연 11.5% 이내 ('25.1분기 기준 6.05~9.57%) (보증료 별도, 최대 2.5%) | 연 15.9%(단일금리) (보증료 포함,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 연 15.9%(단일금리) (보증료 포함,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
| 공급 규모 | -'22년 313,044건, 3.8조원<br>-'23년 346,038건, 3.4조원<br>-'24년 340,660건, 2.8조원 | -'22년 145,423건, 1.4조원<br>-'23년 138,621건, 1.3조원<br>-'24년 129,388건, 1.1조원 | -'22년 34,208건, 0.1조원*<br>-'23년 112,009건, 0.3조원<br>-'24년 70,636건, 0.2조원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022년 9월 출시

자료: 기획재정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

## 5) 외국환평형기금

## 가. 개요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었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에는 외화를 매도해 원화를 매입하고, 환율 하락(원화 절상)시에는 원화를 매도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외국환평형기금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함.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37조 7,731억원 증가한 173조 925억원으로, 수정된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률은 84.4%임.

먼저, 2024회계연도 수입 결산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52조 6,476억원을 예수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10억 미달러(1조 3,874억원) 및 4억 5,000만 호주달러(4,152억원 상당)의 외화를 차입하였으며, 외환건전성부담금은 1,227억원을 징수하였음. 그 밖에 한국투자공사(KIC) 출자 배당금으로 944억원을 수납하였고,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여유자금 예치금 116조 5,364억원을 회수하였으며, 기타재산이자수입 등은 1조 8,889억원이 발생하였음.

[2024회계연도 외국환평형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결산 | 2024년 계획 | | 2024년 결산(B) | B/A | 2025년 계획 |
|---|---|---|---|---|---|---|
| | | 당초 | 수정(A) | | | |
| 합 계 | 137,319,387 | 205,120,149 | 205,120,149 | 173,092,532 | 84.4 | 140,289,389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49,801,850 | 56,647,550 | 56,647,550 | 52,647,550 | 92.9 | 38,066,251 |
| 국공채(외평채) 수입 | 630,826 | 19,690,000 | 19,690,000 | 1,802,647 | 9.2 | 21,656,000 |
| 외환건전성부담금 | 134,378 | 139,952 | 139,952 | 122,725 | 87.7 | 148,927 |
| 정부출자수입(KIC) | 64,067 | 56,720 | 56,720 | 94,383 | 166.4 | 80,000 |
| 여유자금 회수 | 84,730,166 | 125,983,811 | 125,983,811 | 116,536,368 | 92.5 | 78,607,621 |
|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 1,958,100 | 2,602,116 | 2,602,116 | 1,888,859 | 72.6 | 1,730,590 |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지출 결산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금 상환에 94조 6,476억원, 이자 상환에 5조 1,256억원을 집행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원금 상환에 1조 7,954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와 파생거래 이자 등을 더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5,646억원을 집행하였음. 그 밖에 기금 운영에 1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한국은행 등에 여유자금 70조 9,581억원을 예치하였음.

**[2024회계연도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결산 | 2024년 계획 | | 2024년 결산(B) | | 2025년 계획 |
|---|---|---|---|---|---|---|
| | | 당초 | 수정(A) | | B/A | |
| **합 계** | 137,319,387 | 205,120,149 | 205,120,149 | 173,092,532 | 84.4 | 140,289,389 |
| 공자기금예수 원금 상환 | 64,201,850 | 94,647,550 | 94,647,550 | 94,647,550 | 100.0 | 32,926,251 |
| 공자기금예수 이자 상환 | 5,010,986 | 5,918,316 | 5,918,316 | 5,125,620 | 86.6 | 5,013,480 |
| 국공채(외평채) 원금 상환 | 1,333,400 | 1,715,000 | 1,795,383 | 1,795,383 | 100.0 | 19,595,000 |
| 차입금 이자 상환 | 528,476 | 1,165,188 | 1,165,188 | 564,587 | 48.5 | 1,026,196 |
| 기금 운영비 | 1,089 | 1,257 | 1,257 | 1,257 | 100.0 | 1,357 |
| 여유자금 운용 | 66,243,587 | 101,672,838 | 101,592,455 | 70,958,136 | 69.8 | 81,727,105 |

## 나. 검토의견

### (1)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개선 필요 등 (기타이자상환, 국제금융국)

< 현 황 >

「기타이자상환」 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안정조치 수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현액 4,125억 1,400만원 중 2,911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1,213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타이자상환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기타이자상환 (3171-797) | 412,514 | 412,514 | - | 412,514 | 291,167 | - | 121,347 | 370,559 |

동 사업은 전액 차입금 이자(510-03)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외평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기타이자상환」 사업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① 이는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도록 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②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은 이자상환이라는 기타이자상환 사업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③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에 집행될 수 없는 차입금 이자(510-03) 비목으로 지출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자산운용위탁 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고 지출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여유자금 일부에 대한 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며,[218] 한국투자공사는 외평기금으로부터 위탁자산 운용

수수료를 지급받음.

2024년에는 9.95억불을 위탁받아 누적 자산운용 위탁액이 886억불임. 그리고 2024년에 한국투자공사에 지급된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는 1.98억불이며, 최근 10년간 지급된 총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는 16.82억불(약 2.3조원)[219]임.

**[최근 10년 간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 및 위탁수수료 현황]**

| 연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연도별 위탁액 | 달러화 기준 (억불) | 100.0 | 100.0 | 50.0 | 25.7 | 5.0 | 40.0 | 50.0 | - | 4.5 | 9.95 |
| 누적 위탁액 | | 600.4 | 700.4 | 750.4 | 776.2 | 781.2 | 821.2 | 871.2 | 871.2 | 875.6 | 886 |
| 연도별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 달러화 기준 (억불) | 0.96 | 1.04 | 1.29 | 1.41 | 1.73 | 2.09 | 2.74 | 1.61 | 1.97 | 1.98 |
| | 원화 기준 (억원) | 1,084 | 1,201 | 1,455 | 1,554 | 2,015 | 2,427 | 3,162 | 2,072 | 2,600 | 2,739 |

주) 연말 기준 환율
자료: 한국투자공사

①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기금운영비 내 경상운영비 계상범위에 대해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경상운영비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즉, 기금의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영비」 사업[220]에 편성한 후 위탁운용사에 지급하여야 함. 이는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등 사업비 외 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규모 대비 기금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외평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고, 「기타이자상환」 사업에서 지출하고 있음. 이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운용임.

---

218)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여유자금 위탁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 내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9703-972)에서 지출됨
219) 2024년 평균 환율 ‘1,364.38원/달러’ 적용
220) 「기금운영비」 사업 코드: 3577-201
2024년도 「기금운영비」 사업은 계획현액 12억 5,7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음.

[최근 4년 간 기타이자상환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 2021 | 482,897 | 482,897 | - | 482,897 | 315,604 | 65.4 | 65.4 | - | 167,293 |
| 2022 | 363,944 | 372,715 | - | 372,715 | 370,691 | 99.5 | 99.5 | - | 2,024 |
| 2023 | 373,407 | 373,407 | - | 373,407 | 221,930 | 59.4 | 59.4 | - | 151,477 |
| 2024 | 412,514 | 412,514 | - | 412,514 | 291,167 | 70.6 | 70.6 | - | 121,347 |

자료: 기획재정부

이로 인해 「기금운영비」 사업에 위탁자산 운용수수료가 편성되지 않고 결산보고서에도 위탁수수료 지출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평기금의 기금운영비 계획액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워진 문제가 있으며 투명성도 저해되었음.

②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 운용수수료가 지출된 「기타이자상환」 사업은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외환시장 안정조치 수행에 따른 이자 지급'이며 '파생거래지급이자 등'을 위해 편성된 것임.[221]

위탁자산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외평기금)이 자산운용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 자산의 운용을 맡기고 그 운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인 점을 고려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자를 지출하기 위해 편성된 「기타이자상환」 사업에서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 운용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이는 「기타이자상환」 사업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③ 「기타이자상환」 사업은 전액 차입금 이자(510-03)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탁자산 운용수수료 역시 차입금 이자(510-03) 비목으로 지급되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차입금 이자(510-03)는 비금융공기업 차입금 이자, 국공채 이자,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차관이자, 기타 해외채무 이자에 지출할 수 있는 비목임.

221)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업설명자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차입금이자(510-03) 세목 내역]

□ 510-03 차입금이자

1. 비금융공기업 차입금이자
- 비금융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국공채 이자
- 발행한 국공채에 대한 이자 지급

3.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차관이자
-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기타 해외채무이자
-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자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즉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는 차입금 이자(510-03)로 지출될 수 없는 비목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차입금 이자(510-03)로 지급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외평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차입금 이자(510-03)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평기금 여유자금의 한국투자공사 자산위탁에 대한 세부 수수료율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 성과 대비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 등을 국회에서 평가하여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외평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수료율을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은 4.58%로, 운용수익 합계는 939억불이고 한국투자공사의 수수료 수익 합계는 28.47억불임.[222]

222) 기획재정부는 위탁기관별 운용전략 노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익률을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외평기금 및 한국은행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수익]

| 구 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계 |
|---|---|---|---|---|---|---|---|---|
| 운용수익률(%) | | 15.21 | 13.52 | 8.94 | △14.46 | 11.44 | 8.35 | 4.58 |
| 운용수익 | 억원 | 233,876 | 237,184 | 200,350 | △376,388 | 252,722 | 236,670 | 1,380,330 |
| | 억불 | 202 | 218 | 169 | △297 | 196 | 161 | 939 |
| 수수료 수익 | 억원 | 2,640 | 3,218 | 4,037 | 2,707 | 3,235 | 3,485 | 33,704 |
| | 억불 | 2.27 | 2.77 | 3.50 | 2.10 | 2.46 | 2.53 | 28.47 |

주 1) 상기 한국투자공사 위탁 총자산 운용수익률은 한국투자공사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용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후의 수익률
2) 상기 운용수익률 '합계'는 2006년 최초 투자 이후 2024년까지의 연환산 수익률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수수료율이 위탁기관과 한국투자공사간에 체결한 자산위탁계약서에 의거하고 있으며, 수수료율은 위탁기관 간 계약 주요사항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을 비공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외평기금 결산에 대한 국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한국투자공사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대부분의 연도에 걸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향후 기관 운영비에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인건비도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수료 수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2023년을 제외한 매년 당기순이익의 10%~30%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었음.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인건비는 2020년 355억 8,500만원에서 2024년 475억 600만원으로 119억 2,100만원 증가(증가율 33.5%)했고, 2025년도 예산은 이보다 많은 606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임직원 1인당 인건비도 2020년 기준 1억 1,600만원에서 2024년 기준 1억 4,500만원으로 2,900만원 증가(증가율 25%)했음.

[한국투자공사 2020년~2024년 당기순이익 처분현황]

(단위: 백만원)

| 당기순이익 귀속연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당기순이익 처분액 합계 | | 96,650 | 168,023 | 80,083 | 94,383 | 126,476 |
| | 이익준비금 적립<br>(비율) | 9,665<br>(10%) | 16,802<br>(10%) | - | - | - |
| | 임의적립금 적립<br>(비율) | 28,995<br>(30%) | 33,604<br>(20%) | 16,016<br>(20%) | - | 12,647<br>(10%) |
| | 배당<br>(비율) | 57,990<br>(60%) | 117,616<br>(70%) | 64,067<br>(80%) | 94,383<br>(100%) | 113,828<br>(90%) |

주) 정관 제41조 손익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자료: 알리오,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결산보고서

[한국투자공사 2020년~2025년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총 인건비(A) | 35,585 | 35,664 | 27,067 | 51,356 | 47,506 | 60,615<br>(예산 기준) |
| 임직원 수(B) | 306 | 306 | 327 | 317 | 328 | 332<br>(1분기 기준) |
| 임직원 1인당 인건비(A/B) | 116 | 117 | 83 | 162 | 145 | 183 |

자료: 알리오

다만, 수수료율을 대외에 공개하는 경우, 포트폴리오별 세부운용전략 노출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향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국회의 원활한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수수료율을 보고하는 등 국회에 수수료율에 관한 정보를 적정하게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지출계획액을 초과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상환 이후의 사후적인 계획액 자체변경 주의 필요 등 (국공채상환, 국제금융국)

< 현 황 >

「국공채상환」 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임. 2024년 당초 계획액 1조 7,150억원 대비 자체변경으로 803억 8,300만원 증액된 계획현액 1조 7,953억 8,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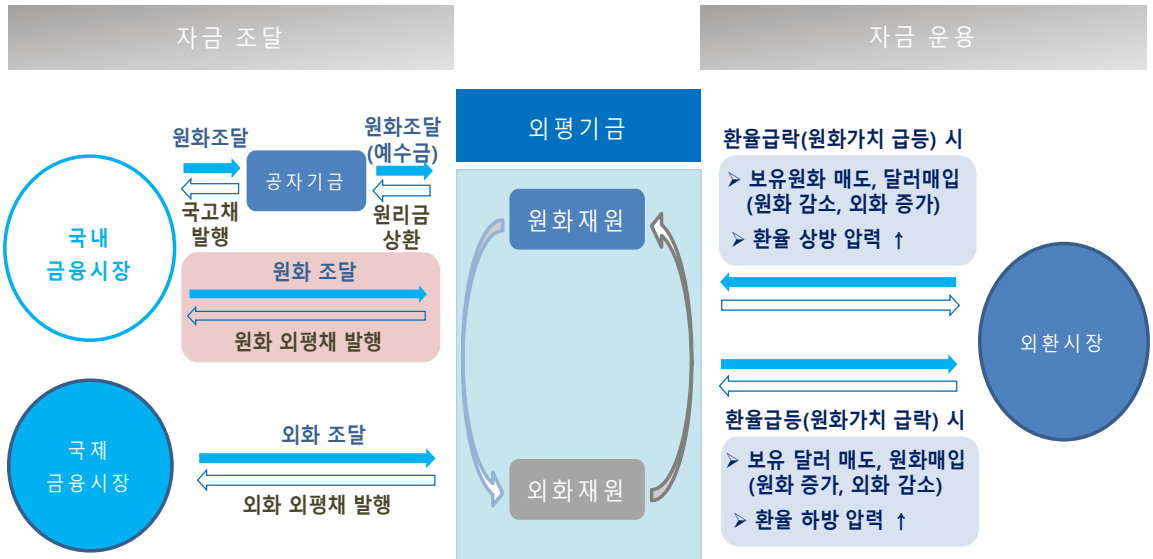
[2024회계연도 국공채상환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국공채상환 (9860-980) | 1,715,000 | 1,795,383 | - | 1,795,383 | 1,795,383 | - | - | 19,595,000 |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필요 자금을 조달함.[223]

[외국환평형기금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23) 2025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외에 외평기금의 자체적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한국은행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224]

최근 외화표시 외평채의 통화별 발행 및 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 1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와 4.5억호주달러 규모의 호주달러화 표시 외평채가 발행되었음. 그리고 5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와 7.5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가 상환되었음.

2024년 말 기준 외화표시 외평채 잔액은 65.3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 14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엔 규모의 엔화 표시 외평채, 4.5억호주달러 규모의 호주달러화 표시 외평채로 구성되어 있음.

**[외평기금의 외화 외평채 발행 및 상환 현황]**

| 연도 | 달러(억불) | | | 유로(억유로) | | | 위안(억위안) | | | 엔(억엔) | | | 호주달러(억호주달러) | | |
|---|---|---|---|---|---|---|---|---|---|---|---|---|---|---|---|
|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 2014 | 10.0 | 25.0 | 44.0 | 7.5 | - | 16.3 | - | - | - | - | - | - | - | - | - |
| 2015 | - | - | 44.0 | - | 5.0 | 11.3 | 30.0 | - | 30.0 | - | - | - | - | - | - |
| 2016 | - | 5.0 | 39.0 | - | - | 11.3 | - | - | 30.0 | - | - | - | - | - | - |
| 2017 | 10.0 | - | 49.0 | - | - | 11.3 | - | - | 30.0 | - | - | - | - | - | - |
| 2018 | 10.0 | - | 59.0 | - | - | 11.3 | - | 30.0 | - | - | - | - | - | - | - |
| 2019 | 15.0 | 15.0 | 59.0 | - | - | 11.3 | - | - | - | - | - | - | - | - | - |
| 2020 | 6.25 | - | 65.3 | 7.0 | - | 18.3 | - | - | - | - | - | - | - | - | - |
| 2021 | 5.0 | - | 70.3 | 7.0 | 3.75 | 21.5 | - | - | - | - | - | - | - | - | - |
| 2022 | - | - | 70.3 | - | - | 21.5 | - | - | - | - | - | - | - | - | - |
| 2023 | - | 10.0 | 60.3 | - | - | 21.5 | - | - | - | 700 | - | 700 | - | - | - |
| 2024 | 10.0 | 5.0 | 65.3 | - | 7.5 | 14.0 | - | - | - | - | - | 700 | 4.5 | - | 4.5 |

주) 잔액은 연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24) **「외국환거래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2024년 6월에 외국환평형기금의 기금운용계획상 「국공채상환」 사업 지출계획액을 초과하여 외화표시 외평채를 상환하고 사후적으로 12월 30일에 지출계획액을 자체변경으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①계획액을 초과하여 기금 자금을 지출한 부적절한 기금 운용이며 ②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 운용이므로,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9년 6월에 발행한 5년 만기인 5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와 2014년 6월에 발행한 10년 만기인 7.5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만기 도래로 2024년 6월에 상환하였음. 이에 따라 외평채 상환을 위해 「국공채상환」 사업에서 1조 7,953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음.

**[2024년 외평기금의 외화표시 외평채 상환 내역]**

| 연번 | 발행시점 | 통화/만기 | 금액 | 만기시점 | 상환시점 | 상환액(원화) |
|---|---|---|---|---|---|---|
| 1 | 2019년 6월 | 달러 / 5년 | 5억불 | 2024년 6월 | 2024년 6월 | 1조 7,953억 8,300만원 |
| 2 | 2014년 6월 | 유로 / 10년 | 7.5억유로 | | |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4년 6월 기준 「국공채상환」 사업의 지출계획액은 국회에서 의결된 당초 계획액인 1조 7,150억원인데,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803억 8,300만원을 초과한 1조 7,953억 8,300만원을 지출한 것임.[225]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30일에 사후적으로 동 사업의 계획액을 자체변경으로 803억 8,300만원 증액하여 지출 규모에 일치시켰음.

이와 같이 지출액이 계획액을 초과한 이유는 「국공채상환」 사업은 외화로 지출되는 것인데, 계획액을 편성할 때 적용한 환율(1,300원/달러, 1,420원/유로)에 비해 외평채를 상환했을 때 환율(1,380.8원/달러, 1,473.31원/유로)이 높았기 때문임.

225) 외화표시 외평채 상환액이 당초 계획액을 초과한 사유는 예산을 편성한 환율 대비 환율상승으로 원화기준 상환액이 늘어났기 때문임

[2024년도 국공채상환 사업 지출 및 계획액 변경 경과]

(단위: 백만원)

| | 회계연도 시작 (2024.1.1.) | | 외평채 상환 (2024. 6월) | | 계획액 자체변경 (2024.12.30.) |
|---|---|---|---|---|---|
| 계획액 | 1,715,000 | → | 1,715,000 | → | 1,795,383 |
| (증감) | | | (-) | | (+80,383) |
| 지출액 | - | | 1,795,383 | | 1,795,383 |
| (증감) | | | (+1,795,383) | | (-) |

[국공채상환 사업 계획변경 세부내역(2024.12.30.)]

(단위: 백만원)

| 변경유형 (변경일자) | 세부사업명 | 비목 | 당초 (A) | 변경 (B) | 증감 (B-A) | 사 유 |
|---|---|---|---|---|---|---|
| 자체변경 ('24.12.30.) | 국공채상환 | 해외차입금 상환 (510-02) | 1,715,000 | 1,795,383 | 80,383 |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 외평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3억 8,300만원을 여유자금운용에서 전용 |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자료 재구성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계획액을 먼저 자체변경으로 증액한 후에 지출을 해야 함.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한 세부사업의 계획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 사후적으로 계획액을 증액하여 지출액에 맞춘 것은 부적절함.

특히,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226]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외화표시 외평채를 상환하여, 「국고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연말에 계획액을 자체변경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70조제6항[227]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금 변경 내역을 제출받은

226)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27)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

시점도 지연된 문제가 있음.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4년 2분기에 「국공채상환」 사업 지출계획액을 변경(증액)하고 변경 내역을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했어야 하나, 4분기에 자체변경을 했기 때문에 2025년 1월 24일에 변경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음. 이 때문에 국회는 2024년 6월 외평채 상환액이 당초 계획액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2025년에서야 인지할 수 있게 되었음.

**둘째, 이러한 초과 지출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은행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아닌 자체 폐쇄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금 집행 시 디브레인을 활용하거나, 디브레인을 자체 폐쇄망과 연결할 필요가 있음.**

외평기금은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연결되지 않은 자체 폐쇄망을 이용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있음.

디브레인을 사용하거나 디브레인을 연계한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계획액을 초과하여 기금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하여, 「국공채상환」 사업에서 계획액을

---

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초과하는 지출을 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그런데 한국은행은 자체 폐쇄망을 통해 외평기금 자금을 집행하고 연말에 결산 시 디브레인에 사후적으로 지출액을 입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과 지출이 발생한 것임. 연말에 사후적으로 디브레인에 지출액이 입력되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연말에서야 초과지출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운용내역은 대외 보안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간 보안을 고려하여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한국은행의 디브레인 연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개발 및 추가 관리 인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한국은행이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자체 폐쇄망을 활용하여 기금을 집행하면 국회에서 승인한 계획액을 초과하는 지출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금의 적정 집행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또한, 디브레인을 통해 외평기금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디브레인을 통해 국회에 기금의 집행현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평기금 집행을 위해 디브레인을 활용하거나, 자체 폐쇄망과 디브레인을 연결하여 향후 계획액을 초과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가. 개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228]

동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며, 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는 2024년 말 누계 기준 40조 5,540억원(231개 사업)이고, 2024년에는 3조 1,399억원(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등 16개 사업)이 신규로 공급되었음.

기금의 2024년 수입실적은 당초 계획액 8,133억원보다 2.9% 감소한 7,899억원으로, 그 내역은 자체수입 429억원, 정부출연금 100억원, 여유자금회수 7,370억원임.

수입실적이 계획보다 감소한 이유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계획 대비 245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229]

---

2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29) 금융시장의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 [2024회계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수입 결산]

(단위: 억원, %)

| 구 분 | 계 획 (A) | 실 적 (B) | 비율(B/A) | 증감 (B - A) |
|---|---|---|---|---|
| ○ 자체수입 | 417 | 429 | 102.9 | 12 |
| - 이자수입 | 157 | 223 | 141.4 | 66 |
| - 대위변제회수 | 31 | - | - | △31 |
| - 보증료수입 | 229 | 206 | 90.1 | △23 |
| ○ 정부내부수입 | 100 | 100 | 100.0 | - |
| - 출연금 | 100 | 100 | 100.0 | - |
| - 기금예탁 원금회수 | - | - | - | - |
| - 기금예탁 이자수입 | - | - | - | - |
| ○ 여유자금회수 | 7,616 | 7,370 | 96.8 | △245 |
| 합 계 | 8,133 | 7,899 | 97.1 | △234 |

기금의 2024년 지출실적 또한 당초 계획액 8,133억원보다 2.9% 감소한 7,899억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비 6억원, 기금운영비 183억원, 여유자금운용 7,710억원임. 지출실적이 계획보다 감소한 이유는 대위변제 미발생으로 사업비가 계획 대비 140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2024회계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지출 결산]

(단위: 억원, %)

| 구 분 | 계 획 (A) | 실 적 (B) | 집행률(B/A) | A - B 이월액 | A - B 불용액 |
|---|---|---|---|---|---|
| ○ 사업비 | 146 | 6 | 4.1 | - | 140 |
| - 대위변제 | 138 | - | 0.0 | - | 138 |
| - 구상권관리비 | 1 | - | 0.0 | - | 1 |
| - 보증료환급 | 7 | 6 | 83.1 | - | 1 |
| ○ 기금운영비 | 183 | 183 | 99.7 | - | 1 |
| - 인건비 | 23 | 23 | 99.0 | - | 1 |
| - 경 비 | 11 | 11 | 96.9 | - | - |
| - 선급법인세 | 149 | 149 | 100.0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 | - | - | - | - |
| ○ 여유자금운용 | 7,804 | 7,710 | 98.8 | - | 93 |
| 계 | 8,133 | 7,899 | 97.1 | - | 234 |

주1) 대위변제: 산업기반신용보증에 의해 민간투자사업 자금을 조달한 사업시행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금이 대신 보증채무를 채권은행에 이행하는 것

주2) 구상권관리비: 보증부실기업·대위변제기업으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7) 기후대응기금

### 가. 개요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230]의 제정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용을 개시한 기금임.

먼저, 2024회계연도 수입 결산에 따르면 수입은 2조 3,058억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100.8%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배출권 매각대금 1,877억원을 수납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1조 97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 전력기금으로부터 2,0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1,083억원을 전입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199억원을 예수하였음. 그 밖에 여유자금 회수 159억원,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및 사업비 반납 등 770억원을 수납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항 목 | | 계획 | | 결산 (B) | 증 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 |
| 자체수입 | 배출권 매각대금 | 2,897 | 2,021 | 1,877 | △144 | △7.1 |
| | 이자수입, 사업비 반납 등 | 123 | 478 | 770 | 292 | 61.1 |
| 정부내부 수입 | 일반회계 전입금 | 11,494 | 10,970 | 10,970 | - |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 3,000 | 3,000 | 3,000 | - |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 | 2,000 | 2,000 | 2,000 | - | - |
| | 복권기금 전입금 | 1083 | 1,083 | 1,083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3,199 | 3,199 | 3,199 | - | - |
| 여유자금 회수 | | 122 | 122 | 159 | 37 | 30.3 |
| 합 계 | | 23,918 | 22,873 | 23,058 | 185 | 0.8 |

2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지출 결산에 따르면 지출은 2조 3,058억원으로 계획대비 100.8%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생태계조성 등 사업비 2조 1,600억원과 기금운영비 2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89억원, 여유자금운용 1,142억원을 집행하였음.

지출내역 중 사업비 집행실적은 온실가스감축 8,764억원, 저탄소생태계조성 6,183억원, 공정한전환 1,879억원 및 탄소중립기반구축 4,77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대비 집행률은 100.2%임.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 항 목 | | 계획 | | 결산 (B) | 증 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 |
| 사업비 | 온실가스감축 | 9,784 | 8,925 | 8,764 | △161 | △1.8 |
| | 저탄소생태계조성 | 6,063 | 5,921 | 6,183 | 262 | 4.4 |
| | 공정한전환 | 1,973 | 1,932 | 1,879 | △53 | △2.7 |
| | 탄소중립기반구축 | 4,782 | 4,779 | 4,774 | △5 | △0.1 |
| | 소 계 | 22,602 | 21,557 | 21,600 | 43 | 0.2 |
| 기금운영비 | | 27 | 27 | 27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 286 | 289 | 289 | - | - |
| 여유자금운용 | | 1,003 | 1,000 | 1,142 | 142 | 14.2 |
| 합 계 | | 23,918 | 22,873 | 23,058 | 185 | 0.8 |

## 나. 검토의견

### (1) 배출권 수입 추계 정확도 제고 및 기금 수입 구조 개선 필요 (기금수입 총괄, 미래전략국)

< 현 황 >

2024년 기후대응기금 수입은 당초 2조 3,918억원 7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자체변경을 통해 2조 2,872억원 7,7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2조 3,058억 3,000만원을 수납하여 변경계획 대비 100.8%가 수납되었음.

기후대응기금 수입의 주요 자체수입원인 기타재산이자외수입(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등)의 2024년 계획현액은 2,021억 2,100만원으로, 이중 1,876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부내부수입인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의 2024년 계획현액은 2조 252억원 4,4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2025 계획액 |
|---|---|---|---|---|---|
| | 계획액 | | 결산(B) | 집행률 (B/A) | |
| | 당초 | 수정(A) | | | |
| 기후대응기금 수입 | 2,391,807 | 2,287,277 | 2,305,830 | 100.8 | 2,621,717 |
| - 토지대여료(51-511) | - | - | 7 | 순증 | - |
| - 정부출자수입(52-521) | - | - | 5,205 | 순증 | 4,242 |
| -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 3,000 | 3,000 | 2,493 | 83.1 | 817 |
|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7,084 | 15,311 | 17,820 | 116.4 | 7,084 |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289,694** | **202,121** | **187,677** | **92.9** | **348,700** |
| - 과태료(56-563) | - | - | 36 | 순증 | - |
| - 위약금(57-572) | - | - | 2 | 순증 | - |
| - 가산금(58-581) | - | - | 0.2 | 순증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2,184 | 29,412 | 47,241 | 160.6 | 2,184 |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 - | - | 4,242 | 순증 | - |
| -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 - | - | 7,063 | 순증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3) | 12,189 | 12,189 | 8,800 | 72.2 | - |
| **- 일반회계전입금(91-911)** | **1,149,413** | **1,097,001** | **1,097,001** | **100.0** | **1,331,187** |
| **- 특별회계전입금(91-912)** | **300,000** | **300,000** | **300,000** | **100.0** | **300,000** |
| **- 기금전입금(91-913)** | **308,333** | **308,333** | **308,333** | **100.0** | **307,593** |
| **- 기금예수금(94-943)** | **319,910** | **319,910** | **319,910** | **100.0** | **319,910** |

< 검토의견 >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연례적으로 과다 추계되고 있으므로 수입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상할당 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금의 외부재원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첫째,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된 2022년 이후부터 연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231]이 과다 추계되어 계획 대비 수입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경제여건 및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실적은 2022년 당초 계획 대비 43.6%에서 2023년 21.3%로 하락하였다가 2024년에는 64.8%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수입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당초 수입 계획액 전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 | | 결산 | |
|---|---|---|---|---|
| | 당초(A) | 수정 | 실적(B) | 당초 계획 대비(B/A) |
| 2022 | 730,584 | 447,639 | 318,826 | 43.6 |
| 2023 | 400,896 | 208,660 | 85,233 | 21.3 |
| 2024 | 289,694 | 202,121 | 187,677 | 64.8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31)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상할당된 배출권을 경매방식으로 공급하여 얻은 수익으로, 낙찰 방식은 유효 응찰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되고,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특히,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계획 대비 미달한 것은 배출권 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단가·수량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원, 천톤)

| 구분 | 2022 | | 2023 | | 2024 | |
|---|---|---|---|---|---|---|
| | 단가 | 수량 | 단가 | 수량 | 단가 | 수량 |
| 계획 | 28,317 | 25,800 | 27,000 | 14,420 | 23,000 | 12,154 |
| 실적 | 23,243 | 13,642 | 10,672 | 7,888 | 10,355 | 17,949 |

* 2023년·2024년 계획 수량은 낙찰률이 반영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계획은 해당연도의 '예상공급량'에 '예상평균낙찰률'과 '예상낙찰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2024년 계획은 배출권 2,060만톤 공급을 목표로 낙찰률을 59%로 하고, 예상낙찰단가를 2022년의 경매 평균 낙찰가(23,243원)를 고려하여 23,00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금액임.

그런데 2024년 계획안 편성 당시인 2023년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낙찰단가는 1만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당시 배출권 거래시장 상황 및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 구분 | 입찰물량(톤) | 낙찰물량(톤) | 낙찰률(%) | 톤당 단가(원) | 수입금(백만원) |
|---|---|---|---|---|---|
| 1월 | 1,000,000 | 643,000 | 64.3% | 12,900 | 8,286 |
| 2월 | 1,000,000 | 642,000 | 64.2% | 12,750 | 8,176 |
| 3월 | 1,000,000 | 694,400 | 69.4% | 12,700 | 8,809 |
| 4월 | 1,000,000 | 806,500 | 80.7% | 13,200 | 10,634 |
| 5월 | - | - | - | - | - |
| 6월 | - | - | - | - | - |
| 7월 | 2,150,000 | 795,000 | 37.0% | 10,350 | 8,219 |
| 8월 | 2,150,000 | 798,000 | 37.1% | 8,100 | 6,457 |
| 9월 | 3,070,000 | 942,000 | 30.7% | 8,100 | 7,622 |
| 10월 | 3,070,000 | 946,200 | 30.8% | 10,500 | 9,924 |
| 11월 | 3,070,000 | 1,166,500 | 38.0% | 10,000 | 11,652 |
| 12월 | 1,500,000 | 454,000 | 30.3% | 9,500 | 4,308 |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 제출 자료

기획재정부는 매년 계획안 편성시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함에 따라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비 등을 감액하고 있어 기금 지출사업의 안정적인 운용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

(단위: 백만원)

| 연도 | 기금운용계획 변경 | | |
|---|---|---|---|
| | 변경일자 | 감액규모 | 변경사유 및 내용 |
| 2022 | 22.12.8 | 193,725 | ○ 배출권 수입이 당초계획을 하회하여 수입·지출규모 조정<br>- 28개 사업비 및 여유자금 감액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조정 |
| 2023 | 23.11.24 | 192,236 | ○ 배출권 수입이 당초계획을 하회하여 계획 변경<br>- 44개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감액, 여유자금 전액삭감 |
| 2024 | 24.12.2 | 104,530 | ○ 배출권매각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라 계획 변경<br>- 24개 사업비 감액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조정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과다 추계되지 않도록 수입계획안 편성시 과년도 경매 평균 낙찰가 외에 향후 경제여건 및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대응기금은 자체수입 저조로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외부재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의 외부재원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2022년 기후대응기금 설치 당시 15.8%였던 자체수입 비중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수입 급감으로 5.1%까지 하락하였다가 2024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수입이 2023년 대비 증가하여 11.4%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기후대응기금 수입 구조]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2 | | 2023 | | 2024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수입 합계 | | 2,046,509 | 100 | 2,226,698 | 100 | 2,305,830 | 100 |
| 자체수입 | **소계** | **323,250** | **15.8** | **113,532** | **5.1** | **264,723** | **11.4** |
| | 배출권수입금 | 318,826 | 15.6 | 85,233 | 3.8 | 187,677 | 8.1 |
| | 기타 | 4,424 | 0.2 | 28,299 | 1.3 | 77,046 | 3.3 |
| 정부내부수입 | **소계** | **1,723,259** | **84.2** | **2,090,498** | **93.9** | **2,025,244** | **87.9** |
| | 일반회계전입금 | 763,154 | 37.3 | 1,222,255 | 54.9 | 1,097,001 | 47.6 |
| | 기금전입금 | 500,000 | 24.4 | 595,646 | 26.8 | 608,333 | 26.4 |
| | 기금예수금 | 460,105 | 22.5 | 272,597 | 12.2 | 319,910 | 13.9 |
| 여유자금 회수 | | - | - | 22,668 | 1.0 | 15,863 | 0.7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 저조는 주요 자체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저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배출권 가격 하락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232]에 따라 5년 단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33]를 고려한 연도별 온실

2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⑤ <생 략>

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비율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기간(2021~2025)의 상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최종할당량보다 적어 배출권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배출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기간 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배출량]**

(단위: 백만톤)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최종할당량 | 592 | 592 | 596 | 586 | 574 |
| 인증 배출량 | 591 | 572 | 550 | 550 | - |

* 최종할당량 = 사전할당량 + 추가할당량 - 할당취소량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낙찰단가]**

(단위: 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
| 낙찰단가 | 26,373 | 23,243 | 10,672 | 10,355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또한,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기간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10%로 이는 배출허용총량 기준 약 4%에 불과하여[234]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고

233)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234) 3차 계획기간에 적용된 유상할당 결정방식은 무상할당 업종을 선정한 후 무상할당 비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10%의 유상할당을 적용하는 방식임. 무상할당 업종은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가 선정되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체가 무상할당 대상으로 지정되는 형태임.

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있어, 이 역시 기후대응기금 자체수입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산업경쟁력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무상할당의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나라 유상할당 비율은 다른 국가[235]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므로 업종별 산업경쟁력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누적된 배출권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오히려 기업의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 투자 유인을 축소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시장에 과도하게 공급된 잉여배출권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누적된 이월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236] 또한, EU CBAM 등 국제적인 탄소 무역장벽에 대비하여 유·무상할당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237]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가장 큰 수입원인 일반회계전입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주요 재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38]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일반회계로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신설 당시부터 일몰이 예정[239]되어 있는 상황이고, 휘

235) **주요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의 유상할당 비율 현황**

| 한국 | EU | 미국 | 캐나다 퀘벡주 |
|---|---|---|---|
| 10%<br><br>※ 할당량 기준 약 4% | 발전: 100%<br>지역난방: 70%<br>열병합발전: 탄소누출 0%<br>탄소비누출 70%<br>('30년까지 100%)<br>항공: 15%<br>산업: 탄소누출 0%<br>('30년까지 48.5%)<br>탄소비누출 70%<br>('30년까지 100%)<br>※할당량 기준 57% | <RGGI(북동부권)><br>발전: 100%<br><br><캘리포니아><br>발전: 100%<br>산업: 0%<br><br>※할당량 기준 62% | 발전: 100%<br>산업: 차등적용(탄소집약도, 무역노출도, 제품생산량 등을 고려) |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36)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2025. 7.

237)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2025. 7.

23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239) 1994년 1월 1일 교통세로 신설될 당시 2003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총 8차례 유효기한이 연장되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임.

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부과하므로 점차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체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 자체수입 부족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는 국가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재검토, 유상할당 비율 확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등 온실가스 배출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240], 추가적인 자체수입원을 발굴하는 등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외부재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40)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기금수입 기반 확충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 구체적 과제들을 「제4차 계획기간('26~'30)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2) 사업비 정산 기간의 지연 부적절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1,095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동 사업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산단 특화 탄소저감’의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사업출연금으로 구성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되고 있음.

[2024회계연도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비목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6131-303) | 109,500 | 109,500 | - | 109,500 | 109,500 | - | - | 113,700 |
| - 사업출연금(350-02) | 109,500 | 109,500 | - | 109,500 | 109,500 | - | - | 113,700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는데에 약 1년이 소요되는 등 정산 절차가 지연되어 국회에서의 결산 심의 시 출연금의 최종단계 실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사업비 정산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년간 산업단지별로 국비 70억원을 지원하되 민간부담금을 10% 이상 매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동 내역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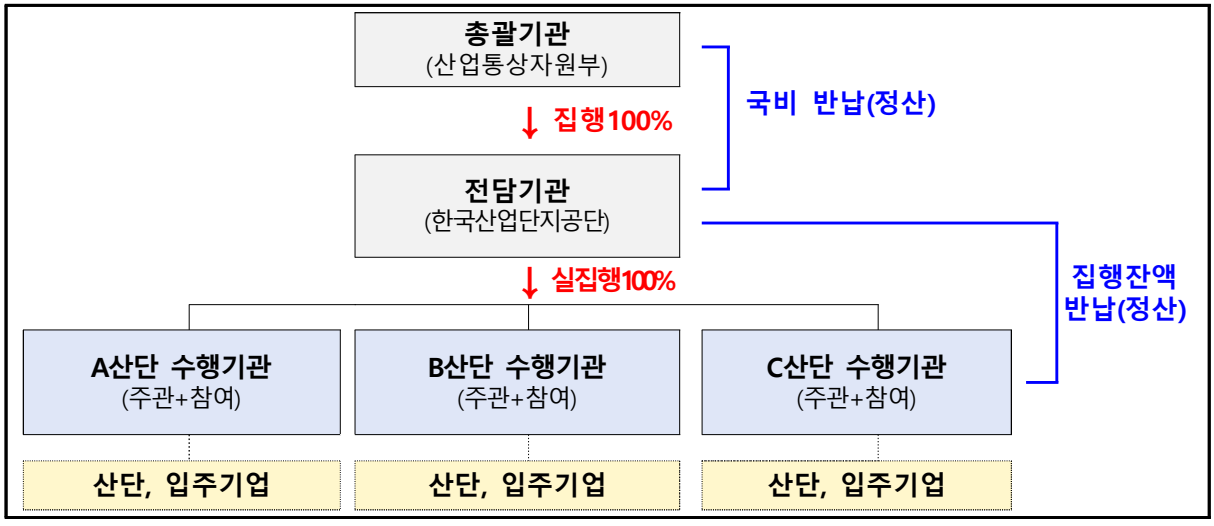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24년 기준 11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총 220억원을 지원하였음.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15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241]를 지원하였음. 동 사업은 산업단지별로 4년간 총 국비 200억원을 지원하되, 지자체와 민간자금이 100억원 이상 매칭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12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하였음.

‘산단 특화 탄소저감’ 내역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23억원으로 국비 180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자 2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이처럼 국비 뿐만 아니라 지방비나 민자와 매칭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비를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컨소시엄에 출연받은 국비를 배부하고, 지방비나 민자 역시 해당 컨소시엄에 교부하여 사업이 집행되는 구조임.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구조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기까지 1년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정산 기간

241) (20년)창원, (21년)반월시화, (22년)구미, (23년)부산·여수·청주·대구·광주·군산·인천, (24년) 울산, 천안, 포항, 대불, (25년) 광양

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매년 연차사업 종료 후 정산을 시작하는데, 내역사업별 정산보고서 초안 작성에 6개월이 소요되며, 정산보고서가 11월에서야 최종 통보되고 12월에 되어서야 국비가 반납되고 있어 사업비 정산 후 집행 잔액이 완료되기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됨.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정산 절차]**

| 일시 | 1월~6월 | 7월~8월 | 9월~10월 | 11월 | 12월 |
|---|---|---|---|---|---|
| **정산 절차** | 내역사업별 정산보고서 초안 작성 | 1차 통보 및 수행기관 이의신청 | 2차 통보 및 특별평가 | 정산보고서 최종 통보 및 사업비 회수 | 국비 반납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이처럼 사업비 정산보고서가 11월에야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5월 말 기준으로 정산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국회 결산 심사 시기인 8월 말 기준으로도 최종단계에서의 실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동 사업의 결산에 대한 심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동 사업은 사업비 정산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이나 발생이자 등 국비 반납이 12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출연과 유사하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42]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보

2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

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일 경우 3개월) 내에 사업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해당 정산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사업비 정산 기간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출연금 중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243]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이 6개월에 걸쳐 정산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확정시까지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정산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국회 결산 시 동 사업의 정산 현황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산을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완료하는 등 정산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

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4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 (3) 협약 미체결 사업을 근거로 한 대규모 전담기관 이월 개선 필요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하여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우리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당초 계획액은 387억 1,000만원이었으나 수정 계획액은 338억 4,400만원이고 수정 계획액 전액 집행되었음.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산업부)」의 내역사업인 「투자지원」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당초 계획액은 330억원이었으나 수정 계획액은 296억 2,900만원이고 수정 계획액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산업부)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산업부 ) (6131-311) | 38,710 | 33,844 | - | 33,844 | 33,844 | - | - | 30,425 |
| **- 투자지원** | **33,000** | **29,629** | **-** | **29,629** | **29,629** | **-** | **-** | **22,000** |
| - 펀드조성 | 3,000 | - | - | - | - | - | - | - |
| - 타당성조사지원 | 2,000 | 3,505 | - | 3,505 | 3,505 | - | - | 7,700 |
| - 기반조성 | 710 | 710 | - | 710 | 710 | - | - | 725 |

< 검토의견 >

**「투자지원」 사업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민간대행비를 전액 교부하고 대규모의 전담기관 이월이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된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산업부)」의 내역사업인 「투자지원」 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필요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자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지원금은 최종 협약이 체결된 후 선금을 최대 70%, 감축설비 완공 시 잔금 3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2024년까지는 KOTRA가 전담기관으로서 '투자지원' 사업을 산업부를 대행하여 수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투자지원' 사업을 산업부로부터 법정민간대행비를 교부받아 수행하고 있음.

**[법정민간대행비 월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교부액 | - | - | 11,600 | - | 15,000 | - | - | - | - | - | - | 7,234 | 33,83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에는 KOTRA와 프로젝트 수행기관 간 1건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총 투자지원금 60억원 가운데 42억원이 프로젝트 수행기관에 지급되었음.

**[2024년 투자지원사업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젝트 명 | 수행기관 | 총 사업비 | 총 지원금 | 2024년 지원금액 |
|---|---|---|---|---|
| E-mobility 배터리 충전 인프라 구축 | ㈜베리워즈 | 14,600 | 6,000 | 4,2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2024년 총 9건의 지원 신청과 8건(지원금액 60억: 2건, 지원금액 30억: 6건)에 대해서 적합 심의·의결이 있었으나 1건(지원금액 60억)만이 최종 선정되어 전담기관과의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민간대행사업비 전액을 교부하고 대규모 이월

을 야기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투자지원」 사업에서는 최종적으로 체결된 협약에 근거하여 투자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를 전액 교부한 것은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부로 판단됨. 또한, 법정민간대행사업은 민간위탁과 달리 행정기관에 권한과 그 책임이 귀속[244]된다는 점에서 비록 전담기관 이월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재정법」 제48조의 이월의 요건[245]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최종 협약 없이 전담기관에 교부하고 이를 이월한 문제가 나타남.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8건의 적합 심의·의결 사업 중 최종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7건의 사업은 투자국의 사업허가서만 제출될 경우 최종협약 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월한 것으로서 적합 심의·의결을 이월의 근거가 되는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최종 협약서에 따라서만 투자지원을 위한 지출이 가능[246]하고 적합 심의·의결은 최종협약에 이르는 중간 과정에 불과하며, 투자국의 사업허가 가능성에 대하여 투자국과 별도 협의 절차 없이 적합 심의·의결을 지출원인행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더욱이, 2025년 7월까지도 7건의 사업에 대해서 최종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된 254억원에 대하여 어떠한 지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민간대행사업비를 교부한 것으로 보임.

---

24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경우 국가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나, 민간대행의 경우에는 국가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게 귀속됨

24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46)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제15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국제감축사업의 수행을 위해 협약서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조건은 전담기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사업비 관리 정산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민간대행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등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부액을 조속히 국고에 반납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도입 시설·설비의 미가동 문제 개선 필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환경부)

< 현 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시설·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현액 806억 9,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이 중 2024년 민간자본보조 계획현액 793억 1,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6131-601) | 90,300 | 80,699 | - | 80,699 | 80,699 | - | - | 81,270 |
| - 민간자본보조 | 88,920 | 79,319 | - | 79,319 | 79,319 | - | - | 80,028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원내용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개선·설치, 컨설팅 비용임. 지원 분야는 ①온실가스 저감·②ICT·③대기오염 저감·④수질오염 저감·⑤폐기물배출 저감 등이고,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됨. 중소기업은 보조율이 60% 이하이고, 중견기업은 보조율이 50% 이하임.

< 검토의견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 다수의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고장 등으로 도입 시설·설비를 가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2020년 11개소, 2021년 30개소, 2022년 58개소, 2023년 93개소, 2024년 98개

소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소·중견기업 290개소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지원하였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연도별 지원 기업 현황]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계 |
|---|---|---|---|---|---|---|
| 기업 지원 실적 | 중소·중견기업 11개소 지원 | 중소·중견기업 30개소 지원 | 중소·중견기업 58개소 지원 | 중소·중견기업 93개소 지원 | 중소·중견기업 98개소 지원 | 중소·중견기업 290개소 지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동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기업 99개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하는 용역(수행기간: 2024년 8월~2025년 2월)을 진행하였음.

그런데 동 용역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시설·설비를 도입한 다수의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고장 등으로 도입 시설·설비를 가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99개인데 그 중 15.2%에 해당하는 15개 기업은 도입 시설·설비 중 전체 또는 일부를 미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미가동 원인은 폐업 및 파산(2개소), 기업 미운영(1개소), 기타(12개소)이었음.

[2020년~2022년 사업 참여기업 도입 시설·설비 가동 현황]

| 구분 | 도입 시설·설비 미가동 기업 (A) | 미가동 사유 | | | 도입 시설·설비 가동 기업 (B) | 총 참여기업 (A+B) |
|---|---|---|---|---|---|---|
| | | 폐업 및 파산 | 기업 미운영 | 기타 | | |
| 기업 수 | 15개소 | 2개소 | 1개소 | 12개소 | 84개소 | 99개소 |
| 비율 | 15.2% | 2.0% | 1.0% | 12.1% | 84.8% | 100.0% |

자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지원' 보고서(2025. 2.)

미가동 원인 중 '기타'는 도입한 설비의 잦은 고장, 설비의 성능 저하, 제품 생산 감소, 행정절차 미완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설비가 고장난 후, 교체·수리가 진행되고 있어 사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도입 시설·설비 미가동 기업의 미가동 사유(2025년 2월 기준)]

| 연번 | 기업명 | 미가동 사유 | |
|---|---|---|---|
| 1 | ㈜금강케미컬 | 폐업 및 파산 | - 2023년 7월 폐업신고 |
| 2 | ㈜한내포티 | | - 파산 |
| 3 | ㈜다온폴리텍 | 기업 미운영 | - 메일·전화 무응답, 현장방문시 미운영.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 4 | (주)케이씨산업 | 기타 | - 분진제거시설 흡입력이 약해져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
| 5 | (주)에스엠테크 | | - 폭설로 인하여 비중분리시설이 붕괴, 2025년 봄 복구 예정 |
| 6 | (주)삼미환경 | | -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조)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지자체의 환경영향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 7 | (주)프로텍 | | - 리포밍 설비의 생산물이 시장성이 떨어져 판매가 되지 않으므로, 현재 생산(가동)을 하지 않음 |
| 8 | (주)우리선테크 | | - 디스미어를 생산감소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 |
| 9 | 한국단조(주) | | - 철강 경기침체로 저녹수시설 및 저녹수열처리시설 가동률 중단 |
| 10 | 오토렉스(주) | | - 현재 재활용하기 위한 분쇄설비가 없어서 재활용을 안하고 있음 |
| 11 | 이앤티(주) | | - 소형충력발전시설이 일부 부품 고장과 풍량이 적은 관계로 미가동 |
| 12 | 훼밀리푸드(주) | | - 설비 고장으로 폐기물 건조화 설비, 태양광 발전시스템 교체·수리 중 |
| 13 | 구미협동식품합명회사 | | - 잦은 고장으로 염수재활용시설 미가동 |
| 14 | 남양화학공업(주) | | - 천연도료원료 부산물 재자원화시설 고장으로 미가동 |
| 15 | (주)아주인더스트리얼 | | - 화재사고로 일부 설비 소실, 복구 진행 중 |

자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지원' 보고서(2025. 2.)

이와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중 다수의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설비를 가동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 공장으로 전환시키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환경부는 지원대상기업과 도입 시설·설비를 선정할 때, 도입 이후 고장 및 경제성 저하 등의 원인으로 인한 미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후 도입 시설·설비의 미가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5)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환경부)

< 현 황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은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계획현액은 120억 2,000만원으로 119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사업은 수열 등 물에너지에 특화된 홍보관을 건립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동 내역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8,000만원으로 전액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6131-620) | 14,999 | 12,020 | - | 12,020 | 11,940 (11,119) | - | 80 | 6,585 |
|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 7,579 | 4,600 | - | 4,600 | 4,600 (4,600) | - | - | 4,823 |
| **-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 **80** | **80** | **-** | **80** | **-** | **-** | **80** | **238** |
| -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 7,340 | 7,340 | - | 7,340 | 7,340 (6,519) | - | - | 1,524 |

< 검토의견 >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사업은 준공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내에 홍보관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사업은 수열 등 물에너지에 특화된 홍보관을 건립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홍보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부지 내에 연면적 573㎡ 규모로 건립 중인데, 당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설계 과정에서 홍보관 입지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2년 11월경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기본 및 실시계획'이 완료되었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4개월 가량 지연되어 2023년 5월에서야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을 2024년 7월까지 준공하여 같은 해 8월부터 홍보관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로 하는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건립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9월 착공하였으며, 홍보관이 개관되는 8월부터 5개월분의 홍보관 위탁관리비를 2024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편성하였음.

그런데 계약 업체가 2024년 3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철골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를 계약 종료일까지 미시행하면서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동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예산 4.5억원을 선투입하기로 결정하고 건축공사(잔여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3월 새로운 업체와의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건축공사를 재개하였음.

이와 같이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한 5개월분의 민간위탁사업비 8,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었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체가 홍보관 기초 타설 후 철골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선

금[247] 임의사용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철근 제작 및 반입을 미진행하여 계약종료일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2호[248]에 따라 2024년 8월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홍보관 건립부터 전시·체험 시설물 제작까지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는 종합홍보관 준공을 완료하고 개관하여 위탁관리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임.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준공 지연으로 인한 관리위탁비 집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계획안에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관리위탁비 12개월분인 민간위탁사업비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에 대해 국회는 사업 진행 상황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249]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2025년도 계획안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획액 | 조정계획액 | 산출내역 |
|---|---|---|---|
| 합계 | 238 | 99 | |
| 인건비 | 143 | 59.5 | · 안내사 2인×59 /12개월* 5개월<br>· 청소·시설관리 1인×25 /12개월 * 5개월 |
| 유지관리비 | 90 | 37.5 | · 전력·수도료 17.1 /12개월 * 5개월<br>· 보험료(화재보험,제3자배상보험 등) 1.2 /12개월 * 5개월<br>· 법정수수료 7.6 /12개월 * 5개월<br>· 수선유지비 34 /12개월 * 5개월<br>· 물품구입비 10.1 /12개월 * 5개월<br>· 광고선전비 20 /12개월 * 5개월 |
| 위탁수수료 | 5 | 2 | · 위탁사업비(인건비+유지관리비)×2% |

자료: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247) 6억 3,000만원(2023.10.6. 지급)

24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49) 환경부는 2025년 8월부터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준공 지연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7개월분의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지 못하면서 당초 정부 제출안으로 확정되었음.

그러나, 환경부가 제출한 사업 수행 상황보고서(2025년 4월 기준)에 따르면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준공 시기가 2025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밝힌 2025년 8월에서 2025년 9월 이후로 더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에도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사업 계획 2억 3,800만원 대부분 또는 전액에 대한 불용이 예상되고 있음.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 사업 수행 상황보고서상 향후 주요 추진계획]**

| 연도 | 분기 | 월 | 추 진 내 역 | 비 고 |
|---|---|---|---|---|
| 2025년 | 2분기 | 4월 | • 홍보관 건립공사(철골 공사) | |
| | | 5월 | • 홍보관 건립공사(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 |
| | | 6월 | • 홍보관 건립공사(철근콘크리트, 지붕층) | |
| 2025년 | 3분기 | 7월 | • 홍보관 건립공사(마감 공사), 설비공사 기가재 설치 | |
| | | 8월 | • 홍보관 건립공사 및 설비공사 준공 | |
| | | 9월 | • 전시시설 기초공사, 체험시설물 제작완료 | |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홍보관 건립부터 전시·체험 시설물 제작까지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연내 종합홍보관을 준공 및 개관하여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 및 사업시행주체인 환경부는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준공을 연내 완료하여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체험 중심의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6)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검토 강화 필요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환경부)

< 현 황 >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은 공공중심의 안정적 수거·선별·처리 인프라 구축 및 폐기물 감량·재활용 참여 홍보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계획현액은 306억 2,100만원으로, 30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의 내역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은 노후한 공공선별장 신·증설 및 자동선별시설 등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192억 4,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6131-622) | 39,786 | 30,621 | - | 30,621 | 30,620 (43,277) | - | 1 | 31,589 |
| -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 12,570 | 11,168 | - | 11,168 | 11,167 (10,793) | - | 1 | 9,144 |
|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 **27,005** | **19,242** | - | **19,242** | **19,242 (32,280)** | - | - | **22,284** |
|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 50 | 50 | - | 50 | 50 (48) | - | - | - |
|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 | 161 | 161 | - | 161 | 161 (156) | - | - | 161 |

< 검토의견 >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집행 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사업 편성 시부터 주민 동의 절차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재이월 가능 사업이라도 장기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후화된 선별장을 신설·증설하고, 자동선별시설과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라인을 도입하는 등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조비율이 30~50%로 차등화[250]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4년에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음.

2021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공공선별장 내 별도 선별라인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251]에 따라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원료인 폐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이행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7년까지 매년 20개소씩(2027년 10개) 총 127개의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을 구축할 예정임.

**[연도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이행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신규 시설수 | 574 | 77 | 97 | 117 | 127 |

자료: 환경부

250)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사·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 지원

25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접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2026년)에서 전국(2030년)으로 확대될 예정.

그런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의 확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내역사업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시행주체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별 실집행 현황(2020~2024년)]**

(단위: 백만원, %)

| 연도 | 부처 | | 사업시행주체 | | | | | | |
|---|---|---|---|---|---|---|---|---|---|
| | 계획액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2020년 | 19,643 | 19,643 | 12.957 | 9,771 | 29,405 | 10,484 | 11,099 | 1,303 | 35.7 |
| 2021년 | 23,534 | 23,534 | 23,534 | 11,099 | 34,633 | 11,796 | 13,331 | 3,540 | 34.1 |
| 2022년 | 28,119 | 28,119 | 28,119 | 13,331 | 41,450 | 21,525 | 19,276 | 783 | 51.9 |
| 2023년 | 42,203 | 42,203 | 42,203 | 19,276 | 61,479 | 18,109 | 42,963 | 407 | 29.5 |
| 2024년 | 19,212 | 19,212 | 19,212 | 42,963 | 62,175 | 32,259 | 25,509 | 4,416 | 51.9 |

자료: 환경부

특히, 2024년의 경우 269억 7,500만원이 당초 계획액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 수입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이 이루어져 77억 6,300만원을 감액한 192억 1,200만원으로 계획액이 수정되었음에도,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024년 집행액은 94억 5,300만으로, 97억 5,900만원은 이월·불용하였음.

또한,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사업시행주체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남 통영시 24.0%, 경남 김해시는 3.7%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24년에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은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가평군 등도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취소하거나 재이월하는 등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4회계연도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 현황]**

| 지자체명 | 신규/계속 | 사업기간(년) | 실집행률(%) | 실집행 부진사유 |
|---|---|---|---|---|
| 경기 용인시 | 계속 | 2019~2026 | 0.4 | 사업취소 결정<br>(국고보조금 및 이자발생액 반납 예정) |
| 경기 가평군 | 계속 | 2023~2025 | 2.1 | 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br>('24.下 설계 완료 등 '25년 정상 추진) |
| 경남 김해시 | 계속 | 2023~2025 | 26.9 | 사업내용 변경(신설→증설)에 따른 지연<br>('25년 정상 추진) |
| 경남 창원시 | 신규 | 2024~2025 | 10.3 | 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br>('24.下 설계 완료, '25년 정상 추진) |

| | | | | |
|---|---|---|---|---|
| 충북 청주시 (2019) | 계속 | 2019~2026 | 3.7 | 주민 반대 및 행정절차 지연 |
| 충북 청주시 (2022) | 계속 | 2022~2026 | 10.7 | 주민 반대 및 행정절차 지연 |
| 충북 충주시 | 계속 | 2023~2025 | 0.0 |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br>(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개('25.2) 등 정상추진) |
| 충남 당진시 | 계속 | 2021~2024 | 20.1 | 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br>('24.下 건설공사 착공, '25년 정상추진) |
| 충남 청양군 | 계속 | 2023~2025 | 0.0 |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br>(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설비 배치 변경 등) |
| 충남 태안 | 계속 | 2020~2028 | 5.1 | 주민 반대 및 행정절차 지연 |
| 강원 강릉시 | 계속 | 2021~2026 | 5.1 |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
| 강원 태백시 | 계속 | 2021~2025 | 1.9 | 부지확보 지연 및 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 |
| 강원 삼척시 | 계속 | 2023~2025 | 4.6 | 행정절차 지연<br>(사업부지 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
| 강원 속초시 | 계속 | 2023~2025 | 0.0 | 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br>('25.上 설계 완료 예정 등 정상추진) |
| 강원 춘천시 | 신규 | 2024~2025 | 11.1 | 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br>('25.1 공사 착공 등 정상추진) |
| 경북 영덕군 | 계속 | 2023~2025 | 3.4 | 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 |
| 경북 청도군 | 계속 | 2023~2024 | 0.0 | 사업취소 결정<br>(국고보조금 및 이자발생액 반납 예정) |
| 전북 전주시 | 계속 | 2020~2025 | 0.0 |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br>(토질조사 및 총사업비 변경절차 '25.上 완료 예정) |
| 전북 진안군 | 계속 | 2020~2025 | 8.6 | 주민 반대 등 행정절차 지연 |

자료: 환경부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 사업은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사업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업 재검토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착공 전까지 도시계획결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2년부터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간 예산 규모를 조정·재배분[252]하고 있고, 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강화(분기별→매월)하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253]하겠다는 입장임.

252) 예산 편성 시 2년 연속 집행률 10% 미만인 사업은 예산 편성 제외, 20~50% 미만 사업은 30~60% 감액 편성 등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3년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의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연내 집행 가능 금액의 교부 등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환경특별회계 사업에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입된 2024년에도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사전예산협의대상에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 지침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 신규사업(신설·증설·대보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사업추진의 사전 준비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정부정책 방향 이행도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예산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라 환경부가 실시한 2024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사전예산협의(사전검토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예산협의 대상이 되는 11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조건부 可'로 사업의 신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53) 전체사업 중 당해연도 준공사업 비율이 전년도 대비 높아 집행률 개선에 기대('24년 30.3% → '25년 52.1%)

[2024년 신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예산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결과(2023.5.22.)]

(단위: 백만원, %)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사전예산 협의결과 | 2024년 예산 | | | 사업추진현황('25.5월 기준) |
|---|---|---|---|---|---|
| | | 예산액 (A) | 실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
| 의성군 | 조건부 可 | 100 | 100 | 100 | 기본 및 실시 설계중 |
| 밀양시 | 조건부 可 | 90 | 90 | 100 | 기본 및 실시 설계중 |
| 포천시 | 조건부 可 | 100 | 100 | 100 | 기본 및 실시 설계중 |
| 광주시 | 조건부 可 | - | - | - | 사업추진 지연으로 2024년 본예산 전액 감액(220백만원) |
| 강진군 | 조건부 可 | 80 | 80 | 100 | 기본 및 실시 설계중 |
| 양평군 | 조건부 可 | 127 | 127 | 100 | 기본 및 실시 설계중 |
| 장흥군 | 조건부 可 | - | - | - | ※ 지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제외 |
| 화순군 | 조건부 可 | - | - | - | ※ 지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제외 |
| 청도군 | 조건부 可 | 70 | 59 | 84.7 | 기본 및 실시 설계중 |
| 경주시 | 조건부 可 | 150 | 150 | 100 | 기본 및 실시 설계중 |
| 함안군 | 조건부 可 | 65 | 65 | 100 | 기본 및 실시 설계중 |

자료: 환경부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 신규사업을 시설의 신설·증설·대보수 사업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예산협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 경상남도 창원시의 실집행률은 10.4%, 강원도 춘천시의 실집행률은 11.1%로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집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결산 내역]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C/A) |
| | 당초 | 수정(A)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C) | | | |
| 경남 창원시 | 900 | 900 | 900 | 900 | - | 900 | 93 | 900 | 93 | 807 | - | 10.4 |
| 강원 춘천시 | 858 | 550 | 550 | 550 | - | 550 | 61 | 550 | 61 | 489 | - | 11.1 |

다음으로, 동 내역사업은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민원으로 인해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므로,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청취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주민 반대,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변경(신설→기존 시설 증설)됨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시행 중 사업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장기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일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2조[254]에 따라 동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그러나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되어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년간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집행이 부진한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설계 등 행정절차 필수 소요기간이 지났음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전면

254)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및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같이 정부는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 등 집행 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사업 편성 시부터 주민 동의 절차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재이월 가능 사업이더라도 장기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7) 저조한 실집행률 개선 및 면밀한 사후관리 필요 (도시생태축복원사업, 환경부)

< 현 황 >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현액 170억 7,700만원 중 167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 중 2024년 자치단체자본보조 계획현액 140억 6,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도시생태축복원사업 (6133-401) | 17,117 | 16,404 | 673 | 17,077 | 16,778 | 279 | 20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 | 14,667 | 14,067 | - | 14,067 | 14,067 | - | - | - |

주) 2025년부터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보조율 79%)를 통해 추진됨.[255]

---

255)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 사업비는 60억원 내외이고, 사업기간은 3년(최대 4년)이며, 1차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2차년도는 인허가·지형 및 기반정비, 3차년도는 식생복원·생물서식공간 등 조성이 추진됨.

## < 검토의견 >

**첫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실집행 부진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지자체의 집행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2024년에 도시생태축복원 사업 교부액의 실집행률(지자체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024년 집행액/2024년 교부액)은 53.9%로 저조한 수준임. 2024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 17개 중 58.8%에 해당되는 10개는 실집행률이 70% 미만임.

지자체의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실집행률(2024년 지자체 집행액/2024년 지자체 예산현액) 역시 72.6%로 저조한 수준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24개 중 50%인 12개 지자체는 실집행률이 70% 미만임.

또한, 2024년에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고 2023년 교부액을 이월받아 집행한 밀양시, 고창군, 대구 달서구, 안산시, 강진군, 구미시, 서울 마포구 등 7개 지자체 중 57.1%에 해당하는 4개 지자체는 전년도 이월액 조차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액 중 일부를 재이월하거나 불용하였음.

---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024년 도시생태축복원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 지자체 | 부처 | | 지자체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실집행률 | |
| | | 당초 | 수정 | 교부액 (A)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B) | 집행액 (C) | 전년도 이월액 제외 집행액 (D) | 이월액 | 불용액 | 교부액 기준 (D/A) | 예산현액 기준 (C/B) |
| 1 | 평택시 | 1,610 | 1,610 | 1,610 | 560 | 2,170 | 2,131 | 1,571 | 39 | 0 | 97.6% | 98.2% |
| 2 | 남원시 | 1,200 | 600 | 600 | 698 | 1,298 | 1,298 | 600 | 0 | 0 | 100.0% | 100.0% |
| 3 | 익산시 | 400 | 400 | 400 | 184 | 584 | 506 | 322 | 78 | 0 | 80.5% | 86.6% |
| 4 | 광양시 | 2,416 | 2,416 | 2,416 | 955 | 3,371 | 2,143 | 1,188 | 1,228 | 0 | 49.2% | 63.6% |
| 5 | 의성군 | 2,500 | 2,500 | 2,500 | 1,709 | 4,209 | 3,016 | 1,307 | 1,193 | 0 | 52.3% | 71.7% |
| 6 | 이천시 | 992 | 992 | 992 | 148 | 1,140 | 1 | 0 | 1,139 | 0 | 0.0% | 0.1% |
| 7 | 안성시 | 750 | 750 | 750 | 45 | 795 | 124 | 79 | 671 | 0 | 10.5% | 15.6% |
| 8 | 부산시 | 720 | 720 | 720 | 55 | 775 | 528 | 473 | 247 | 0 | 65.7% | 68.1% |
| 9 | 함안군 | 535 | 535 | 535 | 150 | 685 | 26 | 0 | 659 | 0 | 0.0% | 3.8% |
| 10 | 광양시 | 574 | 574 | 574 | 198 | 772 | 346 | 148 | 426 | 0 | 25.8% | 44.8% |
| 11 | 서귀포시 | 1,320 | 1,320 | 1,320 | 189 | 1,509 | 1,239 | 1,050 | 270 | 0 | 79.5% | 82.1% |
| 12 | 대구수성구 | 250 | 250 | 250 | 210 | 460 | 0 | 0 | 460 | 0 | 0.0% | 0.0% |
| 13 | 상주시 | 280 | 280 | 280 | 0 | 280 | 280 | 280 | 0 | 0 | 100.0% | 100.0% |
| 14 | 춘천시 | 280 | 280 | 280 | 0 | 280 | 19 | 19 | 261 | 0 | 6.8% | 6.8% |
| 15 | 청주시 | 280 | 280 | 280 | 0 | 280 | 280 | 280 | 0 | 0 | 100.0% | 100.0% |
| 16 | 태안군 | 280 | 280 | 280 | 0 | 280 | 0 | 0 | 280 | 0 | 0.0% | 0.0% |
| 17 | 익산시 | 280 | 280 | 280 | 0 | 280 | 270 | 270 | 10 | 0 | 96.4% | 96.4% |
| 18 | 밀양시 | 0 | 0 | 0 | 2,800 | 2,800 | 2,800 | 0 | 0 | 0 | | 100.0% |
| 19 | 고창군 | 0 | 0 | 0 | 2,691 | 2,691 | 2,691 | 0 | 0 | 0 | | 100.0% |
| 20 | 대구달서구 | 0 | 0 | 0 | 1,685 | 1,685 | 852 | 0 | 0 | 833 | | 50.6% |
| 21 | 안산시 | 0 | 0 | 0 | 1,731 | 1,731 | 1,594 | 0 | 0 | 137 | | 92.1% |
| 22 | 강진군 | 0 | 0 | 0 | 740 | 740 | 740 | 0 | 0 | 0 | | 100.0% |
| 23 | 구미시 | 0 | 0 | 0 | 1,024 | 1,024 | 558 | 0 | 233 | 233 | | 54.5% |
| 24 | 서울마포구 | 0 | 0 | 0 | 1,507 | 1,507 | 942 | 0 | 565 | 0 | | 62.5% |
| 합계 | | 14,667 | 14,067 | 14,067 | 17,279 | 31,346 | 22,384 | 7,587 | 7,759 | 1,203 | 53.9% | 72.6%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지자체별 실집행 부진 사유를 찾아보면 행정절차에 따른 이월이 주로 발생하고 있음. 교부액 기준 실집행률이 0%인 이천시는 사유지 매수 및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 기술검토 등) 지연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실집행이 부진했고, 함안군도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 기술검토 등) 지연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실집행이 부진했음.

**[2024년 도시생태축복원사업 실집행 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 연번 | 지자체 | 교부액 | 실집행률 | | 실집행 부진 사유 |
|---|---|---|---|---|---|
| | | | 교부액 기준 | 예산현액 기준 | |
| 1 | 광양시 | 2,416 | 49.2% | 63.6% | 2차분 공사('24.10.~'25.8.) 잔금 및 '25년도분 노무비 이월 |
| 2 | 의성군 | 2,500 | 52.3% | 71.7%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착공 지연 |
| **3** | **이천시** | **992** | **0.0%** | **0.1%** | **사유지 매수 및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 기술검토 등) 지연에 따른 설계 지연** |
| 4 | 안성시 | 750 | 10.5% | 15.6% | 설계업체 부도 및 행정절차 지연(공공디자인심의 등)에 따른 착공 지연 |
| 5 | 부산시 | 720 | 65.7% | 68.1% | 행정절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
| **6** | **함안군** | **535** | **0.0%** | **3.8%** |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 기술검토 등) 지연에 따른 설계 지연** |
| 7 | 광양시 | 574 | 25.8% | 44.8% | 설계용역 12월 준공 및 행정절차(개발행위 허가 등) 진행에 따른 착공 지연 |
| **8** | **대구 수성구** | **250** | **0.0%** | **0.0%** | **토지소유자 매수협의 및 행정절차(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 지연에 따른 설계 지연** |
| 9 | 춘천시 | 280 | 6.8% | 6.8% | 행정절차(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 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 |
| **10** | **태안군** | **280** | **0.0%** | **0.0%** | **주민 및 관계기관(부서) 의견 수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연('24.12 준공)으로 실시설계 추진 지연** |
| 11 | 대구 달서구 | 0 | | 50.6% | 기술검토 자문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입찰 금액 감소로 공사비 절감(8.3억) |
| 12 | 구미시 | 0 | | 54.5% | 법정보호종(표범장지뱀) 포획·이주(5~10월) 기간 소요 및 동절기 동면에 따른 공사중지로 공사비 이월 |
| 13 | 서울 마포구 | 0 | | 62.5% | 사전 행정절차(건축심의, 기술검토 심의 등) 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동 사업의 실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을 채택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 일괄 교부하던 보조금을 ’24년부터는 집행실적 및 집행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교부중’이라며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 시정요구명 | (82) 보조금 적정 규모 교부 등 사업 관리철저 필요 |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 [지적사항]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환경부는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 교부함<br><br>○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시정요구 유 형 | 제도개선 |
| 조치결과 | ○ 그간 일괄 교부하던 보조금을 ’24년부터는 집행실적 및 집행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교부중<br>- 또한 매월 집행실적 제출·분석, 집행점검회의(年 2회) 등 사업관리도 강화<br><br>○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
| 조치상황 (’25.4.30) | 조치완료 |

자료: 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그러나 동 사업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실집행 부진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집행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 3개 모두 제출기한까지 사후관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환경부는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원된 사업지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해당기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란요인의 제거, 적용된 공법 및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업 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사후관리는 모니터링,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는 사후관리 기간(최소 5년)동안 매년 제출해야 하며 복원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간의 사후관리(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이후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종료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256]

그리고 환경부는 제출된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를 분석·평가하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방향성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함.

그런데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곡성군, 청주시, 대전시 등 3개 지자체 모두 제출기한까지 사후관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청주시는 제출기한이 2025년 2월인데, 3개월 늦은 2025년 5월에 제출하였음. 곡성군은 제출기한이 2025년 1월인데, 2025년 5월 말 기준 제출되지 않았고 작성 중에 있음. 대전시도 2024년 2월까지 사후관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후관리결과보고서를 위한 시 예산조차 확보가 안 된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후관리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실시할 수 있는 사후평가를 아직 못하고 있음.

**[도시생태축복원사업 사후관리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 지자체 | 사업비 | 사업기간 | 사후관리결과보고서 | | 사후평가 |
|---|---|---|---|---|---|---|
| | | | | 기한 | 제출실적 | |
| 1 | 곡성군 | 8,000 | '20.1.<br>~'23.11. | '25.1. | 작성 중<br>- 기간 : '24.7. ~ '25.6.<br>- 보고서 제출 : '25.7. 예정 |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평가 예정 |
| 2 | 청주시 | 6,725 | '21.1.<br>~'23.12. | '25.2. | '25.5. 제출 | 결과보고서 평가 예정 |
| 3 | 대전시 | 5,602 | '21.1.<br>~'23.12. | '25.2. | 미제출<br>- '24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25년 본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평가 예정 |

주) 2025년 5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지자체의 사후관리결과보고서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으면 도시생태축복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하기 곤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56) 예를 들어, 10월 사업종료 시 익년 12월까지 제출하고, 이후 사후관리 기간 종료 시까지 매년 12월까지 제출해야 함

## (8)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및 면밀한 수요조사 부족으로 인한 예산액 전액 불용 부적절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산업통상자원부)

### < 현 황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257]를 지정하고, 특구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24억 2,200만원이나 전액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6331-410) | 2,422 | 2,422 | - | 2,422 | 0 | - | 2,422 | - |
| -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 | 586 | 586 | - | 586 | 0 | - | 586 | - |
| - 특구산업전환 지원 | 1,836 | 1,836 | - | 1,836 | 0 | - | 1,836 | - |

자료: 기획재정부

### < 검토의견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 전액 불용된 문제가 있고, 2023년에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기집행된 예산 역시 2024년에**

25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센터가 미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인 것으로 밝혀진 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특구산업전환 지원’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4년 해당 예산들은 전액 불용되었음.

기획재정부 및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석탄발전 폐지 등에 따른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실제 2025년 6월말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총 14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 법안명 | 대표발의 | 발의일자 |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 어기구 | 24.7.17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장동혁 | 24.7.29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성일종 | 24.8.1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허종식 | 24.9.9 |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황명선 | 24.9.24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김원이 | 24.9.30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이재관 | 24.11.6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 김소희 | 24.11.8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임이자 | 24.11.11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박해철 | 24.11.22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허성무 | 25.1.15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천호 | 25.1.23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 관한 특별법안 | 이철규 | 25.4.8 |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박지혜 | 25.5.2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이처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법률 제정 여부 및 내용이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및 산업부는 해당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 및 산업부는 2024년 동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특구대상지를 대상으로 특구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당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당시 특구대상지는 석탄광업이나 화력발전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정유 등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영향이 큰 7개 산업군으로, 동 예산안이 반드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된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의결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수요조사 결과 특구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258]되는 17개 지역 중 2개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기획재정부 및 산업부는 해당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24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된 문제가 있음.

한편, 동 사업은 2024년에는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달리 2023년에는 4억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위원회 운영 및 센터 운영비 등으로 2.5억원이 집행되었고, '탄소중립 취약지역 지원제도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억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 및 2024년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2023(신규) | 1,600 | 400 | - | 400 | 400 | - | - |
| 2024 | 2,422 | 2,422 | - | 2,422 | - | - | 2,422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4년 특구 지정 신청 지역이 한 군데도 없음에 따라 2024년의 경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도 전액 불용된 바, 이는 2023년에 기집행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비 및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불필요한 집행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음.

258)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고시(안)의 지정기준 가안을 토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고시(안)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아 특구 지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음

이처럼 동 사업은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면밀하지 못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문제가 있으며, 2023년에 기구축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가 2024년에는 운영 필요성이 없어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2023년에 기집행된 예산 역시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확인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산업부는 추후 동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9)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개선 필요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지원, 환경부)

< 현 황 >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은 저탄소생활과 소비생활을 연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소 생산·녹색생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자동차 분야 운영」,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 운영」, 「그린카드 제도 운영」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계획현액은 310억 9,000만원으로 309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8,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300만원은 불용하였음.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지원」의 내역사업 중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자동차 분야 운영」은 가정·상업시설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 및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현액은 142억 5,100만원으로, 14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8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계획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 | |
|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지원(6333-301) | 31,090 | 31,090 | 201 | 31,291 | 31,070 (29,468)) | 31,090 | 30,903 (29,301) | 88 | 133 | 31,092 |
|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자동차 분야 운영** | **14,251** | **14,251** | **-** | **14,251** | **14,213 (12,611)** | **14,251** | **14,213 (12,611)** | **-** | **38** | **14,251** |
|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 운영 | 15,962 | 15,962 | - | 15,962 | 15,962 | 15,962 | 15,962 | - | - | 15,962 |
| - 그린카드 제도 운영 | 377 | 377 | - | 377 | 359 | 377 | 359 | - | 18 | 379 |
| - 2050 탄소중립 이행 | 495 | 495 | 201 | 696 | 532 | 495 | 365 | 88 | 76 | 495 |

< 검토의견 >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 오류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국민 참여 유인 제고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 검증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는 가정(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의 2024년 계획액은 105억 4,800만원으로, 지자체 보조(50%)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약 230만 가구가 해당 분야에 참여하고 있음. 참여대상은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소상공인)로, 과거 2년간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참여자가 에너지 유형별로 5% 이상을 감축하였을 경우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로 개인 10만원, 상업시설 최대 40만원까지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259]하고 있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지급 기준]**

(단위: 포인트(p))

| 구분 | 감축율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
|---|---|---|---|---|
| 감축 인센티브 | 5% ~ 10% | 5,000 | 750 | 3,000 |
| | 10% ~ 15% | 10,000 | 1,500 | 6,000 |
| | 15% 이상 | 15,000 | 2,000 | 8,000 |
| 유지 인센티브 | 0% ~ 5% | 450 | 450 | 1,800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의 사업 절차를 살펴보면, 참여자가 회원 가입 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참여자의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정산하고, 운영기관(24년 당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에너지 정산 총괄 및 인센티브를 확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함.

259) 인센티브의 종류: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의 2024년 계획액은 18억 2,400만원으로, 지자체 보조(50%)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인 1대, 총 7만 5,000대 규모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개인 10만원까지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260]하고 있음.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 기준]**

|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 | | |
|---|---|---|---|---|---|---|
| 주행거리 | 감축율(%) | 0초과~10미만 | 10이상~1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 | 감축량(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의 사업 절차를 살펴보면, 참여자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매년 2~3월 경) 후 차량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고 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10월 말)하면,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확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함.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자동차 분야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중 실집행률이 높지 않은 사례(세종 79%, 전남 77%, 경북 76% 충북 72%, 충남 72%)가 확인되었는데, 환경부는 참여자들이 신청 당시 직접 입력한 주소가 변동되었으나 개인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사 등으로 주소지 정보가 변경됨에 따른 산출 근거 정보(전기, 수도, 가스 연계 고객번호 등)의 현행화 미추진 시 사용량 수집 불가로 포인트 정산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웠다는 입장임.

260) 인센티브의 종류: 현금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자동차 분야 사업시행주체별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 | | | | | | | | |
|---|---|---|---|---|---|---|---|---|---|
| | 예산 | | | 실집행 | | | 실집행률 | | |
| | 에너지 | 자동차 | | 에너지 | 자동차 | | 에너지 | 자동차 | |
| 서울 | 300 | - | 300 | 300 | - | 300 | 100.0 | - | 100 |
| 부산 | 583 | 73 | 656 | 558 | 70 | 628 | 95.7 | 95.9 | 96 |
| 대구 | 576 | 125 | 701 | 482 | 110 | 592 | 83.7 | 88.0 | 84 |
| 인천 | 580 | 85 | 665 | 556 | 76 | 632 | 95.9 | 89.4 | 95 |
| 광주 | 704 | 75 | 779 | 667 | 68 | 735 | 94.7 | 90.7 | 94 |
| 대전 | 574 | 124 | 698 | 512 | 102 | 614 | 89.2 | 82.3 | 88 |
| 울산 | 377 | 84 | 461 | 350 | 71 | 412 | 92.8 | 84.5 | 89 |
| 세종 | 51 | 34 | 85 | 37 | 30 | 67 | 72.5 | 88.2 | 79 |
| 경기 | 1,224 | 355 | 1,579 | 1,160 | 278 | 1,438 | 94.8 | 78.3 | 91 |
| 강원 | 274 | 61 | 335 | 217 | 45 | 261 | 79.2 | 73.8 | 78 |
| 충북 | 408 | 80 | 488 | 289 | 63 | 352 | 70.8 | 78.8 | 72 |
| 충남 | 360 | 72 | 432 | 261 | 48 | 309 | 72.5 | 66.7 | 72 |
| 전북 | 1,108 | 74 | 1,182 | 967 | 61 | 1,028 | 87.3 | 82.4 | 87 |
| 전남 | 846 | 74 | 920 | 654 | 56 | 710 | 77.3 | 75.7 | 77 |
| 경북 | 770 | 230 | 1,000 | 642 | 118 | 762 | 83.4 | 51.3 | 76 |
| 경남 | 1,323 | 160 | 1,483 | 1,240 | 137 | 1,378 | 93.7 | 85.6 | 93 |
| 제주 | 490 | 80 | 570 | 437 | 70 | 521 | 89.2 | 87.5 | 91 |
| 합계 | 10,548 | 1,786 | 12,334 | 9,329 | 1,403 | 10,739 | 88.4 | 76.9 | 87.1 |

자료: 환경부

물론, 제도 참여자가 에너지 및 차량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한 후 이에 따른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만큼, 동 내역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나,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자동차 분야의 인센티브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제도 참여자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입력[261]하도록

261) 에너지 분야는 최초 회원 가입 시(2~3월 경) 계좌번호 입력하며, 자동차 분야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 달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숫자 오기 등으로 참여자 명의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실시간 계좌 검증의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참여자가 등록 단계에서 계좌번호 오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약 3,500여 가구에 대해 계좌 오류로 인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였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참여자가 계좌 정보를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약 1일 후 운영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예금주 및 계좌 오류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계좌 오류가 확인된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참여자에게 계좌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였다는 입장임.

또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가입 시 유효한 계좌였어도 참여자가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거래 중지 계좌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262] 하였는데,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참여자의 정보 오류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현행화를 위한 문자 발송·제도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임.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대국민 참여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음에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시점에서 절차 간소화 등을 사유로 실시간 계좌 검증을 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계좌 등록 당시 실시간 계좌 검증이 가능하였다면 참여자가 계좌정보 입력 오류를 바로 인지하여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사후 검증 후 계좌 정보 수정 안내에 따른 행정적·금전적 비용(문자발송 비용 건당 20~30원)을 일정 수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계좌에 대한 실시간 검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계좌 정보 오류인 참여자 명단을 지자체로 보내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 수정을 위한 안내를 하는 데에는 절차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후 검증을 담당하는 민간운영기관에서 계좌 수정 안내를 일괄하여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결정(10월 경)되는 경우 참여자가 계좌번호 입력

262) 에너지 분야는 2009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초기 가입 참여자의 경우 계좌 변동 사례가 다수 확인됨.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자동차 분야 운영’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2024년에 18억 7,900만원을 계획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을 위탁하였음.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서 동 내역사업의 2024년 법정민간대행사업비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모두 인센티브 미지급 사유 중 하나로 계좌번호 오기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5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실시간 계좌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정기적인 계좌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정부는 2020년 12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탄소 감축을 위한 대국민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대국민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인센티브 지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좌 검증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국민 참여 유인 제고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좌 검증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0)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한 사업비 지급 비목 변경 필요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청정수소 인증 기반구축사업」은 청정수소 인증제의 예비·시범인증 수행을 통해 기업들의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저탄소 수소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을 활성화 하는 사업임. 2024년 계획액은 22억 7,5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2025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 (6433-511) | 2,275 | 2,275 | - | 2,275 | 2,275 | - | - | 4,106 |
| - 민간경상보조(320-01) | 2,275 | 2,275 | - | 2,275 | 2,275 | - | - | 4,106 |

< 검토의견 >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업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에 해당함.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급 비목을 민간경상보조금(320-01)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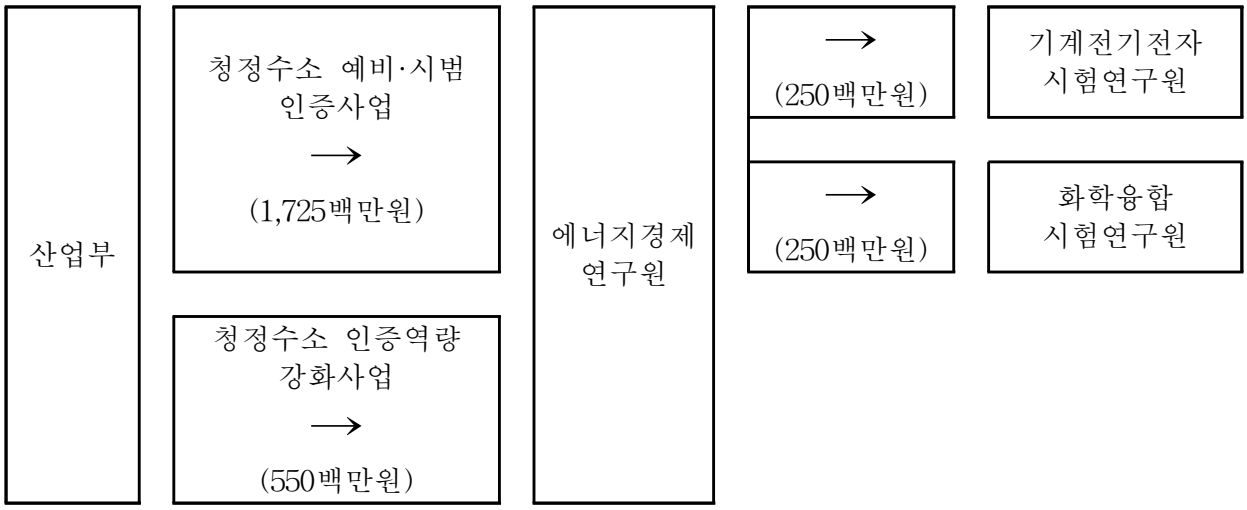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은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로 규정[263]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청정수소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

26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다.

록 규정함[264].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선정됨.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은 '청정수소 예비·시범 인증사업'과 '청정수소 인증역량 강화사업'의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소법」에 따른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청정수소 예비·시범 인증사업'에 17억 2,500만원과 '청정수소 인증역량 강화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각각 교부 받고 있으며, '청정수소 예비·시범 인증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5억은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각각 2억 5,000만원씩 재교부하고 있음.

**[청정수소인증기반 구축사업 추진체계]**




26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3.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의 운영·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함[265].

다만, 청정수소인증에 관한 업무는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이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이 청정수소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유사한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사업 중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사업 운영’은 당초 민간경상보조(320-01)와 민간자본보조(320-07) 비목으로 사업비가 지급되었으나, 동 사업은 국가가 수행해야하는 사무이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민간위탁비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2025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320-02) 비목을 통해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부터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수수료 산정 등 민간위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겠음.

2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청 소관

# 가. 결산 개요

## (1) 세입 결산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은 예산(3,640억 7,400만원) 대비 27억 2,400만원(7.5%) 초과 수납된 3,667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800만원(△5.3%)이 감소하였음.

주요 감소 사유는 국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하는 가산금 수입이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11.8%)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관유물대여료 4,800만원,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804억 3,9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700만원, 가산금 2,414억 1,3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447억 9,600만원, 잡수입 6,100만원, 고정자산매각대 2,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결산(A) | 2024년 | | | 증감 (B-A) | 증감율 (B-A)/A |
|---|---|---|---|---|---|---|
| | | 예산액 | | 결산(B) | | |
| | | 본예산 | 추경 | | | |
| ○ 일반회계 | 3,872 | 3,641 | 3,641 | 3,668 | △204 | △5.3 |
| -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벌금·과태료 등) | 3,868 | 3,639 | 3,639 | 3,667 | △201 | △5.2 |
| - 기타 (재산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등) | 4 | 2 | 2 | 1 | △3 | △75.0 |
| 합 계 | 3,872 | 3,641 | 3,641 | 3,668 | △204 | △5.3 |

자료: 국세청

## (2) 세출 결산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조 9,512억 4,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조 9,512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9,346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의 집행률을 보임.

2024년도 이용액(移用額)은 126억원으로 납세고지서 등 발송에 88억원, 조사활동지원에 15억원, 확정채무 지급에 11억원, 기타 부족분에 12억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액(轉用額)은 38억원으로 지방청·상담센터 기본경비 공공요금에 20억원, 행정지원인력 운영에 5억원, 기타 부족분에 13억원을 전용하였음.

2024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전년 대비 143억원 감소한 165억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28억원, 예산절감 24억원, 집행 잔액 113억원임.

202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프로그램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과세기반확충 135억 5,500만원, 탈세대응강화 1,324억 3,200만원, 체납·징수관리 744억 7,200만원,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189억 1,600만원, 국세행정지원 1조 6,750억 3,700만원, 책임운영기관 운영 202억 6,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결산(A) | 2024년 | | | 증감 (B-A) | 증감율 (B-A)/A |
|---|---|---|---|---|---|---|
| | | 예산액 | | 결산(B) | | |
| | | 본예산 | 추경 | | | |
| ○ 인건비 | 13,098 | 13,613 | 13,613 | 13,477 | 379 | 2.9 |
| ○ 기본경비 | 1,378 | 1,384 | 1,384 | 1,393 | 15 | 1.1 |
| ○ 사업비 | 4,459 | 4,515 | 4,515 | 4,477 | 18 | 0.4 |
| 합 계 | 18,935 | 19,512 | 19,512 | 19,347 | 412 | 2.2 |

자료: 국세청

##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수납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총 계 | 492,821 | 387,206 | 364,074 | 364,074 | 366,798 | 100.7 | 296,420 |
| **11 재산수입** | **14** | **24** | **80** | **80** | **48** | **60.0** | **74** |
| 51 관유물대여료 | 14 | 24 | 80 | 80 | 48 | 60.0 | 74 |
| 511 토지대여료 | 7 | 7 | 10 | 10 | 10 | 100.0 | 12 |
| 512 건물대여료 | 7 | 17 | 70 | 70 | 38 | 54.3 | 62 |
| **12 경상이전수입** | **491,715** | **386,757** | **363,924** | **363,924** | **366,665** | **100.8** | **296,271** |
|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 93,116 | 79,441 | 92,258 | 92,258 | 80,439 | 87.2 | 89,938 |
| 561 벌금및과료 | 62,376 | 46,463 | 57,546 | 57,546 | 47,664 | 82.8 | 59,230 |
| 563 과태료 | 31,037 | 33,351 | 34,692 | 34,692 | 33,034 | 95.2 | 30,669 |
| 564 징계부가금 | 2 | 6 | 20 | 20 | 6 | 30.0 | 39 |
| 565 과징금 | △299 | △379 | - | - | △265 | - | - |
| 57 변상금및위약금 | 13 | 25 | 3 | 3 | 17 | 566.7 | 5 |
| 571 변상금 | 9 | 12 | 3 | 3 | 17 | 566.7 | 5 |
| 572 위약금 | 4 | 13 | - | - | - | - | - |
| 58 가산금 | 364,862 | 273,762 | 243,567 | 243,567 | 241,413 | 99.1 | 174,150 |
| 581 가산금 | 364,862 | 273,762 | 243,567 | 243,567 | 241,413 | 99.1 | 174,150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33,724 | 33,529 | 28,096 | 28,096 | 44,796 | 159.4 | 32,178 |
|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 33,724 | 33,529 | 28,096 | 28,096 | 44,796 | 159.4 | 32,178 |
|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47** | **65** | **20** | **20** | **61** | **305.0** | **25** |
| 69 잡수입 | 47 | 65 | 20 | 20 | 61 | 305.0 | 25 |
| 691기타잡수입 | 47 | 65 | 20 | 20 | 61 | 305.0 | 25 |
| **14 수입대체경비수입** | **997** | **-** | **-** | **-** | **-** | **-** | **-** |
| 69 잡수입 | 997 | - | - | - | - | - | - |
| 691 기타잡수입 | 997 | - | - | - | - | - | - |
| **15 관유물매각대** | **48** | **360** | **50** | **50** | **24** | **48.0** | **50** |
| 71 고정자산매각대 | 48 | 53 | 50 | 50 | 24 | 48.0 | 50 |
|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48 | 53 | 50 | 50 | 24 | 48.0 | 50 |
|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307 | - | - | - | - | - |
| 723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307 | - | - | - | - | - |

## 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총 계 | 1,900,294 | 1,893,570 | 1,951,242 | 1,951,242 | 1,934,676 | 99.2 | 2,004,000 |
| 1100 과세기반확충 프로그램 계 | 13,463 | 14,102 | 13,809 | 13,809 | 13,555 | 98.2 | 18,546 |
| 113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 4,227 | 5,185 | 4,319 | 4,319 | 4,579 | 106.0 | 4,319 |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1131-300) | 4,227 | 5,185 | 4,319 | 4,319 | 4,579 | 106.0 | 4,319 |
| 1133 부동산납세 지원 | 7,666 | 7,557 | 7,410 | 7,410 | 7,377 | 99.6 | 12,478 |
|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1133-301) | 2,842 | 2,843 | 2,886 | 2,886 | 2,854 | 98.9 | 2,886 |
|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1133-302) | 202 | 191 | 0 | 0 | 0 | 0.0 | 0 |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1133-303) | 4,622 | 4,523 | 4,524 | 4,524 | 4,523 | 100.0 | 9,592 |
| 113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 1,475 | 1,351 | 1,475 | 1,475 | 1,403 | 95.1 | 1,431 |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운영 (1134-300) | 1,475 | 1,351 | 1,475 | 1,475 | 1,403 | 95.1 | 1,431 |
| 1135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 95 | 9 | 409 | 409 | 0 | 0.0 | 0 |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1135-300) | 95 | 9 | 409 | 409 | 0 | 0.0 | 0 |
| 1136 디지털세 운영지원 | 0 | 0 | 196 | 196 | 196 | 100.0 | 318 |
| 디지털세 운영지원 (1136-300) | 0 | 0 | 196 | 196 | 196 | 100.0 | 318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2100 탈세대응강화 프로그램 계** | **162,930** | **132,363** | **133,007** | **133,007** | **132,432** | **99.6** | **140,830** |
| 2131 국세징수활동지원 | 96,943 | 108,959 | 110,741 | 110,741 | 108,931 | 98.4 | 117,471 |
| 부과·징수지원 (2131-300) | 26,038 | 38,102 | 45,355 | 45,355 | 42,163 | 93.0 | 43,087 |
| 부과·징수자료수집비 (2131-301) | 48,889 | 48,867 | 48,725 | 48,725 | 48,580 | 99.7 | 48,598 |
| 조사활동지원 (2131-302) | 22,016 | 21,990 | 16,661 | 16,661 | 18,188 | 109.2 | 25,786 |
| 2132 역외탈세대응활동 | 6,457 | 6,372 | 6,376 | 6,376 | 6,544 | 102.6 | 6,926 |
| 역외탈세대응활동 (2132-300) | 6,457 | 6,372 | 6,376 | 6,376 | 6,544 | 102.6 | 6,926 |
| 2133 법무심사지원 | 55,774 | 13,895 | 12,609 | 12,609 | 13,683 | 108.5 | 13,228 |
| 확정채무 지급 (2133-300) | 47,691 | 5,811 | 3,716 | 3,716 | 4,797 | 129.1 | 4,335 |
| 소송수행비용 (2133-301) | 8,083 | 8,084 | 8,893 | 8,893 | 8,886 | 99.9 | 8,893 |
| 2134 FIU정보통합 분석시스템(FOCAS)운영 (정보화) | 909 | 794 | 815 | 815 | 809 | 99.3 | 774 |
|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 (FOCAS)운영(정보화) (2134-300) | 909 | 794 | 815 | 815 | 809 | 99.3 | 774 |
| 2136 납세조합법정교부금 | 2,847 | 2,343 | 2,466 | 2,466 | 2,466 | 100.0 | 2,431 |
| 납세조합법정교부금 (2136-300) | 2,847 | 2,343 | 2,466 | 2,466 | 2,466 | 100.0 | 2,431 |
| **2200 체납·징수관리 프로그램 계** | **70,063** | **72,655** | **65,282** | **65,282** | **74,472** | **114.1** | **68,024**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2232 체납정리지원 | 7,542 | 6,360 | 5,216 | 5,216 | 5,634 | 108.0 | 5,877 |
| 압류재산공매 (2232-301) | 5,973 | 4,838 | 3,593 | 3,593 | 4,011 | 111.6 | 4,254 |
| 징수위탁수수료 (2232-303) | 1,569 | 1,522 | 1,623 | 1,623 | 1,623 | 100.0 | 1,623 |
| 2233 납세고지서 등 발송 | 61,585 | 66,295 | 60,066 | 60,066 | 68,838 | 114.6 | 62,147 |
| 납세고지서 등 발송 (2233-300) | 61,585 | 66,295 | 60,066 | 60,066 | 68,838 | 114.6 | 62,147 |
| **3100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프로그램 계** | **22,430** | **19,342** | **20,771** | **20,771** | **18,916** | **91.1** | **19,270** |
| 3132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 2,711 | 2,860 | 3,265 | 3,265 | 3,257 | 99.8 | 3,265 |
|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3132-300) | 2,711 | 2,860 | 3,265 | 3,265 | 3,257 | 99.8 | 3,265 |
| 313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 1,225 | 1,131 | 1,303 | 1,303 | 1,291 | 99.1 | 1,312 |
|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 | 1,225 | 1,131 | 1,303 | 1,303 | 1,291 | 99.1 | 1,312 |
| 3134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 2,637 | 2,739 | 3,413 | 3,413 | 3,396 | 99.5 | 3,828 |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3134-300) | 2,637 | 2,739 | 3,413 | 3,413 | 3,396 | 99.5 | 3,828 |
| 3135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 10,000 | 8,733 | 5,779 | 5,779 | 5,758 | 99.6 | 5,546 |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3135-300) | 10,000 | 8,733 | 5,779 | 5,779 | 5,758 | 99.6 | 5,546 |
| 3136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 234 | 234 | 234 | 234 | 234 | 100.0 | 234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3136-300) | 234 | 234 | 234 | 234 | 234 | 100.0 | 234 |
| 3137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 5,623 | 3,645 | 3,390 | 3,390 | 1,659 | 48.9 | 2,560 |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 5,623 | 3,645 | 3,390 | 3,390 | 1,659 | 48.9 | 2,560 |
| 3138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사업 | 0 | 0 | 1,000 | 1,000 | 964 | 96.4 | 138 |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사업 (3138-300) | 0 | 0 | 1,000 | 1,000 | 964 | 96.4 | 138 |
| 3140 소득자료관리 시스템 운영(정보화) | 0 | 0 | 2,387 | 2,387 | 2,357 | 98.7 | 2,387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3140-500) | 0 | 0 | 2,387 | 2,387 | 2,357 | 98.7 | 2,387 |
| **7100 국세행정지원 프로그램 계** | **1,613,279** | **1,635,616** | **1,698,032** | **1,698,032** | **1,675,037** | **98.6** | **1,736,224** |
| 7101 인건비 | 1,275,622 | 1,300,464 | 1,351,587 | 1,351,587 | 1,338,112 | 99.0 | 1,381,203 |
| 인건비 (7101-100) | 1,275,622 | 1,300,464 | 1,351,587 | 1,351,587 | 1,338,112 | 99.0 | 1,381,203 |
| 7111 본부 기본경비 | 42,875 | 47,380 | 47,661 | 47,661 | 46,888 | 98.4 | 50,058 |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0) | 22,963 | 24,692 | 22,945 | 22,945 | 22,843 | 99.6 | 23,944 |
| 정보화관리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1) | 294 | 301 | 307 | 307 | 306 | 99.7 | 312 |
|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총액) (7111-202) | 86 | 86 | 93 | 93 | 87 | 93.5 | 93 |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3) | 164 | 165 | 165 | 165 | 182 | 110.3 | 188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총액) (7111-204) | 173 | 150 | 151 | 151 | 148 | 98.0 | 151 |
| 개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 (7111-205) | 2,605 | 2,562 | 2,246 | 2,246 | 2,227 | 99.2 | 2,246 |
| 법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 (7111-206) | 153 | 153 | 153 | 153 | 153 | 100.0 | 153 |
| 자산과세국 기본경비(총액) (7111-207) | 119 | 120 | 120 | 120 | 120 | 100.0 | 125 |
| 조사국 기본경비(총액) (7111-208) | 216 | 205 | 226 | 226 | 177 | 78.3 | 226 |
| 복지세정관리단 기본경비(총액) (7111-209) | 99 | 133 | 143 | 143 | 139 | 97.2 | 143 |
|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 8,146 | 10,348 | 12,408 | 12,408 | 12,108 | 97.6 | 13,150 |
| 정보화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1) | 217 | 254 | 281 | 281 | 297 | 105.7 | 286 |
|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 (7111-252) | 974 | 1,026 | 1,145 | 1,145 | 1,096 | 95.7 | 1,170 |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3) | 1,939 | 2,129 | 2,142 | 2,142 | 2,112 | 98.6 | 2,576 |
| 징세법무국 기본경비 (7111-254) | 848 | 885 | 956 | 956 | 919 | 96.1 | 986 |
|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5) | 1,793 | 1,891 | 1,818 | 1,818 | 1,549 | 85.2 | 1,914 |
|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6) | 1,046 | 1,111 | 1,097 | 1,097 | 1,140 | 103.9 | 1,100 |
|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7111-257) | 499 | 543 | 732 | 732 | 732 | 100.0 | 732 |
| 조사국 기본경비 (7111-258) | 478 | 546 | 453 | 453 | 473 | 104.4 | 483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복지세정관리단 기본경비 (7111-259) | 63 | 80 | 80 | 80 | 80 | 100.0 | 80 |
| 7118 소속기관 기본경비 | 6,148 | 6,241 | 6,313 | 6,313 | 6,247 | 99.0 | 6,586 |
| 교육원 기본경비(총액) (7118-201) | 255 | 290 | 295 | 295 | 291 | 98.6 | 295 |
| 주류면허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7118-202) | 41 | 41 | 45 | 45 | 40 | 88.9 | 45 |
| 교육원 기본경비 (7118-251) | 5,166 | 5,400 | 5,297 | 5,297 | 5,271 | 99.5 | 5,567 |
| 주류면허지원센터 기본경비 (7118-252) | 686 | 510 | 676 | 676 | 645 | 95.4 | 679 |
| 7124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 111,444 | 82,876 | 82,898 | 82,898 | 84,635 | 102.1 | 88,582 |
| 서울청 기본경비(총액) (7124-200) | 4,583 | 4,588 | 4,701 | 4,701 | 4,560 | 97.0 | 4,701 |
| 중부청 기본경비(총액) (7124-201) | 2,253 | 2,315 | 2,456 | 2,456 | 2,272 | 92.5 | 2,456 |
| 대전청 기본경비(총액) (7124-202) | 1,266 | 1,295 | 1,363 | 1,363 | 1,292 | 94.8 | 1,363 |
| 광주청 기본경비(총액) (7124-203) | 1,171 | 1,152 | 1,275 | 1,275 | 1,142 | 89.6 | 1,275 |
| 대구청 기본경비(총액) (7124-204) | 1,249 | 1,235 | 1,282 | 1,282 | 1,243 | 97.0 | 1,282 |
| 부산청 기본경비(총액) (7124-205) | 1,920 | 1,905 | 2,107 | 2,107 | 1,796 | 85.2 | 2,107 |
| 인천청 기본경비(총액) (7124-206) | 1,513 | 1,519 | 1,592 | 1,592 | 1,575 | 98.9 | 1,592 |
| 서울청 기본경비 (7124-250) | 24,885 | 17,304 | 16,972 | 16,972 | 17,849 | 105.2 | 17,436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중부청 기본경비 (7124-251) | 18,257 | 12,589 | 11,898 | 11,898 | 13,148 | 110.5 | 13,886 |
| 대전청 기본경비 (7124-252) | 8,094 | 7,731 | 7,515 | 7,515 | 7,989 | 106.3 | 8,377 |
| 광주청 기본경비 (7124-253) | 8,055 | 7,038 | 7,229 | 7,229 | 7,170 | 99.2 | 7,935 |
| 대구청 기본경비 (7124-254) | 9,032 | 6,743 | 6,581 | 6,581 | 6,511 | 98.9 | 6,987 |
| 부산청 기본경비 (7124-255) | 12,469 | 10,258 | 10,483 | 10,483 | 10,547 | 100.6 | 11,049 |
| 인천청 기본경비 (7124-256) | 16,697 | 7,204 | 7,444 | 7,444 | 7,542 | 101.3 | 8,136 |
| 7132 직장어린이집 운영 | 3,298 | 3,297 | 3,297 | 3,297 | 3,297 | 100.0 | 3,297 |
| 직장어린이집 운영 (7132-300) | 3,298 | 3,297 | 3,297 | 3,297 | 3,297 | 100.0 | 3,297 |
| 7133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 116,110 | 104,859 | 107,363 | 107,363 | 100,059 | 93.2 | 104,629 |
|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0) | 43,877 | 52,593 | 48,143 | 48,143 | 46,350 | 96.3 | 49,461 |
|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1) | 60,999 | 41,665 | 47,915 | 47,915 | 42,546 | 88.8 | 45,412 |
|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2) | 11,234 | 10,601 | 11,305 | 11,305 | 11,162 | 98.7 | 9,756 |
| 7136 취업후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 3,203 | 2,937 | 3,110 | 3,110 | 2,899 | 93.2 | 2,799 |
|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7136-500) | 3,203 | 2,937 | 3,110 | 3,110 | 2,899 | 93.2 | 2,799 |
| 7138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 50,152 | 82,243 | 93,645 | 93,645 | 90,753 | 96.9 | 97,173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세무환경개선 (7138-302) | 8,463 | 8,641 | 9,789 | 9,789 | 9,538 | 97.4 | 9,789 |
| 임시청사 이전비용 (7138-303) | 5,001 | 35,400 | 40,315 | 40,315 | 38,305 | 95.0 | 39,350 |
| 행정지원인력 운영 (7138-304) | 36,688 | 38,202 | 43,541 | 43,541 | 42,909 | 98.5 | 48,034 |
| 7139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2,095 | 2,041 | 2,058 | 2,058 | 2,052 | 99.7 | 1,797 |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139-300) | 2,095 | 2,041 | 2,058 | 2,058 | 2,052 | 99.7 | 1,797 |
| 7140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332 | 3,278 | 0 | 0 | 0 | 0.0 | 0 |
|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7140-500) | 2,332 | 3,278 | 0 | 0 | 0 | 0.0 | 0 |
| 7143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 0 | 0 | 100 | 100 | 95 | 95.0 | 100 |
|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7143-300) | 0 | 0 | 100 | 100 | 95 | 95.0 | 100 |
| **7200 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계** | **18,129** | **19,492** | **20,341** | **20,341** | **20,264** | **99.6** | **21,106** |
| 7202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 9,147 | 9,350 | 9,758 | 9,758 | 9,612 | 98.5 | 10,009 |
|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7202-100) | 9,147 | 9,350 | 9,758 | 9,758 | 9,612 | 98.5 | 10,009 |
| 7218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 1,226 | 1,321 | 1,478 | 1,478 | 1,548 | 104.7 | 1,634 |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 (7218-200) | 820 | 891 | 924 | 924 | 994 | 107.6 | 1,008 |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7218-250) | 406 | 430 | 554 | 554 | 554 | 100.0 | 626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7231 홈택스상담 센터운영 | 7,756 | 8,821 | 9,105 | 9,105 | 9,105 | 100.0 | 9,463 |
|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7231-300) | 7,756 | 8,821 | 9,105 | 9,105 | 9,105 | 100.0 | 9,463 |

## 나. 검토의견

### (1)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작 시 보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과다 편성 시정 필요 등 (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지원, 개인납세국)

< 현 황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은 세원양성화가 미흡한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가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45억 7,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현금영수증제도활성화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1131-300) | 4,319 | - | 260 | - | 4,579 | 4,579 | - | - | 4,319 |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작 예산은 보유량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전액 집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유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국세청이 발행하는 실물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한 식별 수단임. 전용카드를 보유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

력할 필요 없이 전용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구조임.

국세청은 2024년 예산으로 전용카드 10만장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실제 전용카드를 신규로 제작한 내역이 없으며 해당 예산을 모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전용하였음.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2024년 전용카드 소요량(28만 1,000장)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용카드(56만 2,000장)가 더 많아 추가 제작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최근 전용카드 소요량과 국세청이 기보유하고 있었던 전용카드량을 고려할 때, 2024년 예산은 과다편성된 문제가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전용카드 소요량은 33.3만장이며, 2022년 27.4만장, 2023년 23.7만장으로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2024년 전용카드 보유량은 56.2만장이었음. 이처럼 그간의 전용카드 소요량 추세와 보유량을 고려할 때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도 전용카드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전용카드 10만장을 추가 발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바 이는 예산의 불필요한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별 발급 현황에 따르면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2024년 기준 5,553억원으로 전체 132조 4,228억원의 0.3%에 불과한 수준임. 특히 이러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금액 및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낮았으며 그마저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전용카드는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별 발급 현황]

(단위: 억원, %)

| 연도 | 구분 | 핸드폰 | 전용카드 | 주민등록번호<br>사업자번호 | 모바일<br>앱카드 | 신용카드<br>멤버십카드 | 합계 |
|---|---|---|---|---|---|---|---|
| 2020 | 금액 | 855,099 | 11,633 | 359,601 | 31 | 4,084 | 1,230,448 |
| | 비율 | 69.49 | 0.94 | 29.23 | 0.01 | 0.33 | 100 |
| 2021 | 금액 | 1,006,898 | 9,434 | 400,448 | 25 | 3,588 | 1,420,393 |
| | 비율 | 70.88 | 0.66 | 28.19 | 0.01 | 0.25 | 100 |
| 2022 | 금액 | 1,124,568 | 8,332 | 426,086 | 11 | 3,474 | 1,562,471 |
| | 비율 | 71.96 | 0.53 | 27.27 | 0.01 | 0.22 | 100 |
| 2023 | 금액 | 1,217,900 | 6,588 | 443,462 | 11 | 3,275 | 1,671,236 |
| | 비율 | 72.87 | 0.39 | 26.53 | 0.01 | 0.19 | 100 |
| 2024 | 금액 | 1,324,228 | 5,553 | 461,710 | 8 | 5,183 | 1,796,682 |
| | 비율 | 73.70 | 0.30 | 25.70 | 0.01 | 0.29 | 10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세청은 전용카드 제작 예산을 보유량에 비해 과다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보유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의 목표를 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설정하여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는 166조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발급 규모는 179.7조원으로 성과목표를 초과달성(달성도 108.3)하였음. 국세청은 이러한 2024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대하여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연평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성과지표 목표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추가 지정에 따른 사업자 증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낮게 설정된 문제가 있음. 2024년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가 전년(112개)에 비해 13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125개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21년 77개 업종에 비해 업종 수 기준으로 약 62.3% 증가한 것임.

[최근 5년간 현금연수증 의무발행업종 수 현황]

(단위: 개)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의무발행 업종 수 | 77 | 87 | 95 | 112 | 125 |
| | | 두발미용업 등 10개 추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추가 |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추가 |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 추가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세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이와 같이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발급액 증감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치가 다소 낮게 설정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에 따른 발급액 증감 등을 고려하여 보다 높게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 예산 과다편성 시정 필요 및 조세범칙처분율 관리 필요 등 (조사활동지원, 조사국)

### < 현 황 >

「조사활동지원」 사업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분야별 전문조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이·전용(증)된 15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1억 9,000만원으로 이 중 18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조사활동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조사활동지원(2131-302) | 16,661 | - | 1,529 | - | 18,190 | 18,188 | - | 2 | 25,786 |

자료: 국세청

### < 검토의견 >

「조사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건수가 실제 집행가능성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용수수료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는 금융결제원 전용전산망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조사활동지원」 사업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금융기관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국세청은 2024년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 예산으로 전산조회이용 예상건수(1,700천건)를 전제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3,700만원으로 집행률이

43.5%에 불과한 문제가 있음. 특히 동 수수료의 저조한 집행률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2022년의 경우 동 수수료의 집행률은 7.1%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은 29.4%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

국세청은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에 대하여 전산조회를 위한 금융기관의 전산프로그램 개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건수 대비 실제 이용건수가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실제 전산조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통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월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통한 은행이 6개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12개 은행이 추가 개통되어 총 18개 은행이 개통하였고, 2024년 11월에 추가로 2개 은행이 동 프로그램을 개통하여 총 20개 은행이 개통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이용 현황]**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 관련 예산액(A) | 85백만원 | 85백만원 | 85백만원 |
| 예산편성 시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 예상건수 | 1,700천건 | 1,700천건 | 1,700천건 |
| 금융정보 전산조회 실제 이용건수 | 120천건 | 500천건 | 740천건 |
|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단가 | 50원 | 50원 | 50원 |
| 실제 지급금액 (B) | 6백만원 | 25백만원 | 37백만원 |
| 집행률 (B/A×100) | 7.1% | 29.4% | 43.5% |

자료: 국세청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관별 프로그램 개통 및 추가 개통 예정 현황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했었던 상황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개통 현황에도 불구하고 전산조회 이용 예상건수를 과다하게 산출하여 예산을 과다편성한 문제가 있음. 특히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과거의 전산조회 실제 이용건수(2022년 120천건, 2023년 500천건)를 고려하였을 때도 예산안 산출 기준인 1,700천건은 과다하게 산출된 측면이 있음.

한편, 금융기관의 전산조회 프로그램은 탈세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함으로써 탈세를 적발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임. 그러나 2024년 기준 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통한 은행은 단 2개에 불과하여 추가 개통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금융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의 예산을 전산조회 프로그램의 개통

현황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행 저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전산조회 프로그램의 개통은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므로 국세청은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이를 조속히 추가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2024년의 조세범칙 처분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성과목표치에도 미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범칙 처분율에 대해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칙 처분율이란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자 중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의 범칙처분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한 비율을 의미함. 동 사업은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조세포탈자를 적발하는 사업인 만큼 국세청은 동 사업의 유일한 성과지표로 '조세범칙 처분율'을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의 경우 조세범칙처분율은 85.1%로 전년(92.9%) 대비 7.8%p 감소하는 등 그 수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조세범칙 처분율은 성과목표치인 87.4%에도 미치지 못하여 성과달성도가 97.4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근 5년 중 유일하게 성과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처분율 현황]**

(단위: 건, %)

|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범칙조사건수(a) | 217 | 152 | 128 | 126 | 174 |
| 고발·통고처분 건수(b) | 188 | 132 | 121 | 117 | 148 |
| 범칙처분율(b/a) | 86.6 | 86.8 | 94.5 | 92.9 | 85.1 |

자료: 국세청

**[최근 5년간 조사활동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조세범칙 처분율(%) | 목표 | 85.3 | 86.7 | 85.9 | 87.5 | 87.4 |
| | 실적 | 86.6 | 86.8 | 94.5 | 92.8 | 85.1 |
| | 달성도 | 101.5 | 100.1 | 110.0 | 106.1 | 97.4 |

자료: 국세청

지방청별로 조사범칙 처분율을 살펴보면, 중부청과 인천청, 광주청이 전체 평균에 비하여 범칙처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청의 경우 처분율이 72.2%로 특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지방청별 조세포탈 범칙처분율 현황]**

(단위: 건, %)

| 지방청명 | 전체 | 서울청 | 중부청 | 인천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 범칙조사건수(a) | 174 | 55 | 32 | 36 | 8 | 8 | 7 | 28 |
| 고발·통고처분건수(b) | 148 | 48 | 26 | 26 | 8 | 6 | 6 | 28 |
| 범칙처분율(b/a) | 85.1 | 87.3 | 81.3 | 72.2 | 100.0 | 75.0 | 85.7 | 100.0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조세범칙사건은 모수가 크지 않고 사건별 개별성이 강해 연도별로 다소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실제 지방청의 경우 사건 수가 한자리 수인 경우도 있으며 범칙조사건수 자체가 크지 않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국세청이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조세포탈 범칙처분율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개별 사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 처분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자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에 비해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조세범칙처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2024년 조세범칙 처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추후 조세범칙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함께 금융거래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세범칙 처분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해외기업정보열람을 위한 계약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고 관서운영경비의 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건을 분할하여 집행하여 「국고금 관리법」도 위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동 사업에서 해외기업정보열람을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정보 및 나이스디앤비와 정보열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한국신용평가정보과의 계약은 국세청이 요청하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계약이

며, 나이스디앤비와의 계약은 국세청이 기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2024년 한국신용평가정보원 및 나이스디앤비와의 계약 현황]**

(단위: 만원)

| 계약건명 | 계약상대방 | 계약일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
| 해외기업보고서 이용계약 | 한국신용평가정보 | 2024.4.23 | 2024.4.23.<br>~2025.4.22 | 990 |
| D&B Hoover's 이용신청 | 나이스디앤비 | 2024.12.3 | 2024.12.10<br>~2425.12.9 | 1,069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세청은 매년 해당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그 계약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제3조[266]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음.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정보와의 계약은 매년 4월 23일부터 차년도 4월 22일까지이며, 나이스디앤비와의 계약은 매년 12월 10일부터 차년도 12월 9일까지로 회계연도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최초 계약 체결 당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별도로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달리 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특히 나이스디앤비와의 계약 금액은 12월과 1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연례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2개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회계독립의 원칙 위반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처럼 계약기간과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동 계약들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에 일치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세청은 해당 계약들의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관서운영경비로 처리하고 있음.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단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절차를 간소화한 경비로,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운영비(210목)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이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계약들은 계약금액이 각각 990만원, 1,069만원으로 관서운영경비 지출

26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범위인 5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한국신용평가정보와의 계약은 247.5만원씩 4회에 분할하여, 나이스디앤비와의 계약은 495만원씩 2회 및 79만원 1회로 총 3회에 분할하여 이를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고 있음.

**[한국신용평가정보원 및 나이스디앤비와의 계약 분할 지출 내역]**

(단위: 만원)

| 지출건명 | 목 | 수령인 | 지출일 | 지출금액 |
|---|---|---|---|---|
| 해외기업보고서 이용계약 | 운영비 (210목) | 한국신용 평가정보 | 24.5.20 | 247.5 |
| | | | 24.6.19 | 247.5 |
| | | | 24.7.12 | 247.5 |
| | | | 24.8.13 | 247.5 |
| D&B Hoover's 이용신청 | | 나이스디앤비 | 24.12.4 | 495 |
| | | | 24.12.19 | 495 |
| | | | 25.1.6 | 79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관서운영경비의 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건을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국고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267]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를 초과한 계약을 그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함으로써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 계약들 역시 일반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체결할 필요가 있음.

267)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체납규모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 (압류재산공매, 징세법무국)

< 현 황 >

「압류재산공매」는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한 공매행정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35억 9,300만원으로, 전용받은 4억 2,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0억 2,200만원 중 40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압류재산공매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압류재산공매 (2232-301) | 3,593 | 3,593 | - | 429 | - | 4,022 | 4,011 | - | 11 | 4,254 |

< 검토의견 >

**국세 수입 대비 체납 발생액 비율과 누계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여 납세 형평성과 조세정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국에 비해 체납액 비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세 체납 발생액은 2020년 19조 2,364억원에서 2024년 24조 2,112억원으로 4년 간 4조 9,748억원(증가율 25.9%) 증가하였음. 그리고 고액 체납 발생액(체납액 5,000만원 이상)은 2020년 5조 5,395억원에서 2024년 13조 8,681억원으로 8조 3,286억원(증가율 150.3%) 증가하였음. 즉 체납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고액 체납액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국세 수입과 비교한 체납 발생액의 상대적인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당해연도 국세 수입 대비 체납 발생액 비율도 2024년에 7.37%를 기록하여 2020년 6.94% 대비 0.43%p 증가하였음. 특히, 국세 수입 대비 고액 체납(정리중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발생액 비율은 2024년에 4.22%를 기록하여 2020년 2.00% 대비 2.22%p 증가하여 성실 납

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음.

**[국세 수입 및 체납 발생 현황]**

(단위: 억원, 건, 명, %)

| 구분 | 국세 수입 (A) | 체납 발생 | | 고액 체납 발생 | | 체납 발생액 비율(B/A) | 고액 체납 발생액 비율(C/A) |
|---|---|---|---|---|---|---|---|
| | | 건수 | 금액(B) | 인원 | 금액(C) | | |
| 2020년 | 2,772,753 | 3,100,170 | 192,364 | 31,674 | 55,395 | 6.94 | 2.00 |
| 2021년 | 3,344,714 | 2,926,149 | 196,711 | 40,367 | 74,262 | 5.88 | 2.22 |
| 2022년 | 3,842,495 | 3,540,281 | 229,935 | 55,719 | 107,021 | 5.98 | 2.79 |
| 2023년 | 3,356,723 | 3,629,238 | 243,089 | 62,886 | 125,684 | 7.24 | 3.74 |
| 2024년 | 3,283,896 | 3,682,039 | 242,112 | 69,632 | 138,681 | 7.37 | 4.22 |

주 1) 국세 수입은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 등 관세청·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을 제외한 금액임
2) 체납 발생액은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임
3) 고액체납은 해당연도말일 현재 정리중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고액체납 인원은 세무서별, 체납액 규모별로 중복이 있음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이와 같이 체납 발생액이 늘어나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세 누계체납액[268]은 2024년 110조 7,31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99조 8,607억원 대비 10조 8,703억원 증가(증가율 10.9%)한 규모임. 이 중 체납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액 누계체납액은 2024년 기준 25조 3,625억원(체납자 1,792명)에 달하여 전체의 22.9%를 차지하고 있음.

268) 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금액을 합한 금액임. 정리중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액이고, 정리보류 금액은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액임.

##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 체납액 |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 2024년 | | |
|---|---|---|---|---|---|---|---|---|---|---|---|---|
| | 누계 체납액 | 정리중 체납액 | 정리 보류 금액 | 누계 체납액 | 정리중 체납액 | 정리 보류 금액 | 누계 체납액 | 정리중 체납액 | 정리 보류 금액 | 누계 체납액 | 정리중 체납액 | 정리 보류 금액 |
| 1억원 미만 | 164,556 | 50,419 | 114,137 | 165,320 | 62,241 | 103,079 | 166,128 | 67,028 | 99,100 | 168,857 | 71,398 | 97,459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63,224 | 30,397 | 232,827 | 265,803 | 44,539 | 221,264 | 271,275 | 50,865 | 220,410 | 282,924 | 57,321 | 225,603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21,234 | 9,315 | 111,919 | 122,722 | 13,665 | 109,057 | 127,568 | 15,359 | 112,209 | 134,816 | 17,586 | 117,230 |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15,281 | 7,220 | 108,061 | 117,934 | 10,443 | 107,491 | 121,534 | 11,148 | 110,386 | 128,785 | 14,360 | 114,425 |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59,866 | 3,633 | 56,233 | 61,417 | 4,722 | 56,695 | 63,237 | 5,195 | 58,042 | 66,581 | 6,568 | 60,013 |
|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37,375 | 1,903 | 35,472 | 39,186 | 3,061 | 36,125 | 39,946 | 3,470 | 36,476 | 42,573 | 3,894 | 38,679 |
|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6,497 | 1,777 | 24,720 | 26,796 | 2,197 | 24,599 | 29,165 | 2,623 | 26,542 | 29,149 | 2,257 | 26,892 |
| 50억원 이상 | 210,574 | 9,872 | 200,702 | 225,962 | 14,805 | 211,157 | 241,744 | 21,803 | 219,941 | 253,625 | 20,178 | 233,447 |
| 합계 | 998,607 | 114,536 | 884,071 | 1,025,140 | 155,673 | 869,467 | 1,060,597 | 177,491 | 883,106 | 1,107,310 | 193,562 | 913,748 |

주) 누계체납액 = 정리중체납액 + 정리보류금액
자료: 국세청

세부적인 체납액 정리 실적을 살펴보면, 당년 발생한 체납 발생액에 비해 정리금액이 작아 매년 정리대상 체납액과 정리중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임. 정리대상 체납액 중 당년발생분(체납 발생액)은 2020년 19조 2,364억원에서 2024년 24조 2,112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정리실적은 2020년 17조 6,582억원에서 2024년 20조 9,400억원으로 증가한 것에 그쳤음.

이에 따라 정리대상 체납액이 2020년 27조 1,866억원에서 2024년 40조 2,962억원으로 늘어나고, 정리중체납액은 2020년 9조 5,284억원에서 2024년 19조 3,562억원으로 늘어났음.

[2020년~2024년 체납액 정리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정리대상 체납액 | 계(A) | 271,866 | 279,128 | 329,848 | 382,724 | 402,962 |
| | 전년이월 정리중체납액 | 92,844 | 95,284 | 114,536 | 155,673 | 177,491 |
| | 당년발생 (체납 발생) | 192,364 | 196,711 | 229,935 | 243,089 | 242,112 |
| | 결정취소 | 13,342 | 12,867 | 14,623 | 16,038 | 16,641 |
| 정리금액 | 계(B) | 176,582 | 164,592 | 174,175 | 205,233 | 209,400 |
| | 현금정리 | 105,999 | 103,003 | 114,082 | 117,272 | 121,407 |
| | 정리보류 | 70,583 | 61,589 | 60,093 | 87,961 | 87,993 |
| 정리중체납액(A-B) | | 95,284 | 114,536 | 155,673 | 177,491 | 193,562 |

자료: 국세청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 대비 체납액 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ECD 등에서 실시한 '2024년 국제 세무행정 설문조사(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 [269]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 대비 체납액 비율은 7.90%임. 기타 주요국의 조세 수입 대비 체납액 비율은 미국 7.75%, 영국 5.43%, 독일 3.12%, 일본 1.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

[2019년~2023년 주요국의 조세 체납액 비율 추이]

(단위: 십억 국가별 통화단위, %)

| 구 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프랑스 | 체납액 | 25.08 | 26.16 | 28.66 | 48.71 | 55.77 |
| | 체납액 비율 | 4.05 | 4.3 | 4.26 | 7.77 | 8.76 |

269)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범미주 국세청장 협의체(Inter-American Center of Tax Administrations),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가 협력하여 각국의 조세 수입, 체납액 등 세무행정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한 결과임

| 구 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우리나라 | 체납액 | 17,721.57 | 16,586.67 | 17,612.55 | 21,576.51 | 26,545.03 |
| | 체납액 비율 | 6.21 | 5.96 | 5.25 | 5.61 | 7.90 |
| 미국 | 체납액 | 256.97 | 268.42 | 271.98 | 288.74 | 312.77 |
| | 체납액 비율 | 8.26 | 9.72 | 9.06 | 6.78 | 7.75 |
| 영국 | 체납액 | 15.06 | 18.95 | 54.46 | 39.20 | 43.85 |
| | 체납액 비율 | 2.4 | 2.98 | 9.28 | 5.4 | 5.43 |
| 독일 | 체납액 | 7.42 | 10.87 | 19.43 | 22.47 | 26.07 |
| | 체납액 비율 | 1.03 | 1.64 | 2.57 | 2.74 | 3.12 |
| 일본 | 체납액 | 811.79 | 755.41 | 828.62 | 885.72 | 894.85 |
| | 체납액 비율 | 1.39 | 1.33 | 1.38 | 1.33 | 1.26 |

주 1) 체납액은 연도말 체납액(closing stock of arrears at year-end)인데, 이는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 + 전년 이월액 - 체납정리액을 말함
2) 체납액 비율 = 체납액 ÷ 조세 수입, 조세 수입은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 수입의 순계임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 2024년 국제 세무행정 설문조사 참고

이처럼 고액 체납이 늘어날수록 납세형평성과 조세 정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리고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증세로 이어져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체납정리를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금지제도, 관허사업제한제도,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제도, 감치제도, 은닉재산신고포상제, 세무공무원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국세청이 2024년말 기준 명단공개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51,676명(체납액 46.7조원)이며, 2024년말 기준 3,831명(체납액 6.7조원)이 출국 금지 중임. 또한 2024년말 기준 43.1만명(체납액 78.8조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중이고, 2024년에 은닉재산 신고로 130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은닉재산신고포상금 9억 4,800만원을 지급했음.

## [우리나라의 체납정리 인프라 현황]

| 구분 | 내용 | 요건 | 시행현황 |
|---|---|---|---|
| 명단공개제도<br>(국세징수법 제114조) |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 | 2024년말 기준<br>51,676명(체납액 46.7조원)<br>명단공개중 |
| 출국금지제도<br>(국세징수법 제113조) | 고액체납자의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국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 회피우려가 있는자 | 2024년말 기준<br>3,831명<br>(체납액 6.7조원)<br>출국 금지 중 |
| 관허사업제한 제도<br>(국세징수법 제112조) | 체납 시 영업허가 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 |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 2024년 2건에 대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제도<br>(국세징수법 제110조) |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정보 제공 |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로<br>-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br>- 1년에 3회 이상 체납 | 2024년말 기준<br>43.1만명(체납액 78.8조원)에 대한 체납 자료 제공 중 |
| 감치제도<br>(국세징수법 제115조) | 납부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 시 유치장·구치소 감치 가능(최대 30일)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누적 13명에 대해 감치신청 |
| 은닉재산신고 포상제<br>(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br>-징수한 금액의 5~20%<br>(30억원 한도)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 2024년 130억<br>2,500만원 징수,<br>포상금 9억<br>4,800만원 지급 |
| 세무공무원 포상제<br>(국세기본법 제84조의3)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br>-징수한 금액의 10%<br>(연 2,000만원 한도) |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 인정 등 | 해당없음<br>('25년 6월 법률 시행)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국세통계포털

① 증가하는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세무공무원포상제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25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추후 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를 고려하여 지급률 또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는 체납액 징수실적을 성과로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은닉재산을 적발하기 위한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을 강화함으로써 은닉재산 제보를 활성화해야 함. 참고로, 미국은 징수금액이 200만 달러(27억 6,000만원)[270]를 초과하는 고액 탈세·체납건(납세의무자가 개인이라면 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함)에 대해 제보를 받아 추징한 경우, 추징된 금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에 대한 지급률이 구간별로 징수금액의 20%에서 5%로 감소하는 점감구조로서, 지급률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271] 2024년 기준 징수금액 대비 지급률은 평균 7.3%(지급액 9억 4,800만원/징수금액 130억 2,500만원)에 그침.

**[우리나라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 지급률 |
|---|---|
| 5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 |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3억 2,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 30억원 초과 | 4억 2,50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자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70) 환율 1,380원/달러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27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3항 및 본 훈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징수금액 | 지급률 |
|---|---|
| 5천만원 미만 | - |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
| 30억원 초과 |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②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의 갱신 또는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침.[272] 우리나라보다 체납액 비율이 낮은 독일은 체납 등 세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영업상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보아 영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영업을 위하여 행정청의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활동에 한하지 않고 모든 영업활동에 대하여 적용함.[273]

또한, 감치제도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24년 말까지 신청한 사례가 총 13건에 불과하여 실제 감치 집행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므로, 감치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AI기술을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OECD 조세행정 동향 보고서(Tax Administration 2024)」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탈세위험을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과학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으며, 과세당국[274] 중 49%는 세금 탈루 적발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275]

현재도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음. 또한, 국세청은 2025년 7월 '미래혁신추진단'을 발족하였고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임. 향후에도 국세청은 AI 기술을 고도화하여 은닉재산 적발 등 체납정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72) **「국세징수법」**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273) 한국조세연구원, 「체납정리 인프라 개선방안」, 2010. 4.

274)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완료한 52개국 기준임

275) 주OECD대표부, 「조세행정 분야 최신 동향」, 2025. 2.

## (4) 보호장비 단가 과다 산정 주의 필요 (압류재산공매, 징세법무국)

< 현 황 >

「압류재산공매」의 내역사업인 「보호장비」는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위한 바디캠을 구입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이 중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압류재산공매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압류재산공매 (2232-301) | 3,593 | 3,593 | - | 429 | - | 4,022 | 4,011 | - | 11 | 4,254 |
| **- 보호장비** | **112** | **112** | - | - | - | **112** | **104** | - | **8** | **215** |
| - 공매행정비 | 2,264 | 2,264 | - | 208 | - | 2,472 | 2,472 | - | - | 2,438 |
| - 대위등기비 | 463 | 463 | - | 27 | - | 490 | 487 | - | 3 | 545 |
| - 보전비 | 754 | 754 | - | 194 | - | 948 | 948 | - | - | 1,056 |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사전에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바디캠의 사양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바디캠 단가가 과다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편성된 수량보다 과다한 수량이 구매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국세청은 구매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보호장비」 사업은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인데, 국세청은 예산안에 바디캠 단가를 973,400원으로 산정하고 수량을 115개로 산정하여 1억 1,200만원을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하였음. 이는 당초 활동성과 내구성 등에 중점을 두어 단가가 973,400원인 A제품(체스트마운트, 충전기, 배터리, 외장메모리 포함)을 구매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임.

[보호장비 관련 2024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 내역 | 산출근거 | 원화 |
|---|---|---|
| [2200]체납·징수관리 | | 65,282,000 |
| [2232]체납정리지원 | | 5,216,000 |
| [301]압류재산공매 | | 3,593,000 |
| [210]운영비 | | 2,727,000 |
| [210-01]일반수용비 | | 2,264,000 |
| 1.공매행정비 | 14,326건 * 158,030원 = | 2,263,938 |
| 2.단수조정 | 62,000원= | 62 |
| [210-02]공공요금및제세 | | 463,000 |
| 1.대위등기비 | 168.8*2,744,000원= | 463,187 |
| 2.단수조정 | -187,000원= | △187 |
| [310]보전금 | | 754,000 |
| [310-03]포상금 | | 754,000 |
| 1.은닉재산신고포상금 | 16.7건 * 45150000원 = | 754,005 |
| 2.단수조정 | -5,000= | △5 |
| **[430]유형자산** | | **112,000** |
| **[430-01]자산취득비** | | **112,000** |
| **1.보호장비** | **115건*973,400원=** | **111,941** |
| **2.단수조정** | **59,000=** | **59** |

자료: 국세청

그러나 국세청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인 2024년 중 보호장비 구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A제품 사양은 배터리 지속시간이 40분으로 짧아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 현장징수활동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구매 사양을 결정한 후 해당 사양을 가진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에 공공 구매를 의뢰하였는 바, 조달청 입찰 결과 구매 단가가 예산에 편성된 단가 대비 38.1% 수준(371,000원)인 B제품으로 최종 낙찰되어 총 280개를 구매하였음. 이는 당초 계획되었던 수량 115개를 초과하는 물량(당초 계획 대비 243.4%)임.

[2024년도 보호장비 예산안 편성근거와 집행내역 비교]

| | 단가(①) | 수량(②) | 총액(①×②) |
|---|---|---|---|
| 예산안 편성근거(❶) | 973천원 | 115개 | 112백만원 |
| 집행내역(❷) | 371천원 | 280개 | 104백만원 |
| 비율(❷÷❶) | 38.1% | 243.4% |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국세청은 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필요한 장비의 사양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적정 예산액을 산출해야 함.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현장 징수활동에 적합한 바디캠 사양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디캠 단가가 과다산출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단가가 예상보다 낮아져 예산안에 편성된 수량보다 과다한 수량이 구매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4년 수색 등 현장징수활동 강화와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확대 등으로 소요 수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요 수량 반영을 위해 규격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구매·결정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수량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장비 구매를 위한 비용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여 단가가 과소·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5) 청원심의회 적정 예산 편성 및 사업 내실화 필요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현 황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은 성실납세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보호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발굴 및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3억 300만원으로, 이 중 12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의 내역사업인 「청원심의회 운영」 사업은 이·전용을 제외한 예산현액 3,90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 | 1,303 | - | - | - | 1,303 | 1,291 | - | 12 | 1,312 |
| - 납세자보호 위원회 운영 | 562 | - | - | - | 562 | 557 | - | 5 | 562 |
| - 세금포인트제도 홍보 | 200 | - | - | - | 200 | 211 | - | △11 | 425 |
| - 성실납세 지원 | 4 | - | - | - | 4 | 4 | - | - | 4 |
| -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 70 | - | - | - | 70 | 71 | - | 1 | 70 |
| -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77 | - | - | - | 77 | 96 | - | △19 | 169 |
|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8 | - | - | - | 8 | 8 | - | - | 8 |
| **- 청원심의회 운영** | **39** | - | - | - | **39** | **1** | - | **38** | **9** |
| - 민원봉사실 근무 환경 개선 | 343 | - | - | - | 343 | 343 | - | - | 65 |

< 검토의견 >

**국세청은 향후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청원심의회 제도를 납세자에게 적극적·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청원심의회 운영」 사업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청원법」이 전부개정되고 2021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청원시스템 구축 및 청원심의회 운영이 의무화[276]되면서 2023년부터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청원제도 및 청원심의회 개요]**

| |
|---|
| ○ 제도 개요: 청원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운영<br>○ 근거: 「청원법」 제8조<br>○ 청원제도 구분<br>- 일반청원: 청원접수 → 청원 조사 및 청원심의회 심의(필요시) → 청원 결과통지<br>- 공개청원: 청원접수 → 청원 공개여부결정(청원심의회 심의) → 국민의견수렴 → 청원 조사 및 청원심의회 심의(필요시) → 청원 결과통지<br>○ 청원심의회 개최 및 의결<br>- 청원접수 내용 중 청원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90일)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br>*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외부위원 수 전체 위원 수의 1/2 이상으로 구성 |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러나 2023년 청원심의회 제도 실시 이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편성 대비 저조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수요 대비 실제 청원

276)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회 개최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임.

2023년도의 경우 예산안 편성 당시 국세청은 본청 12회, 7개 지방청에서 총 84회, 133개 세무서에서 총 1,596회 등 연간 총 1,692회의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1억 6,000만원 감액되어 최종 1억 8,100만원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2023년 개최실적이 본청 2회, 지방청 1회, 세무서 6회 등 총 9회에 불과하여 1억 8,100만원 중 330만원만을 집행하였음.(집행률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도 국세청은 본청 12회, 7개 지방청에서 총 42회, 133개 세무서에서 총 200회 등 연간 총 254회의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2,100만원 감액되어 최종 3,900만원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2024년 개최실적이 본청은 없으며, 지방청 1회, 세무서 4회 등 총 5회에 불과하여 3,900만원 중 140만원만을 집행하였음.(집행률 3.6%)

**[2023년 및 2024년 청원심의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구분 | 예산안 산출내역 | | 예산 편성내역 | | 집행 내역 | | 집행률 (B/A) |
|---|---|---|---|---|---|---|---|---|
| | | 계획횟수 | 금액 | 계획횟수 | 금액 (A) | 개최횟수 | 금액 (B) | |
| 2023 | 본 청 | 12회 | 341 | 12회 | 181 | 2회 | 3.3 | 1.8% |
| | 지방청 | 84회 | | 84회 | | 1회 | | |
| | 세무서 | 1,596회 | | 666회 | | 6회 | | |
| 2024 | 본 청 | 12회 | 60 | 6회 | 39 | 0회 | 1.4 | 3.6% |
| | 지방청 | 42회 | | 21회 | | 1회 | | |
| | 세무서 | 200회 | | 133회 | | 4회 | | |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즉, 국세청에서 당초 예측한 수요에서 국회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예산조차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는데 조세불복, 고충, 국민신문고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기운영하고 있어서 청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아 예상보다 청원 건수 및 심의대상이 적어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 확인 결과, 청원심의회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별도로 홍보 활동을 실시한 바가 없으므로 납세자들이 동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이며[277],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예산 과다 편성 및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세청은 향후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청원심의회 제도를 납세자에게 보다 적극적·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277) 2025년부터는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임.

## (6)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인력의 수도권 편중 배치 부적절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개인납세국)

### < 현 황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납세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신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등 세금 신고방법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34억 1,300만원으로 이 중 3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3134-300) | 3,413 | - | - | - | 3,413 | 3,396 | - | 17 | 3,828 |

자료: 국세청

### < 검토의견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인력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지방청의 경우 위탁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세무서가 더 많아 지방의 세금신고 취약계층은 동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전자신고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영세·신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이 편성된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국세청은 동 사업을 용역계약업체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인력 배치는 위탁업체가 아닌 국세청이 직접 결정하여 배치하고 있음.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의 위탁인력을 배치함에 있어 수도권에만 집중

적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인력의 배치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금신고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를 채택한 바 있음.

그러나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위탁인력 130명 중 수도권(서울·중부·인천청)이 아닌 지방청에 배치된 인력은 단 32명으로 약 24.6%에 불과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위탁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 합계 | 사업본부 | 서울청 | 중부청 | 인천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 2021 | 100 | 7 | 46 | 25 | 22 | - | - | - | - |
| 2022 | 100 | 7 | 45 | 27 | 21 | - | - | - | - |
| 2023 | 100 | 7 | 45 | 25 | 23 | - | - | - | - |
| 2024 | 120 | 7 | 42 | 27 | 24 | 4 | 4 | 4 | 8 |
| 2025.6. | 130 | 7 | 41 | 27 | 23 | 6 | 6 | 6 | 14 |

자료: 국세청

또한, 세무서를 기준으로도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위탁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세무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업 효과의 형평성 논란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임.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중 세금신고지원 위탁인력이 배치된 세무서의 비율은 서울청 78.6%, 중부청 60.0%, 인천청 86.7%로 수도권의 경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대전청의 경우 35.3%로 17개 세무서 중 위탁인력이 배치된 세무서는 단 6개에 불과한 수준이며 광주청(40.0%), 대구청(42.9%)도 위탁인력이 배치된 세무서가 배치되지 않은 세무서에 비해 적은 상황임.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위탁인력이 배치된 세무서 현황]

(단위: 개, %)

| 연도 | 구분 | 서울청 | 중부청 | 인천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 2021 | 관할 전체(a) | 28 | 23 | 13 | 17 | 15 | 14 | 18 |
| | 위탁인력 배치(b) | 22 | 15 | 12 | - | - | - | - |
| | 배치비율(b/a) | 78.6 | 65.2 | 92.3 | 0.0 | 0.0 | 0.0 | 0.0 |
| 2022 | 관할 전체(a) | 28 | 24 | 14 | 17 | 15 | 14 | 18 |
| | 위탁인력 배치(b) | 23 | 16 | 11 | - | - | - | - |
| | 배치비율(b/a) | 82.1 | 66.7 | 78.6 | 0.0 | 0.0 | 0.0 | 0.0 |
| 2023 | 관할 전체(a) | 28 | 25 | 15 | 17 | 15 | 14 | 19 |
| | 위탁인력 배치(b) | 23 | 14 | 12 | - | - | - | - |
| | 배치비율(b/a) | 82.1 | 56.0 | 80.0 | 0.0 | 0.0 | 0.0 | 0.0 |
| 2024 | 관할 전체(a) | 28 | 25 | 15 | 17 | 15 | 14 | 19 |
| | 위탁인력 배치(b) | 22 | 15 | 13 | 2 | 2 | 2 | 4 |
| | 배치비율(b/a) | 78.6 | 60.0 | 86.7 | 11.8 | 13.3 | 14.3 | 21.1 |
| 2025. 6. | 관할 전체(a) | 28 | 25 | 15 | 17 | 15 | 14 | 19 |
| | 위탁인력 배치(b) | 22 | 15 | 13 | 6 | 6 | 6 | 11 |
| | 배치비율(b/a) | 78.6 | 60.0 | 86.7 | 35.3 | 40.0 | 42.9 | 57.9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23년까지는 비수도권에 위탁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나 동 사업의 목적 및 국회의 시정요구 채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위탁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관서별 민원량에 따라 위탁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였다고 설명함.

실제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지방청별 민원처리 실적은 서울청이나 중부청, 인천청과 같은 수도권의 민원처리 실적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청과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과 같은 비수도권 지방청의 경우 민원처리 실적 비중에 비해 위탁인력 배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및 2025년 지방청별 민원처리 실적 및 비중]

(단위: 명, 건, %)

| 연도 | 구분 | 서울청 | 중부청 | 인천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총합 |
|---|---|---|---|---|---|---|---|---|---|
| 2024 | 위탁인력 수 | 42 | 27 | 24 | 4 | 4 | 4 | 8 | 113 |
| | 총합 대비 | 37.2 | 23.9 | 21.2 | 3.5 | 3.5 | 3.5 | 7.1 | 100 |
| | 민원처리 실적 | 206,479 | 143,388 | 110,766 | 11,813 | 10,633 | 10,302 | 28,568 | 521,949 |
| | 총합 대비 | 39.6 | 27.5 | 21.2 | 2.3 | 2.0 | 2.0 | 5.5 | 100 |
| 2025. 6 | 위탁인력 수 | 41 | 27 | 23 | 6 | 6 | 6 | 14 | 123 |
| | 총합 대비 | 33.3 | 22.0 | 18.7 | 4.9 | 4.9 | 4.9 | 11.4 | 100 |
| | 민원처리 실적 | 110,695 | 79,445 | 62,202 | 13,588 | 13,901 | 15,124 | 26,033 | 320,988 |
| | 총합 대비 | 34.5 | 24.8 | 19.4 | 4.2 | 4.3 | 4.7 | 8.1 | 10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지방청별 납세인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전청 납세인원은 약 230만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광주청과 대구청의 납세인원은 각각 약 190만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함에도 위탁인력 배치 비중은 2025년 6월 기준 대전청·광주청·대구청 모두 4.9%에 불과하여 납세인원 비중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납세인원 현황]

(단위: 백만명, %)

| 연도 | 구분 | 서울청 | 중부청 | 인천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합계 |
|---|---|---|---|---|---|---|---|---|---|
| 2020 | 납세인원 수 | 4.5 | 6.6 | 1.0 | 1.8 | 1.6 | 1.6 | 2.8 | 18.8 |
| | 비중 | 23.9 | 35.1 | 5.3 | 9.6 | 8.5 | 8.5 | 14.9 | 100 |
| 2021 | 납세인원 수 | 4.8 | 4.3 | 2.8 | 1.9 | 1.7 | 1.7 | 2.9 | 20.0 |
| | 비중 | 24.0 | 21.5 | 14.0 | 9.5 | 8.5 | 8.5 | 14.5 | 100 |
| 2022 | 납세인원 수 | 5.3 | 5.0 | 3.2 | 2.1 | 1.8 | 1.8 | 3.1 | 22.4 |
| | 비중 | 23.9 | 22.5 | 14.4 | 9.5 | 8.1 | 8.1 | 14.0 | 100 |
| 2023 | 납세인원 수 | 5.7 | 5.5 | 3.5 | 2.3 | 1.9 | 1.9 | 3.3 | 24.1 |
| | 비중 | 23.7 | 22.8 | 14.5 | 9.5 | 7.9 | 7.9 | 13.7 | 100 |
| 2024 | 납세인원 수 | 5.3 | 5.4 | 3.5 | 2.3 | 1.9 | 1.9 | 3.3 | 23.5 |
| | 비중 | 22.6 | 23.0 | 14.9 | 9.8 | 8.1 | 8.1 | 14.0 | 10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의 목적이 세무서별로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세금취약계층

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점임을 고려할 때, 위탁인력의 배치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 지방청별 민원량, 지방청별 납세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사업의 지역 편차 논란을 줄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민원량이나 납세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인력을 적극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의무상환비율 제고 필요(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복지세정관리단실)

### < 현 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효율적인 상환관리업무를 통해 학자금 상환율을 높여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2억 3,4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3136-300) | 234 | - | - | - | 234 | 234 | - | - | 234 |

###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상환자 및 상환유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무상환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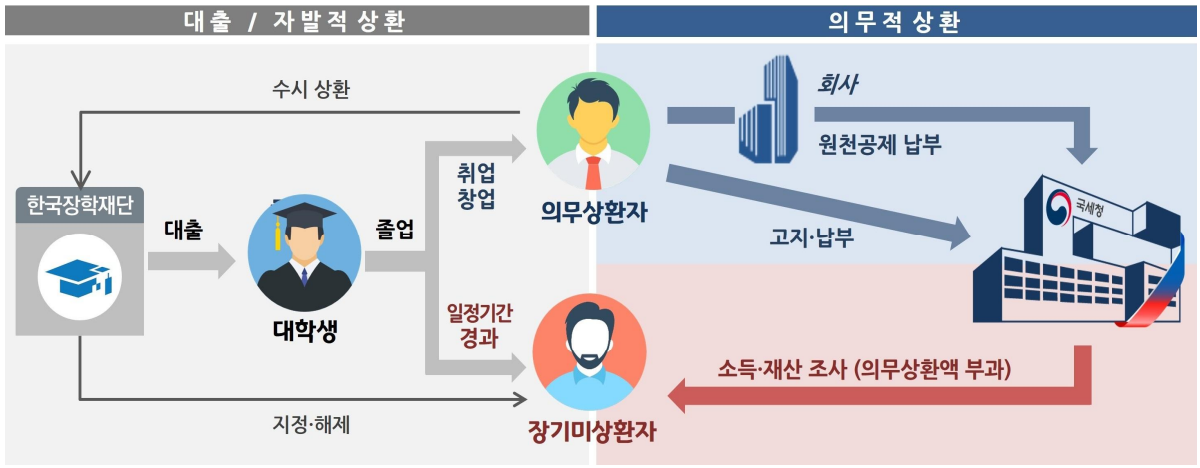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원리금을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되었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환의무 자동유예기간 중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다가 연간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278]하게 되며, 이 때

의무상환액은 상환기준소득(2024년 귀속 1,752만원, 총급여 환산시 2,679만원)을 초과하는 연간소득금액[279] 금액에 상환율[280]을 곱하여 산출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실행과 자발적 상환관리, 장기미상환자[281] 판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 및 한국장학재단이 판정한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등을 관리하고 있음[28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구조]**




< 한국장학재단 >
○ 학자금 대출신청 접수 및 **대출실행**, **자발적 상환**관리
○ **장기미상환자 판정** 및 일반대출 전환업무,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 관리업무

< 국 세 청 >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관리
- 근로·퇴직소득자에 대한 원천공제 상환관리
- 종합·양도소득자,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고지납부 상환관리
○ 체납처분 및 **장기미상환자 등 상환**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278)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만큼 조기상환(자발적 상환) 가능
279)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과 상속·증여에 의한 재산가액을 포함
280) -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0%
-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5%
-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 25%
281) 학부 졸업 후 3년 경과 시에도 상환내역이 없거나, 졸업 후 상환개시로부터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
(* 단, 2022.1.1. 개정된 법령 시행 후부터는 졸업 후 일정기간(5년, 15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최소상환비율(10%, 30%, 50%) 미만인 자)
28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이와 관련하여 학자금 의무상환대상의 상환실적을 보면 2020년 이후 미상환(체납) 인원 및 비율, 체납금액 및 비율, 평균 체납액 등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2020년 이후 연도별 학자금 의무상환대상 상환실적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상환대상* | | 상환실적 | | 미상환실적 | | | 미상환비율(%)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평균 체납액 | 인원 | 금액 |
| 2020년 | 259,219 | 309,492 | 222,983 | 266,841 | 36,236 | 42,651 | 1.18 | 14.0 | 13.8 |
| 2021년 | 273,322 | 333,696 | 233,977 | 285,581 | 39,345 | 48,115 | 1.22 | 14.4 | 14.4 |
| 2022년 | 291,830 | 356,886 | 247,614 | 301,696 | 44,216 | 55,190 | 1.25 | 15.2 | 15.5 |
| 2023년 | 318,395 | 403,693 | 267,279 | 337,548 | 51,116 | 66,145 | 1.29 | 16.1 | 16.4 |
| 2024년 | 328,539 | 427,469 | 274,298 | 353,435 | 54,241 | 74,034 | 1.36 | 16.5 | 17.3 |

* 전년도 미상환(체납) 포함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참고로, 미상환금액과 별개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으로 의무상환을 해야 하는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283], 상환유예자 인원 및 금액 역시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2020년 이후 연도별 학자금 상환유예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대학생 | | 실직·폐업·육아휴직 | | 합 계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2020년 | 1,071 | 1,375 | 6,731 | 9,445 | 7,802 | 10,820 |
| 2021년 | 1,053 | 1,436 | 6,628 | 9,378 | 7,681 | 10,814 |
| 2022년 | 1,133 | 1,698 | 7,892 | 12,272 | 9,025 | 13,970 |
| 2023년 | 1,950 | 3,335 | 10,067 | 15,937 | 12,017 | 19,272 |
| 2024년 | 2,338 | 4,189 | 11,753 | 19,095 | 14,091 | 23,284 |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283) 유예기간 : 대학생 4년, 실직·폐업·육아휴직자 2년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직·폐업 등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의 대출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284]로서 체납이 늘어나 주 채무자인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채무 불이행시) 국가가 대신하여 채권지급을 대납해야 하는 채무임. 특히, 기획재정부가 2024년 9월 제출한 「2024~202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4년 보증채무 잔액은 15.8조원(GDP 대비 0.6%) 수준이며, 2028년은 38.5조원(GDP 대비 1.3%)으로 국가 전체의 보증채무 잔액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증가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4~'28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24~'28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
| ▣ 보증채무 | 15.8 | 26.5 | 32.4 | 35.9 | 38.5 |
| (GDP 대비[1], %) | (0.6) | (1.0) | (1.2) | (1.2) | (1.3) |
| - 한국장학재단채권 | 10.6 | 11.5 | 12.1 | 12.7 | 13.2 |
|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 0.2 | - | - | - | - |
|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 5.0 | 15.0 | 20.3 | 23.2 | 25.3 |

1」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반영
자료 : 2024~202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기획재정부)

또한, 미상환(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잠재적인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출 이용 기회까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상환(체납) 관리를 통한 의무상환비율 제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상환자 및 상환유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환유예기간 만료 전에 상환유예자

284)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며, 필요시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졸업 이전부터 상환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상환비율 제고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8)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국제조세관리실)

### < 현 황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등 국제조세분야 업무를 위한 기본활동 수행, 국제회의 및 OECD 등 국제기구 참가와 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1억 4,200만원이며, 이 중 21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 중 2024년도 포상금 예산액은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 | 2,142 | - | - | - | 2,142 | 2,112 | - | 30 | 2,576 |
| - 포상금(310-03) | 29 | - | - | - | 29 | - | - | 29 | 29 |

### < 검토의견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국세청은 동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탈루 세원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285]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이는 거주자

28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임.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적발가능성 제고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286]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함)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287]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288]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포상금 예산의 연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2,700만원을 집행한 이후 최근 6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전액 불용되었음.

---

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286)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87)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8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⑰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 과태료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 도 | 신고건수 | 지급건수 | 예산액 | 지급액 |
|---|---|---|---|---|
| 2018 | 54 | 1 | 43 | 27 |
| 2019 | 53 | - | 29 | - |
| 2020 | 64 | - | 29 | - |
| 2021 | 75 | - | 29 | - |
| 2022 | 39 | - | 29 | - |
| 2023 | 25 | - | 29 | - |
| 2024 | 57 | - | 29 | - |

자료: 국세청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익명 제보, 과태료 미납, 소송 진행 등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가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있다는 입장임.[289]

신고포상금은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는 지속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연례적으로 집행액이 없다는 것은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2022회계연도 결산 당시 국회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는 등 포상금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포상금과 관련한 현행 지급기준 및 한도 등을 재검토하고 각 세부사업별 신고포상금 규모를 적정히 조정하는 등 포상금 예산의 연례적인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290]한 바 있으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요

289) 참고로, 2025년의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1건이 집행되었음.(2025년 5월)

290)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관련하여 홈페이지·발간책자 등을 이용해 지속 홍보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여 해외금융계좌 제보 및 포상금 지급실적을 제고하겠음'이라고 조치결과를 작성하였음.

건 및 절차, 지급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태료(벌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는 규정[291]을 1천만원 이상이면 지급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고 이와 같이 개정을 하더라도 부과된 과태료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292],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급이 불가하다는 등의 한계가 있어 보임.[293]

특히, 지급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20항제4호[294]에 따라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관련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해외금융계좌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마련하여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 건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고, 위반행위 제보에 필요한 자료의 기준 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과태료 2천만원 이상)을 완화하는 등 동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9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292) 2024년 신고된 57건 중 과태료 금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건은 없음.

293) 2024년 신고된 57건 중 익명신고 건은 16건임(28.1%).

29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 (9)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계약 주의 필요 (징세법무국 기본경비, 징세법무국)

< 현 황 >

「징세법무국 기본경비」는 국세징세업무를 담당하는 징세법무국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 9억 2,000만원 중 9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 중 2024년 일반수용비 예산현액 8억 8,000만원 중 8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징세법무국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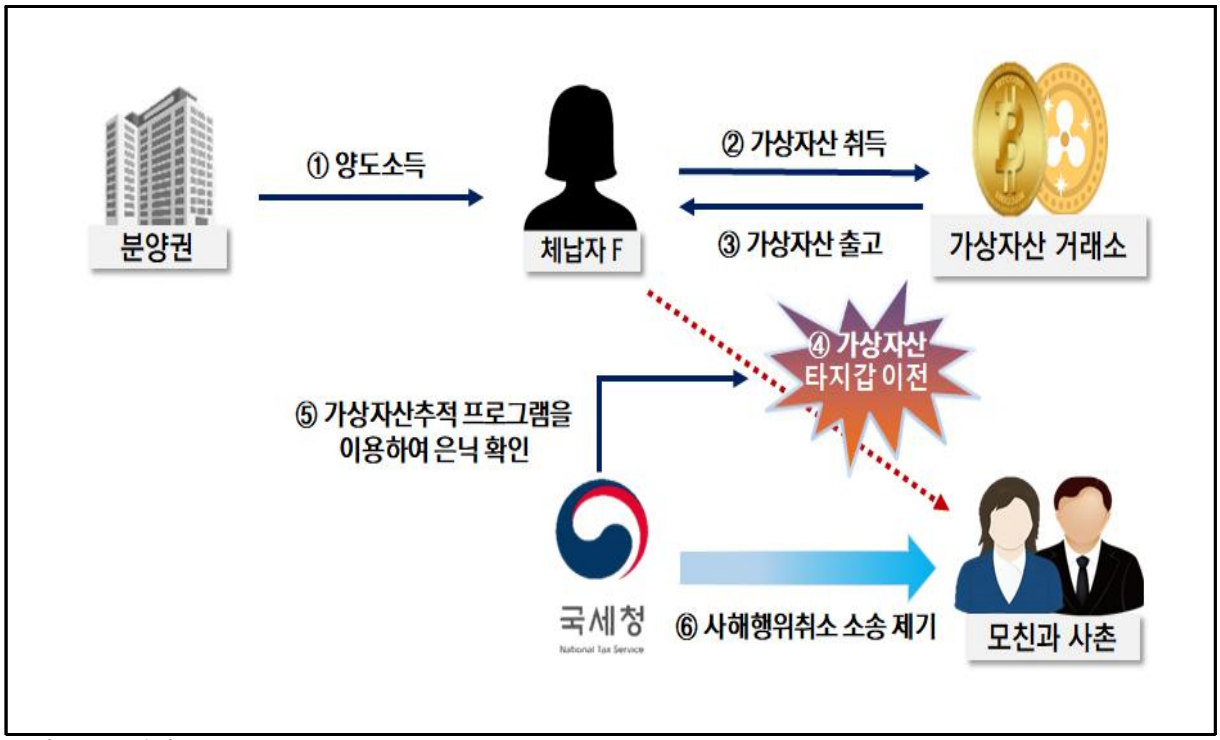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징세법무국 기본경비 (7111-254) | 956 | 956 | - | △36 | - | 920 | 919 | - | 1 | 986 |
| - 일반수용비 | 916 | 916 | - | △36 | - | 880 | 879 | - | 1 | 946 |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정보서비스(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이용하는 계약을 2024년 12월 말에 체결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사업을 위한 경비를 2024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 집행이므로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은 가상자산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전되는 블록체인 상의 이전내역을 데이터화하여 구축한 프로그램이며, 국세청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개인 전자지갑 등으로 출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 이를 추적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사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업체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의계약을 2024년 12월 10일에 체결하고, 2024년 12월 20일에 계약금 1,980만원을 지급하였음.[295]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계약 내역]

| 계약명 | 계약업체 | 계약방법<br>(비목) | 계약기간 | 계약금 | 계약금<br>지급일자 |
|---|---|---|---|---|---|
| 가상자산<br>추적프로그램 사용 | 웁살라젠 | 수의계약<br>(일반수용비) | 2025.1.1.~<br>2025.12.31. | 1,980만원 | 2024. 12. 2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동 계약은 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금은 2025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함. 그런데 국세청은 이를 2025년도 예산이 아닌 2024년도 예산으로 집행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예산 집행임.[296]

295)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을 이유로 계약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외 세부내용을 확인이 어려움.

29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1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업무를 최초로 시행하면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업무에 필요한 추적프로그램을 2021년 12월에 계약하여 즉시 활용하였고, 연단위 계약으로 부득이하게 매년 1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입장임.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계약금 현황]**

(단위: 만원)

| 계약기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계약금 | 1,980<br>(2021년 예산으로 집행) | 990<br>(2022년 예산으로 집행) | 1,980<br>(2023년 예산으로 집행) | 1,980<br>(2024년 예산으로 집행) |

주) 2023년은 예산 여건 상 접속아이디·교육시간을 다른 연도 계약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계약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즉, 최근 반복되고 있는 연례적인 연말 계약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은 국세청이 2022년도 사업을 위한 계약금을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대신 2021년도 잔여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임.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각 회계연도 사업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10)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영상 제작 관련 예산 집행 필요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자산과세국)

< 현 황 >

「자산과세국 기본경비」는 자산과세국 소관 업무인 재산제세 관련 신고 및 조사업무의 원활한 집행,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한 대응 등 자산과세국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 7억 3,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이 중 2024년 일반수용비 예산현액 7억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7111-257) | 732 | 732 | - | - | - | 732 | 732 | - | - | 732 |
| - 일반수용비 | 707 | 707 | - | - | - | 707 | 707 | - | - | 707 |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신고 가이드 영상 제작을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는데, 추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일반적 지출절차인 재무관 및 지출관 검토 이후 지출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는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297],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이러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 예산과목 | 용 도 |
|---|---|
| 인건비(110) |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
| 운영비(210) |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br>*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
| 여비(220) | 전체 |
| 특수활동비(230)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
| 업무추진비(240)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 직무수행경비(250) |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
| 안보비(270)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
| 정보보안비(280)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
| 보전금(310) |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br>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
| 민간이전(320) | 구호 및 교정비 |
| 유형자산(430) |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
| |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
| |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 시 공제되는 금액 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

「국고금 관리법」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을 집행

297)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이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채권자에게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되, 건당 500만원 이하 등 오집행 가능성이 적은 경비의 경우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없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지급하도록 하여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국세청은 2024년 말에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영상 제작을 위해 해당 지출을 안내·홍보물 제작비라고 판단하여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영상 건별로 제작경비를 지급하였음. 이에 따라 영상 당 제작경비가 50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국세청은 이를 전부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였는데, 영상제작업체인 ㈜동원피엔지 등 3개 업체에 지급된 경비는 총 4,533만 9,250원임.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영상 제작 관련 관서운영경비 지출 현황]**

(단위: 원)

| 세부사업 | 비목 | 수령인 | 지출일자 | 지출건명 | 지출액 |
|---|---|---|---|---|---|
|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210-01) | (주)동원피엔지 | 2024-11-20 | 종부세 가이드영상제작 -정기신고 | 4,972,000 |
| | | | 2024-11-27 | 동영상제작-과세물건 | 4,731,100 |
| | | | 2024-12-09 | 종부세 가이드영상제작 -모의계산 | 4,009,500 |
| | | | 2024-12-11 | 종부세가이드영상제작- 1세대1주택 특례신고 | 4,933,500 |
| | | | 2024-12-12 | 종부가이드영상제작 세율특례 | 4,840,000 |
| | | | 2024-12-13 | 종부세가이드영상제작 공동명의 안내 | 4,906,000 |
| | | | 2024-12-17 | 영상제작 -종부 합산배제 | 4,591,950 |
| | | | 소 계 | | 32,984,050 |
| | | 사단법인 동행플러스 완성보호 작업장 | 2024-11-28 | 영상제작_종부 납부유예 안내 | 3,687,200 |
| | | | 2024-12-11 | 종부세가이드영상제작- 종교과세 | 4,114,000 |
| | | | 소 계 | | 7,801,200 |
| | | 신진 | 2024-12-11 | 영상제작-홈페이지 게시용 | 4,554,000 |
| | | 합 계 | | | 45,339,25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영상 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용역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없음.

그리고 관련 영상을 영상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용역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경비가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초과함. 그리고 영상 제작에 소요된 경비는 4,533만 9,250원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영상 제작 용역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을 해야하는 용역임.[298]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동영상 제작 시,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일반적 지출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지출할 필요가 있음.

298) 다만, 해당 영상 제작업체 3곳은 각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음

## (11) 예산 배정 지연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 부적절 (부과·징수 지원, 지방청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각 지방청)

< 현 황 >

'부과·징수 지원' 사업은 국세 부과·징수업무와 비세원업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국내 출장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은 이·전용(감)된 1억 7,600만원을 제외한 총 451억 7,900만원이며, 42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각 지방청 기본경비' 사업은 각 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조직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서울청·중부청·인천청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부과·징수 지원(2131-300) | 45,355 | - | △176 | - | 45,179 | 42,163 | - | 3,016 | 43,087 |
| 서울청 기본경비(7124-250) | 16,972 | - | 896 | - | 17,868 | 17,849 | - | 19 | 17,436 |
| 중부청 기본경비(7124-251) | 11,898 | - | 1,269 | - | 13,167 | 13,148 | - | 19 | 13,886 |
| 대전청 기본경비(7124-252) | 7,515 | - | 478 | - | 7,993 | 7,989 | - | 4 | 8,377 |
| 부산청 기본경비(7124-255) | 10,483 | - | 89 | - | 10,572 | 10,546 | - | 26 | 11,049 |
| 인천청 기본경비(7124-256) | 7,444 | - | 203 | - | 7,647 | 7,542 | - | 105 | 8,136 |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예산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공공요금을 일반수용비나 시설장비유지비, 특근매식비 등으로 우선 집행한 후 추후에 과목정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 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부사업 간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세청의 공공요금 과목경정 내역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 등으로 공공요금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과목경정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청 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을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공공요금및제세로 과목을 변경한 사례가 7건 발생하였으며, 그 금액은 총 1,136만원임. 또한, 서울청은 기본경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본청 사업인 부과·징수지원 사업의 국내여비로 공공요금을 우선 집행한 후 공공요금및제세로 과목경정한 사례도 3건 발생하였으며, 그 금액은 총 2,389만원임.

**[2024년도 서울청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 현황]**

(단위: 원)

| 과목경정일자 | 기존세부사업 | 기존 세목 | 경정세부사업 | 경정세목 | 경정금액 |
|---|---|---|---|---|---|
| 2024-04-04 | 서울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2,615,120 |
| 2024-07-12 | 서울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278,800 |
| 2024-09-25 | 부과·징수지원 | 국내여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13,257,030 |
| 2024-12-11 | 서울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563,450 |
| 2024-12-11 | 부과·징수지원 | 국내여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10,599,810 |
| 2024-12-11 | 부과·징수지원 | 국내여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35,000 |
| 2024-12-13 | 서울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209,000 |
| 2024-12-13 | 서울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10,000 |
| 2024-12-13 | 서울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7,674,700 |
| 2024-12-19 | 서울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서울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5,00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부청의 경우 2024년에 국세청 본청 사업의 부과·징수지원 사업의 국내여비로 공공요금을 우선 집행한 후 과목경정을 한 건수가 228건이며, 그 금액은 4억 5,556만원에 달함. 또한, 중부청 기본경비 내 일반수용비나 시설장비유지비, 특근매식비에서 공공요금을 선집행한 후 과목경정을 한 건수도 157건이며 그 금액도 1억 5,002만원임. 뿐만 아니라 중부청은 예산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국세청 본청의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의 임차료로도 공공요금을 선집행한 후 과목경정한 것으로 나타남(총 6건, 2,672만원).

[2024년도 중부청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 현황]

(단위: 건, 원)

| 기존세부사업 | 기존 세목 | 경정세부사업 | 경정세목 | 총 경정건수 | 총 경정금액 |
|---|---|---|---|---|---|
| 부과·징수지원 | 국내여비 | 중부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228 | 455,555,530 |
| 중부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중부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151 | 140,754,710 |
| 중부청 기본경비 | 시설장비유지비 | 중부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1 | 218,960 |
| 중부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특근매식비 | 중부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5 | 9,049,920 |
| 임시청사 이전비용 | 임차료 | 중부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6 | 26,715,770 |
| 합계 | | | | 391 | 632,294,89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천청과 대전청, 부산청의 경우에도 2024년에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이 발생하였음. 인천청의 경우 과목경정은 총 59건이며, 총 금액은 1억 1,1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청의 경우 과목경정 건수는 총 71건, 금액은 총 8,337만원, 부산청의 경우 과목경정 건수 총 53건, 금액 총 2억 6,100만원에 해당함.

[2024년도 인천청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 현황]

(단위: 건, 원)

| 기존세부사업 | 기존 세목 | 경정세부사업 | 경정세목 | 총 경정건수 | 총 경정금액 |
|---|---|---|---|---|---|
| 부과·징수지원 | 국내여비 | 인천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7 | 18,693,240 |
| 인천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인천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51 | 86,562,500 |
| 인천청 기본경비 | 시설장비유지비 | 인천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1 | 6,385,690 |
| 합계 | | | | 59 | 111,641,43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대전청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 현황]

(단위: 건, 원)

| 기존세부사업 | 기존 세목 | 경정세부사업 | 경정세목 | 총 경정건수 | 총 경정금액 |
|---|---|---|---|---|---|
| 부과·징수지원 | 국내여비 | 대전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55 | 77,777,770 |
| 대전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대전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15 | 5,465,120 |
| 대전청 기본경비 | 시설장비유지비 | 대전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1 | 122,600 |
| 합계 | | | | 71 | 83,365,49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부산청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 현황]

(단위: 건, 원)

| 기존세부사업 | 기존 세목 | 경정세부사업 | 경정세목 | 총 경정건수 | 총 경정금액 |
|---|---|---|---|---|---|
| 부과·징수지원 | 국내여비 | 부산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5 | 36,041,430 |
| 부산청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부산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47 | 218,453,530 |
| 부산청 기본경비 | 시설장비유지비 | 부산청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 1 | 6,507,320 |
| 합계 | | | | 53 | 261,002,28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예산 배정이 지연되어 타 비목으로 우선 집행한 후 추후에 과목정정을 하는 것은 배정된 예산 및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299]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절치 않으며, 비록 추후에 과목경정을 하였다고는 하나 비목을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21조[300]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임.

특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그 지출이 필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요금이 미납되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 특성이 있어 지방청이 해당 예산 배정을 지연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일반 세무서 등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것임.

또한, 각 청의 기본경비를 넘어 부과·징수지원 사업이나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추후에 이를 경정하는 것은 세부사업을 구분하고 국회에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확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특히 이러한 과목경정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그 금액과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2년의 경우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 건수는 총

299)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00)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63건, 그 금액은 3억 5,566만원이며, 2023년은 266건, 8억 892만원, 2024년은 584건, 11억 2,355만원으로 총 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최근 3년간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공공요금 과목경정 현황]**

(단위: 건, 원)

| 구분 | 2022 | | 2023 | | 2024 | |
|---|---|---|---|---|---|---|
| | 과목경정 총 건수 | 과목경정 총 금액 | 과목경정 총 건수 | 과목경정 총 금액 | 과목경정 총 건수 | 과목경정 총 금액 |
| 서울청 | 31 | 55,093,140 | 38 | 252,306,730 | 10 | 35,247,910 |
| 중부청 | 12 | 37,250,070 | 57 | 73,295,330 | 391 | 632,294,890 |
| 인천청 | 36 | 68,522,460 | 63 | 99,152,990 | 59 | 111,641,430 |
| 대전청 | 44 | 97,485,650 | 68 | 155,653,560 | 71 | 83,365,490 |
| 광주청 | 10 | 21,752,590 | 3 | 15,381,752 | - | - |
| 대구청 | 28 | 60,575,480 | 3 | 12,380,240 | - | - |
| 부산청 | 2 | 14,976,360 | 34 | 199,848,760 | 53 | 261,002,280 |
| 합계 | 163 | 355,655,750 | 266 | 808,019,362 | 584 | 1,123,552,00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목경정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순 오류로 잘못 집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공요금 예산의 배정이 지연되거나 미배정되는 경우 세목조정이나 전용 조치 후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여 국세청은 예산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공공요금의 과목경정이 발생하여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위반 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세부사업을 혼용하여 집행하여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2) 관서운영경비 집행 주의 필요 (서울청 기본경비·중부청 기본경비·인천청 기본경비, 각 지방청)

### < 현 황 >

'각 지방청 기본경비' 사업은 각 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조직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서울청 기본경비'의 2024년 예산현액은 178억 6,800만원으로 178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중부청 기본경비'의 2024년 예산현액은 131억 6,700만원으로 13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인천청 기본경비'의 2024년 예산현액은 76억 4,700만원으로 75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서울청·중부청·인천청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서울청 기본경비(7124-250) | 16,972 | - | 896 | - | 17,868 | 17,849 | - | 19 | 17,436 |
| 중부청 기본경비(7124-251) | 11,898 | - | 1,269 | - | 13,167 | 13,148 | - | 19 | 13,886 |
| 인천청 기본경비(7124-256) | 7,444 | - | 203 | - | 7,647 | 7,542 | - | 105 | 8,136 |

자료: 국세청

### < 검토의견 >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잘못 집행하거나 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건을 분할하여 집행하는 등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1항[301]에서는 그 성격상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

30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단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관·지출관 간의 서류 송부, 계좌 이체 등 지출 절차를 간소화한 경비로,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므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에서는 금액과 범위를 제한하여 과다 집행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르면, 운영비(210목)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이 관서운영경비 범위에 해당되며, 유형자산(430목)의 경우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만이 관서운영경비 범위에 해당됨.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예산과목 | 용도 |
|---|---|
| 운영비(210) |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br>*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시험연구비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
| 유형자산(430) |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

그러나 서울청의 경우 2024년도 기본경비 집행에 있어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이를 관서운영경비로 잘못 집행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우선, 7월 18일과 10월 8일에 집행한 시설장비유지비 2건의 경우 운영비(210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한 문제가 있으며, 12월 19일에 집행한 복사기 구매의 경우 취득단가가 약 165만원으로 50만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관서운영경비로 이를 지출한 문제가 있음. 이는 「국고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302]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30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인천청의 경우 일반수용비(210-01목)를 집행하면서 500만원이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 일반 지출 절차가 아닌 관서운영경비로 이를 오집행하여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관서운영경비 범위를 벗어남에도 잘못 집행한 내역]**

(단위: 원)

| 소관청 | 지출일자 | 세목 | 건명 | 지급액 |
|---|---|---|---|---|
| 서울청 | 2024.7.1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작업 | 8,360,000 |
| | 2024.10.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쏠라필름 시공 | 5,632,000 |
| | 2024.12.19 | 자산취득비(430-01) | 영등포 복사기 구입 | 1,645,100 |
| 인천청 | 2024.7.22 | 일반수용비(210-01) | 광명-정밀안전점검 | 5,500,000 |

자료: 국세청

한편, 중부청의 경우 1월 22일 새해 떡국 행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식사·다과비 약 284만원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집행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수용비로 식사나 다과비를 지출한 내역]**

(단위: 원)

| 지출일자 | 사용가맹점 | 건명 | 지급액 |
|---|---|---|---|
| 2024.1.22 | 삼주외식산업(주) | 새해 떡국 행사 | 2,835,000 |

자료: 국세청

## (13)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행정지원인력 운영, 인사기획과)

< 현 황 >

「행정지원인력 운영」은 국세행정지원을 위해 청사미화, 시설관리, 사무원 등 공무직 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 및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임. 2024년 예산현액 435억 4,100만원 중 429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행정지원인력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행정지원인력 운영 (7138-304) | 43,541 | 43,541 | - | - | - | 43,541 | 42,909 | - | 632 | 48,034 |

동 사업은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지원 사업 352억 3,700만원, 사회서비스요원 운영지원 사업 43억 1,300만원, 청년인턴 사업[303] 39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304] 이 중 청년인턴 사업은 39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음.

[청년인턴 사업 예산안 편성 및 집행내역]

| 예산안 | 집행액 |
|---|---|
| ○ 3,991백만원<br>- 일용임금 : 3,345백만원(271명×2,060천원×6월)<br>- 일반수용비 : 26백만원<br>- 국내여비 : 247백만원(271명×76천원×12일)<br>- 고용부담금 : 373백만원(271명×229천원×6월) | ○ 3,917백만원<br>- 일용임금 : 3,290백만원(266명×2,061천원×6월)<br>- 일반수용비 : 169백만원<br>- 국내여비 : 85백만원(208명×68천원×6일)<br>- 고용부담금 : 373백만원(266명×1,402천원) |

303) 청년인턴 제도는 2023년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음

304) 청년인턴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1억 9,100만원 증액되었음

< 검토의견 >

**국세청 청년인턴 사업은 2024년에 전년도 대비 중도퇴사율이 높아지는 등 청년들에게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은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은 청년인턴 제도 취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본·지방청 정책부서에 청년인턴을 배치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등 부속 기관 견학, 가상 세무서 실습 등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도 취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입장임.

**① 그런데 2024년 국세청 청년인턴의 중도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모집인원 300명 중 296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였는데,[305] 이 중 91명이 중도퇴사를 하여 중도퇴사 비율이 30.7%에 달하였음. 이는 2023년도 청년인턴 중도퇴사 비율 24.7%에 비해 오히려 6.0%p 증가한 수치임.**

[2023년~2024년 청년인턴 중도퇴사 현황]

(단위: 명)

| 연도 | 계약기간 | 모집인원 | 합격인원(A) | 중도퇴사인원(B) | 중도퇴사 비율(B/A) |
|---|---|---|---|---|---|
| 2023년 | 5.8~11.7 | 200 | 115 | 26 | 22.6% |
| | 5.29~11.28 | 71 | 47 | 11 | 23.4% |
| | 6.30~12.29 | 38 | 28 | 10 | 35.7% |
| | 계 | | 190 | 47 | **24.7%** |
| 2024년 | 4.1~9.30 | 300 | 239 | 75 | 31.4% |
| | 5.20~11.19 | 62 | 57 | 16 | 28.1% |
| | 계 | | 296 | 91 | **30.7%** |

자료: 국세청

305) 국세청 청년인턴 사업은 2024년 모집인원이 전년대비 100명 많은 300명으로 증가하여 규모가 확대되었음

국세청은 청년인턴의 중도퇴사 사유에 대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아 중도퇴사가 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인지 직무불만족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306]인지 알 수 없어 성과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음.

**② 또한, 국세청이 지방청별로 2024년 7월~8월 사이에 실시한 청년인턴 워크숍에 실제 직무경험을 쌓는 것과 무관한 다수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인턴활동에 기여하지 못한 문제도 있음.**

모든 지방청의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는 면접 특강 및 자소서 강의 등 향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청년인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2024년 지방국세청별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 계획안]**

| 구분 | 일정 | 장소 | 주요 프로그램 | 비고 |
|---|---|---|---|---|
| 서울·인천청 | 7.11.(목)<br>~7.12.(금) | 서울청<br>인천청 | ▪ 성격유형검사, 면접특강<br>▪ 문서작성,인문학특강 | 2일<br>진행 |
| 중부청 | 7.5.(금) | 정부청사<br>정보센터 | ▪ 경제 및 인문학 특강<br>▪ 면접특강 | - |
| 대전청<br>(본청 포함) | (1차) 8.1.(목)<br>(2차) 8.30.(금) | (1차) 대전청<br>(2차) 벨트래리즈호텔(예정) | ▪ (1차) 명사특강, 자소서 강의<br>▪ (2차)면접특강,이미지메이킹 | 2회<br>진행 |
| 광주청 | 7.4.(목)<br>~7.5.(금) | 세미래<br>교육센터 | ▪ 취업 면접 특강<br>▪ 자소서클리닉<br>▪ 세무사강연 | - |
| 대구청 | 7.12.(금) | 대구청<br>대강당 | ▪ 취업 면접 특강<br>▪ 퍼스널 컬러 진단 등 | 일정 변경<br>가능 |
| 부산청 | 7.18.(목) | 아르피나<br>호텔(예정) | ▪ 취업 면접 특강<br>▪ 팀빌딩활동 | - |

자료: 국세청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년인턴제도는 ①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②정책과정 경험 및 참여 통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려는 취지임.

3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일경험으로서의 청년인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024년 12월)에 따르면 정부청년인턴제 참여자들이 청년인턴제에 불만족한 이유는 ①보안 문제로 인한 제약, ②전공과 무관한 업무, ③하는 일이 없음 등으로 조사되었음

그리고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기관별 교육에 대해 부처별 조직 및 공직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배정 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도록 적시하고 있음. 그리고 기관별로 문서 작성 및 보고요령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부처별 특성에 따라 직무공통 교육, 실무체험(OJT) 등 자율교육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즉, 해당 가이드라인은 청년인턴에 대해 공직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특강·취업 면접 및 자소서 등에 대한 교육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서 청년인턴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함.

청년인턴제도는 직접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로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2024년 7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직무교육과 무관한 퍼스널 컬러 진단·쿠키 베이킹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대구지방국세청에서 7월 12일에 진행한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도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

**[2024년 광주청 청년인턴 워크숍 계획 세부일정]**

| 구 분 | | 1일차 | 2일차 |
|---|---|---|---|
| 1 | 09:00~10:00 | 아이스 브레이킹<br>팀빌딩<br>(신수진 강사)<br>「09:30~11:30」 | 르뱅쿠키 베이킹<br>(이나윤 강사)<br>「09:00~11:00」 |
| 2 | 10:00~11:00 | | |
| 3 | 11:00~12:00 | 청장님 당부 말씀, 기념사진 촬영<br>도시락 오찬<br>「11:30~13:00」 | 부가세 신고 특강<br>(부가세과 염지영 팀장)<br>「11:00~12:00」 |
| 4 | 12:00~13:00 | | 점심식사 - 도시락<br>「12:00~13:00」 |
| 5 | 13:00~14:00 | 국세청과 세무조사<br>(김용주 조사팀장)<br>「13:00~14:00」 | 취업특강 자기소개서<br>(황혜진 강사)<br>「13:00~15:00」 |
| 6 | 14:00~15:00 | 취업 특강<br>면접 기본<br>(안민진 강사)<br>「14:00~16:00」 | |
| 7 | 15:00~16:00 | | 세무사 강연<br>(손인선 세무사)<br>「15:00~16:30」 |
| 8 | 16:00~17:00 | 퍼스널 칼라 진단<br>(김태리 강사)<br>「16:00~18:00」 | |
| 9 | 17:00~18:00 | |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향후 청년인턴 사업이 참여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참여자 중도퇴직 시 퇴직사유를 조사하여 향후 개선방안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관세청 소관

# 가. 결산 개요

## (1) 세입 결산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 업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임[307].

관세청이 징수하는 금액 중 관세와 수입 관련 내국세는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고, 벌금·몰수금·가산금 등 그 밖의 세외수입이 관세청의 세입이 됨.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200억 7,200만원이며, 373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3년도 대비 수납액이 376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사유는 가산금 수납액이 44억 3,800만원, 면허료및수수료 수납액이 350억 3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관세청 세입결산 개요]**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결산(A) | 2024년 예산액 | | 결산(B) | 증감 (B-A) | 증감율 (B-A)/A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 | |
| ○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등) | 3.4 | 4 | 4 | 5 | 1.6 | 47.1 |
| ○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벌금·과태료 등) | 226 | 180 | 180 | 192 | △34 | △15.0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면허료및수수료 등) | 521 | 1,016 | 1,016 | 176 | △345 | △66.2 |
| ○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 0.1 | 0.1 | 0.1 | 0.2 | 0.1 | 100.0 |
| 합 계 | 750 | 1,201 | 1,201 | 373 | △377 | △55.1 |

307)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 (2) 세출 결산

2024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623억 7,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7,600만원이 포함된 6,695억 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92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의 집행률을 보임.

2024년도 이용액은 8억 400만원으로 주된 사유는 전국세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 6억원, 민간인 밀수신고 포상금 부족분 충당 2억 400만원이며, 전용액은 14억 2,900만원으로 주된 전용사유는 전국세관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부족분 충당 7억 7,000만원, 인천공항세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 4억 8,000만원,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충당 4,400만원 등에 기인한 것임.

불용액은 전년도 불용액 147억 5,900만원 대비 △33.2% 감소한 98억 6,1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92억 9,800만원,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5억 6,300백만원에 기인함.

**[2024년도 관세청 세출결산 개요]**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결산(A) | 2024년 | | | 증감 (B-A) | 증감율 (B-A)/A |
|---|---|---|---|---|---|---|
| | | 예산액 | | 결산(B) |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 | |
| ○ 인건비 | 3,331 | 3,462 | 3,462 | 3,437 | 106 | 3.2 |
| ○ 기본경비 | 345 | 345 | 345 | 348 | 3 | 0.9 |
| ○ 사업비 | 2,546 | 2,817 | 2,817 | 2,808 | 262 | 10.3 |
| 합 계 | 6,222 | 6,624 | 6,624 | 6,592 | 370 | 5.9 |

##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 | | | 2025 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수납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총 계** | **58,217** | **75,015** | **120,072** | **120,072** | **37,345** | **31.1** | **100,291** |
| **51항 관유물 대여료** | 343 | 342 | 393 | 393 | 507 | 129.0 | 393 |
| 토지대여료(51-511) | 37 | 81 | 43 | 43 | 58 | 135.5 | 43 |
| 건물대여료(51-512) | 306 | 261 | 350 | 350 | 449 | 128.2 | 350 |
|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11 | 2 | 8 | 8 | 5 | 61,9 | 8 |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7 | 2 | 8 | 8 | 2 | 25.0 | 8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4 | - | - | - | 3 | - | - |
| **56항 벌금 및 몰수금** | 17,434 | 20,293 | 15,984 | 15,984 | 21,449 | 134.2 | 21,534 |
| 벌금및과료(56-561) | 2,166 | 3,980 | 2,432 | 2,432 | 4,330 | 178.0 | 4,339 |
| 몰수금 및 추징금(56-562) | 1,412 | 1,539 | 1,793 | 1,793 | 1,409 | 78.6 | 2,312 |
| 과태료(56-563) | 10,421 | 10,780 | 8,892 | 8,892 | 12,156 | 136.7 | 10,917 |
| 징계부과금(56-564) | 4 | 1 | 10 | 10 | 1 | 15.0 | 10 |
| 과징금(56-565) | 3,431 | 3,993 | 2,857 | 2,857 | 3,553 | 124.4 | 3,956 |
| **57항 변상금 및 위약금** | 201 | 20 | 39 | 39 | 37 | 95.6 | 39 |
| 위약금(57-572) | 201 | 20 | 39 | 39 | 37 | 95.6 | 39 |
| **58항 가산금** | 1,972 | 1,675 | 1,319 | 1,319 | -2,763 | -209.5 | 1,042 |
| 가산금(58-581) | 1,972 | 1,675 | 1,319 | 1,319 | -2,763 | -209.5 | 1,042 |
| **59항 기타 경상이전수입** | 717 | 600 | 700 | 700 | 523 | 74.8 | 700 |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717 | 600 | 700 | 700 | 523 | 74.8 | 700 |
|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 36,926 | 51,539 | 101,020 | 101,020 | 16,537 | 16.4 | 75,398 |
| 면허및수수료(65-651) | 36,926 | 51,539 | 101,020 | 101,020 | 16,537 | 16.4 | 75,398 |
| **69항 잡수입** | 584 | 534 | 603 | 603 | 1,026 | 170.1 | 1,171 |
| 기타잡수입(69-691) | 584 | 534 | 603 | 603 | 1,026 | 170.1 | 1,171 |
| **71항 고정자산 매각대** | 28 | 11 | 6 | 6 | 24 | 402.3 | 6 |
| 기계기구매각대(71-712) | 26 | 4 | 6 | 6 | 3 | 44.0 | 6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713) | 2 | 7 | - | - | 21 | - | - |

## 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총 계** | 589,269 | 622,173 | 662,375 | 662,375 | 659,249 | 99.5 | 658,250 |
| **1100 수출입통관** | 41,641 | 52,765 | 31,499 | 31,499 | 30,527 | 96.9 | 30,686 |
| 1131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 41,641 | 52,765 | 31,499 | 31,499 | 30,527 | 96.9 | 30,686 |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1131-301) | 8,916 | 9,563 | 2,735 | 2,735 | 2,559 | 93.6 | 2,462 |
| 특송화물 통관지원 (1131-302) | 6,007 | 6,756 | 5,439 | 5,439 | 5,385 | 99.0 | 6,582 |
|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 도입 (1131-303) | 14,351 | 24,252 | - | - | - | - | - |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1131-304) | 7,321 | 6,678 | 6,693 | 6,693 | 6,554 | 97.9 | 6,705 |
| 공항만 운영지원 (1131-305) | 5,045 | 5,515 | 16,632 | 16,632 | 16,029 | 96.4 | 16,937 |
| **1200 관세심사** | 5,756 | 6,284 | 6,331 | 6,331 | 6,061 | 95.7 | 6,387 |
| 1231 관세탈루심사지원 | 5,756 | 5,756 | 6,331 | 6,331 | 6,061 | 95.7 | 6,387 |
| 관세탈루심사 (1231-300) | 2,093 | 2,050 | 2,246 | 2,246 | 2,261 | 100.7 | 2,259 |
| 불법위해물품안전관리 (1231-301) | 3,146 | 3,675 | 3,623 | 3,623 | 3,388 | 93.5 | 3,623 |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1231-302) | 517 | 559 | 462 | 462 | 457 | 98.9 | 505 |
| **1300 밀수조사단속** | 9,799 | 7,994 | 6,148 | 6,148 | 6,150 | 100.0 | 5,926 |
| 1331 밀수단속지원 | 9,207 | 7,243 | 5,407 | 5,407 | 5,441 | 100.6 | 5,185 |
| 밀수단속 (1331-300) | 9,207 | 7,243 | 5,407 | 5,407 | 5,441 | 100.6 | 5,185 |
| 1333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 | 592 | 701 | 741 | 741 | 709 | 95.7 | 741 |
|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지원 (1333-304) | 592 | 701 | 741 | 741 | 709 | 95.7 | 741 |
| **1400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 86,828 | 85,601 | 122,273 | 122,273 | 119,734 | 97.9 | 107,429 |
| 1441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 | 53,656 | 60,086 | 79,435 | 79,435 | 78,229 | 98.5 | 77,105 |
|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1441-500) | 53,426 | 58,914 | 79,148 | 79,148 | 77,943 | 98.5 | 63,638 |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1441-501) | 230 | 1,172 | 287 | 287 | 287 | 100.0 | 287 |
|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 - | - | - | - | - | - | 13,180 |

| 구 분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1441-503) | | | | | | | |
| 1442 관세행정연구개발(R&D) | 4,417 | 4,584 | 4,379 | 4,379 | 4,368 | 99.7 | 3,811 |
| 관세행정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1442-530) | 4,417 | 4,584 | 3,600 | 3,600 | 3,600 | 100.0 | - |
| 관세행정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R&D)(1442-530) | - | - | - | - | - | - | 2,135 |
|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1442-532) | - | - | 500 | 500 | 500 | 100.0 | 1,500 |
| 스마트 세관 기술지원 (R&D)(1442-533) | - | - | 279 | 279 | 268 | 96.1 | 176 |
| 1443 최첨단장비 도입운영 | 28,755 | 20,931 | 38,459 | 38,459 | 37,137 | 96.6 | 26,513 |
| 통관감시장비현대화 (1143-300) | 18,818 | 11,325 | 27,039 | 27,039 | 26,758 | 99.0 | 15,666 |
| 통관감시장비운영관리 (1443-301) | 9,937 | 9,606 | 11,420 | 11,420 | 10,379 | 90.9 | 10,847 |
| **1500 국제관세협력** | 15,452 | 19,246 | 21,920 | 21,920 | 21,528 | 98.2 | 19,867 |
| 1531 FTA 및 국제협력 지원 | 15,452 | 19,246 | 21,920 | 21,920 | 21,528 | 98.2 | 19,867 |
| FTA 및 국제협력 (1531-300) | 7,771 | 7,643 | 2,946 | 2,946 | 2,815 | 95.6 | 2,149 |
| FTA 원산지 위험관리 (1531-300) | 847 | 846 | 847 | 847 | 843 | 99.5 | 847 |
|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1531-300) | 3,834 | 7,757 | 10,890 | 10,890 | 10,633 | 97.6 | 8,526 |
|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1531-3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100.0 | 2,500 |
|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1531-304) | - | - | 4,237 | 4,237 | 4,237 | 100.0 | 5,845 |
| **7100 관세행정지원** | 420,310 | 440,269 | 462,595 | 462,595 | 464,057 | 100.3 | 474,770 |
| 7101 인건비 | 318,234 | 329,089 | 341,954 | 341,954 | 339,646 | 99.3 | 353,906 |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0) | 318,234 | 329,089 | 341,954 | 341,954 | 339,646 | 99.3 | 353,906 |
| 7111 본청기본경비 | 11,656 | 11,893 | 12,276 | 12,276 | 11,778 | 95.9 | 12,490 |
|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5,081 | 5,022 | 5,167 | 5,167 | 5,054 | 97.8 | 5,187 |

| 구 분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7111-200) | | | | | | | |
| 본부기본경비 (7111-250) | 4,751 | 4,912 | 5,226 | 5,226 | 4,904 | 93.8 | 5,377 |
| 통관국기본경비 (7111-251) | 338 | 356 | 339 | 339 | 338 | 99.7 | 342 |
| 심사국기본경비 (7111-252) | 484 | 526 | 507 | 507 | 507 | 100.0 | 509 |
| 조사국기본경비 (7111-253) | 327 | 338 | 342 | 342 | 340 | 99.4 | 344 |
| 정보데이터정책관기본경비 (7111-254) | 296 | 333 | 318 | 318 | 308 | 96.9 | 321 |
| 국제관세협력국기본경비 (7111-255) | 379 | 406 | 377 | 377 | 326 | 86.5 | 410 |
|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 18,332 | 21,505 | 21,177 | 21,177 | 21,927 | 103.5 | 21,780 |
| 소속기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0) | 3,485 | 4,210 | 3,374 | 3,374 | 3,166 | 93.8 | 3,404 |
| 서울본부기본경비 (7118-251) | 2,835 | 3,998 | 3,980 | 3,980 | 4,114 | 103.4 | 3,983 |
| 인천공항기본경비 (7118-252) | - | - | 2,949 | 2,949 | 3,504 | 118.8 | 3,026 |
| 부산본부기본경비 (7118-253) | 3,710 | 4,150 | 4,003 | 4,003 | 4,002 | 100.0 | 4,102 |
| 인천본부 기본경비 (7118-254) | 3,773 | 4,776 | 2,077 | 2,077 | 2,354 | 113.3 | 2,310 |
| 대구본부기본경비 (7118-255) | 1,553 | 1,157 | 1,294 | 1,294 | 1,226 | 94.7 | 1,312 |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1,821 | 1,914 | 2,034 | 2,034 | 2,049 | 100.7 | 2,059 |
| 중앙관세분석소기본경비 (7118-257) | 266 | 300 | 308 | 308 | 323 | 104.9 | 309 |
| 관세평가분류원기본경비 (7118-258) | 253 | 278 | 350 | 350 | 324 | 92.6 | 352 |
| 평택직할 기본경비 (7118-260) | 636 | 721 | 808 | 808 | 864 | 106.9 | 923 |
| 7131 관세정책지원 | 34,445 | 37,184 | 42,587 | 42,587 | 40,592 | 95.3 | 41,904 |
| 관세행정활동지원 | 16,470 | 18,770 | 19,089 | 19,089 | 18,045 | 94.5 | 19,089 |

| 구 분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7131-301) | | | | | | | |
| 관세행정운영지원 (7131-351) | 5,326 | 5,289 | 5,362 | 5,362 | 5,419 | 101.1 | 5,512 |
| 관세행정인력지원 (7131-352) | 12,649 | 13,126 | 18,136 | 18,136 | 17,127 | 94.4 | 17,303 |
| 7132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 36,335 | 38,926 | 43,368 | 43,368 | 49,013 | 113.0 | 42,517 |
| 국제공항만운영지원 (7132-300) | 22,318 | 22,445 | 24,783 | 24,783 | 24,647 | 99.5 | 27,652 |
| 청사시설관리 (7132-440) | 14,017 | 10,886 | 10,294 | 10,294 | 10,402 | 101.0 | 11,194 |
| 부산세관 청사개선 (7132-441) | - | 4,154 | 6,697 | 6,697 | 12,380 | 184.9 | 2,058 |
| 관세행정 안전관리지원 (7132-442) | - | 1,441 | 1,594 | 1,594 | 1,584 | 99.4 | 1,613 |
| 7140 납세자권익보호 | 378 | 372 | 333 | 333 | 331 | 99.4 | 1,273 |
| 납세자권익보호 (7140-300) | 378 | 372 | 333 | 333 | 331 | 99.4 | 1,273 |
| 7150 송무수행 | 930 | 1,299 | 900 | 900 | 770 | 85.6 | 900 |
| 송무수행 비용지원 (7150-400) | 930 | 1,299 | 900 | 900 | 770 | 85.6 | 900 |
| **7200 관세인재개발원** | 8,849 | 9,392 | 10,727 | 10,727 | 10,373 | 96.7 | 12,261 |
| 7201 관세인재개발원인건비 | 3,706 | 4,000 | 4,215 | 4,215 | 4,026 | 95.5 | 3,855 |
| 인재개발원인건비 (7201-100) | 3,706 | 4,000 | 4,215 | 4,215 | 4,026 | 95.5 | 3,855 |
| 7211 관세인재개발원기본경비 | 931 | 1,058 | 1,061 | 1,061 | 1,052 | 99.2 | 1,063 |
| 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 (7211-200) | 101 | 95 | 118 | 118 | 110 | 93.2 | 118 |
| 인재개발원기본경비 (7211-250) | 830 | 963 | 943 | 943 | 942 | 99.9 | 945 |
| 7241 관세인재개발원운영 | 4,212 | 4,335 | 5,451 | 5,451 | 5,295 | 97.1 | 7,343 |
|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7241-351) | 4,212 | 4,335 | 5,451 | 5,451 | 5,295 | 97.1 | 7,343 |

## 나. 검토의견

### (1)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의 근본적 개선 위해 유관부처와 인적·물적 제도개선 필요 (과태료, 심사국)

< 현 황 >

「과태료」는 「관세법」 제277조(특허사항위반, 용도세율적용위반, 적하목록 미제출 등), 「외국환거래법」 제32조(지급절차 위반, 지급수단 허위 수출입신고 등) 및 「대외무역법」 제59조(원산지표시단속 관련 검사 거부 등)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임. 2024년 예산현액은 88억 9,200만원으로, 876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21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49억 8,0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5억 4,2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음.

[2024회계연도 과태료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과태료 (56-563) | 8,892 | 8,892 | - | 8,892 | 87,678 | 12,156 | 74,980 | 542 | 10,917 |

< 검토의견 >

과태료의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관세청의 연례적인 수납률 제고방안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의 임시조직 구성, 과중한 징수·체납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징수실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이 수납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최근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국회는 2020·2021·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관세청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및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과태료 일제정리·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개정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함.

**[과태료·과징금 관련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유형]**

| 회계연도 | 시정요구사항 | 유형 |
|---|---|---|
| 2020 | 관세청은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징수실적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 | 제도개선 |
| 2021 | 관세청은 납세의무자 재산조사 강화, 미수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내실화 등 과태료 · 과징금 수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개선 |
| 2023 | 관세청은 미수납 과태료·과징금·가산금에 대한 납부독려, 재산조사 강화, 정리기간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개선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태료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72.9%였던 과태료 수납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13.9% 수준에 불과한 모습을 보임. 특히 관세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대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인데, 동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71.3%였던 수납률이 2024년에는 11.0%수준으로 60.3%p 급감한 모습을 보임.

**[2015~2024년 관세청 과태료 부과징수내역[308]]**

(단위 : 백만원, %)

| 연도 | 위반법률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수납률 |
|---|---|---|---|---|---|---|
| 2015년 | 관세법 | 3,172 | 2,792 | 380 | - | 88.0 |
| | **외국환거래법** | **16,529** | **11,781** | **4,693** | **-** | **71.3** |
| | 기타 | 665 | 279 | 385 | - | 42.0 |

308)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징수 '건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다는 입장임.

| | | | | | | |
|---|---|---|---|---|---|---|
| | 합계 | 20,367 | 14,853 | 5,458 | 55 | 72.9 |
| 2016년 | 관세법 | 2,164 | 1,871 | 293 | - | 86.5 |
| | **외국환거래법** | **13,298** | **7,866** | **5,227** | **-** | **59.2** |
| | 기타 | 493 | 288 | 204 | - | 58.4 |
| | 합계 | 15,954 | 10,025 | 5,774 | 155 | 62.8 |
| 2017년 | 관세법 | 2,094 | 1,748 | 346 | - | 83.5 |
| | **외국환거래법** | **9,855** | **3,791** | **6,064** | **-** | **38.5** |
| | 기타 | 1,376 | 550 | 826 | - | 40.0 |
| | 합계 | 13,325 | 6,089 | 7,152 | 84 | 45.7 |
| 2018년 | 관세법 | 3,598 | 2,979 | 619 | - | 82.8 |
| | **외국환거래법** | **12,293** | **3,889** | **8,404** | **-** | **31.6** |
| | 기타 | 478 | 343 | 135 | - | 71.8 |
| | 합계 | 16,369 | 7,211 | 8,977 | 181 | 44.1 |
| 2019년 | 관세법 | 2,545 | 2,232 | 313 | - | 87.7 |
| | **외국환거래법** | **14,242** | **5,750** | **8,492** | **-** | **40.4** |
| | 기타 | 745 | 591 | 154 | - | 79.3 |
| | 합계 | 17,532 | 8,573 | 8,897 | 62 | 48.9 |
| 2020년 | 관세법 | 2,137 | 1,662 | 475 | - | 77.8 |
| | **외국환거래법** | **13,064** | **2,824** | **10,240** | **-** | **21.6** |
| | 기타 | 860 | 794 | 66 | - | 92.3 |
| | 합계 | 16,061 | 5,280 | 10,644 | 137 | 32.9 |
| 2021년 | 관세법 | 2,303 | 1,561 | 742 | - | 67.8 |
| | **외국환거래법** | **38,033** | **3,435** | **33,400** | **-** | **9.0** |
| | 기타 | 1,133 | 283 | 850 | - | 25.0 |
| | 합계 | 41,469 | 5,279 | 34,992 | 1,198 | 12.7 |
| 2022년 | 관세법 | 3,724 | 1,913 | 1,811 | - | 51.4 |
| | **외국환거래법** | **49,863** | **7,397** | **42,273** | **-** | **14.8** |
| | 기타 | 1,300 | 1,111 | 189 | - | 85.5 |
| | 합계 | 54,887 | 10,421 | 44,273 | 194 | 19.0 |
| 2023년 | 관세법 | 2,573 | 2,181 | 352 | - | 84.8 |
| | **외국환거래법** | **60,781** | **8,170** | **52,528** | **-** | **13.4** |
| | 기타 | 1,079 | 429 | 635 | - | 39.8 |
| | 합계 | 64,433 | 10,780 | 53,515 | 138 | 16.7 |
| 2024년 | 관세법 | 2,895 | 2,202 | 683 | - | 76.1 |
| | **외국환거래법** | **83,962** | **9,257** | **74,179** | **-** | **11.0** |
| | 기타 | 820 | 696 | 118 | - | 84.9 |
| | 합계 | 87,678 | 12,156 | 74,980 | 542 | 13.9 |

자료: 관세청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관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규자가 자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잠적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징수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는 입장임.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309]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309) **「외국환거래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세청장은 동 법에 따른 과태료 중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및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등 전반적인 환전업무·수출입거래 등의 의무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대한 징수권한을 위임받고 있어, 과태료 징수담당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식견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검사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7.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8.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또한, 상기 표와 같이 201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165억원 → 840억원)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15배 이상 증가(47억원 → 742억원)한 미수납액을 감안한다면, 과태료 징수·체납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런데, 관세청은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업무를 심사국 세원심사과 내 하나의 계[310]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울본부세관과 부산본부세관의 체납관리과에서만 관세, 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에 대한 관리 실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관세청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수차례 법령 개정건의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할 뿐 건의사항 수용여부는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어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 관세청은 2022년 11월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제31조를 참고하여 '과태료 납기전 징수·부과전 압류 시행조항'을 신설하고(안 제24조[311]의5[312]), 「관세법」 제116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114조를 참고하여 '고액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을 신설(안 제54조[313]의2[314])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건의서를 주무

---

310) 징수·체납계 : 계장 1인, 징수담당 주무관 1인, 체납담당 주무관 1인

3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건의안」 제2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 및 압류)** ① 행정청은 과태료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당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다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가 확정된 후에는 그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3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부처인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나 제21대국회 당시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또는 발의되지 않았고, 2024년 12월 「관세법」 제116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114조를 참고하여 '고액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54조의2), 「관세법」 제116조의5 및 「국세징수법」 제113조를 참고하여 '고액 과태료 체납자 출국금지 조항'을 신설(안 제54조의3[315])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건의서도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나, 2025년 7월 현재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거나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316].

이렇듯, 최근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는 과태료 수납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경우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세청은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인 「외국환거래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와의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건의안」 제54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행정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태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해 행정청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부과관청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건의안」 제54조의3(출국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체납 과태료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6)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세청에 개정건의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가 적시에 입법화되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거 대비 증가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의 규모를 감안할 때, 과중한 과태료 징수·체납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음.

## (2)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연례적 과다 추계 문제 (면허료 및 수수료, 관세청 심사국, 기획재정부 세제실)

< 현 황 >

‘면허료 및 수수료’는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서 발급에 수반되는 수수료 등의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항목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품목분류사전심사수수료, 개항외출입허가수수료・보세구역외장치허가・파출검사・임시개청・정시간외 물품취급 수수료 등이 계상됨.

2024년도 예산현액 1,010억 2,000만원으로, 165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65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7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미수납 사유는 납기미도래 건이 100만원, 체납정리중인 건이 4,600만원임.

수납액 165억 3,700만원 중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152억 300만원으로 대부분(91.9%)을 차지함.

[2024회계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면허료 및 수수료 (56-563) | 101,020 | 101,020 | - | 101,020 | 16,584 | 16,537 | 47 | - | 75,398 |

< 검토의견 >

**연례적으로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세입예산은 과다 편성되고 있고 2024년에는 844억 8,300만원 규모의 큰폭(본예산 대비 83.6%)의 오차가 발생한바, 세외수입 예산의 과다 편성은 세수결손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관세청과 재정당국은 보세판매장 업계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의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세입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음. 최근 5년간 2022년을 제외하고 4개년 모두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수납액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수납률은 54.5%에 불과함. 특히 2024년의 경우 세입예산은 1,010억 200만원인데 수납된 금액은 165억 3,700만원(16.4%)에 불과하여 844억 8,300만원 규모의 큰 폭(본예산 대비 83.6%)의 오차가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본예산 (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 (C) | 과다 편성액 (A-C) | 수납률 (C/A) | 미수납액 (B-C) |
|---|---|---|---|---|---|---|
| 2020 | 122,158 | 78,428 | 78,410 | **43,748** | 64.2 | 18 |
| 2021 | 58,595 | 24,650 | 24,633 | **33,962** | 42.0 | 17 |
| 2022 | 25,330 | 36,949 | 36,926 | **-11,596** | 145.8 | 23 |
| 2023 | 74,913 | 51,560 | 51,539 | **23,374** | 68.8 | 21 |
| 2024 | 101,020 | 16,584 | 16,537 | **84,483** | 16.4 | 47 |
| 계 | 382,016 | 208,171 | 208,045 | **173,971** | 54.5 | 126 |

관세청의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차지함[317].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특허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관세법」[318] 및

317)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액 중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비중

| 구분 | 전체 예산액(A) | 면세점 특허수수료(B) | 비율(B/A) |
|---|---|---|---|
| 2024년 | 101,020 | 97,520 | 96.5% |
| 2025년 | 75,398 | 71,898 | 95.4% |

318)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세판매장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됨.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기준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이전에는 다른 특허보세구역과 마찬가지로 특허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였는데, 면세점 특허사업자의 독점적 이익에 대하여 사회에 일정부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는 타 특허보세구역과 수수료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매출액의 0.05%,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7년 이후 현행과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누진구조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기준 연혁]**

| 기간 | 특허수수료(법 제176조의2 및 시행규칙 제68조의2) |
|---|---|
| 1979년~1993년 | 단위면적당 고정액 (1만6천원~ 8만1천원) |
| 1994년~2013년 | 단위면적당 고정액 (7만2천원~51만원 이상) |
| 2014년~2016년 |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 (대기업 : 0.05% / 중소기업 : 0.01%) |
| 2017년~2018년 |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세관신고기준)<br>① [매출액이 1조원 초과] 42억원 + 1조원 초과분의 1%<br>② [매출액이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2억원 + 2천억원 초과분의 0.5%<br>③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 매출액의 0.1%<br>④ [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
| 2019년~2023년 |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 (기업회계기준)<br>① [매출액이 1조원 초과] 42억원 + 1조원 초과분의 1%<br>② [매출액이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2억원 + 2천억원 초과분의 0.5%<br>③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 매출액의 0.1%<br>④ [중소·중견제품] 대기업의 중소·중견제품매출은 매출액의 0.01%<br>⑤ [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
| 2024년~현재 |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 (기업회계기준)<br>① [매출액이 1조원 초과] 21억원 + 1조원 초과분의 0.5%<br>② [매출액이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1억원 + 2천억원 초과분의 0.25%<br>③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 매출액의 0.05%<br>④ [중소·중견제품] 대기업의 중소·중견제품매출은 매출액의 0.01%<br>⑤ [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현행[319]은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구간에는 0.05%, 2천억원 초과 1조원 미만 구간에는 0.25%,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는 0.5%의 수수료율로 계상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하여는 0.01%의 수수료율이 계상됨.

이와 같이 계상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320]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세입실적은 전년도 보세판매장의 매출액에 따라 정해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 구분 | 해당 연도 매출액 | 특허수수료율 | |
|---|---|---|---|
| | | 2019~2023년도 | 2024년도 이후* |
| 대기업 면세점 |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 | 0.01% | 0.01% |
| | 2천억원 이하 | 0.1% | 0.05% |
| | 2천억 초과 1조원 이하 | 0.5% | 0.25% |
| | 1조원 초과 | 1.0% | 0.5% |
|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 총매출액 | 0.01% | 0.01% |

* 2025년 3월 21일 개정

319)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해당 연도 매출액 | 특허수수료율 |
|---|---|
| 2천억원 이하 |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
|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
| 1조원 초과 |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20)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2024년도 세입예산안 추계 시 2023년도 보세판매장 매출액이 2022년도 매출액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예산을 975억 2,0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기타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35억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4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편성근거 |
|---|
| **101,020백만원**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97,520백만원) + 기타 (3,500백만원)<br><br>▪ 보세판매장 '23년 예상매출액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975.2억원으로 산정하고 기타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산정<br>* 2022년 매출액(15.8조원)과 같은 수준 |
| **2024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내역** |
| **16,537백만원**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14,933백만원) + 기타 (1,604백만원) |

그러나, 실제 2023년도 보세판매장 매출액은 2022년 매출액(15조 8,410억원)의 절반이 조금 넘은 수준인 8조 2,287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계상되는 특허수수료 금액은 299억원으로 대폭 줄었음.

또한,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시행해오던 특허수수료 감경조치[321]를 2023년 매출분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하기로 함('24. 3)에 따라, 2024년도 4월 실제로 부과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299억원의 절반 금액인 149억원에 불과함.

**[2022년도 및 2023년도 매출액 및 특허수수료 부과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22 | | 2023 | |
|---|---|---|---|---|---|
| | | 매출액 | 특허수수료 | 매출액 | 특허수수료 |
| 중소중견 면세점 | | 276,188 | 28 | 381,851 | 38 |
| 대기업 공기업 면세점 | 중소중견 | 904,143 | 90 | 367,891 | 38 |
| | 그 외 | 14,660,674 | 97,402 | 7,479,040 | 29,790 |
| 계 | | **15,841,005** | 97,520 | **8,228,782** | **29,866** |

| | | | | |
|---|---|---|---|---|
| **감경조치 후 차년도 실제 부과금액** | 2023년도 부과 | 48,760 | **2024년도 부과** | **14,933** |

자료: 관세청

321)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근거하여 2020년도 매출분부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해왔음.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추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됨.

**첫째, 보세판매장 업계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않아 예상 매출액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음. 관세청과 재정당국이 보세판매장 업황 관련 소비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보세판매장의 2023년도 상반기 매출액 감소 추이[322]를 파악하였더라면 과다 편성 규모를 일정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최근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감소는 주요 고객인 중국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기인함.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면세점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단체관광(유커)이 줄어든 대신 개별관광(산커)이 늘어났고, 이들 개별 관광객의 경우 면세점을 방문하여 화장품 등 면세품을 대량 구매하기 보다는 할인점, 편의점 등 저가형·실속형·개인맞춤형 소비를 선호하는 형태로 소비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19~2024년 보세판매장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중소중견 면세점 | | 835,160 | 351,090 | 202,857 | 276,188 | 381,851 | 360,593 |
| 대기업 공기업 면세점 | 중소중견 | 1,343,456 | 305,046 | 831,363 | 904,143 | 367,891 | 494,750 |
| | 그외 제품 | 14,070,848 | 8,369,629 | 11,085,960 | 14,660,674 | 7,479,040 | 7,847,694 |
| 총계 | | 16,249,464 | 9,025,766 | 12,120,181 | 15,841,005 | 8,228,782 | 8,644,759 |

* 매출액 산정기준 : 기업회계기준(2019~2024년)
**자료: 관세청

실제로, 면세점 업계의 동향에 대해 분석한 국내 한 회계법인의 관련 보고서[323]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상위 10개 업종 매출액과 매출건수에서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매출액 기준 63.1%, 매출건수 기준 50.9%에서 2023년 매출액 기준 35.9%, 매출건수 기준 13.0%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쇼핑,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322) 상반기(1월-6월) 보세판매장 매출액(세관 신고기준): 85,554억원(2022년도) → 65,118억원(2023년도)
323) 삼일회계법인,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 2025.2.

[중국인 관광객 상위 10개 업종 매출액, 매출건수 비중 변화]

(단위: %)

| 구분 | 2019 | | | 2023 | | |
|---|---|---|---|---|---|---|
| | 업종 | 매출액 | 매출건수 | 업종 | 매출액 | 매출건수 |
| 1위 | **면세점** | **63.1** | **50.9** | **면세점** | **35.9** | **13.0** |
| 2위 | **인터넷쇼핑** | **11.6** | **7.4** | **인터넷쇼핑** | **19.3** | **30.5** |
| 3위 | 백화점 | 9.8 | 7.1 | 백화점 | 10.7 | 3.9 |
| 4위 | 의류 | 2.6 | 3.8 | 병원 | 6.0 | 6.6 |
| 5위 | 병원 | 2.3 | 0.8 | **대형할인점** | **3.8** | **5.0** |
| 6위 | 숙박 | 1.8 | 1.0 | 의류 | 3.5 | 3.1 |
| 7위 | 화장품 | 1.3 | 2.1 | 숙박 | 5.3 | 1.9 |
| 8위 | **대형할인점** | **1.3** | **3.1** | 음식점 | 2.9 | 13.7 |
| 9위 | 건강식품 | 1.1 | 0.5 | **편의점** | **1.5** | **9.7** |
| 10위 | 음식점 | 0.8 | 5.0 | 화장품 | 1.1 | 1.0 |
| | 합계 | 95.6 | 81.8 | 합계 | 89.9 | 88.5 |

*자료: BC카드, 언론보도, 삼일PwC경영연구원

**둘째, 코로나19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조치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음.**

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보세판매장의 어려운 업황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2020년 12월 「관세법」[324]에 마련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325] 개정을 통해 2020년도 이후 매출분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왔음.

그러나, 2024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이와 같은 감경조치를 추계에 고려하지 않았고, 2024년 3월 기획재정부가 특허수수료 감경조치를 2023년도 매출분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수오차가 보다 커졌음.

---

324)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325)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정부의 해외 단체관광 중단 조치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던 시기인 2023년 8월까지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2023년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조치 가능성을 예산안 편성 시 염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감면조치를 반영하였더라면 세수오차를 보다 줄일 수 있었을 것임.

[2020~2025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액]

(단위: 억원)

| 매출 발생년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중소중견 면세점 | | 84 | 36 | 20 | 28 | 38 | 36 |
| 대기업 공기업 면세점 | 중소중견 | 134 | 30 | 84 | 90 | 38 | 44 |
| | 그 외 제품 | 74,927 | 44,604 | 69,404 | 97,402 | 29,790 | 15,919 |
| 총계(감경 전) | | 75,145 | **44,670** | **69,508** | **97,520** | **29,866** | 15,999 |
| 차년도 부과액 (감경 조치 후) | | 75,145 | **22,335** | **34,754** | **48,760** | **14,933** | - |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면

결론적으로 2024회계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의 저조한 수납률은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보세판매장 업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계한 점, 코로나19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면허수수료 감면조치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세외수입 예산의 과다 편성은 2023년, 2024년과 같은 세수결손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관세청과 재정당국은 보세판매장 업계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3) 체화물품의 적극적 공매를 통한 관련 예산 집행 효율화 필요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통관국)

< 현 황 >

「수출입통관 및 안전관리 사업」은 수출입 물류의 흐름 촉진과 함께 국민건강·사회안전보호를 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은 27억 3,500만원으로, 이 중 2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수출입통관 및 안전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세화물관리사업」은 보세화물 신속처리를 위한 체화물품 국고귀속 이전보관료를 지급하고, 전자봉인 제도를 운영하여 수입화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부패·변질한 물품의 폐기비용 지원으로 처분 지연에 따른 물류적체 해소 및 무역을 원활화하고, 수출입 물동량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해 물류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0억 4,900만원 중 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 회계연도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 2,735 | 2,735 | - | - | - | 2,735 | 2,559 | - | 176 | 2,462 |
| - 통관안전지원 | 1,686 | 1,686 | - | - | - | 1,686 | 1,604 | - | 82 | 1,388 |
| - 보세화물관리 | 1,049 | 1,049 | - | - | - | 1,049 | 955 | - | 94 | 1,074 |

< 검토의견 >

**체화물품의 공매 실적이 저조하며 대부분의 체화물품이 폐기되고 있고, 공매 관련 홍보 부족으로 공매 참여도 특정 소수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관세 및 제세의 수입 감소 및 폐기비용의 증대로 국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보세구역[326] 내 장치기간 경과 전에도 매각 가능한 물품에 대한 선제적 공매 역시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체화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를 통해 일실된 관세를 징수하며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공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관세청은 체화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를 통해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 기간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법적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체화)[327] 및 여행자의 휴대품 등[328]에 대해 유치사유[329]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치 및 보관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30][331]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보세화물장치기간

---

326) 보세란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해 과세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보세구역은 통상적으로 외국물품이 반입되는 구역을 의미함.

327)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화"란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한다.

328)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329)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30)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두어 체화물품[332]에 대한 공매, 폐기 등 기타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 체화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체화건수 | 184,228 | 231,183 | 697,886 | 636,521 | 457,987 |
| 수입화물 | 7,107 | 5,109 | 4,862 | 5,509 | 5,719 |
| 특송화물 | 132,235 | 198,853 | 629,847 | 599,322 | 409,342 |
| 휴대품 | 14,555 | 1,166 | 20,071 | 23,281 | 36,213 |
| 우편물 | 30,331 | 26,055 | 43,106 | 8,409 | 6,713 |
| 체화 후 통관건수 | 8,271 | 7,135 | 15,975 | 14,158 | 14,118 |
| 공매건수 | 2,107 | 1,140 | 1,476 | 1,072 | 1,267 |
| 폐기 등 기타처리 | 143,516 | 196,842 | 637,298 | 621,291 | 442,602 |

자료: 관세청

체화물품은 크게 수입화물, 특송화물, 휴대품, 우편물 등으로 구분되며 각 물품 및 보관장소별 장치기간은 상이함. 일례로「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는 일반 수입화물에 대한 장치기간은 6개월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항·인천항 등의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333]

---

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1)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332) 통상적으로 체화 등 보세구역에 보관기간이 지난 물품을 의미하며,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물품을 지칭함.

2022년 이후 중국 플랫폼의 이용 증가로 중국발 해외 직구건이 증가하며, 특송화물이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중국산 특송화물이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체화와 관련된 관세청의 공매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24년 전체 체화 45만 7,987건 중 95%가 넘는 43만 8,837건의 물품이 폐기 등 기타 처리되었으며 실제로 공매된 물품은 1,2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체화의 낙찰금액 역시 2억 4,400만원에 불과하며, 해당 낙찰금액 중 국고불입된 제세 총액은 3,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체화에 대해 예정 공매가격(41억 5,500만원) 수준에서 공매가 이루어지고 같은 비율로 국고불입이 이루어질 경우, 대략 5억 9,600만원의 추가적인 관세 징수가 이루어지게 됨.

**[관세청 체화의 공매 낙찰 및 유찰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 구분 | 건수 | 낙찰 금액 | 국고불입된 제세 총액 | 최종공매 예정가격 |
|---|---|---|---|---|---|
| 2019 | 낙찰 | 132 | 321 | 15 | - |
| | 유찰 | 2,357 | - | - | 5,799 |
| | 수의계약 | 313 | 438 | 71 | - |
| 2020 | 낙찰 | 92 | 155 | 7 | - |
| | 유찰 | 1,808 | - | - | 5,890 |
| | 수의계약 | 210 | 348 | 41 | - |
| 2021 | 낙찰 | 81 | 348 | 80 | - |
| | 유찰 | 924 | - | - | 5,664 |
| | 수의계약 | 137 | 272 | 21 | - |
| 2022 | 낙찰 | 146 | 246 | 80 | - |
| | 유찰 | 1,166 | - | - | 7,484 |
| | 수의계약 | 168 | 270 | 8 | - |
| 2023 | 낙찰 | 105 | 192 | 6 | - |
| | 유찰 | 887 | - | - | 5,956 |
| | 수의계약 | 80 | 85 | 5 | - |
| 2024 | 낙찰 | 104 | 38 | 3 | - |
| | 유찰 | 1,023 | - | - | 4,150 |
| | 수의계약 | 140 | 206 | 32 | - |

자료: 관세청

333)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장치기간)**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의 공매 관련 낙찰가율도 저조한 상황임. 낙찰가율은 낙찰가격을 감정가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2024년 낙찰가율은 58%로 예정된 감정가격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물품의 공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국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2020~2024년도 관세청 공매 감정가 및 낙찰가]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감정가(평균) | 낙찰가(평균) | 낙찰가율 * |
|---|---|---|---|
| 2020 | 772 | 503 | 65 |
| 2021 | 786 | 620 | 79 |
| 2022 | 780 | 516 | 66 |
| 2023 | 459 | 277 | 60 |
| 2024 | 421 | 244 | 58 |

주1: 낙찰가율 : 낙찰가격/감정가격
자료: 관세청

또한, 관세청의 공매 홍보 관련 내역도 미흡한 상황임. 관세청 및 소관 세관관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공고」 등을 게시하여 공매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미진한 상황임. 실제로 최근 5년간 세관 공매 전자입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인원은 394명에 불과하고, 산술적으로 1인당 3번 이상의 공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공매 참여 및 낙찰이 특정 소수에 집중되고 있음.[334]

[2020~2024년도 관세청 공매 홍보 실적]

(단위: 건)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블로그 | - | 1 | - | 2 | 2 |
| 페이스북 | - | 1 | - | 2 | 2 |
| 인스타 | - | 1 | - | 2 | 2 |
| 합계 | 0 | 3 | 0 | 6 | 6 |

주1: 관세청 홈페이지 「공매공고」 및 소관 세관관서의 게시판 공고문은 제외

334) 이는 전자 입찰에 사용된 ID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낙찰 여부와는 무관함.

한편, 체화물품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성이 없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관세법」 제208조는 장기간의 장치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 후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335] 그러나, 2020~2024년 기준 전체 체화물품 중 「관세법」 제208조를 근거로 매각 후 대금을 공탁한 사례는 전체 건수인 2,108,268건 중 17건에 불과함.[336]

따라서 관세청은 적극적인 공매를 통해 일실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매와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고, 선제 매각 필요성이 있는 일부 체화물품에 대해서는 체화 등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활용하여 매각 후 대금을 공탁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35)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336) 해당 17건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장치기간의 부재로 시스템상 자유무역지역 내 장치물품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한 강제공매건임.

### (4)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 (특송화물 통관지원, 통관국)

< 현 황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은 통관단계에서 위법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등 수출입 물류의 흐름 촉진과 함께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은 27억 3,500만원으로, 이 중 2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1131-301) | 2,735 | 2,735 | - | 72<br>△72 | - | 2,735 | 2,559 | - | 176 | 2,462 |
| - 통관 안전 지원 | 1,686 | 1,686 | - | - | - | 1,686 | 1,604 | - | 82 | 1,388 |
| - 보세화물 관리 | 1,049 | 1,049 | - | 72<br>△72 | - | 1,049 | 955 | - | 94 | 1,074 |

< 검토의견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검사의 확대, 통관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의 시행, 관련 부처와의 정보공유 등 협업 강화를 통해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따른 위해물품 반입 위험 증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로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해외직구의 주요 통관수단인 특송화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현황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2019년 4,299만건 수준에서 2024년 1억 8,118만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거래금액도 2019년 31억불 규모에서 2023년 60억불 규모로 2배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현황 ]**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건 수 | 42,988 | 63,575 | 88,380 | 96,120 | 131,443 | 181,184 |
| 금 액 | 3,143 | 3,754 | 4,658 | 4,725 | 5,278 | 6,001 |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해외직구 위해물품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① **(구매검사)** 사전적으로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저가 생활밀접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성분분석 검사를 통해 유해성분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 판매페이지 차단, 대국민 공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② **(통관 X-ray검사, 개장검사)** 통관단계에서는 해외직구가 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 전량 X-ray 검색을 시행하는 한편, 우범물품 선별기준을 통해 지정된 물품에 대해 현품 개장검사 실시하고 있음.

③ **(관련부처 협업)** 또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로부터 위해물품정보를 공유받아 검사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검사 결과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해식품·의약품 등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물품과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송화물 목록통관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적발건수가 최근 5년 사이 2~3배 증가하였음.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2020년 6만 1,768건에서 2024년 17만 4,659건으로 2.83배 증가하였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건수는 2020년 3,416건에서 2024년 9,388건으로 2.75배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주요 적발 현황 ]**

(단위: 건)

| 구분 | 세관장[1] 확인대상 | 지재권 침해 | 사회안전[2] 위해물품 | 기 타[3] | 합 계 |
|---|---|---|---|---|---|
| 2020년 | 61,768 | 44,742 | 3,416 | 115,761 | **225,687** |
| 2021년 | 56,408 | 34,624 | 4,483 | 144,658 | **240,173** |
| 2022년 | 80,989 | 62,326 | 8,011 | 142,213 | **293,539** |
| 2023년 | 90,563 | **67,749** | 7,557 | 94,182 | **260,051** |
| 2024년 | 174,659 | **84,625** | 9,388 | 170,878 | **439,550** |

1) 검역, 위해 식·의약품, 수입요건 미비 등, 2) 모의총포·도검류 등, 3) 품명·수하인 상이, 저가신고 등
자료: 관세청

정부에서는 2024년 5월로 어린이제품(34개), 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국민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된 안전에 관한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는데,[337] 안전 인증으로 인한 물품가격의 상승,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의 반발로 동 계획은 철회되었음. 대신 사전에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하는 핀셋 규제 방식으로 방침을 선회한 바 있음.[338]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검사의 확대, 통관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의 시행, 관련 부처와의 정보공유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위해물품 반입 위험 증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337)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5.16.)
338) 국무조정실 보도설명자료(2024. 5. 19.)

**첫째,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구매검사)를 보다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에서 사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안전성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위험관리에 활용하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사업'은 규제의 강도가 큰 안전인증제도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고,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안전성 분석의 결과로 위해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됨.

관세청은 사전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국내 유통물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사업을 2024년부터는 해외직구 대상 물품으로 확대 실시(해외직구 1,401건, 국내유통 60건)하였으나,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분석이 이루어져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분석 소요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사업(구매검사) 현황]**

(단위: 백만원,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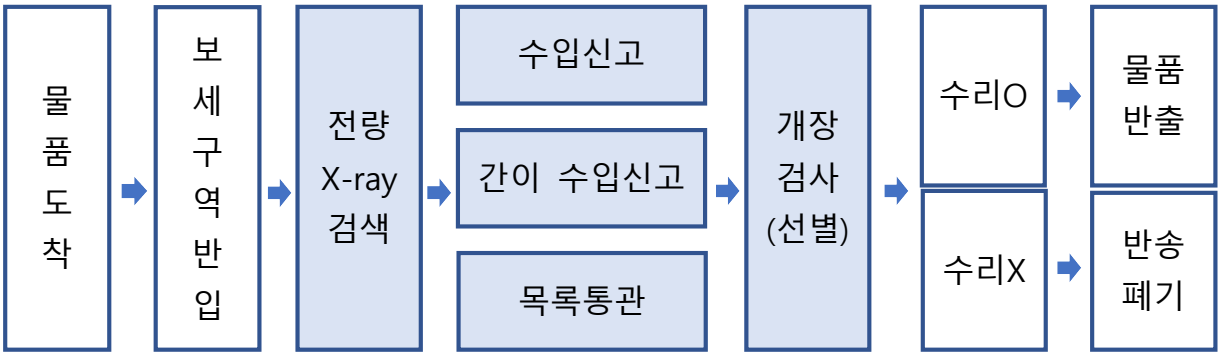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예산액 | 20 | 15 | 20 | 20 | 20 |
| 분석건수 | 465 | 386 | 396 | 128 | 1,461 |

자료: 관세청

**둘째, 특송물품에 대한 개장검사 실적은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통관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므로 특송물품 통관과정에서 개장검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에서는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가 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 전량 X-ray 검색을 시행하면서도 우범물품 선별기준을 통해 검사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현품 개장검사 실시하고 있는데, 통관물품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X-ray 검색을 통해 위해물품 등 여부를 식별하는 데에는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임.

[ 특송통관 과정 개요 ]




2024년 특송물품 개장검사 건수는 255만건으로 2020년 234만건 대비 9.2% 늘어났지만, 전체 통관물품 수량 증가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전체 통관건수 대비 개장검사 비중은 최근 5년 사이 3.7%에서 1.4%로 하락하여 통관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339].

[특송물품 개장검사 실적]

(단위: 천건,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특송물품 개장검사 건수(A) | 2,336 | 2,072 | 1,923 | 2,132 | 2,551 |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건수(B) | 63,578 | 88,384 | 96,125 | 131,447 | 181,187 |
| 비중(A/B) | 3.7 | 2.3 | 2.0 | 1.6 | 1.4 |

자료: 관세청.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재인용

**셋째,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전기·전자 제품과 어린이제품을 소관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위해물품 정보를 공유받는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24년부터 위해 생활화학제품 등은 환경부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아 검사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음.

339)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342p 참조, 2025.7.

[관련 부처와의 위해물품 정보 공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식약처_식품 | 274 | 418 | 573 | 260 | 363 | 400 |
| 식약처_의약품 | 24 | 3 | 380 | 34 | 4 | 95 |
| 환경부 | - | - | - | - | - | 152 |

자료: 관세청

해외직구 품목은 과거보다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관세청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품목을 소관하는 전문기관이 보유한 위해물품 정보를 공유 받아 검사 대상을 선별한다면 검사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와의 정보공유 강화가 요청됨.

특히,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전기·전자 제품과 어린이제품을 소관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과의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5) AEO공인업체 위규에 대한 제재 강화·집행지침에 따른 수탁기관 실적평가 실시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자료제출 의무 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세탈루심사, 심사국)

< 현 황 >

「관세탈루심사 사업」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탈루심사 활동을 지원하고, 「관세법」[340]에 따라 통관행정상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심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22억 4,600만원으로, 이 중 2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관세탈루심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탈루심사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0억 5,600만원 중 10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또다른 내역사업인 「AEO 공인심사 위탁」은 예산현액 11억 9,000만원 중 1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340)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2024회계연도 관세탈루심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관세탈루심사 사업 (1231-300) | 2,246 | 2,246 | - | - | - | 2,246 | 2,216 | - | 30 | 2,259 |
| - 탈루심사활동 지원 | 1,056 | 1,056 | - | - | - | 1,056 | 1,041 | - | 15 | 1,069 |
| - AEO 공인심사 위탁 | 1,190 | 1,190 | - | - | - | 1,190 | 1,175 | - | 15 | 1,190 |

< 검토의견 >

**관세청은 AEO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EO 공인업체의 법규위반에 대해 공인취소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령에 따라 수탁기관 실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관세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EO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EO 공인업체의 법규위반에 대해 공인취소 등의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업체로 공인이 되면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의 지위를 자국에서도 인정하기로 상호 합의함으로써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25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그 중 20개국 전면이행 중이고, 5개국은 체결 후 이행 준비 중임[341].

341)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 현황]

| 구분 | 국가명 |
|---|---|
| 체결 후 이행준비 (5개국) |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
| 전면이행 (20개국) |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연합,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영국 |

자료: 관세청

동 제도는 「관세법」 제255조의2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 962개 업체가 공인되었음.

[AEO 등급별 공인 현황]

('25.4월말 기준, 단위: 개)

| 등급 | 수출 업체 | 수입 업체 | 관세사 | 화물운송 주선업자 | 보세운송 업자 | 보세구역 운영인 | 선박 회사 | 항공사 | 하역 업자 | 합계 |
|---|---|---|---|---|---|---|---|---|---|---|
| AAA | 20 | 18 | 0 | 0 | 0 | 1 | 0 | 0 | 0 | 39 |
| AA | 51 | 49 | 11 | 6 | 3 | 12 | 4 | 0 | 1 | 137 |
| A | 220 | 118 | 91 | 242 | 43 | 61 | 3 | 2 | 6 | 786 |
| 합계 | 291 | 185 | 102 | 248 | 46 | 74 | 7 | 2 | 7 | 962 |

자료: 관세청

그런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AEO 공인업체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다소간의 증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공인업체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18~2024년 AEO 인증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

(단위: 건수, 억원)

| 구분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관세법위반 | 밀수출입 | 2 | 147 | 3 | 2 | 3 | 54 | 1 | 12 | 0 | 0 | 1 | 380 | 1 | 1 |
| | 부정수출입 | 0 | 0 | 0 | 0 | 1 | 2 | 4 | 47 | 1 | 214 | 0 | 0 | 2 | 36 |
| | 가격조작 | 1 | 55 | 2 | 757 | 1 | 5 | 0 | 0 | 1 | 12 | 0 | 0 | 0 | 0 |
| | 포탈/부정감면 | 0 | 0 | 1 | 424 | 0 | 0 | 1 | 0 | 0 | 0 | 2 | 477 | 0 | 0 |
| | 허위신고 등 | 6 | 6 | 9 | 231 | 7 | 1 | 11 | 11 | 7 | 215 | 4 | 238 | 1 | 0 |
| | 소계 | 9 | 208 | 15 | 1,414 | 12 | 62 | 17 | 70 | 9 | 441 | 7 | 1,095 | 4 | 37 |
| 외국환거래법 위반 | | 3 | 1,253 | 1 | 82 | 1 | 0 | 1 | 167 | 0 | 0 | 1 | 55 | 1 | 120 |
| 대외무역법 위반 | | 1 | 33 | 2 | 29 | 1 | 3 | 0 | 0 | 1 | 10 | 0 | 0 | 1 | 35 |
| 기타 법률 위반 | | 14 | 271 | 2 | 8 | 3 | 22 | 1 | 0 | 0 | 0 | 0 | 0 | 0 | 0 |
| **합계** | | **27** | **1,767** | **20** | **1,533** | **17** | **87** | **19** | **237** | **10** | **451** | **8** | **1,150** | **6** | **192** |

자료: 관세청

AEO 공인업체의 법규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와 맺은 AEO MRA에 대해 다른 나라가 신뢰성 저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AEO 공인업체가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공인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특히 대표자·관리책임자가 아닌 업체 직원이 법규위반을 할 경우 양벌규정이 부과되는데, 양벌규정의 경우에는 AEO 공인을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342].

**[2018~2024년 법인 양벌규정 부과에도 AEO 공인이 취소되지 않은 사례]**

| 적발 연도 | 업체명 | 범죄구분 | 범칙금액 | 공인취소 대상 여부* | 처분 현황 |
|---|---|---|---|---|---|
| 2024 | ㈜빙OO | 부정수출입 | 2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기소유예 |
| | ㈜로OOOO | 허위신고 | 0.03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삼OOOOOO㈜ | 밀수출입 | 0.7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2023 | 인OOO㈜ | 허위신고 | 0.7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관세법인 씨OO | 밀수출입 | 380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 한OOO㈜ | 허위신고<br>관세포탈 | 229억원<br>134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 ㈜포OO | 외국환거래법 | 55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기소유예 |
| | 현OOOOO㈜ | 허위신고 | 0.2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에OOOOOOO㈜ | 허위신고 | 9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2022 | ㈜케OOOOOOO | 허위신고 | 0.06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삼OOOOOO㈜ | 대외무역법<br>허위신고 | 10억원<br>0.1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br>통고처분 |
| | 현OOOOO㈜ | 허위신고 | 4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에OOO관세법인 | 허위신고 | 0.05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2021 | ㈜일OOOOOO | 허위신고 | 4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관세법인 다O | 허위신고 | 0.2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세O㈜ | 허위신고 | 1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동O | 허위신고 | 0.1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두OOOOOO㈜ | 외국환거래 | 167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기소유예 |

342) **「관세법」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적발 연도 | 업체명 | 범죄구분 | 범칙금액 | 공인취소 대상 여부* | 처분 현황 |
|---|---|---|---|---|---|
| | | 법 | | | |
| | 유OOOOOOOOOOOO㈜ | 허위신고 | 6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디OOOOOOOOOOOOO㈜ | 허위신고 | 0.3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에OOOOOOOO | 허위신고 | 0.02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쉥OOOO | 허위신고 | 0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온OO | 부정수출입 | 10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기소유예 |
| | ㈜한O | 허위신고 | 0.04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엘OOO㈜ | 부정수출입 | 0.00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2020 | 씨OOOOOO㈜ | 허위신고 | 0.00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에OOOOOO㈜ | 허위신고 | 0.01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케OOOO | 허위신고 | 0.9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호OOO | 외국환거래법 | 0.00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 페OOOOOOOOOO(유) | 허위신고 | 0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허OOOOOOO | 밀수출입 | 16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 에OOOOOOOOOO㈜ | 허위신고 | 0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유OOOOOOOOOOO㈜ | 가격조작 | 5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공소권없음 |
| | ㈜호OOO | 밀수출입 | 0.00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유OOOOOOOOOOO㈜ | 허위신고 | 0.01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더OOOOO | 허위신고 | 0.01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2019 | 세OOOOOO㈜ | 허위신고 | 0.6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협OOO㈜ | 허위신고 | 0.02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한OOO | 가격조작<br>허위신고 | 205억원<br>212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불기소 |
| | ㈜대OOO | 밀수출입 | 0.01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피OOOOOOO | 허위신고 | 1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포OOOOOOO | 외국환거래법 | 82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 ㈜트OOO | 허위신고 | 0.06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동OOOOOO | 대외무역법 | 15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불기소 |
| | ㈜유OOOOOO | 밀수출입 | 0.04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고OOOOOOO㈜ | 허위신고 | 0.2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한OOO㈜ | 관세포탈 | 424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 한OOOO㈜ | 허위신고 | 2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대OOO | 기타법률<br>가격조작 | 149억원<br>56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2018 | ㈜디OOOOOOO | 허위신고 | 0.1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선O | 밀수출입 | 14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 베OOOOOOOOO㈜ | 허위신고 | 0.08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한OOOOOOOO㈜ | 외국환거래법 | 1,146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기소유예 |

| 적발 연도 | 업체명 | 범죄구분 | 범칙금액 | 공인취소 대상 여부* | 처분 현황 |
|---|---|---|---|---|---|
| | ㈜하OOOOOO | 허위신고 | 0.00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 | ㈜디OOOOOO | 기타법률 | 8억원 | X(법인 양벌) | 검찰 무혐의 |
| | 씨OOOOOO㈜ | 허위신고 | 0.00억원 | X(법인 양벌) | 통고처분 |

주* : AEO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포함)의 범죄행위(양벌규정은 제외) 확정 시 공인 취소 대상
자료: 관세청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일반 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와 대표자·관리책임자의 법규 위반행위의 경중을 달리할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일반 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양벌규정에 대해 일률적으로 AEO 공인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는 대표자·관리책임자의 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EO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EO 공인업체의 법규위반에 대해 현행법상 공인취소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관세청은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24년 AEO 공인심사 위탁을 위한 비목을 일반용역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에도 「예산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사후평가를 통해 위탁사업 수행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인데 반해, 민간위탁사업비(320-02)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편성되는 비목으로, 사업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며 수탁사업자에게 구분계리 및 비용 정산·집행잔액 국고 환수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유리한 특성이 있음.

「관세법」[343]은 AEO 공인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동 업무에 대한 위

343)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법률에 따른 AEO 공인심사 위탁비용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나, 관세청은 연례적으로 일반용역비로 동 비용을 편성·집행해옴.

이에 국회에서는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 위탁비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344]되었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있던 AEO 공인심사 위탁비용은 국회 심의결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되어 2024년 예산으로 확정되었음. 2024회계연도 동 사업비 집행결과 관세청은 민간위탁사업비 비목으로 편성된 11억 9,000만원 중 1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그런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약 시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동 사업에서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에 AEO 공인심사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 설정을 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종료 이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실적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실적평가 없이 2025년도에도 (사)한국AEO진흥협회에 동 사업 공인심사 업무를 위탁하였음.

이에 대해 관세청은 민간위탁사업 비목으로 전환된 첫 해로 해당 비목을 처음 집행하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임.

따라서 관세청은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AEO 공인심사 위탁 업무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위탁계약을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건의를 위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관세법」 제37조의4[345]는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사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34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시정요구사항」(주의)
국회 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보고」

항이 규정되어 있음.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국적기업은 해외 본사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기업의 평균 조사기간이 72일인데 반해, 다국적기업은 108일으로 약 한 달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는 납세자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 관세조사 시 해당 과세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정확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및 국내기업의 관세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최근 5년(2020년~2024년) 다국적기업 및 국내기업의 관세조사 실적(종결기준)]**

(단위 : 개)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다국적기업 | 75 | 88 | 75 | 89 | 91 |
| [비중 %] | [25] | [24] | [23] | [33] | [28] |
| 국내기업 | 223 | 284 | 256 | 184 | 232 |
| **계** | **298** | **372** | **331** | **273** | **323** |

자료: 관세청

자료제출 지연 문제를 제재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관세청이 소송에서 패

345) **「관세법」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미제출하다가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이 되어서야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34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47] 및 「민사소송법」[348]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가 되어서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349]

---

34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두9508판결(원고: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3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8)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349) 관세청은 2025. 3. 해당 사항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법률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 (6) 압수물품 위탁보관 관련 법률상의 근거 마련 필요 (밀수단속, 조사국)

< 현 황 >

「밀수단속 사업」은 마약류 밀반입,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위조상품, 불법 외환거래 및 관세포탈사범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세청 조사직원들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은 56억 1,100만원으로, 이 중 5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밀수단속 사업」의 내역사업인 「밀수단속업무지원 사업」은 밀수단속 업무 지원 경상경비, 압수품 보관료, 수사차량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6억 5,900만원 중 15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 회계연도 밀수단속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밀수단속사업 | 5,407 | 5,407 | - | 204 | - | 5,611 | 5,440 | - | 171 | 5,185 |
| - 밀수신고포상금 | 506 | 506 | - | 204 | - | 710 | 710 | - | - | 506 |
| - 사건수사비 | 1,795 | 1,795 | - | - | - | 1,795 | 1,791 | - | 4 | 1,674 |
| - 국외업무여비 | 165 | 165 | - | - | - | 165 | 164 | - | 1 | 165 |
| - 밀수단속업무지원 | 1,659 | 1,659 | - | - | - | 1,659 | 1,521 | - | 138 | 1,969 |
| - 지재권 보호활동 | 99 | 99 | - | - | - | 99 | 99 | - | - | 99 |
| - 수사장비 도입 | 214 | 214 | - | - | - | 214 | 214 | - | - | 214 |
| - 온라인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 100 | 100 | - | - | - | 100 | 99 | - | 1 | - |
| - 디지털무역범죄 수사지원 | 750 | 750 | - | - | - | 750 | 740 | - | 10 | 320 |
| - 마약단속 국제공조 지원 | 119 | 119 | - | - | - | 119 | 102 | - | 17 | 119 |
| - RILO AP 운영 | - | - | - | - | - | - | - | - | - | 120 |

< 검토의견 >

**관세청은 압수물품의 보관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보관[350]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물품은 관세청 내규상 위탁보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위탁보관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보관이 곤란하거나 가치가 급감하는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매각 후 공탁할 수 있음에도 관련 이행 실적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관세청은 압수물품의 위탁보관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매각 요건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관세청은 압수물품의 위탁보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고,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음.[351]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두어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그 물품을 인수받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352] 다만, 관세청은 세관자체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수물품을 위탁보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압수물품보관에 드는 실비를 수탁보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353]

---

350) 관세청은 2024년 압수물품의 보관을 위해 임차료(210-07)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세관소유의 압수물품 보관창고 계약의 성질상 보관이 아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임차료가 아닌 관리용역비로 편성할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부터 세관소유의 압수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관리용역비로 전환하여 편성 및 집행하였음.

351)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352)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1조(압수물품의 보관)**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53)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2조(압수물품의 위탁보관)**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품의 소지자·보관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 취급은행에 위탁보관(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다.
1. 세관자체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2.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4. 보석·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으로 위탁보관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압수물품보관에 드는 실비를 보관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수탁보관자로 하여금 제4조에서 정한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을 주지시키고 압수물품 관리에 최선의 주의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사이에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타 위탁창고와 압수물품의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상기 계약으로 최근 5년(2020년~2024년) 동안 매년 3억 9,675만원~5억 5,235만원이 압수물품 위탁보관료로 지급되고 있음.

**[압수물품 위탁보관료 지급 현황]**

| 세관명 | 계약상대 | 지급액(만원) | | | | |
|---|---|---|---|---|---|---|
| |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인천공항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 사무소 | - | - | - | 1,628 | 5,051 |
| | 기타 위탁창고 | - | - | - | - | 1,194 |
| 서울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울 제1사업소 | 4,600 | 3,447 | 3,119 | 3,844 | 2,731 |
| | 기타 위탁창고 | 5,306 | 2,154 | 1,875 | 574 | 558 |
| 부산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신항지부 | 9,385 | 5,832 | 4,321 | 4,804 | 4,981 |
| | 기타 위탁창고 | 1,499 | 5,195 | 1,983 | 5,222 | 6,333 |
| 인천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사무소 | 19,509 | 7,260 | 6,045 | 6,422 | 7,540 |
| | 기타 위탁창고 | 1,441 | 2,291 | 4,499 | 12,243 | 1,362 |
| 대구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 - | - | - | - |
| | 기타 위탁창고 | 3,295 | 8,979 | 11,420 | 6,576 | 2,929 |
| 광주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 - | - | - | - |
| | 기타 위탁창고 | 14 | 302 | - | 1,207 | 142 |
| 평택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127 | 44 | 44 | 36 | 74 |
| | 기타 위탁창고 | 10,059 | 8,261 | 8,875 | 8,485 | 6,780 |
| 계 | | 55,235 | 43,765 | 42,181 | 51,041 | 39,675 |

자료: 관세청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압수물품의 위탁보관과 관련된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부적으로 위탁보관에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임. 압수처분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고, 압수책임자는 자청보관(自請保管)의 경우 뿐만 아니라 위탁보관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와 보관자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는 점[354]을 고려할 때, 압수물품의 위탁보관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의 그 근거 규정을 두어 보관자의 관리·의무 및 책임범위에 대한 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를 다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54) 부산고법 2001.3.21. 선고 2000나4227판결

그러나 현행법은 압수물품에 대해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탁보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355]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탁보관에 관한 내용을 법률상에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근거로 압수물품의 위탁보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수의계약 형태로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의 관리용역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현재까지 계약이 연장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인천세관의 경우 2016년 초기계약 이후, 부산세관의 경우 2022년 초기계약 이후, 평택세관의 경우 2018년·2020년·2024년 초기계약 이후 계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식의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계약이 연장되고 있음.

**[압수물품보관창고 계약 현황]**

| 세관명 | 계약상대 | 계약일자 | 초기계약 방식 | 초기 계약 자동 연장 여부* |
|---|---|---|---|---|
| 인천공항 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 사무소 | 2016.7.1 | 수의계약 | O |
| 서울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울 제1사업소 | 2016.1.29. | 수의계약 | O |
| 부산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신항지부 | 2022.8.23. | 수의계약 | O |
| 인천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 사무소 | 2016.7.1. | 수의계약 | O |
| 평택세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18.1.11.<br>2020.5.25.<br>2024.6.12. | 수의계약 | O |

* 초기계약 이후 계약기간(1년) 만료 10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
자료: 관세청

위 계약 중 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사유인 압수창고 최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주기적 청소 등 '보관계약' 또는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355) 관세청은 이에 대해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관세법」 제319조를 근거로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에 관련한 「형사소송법」 제130조를 준용하여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압수물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행 「관세법」 제303조는 압수물품의 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세범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356]

해당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4년 평택세관은 관세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조 생활용품 보관을 이유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평택사무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특히, 해당 상품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르는 위탁보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357]

압수물품의 관리용역 위탁계약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관세청 내규상 위탁보관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보관할 경우 장기적인 수의계약에 따르는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압수물품 보관창고 관리용역 계약을 관련 규정[358]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관세청은 압수물품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공매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관세법」 제21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59]

---

356) "2023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2024,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357) 해당물품은 생활용품으로서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대중량 또는 운송시 가치손상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하지 않고, 보석, 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으로 위탁보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압수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소유가 아닌 평택세관 소유임을 고려할 때 세관 자체의 보관 시설이 부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3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359) **「관세법」**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

현행법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압수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사유 등이 있을 때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압수물품의 통고와 매각에 관한 사항은 장치물품의 폐기에 따르는 통고에 관한 규정과 몰수품 등의 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60]

이처럼 압수물품에 대해서도 멸실·파손 등 보관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4년 처분된 압수물품 중 「관세법」 제303조제3항을 근거로 몰수 이전 통고 후 매각한 사례는 부재함.

특히 올해 관세청은 압수물품의 보관임차료와 관련된 예산 현액 5억 3,0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불용(불용률 25%)하였음. 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범 등 사건 수사 시 압수물품의 외부창고 위탁보관료 자급사유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음. 관세청의 의견과 같이 압수물품 등의 보관 소요에 따라 예산의 실집

---

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360)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행 수준이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에 대해 환가처분 한 후 대가를 공탁할 경우 위탁보관으로 인한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유사법률인 「형사소송법」 또한 압수물에 대해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61] 이와 관련하여 압수된 물품에 대해 무죄 등이 선고되어 환부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국가가 취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 압수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362]

따라서 관세청은 압수물품의 장치 및 보관을 위한 임차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압수물품이 추후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압수물품에 대한 환가대금이 차질없이 반환될 수 있도록, 압수물품 중 현행법상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인 매각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

---

361) **「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3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10. 선고, 2015가합 543172 판결

## (7)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파견지원사업의 적시 예산 미편성 재발 방지 필요 (밀수단속, 조사국)

< 현 황 >

「밀수단속 사업」은 마약류 밀반입,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위조상품, 불법 외환거래 및 관세포탈사범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세청 조사직원들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현액은 56억 1,100만원으로, 이 중 5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밀수단속 사업」의 내역사업인 「RILO AP 운영사업」은 2024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5년 예산액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4 회계연도 밀수단속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밀수단속사업 | 5,407 | 5,407 | - | 204 | - | 5,611 | 5,440 | - | 171 | 5,185 |
| - 밀수신고포상금 | 506 | 506 | - | 204 | - | 710 | 710 | - | - | 506 |
| - 사건수사비 | 1,795 | 1,795 | - | - | - | 1,795 | 1,791 | - | 4 | 1,674 |
| - 국외업무여비 | 165 | 165 | - | - | - | 165 | 164 | - | 1 | 165 |
| - 밀수단속업무지원 | 1,659 | 1,659 | - | - | - | 1,659 | 1,521 | - | 138 | 1,969 |
| - 지재권 보호활동 | 99 | 99 | - | - | - | 99 | 99 | - | - | 99 |
| - 수사장비 도입 | 214 | 214 | - | - | - | 214 | 214 | - | - | 214 |
| - 온라인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 100 | 100 | - | - | - | 100 | 99 | - | 1 | - |
| - 디지털무역범죄 수사지원 | 750 | 750 | - | - | - | 750 | 740 | - | 10 | 320 |
| - 마약단속 국제공조 지원 | 119 | 119 | - | - | - | 119 | 102 | - | 17 | 119 |
| - RILO AP 운영 | - | - | - | - | - | - | - | - | - | 120 |

< 검토의견 >

**관세청은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정보지역센터)의 이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2024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마약 간이분석시약의 구매 시 활용되는 조사국 기본경비 중 재료비(210-11)목의 예산을 전액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하여 그 기본경비를 충당하였음.**

**적시 예산 미편성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책성 예산을 기본경비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조사국 본연의 업무인 마약 단속 등 통상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RILO AP 파견지원사업」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WCO Regional Intelligence Liasi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에 관세청 내 전문 직원 파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RILO는 단순한 정보연락기구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내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세관 국제협력 방향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서 현재 관세청은 정보수집 전파·합동단속작전 추진을 위해 2명의 인원을 파견 중에 있음.

1986년 최초로 홍콩에 설치된 아태지역정보센터는 홍콩에서 12년, 일본 도쿄에서 5년, 중국에서 8년간 운영된 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우리나라 서울에서 운영되었고, 2024년부터는 일본 도쿄로 이전하여 운영 중임.

관세청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RILO AP 직원 파견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2024년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내 파견된 직원들의 주택 임차를 위해 조사국 기본경비[363]의 재료비(210-11)목의 예산 5,000만원을 2024년 1월 초 임차료(210-13)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또한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제회의[364]참석을 위한 별도의 국외경비가 편성되지 않아 WCO 세관 협력기금으로 지원가능한 국제회의를 참석하거나, RILO AP 전 직원의 참석이 요구되는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관세청 조사국의 국외여비로 회의[365]를 참석하였음.

---

363) 코드: 7111-253 (일반회계)

364) WCO 조사정보관리 플랫폼(CEN) 교육, 합동단속 작전, WCO 및 RILO AP회의, 고위급 정보분석·협력 관련회의 등

365) 35th RILO AP NCP meeting, 2024년 11월 17일 - 20일

그러나 관세청은 2022년 5월 일본이 RILO AP 유치를 승인받은 시점에 일본으로의 사무소 이전을 인지하였고 2023년부터는 관련 데이터 이전 및 사무실 운영 준비 등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하였음. 이를 고려할 때, 2024년부터 일본사무소에 관세 인력 파견을 위한 소요예산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규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및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관세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조사국 기본경비를 이·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한 것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등 사유 |
|---|---|---|---|---|---|---|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세목조정 ('24.1.17.) | 조사국 기본경비 (7111-253) | 210-11 | 50 | 조사국 기본경비 (7111-253) | 210-07 | RILO AP 사무소 이전(한국→일본)에 따른 현지 주택 임차료 지급 |

자료: 관세청

WCO RILO AP 내 파견 직원은 크게 ① 한국 관심사를 반영한 글로벌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② 지속적인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며 ③ 국제범죄 및 세관 단속 네트워크 협력창구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업무 참석이 필수적인 대면회의에 예산의 미편성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2023년도까지 아태지역 내 정보센터를 주관·운영했던 관세당국의 대내외적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RILO AP는 CEN (조사정보관리 플랫폼) 데이터 검증업무를 통하여 역내 세관의 적발정보·동향을 실시간으로 입수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공유된 정보를 국내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우범화물 분석 및 선별에 활용할 수 있음. 특히 마약 등 밀수범죄는 최근 들어 국제화·조직화 추세로 RILO AP 활동을 통한 정보 입수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업무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세청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조사국 기본경비 중 임차료로 전액 세목조정한 재료비(210-11)는 일반적으로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로, 관세청은 연례적으로 마약류 간이분

석 시약 및 마약류 소변시약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음.

[2022~2023년 관세청 본부 기본경비 재료비 집행 내역]

(단위: 원)

| 건명 | 지출금액 | 지출 년도 |
|---|---|---|
| 마약류 간이 진단시약 구매비용 | 21,781,200 | 2022 |
| 마약류 간이분석시약 구매비용 | 21,638,600 | 2022 |
| 마약류 소변시약 구매비용 | 6,468,000 | 2022 |
| 마약류 간이분석시약 구매비용 | 21,669,000 | 2023 |
| 마약류 간이분석시약 구매비용 | 17,475,000 | 2023 |
| 마약류 간이분석시약 구매비용 | 10,856,000 | 2023 |

자료: 관세청

2024년 조사국 기본경비 재료비 전액이 세목조정됨에 따라, 마약류 간이분석 시약은 전년도 재고분과 조사국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구매를 통해 확보되었음. 이와 같이 필수적으로 소요가 예상되었던 경비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마약 검사 등 통상적인 조사국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 (8)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 제고 필요 (본부기본경비, 운영지원과)

< 현 황 >

「본부기본경비 사업」은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운영경비 및 기관운영경비의 지원을 통해 적정한 기관운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52억 2,600만원으로, 이 중 2억 4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현액 50억 2,200만원 중 49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본부기본경비 사업」의 2024년 임차료 예산현액은 8억 3,300만원으로, 8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본부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본부기본경비 사업 (7111-250) | 5,226 | 5,226 | - | △204 | - | 5,022 | 4,904 | - | 118 | 5,377 |
| - 임차료 | 821 | 821 | - | 12 | - | 833 | 832 | - | 1 | 821 |

< 검토의견 >

**관세청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타 부처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이므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366]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6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100%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동 법령의 근거에 따라 마련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매·임차 실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됨.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식]**

$$\text{구매·임차실적}(\%) = \frac{\sum(\text{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대수} \times \text{환산비율})}{\text{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 대수}} \times 100$$

---

36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해야 한다.

위 산식에 따른 관세청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은 24.3%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인 100%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관세청을 포함한 50개 부처·청의 2024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을 살펴보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관세청, 국가보훈부, 농촌진흥청, 소방청, 헌법재판소 등 5개 기관으로, 헌법재판소 다음으로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50개 부처·청 중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미달성 기관 내역]**

| 기관명 | 총 구매·임차 대수 | 저공해자동차 | | | 일반 자동차 | 제외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비율(%) |
|---|---|---|---|---|---|---|---|
| | | 1종 (무공해) | 2종 | 3종 | | | |
| **관세청** | **39** | **6** | **31** | **0** | **0** | **2** | **24.3** |
| 국가보훈부 | 11 | 1 | 2 | 1 | 0 | 7 | 37.5 |
| 농촌진흥청 | 17 | 5 | 0 | 0 | 3 | 9 | 93.8 |
| 소방청 | 26 | 6 | 2 | 1 | 1 | 16 | 98 |
| 헌법재판소 | 11 | 0 | 1 | 0 | 0 | 10 | 0 |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중 '사전정보공표' 참고하여 재작성

따라서 관세청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9) 공공요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이용했음에도 목적 외 집행 부적절
### (인천본부 기본경비 · 광주본부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 현 황 >

「인천본부 기본경비 사업」은 인천본부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등 경비지원을 통해 원활한 기관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20억 7,70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으로 2억 8,300만원을 이용받아 예산현액 23억 6,000만원 중 2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천본부 기본경비 사업」의 2024년 공공요금및제세 예산현액은 8억 1,7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현액은 4억 6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광주본부 기본경비 사업」은 광주본부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등 경비지원을 통해 원활한 기관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20억 3,40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으로 1,600만원을 이용받아 예산현액 20억 5,000만원 중 20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광주본부 기본경비 사업」의 2024년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은 5억 8,400만원으로, 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 예산현액은 4억 8,1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현액은 2억 7,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인천본부 기본경비·광주본부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인천본부기본경비 사업(7118-254) | 2,077 | 2,077 | - | 283 | - | 2,360 | 2,354 | - | 6 | 2,310 |
| - 공공요금및제세 | 547 | 547 | - | 270 | - | 817 | 817 | - | - | 766 |
| - 시설장비유지비 | 297 | 297 | - | 109 | - | 406 | 406 | - | - | 297 |
| 광주본부기본경비 사업(7118-256) | 2,034 | 2,034 | - | 16 | - | 2,050 | 2,049 | - | 1 | 2,059 |
| - 일반수용비 | 567 | 567 | - | 17 | - | 584 | 583 | - | 1 | 566 |
| - 공공요금및제세 | 511 | 511 | - | △30 | - | 481 | 481 | - | - | 513 |
| - 시설장비유지비 | 207 | 207 | - | 72 | - | 279 | 279 | - | - | 297 |

## < 검토의견 >

**관세청은 공공요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예산을 이용하였음에도 해당 예산 중 일부를 공공요금 납부에 이용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가재정법」에 어긋난 집행으로 유사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7조[367]는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예산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예산의 이용은 예산과목 중 가장 상위 항목에 해당하는 장·관·항 간 금액을 상호 조정하여 국회에서 정한 분야별·부문별·프로그램별 재원배분에 변경을 가하는 것인바, 「국가재정법」은 이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다만,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때의 자체이용도 제한적으로만 하여야 할 것이고 이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잔액은 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관세청 세관 중 인천본부세관과 광주본부세관의 경우 공공요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으로 이용한 금액 중 일부를 연말에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을 목적으로 또다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어긋난 집행임.

---

367)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천본부세관의 경우 2024년 10월 10일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1443-301) 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 2억 8,300만원을 공공요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본부기본경비」(7118-254)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으로 자체이용하였으나, 2024년 12월 27일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3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또다시 세목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인천본부기본경비」(7118-254)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 **자체이용 ('24.10.10.)** |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1443-301)** | **관리용역비 (210-15)** | **283**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
| 세목조정 ('24.12.16.)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일반수용비 (210-01) | 4.5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임차료 (210-07) | 임차료 부족 |
|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 40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
|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 5.2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관리용역비 (210-15) | 관리용역비 부족 |
| **세목조정 ('24.12.27.)**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일반수용비 (210-01) | 15.4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
|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13.3**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 |
|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유류비 (210-08) | 40 | 인천본부기본경비 (7118-254) | | |

자료: 관세청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광주본부세관 역시 2024년 10월 10일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1443-301) 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 1,600만원을 공공요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본부기본경비」(7118-256)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으로 자체이용하였으나, 2024년 11월 14일 및 12월 24일 공공요금및제세(210-02) 약 3,8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 등으로 또다시 세목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12월 30일에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 71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광주본부기본경비」(7118-256)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에서 | | | ~으로 |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금액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금액 | |
| 자체이용 (‘24.10.10.) | 통관감시장비운영관리 (1443-301) | 210-15 | 16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210-02 | 16 | 공공요금부족액 충당 |
| 세목조정 (‘24.11.14.)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210-02 | 24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210-09 | 66 |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
| | | 210-08 | 42 | | 210-15 | 6 | 관리용역비 부족 |
| | | 210-07 | 5 | | | | |
| 세목조정 (‘24.12.24.)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210-02 | 13.9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210-01 | 9.4 |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
| | | 210-07 | 0.3 | | 210-09 | 5.2 |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
| | | 210-08 | 0.4 | | | | |
| 세목조정 (‘24.12.30.)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210-02 | 7.1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210-01 | 8.1 |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
| | | 210-07 | 0.3 | | 210-09 | 0.4 |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
| | | 210-08 | 0.9 | | | | |
| | | 210-15 | 0.2 | | | | |
| 세목조정 (‘24.12.31.)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210-08 | 0.1 |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 210-01 | 0.1 |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
| | | | 0.01 | | 210-02 | 0.01 | 공공요금 납부 |

자료: 관세청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요건에 한해서만 이용하고 집행잔액은 불용하여야 함에도 관세청은 당초 이용 목적과는 달리 집행잔액을 또다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세관의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0) 국외교육여비(220-03) 미편성에도 국외업무여비(220-02)로 국외교육여비 집행 부적절 등 (관세행정활동지원, 기획조정관)

< 현 황 >

「관세행정활동지원 사업」은 관세행정 분야별 특정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관세행정에 필요한 국내여비 및 국외출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90억 8,900만원으로, 5억 9,800만원을 자체전용하여 예산현액 184억 9,100만원 중 180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관세행정활동지원 사업」의 2024년 국외업무여비 예산현액은 3억 1,100만원으로, 2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은 1억 2,300만원으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59억 3,000만원으로 56억원을 집행하였고 3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관세행정활동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관세행정활동지원 사업 (7131-301) | 19,089 | 19,089 | - | △598 | - | 18,491 | 18,045 | - | 446 | 19,089 |
| - 국외업무여비 (220-02) | 311 | 311 | - | - | - | 311 | 286 | - | 25 | 311 |
| - 일반수용비 (210-01) | 123 | 123 | - | - | - | 123 | 47 | - | 76 | 123 |
| - 국내여비 (220-01) | 6,048 | 6,048 | - | △118 | - | 5,930 | 5,600 | - | 329 | 6,048 |

< 검토의견 >

**관세청은 당초 교육훈련계획에 없던 국외교육을 국외교육여비(220-03)가 아닌 국외업무여비(220-02)에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국외교육여비와 국외업무여비를 구별하고 있는 「예산안 집행지침」에도 어긋나 부적절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세청은 국외출장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사업 경비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2024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통해 2024년도 국외교육 계획을 마련함. 관세청의 국외교육은 동 사업이 아닌 「관세행정운영지원(7131-351)」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동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핵심 양성분야[368]별로 인재를 선발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동 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4년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104명, 약 5억 4,651만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5억 3,200만원(일반수용비 4억 1,200만원, 국외교육여비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관세청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 구분 | 훈련분야 | 대상 | 훈련기관 | 기간 | 인원(명) | 훈련비용(만원) | | |
|---|---|---|---|---|---|---|---|---|
| | | | | | | 교육비 | 국외여비 | 합계 |
| 정보 | 빅데이터 및 신기술 전문가 | 전직렬 | (국내) 조달계약 *DB 전문기관 | 8주 | 15 | 21,406 | 8,217 | 29,623 |
| | | | (국내) 프로젝트 | 4주 | | | | |
| | | | (국외) 신기술 선도기관 | 2주 | | | | |
| 분석 |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 전문 분석 | 공업직 | (국내) 조달계약 *장비 공급사 | 4일 (8회) | 56 (회당 7) | 10,645 | - | 10,645 |
| 일반조사 |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모바일) | 전직렬 | (국내) 인섹시큐리티/지엠디소프트 *공인교육기관/개발사 | 13일 | 5 | 4,195 | - | 4,195 |
| 외환 | 가상자산 거래 | 전 | (국내) 코어시큐리티 | 5일 | 10 | 2,680 | - | 2,680 |

368) 신기술 전문분야(빅데이터·AI 등), 특수분야(포렌식·불법마약 대응 등), 국제협력분야 등

| 구분 | 훈련분야 | 대상 | 훈련기관 | 기간 | 인원(명) | 훈련비용(만원) | | |
|---|---|---|---|---|---|---|---|---|
| | | | | | | 교육비 | 국외여비 | 합계 |
| 조사 | 추적 · 분석 | 직렬 | * 공인교육기관 | | | | | |
| 마약조사 | 마약밀수단속 해외 정보요원 양성 | 전직렬 | (국외) 美 법집행교육원 (태국 소재) | 1주~2주 (4회) | 10 | 1,392 | 1,196 | 2,588 |
| 국제협력 | 국제협력 글로벌 인재 양성 | 전직렬 | (국내) 조달계약 * 국제협력 교육기관 | 2주 | 8 | 2,000 | 2,920 | 4,920 |
| | | | (국외) UNESCAP, WCO ROCB AP 등 | 10일 | | | | |
| '24년 미래인재 수요 제출(6개 훈련분야) | | | | | 104명 | 42,318 | 12,333 | 54,651 |

자료: 관세청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관세청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달리 「관세행정활동지원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국외교육'을 위한 여비를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당초 동 사업에서는 국외교육을 위한 국외교육여비,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가 편성되어있지 않았으나, 관세청은 고위공무원 승진에 따른 국외교육을 위해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220-02) 3,807만원과 「본부기본경비 사업」(7111-250)의 일반수용비 1,582만원, 국내여비 337만원 등 총 5,726만원을 집행하여 '세종국가전략 연수과정',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및 '고위정책과정' 국외교육에 고위공무원을 파견함.

**[2024회계연도 「관세행정활동지원 사업」 중 국외교육훈련 집행현황]**

(단위: 명, 천원)

| 구분 | 교육훈련계획 | 교육실시여부 | 실시일자(시간) | 인원 | 세부사업 | 집행비목 | 집행액 | 계 |
|---|---|---|---|---|---|---|---|---|
| 1 | × | 세종국가전략 연수과정 교육 | 24.1.22. ~11.22. | 1 | 본부기본경비 (7111-250) | 일반수용비 (210-01) | 7,000 | 27,700 |
| | | | | | | 국내여비 (210-02) | 1,800 | |
| | | | | | 관세행정 활동지원 (7131-301) | 국외업무여비 (220-02) | 18,900 | |
| 2 | × |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 | 24.1.22. ~11.29. | 1 | 관세행정 활동지원 (7131-301) | 국외업무여비 (220-02) | 10,435 | 10,435 |
| 3 | × | 고위정책 | 24.1.22. | 1 | 본부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8,819 | 19,127 |

(단위: 명, 천원)

| 구분 | 교육훈련계획 | 교육실시여부 | 실시일자(시간) | 인원 | 세부사업 | 집행비목 | 집행액 | 계 |
|---|---|---|---|---|---|---|---|---|
| | | 과정교육 | ~11.22. | | (7111-250) | (210-01) 국내여비 (210-02) | 1,576 | |
| | | | | | 관세행정 활동지원 (7131-301) | 국외업무여비 (220-02) | 8,732 | |
| 계 | | | | 3 | | | 57,262 | |

주: 교육훈련계획에 없던 교육인 경우 교육실시여부에 교육훈련명 적시
자료: 관세청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성격에 따라 국외업무여비(220-02목)과 국외교육여비(220-03)목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해외연찬여비’ 목적으로, 국외교육여비는 ‘장·단기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여비’ 목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외여비를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로 분류한 것은 국외교육여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국외교육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외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관세청은 당초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의 목적을 벗어나 국외업무여비(220-02) 비목 등으로 고위공무원 국외교육을 위해 5,7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부적절함. 따라서 향후 관세청은 국외교육을 위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하나의 국외출장을 일부는 주요사업비에서, 일부는 기본경비에서 또는 두 사업에서 비용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일부 국외출장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예산의 일부는 주요사업비에서 일부는 기본경비에서 집행하거나 두 가지 사업에서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2024년도 관세청 내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를 동시 사용한 국외출장 사례]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 출장지 | 출장 인원 | 출장기간 | 출장비 | 출장목적 |
|---|---|---|---|---|---|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 오스트리아 | 2명 | 2024.12.3.~ 2024.12.6 | 4,787 | 바세나르체체 총회 참석 |
| 통관국 기본경비 | | | | 4,231 | |
| 관세행정활동지원 | 중국외1 | 6명 | 2024.12.8.~ 2024.12.13 | 2,882 | 중국발 특송화물 위험관리 고도화 및 통관 환경 개선 관련 정보수집 |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 | | | 10,000 | |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 모리셔스 | 6명 | 2024.12.14.~ 2024.12.20 | 6,727 |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
| 본부기본경비 | | | | 19,194 | |

자료 : 관세청

하나의 출장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하는 것은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하고 결산하는 예산 과정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기본경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주요사업비로 전환·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를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지침에 따를 경우 국외 출장 사업을 주요사업비로 진행할 때 예산의 집행을 일부는 주요사업비에서, 일부는 기본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추후 동일한 목적의 출장은 단일 세부사업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상의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용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일 세부사업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음.[369]

369) 또한 「관세행정 활동지원」 사업은 통관검사, FTA, 밀수단속, 관세탈루 심사 등 관세행정에 필요한 국내여비 및 전문요원 해외정보수집 훈련,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여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그 성격상 기본경비적 성격이 있으므로, 추후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요사업에서의 국외여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경비를 주요사업에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조달청 소관

# 가. 결산 개요

## (1) 세입 결산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9,125억 3,100만원으로 예산액 8,026억 8,800만원 대비 13.7%인 1,098억 4,300만원 증가하였음.

손익계정은 내자구매사업수입이 7억 6,400만원, 외자구매사업수입이 3억 7,400만원, 관유물대여료 1억 1,300만원 과소 수납된 반면, 시설공사사업 145억 300만원 및 비축물자 판매차익 증가에 따른 비축물자사업수입이 21억 8,100만원, 잡수익 등이 525억 7,3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 389억 5,7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자본계정은 경상이전수입 1억 5,000만원, 관유물 매각대 4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이 27억 2,6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차 이 (C-A) | 비 율 (C-A)/A | 미수납액 (B-C) |
|---|---|---|---|---|---|---|
| 사업수입 | 288,500 | 366,723 | 304,047 | 15,547 | 5.4 | 62,676 |
| ▪ 내자구매사업 | 232,181 | 285,648 | 231,417 | △764 | △0.3 | 54,231 |
| ▪ 외자구매사업 | 5,782 | 6,011 | 5,408 | △374 | △6.5 | 603 |
| ▪ 시설공사사업 | 40,686 | 61,033 | 55,189 | 14,503 | 35.6 | 5,844 |
| ▪ 비축물자사업 | 9,851 | 14,030 | 12,032 | 2,181 | 22.1 | 1,998 |
| 관유물대여료 | 2,865 | 2,845 | 2,751 | △113 | △4.0 | 93 |
| 잡수입 등 | 62,674 | 118,330 | 115,248 | 52,573 | 83.9 | 3,083 |
| 전년도세계잉여금 | 92,914 | 131,871 | 131,871 | 38,957 | 41.9 | - |
| **손익계정 계** | **446,953** | **619,769** | **553,917** | **106,964** | **23.9** | **65,852** |
| 경상이전수입 | - | 150 | 150 | 150 | - | - |
| 관유물매각대 | - | 4 | 4 | 4 | -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7,918 | 10,644 | 10,644 | 2,726 | 34.4 | - |
| 기금전입금 | 92 | 92 | 92 | - | - | - |
| 계정간전입금 | 260,425 | 260,425 | 260,425 | - | - | - |
| 기타전입금 | 87,300 | 87,300 | 87,300 | - | - | - |
| **자본계정 계** | **355,735** | **358,614** | **358,614** | **2,879** | **0.8** | - |
| **총 계** | **802,688** | **978,384** | **912,531** | **109,843** | **13.7** | **65,852** |
| **순 계** | **542,263** | **717,959** | **652,106** | **109,843** | **20.3** | **65,852** |

주: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타계정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타계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 (2) 세출 결산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178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 8,026억 8,800만원 대비 1.9%인 15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24년도 지출액은 8,008억 8,500만원으로 예산대비 99.8%, 예산현액대비 97.9%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9,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5억 9,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A) | 예산 현액 (B) | 지출액 (C) | 예산액 대비 (C/A) | 예산현액 대비 (C/B) | 다음연도 이월액 (D) | 불용액 (B-C-D) |
|---|---|---|---|---|---|---|---|
| 인 건 비 | 85,575 | 85,472 | 82,572 | 96.5 | 96.6 | - | 2,900 |
| 기본경비 | 12,688 | 12,700 | 12,492 | 98.5 | 98.4 | - | 208 |
| 주요사업비 | 74,967 | 81,615 | 77,026 | 102.7 | 94.4 | 434 | 4,155 |
| 건강보험부담금 | 3,012 | 3,102 | 3,092 | 102.7 | 99.7 | - | 10 |
| 연금부담금 | 10,286 | 10,286 | 9,927 | 96.5 | 96.5 | - | 359 |
| 타계정전출금 | 260,425 | 260,425 | 260,425 | 100.0 | 100.0 | - | - |
| **손익계정 계** | **446,953** | **453,601** | **445,535** | **99.7** | **98.2** | **434** | **7,632** |
| 자산취득 및 시설비 | 65,254 | 73,788 | 70,560 | 108.0 | 95.7 | 2,956 | 272 |
| 기본경비(자본) | 990 | 990 | 990 | 97.4 | 97.4 | - | - |
| 일반회계전출금 | 219,491 | 219,491 | 213,800 | 97.4 | 98.0 | - | 5,691 |
| 전 출 금 등 | 70,000 | 70,000 | 70,000 | 100.0 | 100.0 | - | - |
| **자본계정 계** | **355,735** | **364,269** | **355,350** | **99.9** | **97.6** | **2,956** | **5,963** |
| **총 계** | **802,688** | **817,870** | **800,885** | **99.8** | **97.9** | **3,390** | **13,595** |
| **순 계** | **542,263** | **557,445** | **540,460** | **99.7** | **97.0** | **3,390** | **13,595** |

주 :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타계정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타계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한편, 조달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16억 4,600만원이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이입되었음.

##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가) 세입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총 계 | 573,070 | 636,609 | 802,688 | 912,531 | 113.7 | 737,698 |
| 손익계정 | 395,730 | 472,845 | 446,953 | 553,917 | 123.9 | 459,472 |
| 45 조달사업수입 | 278,245 | 291,124 | 288,500 | 304,047 | 105.4 | 301,217 |
| 내자구매사업수입 (45-451) | 213,038 | 226,757 | 232,181 | 231,417 | 99.7 | 232,211 |
| 외자구매사업수입 (45-452) | 4,658 | 4,439 | 5,782 | 5,408 | 93.5 | 5,058 |
| 시설계약사업수입 (45-454) | 43,023 | 45,355 | 40,686 | 55,189 | 135.6 | 52,869 |
| 비축물자사업수입 (45-456) | 17,526 | 14,573 | 9,851 | 12,032 | 122.1 | 11,079 |
| 51 관유물대여료 | 2,682 | 2,970 | 2,865 | 2,751 | 96.0 | 3,023 |
| 토지대여료 (51-511) | 766 | 581 | 652 | 610 | 93.6 | 689 |
| 건물대여료 (51-512) | 1,903 | 2,374 | 2,210 | 2,129 | 96.3 | 2,318 |
|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 13 | 15 | 3 | 12 | 400.0 | 16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2 | 21 | - | 24 | - | - |
| 기타재산수입 (54-545) | 2 | 21 | - | 24 | - | - |
| 56 과징금 | 522 | 2,696 | 300 | 2,003 | 667.7 | 1,248 |
| 과징금 (56-565) | 522 | 2,696 | 300 | 2,003 | 667.7 | 1,248 |
| 57 변상금및위약금 | 2,543 | 1,589 | 2,000 | 2,837 | 141.9 | 1,800 |
| 변상금 (57-571) | - | - | - | - | - | - |
| 위약금 (57-572) | 2,543 | 1,589 | 2,000 | 2,837 | 141.9 | 1,800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6 | 90 | - | 26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6 | 90 | - | 26 | - | - |
| 69 잡수입 | 55,162 | 96,117 | 60,374 | 110,358 | 182.8 | 59,097 |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 | 650 | 717 | 595 | 562 | 94.5 | 730 |
| 기타잡수입 | 6,169 | 6,810 | 6,533 | 6,489 | 99.3 | 6,533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2025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69-691) | | | | | | |
| 기타영업외잡수익 (69-697) | 48,343 | 88,590 | 53,246 | 103,307 | 194.0 | 51,834 |
|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 **56,568** | **78,238** | **92,914** | **131,871** | **141.9** | **93,087** |
| 전년도세계잉여금 (88-893) | 56,568 | 78,238 | 92,914 | 131,871 | 141.9 | 93,087 |
| **91 일반회계전입금** | - | - | - | - | - | - |
|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 | - | - | - | - | - |
| **자본계정** | **177,340** | **163,764** | **355,735** | **358,614** | **100.8** | **278,226**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 | - | - | - | - | - |
| 기타재산수입 (54-545) | - | - | - | - |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 | - | - | **150**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 | - | - | 150 | - | - |
| **71 고정자산매각대** | **3** | **23** | - | **4** | - | - |
| 건물매각대 (71-711) | - | - | - | - | - |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713) | 3 | 23 | - | 4 | - | - |
| **72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 - | - | - | - | - | - |
| 토지매각대 (72-721) | - | - | - | - | - | - |
| **89 전년도세계잉여금** | **48,268** | **17,558** | **7,918** | **10,644** | **134.4** | **5,208** |
| 전년도세계잉여금 (89-893) | 48,268 | 17,558 | 7,918 | 10,644 | 134.4 | 5,208 |
| **91 전입금** | **129,069** | **146,183** | **347,817** | **347,817** | **100.0** | **273,018** |
| 기금전입금(91-913) | 475 | 169 | 92 | 92 | 100.0 | 322 |
| 계정간전입금(91-915) | 128,594 | 146,014 | 260,425 | 260,425 | 100.0 | 263,996 |
| 기타전입금(91-916) | - | - | 87,300 | 87,300 | 100.0 | 8,700 |

## 나)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총 계 | 477,274 | 494,095 | 802,688 | 800,885 | 99.8 | 737,698 |
| 손익계정 | 317,492 | 340,975 | 446,953 | 445,535 | 99.7 | 459,472 |
| 1100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 67,482 | 65,244 | 44,434 | 47,601 | 107.1 | 39,991 |
| 1131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 | 65,894 | 63,565 | 42,733 | 45,937 | 107.5 | 38,224 |
| 조달정보화(정보화) (1131-501) | 27,237 | 26,492 | 22,249 | 26,299 | 118.2 | 18,592 |
| 전자조달 운영지원 (1131-504) | 3,952 | 4,035 | 4,641 | 4,521 | 97.4 | 5,196 |
|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정보화) (1131-505) | 34,705 | 33,038 | 15,843 | 15,117 | 95.4 | 14,436 |
| 1132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 1,588 | 1,679 | 1,701 | 1,664 | 97.8 | 1,767 |
|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132-331) | 1,588 | 1,679 | 1,701 | 1,664 | 97.8 | 1,767 |
| 1200 조달사업 운영 | 16,396 | 18,009 | 21,096 | 20,319 | 96.3 | 29,528 |
| 123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 2,882 | 2,678 | 4,129 | 3,984 | 96.5 | 7,149 |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233-331) | 2,698 | 2,494 | 3,585 | 3,440 | 96.0 | 4,505 |
|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33-332) | 184 | 184 | 544 | 544 | 100.0 | 2,644 |
| 1235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 9,980 | 11,786 | 13,263 | 12,699 | 95.7 | 19,372 |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 9,025 | 8,885 | 10,097 | 9,388 | 93.0 | 15,007 |
|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1235-335) | 955 | 1,369 | 1,350 | 1,311 | 97.1 | 1,397 |
|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1235-338) | - | 1,532 | 1,816 | 2,000 | 110.1 | 2,968 |
| 1236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 3,534 | 3,545 | 3,704 | 3,636 | 98.2 | 3,007 |
|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1236-345) | 3,534 | 3,545 | 3,704 | 3,636 | 98.2 | 3,007 |

| 구 분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7100 조달행정지원** | **98,573** | **101,429** | **110,712** | **107,263** | **96.9** | **115,139** |
| 7101 인건비 | 76,194 | 78,582 | 85,575 | 82,572 | 96.5 | 87,431 |
|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 76,194 | 78,582 | 85,575 | 82,573 | 96.5 | 87,431 |
| 7111 기본경비 | 11,563 | 11,746 | 12,688 | 12,492 | 98.5 | 13,423 |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1) | 4,262 | 4,070 | 4,047 | 3,938 | 97.3 | 4,184 |
|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 7,301 | 7,676 | 8,641 | 8,554 | 99.0 | 9,239 |
| 7131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 1,101 | 1,022 | 1,082 | 1,060 | 98.0 | 1,235 |
| 정책개발 및 조달업무 홍보 (7131-352) | 1,101 | 1,022 | 1,082 | 1,060 | 98.0 | 1,235 |
| 7132 조달행정 역량강화 | 5,513 | 5,669 | 6,833 | 6,544 | 95.8 | 7,349 |
| 조달행정 역량강화 (7132-366) | 5,513 | 5,669 | 6,833 | 6,544 | 95.8 | 7,349 |
| 7134 조달전문교육 운영 | 1,405 | 1,461 | 1,522 | 1,502 | 98.7 | 2,337 |
| 조달전문교육 운영 (7134-371) | 1,156 | 1,210 | 1,265 | 1,265 | 98.4 | 1,984 |
|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7134-650) | 249 | 251 | 257 | 257 | 100.0 | 353 |
| 7135 법정부담금 | 2,796 | 2,949 | 3,012 | 3,092 | 102.7 | 3,364 |
| 건강보험부담금 (7135-381) | 2,796 | 2,949 | 3,012 | 3,092 | 102.7 | 3,364 |
| 7138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손익) | - | - | - | - | - | - |
| 청사 이전 지원(손익) (7138-5081) | - | - | - | - | - | - |
| **8200 계정간거래** | **128,594** | **146,014** | **260,425** | **260,425** | **100.0** | **263,996** |
| 8201 타계정 전출금 | 128,594 | 146,014 | 260,425 | 260,425 | 100.0 | 263,996 |
|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의 전출금(8201-821) | 128,594 | 146,014 | 260,425 | 260,425 | 100.0 | 263,996 |

| 구 분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8400 회계기금간 거래 | 6,447 | 10,279 | 10,286 | 9,927 | 96.5 | 10,818 |
| 8411 공무원 연금부담금 | 6,447 | 10,279 | 10,286 | 9,927 | 96.5 | 10,818 |
| 공무원 연금부담금 (8411-881) | 6,447 | 10,279 | 10,286 | 9,927 | 96.5 | 10,818 |
| 자본계정 소계 | 159,782 | 153,120 | 355,735 | 355,350 | 99.9 | 278,226 |
| 1200 조달사업 운영 | 93,688 | 48,886 | 53,000 | 54,760 | 103.3 | 49,706 |
| 1237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 93,688 | 48,886 | 53,000 | 54,760 | 103.3 | 49,706 |
|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1237-433) | 45,622 | 48,886 | 53,000 | 54,760 | 103.3 | 49,706 |
|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1237-434) | - | - | - | - | - | - |
|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1237-435) | 48,066 | - | - | - | - | - |
| 7100 조달행정지원 | 4,497 | 6,877 | 13,244 | 16,790 | 126.8 | 10,804 |
| 7116 기본경비(자본) | 755 | 1,071 | 990 | 990 | 100.0 | 929 |
| 자본계정 기본경비 (7116-291) | 755 | 1,071 | 990 | 990 | 100.0 | 929 |
| 7161 전산장비 운영 | 1,153 | 1,150 | 1,150 | 1,150 | 100.0 | 1,150 |
| 전산운영경비 (7161-431) | 1,153 | 1,150 | 1,150 | 1,150 | 100.0 | 1,150 |
| 7162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 2,589 | 4,656 | 11,104 | 14,650 | 131.9 | 8,725 |
| 청관사개보수 및 임차 (7162-441) | 1,968 | 2,102 | 2,485 | 2,216 | 89.2 | 4,790 |
| 청사이전 지원 (7162-506) | - | - | - | - | - | 3,458 |
|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신축 (7162-507) | - | - | - | - | - | - |
|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7162-509) | 621 | 2,554 | 8,619 | 12,434 | 144.3 | - |
|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7162-510) | - | - | - | - | - | 477 |
| 8000 회계간거래 | 61,597 | 47,357 | 219,491 | 213,800 | 97.4 | 137,716 |
| 8001 일반회계 전출금 | 61,597 | 47,357 | 219,491 | 213,800 | 97.4 | 137,716 |

| 구 분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년 | | | 2025 예산 |
|---|---|---|---|---|---|---|
| | | | 예산(A) | 결산(B) | 집행률 (B/A) | |
|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8001-801) | 61,597 | 47,357 | 219,491 | 213,800 | 97.4 | 137,716 |
| **9700 여유자금운용** | - | **50,000** | **70,000** | **70,000** | **100.0** | **80,000** |
| 9701 기타여유자금운용 | - | 50,000 | 70,000 | 70,000 | 100.0 | 80,000 |
| 회전자금전출금 (9701-971) | - | 50,000 | 70,000 | 70,000 | 100.0 | 80,000 |

## 나. 검토의견

### (1)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등(시설계약사업수입, 시설계약사업국)

< 현 황 >

「시설계약사업수입」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검토, 설계적정성검토 및 공사원가사전검토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임. 2024년 예산액은 406억 8,600만원으로, 610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51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4회계연도 시설계약사업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B) | 징수 결정액(C) | 수납액 (D)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시설계약사업수입 (45-454) | 40,686 | 40,686 | - | 40,686 | 61,033 | 55,189 | 5,844 | - | 52,869 |

< 검토의견 >

**첫째, 시설계약사업수입 관련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사 원가 사전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에게 징수하여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시설계약사업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B) | 미수납액 (D) | 미수납률 (D/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2021 | 37,869 | 37,869 | 45,709 | 43,449 | 95.1 | 2,260 | 4.9 |
| 2022 | 38,917 | 38,917 | 46,321 | 43,023 | 92.9 | 3,298 | 7.1 |
| 2023 | 39,306 | 39,306 | 49,752 | 45,355 | 91.2 | 4,397 | 8.8 |
| 2024 | 40,686 | 40,686 | 61,033 | 55,189 | 90.4 | 5,844 | 9.6 |
| 2025 | 52,869 | - | - | - | - | - | - |

자료: 조달청

최근 4년간 시설계약사업수입의 결산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24년의 경우 2021년 대비 4.7%p 증가한 9.6%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음.

발생사유에 따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18.2%, 2022년 38.4%, 2023년 49.9%, 2024년 48.9%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미납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례가 급증하는 등 미수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연도별 시설계약사업수입의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따른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미수납액 (A+B) | 납기미도래 (A) | 수요기관의 예산부족(B) | | |
|---|---|---|---|---|---|
| | | | | 당해연도 고지 | 미납기간 1년 초과 |
| 2021 | 2,260 | 1,848 | **412** | 353 | 59 |
| 2022 | 3,298 | 2,031 | **1,267** | 1,198 | 69 |
| 2023 | 4,397 | 2,176 | **2,194** | 1,574 | 647 |
| 2024 | 5,844 | 2,988 | **2,855** | 1,359 | 1,496 |

자료: 조달청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미수납된 금액의 91.2%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미수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수수료 납무의무 및 연체료 부과규정 안내, 납부촉구 공문 시행과 대면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수수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수납액 | 미수납 발생기관(기관별 미수납액) |
|---|---|---|
| 2021년 | 412 | 국방시설본부(1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103), 조선대학병원(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9), 부산해양수산청(24), 한국교원대학교(16), 충남경찰청(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12), 경찰수사연구원(10), 정부청사관리본부(8) 등 총 23개 기관 |
| 2022년 | 1,26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6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262), 대법원(82), 부산항건설사무소(76), 조선대학병원(59), 목포지방해양수산청(49), 포항지방해양수산청(20), 대구 수성구(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16), 경찰수사연수원(10), 부산건설본부(8), 원주지방국토관리청(7), 마산지방해양수산청(7), 정읍시(5), 포천시(5) 등 총 23개 기관 |
| 2023년 | 2,220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1,267),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458), 문화체육관광부(94), 법무부(80),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71),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8),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36), 국방시설본부(17),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14), 국토교통부(12), 전라남도(10) 등 총 29개 기관** |
| 2024년 | 2,855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1,620),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471),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159), 문화체육관광부(112),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86),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73),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52), 한국농업기술진흥원(41),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39), 해양수산부(29),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22), 광주광역시교육청(21),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1) 등 총 27개 기관 |

자료: 조달청

그러나 반복적인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미수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1년 이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확대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조달청은 시설계약사업수입의 최근 수납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설계약사업수입 예산액이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조달청은 시설계약사업수입을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하고 있는데, 최근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을 보면 2021년 114.7%, 2022년 110.6%, 2023년 115.4%, 2024년 135.6%를 나타내고 있음.

조달청은 이러한 수납률 증가를 반영하여 2025년은 예산액을 높여 계상하였으나, 2024년도 수납액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임.

**[최근 4년간 시설계약사업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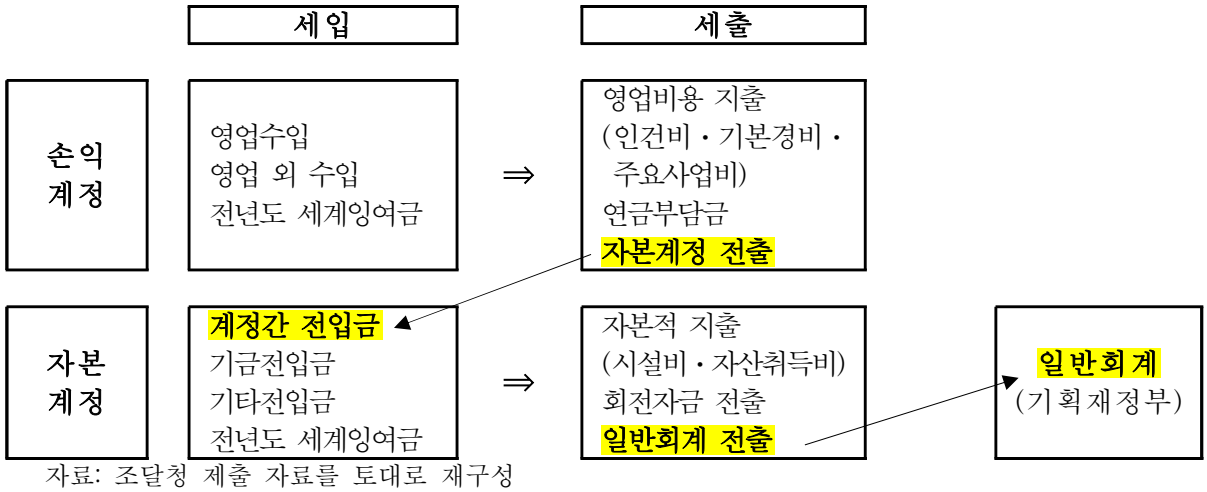
| 연도 | 예산액 |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수납률(C/A) | 수납률(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2021 | 37,869 | 37,869 | 45,709 | 43,449 | 114.7 | 95.1 |
| 2022 | 38,917 | 38,917 | 46,321 | 43,023 | 110.6 | 92.9 |
| 2023 | 39,306 | 39,306 | 49,752 | 45,355 | 115.4 | 91.2 |
| 2024 | 40,686 | 40,686 | 61,033 | 55,189 | 135.6 | 90.4 |
| 2025 | 52,869 | | | | | |

자료: 조달청

그러나 세입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계상하는 것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전출금을 과소편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조달특별회계는 손익계정의 세입예산으로 손익계정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재원을 자본계정으로 전출하여 자본계정의 세입예산에 충당하도록 하고, 자본계정의 세입예산 중 자본적 지출과 회전자금 전출 예산을 제외한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구조임.

**[2024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도]**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예산 편성 시 손익계정의 자본계정 전출액은 세입예산액 규모를 고려하여 계상되므로, 세입예산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계상된다는 것은 자본계정 전출액이 실제 전출 가능한 규모에 비해 과소계상됨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도 실제 전출 여력에 비해 과소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시설계약사업수입의 최근 수납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설계약사업수입 예산액이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 준수 필요 (토지대여료 · 건물대여료, 기획조정관)

< 현 황 >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는 사무실, 비축창고 등 조달청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임.

「토지대여료」의 2024년 예산액은 6억 5,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7,300만원으로, 이 중 6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건물대여료」의 2024년 예산액은 22억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5,900만원으로, 이 중 21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토지대여료 (51-511) | 652 | 652 | - | 652 | 673 | 610 | 62 | - | 689 |
| 건물대여료 (51-512) | 2,210 | 2,210 | - | 2,210 | 2,159 | 2,128 | 30 | - | 2,318 |

< 검토의견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에 부합하도록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를 제때에 부과·고지하고 납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370]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청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자에게 그 사용시작일 전에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를 납부고지하여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그런데, 2024년 납부된 토지대여료 총 22건 중 10건과 건물대여료 총 20건 중 6건이 사용 시작일이 이후 납부 고지되었고, 이에 사용료가 사용 시작일 이후 납부되어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 선납 및 납부기한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음.

**[토지 및 건물대여료 선납 원칙 미준수 현황]**

| 구분 | 총 부과건수 | 선납 미준수 | |
|---|---|---|---|
| | | | 사용일 이후 납부 고지 |
| 토지대여료 | 22건 | 11건 | 10건 |
| 건물대여료 | 20건 | 6건 | 6건 |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70)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토지대여료 선납 원칙 미준수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임차인 | 사용허가기간 | 납부고지일 | 납부일 | 대여료 |
|---|---|---|---|---|---|
| 서울청 | 기획재정부 | '24. 1. 1~'24. 12. 31 | '24. 1. 5 | '24. 1. 24 | 65,800 |
| 서울청 | 조세재정연구원 | '24. 1. 1~'24. 12. 31 | '24. 1. 5 | '24. 2. 29 | 29,300 |
| 서울청 | 통일연구원 | '24. 1. 1~'24. 12. 31 | '24. 1. 5 | '24. 1. 24 | 143,200 |
| 서울청 | 건강가정진흥원 | '24. 1. 1~'24. 12. 31 | '24. 1. 5 | '24. 1. 30 | 3,000 |
| 대전청 | SK일렉링크 | '24. 4. 1~'25. 3. 31 | '24. 4. 1 | '24. 4. 15 | 47 |
| 충북청 | SK일렉링크 | '24. 11. 1~'25. 10. 31 | '24. 11. 21 | '24. 12. 13 | 10 |
| 품질원 | SK일렉링크 | '24. 1. 1~'24. 12. 31 | '24. 7. 24 | '24. 9. 11 | 28 |
| 부산청 | SK일렉링크 | '24. 3. 1~'29. 2. 28 | '24. 3. 22 | '24. 4. 4 | 23 |
| 대구청 | SK일렉링크 | '24. 11. 1~'25.10.31. | '24. 11. 5 | '24. 11. 15 | 28 |
| 경남청 | 안앤장 | '24. 2. 26~'25. 2. 25 | '24. 2. 26 | '24. 3. 5 | 56,284 |
| 경남청 | SK일렉링크 | '24. 4 .8~'25. 4. 7 | '24. 3. 28 | '24. 4. 15 | 19 |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건물대여료 선납 원칙 미준수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임차인 | 사용허가기간 | 납부고지일 | 납부일 | 대여료 |
|---|---|---|---|---|---|
| 서울청 | 기획재정부 | '24. 1. 1~'24. 12. 31 | '24. 1. 5 | '24. 1. 24 | 145,200 |
| 서울청 | 조세재정연구원 | '24. 1. 1~'24. 12. 31 | '24. 1. 5 | '24. 2. 29 | 89,700 |
| 서울청 | 통일연구원 | '24. 1. 1~'24. 12. 31 | '24. 1. 5 | '24. 1. 24 | 416,700 |
| 서울청 | 건강가정진흥원 | '24. 1. 1~'24. 12. 31 | '24. 1. 5 | '24. 1. 30 | 10,400 |
| 서울청 | 구매조달학회 | '24. 1. 1~'24. 12. 31 | '24. 1. 5 | '24. 1. 25 | 6,340 |
| 경남청 | 안앤장 | '24. 2. 26~'25. 2. 25 | '24. 2. 26 | '24. 3. 5 | 9,416 |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민간기관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필요가 있음.

향후 조달청은 「국유재산법」 등에 부합하도록 토지 및 건물대여료를 사용 시작일 이전에 부과·고지하고, 임차인의 사용료 납부가 사용 시작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납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3) 집행 지연, 예산 조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

< 현 황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노후화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조달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58억 4,300만원으로, 44억 4,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86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 9,500만원은 불용하였음.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의 내역사업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나라장터 시스템 개편, AI·빅데이터·클라우드 분야의 신기술 적용 및 자체조달기관 통합 개발을 위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40억 1,800만원으로, 40억 1,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73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원은 불용하였음.

또한, 내역사업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 사업은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사업운영·관리 등을 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8억 2,500만원으로, 4억 2,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1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9,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코드) | 2024 |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전년도 이월액 재위 |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 | | |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1131-505) | 15,843 | 6,464 | △4,440 | - | 17,867 | 15,117 | 11,403 | 8,653 | 55 | 2,695 | 14,436 |
|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 14,018 | 6,335 | △4,019 | - | 16,334 | 13,679 | 9,999 | 7,344 | 55 | 2,600 | 14,436 |
|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 1,825 | 129 | △421 | - | 1,533 | 1,438 | 1,404 | 1,309 | 55 | 95 | - |

< 검토의견 >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의 지연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간 괴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조달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 지연, 예산 조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의 집행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舊나라장터 운영 사업 연장 과정에서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라장터는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2002년 개통 이후 20년 이상 사용되어 왔음. 그런데 나라장터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처리속도 저하, 검색 불편, 수기입력 과도 등으로 기업·수요기관의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조달청은 2021년부터 나라장터의 전면 개편(차세대 나라장터)을 추진하였음.

**[나라장터 개통 이후 변화]**

| 구분 | 개통 당시 | 2022년 | 변화 |
|---|---|---|---|
| 이용자(수요기관) | 2.5만개 | 6.6만개 | 2.6배 |
| 이용자(기업) | 9.2만개 | 53.6만개 | 5.8배 |
| 거래규모 | 36.2조원 | 130.9조원 | 3.6배 |
| 전자입찰공고 | 14만건 | 43만원 | 3.1배 |
| 입찰참가자 | 1,500만명 | 4,108만명 | 2.7배 |
| 전자계약 | 2.3만건 | 114만건 | 49.6배 |
| 연계 시스템 | 38개 | 232개 | 5.9배 |
| 데이터량 | 2014년 기준 4.8TB | 24TB | 5.0배 |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통해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선제 적용하고, 공인인증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를 허용하는 한편, 나라장터와 중복됨에도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고, 개별 관리되던 11개 조달 시스템을 통합하여 조달청의 업무 편리성 및 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조달청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이 2024년 6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여, 舊나라장터 유지보수비는 6개월분만 편성하고, 차세대 나라장터가 개통하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분에 대해서는 차세대나라장터 운영·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음.

그런데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으로 인해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2024년 6월말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를 개통하지 못하였음.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 사유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물자 품질보증시스템의 신규 개발,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기간 중 코로나-19의 확산, 주요 분야에 대한 추가 테스트 실시 등을 들고 있음.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연장 내용 및 연장 사유]**

| 계약차수 | 계약 기간 및 금액 | | 비고 |
|---|---|---|---|
| 총차 계약 | 최초 | 2022. 6. 23. ~ 2024. 6. 22. / 82,089백만원 | |
| | 최종 | 2021. 6. 23. ~ 2025. 2. 20. / 85,833백만원 | |
| 장기 1차 계약 | 최초 | 2021. 6. 23. ~ 2022. 3. 20. / 18,744백만원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방물자 품질 업무가 조달청으로 위탁 됨에 따라 국방물자 품질보증시스템 신규 개발 필요 |
| 장기 2차 계약 | 최초 | 2022. 3. 21. ~ 2022. 12. 31. / 27,784백만원 | |
| | 변경 | 2022. 3. 21. ~2023. 3. 31. / 30,288백만원 | |
| 장기 3차 계약 | 최초 | 2023. 1. 1. ~ 2023. 12. 31. / 29,679백만원 | 계약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대규모 DB 변경에 따른 난이도 상승 |
| | 변경 | 2023. 1. 1. ~ 2024. 3. 31. / 29,679백만원 | |
| 장기 4차 계약 | 최초 | 2024. 5. 2. ~ 2024. 10. 21 /. 7,122백만원 | 추가 테스트 실시, 연말 개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등 고려하여 계약자와 연장 합의 |
| | 1차 변경 | 2024. 5. 2. ~ 2024. 12. 31. / 7,122백만원 | |
| | 2차 변경 | 2024. 5. 2. ~ 2025. 2. 20. / 7,122백만원 | |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차세대 나라장터의 개통 지연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에 따른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간 괴리가 발생하였음.

조달청은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4년도 차세대나라장터 운영을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 중 50억 2,800만원을 조정하여, 舊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내역으로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일자)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 목-세목 | | 세부사업 명 | 목-세목 | |
| 내역변경 (2024.8.2.) |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 관리용역비 | 3,700 | 조달정보화 (1131-501) | 관리용역비 | 舊나라장터 운영 유지비 부족분 충당 |
| 내역변경 (2024.11.22.) |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 관리용역비 | 920 | 조달정보화 (1131-501) | 관리용역비 | 차세대 나라장터 통합 대상 시스템 4종의 운영 유지비 부족분 충당 |
| | 소계 | | 4,620 | | | |
| 세목조정 (2024.8.8.) | 조달정보화 (1131-501) | 공공요금 | 56 | 조달정보화 (1131-501) | 관리용역비 | 舊나라장터 운영 유지비 부족분 충당 |
| 세목조정 (2024.10.23.) | 조달정보화 (1131-501) | 공공요금 | 82 | 조달정보화 (1131-501) | 관리용역비 | 차세대 나라장터 통합 대상 시스템 4종[371]의 운영 유지비 부족분 충당 |
| 세목조정 (2024.11.27.) | 조달정보화 (1131-501) | 일반수용비 | 20 | 조달정보화 (1131-501) | 관리용역비 | |
| | | 공공요금 | 244 | | | |
| 세목조정 (2024.12.6.) | 조달정보화 (1131-501) | 공공요금 | 6 | 조달정보화 (1131-501) | 관리용역비 | 舊나라장터 용역 직원 입주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 충당(37% 인상) |
| | 소계 | | 408 | | | |
| 내역변경 (2024.7.5) | 조달정보화 (1131-501) | 공공요금 | 180 |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 임차료 |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 충당 |
| | **합계** | | **5,028** | | | |

자료: 조달청

371) e-발주통합관리, 벤처나라, 조달정보개방포털, 빅데이터 의사결정 지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관리용역비 46억 2,000만원을 조달정보화 관리용역비로 내역변경하였으며,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및 용역직원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4억 800만원을 자체 세목조정을 하였음.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정보화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예산 1억 8,000만원을 내역변경하였음.

특히,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에서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16억 6,990만원 중 5억 6,800만원을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및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 사무실 임차료 부족분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비대면 입찰자 신원확인 사용료로 편성한 6억 2,775만원을 세목조정 및 내역조정하여 사용한 것임.

비대면 입찰자 신원확인 사용료는 차세대 나라장터 조달업체(신규등록) 신원확인용 서비스 요금으로, 舊나라장터에서 사용하였던 입찰방지용 지문보안토큰 대신 전자정부 정책(모바일 신원증명과 간편인증확산)에 따라 민간 간편인증(유료)을 도입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음.

그런데, 조달청은 이를 행정안전부의 행정공동이용시스템에 의한 신원확인(무료)으로 대체하고, 비대면 입찰자 신원확인 사용료의 대부분을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용도로 조정하였음.

조달청은 행정안전부 간편인증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간편인증 사용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간편인증 적용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4년도 예산 책정 시에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간편인증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 간편인증 사용으로 예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예산 절감을 위해 2023년 9월 차세대 나라장터가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고, 2024년 4월까지 협의를 진행하여 행정안전부의 간편인증 적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조달청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사용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의 대부분을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예산 절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둘째,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으로 인해 당초 2024년 6월 30일까지였던 나라장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연장하면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음.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의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됨에 따라 舊나라장터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 종료 시점인 2024년 6월 30일 이전인 6월 28일에 기존 계약 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음.

**[나라장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현황]**

| 계약명 | | 추정가격 (원) | 낙찰금액 (계약액) | 날짜 | | 계약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근거 |
|---|---|---|---|---|---|---|---|---|
| | | | | 공고일 | 계약일 | | | |
| 나라장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022~2024) | 0차 | 21,805,990 | 4,481,582 | 21.11.11. | 2024.1.7. | □□□ | 경쟁~~수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 | 1차 | | 8,963,164 | | 2024.6.28. | | | |

자료: 조달청

그런데, 상기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舊나라장터 운영 유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의 내역변경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기는 2024년 8월 2일로, 나라장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연장 계약 당시(2024년 6월 28일)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국고금 관리법」 제20조[372]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나,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에 따른 舊나라장터 운영 연장을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족한 예산을 조정하였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해당 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조건을 연장한 조치로, 계약 연장 시 지출원인행위를 사전에 완료하지 못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연장 계약은 최초 계약이 아니라 기존 용역계약의 조건 내에서 긴급히 체결되었으므로 예외적 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연장 계약의 경우에도 금액의 변경 없이 계약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추가 배정이 없이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72)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이전에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지연으로 인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이 지연되었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대부분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 등 28개 기관은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과 연계 편의성 등을 사유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조달창구 분산으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예산 중복 투입 방지, 보안·안전성 강화·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추진 당시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2022년 12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2024년도 상반기부터 2026년까지 관련 법령상 통합 예외 사유가 있는 3개 기관[373]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통합하기로 계획하였음.

그런데 차세대 나라장터의 개통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초 1차 통합대상인 7개 기관의 통합이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시기인 2025년 1월 이후로 연기되는 등 통합 시기가 순연되었음.

이에 따라 기업 불편, 기관들의 유지보수 비용 투입기간 증가, 통합에 대한 동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달청은 추가적인 지연 없이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대상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73) 방위사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기관 및 통합 시기]

| 구분 | 통합 회차 | 통합기관 | 통합시기 |
|---|---|---|---|
| 당초 | 1차(7개) |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4년 상반기 |
| | 2차(8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연구원, ㈜에스알, 한전KDN, 한국국토정보공사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
| | 3차(6개)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국제협력단 | 2025년 하반기 |
| | 4차(4개)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 2026년까지 |
| 변경 | 1차(6개) |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스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5년 1월 |
| | 2차(9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연구원, 한전KDN,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 2025년 상반기 |
| | 3차(6개)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국제협력단 | 2025년 하반기 |
| | 4차(4개)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 2026년 이후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일정이 2024년 6월에서 2025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시기를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변경
* 향후 통합대상 기관의 대응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통합기관 및 시기 조정 예정

자료: 조달청

한편,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를 2025년 1월 시범 개통하고, 3개월의 테스트를 거쳐 4월부터 정식 개통하였는데, 시범 운영기간 및 정식 개통 후 접속지연, 인쇄 불가, 세금계산서 오류, 검사검수 진행 오류 등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주요 오류 발생 내역]

| 오류 발생 내역 | 오류 발생 원인 |
|---|---|
| 접속지연 | 검색기능 오작동에 따른 과부화 |
| 인쇄 불가 | 사용자 개인 PC 브라우저 설정 문제 |
| 세금계산서 오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스키마 오류 |
| 연계 오류 | 서울보증 신규 개통으로 시스템 불안정, 개인 ID 관련으로 D-drain 연계 단절 |
| 검수검사 진행 오류 | 담당자 변경 시 나라장터 검사검수 불안정 |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는 하루 최대 투찰이 2022년 기준 42만 9천건에 이르는 등 54만개 기업 및 7만개의 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연간 131조원 규모의 국가 중요시스템으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국민 불편, 재산적 손해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세대 나라장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처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舊나라장터 운영유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간 괴리가 발생하였으며, 舊나라장터 운영 사업 연장 과정에서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 지연, 예산 조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의 집행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개선 필요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기획조정관)

< 현 황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은 해외조달기관·국제기구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을 해외에 확산·보급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35억 8,500만원으로, 이 중 3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내역사업인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은 2024년 예산현액 27억 6,900만원 중 26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 2025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 | 3,585 | 3,585 | - | - | - | 3,585 | 3,440 | - | 145 | 4,505 |
| -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 및 나라장터 해외확산 | 287 | 287 | - | △10 | - | 277 | 270 | | 7 | 199 |
|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지원** | **2,759** | **2,759** | **-** | **10** | **-** | **2,769** | **2,635** | **-** | **134** | **2,409** |
|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 539 | 539 | - | - | - | 539 | 535 | - | 4 | 697 |
| -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 - | - | - | - | - | - | - | - | - | 1,200 |

## < 검토의견 >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내역사업 내 개별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서비스 차별화, 사업 통폐합 등 중·장기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조달시장 수출 실적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타 부처와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내역사업 내 개별 지원사업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사업의 별도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내역사업 내에서 다양한 개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개별사업의 지원서비스가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사업은 모두 부스임차료, 운송비 등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달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 사업은 조달청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과 제공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374]

374)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은 수출전략기업(23~24년 10개사, 24~25년 7개사)을 선정하여 2년간 수출전략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목표시장 조사 및 전략보고서 작성, 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현지출장 동행, 사업 발굴, 입찰제안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이 선정한 전문수행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사업'은 조달청이 미리 승인한 서비스를 지원대상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용한 후 사후적으로 비용을 정산받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현황]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서비스 |
|---|---|---|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 G-PASS기업<br>-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 | - 해외전시회 참가비용(부스 임차료, 운송비) 지원 (700만원 한도) |
| 시장개척단 파견 | - G-PASS기업<br>-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 | - 컨설팅(현지 바이어 대상 홍보용 자료제작 지원)<br>- 현지 수출상담회 |
| 바이어 매칭 지원 | -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 | - 컨설팅, 마케팅자료 작성<br>- 입찰 사전기획 및 참가 지원, 입찰정보 제공 |
|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 - 국내 기업 | - 바이어-기업 간 수출상담회<br>-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br>- 전문가 컨설팅 |
| 수출전략기업 육성 | - G-PASS기업<br>-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 | - 해외 수주활동 지원(해외전시회 참여지원, 목표시장 조사 및 전략보고서 작성 등)<br>- 역량교육(기술인증, 무역, 전략컨설팅 등)<br>- 바이어 발굴·매칭·사후관리, 사업발굴<br>- 입찰제안서 작성 지원 등 |
|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 -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br>- e-나라도움 미결격 기업 | - 조달기업의 맞춤형 수요 지원(3,000만원 한도)<br>· 해외조달 밴더등록, 해외조달 바이어 매칭·발굴<br>· 입찰제안서·계약서 작성<br>· 해외인증 취득, 시제품 제작, 홍보자료 제작 등 |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강화, 특정 목표시장 진출 지원, 수출상담 제공 등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을 특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지원사업 간 중복 요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범위, 항목, 제공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사업목적이 동일한 유사·중복 사업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발생시키며,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이 다른 경우 수혜기업의 혼란 및 수혜기업 간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내역사업 내 개별사업의 지원서비스 차별화, 사업 통폐합 등 중·장기적인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고유의 사업목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타 부처 및 유관 공공기관의 유사사업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조달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은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과 지원서비스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375]

**[각 부처 수출바우처사업 현황]**

| 구분 | 조달청 | 중기부 | 산업부 |
|---|---|---|---|
| 사업명 |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 산업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 운영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지원대상 | 나라장터 등록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 지원내용(예시) | ·해외조달입찰 및 등록서비스<br>·해외 인증·지재권 취득<br>·맞춤형 제품·샘플제작<br>·시제품 운송<br>·통번역, 법률지원<br>·홍보자료 제작 등 |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br>·수출관련 서류작성·등록서비스<br>·특허·지재권 취득<br>·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영업 지원<br>·홍보자료 제작<br>·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br>·홍보영상제작, 통번역<br>·전시회 등 해외 영업 지원<br>·인증·특허권·지재권 취득<br>·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br>·수출관련 서류대행 등 |
| 지원금액 | 3,000만원 한도<br>(보조율 70%) | 3,000만원 ~ 1억원 한도<br>(보조율 50% ~ 70%) | 3,000만원 ~ 1억원 한도<br>((50% ~ 70%) |

자료: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 「2025 주요 부처별 수출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이 외에도 조달청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376]과,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은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377]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375) 각 사업 모두 각 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지원대상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받는 사업임.

376)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부스임차료, 전시품 운송비용, 해외마케팅 서비스비용을 최대 600만원 내에서 사후 실비지원하고 있음.
(자료: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 「2025 주요 부처별 수출 지원사업 세부내용」)

377)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시장조사, 로드쇼 개최, 입찰수주지원, 지사화사업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자료: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 「2025 주요 부처별 수출 지원사업 세부내용」)

따라서 조달청은 부처 간 사업 중복을 방지하여 정부 전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조달청의 고유 사업목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특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나, 현재 조달청은 동 사업의 실적을 지원기업의 전체 해외수출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타 부처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과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 및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조달청은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실적 자료를 통해 수출성과를 확인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공공부문 직접 진출 외에 현지 조달기업을 통한 간접 진출 실적도 포함되어 있어 최종 납품처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함.[378]

그러나 관세청의 수출실적 자료만이 아니라 동 사업의 지원기업으로부터 해외조달시장 수출 실적을 제출받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 실적을 파악함으로써 동 사업의 목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약 2조 달러의 규모로 국내 조달시장의 12배에 달하는 규모의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나 진입장벽이 높아, 해외공공부문 네트워크 등의 관련 인프라와 조달행정 전문성을 보유한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조달청은 해외조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조달시장 수출 실적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

378) 다만, 수출품목 특성상 공공부문으로 수요가 한정된 물품이 대다수로 해당 국가의 조달기업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주한미군, 국제기구, 해외 공공기관 수주 등 관리 가능한 시장 진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견임.

## (5) 인건비의 연례적인 전용 및 불용 최소화 필요 (기관운영 인건비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운영지원과)

< 현 황 >

「기관운영 인건비」는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임. 2024년 예산액은 855억 7,500만원으로, 전용한 1억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54억 7,200만원이며, 825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조달청 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물품 구입,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를 편성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86억 4,100만원으로 전용액 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6억 5,400만원임. 이 중 85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2024년 배상금 예산현액은 1억 1,300만원으로, 전액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 85,575 | - | △103 | - | 85,472 | 82,573 | - | 2,899 | 87,431 |

[2024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 8,641 | - | 13 | - | 8,654 | 8,555 | - | 99 | 9,239 |
| - 배상금(310-02) | 100 | - | 13 | - | 113 | 113 | - | - | 100 |

< 검토의견 >

**조달청은 연례적으로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보수의 불용 예상액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전용하여 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기타 인건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배상금 및 기타직보수의 적정 예산수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례적인 이·전용과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연례적으로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인건비의 불용 예상액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전용하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세목조정하여 건강보험료 부족분 또는 기타직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2021 | 81,075 | - | △181 | - | 80,894 | 73,588 | - | 7,306 |
| 2022 | 81,416 | - | △744 | - | 80,550 | 76,194 | - | 4,356 |
| 2023 | 83,727 | - | △554 | - | 83,173 | 78,582 | - | 4,591 |
| 2024 | 85,575 | - | △103 | - | 85,472 | 82,573 | - | 2,899 |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이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배상금 예산액보다 배상금 소요액이 많아 「기관운영 인건비」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의 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조달청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배상금 예산액 | 40 | 40 | 40 | 50 | 100 |
| 배상금 소요액 | 128 | 130 | 353 | 101 | 113 |
| 이전용 금액 | 88 | 90 | 313 | 51 | 13 |

자료: 조달청

특히 2024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배상금(310-02목)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배상금 소요액이 이를 초과하여 1,300만원이 기관운영 인건비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전용되었음.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 중 배상금 등 관련 이전용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 목-세목 코드 |
| 전용 (‘24.7.11.) |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 보수 (110-01) | 4 |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 배상금 (310-02) |
| 전용 (‘24.12.18) |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 보수 (110-01) | 9 |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 배상금 (310-02) |
| 세목조정 (‘24.12.20) |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 보수 (110-01) | 101 |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 기타직보수 (110-02) |
| 세목조정 (‘24.12.20) |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 보수 (110-01) | 29 |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 기타직보수 (110-02) |

자료: 조달청

한편, 조달청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배정된[379] 실무수습 및 지역인재 실무수습 등의 급여 부족으로 2024년 보수(110-01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로 1억 3,0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는데, 이처럼 당초에 없던 예산이 집행되면 국회가 심사한 내용과 다른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고, 전용 등에 의한 예산수요가 많을 경우 전용해 주는 경비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배상금과 기타직보수의 적정 예산수준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기관운영 인건비 사업에서 반복적인 전용 및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인건비 편성과 인력 운영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379) 2024년도 조달청 실무수습 요구 및 배정 현황

| 구분 | 공채 | | 지역인재 | |
|---|---|---|---|---|
| | 7급 | 9급 | 7급 | 9급 |
| 요구 인원 | 14명 | 28명 | 2명 | 6명 |
| 배정 인원 | 20명 | 37명 | 2명 | 8명 |

## (6)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주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 현 황 >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조달청 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물품 구입,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를 편성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86억 4,100만원으로 전용액 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6억 5,400만원임. 이 중 85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2024년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은 30억 1,000만원으로, 30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 8,641 | - | 13 | - | 8,654 | 8,555 | - | 99 | 9,239 |
| - 일반수용비(210-01) | 2,998 | - | 12 | - | 3,010 | 3,003 | - | 7 | 3,177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667 | - | △110 | - | 1,557 | 1,550 | - | 6 | 1,716 |
| - 피복비(210-03) | 50 | - | △3 | - | 47 | 47 | - | - | 48 |
| - 급식비(210-04) | 23 | - | △1 | - | 22 | 21 | - | 1 | 20 |
| - 임차료(210-07) | 476 | - | △38 | - | 438 | 435 | - | 3 | 388 |
| - 유류비(210-08) | 67 | - | △19 | - | 48 | 45 | - | 2 | 60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74 | - | 135 | - | 909 | 908 | - | 1 | 874 |
| - 재료비(210-11) | 34 | - | - | - | 34 | 34 | - | - | 34 |
| - 일반용역비(210-14) | 270 | - | 52 | - | 322 | 305 | - | 17 | 338 |
| - 관리용역비(210-15) | 128 | - | △2 | - | 126 | 123 | - | 3 | 152 |
| - 국내여비(220-01) | 978 | - | 68 | - | 1,046 | 1,024 | - | 22 | 1,154 |
| - 국외업무여비(220-02) | 247 | - | △94 | - | 153 | 149 | - | 4 | 337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505 | - | - | - | 505 | 504 | - | - | 579 |
| - 일반연구비(260-01) | 199 | - | - | - | 199 | 177 | - | 22 | 224 |
| - 배상금(310-02) | 100 | - | 13 | - | 113 | 113 | - | - | 100 |
| - 포상금(310-03) | 126 | - | - | - | 126 | 115 | - | 11 | 38 |

< 검토의견 >

**조달청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 서류를 검토하여 지출관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해당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4조[380]에서 예외적으로 간이한 지출 절차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에 해당될 경우, 재무관 및 지출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직접 해당 지출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

관서운영경비의 해당 범위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381]에 따라 건당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한됨. 이처럼 관서운영경비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경미한 지출이 아닌 건에 대해서도 관서운영경비 제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한 재무관과 지출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예산지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조달청은 물품관리 결산교육 교재 인쇄비 53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바, 향후 이와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

(단위: 원)

| 비목명 | 집행일 | 지급업체 | 지급액 | 지급용도 |
|---|---|---|---|---|
| 일반수용비 (210-01) | 7.23 | 청△△△ | 5,300,000 | 물품관리 결산교육 교재 인쇄비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80)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381)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이하 생략)

## (7) 비축물자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 현 황 >

「회전자금전출금」은 조달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회전자금으로 적립하여 조달물자대금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700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회전자금전출금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코드)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회전자금전출금 (9701-971) | 70,000 | - | - | - | 70,000 | 70,000 | - | - | 80,000 |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라 회전자금을 보유·운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매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이하 “회전자금 운용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있음.

2024년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 회전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173억원이 감소[382]한 1조 4,888억원으로, 수요물자사업[383] 자금은 1,051억원이고, 비축물자사업[384] 자금은 1조 3,833억원임.

[회전자금 규모]

(단위: 억원)

| 2023년(A) | | | 2024년(B) | | | 증감(C=B-A) | | |
|---|---|---|---|---|---|---|---|---|
| 수요 | 비축 | 계 | 수요 | 비축 | 계 | 수요 | 비축 | 계 |
| 1,051 | 14,010 | 15,061 | 1,051 | 13,833 | 14,884 | - | △177 | △177 |

382) 비철금속 구매를 위한 회전자금전출액 700억원 증액, 마스크 비축자금 반납액 873억원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손실금 4억 감액
383) 조달물품대금을 납품업체에 대신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
384) 비철금속 등 원자재를 비축해서 필요할 때 중소기업에 방출하여 자금을 회수

< 검토의견 >

**첫째,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개별 비철금속의 비축사업 계획상 비축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법령에 따르면 비축물자는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함.

**[「비축대상물자 고시」에 따른 비축물자의 범위]**

| 순번 | 종류 | 순번 | 종류 |
|---|---|---|---|
| 1 | 알루미늄류 | 8 | 방산물자용 원자재[385] |
| 2 | 구리류 | 9 | 재활용원자재 |
| 3 | 아연류 | 10 | 긴급수급조절물자[386] |
| 4 | 연류 | 11 | 경제안보품목[387] |
| 5 | 주석류 | | |
| 6 | 니켈류 | | |
| 7 | 희소금속류[388] | | |

정부는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여건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자원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7년까지 6대 비철금속 60일분 확보를 목표로 연도별 비축물자 확대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음.

385)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중 동법 제13조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무기체계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서 구체적인 비축품목은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 협의하여 정함
386) 긴급수급조절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말함.
387)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0조에 의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동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품목을 말함.
388)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비스무스 등이 포함됨.

조달청은 6대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비축물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조달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회전자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500억원, 2024년에는 700억원, 2025년에는 800억원을 각각 6대 비철금속 비축 등을 위한 용도로 조달특별회계에서 회전자금으로 전출하였음.

**[회전자금전출금 현황(2023~2025년)]**

(단위: 억원)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비축자금(누계) | 14,010 | 13,833 | 14,546 |
| 회전자금전출금 | 500 | 700 | 800[389] |

2025년 비축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4년 추진실적에서 6대 비철금속의 재고량을 수입수요량 기준 2023년 말 50일분에서 2024년 말까지 53일분으로 확충하여, 2024년 비축사업 계획상 목표 재고일수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비축사업 계획상 품목별 비축 계획량과 2024년 말 기준 6대 비철금속의 실제 비축량을 비교해보면 품목별 비축량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알루미늄 및 구리의 경우 실제 재고량이 계획 재고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 수요가 많은 비철금속 6종에 대해 재고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개별 비철금속은 산업에서의 쓰임이 달라 서로를 대체할 수 없음. 그러나 조달청은 개별 품목의 재고량에 대한 고려보다는 6대 비철금속의 비축일수를 산술평균한 평균 비축일수가 당초 목표로 한 계획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비축사업 계획상 목표 재고일수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2024년 비축사업 계획상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6대 비철금속의 평균 비축일수 도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의 비축량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임.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사용되어 추가비축소요가 큰 구리 등의 공급 위기가 예상되어 2025년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389) 비철금속 구매자금 700억원 + 긴급조달자금 100억원

이에 따르면 구리는 국내 생산이 존재하나, 수급 구조상 국내 수입이 상당하며, 광석 공급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 전환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비축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내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구리의 2024년 비축재고량이 비축사업 계획상 목표 재고량보다 부족하고, 비축 목표일도 50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구리에 대한 공급 위기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개별 비철금속의 재고량이 2024년 비축사업 계획상 목표 재고량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조달청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및 위기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비철금속별 비축사업 계획상 목표 재고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철금속 재고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내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구리의 2024년 비축재고량이 비축사업 계획상 목표재고량보다 부족하고, 비축 목표일도 50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구리에 대한 공급 위기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개별 비철금속의 재고량이 2024년 비축사업 계획상 목표 재고량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조달청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및 위기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비철금속별 비축사업 계획상 목표 재고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철금속 재고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로 인해 비축물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프리미엄계약 외에도 장기공급계약의 비중을 늘려 비축물자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리나라는 2023년도 기준 6대 비철금속의 수요가 알루미늄은 세계 7위, 구리 6위, 주석 4위 등으로, 주요 비철금속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조달청은 매년 비축목표량, 구매·방출 실적,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 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연간 비축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간 비축사업 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비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함.

조달청은 확정된 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하는데, 비축물자 구매절차를 살펴보면 런던금속거래소(LME) 등록브랜드로 지정된 비철금속에 대해 프리미엄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비축물자 구매 방법]**

<table>
<tr><th colspan="2">진 행 절 차</th><th colspan="3">계약방식 별 세부절차</th></tr>
<tr><td colspan="2">비축물자 구매공고 및<br>낙찰자 선정</td><td colspan="3">입찰구분 : 국제<br>계약형태 : 프리미엄계약</td></tr>
<tr><td colspan="2">계약체결</td><td>국내공급분</td><td>해외공급분(T/T)*</td><td>해외공급분(L/C)**</td></tr>
<tr><td colspan="2">신용장 개설의뢰</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선적서류 제출</td><td colspan="2">입고 7일전까지 제출</td><td>선적 후 제출</td></tr>
<tr><td colspan="2">선적대금 지급</td><td colspan="2">×</td><td>90% 지급(달러)</td></tr>
<tr><td colspan="2">수입통관</td><td>계약자 수행</td><td colspan="2">인천·부산청 수행</td></tr>
<tr><td colspan="2">운송<br>(인천·부산항→입고지방청)</td><td>계약자 수행</td><td colspan="2">입고지방청 수행<br>(운송 단가계약 업체)</td></tr>
<tr><td colspan="2">중량검정 및 입고보고</td><td colspan="3">입고지방청 수행</td></tr>
<tr><td rowspan="2">대금지급</td><td>가격지정 이전</td><td>90% 지급(원화)</td><td>90% 지급(달러)</td><td>×</td></tr>
<tr><td>가격지정 이후</td><td>정산대금(10%)<br>지급(원화)</td><td>정산대금(10%)<br>지급(달러)</td><td>정산대금(10%)<br>지급(달러)</td></tr>
</table>

* T/T : 전신환 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는 방식(은행을 통한 송금·입금)

** L/C : 수출자가 선적을 하면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 방식(은행의 신용이 담긴 서신이라는 의미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라고 부름

자료: 조달청

비축물자 구매 계약은 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조달청이 주로 활용하는 방식은 프리미엄계약으로, 프리미엄계약이란 운송비, 수수료 등 부대비용(프리미엄)만을 입찰에 의하여 결정하고, 물품가격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통산 2~3개월) 안에 조달청이 시세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390]하는 계약임.

**[비축물자 구매 방법]**

| 종류 | | 구매 방법 |
|---|---|---|
| 일반경쟁계약 | **프리미엄계약** | 운송비, 수수료 등 부대비용(프리미엄)만을 입찰에 의하여 결정하고, 물품가격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통산 2~3개월) 안에 조달청이 시세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임. |
| | **장기공급계약** | 입찰에 의해 장기공급을 위한 프리미엄을 결정. 통상 6개월~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매월 평균 국제가격에 따라 일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계약 |
| | 확정계약 | 입찰 시 약 7-1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시세 변동에 대응한 신속한 구매가 곤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 수의계약 | |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가격변동이 극심한 경우 등에 시행(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5조상 비축물자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 시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계약방법의 특례 규정) |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프리미엄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중 구매시점을 포착하여 소요물량을 신속하게 구매함에 따라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프리미엄계약 방식은 공급망 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가격 상승 및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비축물자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조달청의 비축물자 구매 방식에 있어 프리미엄계약 외에 보다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음. 일반계약방식 중 장기공급계약은 입찰에 의해 장기공급을 위한 프리미엄을 결정하여, 통상 6개월~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매월 평균 국제가격에 따라 일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임.

물론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가격변동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나, 향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매달 일정 물량을 매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90) 프리미엄 계약기간 중 조달청이 구매시점을 포착하여 LME에서 고시되는 공식가격으로 구매 확정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물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장기공급계약을 확대하여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조달청은 아연을 대상으로 연간공급계약(계약기간 1년, 연간 일정 물량의 공급을 계약 업체와 약정)[391]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계약물량을 5회에 걸쳐 공급받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연간공급계약을 아연 외에 알루미늄, 구리, 주석 등 4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392]

또한,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공급망 불안정으로 수급난 발생 시 기존 프리미엄계약 방식 대비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기존 계약과 연간공급계약 방식 비교]**

| 구분 | 프리미엄계약 | 연간공급계약 |
|---|---|---|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일반경쟁입찰 |
| 계약기간 | 개찰일로부터 3개월 | 1년 |
| 프리미엄 | 스팟(SPOT) 프리미엄 | 연간고정 프리미엄 |
| 가격지정기간 | 개찰일로부터 90일 이내 | 납품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 |
| 가격지정기준 | 가격지정일 LME 오피셜 | 납품요구별 가격지정일 LME 오피셜 |
| 재고유형 | 일반 또는 선물연계 | 일반 또는 선물연계 |

자료: 조달청

조달청에 따르면 향후 구리·알루미늄·주석의 수요 및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 알루미늄과 주석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로, 중국 등 생산 상위국의 수출 통제 정책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확충에 대응하여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달청은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축물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391) 조달청은 연간공급계약은 1~2개월 수요량을 매번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입찰일수 단축을 통한 물량의 적기확보,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공급망 위기 시 신속·안정적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임.

392) 조달청은 2025.5.16.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비철금속 연간공급계약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철금속 연간공급계약의 대상을 수입의존도가 높고 시장수요가 많아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요구되는 '알루미늄'·'구리'·'주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기존의 프리미엄계약 외에도 장기공급계약의 비중을 늘려 비축물자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8) 마스크 비축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현 황 >

조달청은 코로나-19 비상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도 추가경정경예산으로 비축용 마스크(1억 5,000만장, 회전자금 1,050억원)를 구매하였음. 조달청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비축물량을 구매하여 보관·관리하면서, 이를 공공기관[393]에 유상 방출하고, 비축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매하여 보충하고 있음.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 비축량은 2025년 4월 기준 약 4,070만장으로, 지역별 마스크 수요 분포, 생산업체 근접도 및 물류체계 등에 맞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전량 민간 창고를 임차하여 비축하고 있음.

마스크 비축 목표량은 초기 비축 당시의 1억 5,000만장이었으나, 2022년 12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 및 감염병 위기 등 정책여건과 무관하게 마스크 비축 목표량을 5,300만장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마스크 비축을 위한 회전자금 1,050억원 중 마스크 5,300만장 구입 비용 133억원(5,300만장×단가 250원)을 제외한 873억원을 2024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반납하였음.

393) 민간업체, 개인은 방출 이후 전매행위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방출한다는 입장임.

< 검토의견 >

**조달청은 마스크 재고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마스크 비축사업 개선방안 마련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스크 비축 목표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달청에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납품하도록 마스크 생산업체와의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계기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서 2020년 4월부터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어 비축하고 있음.

2023년 5월 코로나 펜데믹 종식선언 이후 공공기관 대상의 마스크 판매실적이 급감하면서 조달청은 마스크 재고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도별 마스크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연간 1억 2,558만장의 마스크가 방출되어 마스크 재고 순환이 원활하였음을 알 수 있음. 조달청은 마스크 판매분을 보충하기 위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2월 사이 마스크 2,160만장을 구매하였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2023년부터 국방부 등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수요기관들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조달청의 마스크 유상 판매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음.

**[연도별 마스크 판매 실적]**

(단위: 원/만장/백만원)

| 구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구입 | 평균 단가 | 101 | 73 | - |
| | 수량 | 7,676 | 2,000 | - |
| | 총 금액 | 7,739 | 1,470 | - |
| 방출 | 평균 단가 | 219 | 240 | 161 |
| | 수량 | 12,558 | 1,803 | 628 |
| | 총 금액 | 27,495 | 4,322 | 1,013 |

자료: 조달청

이에 따라 조달청은 마스크 재고 순환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4년부터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있는데,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유통기한이 3년임에 따라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 비축량 약 4,070만장[394] 중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에 구매한 2,160만장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2025년 11월부터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조달청은 그동안 마스크 비축목표량 대비 재고 부족분을 일시에 산정(통상 500만장 ~ 1,500만장)해 복수의 계약업체를 선정[395],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재고 누적에 따라 구매를 중지하였으나, 기존 구매분에 대해서는 유상 방출이 어려울 경우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이와 같이 조달청은 마스크 재고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설정된 마스크 비축 목표량에 대해 조달청,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스크 비축 목표량은 초기 비축 당시 1억 5,000만장 규모였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2023년부터는 5,300만장으로 비축 목표량을 한차례 하향 조정하였음.

조달청은 마스크 재고순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스크 비축목표량 재조정을 검토하였는데, 현재의 비축목표량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 이전에 결정된 목표량으로, 현재는 의사결정기구가 불분명하여 적정 목표량 재논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에서도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기존의 비축목표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받음에 따라 비축목표량을 조정하지 못하였음.

2024년 조달청의 마스크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판매량은 628만장 수준으로 전년 판매량 1,803만장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조달청은 2024년 12월부터 재고 순환 활성화를

394) 2025년 4월 기준
395) 희망수량경쟁입찰 :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요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선정

위한 마스크 할인 판매를 실시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월평균 100만장[396] 수준으로 재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마스크는 유통기한이 도래할수록 염가로 방출할 수 밖에 없으며, 3년의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마스크 판매량이 지속될 경우 보유 마스크의 대규모 폐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달청은 2025년 5월 21일 제4차 비축전문위원회에서 마스크 비축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하여 마스크 비축 목표량의 안전재고·탄력재고 이원화를 통한 탄력적 운영 방안[397]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함께 마스크 비축 총 목표량에 대해서도 조달청,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달청에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납품하도록 마스크 생산업체와의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마스크는 전량을 조달청이 임차한 창고에 비축하고 있는데, 마스크 비축사업 효율화방안에 따라 마스크 비축 목표량을 이원화하는 경우 안전재고는 조달청이 비축하고, 탄력재고에 대해서는 마스크 업체가 자유롭게 판매·관리하되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마스크 생산업체와의 계약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25년 4월 다수공급자(MAS) 계약 마스크 생산업체 간담회에서 마스크 민간 비축에 대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비축 물량의 민간 비축은 생산업체의 시설 부족,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마스크 탄력재고를 일반 판매분과 별도로 민간업체가 비축하는 것이 아닌 평시에는 일반 판매를 하다가 조달청 요구 시 납품할 경우 생산업체의 시설 부족 및 비축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조달청은 마스크 비축방식 변경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398]

---

396) 2022년 1억 1,786만장 → 2023년 1,801만장 → 2024년 628만장 → 2025년 1분기 344만장

397)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일정 수량은 '안전재고'로 상시 비축, 감염병 유행 예상 시 추가 필요 수량은 '탄력재고'로 구분

이와 같이 조달청은 마스크 재고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마스크 비축사업 개선방안 마련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스크 비축 목표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달청에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납품하도록 마스크 생산업체와의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398) 조달청은 비축전문위원회에서 마스크 비축사업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안전재고는 조달청이 상시 비축하고, 탄력재고는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거쳐 감염병 위기상황이 예측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정 물량을 결정하여, 연간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추가 물량을 우선 납품받는 연간공급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추후 안전재고량 설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9)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 현 황 >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한 필요한 지원 및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에 따른 비축시설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조달청은 민관 공동 비축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사업자와 알루미늄 및 탄산리튬을 공동비축하였으나 종료하였고, 현재는 구리에 대해서만 공동 비축 중에 있음.

**[민관 공동비축제도 활용 현황]**

(단위: 톤)

| 연도 | 업체 | 품목 | 비축기간 | 입고량 | 방출량 | 비 고 |
|---|---|---|---|---|---|---|
| 2012년 | □□□□자산운용 | 구리 | 2012.12.~ 현재 | 1,112 | - | |
| 2013년 | △△상사 | 알루미늄 | 2013.1.~ 2016.2. | 5,807 | 5,807 | 종료 |
| 2015년 | ○○○○ | 탄산리튬 | 2015.9.~ 2017.8. | 2,076 | 2,076 | 종료 |
| 2021년 | □□□□자산운용 | 구리 | 2021.6..~ 현재 | 601 | - | 추가 |
| 2024년 | □□□□자산운용 | 구리 | 2024.7.~ 현재 | 500 | - | 추가 |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조달청은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인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이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자산운용사 및 ETF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창고보관료 적용 등의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활용을 통해 비축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관 공동 비축제도는 정부 비축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 보유 원자재 실물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구매한 비축물자를 조달청 시설에 비축하는 경우 저렴한 비축시설 사용료로 장기비축이 가능함.

조달청은 2011년 7월 민관공동비축사업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자산운용과 협약을 체결(2011. 9.)하고 구리 1,112톤을 조달청 비축창고에 입고하였으며, 조달청이 발급한 창고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리 실물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현재까지 운용[399]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에는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이하 “창고사용비”라 함)로 약 3,500만원을 조달청에 지급하였음.

**[최근 3년간 □□□□자산운용의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 징수액 | | | 감면액 | | |
|---|---|---|---|---|---|---|
| | 시설사용료 | 보관관리비 | 소계 | 시설사용료 | 보관관리비 | 소계 |
| 2022 | 23 | 8 | 31 | - | - | - |
| 2023 | 23 | 9 | 32 | - | - | - |
| 2024 | 25 | 10 | 35 | - | - | - |
| 계 | 71 | 27 | 98 | - | - | - |

창고사용비는 조달청 고시인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해당 건은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우선구매권 적용물량 등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400]을 충족하지 못해 별도의 창고사용비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음.

399) 2021년과 2024년에 추가 물량 입고
400) 비축기간, 우선구매권적용물량, 연평균 비축물량 모두 충족 시 창고사용비 감면

그런데, 이러한 감면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운용은 국내 LME 보관창고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청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달청 창고사용비를 톤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일 약 53원[401]으로, 국내 LME(London Metal Exchange) 보관창고의 톤당 1일 창고사용비 상한인 696원 대비 약 7.6% 수준임.

해당 창고사용비는 펀드 가격에 매일 반영되어 ETF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일반 대비 저렴한 창고사용비로 투자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402]]**

○ 보관관리비: 1일·1㎡당 77원(일·㎡)
○ 시설사용료
- 창고: 1일·1㎡당 180원(일·㎡)
- 야적장: 1일·1㎡당 112원(일·㎡)

(단위 : ㎡/톤)

| 구 분 | 알루미늄 | 구 리 | 납 | 아 연 | 주 석 | 니 켈 |
|---|---|---|---|---|---|---|
| 톤당 면적 (3단 적재 시) | 0.344 | 0.206 | 0.168 | 0.252 | 0.207 | 0.321 |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시 별도 산정

○ 시설사용료 감면율

| 구분 | 지표(기간 및 물량) | 보관관리비 | 시설사용료 |
|---|---|---|---|
| 비축 물자 |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 30% | 30% |
| |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5%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 40% | 40% |
| |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2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 50% | 50% |

**[국내 LME 창고사용비 현황[403]]**

(2025. 6. 기준. 단위: cent/1일·톤)

| 구분 | 품목 | | | | |
|---|---|---|---|---|---|
| | 알루미늄 | 구리 | 니켈 | 주석 | 납 |
| 톤당 가격 | 55 | 51 | 59 | 56 | 51 |
| 원화 환산 가격[404] | 750 | 696 | 805 | 764 | 696 |

자료: 조달청

401) 보관관리비 16원 + 시설사용료 37원(2단 적재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3단 적재 시의 1.5배 적용)
402) 동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
403) LME 창고료 상한제 도입(2016.12.28.)으로 2017년 4월 ~ 2027년 3월(10년)까지 위 보관료 내로 운영하며, 보관기간, 업체에 따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함.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405]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따라 공동비축 중인 구리의 경우 정부의 우선 사용 특약이 설정된 건이 없어 비상시 수급조절에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실제 시장안정 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공동비축 대상을 선정하고, 우선 사용 특약 설정을 의무화하는 등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406].

이에, 조달청은 향후 신규사업자부터 정부의 우선 구매 특약 설정[407]을 의무 적용하고, 민관 공동비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축물자 이용업체 및 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으로 편입된 구리는 신탁재산의 일부로, 자산운용사가 명의상 보유하더라도 실질 소유권은 ETF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조달청의 우선 매각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조달청이 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구리를 매입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시장에서 구리 실물 ETF를 매입한 후 자산운용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실물 양수 절차를 거쳐야 함.

이에 대해 조달청은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도입 취지가 국내 보유 원자재 실물 확대에 있는데, 실물 ETF 설정 시 해당 물량만큼의 구리가 국내에 실물로 유입되므로 국내 총 보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조달사업법은 비축물자를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

---

404) 1cent = 13.64원[2024년 평균 환율(=1,364.4원/달러) 적용]

40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6)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407)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에 따라 10% 이상 설정

나 공급하는 물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관 공동비축제도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구리의 경우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으로 비상시 동 물자의 유통상 어려움으로 인해 비축물자로서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조달청은 비축공간 부족으로 대부분의 비축량을 야적하고 있는 알루미늄의 창고 보관 등을 위해 추가적인 비축공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인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은 민간 대비 낮은 보관료(약 7.6%)로 조달청 창고 공간을 할애하여 특정 ETF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민관 공동비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축물자 이용업체 및 조합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호응하지 않으면서 민관 공동비축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인데, 향후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같이 조달청은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인 구리의 조달청 창고 보관이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자산운용사 및 ETF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활용을 통해 비축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소관

# 가. 결산 개요

## (1) 세입 결산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33억 6,600만원으로 예산액 36억 1,000천만원 대비 6.7%인 2억 4,400만원 감소하였음.

세입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통계자료제공 수수료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감소임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차 이 (C-A) | 비 율 (C-A)/A | 미수납액 (B-C) |
|---|---|---|---|---|---|---|
| 합 계 | 3,610 | 3,379 | 3,366 | △244 | △6.7 | 13 |
| · 재산수입 | 2 | 3 | 3 | 1 | 37.5 | - |
| · 경상이전수입 | 162 | 74 | 61 | △101 | △62.2 | 13 |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2,104 | 1,884 | 1,884 | △220 | △10.4 | - |
| · 수입대체경비수입 | 1,260 | 1,322 | 1,322 | 62 | 4.9 | - |
| · 관유물매각대 | 82 | 96 | 96 | 14 | 17.1 | - |

자료: 통계청

## (2) 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253억 6,700만원으로 예산액 4,252억 6,700만원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4,100억 9,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4%, 예산현액 대비 96.4%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52억 1,1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A) | 예산현액 (B) | 지출액 (C) | 예산액 대비 (C/A) | 예산현액 대비 (C/B) | 불용액 (B-C) |
|---|---|---|---|---|---|---|
| 합 계 | 425,267 | 425,367 | 410,091 | 96.4 | 96.4 | 15,211 |
| 인 건 비 | 154,958 | 154,958 | 148,519 | 95.9 | 95.9 | 6,418 |
| 기본경비 | 17,311 | 17,311 | 16,832 | 97.2 | 97.2 | 500 |
| 사 업 비 | 252,998 | 253,098 | 244,740 | 96.7 | 96.7 | 8,293 |

자료: 통계청

인건비는 예산현액 1,549억 5,800만원 대비 95.9%인 1,485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73억 1,100만원 대비 97.2%인 168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비는 예산현액 2,530억 9,800만원 대비 96.7%인 2,447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수납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총 계 | 6,261 | 3,457 | 3,610 | 3,610 | 3,366 | 93.3 | 3,579 |
| 11 재산수입 | 1 | 1 | 2 | 2 | 3 | 137.5 | 2 |
| 51 관유물대여료 | - | - | - | - | - | - | - |
| 511 토지대여료 | - | - | - | - | - | - | - |
| 512 건물대여료 | - | - | - | - | - | - | - |
|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1 | 1 | 2 | 2 | 2 | 117.5 | 2 |
| 545 기타재산수입 | - | - | - | - | - | - | - |
| 546 기타재산이자수입 | 1 | 1 | 2 | 2 | 2 | 117.5 | 2 |
| 12 경상이전수입 | 121 | 103 | 162 | 162 | 61 | 37.8 | 162 |
|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 21 | 19 | 20 | 20 | 19 | 96.5 | 20 |
| 562 몰수금 및 추징금 | - | - | - | - | - | | - |
| 563 과태료 | 21 | 19 | 20 | 20 | 19 | 96.5 | 20 |
| 57 변상금및위약금 | - | 6 | 15 | 15 | 2 | 15.2 | 15 |
| 572 위약금 | - | 6 | 15 | 15 | 2 | 15.2 | 15 |
| 58 가산금 | - | - | - | - | - | - | - |
| 581 가산금 | - | - | - | - | - |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99 | 78 | 127 | 127 | 40 | 31.3 | 127 |
|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 99 | 78 | 127 | 127 | 40 | 31.3 | 127 |
|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1,825 | 1,947 | 2,104 | 2,104 | 1,884 | 89.6 | 2,192 |
| 69 잡수입 | 1,825 | 1,947 | 2,104 | 2,104 | 1,884 | 89.6 | 2,192 |
| 691 기타잡수입 | 1,825 | 1,947 | 2,104 | 2,104 | 1,884 | 89.6 | 2,192 |
| 14 수입대체경비수입 | 4,275 | 1,380 | 1,260 | 1,260 | 1,322 | 104.9 | 1,151 |
| 69 잡수입 | 4,275 | 1,380 | 1,260 | 1,260 | 1,322 | 104.9 | 1,151 |
| 691 기타잡수입 | 4,275 | 1,380 | 1,260 | 1,260 | 1,322 | 104.9 | 1,151 |
| 15 관유물매각대 | 39 | 26 | 82 | 82 | 96 | 117.1 | 72 |
| 71 고정자산매각대 | 39 | 26 | 82 | 82 | 96 | 117.1 | 72 |
|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39 | 26 | 82 | 82 | 96 | 117.1 | 72 |

## 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총 계 | 367,469 | 383,990 | 425,267 | 425,267 | 410,091 | 96.4 | 562,765 |
| 1000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 13,947 | 17,933 | 19,060 | 19,060 | 18,159 | 95.3 | 16,745 |
| 1031 국가통계정책추진 | 7,824 | 9,957 | 8,989 | 8,989 | 8,719 | 97.0 | 8,132 |
|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 6,192 | 8,341 | 7,498 | 7,498 | 7,278 | 97.1 | 6,673 |
| 지역통계인프라강화 (1031-302) | 1,632 | 1,616 | 1,491 | 1,491 | 1,441 | 96.6 | 1,459 |
| 1032 통계전문교육 | 7,755 | 7,977 | 10,071 | 10,071 | 9,440 | 93.7 | 8,613 |
| 통계교육지원 (1032-304) | 2,009 | 2,209 | 2,017 | 2,017 | 1,939 | 96.1 | 1,915 |
|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1032-305) | 5,322 | 5,418 | 7,718 | 7,718 | 7,116 | 92.2 | 6,362 |
|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032-651) | 424 | 350 | 336 | 336 | 393 | 114.6 | 336 |
| 2000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 48,309 | 56,523 | 46,207 | 46,207 | 45,254 | 97.9 | 46,531 |
| 2031 통계서비스 | 34,188 | 40,888 | 34,374 | 34,374 | 33,856 | 98.5 | 32,100 |
|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 (2031-301) | 620 | 765 | 792 | 792 | 781 | 98.6 | 764 |
|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정보화) (2031-302) | 4,302 | 5,456 | 5,719 | 5,719 | 5,620 | 98.3 | 4,362 |
| S-GIS DB구축(정보화) (2031-304) | 4,274 | 4,000 | 4,495 | 4,495 | 4,473 | 99.5 | 3,642 |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정보화) (2031-305) | 12,431 | 12,655 | 6,524 | 6,524 | 6,454 | 98.9 | 8,768 |
|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2031-306) | 6,735 | 6,609 | 6,656 | 6,656 | 6,597 | 99.1 | 5,941 |
|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2031-310) | 5,826 | 11,403 | 10,188 | 10,188 | 9,932 | 97.5 | 8,623 |
| 2032 통계데이터허브 | 14,121 | 15,635 | 11,833 | 11,833 | 11,398 | 96.3 | 14,431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2032-307) | 596 | 684 | 608 | 608 | 600 | 98.7 | 1,013 |
|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2032-308) | 10,343 | 11.558 | 7,740 | 7,740 | 7,398 | 95.6 | 10,316 |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정보화) (2032-311) | 3,182 | 3,393 | 3,485 | 3,485 | 3,464 | 99.4 | 3,102 |
| **3000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 **127,494** | **133,649** | **169,837** | **169,837** | **164,624** | **96.9** | **307,040** |
| 3031 경제통계작성 | 28,174 | 28,153 | 27,021 | 27,021 | 26,266 | 97.2 | 26,112 |
| 경제구조통계작성 (3031-301) | 27,440 | 27,376 | 26,240 | 26,240 | 25,498 | 97.2 | 25,377 |
| 경제동향작성 (3031-302) | 734 | 777 | 781 | 781 | 767 | 98.2 | 736 |
| 3032 사회농어업통계작성 | 20,007 | 21,139 | 26,892 | 26,892 | 26,125 | 97.1 | 22,416 |
| 사회통계작성 (3032-304) | 18,082 | 18,941 | 23,462 | 23,462 | 22,832 | 97.3 | 19,964 |
| 농어업통계작성 (3032-305) | 1,925 | 2,197 | 3,430 | 3,430 | 3,293 | 96.0 | 2,452 |
| 3033 경제총조사 | 1,067 | 363 | 764 | 764 | 717 | 93.8 | 1,427 |
| 경제총조사 (3033-306) | 1,067 | 363 | 764 | 764 | 717 | 93.8 | 1,427 |
| 3034 인구주택총조사 | 1,899 | 1,919 | 26,326 | 26,326 | 24,309 | 92.3 | 115,826 |
| 인구주택총조사 (3034-307) | 1,899 | 1,919 | 26,326 | 26,326 | 24,309 | 92.3 | 115,826 |
| 3035 농림어업총조사 | 1,114 | 1,163 | 2,096 | 2,096 | 1,914 | 91.3 | 56,447 |
| 농림어업총조사 (3035-308) | 1,114 | 1,163 | 2,096 | 2,096 | 1,914 | 91.3 | 56,447 |
| 3036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 3,758 | 990 | 924 | 924 | 944 | 102.1 | 820 |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3036-652) | 3,073 | 593 | 700 | 700 | 717 | 102.4 | 625 |
| 경인 수입대체경비 (3036-662) | 90 | 20 | 20 | 20 | 20 | 100 | 20 |
| 동북 수입대체경비 (3036-663) | 64 | 16 | 20 | 20 | 25 | 125.0 | 17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호남 수입대체경비 (3036-664) | 210 | 155 | 85 | 85 | 84 | 98.8 | 85 |
| 동남 수입대체경비 (3036-665) | 83 | 76 | 78 | 78 | 77 | 98.7 | 52 |
| 충청 수입대체경비 (3036-666) | 238 | 131 | 21 | 21 | 21 | 100.0 | 21 |
| 3037 통계조사지원 | 75,133 | 79,923 | 85,814 | 85,814 | 84,349 | 98.3 | 83,992 |
| 통계조사지원 (3037-309) | 21,339 | 25,437 | 30,792 | 30,792 | 29,951 | 97.3 | 27,903 |
|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3037-310) | 4,566 | 1,669 | 814 | 814 | 776 | 95.3 | 782 |
|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3037-311) | 44,622 | 47,461 | 48,872 | 48,872 | 48,457 | 99.2 | 50,180 |
| 경인 통계조사지원 (3037-312) | 1,118 | 1,268 | 1,277 | 1,277 | 1,254 | 98.2 | 1,226 |
| 동북 통계조사지원 (3037-313) | 879 | 1,025 | 1,041 | 1,041 | 1,006 | 96.6 | 1,001 |
| 호남 통계조사지원 (3037-314) | 1,051 | 1,223 | 1,239 | 1,239 | 1,192 | 96.2 | 1,191 |
| 동남 통계조사지원 (3037-315) | 766 | 910 | 842 | 842 | 813 | 96.6 | 809 |
| 충청 통계조사지원 (3037-316) | 792 | 930 | 937 | 937 | 901 | 96.2 | 900 |
| **4000 성과중심 책임운영 기관운영** | **107,603** | **5,446** | **6,055** | **6,055** | **5,660** | **93.5** | **6,116** |
| 4031 통계개발원 | 5,238 | 5,446 | 6,055 | 6,055 | 5,660 | 93.5 | 6,116 |
| 통계개발원 인건비 (4031-111) | 3,666 | 3,867 | 4,258 | 4,258 | 3,983 | 93.5 | 4,467 |
| 통계개발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4031-211) | 182 | 193 | 259 | 259 | 231 | 89.3 | 259 |
|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4031-261) | 14 | 14 | 14 | 14 | 14 | 98.0 | 14 |
| 통계연구개발지원 (4031-311) | 1,377 | 1,373 | 1,490 | 1,490 | 1,407 | 94.4 | 1,376 |
| **7000 통계행정지원** | **70,114** | **170,438** | **184,108** | **184,108** | **176,394** | **95.8** | **186,333**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7001 본부 인건비 | 54,014 | 142,511 | 150,666 | 150,666 | 144,510 | 95.9 | 150,553 |
| 인건비-총액인건비 (7001-100) | 54,014 | 54,933 | 58,973 | 58,973 | 56,400 | 95.6 | 59,579 |
| 경인 인건비 (7001-112) | 20,424 | 20,537 | 21,564 | 21,564 | 20,606 | 95.6 | 21,222 |
| 동북 인건비 (7001-113) | 18,075 | 18,051 | 19,087 | 19,087 | 18,063 | 94.6 | 17,798 |
| 호남 인건비 (7001-114) | 20,435 | 20,625 | 21,443 | 21,443 | 20,835 | 97.2 | 22,221 |
| 동남 인건비 (7001-115) | 13,972 | 13,871 | 14,600 | 14,600 | 14,033 | 96.1 | 14,456 |
| 충청 인건비 (7001-116) | 14,582 | 14,494 | 14,999 | 14,999 | 14,574 | 97.2 | 15,277 |
| 7011 본부 기본경비 | 5,507 | 16,286 | 17,038 | 17,038 | 16,587 | 97.4 | 17,380 |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1) | 1,539 | 1,850 | 1,791 | 1,791 | 1,672 | 93.4 | 1,766 |
|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8) | 51 | 43 | 48 | 48 | 44 | 92.6 | 48 |
| 경인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2) | 1,817 | 749 | 703 | 703 | 651 | 92.7 | 688 |
| 동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3) | 1,814 | 664 | 608 | 608 | 561 | 92.3 | 593 |
| 호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4) | 2,057 | 688 | 653 | 653 | 628 | 96.2 | 628 |
| 동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5) | 1,432 | 496 | 476 | 476 | 463 | 96.5 | 476 |
| 충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6) | 1,427 | 557 | 514 | 514 | 479 | 93.2 | 514 |
|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 1,921 | 1,972 | 2,132 | 2,132 | 2,022 | 94.8 | 2,008 |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7011-252) | 692 | 704 | 749 | 749 | 748 | 99.8 | 701 |
|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7011-253) | 258 | 315 | 331 | 331 | 328 | 924 | 341 |
|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7011-254) | 71 | 85 | 114 | 114 | 114 | 100.0 | 103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결산 | 2023결산 | 2024년 | | | | 2025예산 |
|---|---|---|---|---|---|---|---|
| | | | 예산 | | 결산(B) | 집행률 (B/A) | |
| | | | 본예산 | 추경(A) | | | |
|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7011-255) | 45 | 45 | 70 | 70 | 66 | 94.7 | 63 |
|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7011-256) | 40 | 57 | 70 | 70 | 67 | 95.7 | 76 |
|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 (7011-257) | 88 | 98 | 175 | 175 | 173 | 98.9 | 122 |
|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7011-258) | 679 | 691 | 761 | 761 | 746 | 98.1 | 769 |
|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7011-259) | 74 | 89 | 105 | 105 | 105 | 99.6 | 95 |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기본경비(7011-260) | 56 | 58 | 76 | 76 | 76 | 100.0 | 71 |
| 경인 기본경비 (7011-262) | 145 | 1,421 | 1,535 | 1,535 | 1,531 | 99.8 | 1,667 |
| 동북 기본경비 (7011-263) | 324 | 1,581 | 1,708 | 1,708 | 1,702 | 99.6 | 1,852 |
| 호남 기본경비 (7011-264) | 269 | 1,727 | 1,840 | 1,840 | 1,840 | 100.0 | 2,077 |
| 동남 기본경비 (7011-265) | 121 | 1,253 | 1,358 | 1,358 | 1,351 | 99.5 | 1,388 |
| 충청 기본경비 (7011-266) | 135 | 1,143 | 1221 | 1,221 | 1,218 | 99.8 | 1,324 |
| 7031 대내외협력강화 | 6,180 | 7,241 | 10,760 | 10,760 | 9,845 | 91.5 | 12,126 |
| 국가통계인식제고 (7031-301) | 526 | 514 | 547 | 547 | 533 | 97.4 | 526 |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7031-302) | 291 | 420 | 1,693 | 1,693 | 1,508 | 89.1 | 1,707 |
| 국제통계협력강화 (7031-303) | 1,936 | 2,156 | 2,252 | 2,252 | 2,170 | 96.4 | 2,315 |
| 개도국 양자통계지원(ODA) (7031-304) | 3,427 | 4,151 | 3,804 | 3,804 | 3,323 | 87.4 | 4,766 |
| 개도국 다자통계지원(ODA) (7031-305) | - | - | 2,464 | 2,464 | 2,311 | 93.8 | 2,812 |
| 7032 청사시설 환경개선 | 4,413 | 4,400 | 5,644 | 5,644 | 5,451 | 96.6 | 6,274 |
| 청사시설관리 (7032-305) | 4,413 | 4,400 | 5,644 | 5,644 | 5,451 | 96.6 | 6,274 |

# 나. 검토의견

## (1) 상품권 구매방법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총괄)

### < 현 황 >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은 통계청이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통계기관의 통계조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이 중 통계조사를 위한 상품권 구매는 사회통계작성(3032-304), 농어업통계작성(3032-305), 경제총조사(3033-306), 인구주택총조사(3034-307),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3036-652), 통계조사지원(3037-309),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3037-310) 등 7개 사업에서 집행되고 있음.

[2024회계연도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 결산현황(일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년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사회통계작성(3032-304) | 23,462 | - | - | - | 23,462 | 22,832 | - | 630 | 19,964 |
| 농어업통계작성(3032-305) | 3,430 | - | - | - | 3,430 | 3,293 | - | 137 | 2,452 |
| 경제총조사(3033-306) | 764 | - | - | - | 764 | 717 | - | 47 | 1,427 |
| 인구주택총조사(3034-307) | 26,326 | - | 19 | - | 26,345 | 24,309 | - | 2,036 | 115,826 |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3036-652) | 700 | - | 38 | - | 738 | 717 | - | 21 | 625 |
| 통계조사지원(3037-309) | 30,792 | - | - | - | 30,792 | 29,951 | - | 841 | 27,903 |
|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3037-310) | 814 | - | - | - | 814 | 776 | - | 38 | 782 |
| 합 계 | 86,288 | - | 57 | - | 86,345 | 82,595 | - | 3,750 | 168,979 |

자료: 통계청

한편, 통계청은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통계조사 목적 외에도 이벤트 및 설문조사 답례, 우수직원 포상, 생일축하, 직원격려 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상품권을 다량 구매하고 있음.

2024년 상품권 구매 금액을 살펴보면 통계조사용 상품권은 198억 2,500만원에 달하고, 조사 목적 이외의 기타 용도로 구매된 상품권은 약 4억 1,000만원으로 나타나 총 구매액이 202억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검토의견 >

**첫째, 통계청은 상품권 구매 시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산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에 상품권을 추가 구매하여 불필요한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2024년에 총 7개 세부사업에서 각종 통계조사 답례품 명목으로 총 198억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며, 이 중 8억 9,9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4년 통계조사 목적 상품권 구매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조사명 | 종류 | | 구매액 | 재고액 |
|---|---|---|---|---|---|
| 사회통계작성 (3032-304) | 생활시간조사 | 농촌사랑상품권 | 1만원권 | 162 | 2 |
| | | 온누리상품권 | 1만원권 | 498 | 2 |
| 농어업통계작성 (3032-305) | 농산물수급관리품목 | 농촌사랑상품권 | 1만원권 | 17 | 2 |
| | | 농촌사랑상품권 | 5천원권 | 1 | 1 |
| 경제총조사 (3033-306) | 경제총조사 | 모바일상품권 | 1만원권 | 7 | 0 |
| 인구주택총조사 (3034-307) |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 모바일상품권 | 3만원권 | 57 | 0 |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3036-652) | 장기요양실태조사, 국제성인역량조사 등 | 농촌사랑상품권 | 1만원권 | 155 | 4 |
| 통계조사지원 (3037-309) | 통계조사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 농촌사랑상품권 | 1만원권 | 11,130 | 276 |
| | | 온누리상품권 | 1만원권 | 5,077 | 423 |
| | | 마트상품권 | 1만원권 | 1,223 | 136 |
| | | 문화상품권 | 1만원권 | 957 | 52 |
| | | 모바일상품권 | 1만원권 | 494 | 0 |
|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3037-310) | 경상조사 표본설계 및 지원 | 농촌사랑상품권 | 1만원권 | 47 | 1 |
| 합 계 | | | | 19,825 | 899 |

자료: 통계청

또한, 통계청은 총 41회에 걸쳐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나, 그 중 문화상품권 구매 1건만을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농촌사랑상품권 등 대부분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4년 통계조사를 위한 상품권 구매 계약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농촌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마트상품권 | 문화상품권 | 모바일상품권 |
|---|---|---|---|---|---|
| 계약업체 | 농협경제지주 | 대전중부<br>새마을금고 | 홈플러스 | 쿠프마케팅 | (주)한국문화진흥<br>(주)케이티알파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일반경쟁 | 수의계약 |
| 계약건수 | 18 | 10 | 7 | 1 | 5 |
| 계약금액 | 11,512 | 5,575 | 1,223 | 957 | 558 |
| 재고액 | 286 | 425 | 136 | 52 | 0 |

자료 : 통계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통계청은 동일 종류의 상품권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산하여 개별적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관행을 지속함에 따라 충분한 재고가 있음에도 일부 사업에서 연말에 불필요한 추가 구매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해마다 상품권 재고액의 누적을 초래하여 전반적인 상품권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408]

**[최근 5년간 상품권 재고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구매액(A) | 18,745 | 17,444 | 16,930 | 18,188 | 19,825 |
| 재고액(B) | 298 | 483 | 862 | 948 | 899 |
| 재고율(B/A) | 1.5 | 2.7 | 5.1 | 5.2 | 4.5 |

자료 : 통계청

408) 「통계청 11~12월 상품권 구매 현황」

| 구분 | 계약일 | 종료일 | 금액(천원) | 계약업체 |
|---|---|---|---|---|
| 농촌사랑상품권 | 9.4. | 11.22. | 1,519,311 | 농협경제지주(주) |
| 농촌사랑상품권 | 10.18. | 11.22. | 67,318 | 농협경제지주(주) |
| 온누리상품권 | 10.25. | 11.22. | 58,100 | 대전중부새마을금고 |
| 농촌사랑상품권 | 11.4. | 11.22. | 543,219 | 농협경제지주(주) |
| 문화상품권 | 12.26. | 12.31. | 957,262 | 쿠프마케팅 |

따라서 통계청은 통계조사용 상품권의 경우 여러 세부사업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통계조사 일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상품권이 지급되며 연간 사용 수량도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409]

한편, 우수직원 포상, 설문조사 답례, 직원 격려 등 통계조사 외을 목적으로는 약 4억 1,000만원 상당의 일반 상품권을 별도로 구매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년 통계조사 목적 외 상품권 구매 현황]**

(단위: 천원)

| 세부사업 | 종류 | 지급대상 | 구매액 | 관리대장 | 비고 |
|---|---|---|---|---|---|
| 통계교육지원 (1032-304)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 1,100 | ○ | |
| | 문화상품권 | 교육생 | 1,140 | ○ | 이월사용 |
|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2031-302)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모니터단 활동자 | 25,400 | ○ | |
| | 온누리상품권 | 수상기관 | 4,900 | ○ | |
| S-GIS DB구축 (2031-304)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공모전수상자 | 5,800 | × | |
| 정보시스템관리 (2031-306) | 모바일상품권 | 우수제안직원 | 780 | ○ | |
|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2032-308)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 1,850 | ○ | |
| 경제구조통계작성 (3031-301) | 온누리상품권 | 설문응답자 | 1,000 | ○ | |
| 사회통계작성 (3032-304)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 9,600 | ○ | |
| | 온누리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500 | ○ | |
| | 문화상품권 | 통계조사원 | 100 | ○ | |
| 농어업통계작성 (3032-305)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 1,300 | ○ | |
| 농림어업총조사 (3035-308)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 2,700 | ○ | |
| | 농촌사랑상품권 | 설문응답자 | 400 | ○ | |
| 통계조사지원 (3037-309) | 온누리상품권 | 피해농가 | 1,000 | ○ | |

409)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개별 세부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통계조사 답례품을 2027년까지 '통계조사 지원'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지급되는 상품권 등 답례품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 조사별 통합 계획: '25년 농어업통계작성(농산물수급관리품목조사), '27년 사회통계작성(생활시간조사), '27년 경제구조통계작성(투입구조조사)

| 세부사업 | 종류 | 지급대상 | 구매액 | 관리대장 | 비고 |
|---|---|---|---|---|---|
|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3037-311) | 온누리상품권 | 맞춤형복지 | 3,450 | ○ | |
| 호남통계조사지원 (3037-314) | 온누리상품권 | 수상기관 | 1,500 | ○ | |
| 동남통계조사지원 (3037-315) | 문화상품권 | 설문응답자 | 270 | ○ | |
| 통계개발원 기본경비(4031-211) | 문화상품권 | 생일직원 | 4,000 | ○ | |
| | 마트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성과우수직원 | 4,000 | ○ | |
| 통계연구개발지원 (4031-311) | 문화상품권 | 우수제안직원 | 400 | ○ | |
|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01) | 온누리상품권 | 우수공무원, 생일직원 | 63,600 | ○ | 부실기재 |
| | 마트상품권 | 멘토링직원 | 1,000 | ○ | 부실기재 |
| 통계교육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08) | 온누리상품권 | 성과우수직원 | 1,800 | ○ | |
| | 마트상품권 | 생일직원 | 3,360 | ○ | |
| 경인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12) | 온누리상품권 | 생일직원 | 42,000 | ○ | 부실기재 |
| 동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13) | 온누리상품권 | 맞춤형복지 | 37,690 | ○ | |
| | 농촌사랑상품권 | 생일직원 | 12,550 | ○ | |
| 호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14) | 온누리상품권 | 생일직원, 맞춤형복지 | 52,680 | ○ | |
| 동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15) | 온누리상품권 | 생일직원 | 14,500 | ○ | |
| | 농촌사랑상품권 | 생일직원 | 11,370 | ○ | |
| | 문화상품권 | 우수제안직원 | 4,500 | ○ | |
| 충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16) | 온누리상품권 | 생일직원, 맞춤형복지 | 40,740 | ○ | |
|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 온누리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성과우수직원 | 2,200 | ○ | 부실기재 |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7011-252) | 온누리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2,000 | ○ | |
| | 마트상품권 | 성과우수직원 | 900 | ○ | |
| 통계정책국 기본경비(7011-253) | 온누리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1,000 | ○ | |
| 경제통계국 기본경비(7011-255) | 온누리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1,000 | ○ | |

| 세부사업 | 종류 | 지급대상 | 구매액 | 관리대장 | 비고 |
|---|---|---|---|---|---|
|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7011-257) | 문화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1,000 | ○ | |
|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 1,070 | ○ | |
| 통계교육원 기본경비(7011-258) | 온누리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1,000 | ○ | |
| | 마트상품권 | 설문응답자 | 170 | ○ | |
|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7011-259) | 온누리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1,000 | ○ | |
|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모니터단 활동자 | 5,320 | ○ | |
| 동북 기본경비 (7011-263) | 온누리상품권 | 성과우수직원 | 5,800 | ○ | |
| | 농촌사랑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600 | ○ | |
| 호남 기본경비 (7011-264) | 온누리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2,100 | ○ | |
| | 농촌사랑상품권 | 설문응답자 | 7,650 | ○ | |
| | 모바일상품권 | 생일직원 | 10,750 | ○ | |
| 동남 기본경비 (7011-265) | 온누리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6,000 | ○ | |
| | 농촌사랑상품권 | 사회복지시설 | 400 | ○ | |
| | 모바일상품권 | 설문응답자 | 1,040 | ○ | |
| 충청 기본경비 (7011-266)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관계자, 성과우수직원 | 1,950 | ○ | |
| 합 계 | | | 409,930 | | |

자료: 통계청

그러나 이와 같은 구매 및 배부 과정에서도 관리대장에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의 필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실제 구매 금액과 불일치하거나 아예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작성된 관리대장도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한 상품권은 그 연도 내에 전액 소비되어야 함에도 전년도 구매 상품권을 이월 사용한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품권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일반 상품권 구매 시에도 반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배부 시에는 수령증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며,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등 상품권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계청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청은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상품권 구매 외에도 이벤트 및 설문조사 답례, 우수직원 포상, 생일 축하, 직원 격려 등을 위해 각 부서별로 대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으며, 2024년 총 구매액이 202억 3,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상품권의 구매, 사용 및 관리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2024년도 타부처 상품권 구매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벤처기업부 | 인사혁신처 |
|---|---|---|---|---|
| 구매액 | 20,235 | 760 | 52 | 94 |

자료 : 각 부처 홈페이지

다른 부처의 경우, 통계청에 비해 상품권 구매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도 이러한 지침을 통해 상품권 구매와 관리를 체계화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반면, 통계청은 현재까지 상품권 관련 별도 지침 없이 내부결재 문서만을 근거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어,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검토, 예산 절감을 위한 사전 심사, 목적 외 사용 가능성 점검 및 사후 관리 실태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워 상품권 관리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련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부서의 상품권 구매 계획을 사전에 통합·관리하고, 구매 단계에서는 예산의 타당성과 절감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며, 사용 후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체계적인 관리대장을 통해 사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임.

## (2) 계약 및 예산 집행 관련 제도적 개선 필요(총괄)

< 검토의견 >

**첫째, 통계청은 동일 성격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통계청은 2024년에 본청의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와 동남지방청 인테리어 공사 등 환경개선공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2024년도 실내건축공사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계약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계약업체 | 계약방법 |
|---|---|---|---|---|---|
| 본청 | 사무공간 재배치 파티션 공사 | 12.8.~12.30. | 19,894 | ㈜대아 | 수의계약 |
| | 사무공간 재배치 칸막이 공사 | 12.9.~12.30. | 15,180 | 주식회사 삼육공사 | 수의계약 |
| 동남 | 본부 7층 칸막이 조정 및 수전이동 공사 | 3.4.~4.3. | 15,741 | ㈜오감 | 수의계약 |
| | 본부 8층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 | 3.4.~4.3. | 39,259 | ㈜오감 | 수의계약 |

자료 : 통계청 제출자료 재구성

본청의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는 대전청사 내 민원동 준공 및 입주기관 일부 부서 이전으로 확보한 사무공간(662㎡)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동남지방청의 '사무실 및 휴게실 환경개선공사'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을 조정하려는 공사로, 두 공사 모두 과업지시서상 계약기간과 과업내용[410]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분할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411]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410) 본청: 사무공간 신규·철거 및 이전 설치
동남: 가벽위치 조정 및 수전이동 등 직원 사무실 및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4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412]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공익성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413]에 따라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할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체결 및 집행 단계에서 동일 성격의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계청은 「국가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함에도 다수의 임차 계약을 회계연도와 불일치하게 체결하여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024년 통계청은 정수기·차량 임차, 물품 구매 및 용역 등 다양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4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4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불일치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계약명 | 계약일 | 종료일 | 계약금액 |
|---|---|---|---|---|
| 물품 임차 | 동형암호 처리를 위한 고사양 PC 임차 | 2024.7.1 | 2026.12.31 | 13,200 |
|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임차사무실 공기청정기 임차 | 2024.6.1 | 2027.5.31 | 13,076 |
| | 통계청 업무용 승용차량 임차 | 2024.9.1 | 2027.8.31 | 38,016 |
| | 통계청 업무용 승용차량 임차 | 2024.11.26 | 2028.11.25 | 35,923 |
| | 통계데이터허브국 정수기 임차 | 2024.1.9 | 2029.1.8 | 15,570 |
| | 경제통계국 정수기 임차 | 2024.5.1 | 2029.4.30 | 14,670 |
| | 통계서비스정책관 정수기 임차 | 2024.5.1 | 2029.4.30 | 17,604 |
| | 조사관리국 정수기 임차 | 2024.6.1 | 2029.5.31 | 20,958 |
| | 운영지원과 정수기 임차 | 2024.7.1 | 2029.6.30 | 14,370 |
| | SPSS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임차 | 2024.2.7 | 2025.2.6 | 66,640 |
| | 2025년 통계센터 로봇방역기 임차 | 2024.12.1 | 2025.2.28 | 2,343 |
| | 촬영 및 편집 장비 등 임차 | 2024.12.2 | 2025.12.1 | 17,555 |
| | 통계교육원 디지털 콘텐츠 임차 계약 | 2024.10.28 | 2025.10.27 | 1,320 |
| | 기관장 관사 물품 임차 | 2024.1.8 | 2025.1.7 | 1,440 |
| | 2024년 미술은행 작품(8점) 대여 | 2024.1.28 | 2025.1.27 | 6,192 |
| 물품 구매 |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동영상 교재 제작 | 2023.12.29 | 2024.1.9 | 7,810 |
| |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표 받침대 구매 | 2023.12.7 | 2024.1.26 | 45,920 |
| | 2024년 정보보호 백신소프트웨어 구매 | 2023.12.11 | 2024.1.10 | 109,200 |
| | 사무용 자산성 물품(냉장고) 구매 | 2024.12.2 | 2025.1.1 | 499 |
| | 사무용 자산성 물품 구매(회의탁자 등) | 2024.12.11 | 2025.1.10 | 1,272 |
| | 통계데이터센터 물품 구매 | 2024.12.11 | 2025.1.10 | 23,222 |
| | 사무용 자산성 물품 구매(문서세단기) | 2024.12.27 | 2025.1.11 | 1,200 |
| |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지자체 협조용품 구매 | 2024.11.14 | 2025.1.13 | 2,580 |
| | 사무용 자산성 물품 구매(복합기 등) | 2024.12.18 | 2025.1.17 | 9,680 |
| |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매 | 2024.12.10 | 2025.2.8 | 22,056 |
| | 통계청 업무용 승용차량 구매 | 2024.8.29 | 2025.3.14 | 44,530 |
| 용역 |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교관단 교육 행사 | 2023.12.29 | 2024.1.19 | 30,000 |
| | 2024년 경기종합지수 작성시스템 고도화사업(2차년도) | 2024.6.21 | 2025.1.17 | 200,000 |
| | 충청지방통계청 옥천분소 청사 신축 설계용역 | 2024.12.12 | 2025.5.25 | 100,000 |

자료 : 통계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414]에서 명시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로, 예산의 국회 심의·의결 및 감사원의 감독 기능은 회계연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다수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거나, 연도 중에 시작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계약을 운영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415]

이러한 관행은 예산집행의 시기와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연도별 예산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를 불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와 감사기관의 예산 통제 및 감독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임차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설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회계연도 초과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큰 상황임.

물론, 예외적으로 장기 계약이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416]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 없

---

41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4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이 일반적인 임차 계약에서까지 회계연도와 불일치한 계약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수기·차량 등 연간 임차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향후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예산 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연도 단위의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 계약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셋째,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다른 비목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비목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5조[417]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는 그 성격상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포함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임.[4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일반수용비 등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성격의 비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동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계약명 | 계약금액 | 집행비목 | 적정비목 | 비고 |
|---|---|---|---|---|---|
| 본청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시범예행조사 콜센터 운영을 위한 AICC 설치 | 5,702 | 210-01 | 210-14 | 보이스봇 시나리오 적용 등 설치·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타부서 동일업무 일반용역비 집행) |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41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18)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150.

| 구분 | 계약명 | 계약금액 | 집행비목 | 적정비목 | 비고 |
|---|---|---|---|---|---|
| 통계교육원 | 제주수련원 정화조 철거 | 8,800 | 210-01 | 210-09 |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일부 해체에 해당 |
| 통계연구원 | 2024년 제22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홍보 | 9,000 | 210-01 | 210-14 | 단순 홍보물 제작이 아닌 온·오프라인 홍보 용역에 해당 |
| 동북 | 2024년 경산분소 청사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 1,217 | 210-09 | 210-15 | 일시적이거나 비반복적인 단발성 용역은 일반수용비의 용역비 항목으로 집행하나, 연간 정기적·반복적 용역은 관리용역비가 타당.<br>또한, 각목명세서상 다른 소방·전기·승강기 점검용역의 경우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 |
| | 2024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강릉사무소 청사) 정기안전점검 | 880 | 210-01 | 210-15 | |
| | 2024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강릉사무소 청사) 정기안전점검 | 880 | 210-01 | 210-15 | |
| 동남 | 2024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합천분소) 정기안전점검 | 900 | 210-01 | 210-15 | |
| | 2024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합천분소) 정기안전점검 | 900 | 210-01 | 210-15 | |
| 충청 | 천안사무소 연간조사 임차사무실 무인경비 용역계약 | 847 | 210-01 | 210-15 | |

주: 210-01(일반수용비), 210-09(시설장비유지비), 210-14(일반용역비), 210-15(관리용역비)
자료 : 통계청 제출자료 재구성

예산 집행은 각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사전에 편성된 예산 비목을 적용·집행해야 하며, 이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임.

이는 예산 비목이 지출 항목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과 집행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혼용하는 행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특히 일반수용비는 사무용 소모품, 소액 기자재 구입, 간단한 수선 등 일상적 경비를 처리하기 위한 비목으로서, 타 비목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비목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예산을 비목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할 경우,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출된 비목이 달라지면 실제로 투입된 예산과 산출 결과를 비목별로 정확히 비교·분석하기 어려워져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각 지출 항목이 해당 비목의 집행 기준과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집행지침에 대한 회계 관계 직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비목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 (3) 품질관리 사업의 운영 개선을 통한 통계품질 제고 필요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정책국)

< 현 황 >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1031-301)은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일관성 제고를 위한 표준분류 등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제공하고 통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통계작성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74억 9,800만원으로, 이 중 7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품질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1억 9,600만원 중 2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 7,498 | - | - | - | 7,498 | 7,278 | - | 220 | 6,673 |
| - 통계기준 | 3,835 | - | - | - | 3,835 | 3,670 | - | 165 | 2,986 |
| **- 품질관리** | **2,201** | **-** | **△5** | **-** | **2,196** | **2,163** | **-** | **33** | **2,559** |
| - 국가통계 확대 | 734 | - | - | - | 734 | 726 | - | 8 | - |
| - 국가통계 발전 | 729 | - | 5 | - | 734 | 719 | - | 14 | 1,129 |

자료: 통계청

< 검토의견 >

**통계청은 주요 통계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의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선제적인 품질관리 등을 위해 수시통계품질진단 및 통계품질개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품질관리 사업」은 통계이용자들이 고품질의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전반의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과제 관리, 개선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9조[419]를 근거로 통계 전문가가 수행하는 5년 주기의 진단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품질점검 등 총 338종 통계에 대한 품진진단을 수행하였음

수시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0조[420]를 근거로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 통계 선정 및 상시적인 국가통계 품질 점검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 등의 지적사항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1조[421]를 근거로 통계청에서 사전에 설정한 품질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소관 통계의 품질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진단 매뉴얼 제공, 진단기법 교육 및 지도, 진단 과정 및 결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품질진단의 사후관리를 위해 통계청은 「통계법」 제12조[422]를 근거로 하여

---

419)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420) **「통계법」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421)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422) **「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진단시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반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해당 기관 스스로 품질개선이 곤란한 경우, 통계법 제13조[423]를 근거로 품질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정기·수시·자체 통계품질진단 및 품질개선 컨설팅]**

| 구분 | 정기진단 | 수시진단 | 자체진단 | 품질개선 컨설팅 |
|---|---|---|---|---|
| 근거 | 통계법 제9조 | 통계법 제10조 | 통계법 제11조 | 통계법 제13조 |
| 대상 | 주요 통계 | 품질 저하 통계 | 모든 승인통계 | 컨설팅 요청 통계 |
| 주기 | 5년 | 수시 | 1년 | 수시 |
| 방법 | 전문기관 위탁 | 연구용역 | 작성기관/통계청 | 연구용역 |

자료: 2023 국가통계백서, 통계청

**첫째, 주요 통계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의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통계법」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은 2020년 부동산통계 등 국가통계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 제기로 통계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여 2022년부터 진단 프로세스 개선, 지표 연구개발 등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건당 진단예산이 2020년 1,890만원에서 2024년 3,320만으로 75.7% 증액되었음.

**[2024회계연도 품질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
| | 예산 | 집행 (건수) | 예산 | 집행 (건수) | 예산 | 집행 (건수) | 예산 | 집행 (건수) | 예산 | 집행 (건수) |
| 정기통계품질진단 | 1,456 | 1,378 | 1,505 | 1,431 | 2,205 | 2,104 | 2,204 | 2,120 | 2,026 | 1,997 |
| - 진단건수 | | 73 | | 68 | | 70 | | 67 | | 60 |
| **- 건당 진단예산** | | **18.9** | | **21.0** | | **30.1** | | **31.6** | | **33.2** |
| 수시통계품질진단 및 품질개선 컨설팅 | 146 | 118 (5) | 151 | 95 (5) | 154 | 126 (5) | 134 | 131 (5) | 134 | 128 (5) |
| 자체통계품질진단 | 36 | 21 | 38 | 23 | 40 | 36 | 40 | 39 | 40 | 39 |

자료: 통계청

423) **「통계법」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하면 주요 통계별로 개선과제가 도출되고 통계작성기관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424]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개선과제 도출 후 이행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통계가 2022년 32건, 2021년 6건, 2020년 4건에 달하고 있음.

개선과제 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채로 다시 통계 작성·보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통계 중 대부분을 중앙행정기관 작성 통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0년 ~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통계 중 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통계 현황]**

(단위: 개, %)

| 구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정기품질진단 대상 통계(A)** | | 73 | 68 | 70 | 67 | 60 |
| | 도출된 개선과제 수 | 343 | 281 | 275 | 240 | 195 |
| | 미이행 개선과제 수 | 5 | 11 | 56 | 96 | 170 |
| **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통계(B)*** | | **4** | **6** | **32** | 49 | 57 |
| | 중앙행정기관 작성 통계 | 3 | 5 | 26 | 31 | 41 |
| | 기타 기관 작성 통계 | 1 | 1 | 6 | 18 | 16 |
| **(B/A)** | | **5.5** | **8.8** | **45.7** | 73.1 | 95.0 |

* 각 통계별 다수의 개선과제가 도출되며, 미이행 개선과제가 남아있는 통계 종수

자료 : 통계청

**둘째, 언론 등의 지적사항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품질관리 등을 위해 수시통계품질진단 및 통계품질개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를 대상으로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매년 1건만 수행하는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424) **「통계법 시행령」 제16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통계청은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지적이 있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통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품질 사항을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와 기획 모니터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필요시 수시통계품질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수시통계품질진단 후보대상 및 선정사업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후보 통계(A) | 37 | 24 | 17 | 15 | 7 |
| 선정 통계(B) | 2 | 2 | 1 | 1 | 1 |
| 선정률(B/A) | 5.4 | 8.3 | 5.9 | 6.7 | 14.3 |

자료 : 통계청

또한, 통계청은 상·하반기 매년 2회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수요를 제출한 통계 중 품질진단 개선과제와 연계성, 개선과제의 전문성, 개선 가능성, 시급성, 선행연구 이력 등을 고려하여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대상 통계를 선정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요는 매년 10종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는 통계는 3~4종에 불과하여 선정률이 저조한 상황임.

컨설팅 수요를 제출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통계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일 가능성이 크므로, 통계청은 국가통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통계품질개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수요 및 실적]**

(단위: 개,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컨설팅 희망 통계(A) | 8 | 11 | 22 | 13 | 12 |
| 컨설팅 선정 통계(B) | 3 | 3 | 4 | 4 | 4 |
| 선정률(B/A) | 37.5 | 27.3 | 18.2 | 30.8 | 33.3 |

자료 : 통계청

## (4)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필요 (지역통계인프라강화, 조사관리국)

< 현 황 >

「지역통계인프라강화 사업」은 지역통계 생산기반 강화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지역통계 기획·운영 및 대외협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

「지역통계인프라강화 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14억 9,100만원으로, 이 중 1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지역통계인프라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9,700만원 중 12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지역통계인프라강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지역통계인프라강화 (1031-302) | 1,491 | - | - | - | 1,491 | 1,441 | - | 50 | 1,459 |
| - 지역통계 기획·운영 및 대외협력 강화 | 159 | - | 35 | - | 194 | 189 | - | 5 | 149 |
| **-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 **1,332** | **-** | **△35** | **-** | **1,297** | **1,252** | **-** | **45** | **1,3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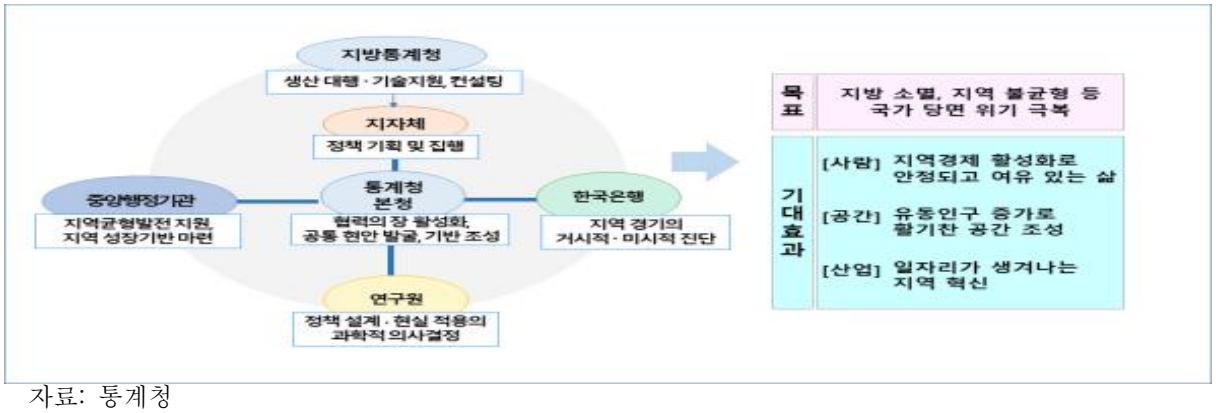
< 검토의견 >

**통계청은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개최 관련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및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매년 삶에 대한 만족도,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도급조사원 인건비 13억 1,200만원과 지역사회조사 업무발전토론회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2,000만원 등 총 13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통계청은 당초 계획한 대로 2024년 의료서비스 만족도, 공동체 의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11개 공통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도급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총 1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요]**




자료: 통계청

한편, 지역통계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2023년 5월부터 신규 구성·운영 중인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는 중앙·지방정부, 연구원, 한국은행 간 공식적인 협력·소통 채널이자 지역통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내·외부 협의체로서, 지역통계 작성지원 현황 공유, 타지역 유사통계 벤치마킹을 통한 기존 통계 개선 및 지역별 아이디어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함.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는 통계청장(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연구원, 한국은행 직원 등 총 6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 2회 대면회의 및 수시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나,[425] 통계청에 따르면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통계청은 2024년 10월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사업」 내 지역사회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한 이후 당초 지역사회조사 업무발전토론회 개최를 위해 편성한 2,000만원의 일반용역비까지 더한 총 3,700만원[426]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 “2024년 하반기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를 개최하였음.

**[2024회계연도 지역통계인프라강화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 목-세목 코드 | |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 목-세목 코드 | |
| 세목 조정 | 지역통계인프라강화 (1031-302) | 210-01 (일반수용비) | 20 | 지역통계인프라강화 (1031-302) | 210-14 (일반용역비) | 중앙-지방 지역통계 협의회 행사용역 발주 |

자료: 통계청

**[2024회계연도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 |
|---|---|---|---|
| | 예산액(편성) | 예산현액 | 집행액 |
| ○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내역사업) | 1,332 | 1,297* | 1,249 |
| -도급조사원 인건비 등 | 1,312 | 1,257 | 1,210 |
| -지역사회조사 업무발전토론회 | 20 | 20 | 2** |
| -2024년 중앙-지방지역통계협의회 용역 | - | 20 | 37 |

* 총 5,5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였는데, 3,500만원은 「지역통계 기획·운영 및 대외협력 강화사업」내 지방시대엑스포 통계청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발주 목적으로 변경

** 도급조사원 인건비 등을 위해 편성한 일반수용비 2백만원을 기념품 및 자료집 인쇄 등을 위해 집행

자료: 통계청

---

425)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통계청훈령 제664호)」**

**제10조(협의회 구성)** 지역통계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통계기획팀에서는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통계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내부 위원은 본청 지역통계기획팀 팀장, 지방청 및 지청 지역통계과장으로 구성한다.
3. 외부 위원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 부서장, 중앙행정기관 유관부서 부서장 및 연구원(시도 및 국책), 한국은행 통계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그 중 1회는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를 정기회의 개최로 본다.

② 그 외에 지역통계 관련 사안 발생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소집 시에는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지역통계 생산·활용 사례 공유, 지역공통 관심사 및 현안 등 지역통계 발전방안 논의를 통하여, 지역 간 상호협력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통계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정책과제 이행에 필요한 지역통계를 발굴·확충한다.

426) 세목조정한 2,000만원 중 300만원은 지방시대 엑스포 홍보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사업으로 집행

통계청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통계청 내 부서 간 내부적인 조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함.

또한, 당초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지역사회조사 업무발전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000만원의 일반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개최로 예산이 부족하여 통계청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기념품 및 자료집 인쇄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입장임.

한편, 통계청은 2023년도에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1,5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한 이후 지역사회조사 업무발전토론회 개최를 위해 편성한 2,000만원의 일반용역비를 더하여 행사를 개최하였고, 2025년에도 동일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2025년도 확정예산에도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매년 열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427]

참고로 2023년도에는 2024년도와 달리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사업」이 아닌 「지역통계 기획·운영 및 대외협력 강화사업」[428] 내 일반수용비를 활용하여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바탕으로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계청은 미리 계획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용역 수행을 위하여 당초 도급조사원 인건비 지급 목적으로 편성한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고,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역사회조사 업무발전토론회를 위해 편성한 일반용역비를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개최를 위해 사용하였음.

예산안 편성 시부터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편성단계에서 집행소요를 반영하지 않아 국회의 심의를 거치치 않은 채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행사를 개최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429]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427) 참고로 2026년에도 동일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2026년도 부처 예산요구안에도 협의회 행사 관련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428) 2023년 당시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사업(내역사업)'
42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있고,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내용과 달리 집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행사 개최 관련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음.

## (5)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통계데이터허브국)

< 현 황 >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은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연계·분석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통계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 융복합 관리체계 운영, 행정자료의 통합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77억 4,000만원으로, 이 중 7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음.

해당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은 2024년 예산현액 37억 5,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36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 (2032-308) | 7,740 | - | - | 119<br>△119 | - | 7,740 | 7,398 | - | 342 | 10,316 |
|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 3,750 | - | - | 119<br>△119 | - | 3,750 | 3,632 | - | 118 | 5,779 |
| - 데이터융복합관리 체계 운영 | 2,797 | - | - | - | - | 2,979 | 2,702 | - | 95 | 2,905 |
| - 행정자료 통합관리 | 547 | - | - | - | - | 547 | 444 | - | 103 | 599 |
| - 빅데이터시스템운영 | 646 | - | - | - | - | 646 | 620 | - | 26 | 580 |
| - 개인정보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453 |

< 검토의견 >

**통계데이터센터는 전국 13개소에서 공공·민간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복잡한 자료 반출 절차와 제한된 데이터 범위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고 온라인 주문형 서비스 실적도 감소하고 있어, 통계청은 수요 기반의 데이터 확대, 절차 간소화, 지역 맞춤형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통계데이터센터(SDC)는 정보보호가 확보된 보안 환경에서 일반 이용자가 통계청이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데이터와 본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자료 연계·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센터로. 「통계법」제31조의2[430]에 그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해당 센터는 2016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부터 대전, 서울 중구, 부산 등 3개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거점을 확대해왔음.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제주센터, 전북센터, 고양센터(국립암센터)가 추가로 개소되었고, 2025년 6월 현재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전북·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총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또한, 2024년 1월 17일에는 서울대학교 내에 통계데이터센터 1개소가 추가로 개소되었는데, 이는 2018년에 설립되었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통합·전환한 결과로, 기존 센터들과 기능을 일원화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현재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한 통계등록부 등 20종의 행정통계 DB와 70종의 민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 걸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430) **「통계법」**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센터 내에서는 외부망과 완전히 차단된 보안 강화 공간에서 공공데이터(행정·조사자료), 민간데이터, 이용자가 보유한 자체자료 등을 자유롭게 연계·융합·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및 분석 지원 서비스는 물론,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실무 교육과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의 분석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 행정통계DB 및 민간데이터 현황]**

(2025.6 기준)

| 구분 | 제공 데이터 목록 | | | |
|---|---|---|---|---|
| 행정통계 DB (20종) | · 기업통계등록부(6종)<br>· 사업장 기초DB(2종)<br>· 취업활동통계등록부(2종) | · 인구통계등록부(2종)<br>· 가구통계등록부(2종)<br>· 인구동태 코호트DB | · 청년통계등록부<br>· 주택통계등록부 | · 농업 DB<br>· 임업 DB<br>· 어업 DB |
| 민간데이터 (74종) | · 내국인 카드소비(6종)<br>· 외국인 카드소비(3종)<br>· 배달앱 카드매출(3종)<br>· 아파트단지별 카드소비(3종)<br>· 온라인서비스 소비(3종) | · 지역별 카드매출<br>· 성·연령별 카드매출(3종)<br>· 업종별 카드매출<br>· 개인신용정보(6종)<br>· 인구이동정보(3종) | · 이동통신정보(7종)<br>· 유통마트정보(4종)<br>· 기업신용정보(9종)<br>· 환경데이터정보(3종)<br>· 기타자료(16종) | |
| 마이크로데이터 자료(65종) | · 사업체 부문(12종)<br>· 인구 부문(6종) | · 가구 부문(17종)<br>· 농림어업 부문(17종) | · 행정통계(13종) | |

자료: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 재구성

통계청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센터를 확충해왔으며, 그 결과 전체 이용자 수는 2021년 2,333명에서 2024년 7,08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통계데이터센터 1개소당 평균 이용 건수는 294건, 평균 이용자 수는 512명에 그쳤으며,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센터 1개소당 24.5건, 일평균 이용자 수는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활용 수준은 저조한 실정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구·강남·부산 센터가 전년과 유사한 이용자 수를 유지한 반면, 상암·대전 등 일부 지역센터는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52.8%, 87.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암, 국립암센터, 제주센터는 연간 이용 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집계되어, 전반적인 이용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

| 센터명 | 지역 | 설치 연월 | 좌석 수 | 이용자수(명) | | | | 이용건수(건) | | | |
|---|---|---|---|---|---|---|---|---|---|---|---|
|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1 | 2022 | 2023 | 2024 |
| 서울 중구 | 서울 | '18.11. | 10 | 1,200 | 928 | 1,514 | 1,578 | 482 | 482 | 599 | 804 |
| 서울 강남 | 서울 | '22.6. | 11 | - | 204 | 516 | 575 | - | 141 | 389 | 493 |
| 서울 상암 | 서울 | '21.9. | 5 | 72 | 80 | 21 | 147 | 51 | 50 | 53 | 28 |
| 서울 국회 | 서울 | '22.9. | 3 | - | 53 | 154 | 222 | - | 21 | 29 | 204 |
| 서울대 | 서울 | '24.1. | 8 | - | - | - | 825 | - | - | - | 198 |
| 부산 | 부산 | '18.7. | 12 | 67 | 269 | 376 | 399 | 20 | 105 | 203 | 263 |
| 대구 | 대구 | '21.3. | 13 | 66 | 314 | 138 | 279 | 39 | 206 | 113 | 223 |
| 광주 | 광주 | '20.3. | 12 | 129 | 238 | 245 | 413 | 40 | 143 | 180 | 304 |
| 대전 | 대전 | '18.11. | 10 | 532 | 525 | 672 | 786 | 240 | 438 | 611 | 533 |
| KDI | 세종 | '22.3. | 5 | - | 171 | 584 | 674 | - | 77 | 225 | 349 |
| 국립암센터 | 경기 고양 | '23.6. | 3 | - | - | 26 | 62 | - | - | 1 | 18 |
| 전북 | 전주 | '23.5. | 8 | - | - | 148 | 429 | - | - | 99 | 318 |
| 제주 | 제주 | '23.3. | 7 | - | - | 134 | 267 | - | - | 54 | 83 |
| 비대면 온라인(주문형) | | - | - | 267 | 898 | 337 | 424 | 251 | 532 | 200 | 215 |
| 전체* | - | - | 107 | 2,333 | 3,680 | 4,865 | 7,080 | 1,123 | 2,195 | 2,756 | 4,033 |
| 센터수 | | | | 6 | 9 | 12 | 13 | 6 | 9 | 12 | 13 |
| 센터당 평균** | | | | 344 | 309 | 377 | 512 | 145 | 185 | 213 | 294 |

* 비대면 온라인(주문형) 포함
** 비대면 온라인(주문형) 제외
자료: 통계청

그리고, 2024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37억 5,000만원으로, 같은 해 기준 이용 건수 4,033건, 이용자 수 7,080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용 1건당 약 93만원, 이용자 1인당 약 53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용자 수와 실적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25년에는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0억원 증가한 57억 7,900만원으로 대폭 확대[43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431)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시스템 관리 및 개선: (2024) 935 → (2025) 2,572백만원 (+1,637백만원, +175.1%)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개선: (2024) 2,202 → (2025) 2,548백만원(+346백만원, +15.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실질적인 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이용자 유형별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센터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잠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해 이용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통계청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으로 분석 결과를 통계표 형태로 제공하는 '이용자 주문형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해당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2021년 138건, 2022년 32건, 2023년 42건, 2024년 22건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실적이 감소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만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 주문형 분석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명, 건)

| 구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이용건수(승인기준) | | 753 | 1,123 | 2,195 | 2,756 | 4,033 |
| | 주문형 | 60 | 138 | 32 | 42 | 22 |

자료: 통계청

또한, 2024년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 측면에서는 자료 반출 기준 완화 및 반출 소요 시간 단축, 자료 간 연계성 확대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와의 연계 강화, 민간자료 등 제공 데이터 종류의 확대, 결측치 축소 등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시설 및 장비 관련해서는 이용 시간 연장, 원격 사용 가능화, 센터의 지역 확대, 서버 및 PC 성능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최근 5년간 통계데이터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만족도 | 4.09 | 4.09 | 4.04 | 3.70 | 3.90 |

자료: 통계청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료 반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자료 연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민간데이터의 종류와 수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자료 재생산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물 사례를 제공하고, 연계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병행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① 통계데이터센터의 공개대상 통계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세분화하고, ② 자료 반출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외에도 ③ 센터 추가 개소 시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사업체 수, 연구기관 현황 등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률 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④ 현재 통계데이터 만족도 조사가 통계청 제공 전체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포함되어 일부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분리·시행하는 등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경제총조사, 경제통계국)

< 현 황 >

「경제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경영실태 등의 구조를 동일 시점에 동일 기준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총조사의 실시 및 준비를 위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7억 6,400만원으로, 이 중 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경제총조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2차 시험조사 사업」은 예산현액 6억 8,400만원 중 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경제총조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경제총조사(3033-306) | 764 | - | - | - | 764 | 717 | - | 47 | 1,427 |
| - 2차 시험조사 | 684 | - | - | - | 684 | 645 | - | 39 | - |
| - 총조사 준비 연구개발 | 80 | - | - | - | 80 | 72 | - | 8 | - |

< 검토의견 >

**경제총조사 시행을 위한 해외자료 번역 목적으로 편성한 일반수용비를 국외출장 중 학술대회 등록비로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산안 편성 시 출장 관련 경비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경제총조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2차 시험조사 사업」은 2026년 경제총조사의 최적의 수행방안을 도출하고 조사 효율성 증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시험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도급조사원 인건비, 조사용품 구입비, 전문가 자문비용, 해외자료 번역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 4억 5,9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였음.

통계청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총조사 수행을 목표로 조사체계, 투입인력 등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매년 해외자료 번역 예산 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해외자료 번역을 수행하지 않고 800만원 중 392만원을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제회의 개최 및 양자 통계협력 사업」의 출장경비로 집행하였음.[432)]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사례는 각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으로부터 수집하였으나, 공개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 2024년에 한하여 해외 선진사례 수집을 위하여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고, 이에 「국제회의 개최 및 양자 통계협력 사업」 중 경제총조사과 직원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북미학술통계대회(JSM), 제4차 한국-영국 통계협력 양자회의, 국제 비즈니스·산업통계 컨퍼런스(ICBIS) 등 3개 국외출장을 통해 해외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음.

또한, 통계청은 모든 국외출장과 관련한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을 통해 일괄 집행하지만 프로그램 등록비, 통역비 등 부대비용은 출장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관행이 있어 경제총조사를 위한 해외자료 번역 목적으로 편성한 일반수용비를 북미학술통계대회 등록비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432) 통계청은 2023년에도 해외자료 번역 및 작성을 위해 8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였으나 해외자료 번역을 수행하지 않고 600만원을 조사에 필요한 인쇄비용으로 집행한 바 있음.

## [북미학술통계대회 국외출장 개요]

□ 출장개요

○ (출장목적) 미국통계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통계대회에 한국 통계청의 통계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별세션 구성 및 발표

○ (출장지역 및 기간) 미국 포틀랜드('24. 8. 4. ~ 8. 10.)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 (출장자) 경제총조사과장 외 7명*

* 국제협력담당관 2명, 경제통계기획과 1명, 표본과 1명, 국가통계연구원 2명, 동남지방통계청 1명

□ 주요 출장내용

○ (JSM 특별세션 발표) 한국 통계청의 통계혁신 프로그램 홍보 및 통계청에서 연구·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례 발표

-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를 적용한 도시-비도시(Degree of Urbanization) 분류 및 기능적 도시권(Functional Urban Area) 설정 방법론의 국내 시범적용 연구 결과
-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모바일조사표 인지 실험을 통한 사용성 평가 및 문제점 분석과 조사표 개선 방안
- 공식통계 작성기관 중 최초 개발 사례로서 한국 통계청의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개발 결과 소개
- 빅데이터와 행정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생산방식, 경제구조 및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통계와 지표 제공 현황,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등 한국 통계청의 주요 활동

○ (JSM 참가) 북미 통계 전문가 및 데이터 과학자들과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통계 동향 파악·학습

- 표본추출, 조사 및 추정 등에 대한 방법론과 연구 사례, AI기술 적용 사례, 나우캐스팅 활용, 해외통계청 사례 공유 등

□ 예산 집행내역

| 세부사업명 | 세목 | 집행내역 | 금액 |
|---|---|---|---|
| 국제통계 협력강화 (7031-303) | 국외업무여비 (220-02) | 항공운임, 준비금, 체재비 | 3,830만원 |
|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해외로밍서비스 | 30만원 |
| | 국내여비 (220-01) | | 10만원 |
| | 일반수용비 (210-01) | | 40만원 |
| 경제총조사 (3033-306) | 일반수용비 (210-01) | 경제총조사 홍보 등을 위한 북미 학술통계대회(JSM) 등록비 지급 | 392만원 |

주: 국가통계연구원 예산 제외

* 통계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통계청이 작성한 ‘2024년 북미학술통계대회(JSM)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따르면, 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북미학술통계대회에서 발표한 주제는 ‘한국의 통계적 지역 분류체계 적용 방안’, ‘통계청의 통계 혁신 소개’ 등으로, 경제총조사 홍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본 예산은 경제총조사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자료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므로 경제총조사 홍보 목적으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433]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이와 더불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국외출장여비를 일괄 집행하고 기타 부대비용은 각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통계청은 예산의 편성목적과 무관한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추후 국외출장 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및 집행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3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7) 최신 농업경영체 자료를 활용하여 농림어업총조사 확인용 명부를 보완할 필요 (농림어업총조사, 사회통계국)

< 현 황 >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은 농림어가 수, 농림어가 인구 등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기본구조와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립 및 평가·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5년 주기의 국가기본통계 사업(농림어업총조사)과 연단위로 조사하는 농림어업조사로 구분되어 있음.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의 2024년 예산액은 20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9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원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으로 전용하였으며, 1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림어업총조사 3차 시험조사 사업」은 예산현액 2억 700만원 중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5,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농림어업총조사(3035-308) | 2,096 | - | △19 | - | 2,077 | 1,914 | - | 163 | 56,447 |
| **- 농림어업총조사 3차 시험조사** | **207** | **-** | **-** | **-** | **207** | **153** | **-** | **54** | **-** |
| -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 | 802 | - | △19 | - | 783 | 684 | - | 99 | - |
| - 등록센서스 연구용역 | 100 | - | - | - | 100 | 97 | - | 3 | - |
| - 농림어업조사 | 987 | - | - | - | 987 | 980 | - | 7 | - |

< 검토의견 >

**통계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신 농업경영체 자료를 활용하여 2025 농림어업총조사 명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각종 학술연구 자료와 표본조사의 모집단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 규모의 5년 단위 통계조사로서, 통계청은 총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항목 재정비, 조사방법의 편리성 및 조사관리의 효율성 등 조사 전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재점검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차·2차·3차 시험조사 및 시험예행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통계청은 연계된 다른 제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명부 작성 방식을 개선해오고 있는데, '2010 농림어업총조사'까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시 조사된 농림어가를 기반으로 명부를 작성하였으나 인구주택총조사가 기존 전수조사에서 등록센서스[434]를 기반으로 한 표본조사로 전환되면서 '2015 농림어업총조사' 대상명부는 '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 및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이후 '2020 농림어업총조사'는 현장조사의 편의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기준 인구·가구 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도로명주소 DB 및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일부 확인된 농림어가 자료를 연계하여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최신 정보 활용 및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2024년 기준 주민등록자료를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명부를 작성하였음.

특히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명부 작성 시 2종 이상의 농림어업 행정자료와 연계된 가구만을 포함하였으나 '2025 농림어업총조사'부터 농림어가의 누락 방지 및 대상가

434) 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말함.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구·주택의 기본특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성·연령·주택종류 등) 항목과 20% 표본을 대상으로 세부특성(통근·통학·이동수단 등)을 파악하는 표본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수조사 항목은 매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표본조사 항목은 5년 주기 현장조사 방식으로 작성함.
(출처: 통계청 2025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https://census.go.kr/sub/ehpp/dc/ehppdc100m01)

구 포착 확대를 위하여 1종의 행정자료라도 연계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명부 작성방식을 보완하였음.[435]

**[농림어업총조사 개요('15, '20, '25)]**

| 구분 | 2015 농림어업총조사 | 2020 농림어업총조사 | 2025 농림어업총조사 |
|---|---|---|---|
| 조사명부 작성방식 | '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br>+ '14년 조사·행정자료 | '18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br>+ '19년 도로명주소DB<br>+ '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br>+ '19년 조사·행정자료(2종 이상) | '23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br>+ '24년 주민등록자료<br>+ '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br>+ '24년 조사·행정자료(1종 이상) |
| 활용대상 조사자료 | ·전주기 농림어업총조사 결과<br>·농림어업 경상조사 5종<br>-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축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 | |

435) 연계된 행정자료 포함 기준을 2종 이상에서 1종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조사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 | | |
|---|---|---|---|
| 활용대상 행정자료 | ·**농업 4종**<br>-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 쇠고기이력제 | ·**농업 4종**<br>-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 귀농어통계 | ·**농업 3종**<br>-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 귀농어귀촌인자료<br><br>***농업경영체 자료 제외**<br>**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작성내용이 확대 |
| | ·**임업 8종**<br>-임업후계자명부, 입목벌채허가 및 신고대장, 임산물굴취채취허가 및 신고대장, 조경수협회명부, 산림조합원명부,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서, 독림가명부, 관상수시업상황개인별조사서 | ·**임업 9종**<br>-임업후계자명부, 입목벌채허가 및 신고대장, 임산물굴취채취허가대장, 임산물굴취채취신고대장, 조경수협회명부, 산림조합원명부,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서, 독림가명부, 관상수시업상황개인별조사서 | ·**임업 6종**<br>-임업경영체, 입목벌채허가 및 신고대장, 임산물굴취채취허가 및 신고대장, 조경수협회명부, 산림조합원명부,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서 |
| | ·**어업 4종**<br>-어선원부, 어업인허가대장, 내수면어가명부, 수협위탁자료 | ·**어업 5종**<br>-어업경영체, 어선원부, 어업인허가대장, 내수면어가명부, 수협위탁자료 | ·**어업 13종**<br>-어업경영체, 어선원부, 내수면어가명부, 어업인허가대장, 수협위탁자료, 수협조합원가입·탈퇴명부, 어장관리선등록명부, 어업면허·허가·신고등록명부, 어업허가지위승계명부, 전자어업허가증명부 |
| 조사항목 | ·130개<br>농가·임가(51개), 해수면어가(30개), 내수면어가(30개), 지역(19개) | ·127개<br>농가·임가(54개), 해수면어가(29개), 내수면어가(29개), 지역(15개) | ·133개<br>농가·임가(58개), 해수면 어가(30개), 내수면 어가(30개), 지역(15개) |
| | ·농가·임가 : 농업이나 임업을 경영하는 농가와 임가 대상<br>·해수면어가: 해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br>·내수면어가: 내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br>·지역: 읍면지역의 행정리 지역을 대상 | | |
| 조사운영 | ·본조사 12일<br>·조사요원 21,003명 | ·본조사 16일<br>·조사요원 16,451명 | ·본조사 21일<br>·조사요원 20,850명 |

| | | | |
|---|---|---|---|
| 조사규모 | ·134만 가구<br>·행정리 3만 6천개 | ·154만 가구<br>·행정리 3만 7천개 | ·278만 가구<br>·행정리 3만 8천개 |

* 통계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대비한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결과 기존 명부상 농림어가 중 실제 확인된 농림어가의 비율이 낮아 초기명부가 실제 농림어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명부상 농림어가 중 확인된 농림어가의 비율은 2022년 제1차 시험조사 결과 72.8%, 2023년 제2차 시험조사 결과 43.2%였고, 2024년 실시한 제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의 경우 각각 44.7%, 57.4%였음.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제1차 시험조사 확인용 명부에는 2종 이상의 행정자료와 연계된 가구만을 포함하였고, 제2차·제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는 1종의 행정자료와 연계되는 모든 가구를 포함하여 명부를 작성함에 따라 비농림어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함.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1차 시험조사(2022년) 명부상 농림어가 확인 결과]

(단위: 가구, %)

| 구 분 | 전 체 | 구성비 | 고창군 | 구성비 | 군산시 | 구성비 |
|---|---|---|---|---|---|---|
| 명부상 농림어가 | 3,029 | 100.0 | 1,464 | 100.0 | 1,565 | 100.0 |
| (-) 非농림어가구 | 584 | 19.2 | 323 | 22.1 | 261 | 16.7 |
| (-) 빈집·기타·중복 | 201 | 6.7 | 118 | 8.0 | 83 | 5.3 |
| (-) 부재·불응·불능 | 38 | 1.3 | 3 | 0.2 | 35 | 2.2 |
| 확인된 농림어가 | 2,206 | 72.8 | 1,020 | 69.7 | 1,186 | 75.8 |

자료: 통계청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2차 시험조사(2023년) 명부상 농림어가 확인 결과]

(단위: 가구, %)

| 구 분 | 전 체 | 구성비 | 기장군 | 구성비 | 거창군 | 구성비 |
|---|---|---|---|---|---|---|
| 명부상 농림어가 | 6,238 | 100.0 | 3,730 | 100.0 | 2,508 | 100.0 |
| (-) 非농림어가구 | 2,759 | 44.2 | 2,453 | 52.8 | 1,003 | 31.5 |
| (-) 빈집·기타·중복 | 697 | 11.2 | 484 | 13.0 | 213 | 8.5 |
| (-) 부재·불응·불능 | 87 | 1.4 | 82 | 2.2 | 5 | 0.2 |
| 확인된 농림어가 | 2,695 | 43.2 | 1,195 | 32.0 | 1,500 | 59.8 |

자료: 통계청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3차 시험조사(2024년) 명부상 농림어가 확인 결과]

(단위: 가구, %)

| 구 분 | 전체 | 구성비 | 영덕읍 | 구성비 | 강구면 | 구성비 | 영해면 | 구성비 |
|---|---|---|---|---|---|---|---|---|
| 명부상 농림어가 | 3,906 | 100.0 | 1,635 | 100.0 | 841 | 100.0 | 1,430 | 100.0 |
| (-) 非농림어가구 | 1,676 | 42.9 | 760 | 46.5 | 396 | 47.1 | 520 | 36.4 |
| (-) 빈집·기타·중복 | 230 | 5.9 | 88 | 5.4 | 42 | 5.0 | 100 | 7.0 |
| (-) 부재·불응·불능 | 254 | 6.5 | 110 | 6.7 | 37 | 4.4 | 107 | 7.5 |
| 확인된 농림어가 | 1,746 | 44.7 | 677 | 41.4 | 366 | 43.5 | 703 | 49.2 |

자료: 통계청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2024년) 명부상 농림어가 확인 결과]

(단위: 가구, %)

| 구 분 | 전체 | 구성비 | 예산군 | 구성비 | 당진시 | 구성비 |
|---|---|---|---|---|---|---|
| 명부상 농림어가 | 20,698 | 100.0 | 14,482 | 100.0 | 6,216 | 100.0 |
| (-) 非농림어가구 | 6,645 | 32.1 | 4,223 | 29.2 | 2,422 | 39.0 |
| (-) 빈집·기타·중복 | 1,826 | 8.8 | 1,131 | 7.8 | 695 | 11.2 |
| (-) 부재·불응·불능 | 354 | 1.7 | 275 | 1.9 | 79 | 1.3 |
| 확인된 농림어가 | 11,873 | 57.4 | 8,853 | 61.1 | 3,020 | 48.6 |

자료: 통계청

또한,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할 때 농가 포착을 위한 행정자료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농업경영체 자료가 2014년 기준 자료라서 실제 농가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조사명부 일치율이 낮게 도출되었다고 설명함.

통계청에 따르면 어업과 임업 분야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 시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최신화된 어업경영체 자료 및 임업경영체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2023년 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통계 개선 및 농업경영체 자료 활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체 자료에 대한 품질 확보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최신 농업경영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농업경영체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본조사 명부 작성 시에는 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 귀농어귀촌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4년 기준 농업경영체 자료는 참고만 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농업경영체 자료에는 농지대장에 없는 농지의 경작면적 및 품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축산업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축종[436]의 축산 경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명부 보완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통계청은 올해 8월 말까지 최신 농업경영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면 202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명부에 신규 농업경영체 추가, 축산업 축종 추가 등 보완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한편,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불필요한 조사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명부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결하였고, 통계청은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로 '조사명부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행정자료 현행화 및 다양한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하였음.[437]

436) 말, 노새, 당나귀, 개, 오소리, 기타 가금 및 조류, 곤충 등
437) 정부,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 5.

따라서 통계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농촌 상황이 반영된 최신 농업경영체 자료를 활용하여 2025 농림어업총조사 명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8)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국외여비 집행 및 전용절차를 미준수한 집행 개선 필요

##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기관운영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

< 현 황 >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사업」(7031-305)은 국제기구(ADB, IDB 등)와 공조하여 개도국 통계 인적역량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24억 6,400만원으로, 이 중 2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220-02)는 3개국(몽골, 파라과이, 콜롬비아) 통계역량강화사업 현지점검을 위한 해외출장여비로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 | 2,464 | - | - | - | 2,464 | 2,311 | - | 153 | 2,812 |
| -일반수용비(210-01) | 32 | - | - | - | 32 | 32 | - | | 38 |
| -일반용역비(210-14) | 2,398 | - | - | - | 2,398 | 2,245 | - | 153 | 2,740 |
| -국내여비(220-01) | 3 | - | - | - | 3 | 3 | - | | 3 |
| **-국외업무여비(220-02)** | **28** | **-** | **-** | **-** | **28** | **28** | **-** | | **28** |
| -사업추진비(240-01) | 3 | - | - | - | 3 | 3 | - | | 3 |
| 합 계 | 2,464 | - | - | - | 2,464 | 2,311 | - | 153 | 2,812 |

자료: 통계청

< 검토의견 >

**통계청은 「국가재정법」 제46조[438]에 따른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사업에 편성된 국외여비로 해외 출장을 진행하였고, 당초 계획과 달리 한 건의 출장에 국외여비를 전액 집행하는 등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사업」(7031-305)의 국외업무여비는 2024년 ADB 공조 몽골 통계역량강화사업 현지점검 7백만원, 2024년 IDB 공조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사업과 2024년 IDB 공조 콜롬비아 통계역량강화사업 현지점검을 위한 해외 출장여비로 각각 1,100만원, 1,000만원으로 총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통계청은 3건의 현지검점을 위한 해외 출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4년 ADB 공조 몽골 통계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 출장(2024. 5. 20.- 5. 24.)은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가 아닌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7011-251)에 편성된 국외여비로 집행하였음.

「국가재정법」 제46조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7011-251)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를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사업」(7031-305)의 목적을 위해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용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통계청은 2024년에 3개국의 현지점검 출장을 계획하였다가 파라과이 현지점검 해외 출장인원을 당초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1개국(몽골)은 타 사업의 예산으로, 1개국(콜롬비아)은 현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이러한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과 달리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38)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사업 국외여비(220-02)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 | | 집행 | | | |
|---|---|---|---|---|---|
| 사업명 | 금액 | 결산 사업설명자료 | | 실집행 | |
| | | 사업명 | 집행 | 사업명 | 집행 |
| 몽골 | 7 | 몽골 | 7 | 몽골 | 7<br>(기관운영 기본경비) |
| 파라과이 | 11 | 파라과이 | 11 | 파라과이 | 28 |
| 콜롬비아 | 10 | 콜롬비아 | 10 | 콜롬비아 | 미실시 |
| 계 | 28 | 계 | 28 | 계 | 35 |

자료: 통계청

이에 대해 통계청은 몽골 현지점검은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으로 편성되었으나, 국외여비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였고, 가급적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위하여 타 사업에서 전용하지 않고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보완하여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은 3개국 통계역량강화사업 현지 점검을 위한 예산이었으므로 가능한 정부가 계획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부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전용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9) 전용절차를 준수하여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청사시설관리, 운영지원과)

< 현 황 >

「청사시설관리 사업」(7032-305)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관리, 노후 사무집기 및 물품 교체, 임차청사 및 임차관사의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56억 4,400만원으로, 이 중 5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청사시설관리 사업」의 2024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현액은 6억 2,7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청사시설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2024 |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임차·통합청사운영 | 3,583 | 3,583 | △111 | | 3,472 | 3,390 | - | 82 | 4,239 |
| -일반수용비(210-01) | 2,426 | 2,426 | △111 | | 2,315 | 2,301 | - | 14 | 2,733 |
| - 임차료(210-07) | 1,157 | 1,157 | - | | 1,157 | 1,089 | - | 68 | 1,506 |
| · 청사시설관리 | 1,465 | 1,465 | 111 | | 1,576 | 1,467 | - | 109 | 1,249 |
| - 일반수용비(210-01) | 120 | 120 | △97 | | 23 | 23 | - | - | 90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19** | **419** | **208** | | **627** | **627** | **-** | **-** | **732** |
| - 관리용역비(210-15) | 8 | 8 | | | 8 | 8 | - | - | 8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1 | 21 | △11 | | 10 | 10 | - | - | 6 |
| - 실시설계비(420-02) | 16 | 16 | 11 | | 27 | 27 | - | - | 5 |
| - 공사비(420-03) | 870 | 870 | △8 | | 862 | 756 | - | 106 | 404 |
| - 감리비(420-04) | 6 | 6 | 8 | | 14 | 14 | - | - | 2 |
| - 시설부대비(420-05) | 5 | 5 | - | - | 5 | 2 | - | 3 | 2 |
| · 노후집기 교체 | 283 | 283 | - | - | 283 | 282 | - | 1 | 283 |
| - 자산취득비(430-01) | 283 | 283 | - | - | 283 | 282 | - | 1 | 283 |
| · 임차관사 운영 | 313 | 313 | - | - | 313 | 313 | - | - | 503 |
| - 무형자산(440-00) | 313 | 313 | - | - | 313 | 313 | - | - | 503 |
| 합 계 | 5,644 | 5,644 | - | - | 5,644 | 5,451 | - | 193 | 6,274 |

자료: 통계청

< 검토의견 >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공사비(420-03) 성격의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집행 시 「국가재정법」[439]에 따른 전용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노후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당초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일반수용비로부터 2억 8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이러한 시설장비유지비로의 세목조정은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세목조정 금액도 매년 당초 예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함.

[2019년 ~ 2024년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A) | 세목조정 (B)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액 대비 세목조정 비율 (B/A) |
|---|---|---|---|---|---|---|
| 2019 | 613 | 383 | 996 | 994 | 1 | 62.5 |
| 2020 | 519 | 266 | 785 | 784 | 1 | 51.3 |
| 2021 | 519 | 255 | 774 | 772 | 2 | 49.1 |
| 2022 | 519 | 209 | 728 | 722 | 6 | 40.3 |
| 2023 | 419 | 174 | 593 | 592 | 1 | 41.5 |
| 2024 | 419 | 208 | 627 | 627 | - | 49.6 |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첫째, 세목조정은 예산의 이·전용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43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통계청은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액 대비 40% 이상 매년 반복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에도 2억 800만원(예산대비 49.6%)을 초과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통계청은 노후청사 누수 보수, 노후 냉난방기 수리·교체, 자연재해 피해 보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의 부족분을 세목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세목조정은 예산의 이·전용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사비(420-03) 성격의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집행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절차를 준수하고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기존 건물이나 건축설비 및 통신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공사비(420-03)는 건물이나 구축물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분됨

한편,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한 내역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충주사무소 증평분소 청사 이전 공사 비용(6,800만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440]에 따르면 공사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절차를 거쳐 집행했어야 함에도 시

440)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공사비(420-03) |
|---|---|
|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br>-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br>-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br>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br>3. 토지정지공사비<br>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br>5.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br>6. 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br>7.~8. 생략 |

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441]은 공사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수용비(210-01)를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세목조정한 이후에 청사 이전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공사비 성격의 경비를 사실상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로 보여짐.

세목조정은 예산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제도이나 비목의 성격이 다른 경우 「국가재정법」상의 전용절차를 준수하고,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지방청 | 집행내역 | 집행액 |
|---|---|---|
| 경인지방통계청 | - 재해 대응 및 노후시설 보수 | 15 |
| | - 부정기 업무 지원 | 1 |
| 동북지방통계청 | - 관련 법령 개정 대비 긴급 조치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등 | 36 |
| | - 재해 대응 및 노후시설 보수 | 11 |
| 호남지방통계청 | - 재해 대응 및 노후시설 보수 | 33 |
| 동남지방통계청 | - 노후시설 보수 | 11 |
| 충청지방통계청 | - 노후시설 보수 | 3 |
| | -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 18 |
| | **- 충주사무소 증평분소 청사 이전 공사**<br>(청사 이전 관련 실내공사 53, 청사 이전 관련 전기공사 15) | **68** |
| 강원지방통계청 | - 재해 대응 및 노후시설 보수 | 5 |
| | - 관련 법령 개정 대비 긴급 조치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등 | 9 |
| 합 계 | | 208 |

* GHP(가스히트펌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

자료: 통계청

44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일반수용비(210-01목)
바.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